발 간 등 록 번 호
11-1421000-100014-10

사업공고는 기업마당

2026년도

중소벤처기업 지원사업

II 유관기관 편

중소벤처기업부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제1편 | 유관기관(금융기관)

제1부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1 • 정책자금 지원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 ····· 11
1-1① • 혁신창업사업화자금(융자) ····· 22
1-1② • 신성장기반자금(융자) ····· 27
1-1③ • 재도약지원자금 ····· 32
1-1④ • 긴급경영안정자금(융자) ····· 37
1-1⑤ • 신시장진출지원자금(융자) ····· 42
1-1⑥ • 밸류체인안정화자금(융자) ····· 46
1-1⑦ • 정책자금 이차보전 지원 ····· 50
1-2 • 수출바우처 ····· 53
1-3 •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 59
1-4 • K-스타트업센터(KSC) ····· 63
1-5 • 전자상거래수출시장진출 ····· 67
1-6 • 온라인수출플랫폼 ····· 70
1-7 • 기업인력애로센터 활용 취업지원 ····· 73
1-8 •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 77
1-9 • 중소기업 인력양성대학(기술사관 육성) ····· 81
1-10 • 중소기업 인력양성대학(중소기업 계약학과) ····· 84
1-11 • 중소기업-근로자간 성과공유 확산 사업 ····· 87
1-12 • 중소기업 외국전문인력 활용 지원사업 ····· 89
1-13 • 연수사업 ····· 95
1-14 • 청년창업사관학교 ····· 98

1-15 • 스타트업 AI 기술인력 양성-이어드림 스쿨 ····· 103
1-16 • 해외인력 취업매칭 지원 ····· 107
1-17 • 중소기업 탄소중립 설비투자 지원 ····· 111
1-18 • 중소기업 탄소중립 사업화 지원 ····· 114
1-19 • 중소기업 기후공시 · 공급망 실사대응 기반구축 ·· 117
1-20 • 디지털 기반 자동화 MRV* 보급 사업 ····· 120
1-21 •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 123
1-22 • 구조혁신지원사업 ····· 127
1-23 • 선제적 자율구조개선 프로그램 ····· 130
1-24 • 성실경영평가 제도 ····· 134
1-25 • 진로제시컨설팅 ····· 138
1-26 • 회생컨설팅 ····· 141
1-27 • 내일채움공제 ····· 144
1-28 •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 147
1-29 • 청년연계형 내일채움공제 ····· 150

제2부 | 기술보증기금

2-1 • 기술보증 ····· 158
2-2 • 기술선도 산업지원 프로그램 ····· 162
2-3 • 혁신성장산업 및 제4차 산업혁명 지원 프로그램 ·· 166
2-4 • 비대면·디지털기업 우대보증 ····· 169
2-5 • 일자리창출 지원 프로그램(굿잡보증 등) ····· 171
2-6 • 창업기업 우대지원 ····· 173
2-7 • 소셜벤처(S-Venture) 임팩트 보증 ····· 176
2-8 • 클린플러스 보증 ····· 179
2-9 • 문화산업완성보증 ····· 182
2-10 • 고부가서비스 프로젝트 보증 ····· 186

2-11 • 기후환경테크·환경산업 영위기업 보증 ····· 188
2-12 • 탄소가치평가보증 ····· 190
2-13 • 택소노미평가보증 ····· 193
2-14 • R&D 보증 ····· 196
2-15 • 특허기술가치평가보증 ····· 199
2-16 • 지식재산(IP) 평가보증 ····· 202
2-17 • 기술평가 ····· 206
2-18 • 재도전 재기지원보증 ····· 209
2-19 • 재창업 재기지원보증 ····· 212
2-20 • 지식재산공제 ····· 215
2-21 • 중소기업 기술거래·사업화 촉진 지원사업 ····· 218
2-22 • 기술신탁관리 ····· 221
2-23 • 기술임치 ····· 224
2-24 • TTRS(증거지킴이) ····· 227
2-25 • 중소벤처기업 M&A 지원사업 ····· 229
2-26 • 보증연계투자 ····· 231
2-27 • 벤처투자연계보증 ····· 233
2-28 • 엔젤투자연계보증 ····· 237
2-29 • VC투자매칭 특별보증 ····· 240
2-30 • 유동화회사보증 ····· 244
2-31 • 벤처기업확인평가 ····· 248
2-32 • 이노비즈(Inno-Biz) 선정평가 ····· 251
2-33 • 중소기업팩토링 ····· 254

제3부 | 신용보증재단중앙회

3-1 • 소기업·소상공인 등 신용보증지원 ····· 258
3-2 • 영세관광사업자 금융지원 협약보증 ····· 261

3-3 • 재해중소기업 특례보증 ····· 264
3-4 • 장애인기업 특례보증 ····· 267
3-5 • 사회적경제기업 특례보증 ····· 271
3-6 • 온[溫, ON]택트 특례보증 ····· 274
3-7 •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협약보증 ····· 277
3-8 • 녹색기업지원 특례보증 ····· 280
3-9 • 수출유망 중소기업 지원 특례보증 ····· 283
3-10 • 소기업·소상공인 전환보증 ····· 286
3-11 • KB소상공인컨설팅과 함께하는 금융지원 협약보증 ·· 289
3-12 • 소상공인 비즈플러스 카드보증 ····· 292
3-13 • 폐업 분할상환 특례보증(폐업 특례 브릿지보증) ·· 295
3-14 • 골목상권 살리기 금융지원 협약보증 ····· 298
3-15 • 소상공인 성장촉진 보증대출 ····· 301
3-16 • 생계형 적합업종 금융지원 협약보증 ····· 304
3-17 • 햇살론(자영업자) 신용보증 ····· 307
3-18 • 지역신용보증재단 ····· 310

제4부 | 신용보증기금

4-1 • 신용보증사업 ····· 318
4-2 • 창업기업 육성 프로그램(Start-up NEST) ····· 323
4-3 • 혁신스타트업 성장지원 프로그램 ····· 326
4-4 • 혁신아이콘 지원 프로그램 ····· 329
4-5 • 보증연계투자 ····· 333
4-6 • 투자옵션부보증 ····· 337
4-7 • 유동화회사보증 ····· 341
4-8 • 밸류업 프로그램 ····· 346
4-9 • 빌드업 프로그램 ····· 349

4-10 • 매출채권보험 ····· 352
4-11 • 잡매칭(Job Matching) ····· 357
4-12 • 컨설팅 ····· 359
4-13 • 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z) 선정평가 ····· 362
4-14 • 기업연수 및 경영정보 제공 ····· 365
4-15 • 중소·중견기업팩토링 ····· 367
4-16 • 녹색 공정전환 보증 ····· 370
4-17 • 무탄소에너지보증 ····· 373

제5부 | 한국수출입은행

5-1 • 2025년 수출중소기업 지원제도 ····· 379
5-2 • 첨단전략산업 우대지원 프로그램 ····· 380
5-3 • 수출초보기업 및 수출초기기업 육성 프로그램 ····· 382
5-4 • 히든챔피언 프로그램 ····· 384
5-5 • 기술금융 프로그램 ····· 386
5-6 • 상생금융 프로그램(해외동반진출 파트너십) ····· 389
5-7 • 상생금융 프로그램(상생수출 활성화) ····· 391
5-8 • 상생금융 프로그램(상생협력대출) ····· 393
5-9 • 환위험관리 지원 프로그램 ····· 395

제6부 | 한국무역보험공사

6-1 • 국외기업 신용조사 서비스 ····· 398
6-2 • 수출신용보증(선적전) ····· 401
6-3 • 수출신용보증(선적후) ····· 403
6-4 • 수출신용보증(매입) ····· 405
6-5 • 수출신용보증(포괄매입) ····· 407

6-6 • 단기수출보험(선적후) ····· 409
6-7 • 단기수출보험(중소중견Plus+)보험 ····· 413
6-8 • 환변동보험 ····· 415
6-9 • 수입보험(수입자용, 금융기관용, 글로벌공급망) ····· 419
6-10 • 해외채권 회수지원 서비스 ····· 422

제7부 | 기업은행

7-1 • 2025년 중소기업대출 지원현황 ····· 426
7-2 • 스마트동산 담보대출 ····· 427
7-3 • IP사업화자금대출 ····· 429
7-4 • IBK강소기업대출 ····· 431
7-5 • 수출입기업유동성 지원자금대출 ····· 433
7-6 • IBK문화콘텐츠대출 ····· 434
7-7 • IBK시설투자대출 ····· 436
7-8 • IBK토지분양협약대출 ····· 438
7-9 • 중기부 R&D 사업화자금대출 ····· 440

제8부 | 한국산업은행

8-1 • 온렌딩대출 ····· 444

제2편 | 유관기관(비금융기관)

제1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1-1 • 혁신 소상공인 창업지원 ····· 457
1-2 •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 461
1-3 • 로컬브랜드 창출 ····· 465
1-4 • 강한 소상공인 성장지원 ····· 468
1-5 • 우리동네 크라우드펀딩 ····· 472
1-6 • 혁신 소상공인 투자연계 ····· 475
1-7 • 글로벌 소상공인(K-소상공인) 육성 ····· 478
1-8 • 혁신 소상공인 AI 활용지원 ····· 480
1-9 • 백년소상공인 육성 사업 ····· 482
1-10 •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사업 ····· 485
1-11 • 소공인 스마트제조지원 ····· 488
1-12 • 소공인 클린제조환경조성 ····· 491
1-13 • 소공인 판로개척 지원 ····· 494
1-14 • 지역소공인육성(舊 소공인지원센터 설치·운영) ···· 497
1-15 • 지역상권 육성(글로컬 상권) ····· 500
1-16 • 지역상권 육성(로컬거점 상권) ····· 502
1-17 • 지역상권 육성(유망 골목상권) ····· 504
1-18 • 소상공인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 506
1-19 •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지원 사업(역량강화교육) ···· 511
1-20 •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지원 사업
(글로벌시장지원) ····· 515

1-21 • 희망리턴패키지 ····· 519
1-22 •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舊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 523
1-23 •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 상담센터 운영 ····· 528
1-24 • 시장경영지원(舊 시장경영패키지) ····· 530
1-25 • 전통시장육성(舊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 535
1-26 • 청년상인 육성(舊 청년몰 활성화) ····· 540
1-27 • 전통시장 화재공제 ····· 541
1-28 • 전통시장 화재 안전점검 ····· 544
1-29 • 전통시장 안전관리패키지 ····· 546
1-30 • 온누리상품권 발행 ····· 550
1-31 • 소상공인 빅데이터 플랫폼(소상공인365) ····· 553
1-32 • 일반경영안정자금 ····· 556
1-33 • 특별경영안정자금 ····· 558
1-34 • 성장기반자금 ····· 562
1-35 •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분할상환 특례지원 ····· 566

제2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2-1 •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R&D) ····· 577
2-2 • 민관공동기술사업화(R&D) ····· 581
2-3 • 투·융자연계기술개발(R&D) ····· 586
2-4 • 창업성장기술개발(R&D) ····· 590
2-5 • 디지털기반중소제조산재예방기술개발 ····· 594
2-6 • 중소기업 수출 핵심품목 탄소감축 기술개발사업 ··· 598
2-7 • 표준공정 기반 공정최적화 기술개발(R&D) ····· 601
2-8 • 중소제조 특화 Multi AI Agent 개발(R&D) ····· 605
2-9 • 산학연 Collabo R&D ····· 609
2-10 • 지역혁신선도기업육성(R&D) ····· 613

2-11 • 중소기업 연구인력 지원(R&D)
(신진 연구인력 채용지원) ····· 617
2-12 • 중소기업 연구인력 지원(R&D)
(고경력 연구인력 채용지원) ····· 621
2-13 • 중소기업 연구인력 지원(R&D)
(공공연 연구인력 파견지원) ····· 625
2-14 • 중소기업 연구인력 지원(R&D)
(중소기업 연구인력 현장맞춤형 양성지원) ····· 628
2-15 • 지역특화산업육성 ····· 631
2-16 •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지정사업 ····· 635
2-17 •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 639
2-18 • 디지털협업공장 구축사업 ····· 643
2-19 • 자율형공장 구축지원 ····· 647
2-20 • 스마트공장 수준확인제도 ····· 650
2-21 • 공급기업 역량진단 ····· 652
2-22 • 제조DX멘토단 활용지원사업 ····· 655
2-23 • 클라우드 제조솔루션 지원사업 ····· 658
2-24 • 제조데이터 상품가공 지원 ····· 660
2-25 • 제조 분야 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사업 ····· 663
2-26 • 중소기업 스마트서비스 지원 ····· 667

제3부 | 창업진흥원

3-1 • 예비창업패키지 ····· 677
3-2 • 초기창업패키지 ····· 681
3-3 • 창업도약패키지 ····· 685
3-4 • 초격차 스타트업 프로젝트 ····· 689
3-5 • 민관공동창업자발굴육성(TIPS) ····· 693
3-6 •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지원사업 ····· 698

3-7 • K-스타트업 그랜드챌린지 ····· 700
3-8 • 글로벌기업 협업프로그램(Around X) ····· 703
3-9 •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지원사업 ····· 706
3-10 • 창업중심대학 ····· 710
3-11 • 재도전성공패키지 지원사업 ····· 714
3-12 • 창조경제혁신센터 ····· 717
3-13 • 판교 창업존 운영 ····· 719
3-14 • 메이커 스페이스 ····· 721
3-15 • 청소년 비즈쿨 지원사업 ····· 723
3-16 • 도전! K-스타트업 ····· 726
3-17 • 스타트업 해외전시회 ····· 729
3-18 • 스타트업 법률지원 사업 ····· 732
3-19 •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 ····· 734
3-20 • 창업기업 확인(창업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 736
3-21 • 창업지원포털(K-Startup) ····· 739
3-22 •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 ····· 741
3-23 • 글로벌 스타트업 센터(GSC) ····· 743

제4부 |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4-1 • 동반성장몰 운영 사업 ····· 749

제5부 |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5-1 • 장애인 맞춤형 창업교육 ····· 755
5-2 • 장애인 창업 사업화 지원사업 ····· 758
5-3 • 가치키울 창업스타 발굴전 ····· 760
5-4 • 발달장애인 가족창업 특화사업장 운영 ····· 762

5-5 • 국내외 전시회 참가지원 ····· 764
5-6 • 장애인기업 수출지원 ····· 767
5-7 • 제품디자인 및 시제품 제작 지원 ····· 771
5-8 • 판로지원(인증획득 및 마케팅) ····· 775
5-9 • 1인 사업주 보조공학기기 지원사업 ····· 779
5-10 • MAS 컨설팅 및 등록 ····· 782
5-11 • 업무지원인 서비스 ····· 785
5-12 • 전국장애경제인대회 ····· 788
5-13 • 공공구매제도 운영 ····· 792
5-14 • 장애인기업 창업보육실 운영 ····· 795

제6부 | 중소기업중앙회

6-1 • 중소기업 공동구매 전용보증 제도 ····· 801
6-2 • 사업조정제도 ····· 804
6-3 • 명문(名門)장수기업 확인제도 ····· 808
6-4 • 중소기업 승계자문 프로그램 ····· 812
6-5 • 무역구제 대리인 선임비용 지원 ····· 814
6-6 • 상사중재 대리인 선임비용 지원 ····· 818
6-7 • 국제중재 법률자문 지원 ····· 821
6-8 • 수출컨소시엄 사업 ····· 823
6-9 • 삼성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사업 ····· 827
6-10 • 포스코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사업 ····· 830
6-11 •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 ····· 833
6-12 •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 836
6-13 • 대국민 중소기업 인식개선 사업 ····· 840
6-14 • 「참 괜찮은 강소기업」 플랫폼 ····· 842
6-15 • 외국인근로자 고용지원사업 ····· 845

6-16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제도(노란우산) ····· 851
6-17 • 중소기업 공제사업 기금제도 ····· 856
6-18 • 중소기업 손해공제 지원제도 ····· 861
6-19 • 중소기업 보증공제 지원제도 ····· 864
6-20 • 중소기업 제조물책임(PL)보험 지원제도 ····· 867

제7부 | 대 · 중소기업 · 농어업협력재단

7-1 • 기업간 거래공정화 ····· 873
7-2 • 주요 원가 확인 등 연동약정 체결지원 사업 ····· 878
7-3 • 성과공유제 ····· 880
7-4 • 상생누리 플랫폼 운영 ····· 882
7-5 • 상생결제제도 ····· 885
7-6 • 대·중소기업 동반진출 지원사업 ····· 888
7-7 • 통합 기술보호지원반 ····· 892
7-8 • 중소기업 기술보호 법무지원단 ····· 895
7-9 • 중소기업 기술침해 손해액 산정 지원사업 ····· 898
7-10 • 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중재 ····· 901
7-11 • 중소기업 기술보호 디지털 포렌식 ····· 903
7-12 • 중소기업 기술보호 바우처 지원사업
(구. 선도기업 육성) ····· 906
7-13 •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험 ····· 908
7-14 • 기술자료 임치제도 ····· 911
7-15 •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 지원사업 ····· 914
7-16 • 민관공동 전략형 상생협력사업(창의트랙) ····· 918
7-17 • 민관공동 전략형 상생협력사업(영세기업) ····· 921
7-18 • 민관 공동 전략형 상생협력사업(공급망 ESG) ··· 923

제8부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8-1 • 수출상담회 ····· 931
8-2 • 해외전시회 단체참가 지원사업 ····· 933
8-3 • 해외전시회 개별참가 지원사업 ····· 935
8-4 • 해외유통망 연계 소비재 B2C 수출 지원사업 ····· 938
8-5 • 한류 활용 해외마케팅 지원 ····· 940
8-6 • 해외 프로젝트 수주 지원 사업 ····· 942
8-7 • 이동 KOTRA ····· 945
8-8 • 무역사절단 ····· 947
8-9 • 해외 공공조달 선도기업 육성사업 ····· 951
8-10 • FTA해외활용지원센터 ····· 954
8-11 •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 956
8-12 • 경제외교 활용포털 ····· 959
8-13 • 해외전문인력 유치 ····· 961
8-13(참고) • K-Tech Pass 발급 ····· 964
8-14 • 고용추천서 발급 서비스 ····· 967
8-15 • KOTRA아카데미 교육·연수 ····· 970
8-16 • 경제외교 활용 사업 ····· 972
8-17 • 해외경제정보드림(해드림) ····· 974
8-18 • 트라이빅(TriBIG) ····· 977
8-19 • 관세대응 지원 사업 ····· 980
8-20 • 해외 진출 및 인증상담 ····· 983
8-21 • 수출24 글로벌 대행(해외시장조사) 서비스 ····· 986
8-22 • 글로벌 역량 진단(GCL Test) ····· 990
8-23 • 열린무역관 ····· 993
8-24 • 해외공동물류센터사업 ····· 995
8-25 •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사업 ····· 999

8-26 • 스타트업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 ····· 1002
8-27 • 글로벌 오픈이노베이션 지원사업 ····· 1004
8-28 • CES 혁신상 수상 지원 ····· 1006
8-29 • 2026년 해외지사화사업 ····· 1009
8-30 • 한국우수상품전 ····· 1013
8-31 • 수출바우처사업
(산업통상부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 1016
8-32 • 바이코리아(buyKOREA) ····· 1020
8-33 • AI 무역지원센터 ····· 1022
8-34 • 글로벌 파트너링(Global Partnering) 사업 ····· 1025
8-35 • 해외 GP센터(Korea GP Center) ····· 1027
8-36 • 소재·부품·장비 선도기업 해외진출지원
(세일즈랩 발굴) ····· 1030
8-37 • 서비스 거점 지원 사업 ····· 1032
8-38 • 해외유통망 연계 소비재 B2B 수출 지원 사업 ·· 1035

제9부 | 한국무역협회

9-1 • 국내외 대·중견기업-스타트업 오픈이노베이션 ···· 1042
9-2 • 기술실증을 위한 국내외 테스트베드 지원사업 ···· 1044
9-3 • 글로벌 오픈이노베이션 플랫폼 운영 ····· 1047
9-4 • NextRise, Seoul 글로벌 스타트업 페어 ····· 1049
9-5 • 스타트업브랜치를 통한 해외진출 지원 ····· 1051
9-6 • tradeKorea(글로벌 B2B 전자상거래 사이트) ···· 1053
9-7 • 무역현장 자문서비스 ····· 1055
9-8 • KITA무역진흥자금 융자 ····· 1057
9-9 • KITA 해외 바이어 초청 국내 수출상담회
(Korea Grand Sourcing Fair 2026) ····· 1059
9-10 • 해외 현지 전시 · 상담회 및 판촉전 ····· 1061

9-11 • 전문무역상사 제조기업 매칭 수출상담회 ····· 1063
9-12 • 전문무역상사 대중소 동반수출 해외 판촉전 ····· 1066
9-13 • 국내 전문 전시회 개최 및 연계 수출 상담회 개최 ····· 1069
9-14 • 해외 전문 전시회 참가 지원 ····· 1072
9-15 • 디지털 무역상담 플랫폼 TradePro ····· 1075
9-16 • APEC 기업인여행카드(ABTC) 발급 ····· 1077
9-17 • 무역분야 외국인 사증(VISA) 발급 추천 ····· 1082
9-18 • 용역 및 전자적 무체물 수출입실적 증명발급 ··· 1084
9-19 • 한·중 FTA, RCEP 현장방문컨설팅 ····· 1086
9-20 • OK FTA 컨설팅 지원사업 ····· 1089
9-21 • 비관세장벽 대응 지원사업 ····· 1092
9-22 • FTA 콜센터 1380 운영 ····· 1094
9-23 • 현지 'K-프리미엄 스토어' 운영 ····· 1097

제10부 | 한국경제인협회 중소기업협력센터

10-1 • 한경협경영자문단 무료 경영자문 ····· 1101
10-2 • 경영닥터제 ····· 1103
10-3 • 중소·(예비)창업기업 대상 맞춤형 교육 ····· 1105
10-4 • 자문 우수기업 시상 및 사례집 제작 ····· 1107
10-5 • 대기업 협력사(중소·중견기업) ESG 지원 ····· 1108

제11부 | 대한상공회의소

11-1 • 공제(보험)사업 중소기업 지원 ····· 1112
11-2 • 중소기업 복지플랫폼 ····· 1114
11-3 • 코참경영상담센터 ····· 1118
11-4 • 계약서 검토 서비스 ····· 1120

2026
중소벤처기업 지원사업

II. 유관기관 편

제 1 편

유관기관 (금융기관)

제1편

유관기관 (금융기관)

제1부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제2부 ▸ 기술보증기금
제3부 ▸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제4부 ▸ 신용보증기금
제5부 ▸ 한국수출입은행
제6부 ▸ 한국무역보험공사
제7부 ▸ 기업은행
제8부 ▸ 한국산업은행

제2편

유관기관 (비금융기관)

제1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제2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제3부 ▸ 창업진흥원
제4부 ▸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제5부 ▸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제6부 ▸ 중소기업중앙회
제7부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제8부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제9부 ▸ 한국무역협회
제10부 ▸ 한국경제인협회 중소기업협력센터
제11부 ▸ 대한상공회의소

제 1 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원사업(전년대비) 달라지는 내용

◉ 기관명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구분	'25년도	'26년도
정책자금 지원규모	ㅇ 융자 : 4조 5,280억 ㅇ 이차보전 : 6,027억원	ㅇ 융자 4조 643억원 ㅇ 이차보전 3,670억원
Ⅲ.유의사항 (융자제한기업) ①항	ㅇ 우량기업 기준 -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 코스닥시장 상장기업, 「자본시장법」에 의한 신용평가 회사의 BB등급 이상 기업 〈 추 가 〉	ㅇ 우량기업 기준 완화 -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 코스닥시장 상장기업, 「자본시장법」에 의한 신용평가 회사의 BBB등급 이상 기업 * 단, 코스닥 기술특례상장기업은 상장 후 3년까지 예외
Ⅲ.유의사항 (융자제한기업) ⑥항	ㅇ ⑥ 아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정책자금 융자신청이 제한된 기업 - 최근 3년 이내 정책자금을 목적·용도 외 사용한 경우 - 대표자 등 기업을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자가 투명경영이행약정을 위반한 경우	ㅇ ⑥ 아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정책자금 융자신청이 제한된 기업 - 최근 3년 이내 정책자금 (운전자금)을 목적·용도 외 사용한 경우 (단, 임대 등 시설자금을 목적외 사용하여 제재조치 중인 경우) - 대표자 등 기업을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자 또는 '법인기업'이 (책임·투명)경영이행약정을 위반한 경우
Ⅲ.유의사항 (융자제한기업) ⑦항	ㅇ ⑦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기업 경영과 관련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ㅇ ⑦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상습체불,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기업 경영과 관련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Ⅲ.유의사항 (융자제한기업) ⑨항	ㅇ ⑨「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소상공인 【 적용 예외 】 - 협동화사업 추진 주체인 협동조합 중 소상공인	ㅇ ⑨「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소상공인 【 적용 예외 】 〈 삭 제 〉
Ⅲ.유의사항 (융자제한기업) ⑫항	ㅇ ⑫기업평가에서 탈락 또는 융자결정 후 전액 지원을 포기한 기업으로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기업 〈 추 가 〉	ㅇ ⑫기업평가에서 탈락 또는 융자결정 후 전액 지원을 포기한 기업으로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기업 - 이차보전 우선 적용 대상 기업 중 이차보전 전환·승인 후 은행에서 대출을 거절하는 경우
Ⅲ.유의사항 (융자제한기업) ⑭항	ㅇ ⑭ 중진공 정책자금 누적 지원금액이 운전자금 기준으로 25억원을 초과하는 기업은	ㅇ ⑭ 중진공 정책자금 누적 지원금액이 운전자금 기준으로 25억원을 초과하는 기업은

구분	'25년도	'26년도
	운전자금 지원 제외 【 적용 예외 】 • (지원 제외 예외기업) 아래의 고용·수출 또는 매출 성과 창출 기업 또는 유망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 선정기업 -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 선정기업	운전자금 지원 제외 【 적용 예외 】 • (지원 제외 예외기업) 아래의 고용·수출 또는 매출 성과 창출 기업 또는 유망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 선정기업 - 초격차 스타트업 프로젝트 선정기업
Ⅲ.유의사항 (융자제한기업) ⑮항	○ ⑮ 최근 5년 이내 정책자금을 3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 ※ 최근 5년 이내 정책자금을 3회 지원받은 기업이라도 ㉮시설자금, ㉯고용·수출 또는 매출 성과 창출 기업 또는 ㉰유망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 선정기업은 1회에 한하여 추가 지원 가능 -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 선정기업	○ ⑮ 최근 5년 이내 정책자금을 3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 【 적용 예외 】 • 1회 추가 지원 가능(최근 5년 이내 4회 지원 가능) ㉮시설자금 ㉯고용·수출 또는 매출 성과 창출 기업 ㉰유망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 선정기업 - 초격차 스타트업 프로젝트 선정기업 ㉱운전자금 누적 소액지원기업(최근 5년 운전자금 합산 누적 5억원 이하) • 2회 추가 지원 가능(최근 5년 이내 5회 지원 가능) ㉮시설자금(중점지원분야 영위기업) ㉯창업기반지원자금(초격차 스타트업 선정기업 限)
창업기반 지원자금	〈 신 설 〉	○ 창업기반지원자금에 AX스프린트 우대트랙 반영 * (대출조건) AX 스프린트 우대트랙 상세 지원대상 및 지원조건은 참고자료 [참고 14] 참조
개발기술 사업화자금	○ 신청 대상 -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OI) 문제해결형(Top-Down) 최종 선정 기술 ○ 중소기업 R&D 이차보전	○ 신청 대상 범위 확대 -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OI) 최종 선정 기술 〈 삭 제 〉
신시장진출 지원자금	〈 신 설 〉 ○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대출한도 - (대출한도) 연간 5억원 이내	○ 해외법인 지원자금 우대사항 - 해외법인지원자금은 융자계획 공고 Ⅲ. 유의사항(융자제한기업) ①항(우량기업) 적용 예외 ○ 내수기업수출기업화 대출한도 확대 - (대출한도) 연간 10억원 이내

구분	'25년도	'26년도
신성장 기반자금	ㅇ '혁신성장지원자금' 지원 시, 아래에 해당하는 업력 7년 이상 기업은 제품생산, 시장개척용도 등의 운전자금 지원 가능 〈 추 가 〉 〈 신 설 〉 〈 신 설 〉	ㅇ '혁신성장지원자금' 지원 시, 아래에 해당하는 업력 7년 이상 기업은 제품생산, 시장개척용도 등의 운전자금 지원 가능 - 사회적경제기업 ㅇ 혁신성장지원자금에 AX스프린트 우대트랙 반영 * (기타) 단, 'AX스프린트 우대트랙'의 경우 시설자금과 별도로 운전자금 지원 가능 * (대출조건) AX 스프린트 우대트랙 상세 지원대상 및 지원조건은 참고자료 [참고 14] 참조
사업전환자금	ㅇ 사업전환 자금 대상 ② 산업경쟁력강화 - 사업전환계획 승인기업 중 한중FTA 지원 업종(참고11) 영위기업	ㅇ 사업전환 자금 대상에서 산업경쟁력 강화 삭제(정부 대책 종료) 〈 삭 제 〉
구조개선 전용자금	ㅇ 회생기업 지원대상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종결 후 5년 이내 기업으로 법원에서 승인한 회생계획을 정상 이행 중인 경우	ㅇ 회생기업 지원대상 추가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 인가 및 회생절차 종결 후 5년 이내 기업으로 법원에서 승인한 회생계획을 정상 이행 중인 경우
재창업자금	ㅇ 대출조건 - (대출한도) 연간 60억원 이내 (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이내) 〈 추 가 〉	ㅇ 대출조건 추가 - (대출한도) 연간 60억원 이내 (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이내) * 단, 재창업자 성실경영 심층평가 통과 기업은 운전자금 연간 10억원 이내
긴급경영 안정자금 (일시적경영 애로)	ㅇ 일시적경영애로 우대 사항 - 정부 산업구조조정 대상 업종(조선, 자동차, 해운, 철강, 석유화학), 원전 협력 중소기업, 대유위니아그룹 계열사 회생신청에 따른 피해 협력기업은 융자계획 공고 Ⅲ. 유의사항(융자제한기업) ①항(우량기업), ③항(세금체납기업), ⑩항(부채비율초과기업) 적용 예외 (단, ③항(세금체납기업) 예외 적용의 경우에도 압류ㅇ매각의	ㅇ 일시적경영애로 우대 사항 - 정부 산업구조조정 대상 업종(조선, 자동차, 해운, 철강, 석유화학), 원전 협력 중소기업, 대유위니아그룹 계열사 회생신청에 따른 피해 협력기업은 융자계획 공고 Ⅲ. 유의사항(융자제한기업) ①항(우량기업), ③항(세금체납기업), ⑩항(부채비율초과기업) 적용 예외 (단, ③항(세금체납기업) 예외 적용의 경우에도 압류ㅇ매각의

구분	'25년도	'26년도
	유예에 한함) 〈 추 가 〉	유예에 한함) - 원자재 가격급등, 보호무역 피해기업은 융자계획 공고 Ⅲ. 유의사항 (융자제한기업) ①항(우량기업) 적용 예외
(별표2) 최대 대출한도 우대기준	ㅇ 정부정책에 따른 우대기업 : 100억원 - 중기부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 선정기업 - 중기부 글로벌 강소기업 1000+ 프로젝트 지정기업(강소 단계 이상) * 기존(~'22년) 글로벌 강소기업 지정기업 중 유효기간 미경과기업은 한도우대 대상에 포함 -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OI) 문제해결형(Top-Down) 최종 선정 기업 〈 추 가 〉 〈 추 가 〉	ㅇ 정부정책에 따른 우대기업 : 100억원 - 중기부 초격차 스타트업 프로젝트 선정기업 - 중기부 글로벌 강소기업 1000+ 프로젝트 지정기업(강소 단계 이상) 〈 삭 제 〉 -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OI) 최종 선정 기업 (우대 범위 확대) - 산재예방 우수 사업장(위험성 평가 인증 등) - 농어촌ESG실천제도 인증기업
(별표3) 용도별 대출한도 우대기준	ㅇ 운전자금 -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 선정기업 〈 추 가 〉	ㅇ 운전자금 - 초격차 스타트업 프로젝트 선정기업 - 농어촌ESG실천제도 인증기업
(별표4) 정책자금 융자금리	ㅇ 정책자금 우대금리 -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 선정기업 〈 추 가 〉	ㅇ 정책자금 우대금리 - 초격차 스타트업 프로젝트 선정기업 - AX 스프린트 우대트랙
수출바우처	ㅇ (예산) 1,276억원	ㅇ (예산) 1,502억원
수출바우처	ㅇ (공고시기)'24.12.30	ㅇ (공고시기)'25.12.15(15일 단축)
수출바우처	ㅇ 한도확대(3종) 운영 - 튼튼내수 - 수출국다변화 - 수출고성장	ㅇ 한도확대(3종→5종) - 관세대응 패키지 50% - 물류 1,050만원
수출바우처	ㅇ (물류지원) 국제운송 지원한도 '25년 한시 상향(3→6천만원)	ㅇ (물류지원) 한도상향 유지 및 범위확대* * 풀필먼트, 무상샘플 운송료 등
글로벌비즈니스 센터(GBC)	운영현황 : 14개국 21개소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확인서, 입주기업활동계획서 등 22종	운영현황 : 14개국 22개소(칭다오 개소) 제출서류 : , 입주기업활동계획서 등 14종 *행정정보공동이용망 이용가능 서류 활용하여 제출서류 간소화

구분	'25년도	'26년도
코리아스타트업 센터(KSC)	ㅇ 프로그램형 수행기관 : 중진공, 창진원 * 중진공(3) : 싱가포르, 베트남, 프랑스 창진원(3) : 미국, 인도 등 3개국 ㅇ KSC 설치 도시 : 5개 * 시애틀, 싱가포르, 파리, 하노이, 도쿄 ㅇ 공유오피스 사용가능 거점 : 4개 * 싱가포르, 시애틀, 도쿄, 파리	ㅇ 프로그램형 수행기관 : 창진원 * 창진원(2) : 미국, 중동 2개국 ㅇ KSC 설치 도시 : 6개 * 기존 5개 + 미국 실리콘밸리 개소('26.1) ㅇ 공유오피스 사용가능 거점 : 5개 * 실리콘밸리 신규거점
온라인수출 플랫폼	(지원대상) 온라인수출플랫폼 입점(예정) 기업	(지원대상) 온라인수출플랫폼 입점(예정) 기업과 온라인수출 확대 희망 기업
기업인력애로 센터 활용 취업 지원	ㅇ 플랫폼 주요 서비스 - AI 역량평가	ㅇ 플랫폼 주요 서비스 - 자기소개서 AI 작성지원, 소재지 인근 기업·구직자 매칭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ㅇ 지원규모: 특성화고 158개교	ㅇ 지원규모: 특성화고 150개교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ㅇ 지원예산: 27,675백만원	ㅇ 지원예산: 27,637백만원
중소기업 인력양성대학 (기술사관 육성사업)	ㅇ 지원규모: 19개 사업단	ㅇ 지원규모: 20개 사업단
중소기업 인력양성대학 (중소기업 계약학과)	ㅇ 지원규모: 92개 학과	ㅇ 지원규모: 90개 학과
중소기업-근로자간 성과공유 확산 사업	ㅇ (지원내용) - 병역지정업체 선정평가 시 가점 - 중진공 정책자금 한도 우대 - 세제 혜택	ㅇ (지원내용) - 병역지정업체 선정평가 시 가점 - 중진공 정책자금 한도 우대 - 세제 혜택 - (추가)중소기업 지원사업 평가 시 '일자리 평가' 가점
중소기업 외국전문인력 활용 지원사업(글로벌 인재 취업 선도대학)	ㅇ 지원내용: 취업역량 강화 프로그램과 취업실전 대비 프로그램 총 400시간 이상 운영	ㅇ 지원내용: 취업역량 강화 프로그램과 취업실전 대비 프로그램 총 200시간 이상 운영

구분	'25년도	'26년도
중소기업 외국전문인력 활용 지원사업 (비자추천)	ㅇ 지원내용: 전문직종 범위 24개	ㅇ 지원내용: 전문직종 범위 27개
청년창업사관학교	ㅇ (모집분야) 글로벌형, 투자형, 지역특화형 ㅇ (지원대상) 39세 이하, 창업 후 3년 이내 기업 대표 ㅇ (사업비) 총 사업비의 70%, 연간 1억원 이내	ㅇ (모집분야) 기본과정, 딥테크 심화과정, 글로벌 심 화과정 ㅇ (지원대상) 기본과정39세 이하, 창업 후 3년 이내 기업 대표 심화과정39세 이하, 창업 후 7년 이내 기업 대표 ㅇ (사업비) 기본과정총 사업비의 70%, 최대 1억원 이내 심화과정총 사업비의 70%, 최대 2억원 이내
스타트업 AI 기술인력 양성 (이어드림 스쿨)	ㅇ (교육인원) 200명(대면 100명, 비대면 100명) ㅇ (교육장소) 서울 및 온라인 ㅇ (교육내용) - 기초교육 전공생ㅇ비전공생 동시 진행 - 취업교육 중심	ㅇ (교육인원) 200명 내외(전국 청년 온·오프라인 블렌디드 방식) ㅇ (교육장소) 서울 및 서울 거점 지역으로 확대 ㅇ (교육내용) - 기초 역량 평가 후 수준별 맞춤형 분반 운영 - 취업+창업 맞춤형 교육 강화
해외인력 취업매칭 지원사업	ㅇ (지원대상) 베트남 현지 대학 졸업(예정)자 및 현지 구직자 200명 ㅇ (지원내용) 교육반/취업반 2-track 프로그램	ㅇ (지원대상) AI・SW분야 해외 인재 채용을 희망하는 중소벤처기업 ㅇ (지원내용) 베트남 SW 전문인력 취업연계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ㅇ 매출액 120억원 이하 제조 소기업 (단, 중대재해, 탄소바우처는 매출액 1,500억원 이하 제조 중소기업)	ㅇ 최근 3개년 매출 평균액 140억 원 이하의 제조 소기업(중대재해, 탄소바우처는 매출액 1,800억원 이하 제조 중소기업)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	비수도권, 인구감소 지역은 기업 매출액 구간별 5~15%정부지원금 비율 추가 적용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	분야별 세부 프로그램 변동(표로 작성)
중소기업 탄소중립 설비투자 지원	ㅇ 보조율 50% ㅇ 탄소多배출 업종 ㅇ 에너지 고효율 설비, 탄소배출 모니터링 설비 등	ㅇ (상향) 보조율 70% ㅇ (추가) 산업단지 비입주 기업 ㅇ (추가) AI 기반 공정 최적화 설비, 신재생에너지 설비 등

구분	'25년도	'26년도
중소기업 탄소중립 사업화 지원	ㅇ (지원규모) 10개사 ㅇ (지원유형) 사업화(6개사), 실증(4개사) ㅇ (제출서류) 사업 신청서 등 총 14종	ㅇ (상향) 17개사 ㅇ 사업화(10개사), 실증(4개사) (추가) 투자 연계형(3개사) ㅇ (간소화) 신청서 통합 등 총 7종
중소기업 기후공시 · 공급망 실사대응 기반구축	ㅇ (지원규모) 인증 획득 및 ESG 경영보고서 작성 등 3단계 지원 비율 5%	ㅇ (확대) 3단계 지원 비율 20%
디지털 기반 자동화 MRV 보급 사업	ㅇ (지원대상) CBAM 대상 품목(6개) 수출 중소기업	ㅇ (품목 확대) 6개 → 8개 품목
성실경영평가 제도	재창업자금 특별만기연장 (~25.12.31)	재창업자금 한도우대(10억) ('26 신설)

정책자금 지원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

사업개요

혁신창업사업화자금 등 6개 자금 및 이차보전 지원 시 융자대상 및 절차, 융자제한기업, 융자시기 등 공통적으로 적용

지원대상

성장 잠재력은 높지만 정보 비대칭 및 담보 위주 관행으로 민간 금융기관에서 자금 조달이 어려운 우수 중소벤처기업

- 고용창출, 수출 · 매출 증대 등 성과창출 기업, 시설투자 기업, 혁신성장분야 등 중점지원분야 영위기업에 정책자금 우선 지원
  - * 중점지원분야 : 혁신성장분야, 초격차·신산업 분야, 지역주력산업, 뿌리산업, 소재·부품·장비 산업
  - * 중점지원분야 참고자료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누리집(www.kosmes.or.kr) 공지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 ▸ 기타 정책자금 융자공고 내 융자제한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융자범위

- 시설자금과 운전자금으로 구분하여 지원하며, 각 사업의 목적에 따라 자금용도 및 융자범위를 구분하여 지원

융자한도

- 정책자금 대출 잔액과 신규 대출예정액을 합산하여 기업당 60억원 이내에서 운용(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소재기업은 70억원)

  * 잔액기준 한도 예외 적용의 경우, 최대 100억원 이내에서 지원

대출금리

- 대출금리는 정책자금 기준금리(분기별 변동금리)에서 자금종류, 기업별 신용등급, 담보종류 등에 따라 차등 적용
  - 분기별 대출금리(기준금리)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 누리집(www.kosmes.or.kr)에 공지
- 금리 인하는 개별 대출별 최대 0.4%p까지 허용
- 아래의 유망기업 등에 금리우대를 통해 정책지원 목적성 제고
  - (유망기업)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스타트업 100·경쟁력 강화위원회 추천기업, 초격차 스타트업 프로젝트 선정기업, 도약(Jump-up) 프로그램 선정기업, 아기유니콘 및 예비유니콘, AX스프린트 우대트랙 등 0.1%p
  - (정책연계) 신보 매출채권보험(다사랑보험) 가입기업(창업기반 지원자금 중 운전자금에 한함) 0.1%p
  - (포용금융) 사회적경제기업, 여성기업 및 장애인기업 0.1%p
  - (시설자금) 시설자금 대출기업 0.3%p
  - (성실경영) 성실경영 심층평가를 통과한 우수 성실경영자(재창업 자금에 한함) 0.3%p
  - (성과창출) 다음 유형에 해당하는 성과창출 실적 보유 기업에 대출시 각 성과별 0.1%p, 최대 0.3%p까지 대출금리 인하

- (고용증가) 최근 1년간 10인 이상 고용 창출 기업
- (수출증가) 정책자금 신청 직전월부터 12개월간 직간접 수출실적 합계가 50만불 이상이고 이전 12개월간 합계 대비 20% 이상 증가한 기업
- (매출증가) 자금 신청 직전연도를 포함한 4개년의 결산 재무제표 확인, 직전연도 결산 기준 매출액 30억원 이상이며, 최근 3년간 연평균 매출액 20% 증가한 기업

* (적용제외) 고정금리 적용 자금(청년전용창업, 통상변화대응, 긴급경영(재해) 등)

융자방식

- (직접대출) 중진공에서 융자신청·접수하여 융자대상 결정 후, 중진공이 직접 기업에 정책자금 대출
- (대리대출) 중진공에서 융자신청·접수하여 융자대상 결정 후, 은행을 통해 기업에 정책자금 대출

  * 대리대출 취급은행(14개사) : 경남, 광주, 국민, iM뱅크, 부산, 신한, 우리, 전북, 제주, 하나, 기업, 산업, 농협, 수협
- (이차보전) ①기업이 은행과 대출 상담 후 중진공에 이차보전 신청, ②중진공이 기업평가를 통해 이차보전 대상 기업을 결정, ③은행에서 대출 후, 중진공이 은행에 이차보전금 정산

  * 이차보전 취급 은행(13개사) : 경남, 광주, 국민, iM뱅크, 부산, 신한, 우리, 전북, 제주, 하나, 기업, 농협, 수협
- (성장공유형 대출) 융자에 투자요소를 복합한 방식으로 성장가치가 큰 중소 · 벤처기업이 발행한 전환사채 등을 중진공이 인수
- (투자조건부 융자) 투자기관으로부터 선투자(예정)를 받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중진공이 신주인수권부 융자 방식으로 지원

  - 중소기업이 후속투자를 유치할 경우, 투자금으로 대출금 조기 상환

융자절차

* 구조개선전용자금 등 일부 자금은 별도 융자 절차 운영

① 정책자금 공지 : 지역본·지부별 신청가능 자금, 신청일정 등 정책자금 공지사항을 중진공 누리집(www.kosmes.or.kr)에서 확인

* 정책자금 온라인 신청시스템에서 중진공 관할 지역본·지부 선택 후 월별·지역별 사전 공지사항에서 신청일정, 신청가능자금 등 확인 가능

* 사업전환자금, 구조개선전용자금, 긴급경영(재해중소기업지원자금), 화재 등 대형사고 피해기업, 레전드 50+ 선정기업(유효기간 내), 지역별 정책금융기관 협의회 추천기업(보호 무역 피해 및 수출다변화), K-뷰티론, AX 스프린트 우대트랙(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사업 선정기업), 마일스톤자금, 융자 신청 후 이차보전 우선 적용 대상 기업(업력 15년 초과 및 상대적으로 신용양호 기업)으로 분류되어 이차보전을 신청하는 경우(이차보전 전환·승인 후 은행의 대출거절로 융자를 신청하는 경우 포함)의 경우 수시 접수 가능

② 융자신청 : 정책자금 희망기업은 신청기간 내 신용정보동의 및 사전 기업진단, 기업정보 제출

* 신청내용을 허위로 작성한 기업은 확인한 날로부터 1년간 정책자금 신청 제한

※ (정책자금 내비게이션) 업력, 수출실적 및 자금용도 등 기업 기초정보를 입력 시 해당 데이터를 기반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적합자금을 추천·안내

* 중진공 누리집(www.kosmes.or.kr) – 디지털지점 – 정책자금 온라인신청(로그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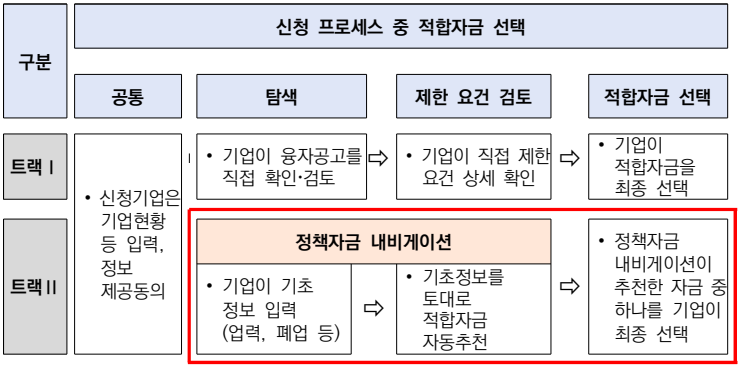

③ 정책우선도 평가 : 지역본·지부별 예산 및 신청 물량을 고려하여 정책우선도 평가를 통해 정책자금 심사기회 부여 여부 결정

* 정책우선도 평가는 중점지원분야, 고용창출, 기술·경영혁신, 글로벌화, 정책우대, 성장잠재력 등을 고려하여 평가(자금종류에 따라 필요시 생략 가능하며, 레전드 50+ 선정기업(유효기간 내), 지역별 정책금융기관 협의회 추천기업(보호무역 피해 및 수출다변화), K-뷰티론, 마일스톤자금, 창진원 추천 기후테크 우수 스타트업, AX 스프린트 우대트랙(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사업 선정기업)은 정책우선도평가 생략)

④ 서류작성 : 정책자금 심사 기회가 부여된 기업은 정해진 기한까지 중진공 누리집을 통해 정책자금 융자 서류 제출

* 신용대출 또는 담보대출 조건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보증서는 취급 불가 (단, '신용회복위원회 재창업지원' 자금 및 금융기관을 통해 융자하는 대리대출은 보증서 취급 가능)

⑤ 기업평가 : 중진공은 현장방문 또는 비대면 방식으로 정책자금 융자 서류 제출 기업에 대해 기업평가(기업진단 포함)수행

심사·평가 주요내용

* (기업평가) 기술성, 사업성, 미래성장성, 경영능력,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종합 평가하여 기업평가등급(rating)을 산정

⑥ 융자결정 : 기업평가 결과 이후 일정 평가등급 또는 일정 기준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융자 여부를 결정

- 고용창출 및 수출실적 등을 기업평가 지표에 반영하여 우대

⑦ 대출 : 중진공이 직접 대출하거나 기업이 지정한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

⑧ 사후관리 : 부당한 사용여부 점검 또는 정책자금 부실예방을 위해 대출기업에 관련 자료를 요청하거나 현장방문 조사를 실시

* 대출자금의 용도 외 사용 시 자금 조기회수, 융자대상 제외 등 제재조치

* 재창업자금 등 일부자금 대출기업에 대해서는 대출 후 1년간 사업계획 진행상황 등 점검

* 운전자금3억원 초과, 청년전용창업자금, 재창업자금, 선제적자율구조개선 프로그램 대출기업은 대출금 사전검증시스템을 활용하여 자금 사용(시스템 수수료(대출금액의 0.06% 수준, 부가가치세 별도)는 기업이 우선 부담한 이후, 해당 금액만큼 정책자금 이자 감면)

융자제한기업

① 민간 금융기관 이용이 가능한 우량기업

-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 코스닥시장 상장기업, 「자본시장법」에 의한 신용평가 회사의 BBB등급 이상 기업

  * 단, 코스닥 기술특례상장기업은 상장 후 3년까지 예외

- 최근 재무제표 기준 자본총계 200억원 또는 자산총계 700억원 초과 기업
- 중진공 신용위험등급 최상위 등급(CR1)

  * 단, 업력 3년 미만 기업,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의 협동조합, 이차보전 신청 기업은 예외

* 단,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스타트업 100·경쟁력위원회 추천 기업은 적용 예외

** 지역별 정책금융기관 협의회에서 우량기업 요건 적용 제외로 추천한 기업

② 휴·폐업중인 기업

③ 세금을 체납중인 기업

④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회생·파산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기업

⑤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 사행산업 등 국민 정서상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
  (도박·사치·향락, 건강유해, 부동산 투기 등)
- 정부 등 공공부문에서 직·간접적으로 운영하는 업종
  (철도, 항구, 공항 관련 운영업 등)
- 고소득 및 자금조달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업종
  (법무·세무·보건 등 전문서비스, 금융 및 보험업 등)

⑥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로 정책자금 융자신청이 제한된 기업

- 최근 3년 이내 정책자금 제3자 부당 개입 등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융자 신청
- 최근 3년 이내 정책자금(운전자금)을 목적·용도 외 사용한 경우
- 임대 등 시설자금을 목적외 사용하여 제재조치 중인 경우
- 대표자 등 기업을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자 또는 법인기업이 (책임·투명)경영이행 약정을 위반한 경우
- 최근 2년 이내 선제적 자율구조개선 프로그램 지원기업 중 이행점검 결과 2회 연속 이행 불성실 기업으로 판정받은 경우

⑦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상습체불,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기업 경영과 관련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⑧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정부 기술개발지원사업에 참여한 기업 중 최근 3년 이내 제재처분을 받은 기업

⑨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소상공인

* 소상공인 기준 :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상시근로자수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은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

〈 **적용 예외** 〉

- 제조업, 혁신성장·초격차·신산업 분야을 영위하는 소상공인
  * 단, 중점지원분야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은 청년전용창업자금 신청이 가능하고, 신시장진출지원자금은 전체 소상공인이 신청 가능
-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소셜벤처 중 소상공인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상공인 유예기업
- 마일스톤자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소상공인

⑩ 업종별 융자제한 부채비율을 초과하는 기업

〈 **적용 예외** 〉

- 업력 7년 미만 기업
- 「소득세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한 일정규모 미만의 간편장부대상 사업자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의 협동조합
- 최근 결산연도 유형자산 증가율이 동업종 평균의 2배를 초과하는 중소기업의 시설투자금액, 매출액 대비 R&D투자비율이 1.5% 이상인 기업의 R&D금액 등은 융자제한 부채비율 산정 시 제외
- 지역별 정책금융기관 협의회에서 부채비율 요건 적용 제외로 추천한 기업

⑪ 중진공 지정 부실징후기업 또는 업력 5년 초과 기업 중 다음에 해당하는 한계기업

- 2년 연속 적자기업 중 자기자본 전액 잠식 기업
- 3년 연속 '이자보상배(비)율 1.0 미만인 기업 (금융비용이 없더라도 영업손실이 발생한 경우 이자보상배(비)율 1.0미만으로 간주)
- 중진공 신용위험등급 최하위 등급 (재창업자금은 신청 가능)

* 다만, 한계기업 중 성과창출기업은 별도 평가를 통해 지원 가능

⑫ 기업평가에서 탈락 또는 융자결정 후 전액 지원을 포기한 기업으로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기업

〈 적용 예외 〉

- 신청연도가 다른 경우
- 실질기업주 변경 등 기업경영상 중대한 변동이 있는 경우(추가 1회에 한함)
- 다른 자금에서 탈락 후 재도약지원자금(사업전환, 통상변화대응지원, 구조개선전용) 또는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신청하는 경우
- 스케일업금융 선정심사에서 탈락 후, 타 자금을 신청하는 경우
- 이차보전 우선 적용 대상 기업 중 이차보전 전환·승인 후 은행에서 대출을 거절하는 경우

⑬ 정부, 지자체 등의 정책자금 융자, 보증, 지원 실적이 최근 5년간 합계 2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
(지원실적 확인) :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http://sims.go.kr)

〈 적용 예외 〉

- (신규지원 예외자금, 방식) 재도약지원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매출채권팩토링, 동반성장네트워크론, (정부,지자체)이차보전
- (과거 실적산정 예외) 보증서부 정책자금 융자지원의 보증실적
- (신규지원 시 예외 대상)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스타트업100·경쟁력강화위원회 추천기업, 지역별 정책금융기관 협의회에서 해당 요건 적용 예외로 추천한 기업

⑭ 중진공 정책자금 누적지원 금액이 운전자금 기준으로 25억원을 초과하는 기업은 운전자금 지원 제외

* '18년 1월 2일 이후 신청 · 접수한 자금에 한하여 적용

〈 적용 예외 〉

- (누적지원 금액 미포함 자금) 재도약지원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스케일업금융('22년까지 투융자복합금융으로 지원된 실적 포함), 매출채권팩토링, 동반성장네트워크론, 이차보전, 통상리스크대응긴급자금, 마일스톤자금은 운전자금 지원 실적에 미포함
- (지원 제외 예외기업) 아래의 고용·수출 또는 매출 성과 창출 기업 또는 유망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 선정기업, 지역별 정책금융기관 협의회에서 해당 요건 적용 예외로 추천한 기업

〈 고용·수출 또는 매출 성과 창출 기업 〉

- (고용증가) 최근 1년간 10인 이상 고용 창출(월말 인원 기준, 특수고용직 제외)
- (수출증가) 자금 신청 직전월부터 12개월간 직간접 수출실적 합계가 50만불 이상이며, 이전 12개월간 합계 대비 20% 이상 증가
- (매출증가) 자금 신청 직전연도를 포함한 4개년의 결산 재무제표 확인, 직전연도 결산 기준 매출액 30억원 이상이며, 최근 3년간 연평균 매출액 20% 이상 증가

〈 유망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 선정기업 〉

-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스타트업 100·경쟁력 강화위원회 추천기업, 도약(Jump-up) 프로그램 선정기업, 아기유니콘 및 예비유니콘, 초격차 스타트업 프로젝트 선정기업

⑮ 최근 5년 이내 정책자금을 3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

〈 적용 예외 〉

- 재도약지원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차환 발행 스케일업금융, 대환대출(창업기반지원자금), 매출채권팩토링, 동반성장네트워크론, 이차보전, K-뷰티론, 통상리스크대응긴급자금, 신시장진출지원자금(수출국 다변화 기업에 한정), 마일스톤자금은 지원 횟수 산정 시 미포함
- 지역별 정책금융기관 협의회에서 해당 요건 적용 예외로 추천한 기업
- 1회 추가 지원 가능(최근 5년 이내 4회 지원 가능)

㉮ 시설자금

㉯ 고용·수출 또는 매출 성과 창출 기업

- (고용증가) 최근 1년간 10인 이상 고용 창출(월말 인원 기준, 특수고용직 제외)
- (수출증가) 자금 신청 직전월부터 12개월간 직간접 수출실적 합계가 50만불 이상이며, 이전 12개월간 합계 대비 20% 이상 증가
- (매출증가) 자금 신청 직전연도를 포함한 4개년의 결산 재무제표 확인, 직전연도 결산 기준 매출액 30억원 이상이며, 최근 3년간 연평균 매출액 20% 이상 증가

㉰ 유망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 선정기업

-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스타트업 100·경쟁력 강화위원회 추천기업, 도약(Jump-up) 프로그램 선정기업, 아기유니콘 및 예비유니콘, 초격차 스타트업 프로젝트 선정기업

㉱ 운전자금 누적 소액지원기업(최근 5년 운전자금 합산 누적 5억원 이하)

- 2회 추가 지원 가능(최근 5년 이내 5회 지원 가능)

㉮ 시설자금(중점지원분야 영위기업)

㉯ 창업기반지원자금(초격차 스타트업 프로젝트 선정기업 限

※ 다년에 걸친 연속성 있는 시설투자(토지 매입 후 건축 등)에 대한 시설자금 지원 실적은 1회 실적으로 인정. 또한, 시설자금과 그에 부가된 초기가동비(시운전자금) 지원 실적은 합산하여 1회 실적으로 인정

지원규모

- 중소기업 정책자금 : 융자 4조 643억원, 이차보전 3,670억원

  * 혁신창업사업화자금(1조 6,058억원), 신시장진출지원자금(4,794억원), 신성장기반자금(1조 2,851억원), 재도약지원자금(6,125억원), 긴급경영안정자금(2,500억원), 밸류체인안정화자금(1,985억원)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www.mss.go.kr)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누리집(www.kosmes.or.kr)
- 정책자금 전담콜센터 1811-3655,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참고사항

-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문
  - (경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누리집(www.kosmes.or.kr) 〉 알림광장 〉 공지사항
  - (홈페이지)

혁신창업사업화자금(융자)

사업개요

기술력과 사업성은 우수하나 민간 금융기관에서 자금 조달이 어려운 벤처·스타트업을 집중 육성하고 중소벤처기업이 보유한 우수 기술의 사업화를 지원

〈 전년대비 달라지는 내용 〉

구분	'25년	'26년
지원 규모	혁신창업사업화자금 : 융자 1조 6,358억원 이차보전 1,526억원 - (창업기반지원) 융자 1조 3,358억원 - (개발기술사업화) 융자 3000억원 이차보전 1,526억원	혁신창업사업화자금 : 융자 1조 6,058억원 - (창업기반지원) 융자 1조 3,058억원 - (개발기술사업화) 융자 3000억원
지원 방식	〈창업기반지원자금〉 ▪ (추가)	〈창업기반지원자금〉 ▪ AX스프린트 우대트랙 추가

지원대상

◉ 창업기반지원자금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에 따른 창업자(업력 7년 미만, 예비창업자 포함) 혹은 동법 제25조에 따른 신산업 창업 분야 업력 10년 이내 중소기업

* 업력은 사업개시일로부터 정책자금 융자신청서 제출일까지의 기간으로 산정

- 창업기반지원자금 중 다음 지원대상을 위한 자금 별도 운용

〈 청년전용창업자금 〉

■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로서, 업력 3년 미만인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

* 단, 창업성공패키지(청년창업사관학교, 글로벌창업사관학교) 참여 기업, 청년창업기업 보증지원 기업(기보) 및 민간VC 투자 유치 기업 중 해당 기관의 추천을 받은 우수 기업은 업력 7년 미만까지 가능)

* 청년전용창업자금 대상 중 중점지원분야를 영위하는 소상공인은 청년전용창업자금 신청 가능

● 개발기술사업화자금

- 다음에 해당하는 기술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 단, 제품양산 후 3년이 경과한 기술은 제외(초격차분야 기술은 5년)

①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 또는 지자체 출연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여 기술개발에 성공(완료)한 기술

② 특허, 실용신안 또는 저작권 등록 기술

③ 정부 및 정부 공인기관이 인증한 기술

* 신기술(NET), 전력신기술, 건설신기술, 녹색기술인증, 공공기관 통합기술마켓 인증 등

④ 공인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 보유 기업이 개발한 기술

⑤ 특허청의 IP-R&D 전략지원 사업에 참여하여 개발을 완료한 기술

⑥ 국내외의 대학, 연구기관, 기업, 기술거래기관 등으로부터 이전 받은 기술

⑦ 중소벤처기업부가 인가한 기관과 기술자료 임치계약을 체결한 기술

⑧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벤처기업의 자체 기술

⑨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OI) 최종 선정 기술

융자방식

● 창업기반지원자금 : 직접대출, 대리대출, 투자조건부 융자

* 청년전용창업자금은 중진공이 자금 신청·접수 후 사업계획서 등 심의위원회 평가를 통해 지원 여부 결정 후 직접대출로 지원

● 개발기술사업화자금 : 직접대출, 투자조건부 융자

융자범위

- 시설자금
  - 생산, 정보화 촉진, 유통·물류, 생산환경 개선 등에 필요한 기계 장비의 구입에 필요한 자금
  - 자가 사업장 확보를 위한 토지 구입비·건축 자금
    * 건축법 시행령 상 일반기숙사 및 사업장 내의 복리후생 관련 복지시설 포함
    * 토지구입비는 건축허가가 확정된 사업용 부지 및 산업단지 등 계획 입지의 입주 계약자 중 6개월 이내 건축착공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 자가 사업장 매입을 위한 자금(경·공매 포함)
    * 자가 사업장 매입자금은 기업당 3년 이내 1회로 지원 한정
    * 건축법 시행령 상 일반기숙사 및 사업장 내의 복리후생 관련 복지시설 포함
- 운전자금
  - 원부자재 구입, 제품의 생산, 시장 개척, 기술 개발, 인건비, 임차 보증금, 임차료, 영업용 동산(기계, 장비) 등 기업 경영 활동에 소요되는 자금

대출금리

- (직접·대리대출)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에서 0.3%p 차감
  * 청년전용창업자금은 연 2.5% 고정금리 적용
  * 개발기술사업화자금은 정책자금 기준금리 적용
- (투자조건부)자금별 대출금리에서 0.3%p 차감

대출기간

- (직접·대리 대출) 시설자금, 운전자금 각각 구분
  - 시설자금 : 10년 이내(거치기간 4년 이내 포함)
  - 운전자금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청년전용창업자금 운전자금 : 6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대출한도

- (직접·대리 대출) 연간 60억원(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이내
  - * 개발기술사업화자금 : 연간 30억원 이내(혁신성장분야 영위기업 중 지원대상 ①, ②, ③, ④, ⑤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연간 60억원 이내, 운전자금은 연간 10억원 이내)
  - * 청년전용창업자금 : 기업당 최대 1억원 이내(제조업 및 중점지원분야는 2억원 이내)

신청·접수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온라인 누리집(kosmes.or.kr)를 통해 신청·접수
- 제출서류 : 각 융자사업별 신청서 및 증빙서류
  - * 제출서류는 상담 이후 별도 안내를 통해 제출

처리절차

1 정책자금 공지	2 융자 신청 (온라인)	3 정책우선도평가 (사전평가)	4 서류작성 (온라인)
신청 일정 및 신청 가능 자금 공지	정보제공동의 및 기업정보 제출	정책자금 심사기회 부여 결정	융자 필요서류 제출

5 기업평가	6 융자결정	7 대 출	8 사후관리
현장방문 방식 또는 비대면 방식	지원가능여부 및 지원금액 결정	직접대출, 대리 대출 등	자금사용 용도 점검, 사업계획 멘토링 등

지원규모

- 혁신창업사업화자금 : 16,058억원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www.mss.go.kr)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누리집(www.kosmes.or.kr)
- 정책자금 전담콜센터 1811-3655,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신성장기반자금(융자)

사업개요

민간 금융기관에서 자금 조달이 어려운 성장유망 중소벤처기업의 생산성 향상, 스마트화, 탄소중립, 스케일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여 미래 성장 동력 창출

〈 전년대비 달라지는 내용 〉

구분	'25년	'26년
지원 규모	신성장기반자금 : 융자 1조 3,111억원 이차보전 2,501억원 - (혁신성장지원) 융자 6,908억원 이차보전 1,400억원 - (제조현장스마트화) 융자 4,666억원 이차보전 900억원 - (Net-Zero 유망기업) 융자 937억원 이차보전 201억원 - (스케일업) 융자 600억원	신성장기반자금 : 융자 1조 811억원 이차보전 2,040억원 - (혁신성장지원) 융자 5,108억원 이차보전 1,160억원 - (제조현장스마트화) 융자 4,166억원 이차보전 720억원 - (Net-Zero 유망기업) 융자 937억원 이차보전 160억원 - (스케일업) 융자 600억원
지원 방식	〈혁신성장지원자금〉 ▪ (추가) ▪ (추가)	〈혁신성장지원자금〉 ▪ '혁신성장지원자금' 지원 시, 아래에 해당하는 업력 7년 이상 기업은 제품생산, 시장개척용도 등의 운전자금 지원 가능 - 사회적경제기업 ▪ AX스프린트 우대트랙 추가 * 'AX스프린트 우대트랙'의 경우 시설자금과 별도로 운전자금 지원가능

지원대상

- 혁신성장지원, Net-Zero 유망기업 지원, 제조현장스마트화, 스케일업금융으로 구분 지원
  - (혁신성장지원) 업력 7년 이상 중소기업,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제2조에 따른 창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업력 7년 미만 중소기업

    * (이차보전) 최근 3년 이내 시설을 도입한 업력 7년 이상 중소기업
    * 업력은 사업개시일로부터 정책자금 융자신청서 제출일까지의 기간으로 산정
    * 혁신성장지원자금 內 '협동화' 자금 별도 운용

〈협동화〉 3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규합하여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 또는 2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규합하여 협업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업력제한 없음)

* '융자제외 대상업종' 中 산업단체(KSIC 94110)는 지원대상에 포함
* '융자제한기업' ⑨항(소상공인), ⑩항(부채비율 초과기업) 적용 제외

  - (Net-Zero 유망기업 지원)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그린기술 사업화, 저탄소·친환경 제조로 전환을 추진 중인 중소기업

- 신재생에너지, 탄소저감 등 그린분야 영위기업 또는 기술 사업화 기업
- 원부자재 등을 친환경 소재로 전환하는 기업
- 오염물질 저감 설비, 저탄소·에너지 효율화 · 환경오염방지 설비 등 도입 기업
-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의 탄소중립 경영혁신 컨설팅 선정기업
- 탄소중립형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협약기업
- 탄소중립 전환지원사업 선정기업

  - (제조현장스마트화)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 정부 등의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참여기업
- 스마트공장 등 ICT기반 생산 효율화를 위한 자동화 시설 도입기업

※ 제조현장스마트화자금 우대 사항(직접대출, 대리대출)

* 국내 복귀기업은 '융자제한기업' ⑩항(부채비율 초과기업) 적용 제외

- (스케일업금융) 민간으로부터 대규모 자금조달이 어렵지만, 스케일업 투자수요가 크고 중견기업으로 도약 가능한 중기업

융자방식

- 혁신성장지원자금, Net-Zero 유망기업 지원자금, 제조현장스마트화 자금 - 직접대출, 대리대출, 이차보전
- 스케일업금융의 세부지원대상, 지원조건, 지원절차 등은 추후 공고

융자범위

- 시설자금
  - 생산, 정보화 촉진, 유통·물류, 생산환경 개선 등에 필요한 기계장비의 구입에 필요한 자금
  - 자가 사업장 확보를 위한 토지 구입비·건축 자금
    * 건축법 시행령 상 일반기숙사 및 사업장 내의 복리후생 관련 복지시설 포함
    * 토지구입비는 건축허가가 확정된 사업용 부지 및 산업단지 등 계획 입지의 입주계약자 중 6개월 이내 건축착공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 자가 사업장 매입을 위한 자금(경·공매 포함)
    * 자가 사업장 매입자금은 기업당 3년 이내 1회로 지원 한정
    * 건축법 시행령 상 일반기숙사 및 사업장 내의 복리후생 관련 복지시설 포함
- 운전자금
  - 시설자금을 대출받은 기업 중 시설 도입 후 소요되는 초기 가동비만 지원(시설자금의 50%이내)
    * 단, ‘AX 스프린트 우대트랙‘의 경우 시설자금과 별도로 운전자금 지원 가능
  - ‘혁신성장지원자금’ 지원 시 아래에 해당하는 업력 7년 이상 기업은 시설자금과 별도로 제품생산, 시장개척용도 등의 운전자금 지원 가능

- 지식서비스산업
- 사회적경제기업
-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스타트업 100·경쟁력위원회 추천기업
- 원전 협력 중소기업(단, 사업계획 및 자금 사용 목적이 원전 사업 추진을 위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

대출금리

◉ (직접·대리대출)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에서 0.5%p 가산

* 협동화, 제조현장스마트화, 국가핵심기술 보유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지원자금 지원은 정책자금 기준금리 적용

대출기간

◉ (직접·대리대출) 시설자금, 운전자금 각각 구분

- 시설자금 : 10년 이내(거치기간 4년 이내 포함)

* 협동화자금 : 10년 이내(거치기간 5년 이내 포함)

- 운전자금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대출한도

◉ (직접·대리대출) 연간 60억원(지방소재기업 70억원) 이내

* 협동화자금, 제조현장스마트화자금 : 연간 100억원 이내

* 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이내 (협동화자금은 연간 15억원 이내, 제조현장스마트화자금은 연간 10억원 이내)

신청·접수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온라인 누리집(www.kosmes.or.kr)를 통해 신청·접수

- 제출서류 : 각 융자사업별 신청서 및 증빙서류

처리절차

- 직접·대리대출

지원규모

- 신성장기반자금 : 12,851억원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www.mss.go.kr)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누리집(www.kosmes.or.kr)
- 정책자금 전담콜센터 1811-3655,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재도약지원자금

사업개요

사업전환, 구조조정, 재창업 지원으로 재도약과 경영정상화를 위한 사회적 기반 조성

〈 전년대비 달라지는 내용 〉

구분	'25년	'26년
지원 대상	구조개선전용자금 〈 추 가 〉	구조개선전용자금 • 회생계획 인가 기업
지원 내용	사업전환자금 : 3,500억원 구조개선전용자금 : 2,001억원 재창업자금 : 2,000억원 - (대출한도) 연간 60억원 이내 (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이내) 〈 추 가 〉	사업전환자금 : 3,125억원 구조개선전용자금 ; 2,000억원 재창업자금 : 1,000억원 - (대출한도) 연간 60억원 이내 (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이내) * 단, 재창업자 성실경영 심층평가 통과 기업은 운전자금 연간 10억원 이내

지원대상

사업전환, 구조개선, 재창업자금으로 구분하여 지원

구분	지 원 요 건
사업 전환 자금	①「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최근 5년 이내 사업전환계획의 승인을 받은 중소기업 ②「통상환경변화 대응(구「무역조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3년 이내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으로 지정받은 중소기업 ③「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재편계획의 승인을 받은 중소기업
구조 개선 자금	아래의 유형(① ~ ③)에 해당하는 기업 ① 아래 사항 중 하나에 해당되어 진로제시컨설팅(기초진로제시)을 받은 기업 중 '구조개선' 대상으로 판정된 기업 * 모든 지원유형 진로제시컨설팅 필수 • 정책금융기관 등(중진공, 신보, 기보, 테크노파크)이 지정한 부실징후기업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 또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의한 워크아웃 추진기업으로 워크아웃계획을 정상 이행중인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 인가 및 회생절차 종결 후 5년 이내 기업으로 법원에서 승인한 회생계획을 정상 이행중인 경우 • 기타 경영애로를 겪고 있어 구조개선, 회생, 사업정리 등 향후 진로제시가 필요한 기업 ② 아래 사항 중 하나에 해당되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서 금융지원을 추천한 '캠코 협업 금융지원' 대상기업 • 패키지형 회생기업 금융지원 참여기업 • Sales & LeaseBack 참여(선정)기업 • 국세 물납 법인 ③ 선제적 구조개선 프로그램에서 지원을 결정한 기업 ※ 선제적 자율구조개선 프로그램 개요 • 중진공과 금융기관(협약은행 등)*이 협력하여 위기징후 중소기업을 선제 발굴하고, 공동 금융지원과 경영개선계획 수립 등으로 기업의 자율구조개선을 지원하여 신속한 경영정상화 촉진 및 재도약 기회 부여 *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경남은행, 농협은행, 산업은행, 국민은행, iM뱅크,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기술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 지원절차 : 신청 → 상담·추천 → 사전검토 → 진단·평가 및 경영개선계획 수립 → 지원결정 → 금융지원 → 이행점검
재창업 자금	중소기업을 폐업하고 새로운 중소기업을 설립한 업력 7년 미만인 재창업기업 또는 예비재창업자 중 다음요건(①~③)을 모두 만족하는 자 ① 자금조달에 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인 또는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공공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자 * 파산면책결정, 회생인가, 신용회복확정, 채무조정확정 등 신용회복지원에 한함 ②「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성실경영평가를 통과할 것 ③ 아래 재창업자 요건에 모두 해당하며 실패기업 폐업을 완료할 것 • 폐업 이력을 보유(폐업을 완료할 것)한 자로, 현재 재창업기업의 대표(이사) * 과거 폐업 개인기업의 대표자이거나, 폐업 법인기업의 대표이사 또는 실질기업주 • 과거 폐업 기업의 업종이 '비영리업종, 사치향락업종, 주점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가구 내 고용 및 자가 소비 · 생산활동, 국제 및 외국기관'에 미해당

지원내용

구분	내 용
사업 전환 자금	• 대출한도 : 기업당 100억원 (운전자금 연간 5억원)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 적용(변동) • 대출기간 : 운전 - 6년, 거치 3년 포함/ 시설 - 10년, 거치 5년 포함 ※통상변화대응지원자금 - 2% 고정금리 • 지원규모 : 3,125억원
구조 개선 자금	• 대출한도 : 운전자금 3년간 10억원 이내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 대출기간 : 운전 - 5년, 거치 2년 이내 ※ 선제적 자율구조개선 프로그램 - 2.5%고정금리, 운전자금 3년간 15억원 이내이며, 연간 최대 10억원 한도 (대출기간 5년, 거치 2년 이내), 시설자금 연간 60억원 이내(대출기간 10년, 거치 4년 이내) • 지원규모 : 2,000억원
재창업 자금	• 대출한도 : 연간 60억원 (운전자금 연간 5억원) ※ 단, 재창업자 성실경영 심층평가 통과기업은 운전자금 연간 10억원 이내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 대출기간 : 운전 - 6년, 거치 3년 포함/ 시설 - 10년, 거치 4년 포함 • 지원규모 : 1,000억원

신청·접수

- 공고시기 : 2025년 12월 22일
- 신청방법 : 중진공 홈페이지(www.kosmes.or.kr)를 통한 온라인 상담예약, 상담 후 신청
- 제출서류 : (공통) 융자신청서
  (사업전환) 사업전환 또는 공동사업전환계획승인신청서
  (재창업) 폐업사실증명원

심사·평가 주요내용

- ▸ (공통) 시장전망, 기술성, 사업성, 상환능력 등을 평가
- ▸ (초기재창업자) 재창업준비의 충실성, 재기노력도 등을 심의

- 추진절차 :
  - 사업전환자금

전환계획접수 → 계획심사·승인 → 자금신청 → 자금심사·결정

  - 구조개선자금

자금신청 (기업 → 중진공) → 자금심사·결정 (중진공) → 자금대출 (중진공 → 기업)

* 지원대상 ①번 유형은 자금신청 전에 진로제시 컨설팅을 거쳐야하며, ③번 유형(선제적 자율구조개선)은 자금신청 전에 은행 및 중진공 지역본지부 추천을 통해 신청이 가능함

  - 재창업자금

신청접수 → 성실경영평가 → 자금심사·결정 → 자금대출

* 초기재창업자(예비 및 업력 1년미만)는 심의위원회를 통한 별도 절차로 처리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구조개선과
  - 사업전환 : (전화) 044-204-7482 (메일) 22mrj@korea.kr
  - 구조개선 : (전화) 044-204-7481 (메일) mashall98@korea.kr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정책과
  - 재창업 : (전화) 044-204-7628 (메일) pchyeok@korea.kr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업성장지원처
  - 사업전환 : (전화) 055-751-9703 (메일) wms2494@kosmes.or.kr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재도약성장처
  - 구조개선 : (전화) 055-751-9922~7 (메일) zero@kosmes.or.kr
  - 재창업 : (전화) 055-751-9622 (메일) dracon128@kosmes.or.kr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각 관할 지역본지부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kosmes.or.kr)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전화상담은 ☎1357

긴급경영안정자금(융자)

사업개요

재해 피해 기업, 일시적 경영애로 기업에 긴급한 자금소요를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경영기반 조성

〈 전년대비 달라지는 내용 〉

구분	'25년	'26년
우대 사항	〈긴급경영안정자금(일시적경영애로)〉 ▪ (추가)	〈긴급경영안정자금(일시적경영애로)〉 ▪ 원자재 가격급등, 보호무역 피해기업은 융자계획 공고 융자제한기업 ①항(우량기업) 적용 예외

지원대상

◉ 재해중소기업지원 및 일시적경영애로지원으로 구분

- (재해중소기업지원) 「재해 중소기업 지원지침(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 따라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군수·구청장이 발급한 「재해중소기업 확인증」 제출

* 융자제한기업 ①항(우량기업), ②항(휴 · 폐업기업), ③항(세금체납기업), ⑩항(부채비율 초과기업) 적용 예외 (단, ②항(휴·폐업기업) 예외 적용의 경우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한 휴업, ③항(세금체납기업) 예외 적용의 경우 압류 · 매각의 유예에 한함)

- (일시적경영애로지원) '① 경영애로 사유'로 인해 일정부분 이상 피해(② 경영애로 규모)를 입은 일시적 경영애로 기업 중 경영 정상화 가능성이 큰 기업

* 융자제한기업 ⑩항(부채비율초과기업) 적용 예외

* 정부 산업구조조정 대상업종(조선,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및 원전 협력 중소기업, 대유위니아그룹 계열사 회생신청에 따른 피해 협력기업은 융자제한기업 ①항(우량기업), ③항(세금체납기업), ⑩항(부채비율초과기업) 적용 예외 (단, ③항(세금체납기업) 예외 적용의 경우에도 압류 · 매각의 유예에 한함)

* 원자재 가격급등, 보호무역 피해기업은 융자제한기업 ①항(우량기업) 적용 예외

① 경영애로 사유

- 보호무역피해
- 환율피해
- 대형사고(화재 등)
- 대기업 구조조정
- 정부의 산업구조조정 대상업종 (조선, 자동차, 해운, 철강, 석유화학) 관련 피해
- 주요거래처 도산 및 결제조건 악화
- 기술유출 피해
- 불공정거래행위 또는 기술침해, 외국기업 또는 대기업의 특허분쟁에 따른 피해
- 한중 FTA 지원업종(피해)
- 고용위기 또는 산업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
-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소재 중소기업
- 화학안전 법령 이행
-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경영애로
- 개성공단 입주 철수기업
- 우크라이나 사태 피해기업
- 원전 협력 중소기업(단, 사업계획 및 자금 사용 목적이 원전 사업 추진을 위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
- 원자재 가격급등으로 인한 생산 등의 애로 중소기업
-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에 소재한 중소기업
- 대유위니아그룹 계열사 회생신청에 따른 피해협력기업
- 위메프, 티몬, 인터파크쇼핑, AK몰 또는 알렛츠로부터 판매대금 미정산 피해를 입은 것으로 인정(셀러허브를 통한 입점기업 포함)되는 중소기업
-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

※ 제품과 서비스의 시장성 부족 등에 따른 영업부진 등은 제외

② 경영애로 규모 : 매출액 또는 영업이익이 10% 이상 감소 기업, 대형사고(화재 등)로 피해규모가 1억원 이상인 기업

(비교시점) 직전연도와 직전전연도, 직전반기와 직전전반기, 직전반기와 전년동반기, 직전분기와 직전전분기, 직전분기와 전년동분기, 신청전월과 전전월, 신청전월과 전년동월

※ 긴급경영안정자금(일시적경영애로) 경영애로 규모 요건 적용 예외

- 환율 피해 또는 보호무역 피해기업
- 조선업 관련 피해기업
- 기술침해 피해기업
- 우크라이나 사태 피해기업
- 원전 협력 중소기업
- 고용위기 또는 산업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
-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소재 중소기업
- 대유위니아그룹 계열사 회생신청에 따른 피해 협력기업

③ 신청기한 : 경영애로 피해 발생(피해 비교 가능시점) 후 6개월 이내

* 단, 정부의 산업구조조정대상 업종 관련 피해기업은 신청기한을 경영애로 피해 발생 후 1년 이내로 우대

융자방식

◉ 직접대출

융자범위

◉ 운전자금

- (재해중소기업지원) 직접 피해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
- (일시적경영애로지원) 경영애로 해소 및 경영정상화에 소요되는 경비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에서 0.5%p 가산

  * 재해중소기업지원은 연 1.9% 고정금리 적용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대출한도

- 연간 10억원 이내(3년간 15억원 이내)

  * 재해중소기업지원은 피해금액 이내에서 최대 10억원(3년간 15억원 이내)

신청·접수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온라인 누리집(www.kosmes.or.kr)를 통해 신청·접수
- 제출서류 : 각 융자사업별 신청서 및 증빙서류

처리절차

- 직접대출

1 정책자금 공지	2 융자 신청 (온라인)	3 정책우선도평가 (사전평가)	4 서류작성 (온라인)
신청 일정 및 신청 가능 자금 공지	정보제공동의 및 기업정보 제출	정책자금 심사기회 부여 결정	융자 필요서류 제출

5 기업평가	6 융자결정	7 대 출	8 사후관리
현장방문 방식 또는 비대면 방식	지원가능여부 및 지원금액 결정	직접대출, 대리대출 등	자금사용 용도 점검, 사업계획 멘토링 등

지원규모

- 긴급경영안정자금 : 2,500억원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www.mss.go.kr)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누리집(www.kosmes.or.kr)
- 정책자금 전담콜센터 1811-3655,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신시장진출지원자금(융자)

사업개요

민간 금융기관에서 자금조달이 어려운 중소벤처기업이 보유한 우수 기술·제품의 글로벌화 촉진 및 수출인프라 조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여 수출 중소기업 육성

〈 전년대비 달라지는 내용 〉

구분	'25년	'26년
지원 규모	신시장진출지원자금 : 융자 3,825억원 이차보전 2000억원 - (내수기업수출기업화) 융자 2,000억원 - (수출기업글로벌화) 융자 1,825억원 이차보전 2,000억원	신시장진출지원자금 : 융자 3,164억원 이차보전 1,630억원 - (내수기업수출기업화) 융자 1,000억원 - (수출기업글로벌화) 융자 2,164억원 이차보전 1,630억원
우대 사항	〈해외법인지원자금〉 ▪ (추가)	〈해외법인지원자금〉 ▪ 해외법인지원자금은 융자제한기업 ①항(우량기업) 적용 예외
대출 한도	〈내수기업수출기업화〉 ▪ 연간 5억원 이내	〈내수기업수출기업화〉 ▪ 연간 10억원 이내

지원대상

◉ 신청자격

-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내수기업* 및 수출 10만불** 미만 기업

* 정부 및 지자체 수출 지원사업 참여기업 및 수출 관련 지정제도 선정기업, 기술수출 실적을 보유한 중소기업, 해외법인을 운영(설립 예정 포함)하는 중소기업의 해외법인지원자금 포함

** (수출실적) 최근 1년간(신청전월 기준) 직·간접 수출실적 합계

- (수출기업 글로벌화) 수출 10만불 이상 중소벤처기업

* 해외법인을 운영(설립 예정 포함)하는 중소기업의 해외법인지원자금 포함

◉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소상공인도 지원대상 포함

◉ 해외법인지원자금은 융자제한기업 ①항(우량기업) 적용 예외

◉ 우대사항 : 글로벌 강소기업 1000+ 프로젝트 강소단계(500만불) 이상 선정 기업은 정책우선도평가 생략

지원내용

◉ 신시장진출지원자금 : 4,794억원

대출금리

◉ (직접대출)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또는 고정금리

대출기간

◉ (직접대출) 시설자금, 운전자금 각각 구분

- 시설자금 : 10년 이내(거치기간 4년 이내 포함)
- 운전자금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운전자금만 가능

대출한도

- (직접대출) 연간 30억원 이내 (운전자금 연간 10억원 이내)
  - *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연간 10억원 이내
  - * 수출 고성장기업은 연간 60억원 이내(전년도 수출액 100만$이상이고, 최근 3년간 연평균 수출증가율 20% 이상 기업)

신청·접수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온라인 누리집(www.kosmes.or.kr)를 통해 신청·접수
- 제출서류 : 각 융자사업별 신청서 및 증빙서류

처리절차

- 직접·대리대출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www.mss.go.kr)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누리집(www.kosmes.or.kr)
- 정책자금 전담콜센터 1811-3655,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밸류체인안정화자금(융자)

사업개요

- (동반성장 네트워크론) 발주서를 근거로 납품 전 생산자금 대출하고 납품 후 채권 양수하여 발주기업으로부터 회수
- (매출채권팩토링) 중진공이 중소기업(판매기업)의 매출채권을 '상환청구권' 없이 인수하여 공급하고 구매기업으로부터 대금 회수

지원대상

- 동반성장 네트워크론, 매출채권팩토링 융자 사업으로 구분하여 지원
- 동반성장 네트워크론
  -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중진공과 동반성장 협약을 체결한 발주기업이 융자를 추천하는 중소기업(수주기업)
  - 지원조건 : 발주기업이 발행한 발주서 금액의 80% 이내
  - 지원규모 : 융자 1,395억 원
- 매출채권팩토링
  -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면서, 최근 3개년 결산 재무제표를 보유하고, 구매기업과 1년 이상 거래실적을 보유한 중소기업(판매기업)
  - 지원조건 : 매출채권 원금에서 할인료(할인금액) 차감 후 지급
  - 지원규모 : 융자 590억 원

신청제외 대상

▸ 타 정책기관(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팩토링 제도를 활용 중인 기업은 신청대상에서 제외

지원내용

- 동반성장 네트워크론
  - 지원기간 : 대출 실행일로부터 365일 이내
  - 지원한도 : 발주서 금액 이내(수주기업 연간 15억원)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에서 0.3%p 차감
- 매출채권팩토링
  - 지원기간 : 대출 실행일로부터 90일 이내
  - 지원한도 : 연간 10억 원 이내(판매기업)
  - 할 인 율 : 기업 신용위험에 따라 차등

신청 · 접수

- 공고(예정) 시기 : 1월 중(예정)
- 신청방법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온라인 누리집(www.kosmes.or.kr) 온라인 신청
- 제출서류 : 최근 3개년 결산 재무제표, 최근 2개년 회계정보 등

◉ 추진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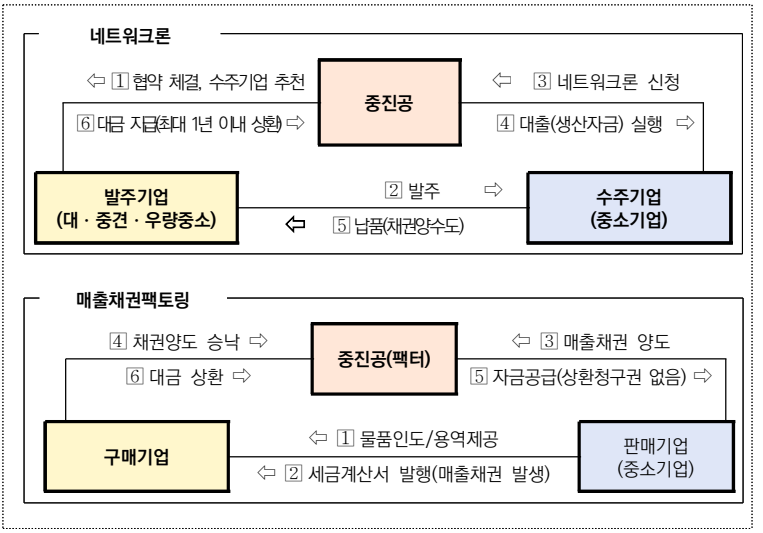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혁신사업처

- (동반성장네트워크론 문의) 02-2130-1412
- (매출채권팩토링 문의) 02-2130-1415

참고사항

① 전년도 사업공고

◉ 공고명 : (1) '25년도 중소기업 동반성장 네트워크론 지원계획 공고
(2) '25년도 중소기업 매출채권팩토링 지원계획 공고

- (경로) 중진공 홈페이지(kosmes.or.kr)-[알림광장]-[공지사항] 메뉴
- (홈페이지)

② 기타사항(사업 소개 영상))

- 제목 : (1) 생산 자금의 조기 확보를 위한 ‘동반성장 네트워크론’ 사업소개 (2) 중소기업의 현금 유동성을 위한 ‘중진공 매출채권 팩토링’ 사업소개

  - (경로) 유튜브 접속-소개 영상 제목으로 검색 또는 QR코드 접속

동반성장네트워크론	매출채권팩토링

정책자금 이차보전 지원

사업개요

고용창출, 수출·매출 증대 등 국가경제 기여도가 높은 중소벤처기업의 성장 가속화를 위해 이차보전 방식으로 지원

〈 전년대비 달라지는 내용 〉

구분	'25년	'26년
지원 규모	이차보전 지원 : 6,027억원(공급규모)	이차보전 지원 : 3,670억원(공급규모)

지원대상

- 민간금융 활용이 가능한 업력 7년 이상, 수출 10만불 이상 기업 및 스마트공장, 그린기술 등 미래·신사업 추진 기업

융자범위

- 운전자금
  - 원부자재 구입, 제품의 생산, 시장 개척, 기술 개발, 인건비 등 기업 경영활동에 소요되는 자금

융자방식

- ① 기업이 은행과 대출 상담 후 중진공에 이차보전 신청, ② 중진공이 기업평가를 통해 이차보전 대상 기업을 결정, ③은행에서 대출 후, 중진공이 은행에 이차보전금 정산

  * 이차보전 취급 은행(13개) : 경남, 광주, 국민, iM뱅크, 부산, 신한, 우리, 전북, 제주, 하나, 기업, 농협, 수협

〈 중소기업 정책자금 이차보전 지원 방식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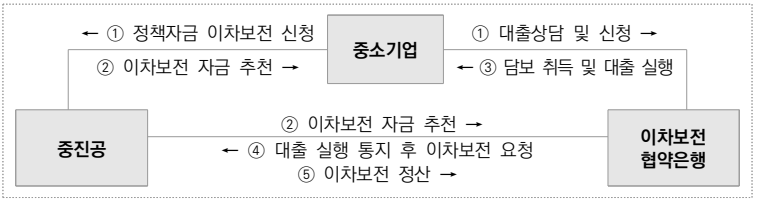

대출금리

- 은행 여신 규정에 따라 자율 운용

  * (이차보전 지원기업 부담금리) 은행 대출금리 - 이차보전율

이차보전

- (3%) 중점지원분야, 최근 1년간 수출실적 10만달러 이상 기업
- (2%) 그 외 업종

  * 이차보전율이 대출금리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이차보전율을 대출금리 수준으로 조정

대출기간

- 3년 만기 일시 상환

대출한도

- 연간 5억원 이내 (3년간 10억원 이내)

신청·접수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온라인 누리집(www.kosmes.or.kr)를 통해 신청·접수
- 제출서류 : 각 융자사업별 신청서 및 증빙서류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www.mss.go.kr)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누리집(www.kosmes.or.kr)
- 정책자금 전담콜센터 1811-3655,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수출바우처

사업개요

해외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내수 및 수출 중소기업에 디자인 개발, 홍보·광고, 바이어 발굴 등 맞춤형 수출 서비스를 종합 지원하여 수출 선도기업으로 육성

〈 전년대비 달라지는 내용 〉

구분	'25년	'26년
공고 시기	'24.12.30	'25.12.15(15일 단축)
한도 확대	한도확대(3종) 운영 - 튼튼내수 50% - 수출국다변화 20% - 수출고성장 50%	한도확대(3종→5종) **- 관세대응 패키지 50%** **- 물류 1,500만원** - 튼튼내수 50% - 수출국다변화 20% - 수출고성장 50%
물류 지원	국제운송 지원한도'25년 한시 상향(3→6천만원)	한도상향(3→6천만원) 유지 및 서비스 확대* * 풀필먼트, 무상샘플 운송료 등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수출규모별 성장사다리 구축을 위해 지원 대상을 구분하고, 매출액 규모*에 따라 차등지원

<table>
<tr><th colspan="2">트랙</th><th>국고지원 한도
(백만원)</th><th colspan="2">국고 보조율</th></tr>
<tr><td>내수</td><td>전년도 수출액 1,000달러 미만</td><td>30</td><td colspan="2" rowspan="6">50~70%
* '24년 매출액 규모 따라 차등 적용</td></tr>
<tr><td>초보</td><td>전년도 수출액 10만달러 미만</td><td>30</td></tr>
<tr><td>유망</td><td>전년도 수출액 10~100만달러 미만</td><td>45</td><td>매출액</td><td>보조율</td></tr>
<tr><td>성장</td><td>전년도 수출액 100~500만달러 미만</td><td>70</td><td>100억원 미만</td><td>70%</td></tr>
<tr><td>강소</td><td>전년도 수출액 500만달러 이상</td><td>100</td><td>100~300억원 미만</td><td>60%</td></tr>
<tr><td colspan="2"></td><td></td><td>300억원 이상</td><td>50%</td></tr>
</table>

◉ 우대사항

- (관세대응) 메뉴판내 '관세대응 패키지' 활용하는 경우 바우처 지원한도 50% 확대(다만, 추가된 한도는 관세대응 패키지로만 사용* 가능)

* 관세패키지 메뉴판 외 사용에 대해 계약 및 이용 시 모니터링 강화 바우처 정산 시 집중 점검 예정

- (물류지원) 메뉴판 내 '국제운송' 활용하는 경우 총운송비 기준 최대 15백만원 한도내에서 70%(최대 1,050만원)를 정부 지원

- (튼튼한 내수기업) 내수단계 선정기업 중 혁신형 중소기업*은 튼튼한 내수기업 트랙으로 별도 구분하여, 내수트랙 대비 바우처 지원한도 50% 확대

* 메인비즈, 이노비즈, 벤처기업, 성능인증기업, TIPS성공졸업기업, 아기유니콘 및 예비유니콘, 초격차 스타트업 1,000+프로젝트 선정기업, 도약(Jump-Up) 프로그램 선정기업

- (수출국 다변화) '25년도 수출바우처사업 참여기업 중 수출국 다변화에 성공한 기업*은 바우처 지원한도 20% 확대

* (수출국 다변화 성공 기준) '25년 수출바우처 사업 참여기업 중 '24년 대비 '25년 수출국가 수가 증가한 기업(* '24년, '25년 국가별 직수출실적증빙 서류 제출 必)

- (수출 고성장) 수출 고성장 기업*은 바우처 지원한도 50% 확대

* (수출 고성장 기업 기준) '25년 수출액이 100만 불 이상이고, 최근 3년간 연평균 수출 증가율 20% 이상인 기업

※ 지원한도 우대항목에 중복해당되는 기업의 경우, 1개 항목에 대해서만 우대적용

※ 예산 상황에 따라 우대사항 해당기업 중 평가점수 순으로 일부만 우대지원

신청제외 대상

- 휴•폐업 기업이거나 기업이 국세·지방세 체납중인 경우
- 기업이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전국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기업이 보조금법 위반 등으로 정부 지원 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각 부처 및 지자체 등에서 운영중인 수출바우처사업*의 참여기업으로 선정되어 협약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26.3.1.일 기준)
- 바우처 협약액 대비 사용률 미흡기업은 참여 제한 및 감점
  - 대상 : 최근 2년('24년, '25년)간 산업부·중기부 수출바우처사업 참여이력이 있는 신청기업
- 수출바우처사업 수행기관으로 참여 중이거나 부정행위 등으로 사업 참여제한 중인 기업과 그 기업의 대표자가 운영하는 기업 또는 그 특수관계기업
- 동일 법인에 복수 사업자(본사·지점·공장)로 신청 및 선정불가
-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단순 유통기업, 무역상사인 경우
- 사행산업 등 국민 정서상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 영위 기업
- '26년 신청기업과 특수관계에 있는 기업(단, 경영 독립성 등을 입증하는 경우 예외)

지원내용

◉ 디자인 개발, 홍보, 바이어 발굴, 전시회, 인증 등 해외진출 시 필요한 마케팅서비스를 패키지式(수출바우처)으로 지원

- 선정기업에 "수출바우처" 발급 → 기업은 바우처 한도 內에서 지원 서비스와 수행기관을 자유롭게 선택, 수행 → 소요비용 정산

지원영역	지원항목
관세대응 패키지	■ 정의 : 관세피해 대응 관련 서비스 ■ 서비스 주요내용 : 대체시장 발굴, 대체 공급망 확보, 관세 현지 분쟁 해결 등 관세 대응 관련 서비스
디자인 개발	■ 정의 : 해외 진출에 필요한 각종 외국어 디자인 개발 지원 ■ 서비스 주요내용 : 외국어 카탈로그 제작, 외국어 포장디자인, 외국어 홈페이지(반응형), GUI, 해외 온라인 쇼핑몰 상품페이지, 제품디자인, BI·CI 등
홍보 동영상	■ 정의 : 해외 진출에 필요한 외국어 홍보동영상 개발 지원 ■ 서비스 주요내용 : 외국어 홍보 동영상 제작 등
조사/일반 컨설팅	■ 정의 : 정보 조사 및 법무·세무·회계를 제외한 수출관련 일반 컨설팅 지원 ■ 서비스 주요내용 : 파트너·바이어·원부자재공급선 발굴 조사, 해외시장조사, 소비자 리서치, 경쟁제품 동향조사, 기업 신용 및 기업실태 조사, 바이어DB 타겟 마케팅, 기업 중장기 성장전략수립, 해외수출 전략수립, 해외진출 및 마케팅전략 컨설팅 등

지원영역	지원항목
통번역	▪ 정의 : 수출을 위한 기업의 활동에 필요한 외국어 통·번역 서비스 지원 ▪ 서비스 주요내용 : 계약/법률 문서, 소프트웨어콘텐츠, 게임/모바일App 콘텐츠, 비즈니스/기술문서, 홈페이지 번역 등
역량강화 교육	▪ 정의 : 수출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제공 및 지원 ▪ 서비스 주요내용 : 무역실무, 글로벌마케터 양성, 비즈니스 회화, 전략시장 진출, e-러닝, 내부역량강화, 전략물자, CP 실무자 과정, 글로벌 비즈니스 전문인력 육성, 해외 시장 개척과정 교육,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 과정, 지식재산권 분쟁 대응방안 등
해외규격인증	▪ 정의 : 해외 규격인증 취득을 위한 시험·심사·인증 및 인증 대행컨설팅 등 해당 분야 전문 서비스지원 ▪ 서비스 주요내용 : 해외인증비용 사후정산, 위생, 할랄 등 해외 인증 취득 및 등록 등 * 단, 해외규격에 없는 일반 시험분야 제외
특허/지재권 /시험	▪ 정의 : 특허·지재권 취득, 시험 대행, AEO인증 획득 등 해당 분야 전문 서비스 지원 ▪ 서비스 주요내용 : 지식재산권 등록, 특허·수출 IP 전략 컨설팅, AEO인증 획득 등
서류대행/ 현지등록/환 보험	▪ 정의 : 수출·무역·현지진출 관련 필요 서류 작성 대행 및 현지 등록, 환보험 서비스 지원 ▪ 서비스 주요내용 : 계약서 작성(지불조건 포함), 통관/선적 필요 서류 작성, 결제관련 서류 작성, FTA원산지 관련 서류 작성, 무역자동화 등 서류 대행 및 현지법인·지사·대표처 등록, 현지 입점대행 등
홍보/광고	▪ 정의 : 기업/제품/브랜드의 해외 마케팅을 위한 홍보 및 광고 지원 ▪ 서비스 주요내용 : 기업/제품/브랜드 관련 TV·PPL, 신문·잡지 홍보/광고 및 사후정산, SNS·검색엔진 마케팅, 바이럴 마케팅, IMC 마케팅 등
브랜드 개발 · 관리	▪ 정의 : 수출브랜드의 개발과 관리를 위한 마케팅 지원 ▪ 서비스 주요내용 : 수출브랜드, 제품매뉴얼 제작, 브랜드 정품인증, 위변조방지 등
전시회/행사/ 해외영업지원	▪ 정의 : 전시회/상담회/세미나/설명회 등 수출관련 행사 기획·지원 및 해외영업지원을 통한 수출 지원 ▪ 서비스 주요내용 : 국내개최 국제전시회 참가, 현지 바이어 매칭 상담회/세미나/제품시연회, 해외바이어 국내초청 미팅/설명회/세미나, 해외전시회 사전·사후 지원, 해외시장 산업설명회, 판촉전, 해외전시회 참가비용 사후정산, 의료기기 제품설명회 등
법무 · 세무 · 회계 컨설팅	▪ 정의 : 해외진출을 위한 법무·세무·회계 관련 전문 컨설팅 지원 ▪ 서비스 주요내용 : 회계감사, 세무조사, 세무자문, 법률자문, 법인설립, 해외현지 클레임 해결지원, 해외법인 설립지원 등
국제운송	▪ 정의 : 수출자가 부담하는 국제운송비 ▪ 서비스 주요내용 : 수출자가 부담하는 국제운송료(해운 및 항공) 및 보험료(국내운임, 취급수수료 및 도착국 발생비용, 세금성 경비는 정산제외)
무역보험	▪ 정의 : 수출위험 대응을 위한 수출보험 지원 ▪ 서비스 주요내용 : 수출신용보증(선적전), 단기수출보험, 환변동보험, 국외기업 신용조사, 해외채권 회수대행

- 지원규모 : 4,000개사 내외
- 지원금액 : 1,502억원

신청·접수

- 공고 예정 시기

구 분	공고시기 / 신청기간
1차 공고 (일반)	(공고) '25.12.15 / (신청) '25.12.17~'26.1.9~
레전드 50+ 전용	(공고) '26.3월 / (신청) '26.3월
2차 공고 (일반)	(공고) '26.4월 / (신청) '26.4월

* 모집차수별 세부 공고일정 등은 변동가능

- 신청방법 : 수출바우처 홈페이지(www.exportvoucher.com) 온라인 신청·접수
-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표준재무제표증명원, 중소기업확인서 등
- 선정평가 :
  - (서류 심사) 신청요건, 지원제외 대상 여부 등 신청 자격 심사
  - (서면 평가) 수출준비도, 수출비율, 수출실적 성장률 등을 종합하여 서류평가 진행을 통해 현장평가 대상 선정
  - (현장 평가) 수출역량(수출성장단계) 및 업종(제조업 및 서비스업)에 따라 평가 기준 적용
- 추진절차

신청·접수	평가·선발	협약 체결	바우처 발급	사업 개시
홈페이지 접수	서류 및 현장평가	선정기업 - 운영기관 협약 체결	기업별 바우처 포인트 발급	수출 서비스 이용 및 정산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성장정책과 (044-204-7512)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해외진출사업처 (055-751-9721,2)
- 수출바우처 콜센터 (055-752-8580)
  수출바우처 홈페이지 (www.exportvoucher.com)

참고사항

① 전년도 사업공고

- 공고명 : 2025년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참여기업 1차 모집 공고
  - (경로) 수출바우처 홈페이지(www.exportvoucher.com) 〉 커뮤니티 〉 공지사항
  - (홈페이지)

② 수출바우처사업 정산가이드

- 제목 : 2025년 중소벤처기업부(중진공) 수출바우처사업 정산가이드 개정(2차)
  - (경로) 수출바우처 홈페이지(www.exportvoucher.com) 〉 커뮤니티 〉 정산가이드
  - (홈페이지)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사업개요

세계 주요 교역거점에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를 설치·운영하여 특성화·전문화된 서비스 제공을 통해 중소벤처기업의 글로벌화를 지원

〈 전년대비 달라지는 내용 〉

구분	'25년	'26년
운영 현황	14개국 21개소	14개국 22개소(칭다오 개소)
제출 서류	GBC 입주 신청을 위해 22종 서류제출 필요	행정정보공동이용망 활용으로 GBC 입주 신청에 필요한 기업 제출 서류를 22종에서 14종으로 간소화

지원대상

-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유망 중소벤처기업

신청제외 대상

- 휴·폐업 기업 또는 가동 중에 있지 않은 기업
- 대표자 또는 기업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경우
-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회생·파산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기업
- 임직원의 자금 횡령 등 기업 경영과 관련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 (업종)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건설업, 주류·담배 도매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법무·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 수의업, 보건업, 교육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등

지원내용

- 임차료의 80%(2차연도는 50%) 지원
- 사무공간(5~55㎡), 공동회의실, 사무집기 및 전화·인터넷 전용선 제공
- 현지 시장 정보, 마케팅·법률·회계 등 자문 및 컨설팅
- 공유오피스를 통한 단기출장지원, 현지 행정업무 지원 등
- 금융·투자, 제품현지화, 물류, ODA 등 국가별 특성을 반영한 센터별 특화프로그램 운영

신청·접수

- 연중 수시(일부 사업은 공고 예정)
- (독립실 입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www.kosmes.or.kr) 온라인 신청
- (공유오피스 활용) G-SPACE(gbc.kosmes.or.kr) 온라인 및 모바일 신청 가능

심사·평가 주요내용

- (입주) 경영평가, 진출 준비도, 진출 전략 및 가능성 등
  - * (우대사항) 미 관세조치 피해기업, 벤처기업, 이노비즈기업, 메인비즈기업, 글로벌강소기업 1000+지정기업, 글로벌강소기업, 초격차 스타트업 지정기업, 농산업분야 수출 지원사업 참여기업, TIPS, 예비·아기 유니콘, CTS 선정기업 등

- 제출서류 : 입주활동계획서, 파견자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 신용정보 제공동의서(기업/개인) 등
  - * 사업자등록증명원, 중소기업확인서, 국세/지방세납세증명서 등은 행정정보공동이용망 활용으로 제출서류 간소화

입주절차

입주 신청·접수 (중진공)	→	신청기업 현장실사 (중진공)	→	해외시장성 평가 (중진공)
연중 수시		연중 수시		연중 수시

↓

글로벌비즈니스센터 운영 (중진공*, 기업)	←	계약 및 입주 (중진공, 기업)	←	심의·선정 (심의위원회)
연중 수시		연중 수시		연중 수시

* 일부 지역의 경우, kotra와 공동 운영

지원규모

- 14개국 22개소*에 독립실 및 공유오피스 운영

  * ('25년 12월 기준) 총 279 독립실 : (북미) 시카고, L.A., 워싱턴, 뉴욕, (유럽) 프랑크푸르트, 모스크바, (아시아) 도쿄, 호치민, 하노이, 방콕, 뉴델리, 알마티, 자카르타 (중국) 베이징, 상하이, 충칭, 선전, 칭다오 (남미) 멕시코, 산티아고, (중동) 두바이, 리야드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성장정책과 : 044-204-7502, 7513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글로벌협력처 : 055-751-9685, 9675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Q&A

Q **글로벌비즈니스센터 입주기업이 아니더라도 공유 오피스를 이용할 수 있나요?**

A 공유오피스 및 회의실(상담실)은 중소벤처기업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Q **독립실 입주 기간은 어느 정도 됩니까?**

A 입주 계약 기간은 기본 1년이며, 1년 단위로 협약을 갱신하여 3년 입주할 수 있습니다.

용어 설명

G-SPACE :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공유오피스 공간활용률 및 기업 편의성 제고를 위해 실시간 이용예약이 가능토록 구축한 예약시스템 (모바일, 웹 : 인터넷 창에서 주소 입력 - gbc.kosmes.or.kr)

K-스타트업센터(KSC)

사업개요

세계적인 혁신 거점에 설치된 K-스타트업센터에서 국내 스타트업의 현지시장 진입과 안착, 스케일업을 맞춤형으로 지원

〈 전년 대비 달라지는 내용 〉

구분	'25년	'26년
프로그램형 수행기관	▪ 프로그램형 수행기관 : 중진공, 창진원 * 중진공(3) : 싱가포르, 베트남, 프랑스 창진원(3) : 미국, 인도 등 3개국	▪ 프로그램형 수행기관 : 창진원 * 창진원(2) : 미국, 중동 2개국
KSC 설치도시	▪ KSC 설치 도시 : 5개 * 시애틀, 싱가포르, 파리, 하노이, 도쿄	▪ KSC 설치 도시 : 6개 * 기존 5개 + 미국 실리콘밸리 개소('26.1)
공유오피스 확대	▪ 공유오피스 사용가능 거점 : 4개 * 싱가포르, 시애틀, 도쿄, 파리	▪ 공유오피스 사용가능 거점 : 5개 * 실리콘밸리 신규거점

지원대상

- 신청자격 : 업력 7년 이내* 창업기업으로 국내외 투자유치 또는 진출희망 국가의 매출(수출) 실적이 있는 기업

  * 단, 신산업창업분야 중소기업은 업력 10년 이내

- 우대사항(선정 평가시 가점 부여)
  - 창진원의 KSC 프로그램형 졸업기업, 중진공 청년창업사관학교, 글로벌 창업사관학교 졸업기업, KOICA CTS 졸업기업 등
  - 현지 KSC 특화업종 해당 및 전문기관의 투자실적 보유기업

신청제외 대상

- 휴·폐업 기업 또는 가동 중에 있지않은 기업
- 대표자 또는 기업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중인 경우
- 대표자 또는 기업이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되거나, 전국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대표자 또는 기업이 보조금법 위반 등으로 정부지원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대표자 또는 기업이 그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사행산업 등 국민 정서상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 영위기업
- KSC입주평가에서 탈락한 기업으로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기업

지원내용

- 지원규모 : 139억원, 123개사 내외
- 지원내용
  - (거점형)중진공 K-스타트업센터(KSC)의 사무공간을 제공하고 현지 진출에 필요한 초기정착, 사업화, 투자유치 등의 맞춤형 지원

① 초기정착 지원	② 사업화 지원	③ 투자유치 지원
시장조사, 전문가 멘토링, 법인설립, 법률 자문 등	바이어 발굴, IR발지원, 사업화 컨설팅 등	IR 행사개최, 전문 투자자 매칭 등

  - (프로그램형) 창진원+중진공 해외진출 희망 국가의 현지 AC로부터 사전교육 및 현지에서의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참가를 지원

신청·접수

- (KSC 거점형) 상시 신청·접수('26.1월~12월)

* 중진공 홈페이지(www.kosmes.or.kr)에서 신청·접수

- (KSC 프로그램형) 사업공고(~'26.4월) → 지원기업 선정(~'26.5월) → 프로그램 운영('26.6월~11월)

  * 창업지원 포탈 누리집(k-startup.go.kr)에서 신청

처리절차

- 거점형

모집공고	→	신청·접수	→	서류 심사/ 현지 거점 평가	→	결과 통보 및 지원
중진공		K-스타트업센터 홈페이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KSC 현지 거점		선정여부 안내 및 선정기업 지원

- 프로그램형

모집공고	→	신청·접수	→	요건검토, 서류/발표평가	→	결과 통보 및 지원
창진원		창업지원 포탈 (k-startup.go.kr)		각 기관 및 현지 AC		선정여부 안내 및 선정기업 지원

  * 위 절차는 변동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조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글로벌협력처 : 055-751-9683, 9688
- 창업진흥원 글로벌전략실 : 044-410-1873

Q&A

Q **거점형과 프로그램형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프로그램형은 입주공간 지원 없이, 해외 AC 프로그램만 단기간(14주 내외) 제공하며, 거점형은 해외 현지에 설치된 KSC의 입주공간 제공 및 현지 진출에 필요한 초기정착, 사업화, 투자유치 등의 단계별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Q **거점형 사업으로 복수의 코리아스타트업센터에 동시 입주가 가능한가요?**

A 국내 스타트업의 다양한 해외진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최대 2곳의 KSC에 동시 입주가 가능한 "KSC 프라임'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스타트업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하며 자세한 요건은 공고를 참고해 주십시오.

용어 설명

엑셀러레이팅(AC) : 스타트업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멘토링, 자금지원, 네트워크 구축, IR(Investor Relation)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전자상거래수출시장진출

사업개요

글로벌 및 자사 쇼핑몰을 활용한 판매지원, 공동물류 지원 등을 통한 중소벤처기업의 온라인 수출시장 진출 지원

지원대상

-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 지원조건 : 각 내역사업별 요건에 따름
- 우대사항 : 중기부 지정 우수기업 및 범부처 연계(보호) 분야 등

신청제외 대상

- 휴·폐업 중인 기업
- 체납 중인 기업 및 대표자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원사업 참여제한 등 제재사실이 있는 기업 또는 대표자
- 사행산업 등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도박, 향락산업 등) 영위기업 등
- 동일 사업 내 수행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는 기업

* 내역 사업별 일부 상이

지원내용

- 온라인수출지원

① (글로벌플랫폼 활용 판매지원) 글로벌쇼핑몰(아마존 등) 입점을 위한 교육·컨설팅, 판매 촉진을 위한 마케팅을(기획전, 콘텐츠 제작 등) 지원하여 글로벌쇼핑몰을 활용한 중소기업의 온라인 수출 지원

* 지원규모 500개사 내외

② (자사몰 진출 지원) 해외향 중기 자사몰의 리뉴얼, 언어 추가 구축, 홍보·마케팅 등을 지원하여 자사몰을 활용한 중소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 지원

* 지원규모 48개사 내외

③ (온라인수출인프라) 중소기업의 온라인수출 역량 강화를 위한 포럼, 정기교육 등 제공, 온라인수출 관련 애로해소센터 등 운영

신청·접수

- 공고(예정) 시기 : '26년 2월
- 신청방법 : 고비즈코리아(kr.gobizkorea.com)를 통해 신청 및 접수
- 제출서류 : 신청서, 기업(개인) 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사업자등록증명원, 납세증명서 등
- 선정평가 : 1차 서류평가 → 2차 최종 선정평가

심사·평가 주요내용

▸ 상품의 시장경쟁력, 수출준비도 등

- 추진절차

사업계획 수립·공고	수행기관 및 참여기업 모집	서류평가 및 최종선정	사업지원	사후관리
'25년 1월	'25년 2~3월	'25년 3월	'25년 4~11월	'25년 12월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고비즈코리아 고객센터(1588-6234)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전화상담은 ☎1357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2025년 지원시책」 참조

참고사항

① 전년도 사업공고

- 공고명 :「2025년 전자상거래수출시장진출」 참여기업 모집 공고
  - (경로) 고비즈코리아 홈페이지 〉 지원사업 〉 글로벌쇼핑몰 활용 판매지원 사업, 자사몰 진출사업, 온라인수출 공동물류
  - (홈페이지)

온라인수출플랫폼

사업개요

온라인수출플랫폼을 기반으로 수출인프라 구축, 온라인마케팅 지원, 해외바이어 매칭 및 사후관리 등 온라인수출 全과정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의 온라인 B2B거래 활성화

〈 전년대비 달라지는 내용 〉

구분	'25년	'26년
지원 대상	온라인수출플랫폼 입점(예정) 기업	온라인수출플랫폼 입점(예정) 기업과 온라인수출 확대 희망 기업

지원대상

-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 지원조건 : 온라인수출플랫폼 입점을 희망하는 중소벤처기업
- 우대사항 : 중기부 지정 우수기업 및 범부처 연계(보호) 분야 등

신청제외 대상

- 휴·폐업중인 기업
- 체납 중인 기업 및 대표자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원사업 참여제한 등 제재사실이 있는 기업 또는 대표자
- 사행산업 등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도박, 향락산업 등) 영위기업 등

지원내용

- 지원 세부내용

① (고비즈 수출지원) 선정업체에 고비즈코리아 입점, 수출 전용 컨텐츠 제작, 온라인 마케팅(해외 전시회 참가 등) 등 온라인 수출 원스톱 지원

② (수출계약 대응지원) 해외바이어의 수출계약에 대응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구매오퍼 및 수출계약에 대해 무역전문가를 통한 거래과정 지원

- 지원규모 : 지원기업수, 지원대상자 수

① (고비즈 수출지원) 250개사 내외 예정

② (수출계약 대응지원) 1,000개사 내외 예정

신청 · 접수

- 공고(예정) 시기 : '26년도 2월 예정
- 신청방법 : 고비즈코리아(kr.gobizkorea.com)를 통해 신청 및 접수
- 제출서류 : 신청서, 기업(개인) 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사업자등록증명원,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등
- 선정평가 : 서류평가 및 지원제외 해당 여부 검증 등을 통해 최종 선정

심사·평가 주요내용

▸ 상품의 시장경쟁력, 수출준비도 등

- 추진절차(예정)

사업계획 수립·공고	→	신청·접수	→	서류평가 및 최종선정	→	사업지원
'25년 2월		'25년 2~3월		'25년 4월		'25년 4~11월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고비즈코리아 고객센터(1588-6234)
- 고비즈코리아 누리집(kr.gobizkorea.com)

참고사항

① 전년도 사업공고

- 공고명 : 2025년 온라인수출플랫폼 사업 고비즈 수출지원 참여 기업 모집 공고
  - (경로) 고비즈코리아 홈페이지 〉 지원사업 〉 온라인수출플랫폼
  - (홈페이지)

기업인력애로센터 활용 취업지원

사업개요

기업인력애로센터를 활용한 구인기업 발굴, 청년 등 구직자 취업매칭, 현장중심 직무교육, 사후관리 등을 통해 중소기업 구인난 해소

〈 전년대비 달라지는 내용 〉

구분	'25년	'26년
플랫폼 주요 서비스	· AI 역량평가	· 자기소개서 AI 작성지원 · 소재지 인근 기업·구직자 매칭

지원대상

- 중소기업 채용지원
  - (지원기업) 구인애로 중소기업
  - (지원인력) 중소벤처기업에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
- 대·중소기업 상생 일자리 프로그램
  - (지원기업) 대·중견기업 사업단의 협력 중소기업
  - (지원인력) 만 34세 이하 청년 구직자

* 사업단별 연간 전체 입교생의 30%한도 내에서 청년 기준(34세)을 초과하는 구직자 참여 가능

신청제외 대상

- 불건전 사업, 도박기계 관련 사업, 주류 및 담배 관련 사업 등 국민보건, 건전 문화에 반하는 사업 영위 기업(자세한 내용은 사업 모집공고 참조)
- 한국신용정보원의「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른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등 신용불량 기업 및 임금체불 기업

지원내용

◉ 중소기업 채용지원

- 구인 중소기업 : 구인공고 작성 상담 및 플랫폼 게시, 전용 채용관 운영, 기업별 맞춤인재 검색 및 추천, 정책자금 및 연수 등 지원정책 연계 등
- 구직자 : 취업전문상담사 일대일 진로직업 상담, 입사지원서류 및 면접 코칭, NCS/인·적성검사 등 무료 지원, 맞춤기업 검색 및 추천, 고용유지 조사, 재취업 지원 등

◉ 대·중소기업 상생 일자리 프로그램

- 대기업의 우수한 교육 인프라를 활용하여 청년 구직자에게 맞춤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대기업(중견기업) 협력사에 취업연계 지원

* (사업단)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비 지원 (교육생) 2만원/일 훈련수당 지원

※ 일자리매칭플랫폼(https://job.kosmes.or.kr) 주요 서비스

① 온라인 프로그램	자소서 작성 코칭	구직자 맞춤형 컨설팅 제공
	AI 추천매칭	AI가 기업특성에 맞는 구직자/기업 추천 * 소재지 인근 기업·구직자 매칭 활용
	AI 자기소개서	AI를 활용한 자기소개서 작성, 첨삭 기능 지원
	인 · 적성 검사	취업준비도 검사, 진로적성검사 지원
	비대면면접	AI휴먼을 통한 1분 자기소개, 대화형 면접 진행
② 전문 상담사 지원	자기소개서	구직자별 자기소개서 첨삭지도
	취업연계	구인기업-구직자 간 취업연계 지원

신청·접수

- 공고(예정) 시기 : '26년 1월
- 신청방법 : 일자리매칭플랫폼(job.kosmes.or.kr) 회원가입 후 신청
- 추진절차

- 중소기업 채용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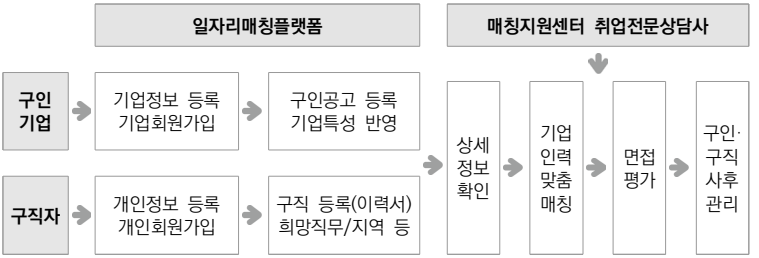

- 대·중소기업 상생 일자리 프로그램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인력정책과 : 044-204-7443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인력지원처 : 055-751-9792, 9881
- 기업인력애로센터 매칭지원센터 : 1899-3001
- 기업인력애로센터 일자리매칭플랫폼 (job.kosmes.or.kr)

Q&A

Q **지방의 소규모 제조 중소기업인데, 일할 청년을 구하고 있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A 일자리매칭플랫폼(job.kosmes.or.kr)에 접속하여 구인공고를 등록한 후, 매칭지원센터 전문 상담사(☏1899-3001)와 채용 조건에 대해 상담 후 기업에 맞는 청년 인재를 추천 채용까지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사업개요

특성화고생 대상 산업현장 수요를 반영한 중소기업 맞춤형 직업교육을 통해 우수 기능인력 양성 및 중소기업 취업연계

〈 전년대비 달라지는 내용 〉

구분	'25년	'26년
지원대상	사업 운영에 결격 사유가 없는「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91조의 특성화고등학교	변동없음
지원내용	교과과정 개발·운영비, 현장실습비, 연수비 등 지원	변동없음
지원규모	특성화고 158개교	특성화고 150개교
지원예산	27,675백만원	27,637백만원
특화교육	신산업·신기술+스마트공장+지역특화산업(신규)	변동없음
신청접수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신청	변동없음

지원대상

- 신청자격 : 제조업 및 지식기반 서비스 분야를 중심으로 전 산업 분야의 차별화된 인력양성과 취업연계가 가능한 특성화고등학교 (특성화고 재학생 및 중소기업 참여)
- 지원조건 : 사업 운영에 결격 사유가 없는「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91조의 특성화고등학교

- 우대사항 : 지역특화산업, 신산업·신기술, 스마트공장 관련 맞춤반 운영이 가능한 특성화고등학교

신청제외 대상

▸ 대기업, 중견기업, 고용보험 미가입 중소기업(주점업 등 일부 업종 지원제외)

지원내용

- 지원 세부내용

모듈	프로그램	주요내용
1 현장중심 교육과정 운영	1. 맞춤반(취업/산학)	기업, 협·단체와 채용협약 후 맞춤형 교육
	2. 1팀 1기업 프로젝트	기업현장 문제해결을 위한 팀프로젝트
	3. 교수학습자료 개발	현장중심 교육 운영을 위한 학습자료 개발
2 취업역량 강화 및 취업연계	1. 현장학습 프로그램	현장견학,현장체험,현장실습 활동
	2. 전공동아리 프로그램	취업중심 전공동아리 활동 지원
	3. 외부전문가 활용	산학협력교사 등 취업 관련 외부전문가 활용
3 특성화 마인드제고	1. 진로지도 프로그램	취업마인드 제고 및 맞춤형 진로지도
	2. 중소기업 이해연수	중소기업 인식개선을 통한 진로선택폭 확대
	3. 교원 직무연수	교원 전문성 향상 및 특성화 마인드 제고

- 지원규모 : 특성화고 150개교
- 지원금액 : 한 학교당 평균 1.37억원

신청·접수

- 공고(예정) 시기 : 1월 중
- 신청방법 : 중소기업 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신청 (https://www.smes.go.kr/ sanhakin)

-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제출
- 선정평가 : 성과평가(서면+대면평가)를 통해 최종 선정

심사·평가 주요내용

▸ 특성화 목표 및 계획, 사업 인프라 구축 맞춤형 교육과정, 취업연계 역량 등

- 추진절차 :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인력정책과 : 044-204-7445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인력지원처 : 055-751-9862, 9863, 9865, 9867
-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smes.go.kr/sanhakin) 참고

참고사항

① 전년도 사업공고

- 공고명 : '25년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참여기관 모집 공고
  - (경로)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 알림소식(새소식) 〉 사업공고 〉 (검색) 특성화고
  - (홈페이지)

Q&A

Q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에 기업 참여 방법은?**

A 중소기업 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es.go.kr/sanhakin)을 통해 참여 가능합니다.

(경로) ① 중소기업 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 접속
② [사업 신청] → [기업회원 로그인]
③ [신청 관리] → [사업참여기업 신청]

* 중소기업 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 내 공지사항에 신청 매뉴얼 게시

Q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특성화고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A 참여학교 현황 및 연락처는 중소기업 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es.go.kr/sanhakin)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경로) ① 중소기업 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 접속
② [사업 안내] → [정보마당] → [참여학교 현황]

중소기업 인력양성대학(기술사관 육성)

사업개요

직업계고-전문대 연계교육과정(2+2년) 운영을 통해 중소기업 현장 맞춤형 전문기술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여 중소기업에 취업하도록 연계

지원대상

- 신청자격 : 직업계고-전문대-중소기업 연계교육과정 운영이 가능한 사업단
  - (전문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전문대
  - (직업계고) 「초 · 중등교육법」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마이스터고등학교), 일반고등학교 특성화과
  - (참여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전체 협약기업 10%내 중견기업 가능)

신청제외 대상

- (대학) (전문)대교협 기관평가인증 미인증 대학, 한국사학진흥재단 재정진단에 따른 경영위기 대학 등
- (기업)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지원내용

- (학생) 직업계고 2~3학년 진학 시 선발하여 전문대까지 연계 교육을 받은 후 협약기업으로 취업하게 되며, 산업기사 취득시 산업기능요원으로 군 복무 대체 가능 (협약기업이 병역지정업체인 경우)
- (중소기업) 사업단 운영 전문대와 협의하여 기술사관 프로그램 (현장체험, CEO강의, 인력 채용 등)에 참여 가능, 병역지정업체 선정 시 우대 등

대 상	지 원 내 용
참여학생	• 직업교육, 졸업 후 협약기업 취업, 연계대학 진학 등
협약기업	• 우수 기술인력 확보, 병역지정업체 우선 선정 등

- 지원규모 : 19개 사업단 / 연간 참여기업 800개사 내외

신청·접수

-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기술사관 육성사업 참여 사업단 중 양성분야가 일치하는 사업단과 협의하여 프로그램 참여 및 졸업 예정자 채용협약 가능
- 신규 전문대(사업단) 모집 : 1월 공고 예정, 신청 희망 대학은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 학교(기관) 회원으로 가입 후 온라인 신청

심사·평가 주요내용

▸ 사업추진전략, 프로그램 운영 계획, 학생 · 교원 역량강화 등

- 추진절차 : 모집공고(신청접수) → 현장실태조사 → 대면평가 → 최종선정 → 협약체결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인력정책과 : 044-204-7445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인력지원처 : 055-751-9818, 9875
-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https://www.smes.go.kr/sanhakin)
- 기업마당(www.bizinfo.go.kr)
- '기술사관 육성사업' 참여 학교 현황은 중소기업인력지원 종합관리시스템에서 확인 가능
  - (경로) 중소기업 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 (smes.go.kr/sanhakin) 〉 정보마당 〉 참여학교 현황 〉 '기술사관'
  - (홈페이지)

중소기업 인력양성대학(중소기업 계약학과)

사업개요

대학과 협약을 통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학위과정(전문학사~박사)을 설치하고, 협약기업의 재직자 또는 채용예정자가 2년간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등록금 등 교육비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 직무역량 향상

지원대상

- 신청자격
  - (대학) 고등교육법 제2조의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
  - (참여기업)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 (학생) 현 근무 중소·중견기업 6개월 이상 재직한 근로자(재교육형)
- 지원조건(학생)
  - (재교육형 일반) 해당기업 6개월 이상 재직한 근로자
  - (재교육형 동시채용) 입학당시 해당기업에 재직 경력이 없어야 함. 단, 학기개시일 기준, 해당기업에 취업해야 함

신청제외 대상

- ▸ (대학) (전문)대교협 기관평가인증 미인증 대학, 한국사학진흥재단 재정진단에 따른 경영위기 대학 등
- ▸ (기업)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지원내용

- (학생) 최대 2년간 등록금 지원
  - 재교육형(일반) : 전문학사 · 학사과정은 기준등록금의 85%, 석·박사 과정은 65%
  - 재교육형(동시채용) : 기준등록금 100% 지원
- (대학) 학과운영비로 학기당 3,500만원 이내 지원
- (기업) 근로자 역량 향상 지원 및 장기재직(졸업후 의무근무 1~2년) 등
  -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 참여시 가점부여
  - 인재육성형 기업지정 신청시 가점 부여
- 지원규모 : 92개 학과 / 연간 참여기업 1,500개 내외

신청·접수

- 공고(예정) 시기
  - (학생) 봄학기 11~2월, 가을학기 6~8월(학과별 학사일정 상이)
  - (대학) 1월 공고 예정
- 신청방법
  - (학생) 중소기업 계약학과를 운영하는 학과에 신청서 제출
  - (대학)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https://www.smes.go.kr/sanhakin)'에 학교(기관) 회원으로 가입 후 온라인 신청

    (기관) 회원으로 가입 후 온라인 신청
- 선정평가
  - (학생) 원서접수 → 서류평가 → 면접평가(학과별 입학 공고 확인 필요)
  - (대학) 현장실태조사 → 대면평가(전문위원회)

심사·평가 주요내용

▸ (학생) 학과 전공-업무 적합성, 학업 계획 등
(대학) 사업추진 전략, 프로그램 운영 계획, 학생 · 교원 역량강화 등

- 추진절차
  - (학생) 모집공고(대학) → 서류접수·면접평가(대학) → 3자협약(대학-기업-학생)
  - (대학) 모집공고(신청접수) → 현장실태조사 → 대면평가 → 최종선정 → 협약체결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인력정책과 : 044-204-7445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인력지원처 : 055-751-9818, 9875
-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
  (https://www.smes.go.kr/sanhakin)
- 기업마당(www.bizinfo.go.kr)

참고사항

- ‘중소기업 계약학과’ 운영 현황은 중소기업인력지원 종합관리시스템에서 확인 가능
  - (경로) 중소기업 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
    (smes.go.kr/sanhakin) 〉 정보마당 〉 참여학교 현황 〉 ‘계약학과’
  - (홈페이지)

중소기업-근로자간 성과공유 확산 사업

사업개요

중소기업 성과공유 문화 확산을 통한 대-중소기업 임금격차 해소 및 좋은 일자리 창출로 중소기업의 우수 인력 유입 촉진

〈 전년대비 달라지는 내용 〉

구분	'25년	'26년
지원 내용	- 병역지정업체 선정평가 시 가점 - 중진공 정책자금 한도 우대 - 세제 혜택	- 병역지정업체 선정평가 시 가점 - 중진공 정책자금 한도 우대 - 세제 혜택 - (추가) 중소기업 지원사업 평가 시 '일자리평가' 가점

지원대상

성과공유 유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근로자와 성과를 공유하고 있거나 공유하기로 약정한 중소기업

【성과공유 유형】

① 성과급 ② 임금수준상승 ③ 우리사주제도 ④ 주식매수선택권
⑤ 성과보상공제 ⑥ 복지기금운영 ⑦ 정부지정기업

지원내용

- 병역지정업체 선정평가 시 가점
- 중진공 정책자금 한도 우대
- 중소기업 지원사업 평가 시 '일자리 평가' 가점
- 세제 혜택(단, 성과급 유형에 한함)
  - (기업) 성과급의 10%를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
  - (근로자) 성과급 수령에 따른 근로소득세 증가분의 50% 공제

신청·접수

- 공고(예정) 시기 : 상시모집
- 신청방법 : 산학인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산학인 홈페이지) www.smes.go.kr/sanhakin
- 제출서류 : 성과공유 유형별 증빙서류

심사·평가 주요내용

- ▸(공통) 상시근로자 1인당 성과급을 제외한 연간 임금총액의 감소 여부 확인
- ▸(선택) 성과공유유형에 해당하는 증빙서류 확인

- 추진절차

신청	→	심사	→	승인
기업		중진공		중진공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인력지원처 : 055-751-9825

중소기업 외국전문인력 활용 지원사업

지역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관계부처(교육부, 법무부 등)와 협력하여 외국인 유학생의 중소기업 취업지원을 촉진하고, 중소기업-외국인 유학생 매칭에서 비자추천까지 원스톱 지원

1. 글로벌 인재 취업 선도대학

사업개요

-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취업역량 강화 교육 및 현장 실무경험 지원 등을 통해 외국전문인력으로 양성하고 취업 매칭하여 중소기업 빈 일자리 해소

지원대상

- 신청자격 : 외국인 유학생 대상 취업역량 강화 교육 및 산학연계가 가능한 4년제 대학교 또는 전문대학, 법무부 '육성형 전문기술학과'에 선정된 특정학과

지원내용

- 지원 세부내용

① (지원대상) 중소벤처기업 취업을 희망하는 유학생(D-2) 및 구직비자 보유 졸업생(D-10) * 졸업학년 우선 선정

② (운영내용) 취업역량 강화 프로그램과 취업실전 대비 프로그램으로, 총 200시간 이상 운영

신청·접수

- 공고(예정) 시기 : '26년 2월 말
- 선정절차 : 서류·발표·현장평가 후, 선정위원회를 통해 최종 선정
- 추진절차

① 공고·접수 → ② 평가 → ③ 선정·발표 → ④ 사업운영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인력정책과 : 044-204-7443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인력지원처 : 055-751-9452

2. K-수출전사 아카데미

사업개요

- 무역 관련 전문기관을 활용하여 외국인 유학생을 수출전문인력으로 양성하고 중소기업 채용 연계를 통해 기업 경쟁력 확보 지원

지원대상

- 신청자격 : 외국인 유학생 대상 수출직무 교육 인프라(교육과정·강사·강의장 등) 및 취업매칭 네트워크 확보 기관

지원내용

- 지원 세부내용

① (지원대상) 중소벤처기업 취업(특히 수출직무)을 희망하는 유학생(D-2) 및 구직 비자 보유 졸업생(D-10) * 졸업학년 우선 선정

② (운영내용)「무역실무 이론 → 수출·마케팅 실습 → 취업코칭」의 취업맞춤반 교육으로, 총 200시간 이상 운영

신청·접수

- 공고(예정) 시기 : '26년 1월

  * 단, '25년 운영기관이 협약 연장될 경우 공고되지 않을 수 있음.

- 추진절차

① 공고·접수 → ② 운영기관 선정 → ③ 유학생 모집 → ④ 사업운영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인력정책과 : 044-204-7443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인력지원처 : 055-751-9452

3. K-Work 플랫폼

사업개요

- 유학생과 중소기업 간 구인·구직 정보제공 및 취업매칭 지원을 위한 “외국인 유학생 전용 취업매칭 플랫폼” 서비스 제공

지원대상

- 신청자격 : 졸업(예정) 외국인 유학생(D-2, D-10) 및 외국인 채용을 희망하고, 중기부 고용 추천 27개 직종에 해당하는 국내 중소벤처기업 등

지원내용

- 지원 세부내용

① 채용·인재 정보검색 기능을 중심으로 관심 기업 및 인재를 분류·관리하고, 구인·구직 선호항목 기반의 AI 매칭 지원

② 채용공고 다국어 번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용계약 체결시 신속한 비자발급 지원을 위한 고용추천(E-7-1) 등 연계지원

신청·접수

- 홈페이지 : k-work.or.kr
- 추진절차(기업)

① 기업회원가입 → ② 구인공고등록 → ③ 지원자 확인 및 면접요청 → ④ 고용계약

- 추진절차(외국인)

① 개인회원가입 → ② 이력서등록 → ③ 구인공고 확인 및 지원하기 → ④ 고용계약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인력정책과 : 044-204-7443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인력지원처 : 055-751-9820

4. 비자추천(E-7-1, E-7-4)

사업개요

- (E-7-1 고용추천) 국내 중소기업과의 채용계약에 따라 전문직종(27개)에 종사하려는 외국인 유학생 등을 위해 E-7-1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고용추천 지원
- (E-7-4 전환추천) 최근 10년간 4년 이상 비전문취업(E-9), 방문취업(H-2) 등의 자격으로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이 E-7-4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전환추천 지원

지원대상

- E-7-1 고용추천 : 국내 전문학사 이상 졸업(예정) 외국인 유학생(D-2, D-10) 및 법무부 장관이 확정·공고한 임금요건 지급 가능한 국내 중소기업
- E-7-4 전환추천 : 국내 4년 이상 체류한 K-Point E74 200점 이상 득점자 및 신청 외국인이 산재보험 가입을 완료한 국내 제조업종 중소기업

* 단, 법무부가 정한 요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지원내용

- 지원 세부내용

① (E-7-1 고용추천) 고용추천 확정명단을 중기부에서 출입국·외국인 관서에 통보

② (E-7-4 전환추천) 전환추천 확정명단을 중기부에서 법무부에 통보

신청·접수

- 공고(예정) 시기 : '26년 1월 이후

  *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고, 연중 상시모집

- 선정절차 : 중진공 서류검토(심의) 및 중기부 최종검증 후 선정
- 추진절차(E-7-1 고용추천)

① 공고·접수 → ② 서류검토 및 외부심의 → ③ 최종검증 → ④ 고용추천

- 추진절차(E-7-4 전환추천)

① 공고·접수 → ② 서류검토 → ③ 최종검증 → ④ 전환추천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인력정책과 : 044-204-7443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인력지원처 : 055-751-9879

연수사업

사업개요

전국 6개 중소기업 전문연수원 운영을 통해 중소벤처기업 임직원의 직무능력 향상 및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육 지원

* 6개 연수원 : 중소벤처기업(안산), 강원(태백), 충청(천안), 호남(광주), 대구경북(경산), 부산경남(창원)

지원대상

- 신청자격 : 중소벤처기업 경영자 및 재직자, 구직자 등
- 지원조건 : 연수신청 연수생(기업)이 연수비 부담

  * 고용보험 환급과정, 할인과정, 무료과정 일부 운영
- 우대사항 : 소기업, 정책연계 과정, 신규과정 등 연수비 할인

신청제외 대상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지 않는 대기업

지원내용

- 지원 세부내용 : 기술·경영분야 직무역량향상연수, 정책연수, 기업현장 맞춤연수, 이러닝·마이크로러닝 등 연수운영

  - (직무역량향상연수) 디지털신산업, 뿌리·생산기술 연수 등

- (정책연수) 정부정책 연계교육, 취업교육, 수출교육 등
- (맞춤연수) 중소기업 니즈에 따라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설계
- (온라인연수) 웹 및 모바일 기반의 자기주도적 교육 프로그램

◉ 지원규모 : 연간 60,000명 내외

◉ 연수분야

연 수 분 야				주 요 연 수 내 용
오프라인	직무역량향상연수	기술연수	디지털 신산업	스마트제조, AI, 빅데이터, 시스템 반도체, 지능형 로봇, 이차전지, 기타 신산업 분야
			뿌리기술	주조·소성가공·용접, 표면처리·열처리·금형
			생산기술	기계설계·기계가공, 정밀측정·도면해독, 자동화·유공압, 플라스틱·고무
		생산품질		제품·공정개발, 생산관리, 현장혁신, 국제인증, 품질관리
		경영		경영일반·직무, 창업, 산업안전, 자기개발, 기업가 정신
		최고경영자		중소기업 CEO 명품아카데미
	맞춤연수	문제해결형		개별 기업의 교육니즈를 반영, 연수과정을 맞춤형으로 설계하여 실시하는 연수
		현장맞춤형		기업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실시하는 연수
		조직활성화		조직분위기 쇄신으로 노사화합과 생산성 향상 도모
	정책연수			중기지원정책연수, 취업연계연수, 협업·산학협력
온라인	이러닝연수			스마트제조, 뿌리기술, 경영 등의 직무중심 이러닝연수
	마이크로러닝			최신 트렌드 중심 마이크로러닝(7분내외 콘텐츠)

신청·접수

◉ 신청방법 :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상시 신청

- (홈페이지) http://ssup.kosmes.or.kr

◉ 제출서류 : 연수신청서(훈련위탁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 연수비 할인대상 해당 시 증빙서류 별도 제출 필요

◉ 지원절차 : 연간 연수과정 일정에 따라 교육 신청 및 참여 가능

연수신청	연수비 수납 연수등록	연수과정 참여	수료증 발급	고용보험 환급
연수원 홈페이지	온라인 결제 무통장 입금 현장결제	집합연수 온라인연수	홈페이지 발급 교육생 이메일 송부	해당시

문의처

◉ 연수원 연락처

구 분	지 역	연 락 처	FAX
중소벤처기업연수원	경기 안산	031-490-1472	031-490-1116
호남연수원	광주광역시	062-250-3000	062-250-3077
대구경북연수원	경북 경산	053-819-5001~2	0505-047-4423
부산경남연수원	경남 창원	055-548-8045~6	055-548-8080~1
충청연수원	충남 천안	041-559-9225	0505-047-4097
강원연수원	강원 태백	033-550-5000	033-550-5015
온라인연수	-	031-490-1288	031-490-1118

Q&A

Q **고용보험환급과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연수신청 시 훈련위탁계약서와 회사통장사본을 송부해주시면 됩니다.

다만, HRD-Net에 노동부 환급 계좌등록을 해주셔야 환급이 가능합니다.

Q **연수생이 가져와야 할 서류나 준비물은 무엇인가요?**

A 사전에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때문에 연수생이 특별히 가져와야 될 서류는 없습니다. 연수생은 숙박에 필요한 세면도구 및 개인물품과 필기도구를 지참하시면 됩니다.

청년창업사관학교

사업개요

유망 창업아이템 및 혁신 기술을 보유한 우수한 청년창업자를 발굴하여 창업 사업화자금, 교육·코칭, 투자유치 등 창업 全 단계를 패키지 방식으로 일괄지원

〈 전년대비 달라지는 내용 〉

구분	'25년	'26년
모집 분야	글로벌형, 투자형, 지역특화형 등 권역별 3개 특화 프로그램 지원	• (기본과정) 창업기초교육, 기술사업화(사업화자금 최대 1억원) 지원 • (심화과정) 글로벌진출, 딥테크 분야 기술 고도화(사업화자금 최대 2억원) 지원 * 서울, 광주, 경산 등 3개 청창사
지원 대상	창업 3년 이내 청년창업자	• (기본과정) 창업 3년 이내 청년창업자 • (심화과정) 글로벌·딥테크 분야 창업 7년 이내 청년창업자 * 청창사 졸업기업의 경우 연령제한 無

지원대상

- 신청자격 : 만39세 이하 청년창업자
  * (기본과정) 창업 3년 이내, (심화과정) 창업 7년 이내
- 지원조건 : 총사업비의 70%
  * (기본과정) 최대 1억원, (심화과정) 최대 2억원

◉ 우대사항 : 초격차 · 신산업 분야 또는 해당 청년창업사관학교 소재의 지역 주력산업 등을 영위하는 기업 우선 선발

신청제외 대상

-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중(징수유예 포함)인 자(기업)
-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화의·법정관리·기업회생신청·청산절차 등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자(기업)
-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자(기업) 및 기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 중인 자(기업)(단, 예비창업패키지 지원기업은 제외)
- 타 중앙부처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 중인 자(기업)
- 지원제외 대상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자
-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기업)
- 신청일 현재 휴업중인 기업
- 기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지원내용

◉ 지원 세부내용

- (사업비 지원) 기술개발 및 시제품제작비, 지재권 취득 및 인증비, 마케팅비 등 지원
- (창업공간) 청년창업사관학교에 창업준비공간(개별, 공동)을 제공
- (창업교육) 기업가정신 및 창업실무역량 등 체계적 기술창업 교육 실시
- (창업코칭) 전문인력을 1대1 배치하여 창업 全 과정 집중지원
- (기술지원) 제품설계부터 시제품제작 등 제품개발 기술 및 장비지원
- (특성화 지원) 글로벌 진출 준비, 투자 역량 강화, 지역 특화 프로그램 등 지원
- (연계지원) 정책자금 연계, 국내·외 판로, 인력 지원 등

- 지원규모 : 950명(개사)
- 지원금액 : 1,025억원

신청·접수

- 공고(예정) 시기 : 1월 3주(예정)
- 신청방법 : 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신청관련 기타 증빙자료 등 '26년 사업 공고문 참조
- 선정평가 : 총 2단계 평가(서류→발표)를 통해 최종 선정

심사·평가 주요내용

▸ 사업계획서의 적정성, 사업모델(BM)에 대한 기술성, 실현 가능성, 성장 가능성 및 사업화 추진 계획 등

- 추진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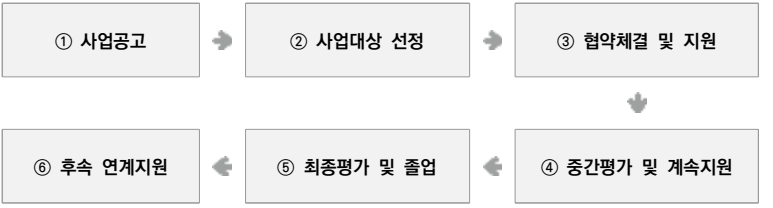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청년정책과
  (전화) 044-204-7951,7955
  (이메일) nak999@korea.kr, k2002kjy@korea.kr

구 분		전화번호(미정)
수도권 및 강원	본교(안산)	031-490-1386, 1399
	서울	02-2130-1426~9, 02-2130-1432~3, 1435~7
	경기동부(구리)	031-554-2784~8
	인천	032-858-7860~1
	경기북부(파주)	031-949-9687~8
	강원(원주)	033-748-9266, 9268~9
충청권	대전	042-862-9937~8
	세종	044-850-5631~2
	충남(천안)	041-559-9282~9
	충북(청주)	043-903-9357~8, 043-230-6832
호남권 및 제주	광주	062-250-3031~2, 3034, 3039, 3042~3, 3069
	전북(전주)	063-276-8219~20
	전남(나주)	061-331-8708
	제주	064-759-9647~9
영남권	대구	053-656-8176~8
	경북(경산)	053-819-5053
	부산	051-305-9930~31
	울산	052-276-8937~9
	경남(창원)	055-548-8051, 8053, 8062
본사	창업지원처	055-751-9241, 9837

◉ 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또는
K-Startup 창업지원포털(www.k-startup.go.kr) 홈페이지 참조

참고사항

① 전년도 사업공고

◉ 공고명 : 2025년 창업성공패키지 청년창업사관학교 15기 입교생 모집 공고

- (경로) K-Startup 〉 사업공고 〉 모집마감 〉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
- (홈페이지)

Q&A

Q **여러 지역의 청년창업사관학교 동시 지원이 가능한가요?**

A 1개 청창사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2개 이상 청창사 지원은 불가능하므로 공고문을 참고하여 지역별 중점 지원 대상 및 지원 프로그램을 꼼꼼하게 확인하신 후 본인에게 필요한 청창사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Q **선정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A 선정절차는 서류심사와 발표심사로 진행됩니다. 접수 마감일까지 제출된 사업계획서, 증빙서류에 대해 서류심사를 진행하고, 서류심사 합격자를 대상으로 창업 사업화 모델 및 사업화 추진 계획 등에 대해 발표심사를 진행하여 최종 선발합니다.

Q **사관학교에 선정된 후 현금 부담금은 언제까지 납부해야 하나요?**

A 선정결과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 중진공에서 안내한 계좌로 현금부담금(총사업비의 10% 이상)을 납부해주셔야 합니다.

스타트업 AI 기술인력 양성-이어드림 스쿨

사업개요

청년을 인공지능 실무 기술 인력으로 양성하여 청년인재와 혁신 벤처 · 스타트업 간 미스매치 해소 및 스타트업의 기술 경쟁력 제고

〈 전년대비 달라지는 내용 〉

구분	'25년	'26년
교육인원	200명(대면 50명, 비대면 150명)	200명 내외(전국 온·오프라인 블렌디드 방식)
교육장소	서울 및 온라인	서울 및 거점 지역으로 확대
교육내용	기초교육 전공생·비전공생 동시 진행 취업 교육 중심	기초 역량 평가 후 수준별 맞춤형 분반 운영 취업 + 창업 맞춤형 교육 강화

지원대상

- 신청자격 : 만 39세 이하의 대한민국 청년(학력·전공 무관)

신청제외 대상

▸ 교육과정 수료 및 수료 이후 즉시 취업이 어려운 재학생 및 휴학생, 직장인 등은 제외 (단, 전 과정 수료 및 즉시 취업이 가능한 졸업예정자는 신청 가능)

지원내용

- 지원 세부내용 : 인공지능 관련 학과의 4년 교육과정 및 실전 프로젝트까지 총 4단계에 걸쳐 집중 운영

- 공통기초: 교육 참여자의 IT 활용 수준에 따라 기초반과 실습반 분반 운영
- 공통심화: 현업에 즉시 적용 가능한 범용 AI 교육을 확대하고, 기초·심화 간 연계성을 높인 응용 AI 교육과정으로 고도화
- 인공지능 특화교육 : AI분석가(업무자동화 실무적용, 데이터 분석), AI 서비스개발자 (프론트·백엔드 학습, CI·CD 등)
- 인턴십 연계 프로젝트 : AI 전문 중소·스타트업과 협업하여 현업 수행형 인턴십 과정을 운영하고, 종료 후 채용 매칭을 연계
- 산업특화 실전 프로젝트 : 캐글 플랫폼 기반 모의·실전 경진대회 참가 및 산업특화 연계 프로젝트 실습
- 우수교육생 지원 프로그램 : 우수·취업인재에게 자기계발포상금·국외연수 지원, 성실인재 식대, 교통비 지원 등

◉ 지원규모 : 200명 내외(전국 청년 온·오프라인 블렌디드 방식)

◉ 지원금액 : 총 사업예산 29억원('26년 안)

신청 · 접수

◉ 공고(예정) 시기 : 2월

◉ 신청방법 : 교육생 모집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민간 사이트 별도 공지)

◉ 제출서류 : 참여신청서, 최종학력 졸업(예정) 증명서, 4대보험 가입확인서 등

◉ 선정평가 : 서류심사 → 적성검사 → 심층면접

심사·평가 주요내용

▸ 인공지능 상식평가 및 역량 면접

◉ 추진절차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청년정책과
(전화) 044-204-7952 (이메일) jy1480jy@korea.kr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청년창업사관학교
(전화) 02-2130-1418~9 (이메일) jbhan@kosmes.or.kr

◉ 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참고사항

① 전년도 사업공고

◉ 공고명 : 2025년 스타트업 AI기술인력 양성사업(이어드림 스쿨) 청년인재 모집공고

- (경로) K-Startup 〉 사업공고 〉 모집마감 〉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
- (홈페이지)

Q&A

Q **IT 관련 교육을 받지 않았어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A 네, 맞습니다. 학력이나 전공과 무관하게 만 39세 이하의 청년이라면 사업 신청이 가능합니다.

Q **사업에 선정되면 교육비는 얼마를 내야하나요?**

A 교육비는 따로 들지 않습니다. 교육대상자로 선정이 되시면 교육 비용은 내실 필요 없이 무료로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용어 설명

캐글(Kaggle) : 전세계 AI개발자 온라인 커뮤니티 및 AI경진대회 플랫폼 (190여개국 300만명 참여)

해외인력 취업매칭 지원

사업개요

국내 중소 · 벤처기업의 AI · SW 인력난 해소를 위하여, 기업수요에 기반한 베트남 SW인재 발굴 및 적기 매칭 지원

〈 전년대비 달라지는 내용 〉

구분	'25년	'26년
지원대상	베트남 현지 대학 졸업(예정)자 및 현지 구직자 200명	AI · SW분야 해외 인재 채용을 희망하는 중소벤처기업
지원내용	교육반/취업반 2-track 프로그램	베트남 SW 전문인력 취업연계

지원대상

- 신청자격 : AI · SW분야 해외 인재 채용을 희망하는 중소벤처기업
- 우대사항 : AI,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 기술 혁신 또는 글로벌 시장 진출을 목표로 하는 기업

신청제외 대상

-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중(징수유예 포함)인 자(기업)
-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화의·법정관리·기업회생신청·청산절차 등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자(기업)
- 지원제외 대상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자
-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기업)
- 신청일 현재 휴업중인 기업
- 기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지원내용

- 지원 세부내용 :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이 제출한 인력 수요를 바탕으로 기술 역량, 경력 사항, 직무 적합도를 검증하여 취업매칭

〈 베트남 SW인력 채용형태 〉

구분	근무 형태
리모트인턴십	현지 운영사 오피스 공간에서 근무
현지 재택 근무	베트남 개발자가 본인의 자택에서 원격으로 근무
국내채용	국내 근무지로 직접 출근하여 근무
현지채용	베트남 현지 근무지로 직접 출근하여 근무

〈현지 취업매칭 주간 프로그램 운영〉

- (해커톤) 기업과제 연계형 해커톤을 개최하여 비즈니스 과제나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여 우수 인재에 대한 취업연계 진행
- (현지 채용박람회) 채용 수요기업 대상 베트남 현지 채용 면접 및 리모트인턴십 근무 환경 점검을 통해 사업 신뢰도 증진
- (컨퍼런스) 한국 IT 분야 채용 트렌드 이해와 맞춤형 역량 강화 교육 제공과 채용 기업 소개 및 네트워킹을 통해 매칭 성공률 향상

- 지원규모 : 200명
- 지원금액 : 총 사업예산 10억원

신청·접수

- 공고(예정) 시기 : 3월
- 신청방법 :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이메일 등
- 제출서류 : 신청서(구인분야, 연봉 조건 등 포함)
- 추진절차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청년정책과
  (전화) 044-204-7952 (이메일) jy1480jy@korea.kr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청년창업사관학교
  (전화) 031-490-1368 (이메일) hero@kosmes.or.kr
- 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Q&A

Q **베트남 개발자 채용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상단의 사업 수행기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청년창업사관학교)로 연락 주시면 채용 풀에 등록하여 취업매칭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Q **베트남 개발자의 개발 역량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요?**

A SW 분야 실무경력을 보유한 개발자들을 대상으로, 서류전형, 코딩테스트, 심층면접 등을 거친 검증된 우수 인력 풀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탄소중립 설비투자 지원

사업개요

중소기업의 에너지 고효율 및 친환경 설비도입 지원을 통한 에너지 효율 향상 및 친환경 전환 촉진

〈 전년 대비 달라지는 내용 〉

구분	'25년	'26년
보조율	· 보조율 50%	· (상향) 보조율 70%
우대 조건	· 탄소多배출 업종	· (추가) 산업단지 비입주 기업
지원 설비	· 에너지 고효율 설비, 탄소배출 모니터링 설비 등	· (추가) AI 기반 공정 최적화 설비, 신재생 에너지 설비 등

지원대상

- 신청자격 : 저탄소 공정전환이 시급한 중소기업(배출권거래제, 목표관리제 등 의무감축 대상 제외)
- 우대사항 : 탄소 多배출업종, 산업단지 비입주기업

신청제외 대상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진공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참여 가능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기업 또는 대표자
- 부도 및 휴·폐업 기업
-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 중소기업 탄소중립 설비투자 지원 실시설계지원 수행사, 설비도입지원 수행사로 참여하고 있는 기업 또는 그 특수관계 기업
- 대표자 또는 기업이 보조금법 위반 등으로 정부 지원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대표자 또는 기업이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지원이 합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원내용

- 지원 세부내용 : 탄소중립 전략수립 및 탄소감축 설비 도입을 패키지로 지원
  - 지원설비: 인버터형공기 압축기, 고효율 기기, 모니터링 시스템 등
- 지원규모 : 약 80여개사
- 지원금액 : 업체당 최대 3억원 지원

신청·접수

- 공고(예정) 시기 : ’26. 1월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ESG · 탄소중립 통합플랫폼 (esg.kosmes.or.kr)을 통해 신청
- 제출서류 : 사업 신청서 및 증빙서류 등
- 선정평가 : 서류 평가 → 현장점검 → 대면평가

심사·평가 주요내용

▸ 사업 계획의 타당성, 온실가스 감축량, 탄소 다배출 업종 영위 여부 등

◉ 추진절차 :

신청 · 접수	평가 · 선정	협약체결	실시설계 · 설비도입
ESG · 탄소중립 통합 플랫폼	서류평가→현장점검 →대면평가	시행기관·선정기업	수행기관 매칭 및 사업수행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제조혁신지원처 : 055-751-9849

- (온라인 문의) ESG · 탄소중립 통합플랫폼(esg.kosmes.or.kr)

참고사항

① 전년도 사업공고

◉ 공고명 : 중소기업 탄소중립 설비투자 지원 참여기업 모집 공고

- (경로) ESG통합플랫폼 〉 자료실 〉 공지사항
- (홈페이지)

중소기업 탄소중립 사업화 지원

사업개요

대규모 자금과 장기간 소요되는 탄소중립 기술의 상용화 및 실증 지원

〈 전년 대비 달라지는 내용 〉

구분	'25년	'26년
지원 규모	10개사	17개사
지원 유형	· 사업화(6개사), 실증(4개사)	· 사업화(10개사), 실증(4개사) · (추가) 투자 연계형(3개사)
제출 서류	· 사업 신청서 등 총 14종	· (간소화) 신청서 통합 등 총 7종

지원대상

- (기술 사업화) 탄소중립 관련 기술취득(3년이내) 중소기업
  - 특허권(기술이전, 전용실시건 등 포함), 국가 R&D 성공판정 받은 기업
- (현장실증) 보유기술이 시제품제작 단계 이상(TRL 6단계 이상)으로 국내외 수요기업·공공기관 등에서 현장 기술검증이 필요한 기업
  - 수요기업의 구매조건부 MOU, 의향서, 계약서 등 수요기반 증빙 必

* 필수 증빙자료는 공고일 기준 수요처와 6개월 이내 체결한 증빙자료에 한함

- (투자연계) 기후테크 혁신 스타트업*과 직전 3년간 해당 기업에 투자한 개인, AC, VC 등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창업기업"

지원내용

- (기술 사업화) 탄소중립 기술 사업화 촉진을 위한 컨설팅, 제품 개선, 국내외 인·검증 등 사업화 지원(업체당 평균 1.5억원 지원, 10개사 내외)
- (현장실증) 기후테크 등 탄소중립 혁신기술을 국내·외 수요처 현장성능 점검, 제품개선·설치 등 실증지원(업체당 평균 4.5억원 지원, 4개사 내외)
- (투자연계) 바이어 · 유통사 매칭 등 판로 개척, 특허 · 회계 전문가 멘토링 등 창업보육 프로그램, 국내 · 외 전시회 참가 지원 등(컨소시업당 최대 4억원 지원, 4개 컨소시엄 내외)

신청·접수

- 공고(예정) 시기 : '26. 1월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ESG · 탄소중립 통합플랫폼 (esg.kosmes.or.kr)을 통해 신청
- 제출서류 : 사업 신청서 및 증빙서류 등
- 선정평가 : 서류 심사 → 현장평가

심사·평가 주요내용

▸ 사업 계획의 타당성, 보유 기술 수준, 정책 지원의 시급성 등

◉ 추진절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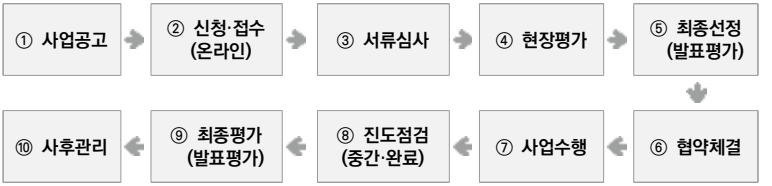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제조혁신지원처 : 055-751-9586

- (온라인 문의) ESG · 탄소중립 통합플랫폼(esg.kosmes.or.kr)

참고사항

① 전년도 사업공고

◉ 공고명 : 중소기업 탄소중립 사업화 지원 공고

- (경로) ESG통합플랫폼 〉 자료실 〉 공지사항
- (홈페이지)

중소기업 기후공시 · 공급망 실사대응 기반구축

사업개요

협력 중소기업에 지속가능경영 수준진단을 통한 맞춤형 역량강화 지원(컨설팅, 교육 등)을 제공하여 EU 공급망 실사 지침 시행(`28.7월~) 대비 공급망 재편 등 리스크 점검지원

〈 전년 대비 달라지는 내용 〉

구분	'25년	'26년
지원 규모	· 인증 획득 및 ESG 경영보고서 작성 등 3단계 지원 비율 5%	· (확대) 3단계 지원 비율 20%

지원대상

- 신청자격 : `28.7월부터 시행 예정인 EU 공급망 실사 지침(CSDDD) 등에 직·간접 영향을 받는 국내·외 원청기업의 협력 중소기업
  * 국내EU 수출액 15억 유로 초과(50여개), EU매출액 15억 유로 및 직원수 5천명 초과
- 지원조건 : 수준진단 결과에 따른 맞춤형(1/2/3단계) 컨설팅 및 인증지원(보조율 100%)

신청제외 대상

- 휴 · 폐업중인 경우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기업 또는 대표자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진공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 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참여 가능

-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회생·파산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대표자 또는 기업
-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 대표자 또는 기업이 보조금법 위반 등으로 정부 지원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대표자 또는 기업이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지원이 합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원내용

◉ 지원 세부내용 :

- (1단계) ESG 통합플랫폼을 활용한 온라인 자가 진단 및 전문가 현장 방문을 통한 심층 진단(200개사)
- (2단계) 진단 수준별 심화컨설팅(탄소배출량 산정, 중대재해 예방) 및 글로벌 인증(ISO14001, ISO45001 등) 취득지원 등(100개사)
- (3단계) 협력 중소기업 재직자를 대상으로 글로벌 이니셔티브 등에서 제안한 지속가능경영 관련 인증 집체 교육(40개사)

신청·접수

◉ 공고(예정) 시기 : ’26. 2월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ESG · 탄소중립 통합플랫폼 (esg.kosmes.or.kr)을 통해 신청

- 제출서류 : 사업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 선정평가 : 요건 검토 → 선정평가

심사·평가 주요내용

▸ EU 공급망 실사지침(CSDDD) 등의 직 · 간접 영향도 등

- 추진절차 :

① 사업공고 → ② 신청접수 → ③ 서류심사 → ④ 선정심의 → ⑤ ESG자가진단 → ⑥ ESG심층진단 → ⑦ 맞춤형 연계지원 → ⑧ 후속지원·모니터링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제조혁신지원처 : 055-751-9526
  - (온라인 문의) ESG · 탄소중립 통합플랫폼(esg.kosmes.or.kr)

참고사항

① 전년도 사업공고

- 공고명 : 중소기업 기후공시, 공급망 실사 기반구축
  - (경로) ESG통합플랫폼 〉 자료실 〉 공지사항
  - (홈페이지)

디지털 기반 자동화 MRV* 보급 사업

* MRV : 온실가스 배출량(또는 감축량)을 정확하게 측정(Measurement)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고 보고(Reporting)하며, 신뢰성 있게 검증(Verification)하는 체계

사업개요

탄소 배출량 산정을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 및 에너지 사용량 측정을 위한 계측 인프라 구축, 적격 검증기관을 활용한 배출량 검증 지원

〈 전년 대비 달라지는 내용 〉

구분	'25년	'26년
지원 대상	· CBAM 대상 품목(6개) 수출 중소기업	· (품목 확대) 6개 → 8개 품목

지원대상

- 신청자격 : EU로 CBAM 대상 품목(철강, 알루미늄 등)을 직·간접적으로 수출(희망)하는 중소기업

신청제외 대상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 체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 중진공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참여 가능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기업, 휴·폐업 기업
- 이행보증보험증권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 대표자 또는 기업이 보조금법 위반 등으로 정부 지원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대표자 또는 기업이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지원이 합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원내용

- 지원 세부내용 : 디지털기반 자동화 MRV솔루션(S/W+H/W+검증) 보급
  - (S/W) 전기 등 에너지 사용량 기반 탄소 배출량 산정 S/W
  - (H/W) 공정 · 설비별 에너지 사용량 계측기, 데이터통신 장비
  - (검증) 배출량 산정값의 신뢰성 담보를 위한 전문 기관의 검증
- 지원규모 : 약 20여개사
- 지원금액 : 업체당 평균 40백만원 지원(보조율 70%)

신청·접수

- 공고(예정) 시기 : ’26. 3월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ESG · 탄소중립 통합플랫폼 (esg.kosmes.or.kr)을 통해 신청
- 제출서류 : 사업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 선정평가 : 요건 검토 → 선정평가

◉ 추진절차 :

신청 · 접수	→	평가 · 선정	→	협약체결	→	솔루션 구축·검증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제조혁신지원처 : 055-751-9774

- (온라인 문의) ESG · 탄소중립 통합플랫폼(esg.kosmes.or.kr)

참고사항

① 전년도 사업공고

◉ 공고명 : 디지털 기반 자동화 MRV SW 보급 사업

- (경로) ESG통합플랫폼 〉 자료실 〉 공지사항
- (홈페이지)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사업개요

지역산업 및 제조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의 맞춤형 지원으로 중소기업의 혁신성장 역량 강화

〈 전년대비 달라지는 내용 〉

구분	'25년	'26년
지원 대상	매출액 120억원 이하 제조 소기업 (단, 중대재해, 탄소바우처는 매출액 1,500억원 이하 제조 중소기업)	최근 3개년 매출 평균액 140억 원 이하의 제조 소기업(중대재해, 탄소 바우처는 매출액 1,800억원 이하 제조 중소기업)
지원 내용	-	비수도권, 인구감소 지역은 기업 매출액 구간별 5~15%정부지원금 비율 추가 적용
지원 내용	-	분야별 세부 프로그램 변동(표로 작성)

지원대상

- 최근 3개년 평균 매출액 140억원 이하 제조* 소기업**
  (재기 컨설팅은 별도 운영하며, 중대재해·탄소중립 바우처는 매출액 1,800억원 이하)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1항 별표3 산업표준산업분류 "C"해당 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평균 매출액 등의 산정)기준 적용

신청제외 대상

- 휴·폐업 기업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이거나 국세 및 지방세 체납이 확인된 기업
  * 단,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진공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 · 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경우에는 참여가능
- 혁신바우처 사업을 총 5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
- 신청일 현재 '25년 동사업에 수행중(바우처 잔액 보유)기업
- 기타 보조금법 위반 기업 등(상세 내용은 사업공고문 등 참조)

지원내용

◉ 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분야를 서비스 수행기관에게 제공 받을 수 있도록 바우처 형태로 지원하며 매출액 구간별 40~85% 차등지원

* 재기컨설팅은 별도 운영

매 출 액	정부지원 비율	최대 지원금
3억원이하	85	최대 50백만원
3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75	
10억원 초과 ~ 50억원 이하	65	
50억원 초과 ~140억원 이하	45	
120억원 초과~1,800억원 이하(중대재해)	40	

* 비수도권, 인구감소 지역은 기업 매출액 구간별 5~15%정부지원금 비율 추가 적용

분야별 세부지원 프로그램

◉ 일반 바우처

분야	프로그램	서비스 지원 내용
컨설팅	경영기술전략	경영전략, 기술사업화 전략, 생산관리, 노무관리 등
	AX·DX 컨설팅	스마트공장진단 및 AX·DX 실용화를 위한 전략수립 등
기술지원	시제품 제작	디자인 목업, 샘플금형, 공정설계 등
	시스템 및 시설 구축	연구시설 구축, 스마트공장 구축, 정보유출방지 시스템 구축

	IP기반 기술사업화	지식재산권(IP)획득 지원, 기술이전에 필요한 자문비 및 수행대행비 지원
	인증 연구장비활용시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보안해킹, 웹/앱), 국내인증 및 국외인증 취득 등
마케팅	디자인 및 브랜드 지원	제품 디자인, 포장디자인, CI디자인개발, BI개발 등
	홍보 및 광고지원	홍보물 제작 등 온·오프라인 매체를 활용한 제품홍보

◉ 중대재해예방 바우처

분야	프로그램	서비스 지원 내용
컨설팅	중대재해예방 컨설팅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전략수립 및 안전관리체계 구축
기술지원	시제품 제작	일반 및 중대재해 예방용 제품
	시스템 및 시설 구축	안전관리 시스템, 위험감지 경보 설치, 연구시설 구축 등
	인증 연구장비활용시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보안해킹, 웹/앱), 국내인증 및 국외인증 취득 등

◉ 탄소중립 바우처

분야	프로그램	서비스 지원 내용
컨설팅	탄소중립 경영혁신 컨설팅	- 탄소수준진단 : 에너지사용현황 분석, 탄소역량 강화교육 등 - 심층 컨설팅 : 공정개선 및 공정효율화 등
기술지원	시제품 제작	탄소저감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이용 효율화, 자원순환 및 친환경 기술 등에 필요한 설계 및 시제품 제작 지원
	에너지 효율 향상 시스템 및 시설구축	전력수요 절감 효과가 우수한 효율향상 설비 시스템 설계 구축 지원
	저탄소 인증 및 연구 장비 활용 시험	제품 또는 기업이 친환경 평가기준, 에너지 경영시스템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인증 지원 제품이 친환경, 효율향상 등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평가 및 시험 지원

* 분야 내 1개 프로그램 신청 가능하며, 프로그램 내 2개 서비스 신청 가능

신청·접수

◉ 공고(예정) 시기 : (1차) ’25. 11월 12(수) ~ ‘25.12.2(화)
(2차) ‘26. 2월(예정)

◉ 신청방법 : 혁신바우처 플랫폼(www.mssmiv.com)을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심사·평가 주요내용

▸ 요건검토 → 서면심사 → 현장 AI진단·평가 →심의위원회*
* 심의위원회 결과에 따라 최종 선정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신용정보제공동의서 및 기타 증빙서류
- 추진절차

신청 · 접수	평가 · 선정	협약체결	바우처발급
혁신바우처플랫폼 www.mssmiv.com	평가 및 최종 지역별위원회	관리기관·선정기업 (기업분담금 납부)	공급기업 매칭 및 사업수행
11월~12월	'26.1월	'26.2월 ~	'26.2월 ~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관할 지역본지부 담당자
- 혁신바우처 플랫폼(www.mssmiv.com) 공지사항 참조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전화상담은 ☎1357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참고사항

① 전년도 사업공고

- 공고명 : 2025년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1차 지원계획 공고
  - (경로) 알림정보, 공지사항 mssmiv.com/portal/board/BoardView
  - (홈페이지)

구조혁신지원사업

사업개요

산업구조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신사업·신기술 일자리로의 전환, 중소기업 디지털화 지원을 위해 진단, 컨설팅, 후속 사업까지 원스톱으로 지원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상시 종업원수 5인 이상의 중소기업으로 산업구조 전환에 대응하여 사업·디지털·일자리전환을 추진하고자 하는 기업

신청제외 대상

- 휴•폐업 기업 또는 가동 중에 있지 않은 기업
- 대표자 또는 기업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중인 경우
-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회생·파산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대표자 또는 기업
- 대표자 또는 기업이 보조금법 위반 등으로 정부 지원 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대표자 또는 기업이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사행산업 등 국민 정서상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 영위 기업(도박, 향락, 건강유해 등)

지원내용

- 지원 세부내용 : 구조혁신 분야별 전문가를 활용하여 기업 현황 진단 및 맞춤형 컨설팅 제공·연계지원 추천

- (진단) 빅데이터 기반 기업의 현 수준, 컨설팅 방향 제시

* 진단결과에 따라 분야별 컨설팅 실시

- (컨설팅) 사업·디지털·일자리 전환 유형별 전문가를 통해 구조혁신 이행계획(로드맵) 수립 등을 지원

구분	내 용
사업전환	• 기업역량, 재무진단, 사업모델 전환, 원가·물류 프로세스 혁신 등
산업·일자리전환	• 경영 및 생산조직 재설계, 인력 재배치 및 효율화, 노사관계 등
디지털전환	• 디지털화 수준, 내부역량, 단계별 개선전략 및 실행과제 등

- (연계지원) 중기부, 고용부 등 각 부처별 사업을 연계하여 재정, 금융, 세제, 직무전환, 전직 등 지원(신청·선정 기준은 각 사업별 공고 및 규정에 따름)

* 사업전환계획 승인(사업전환자금 융자), 산업·일자리전환지원금 등

◉ 지원 규모 : 구조혁신 진단 1,000개사, 구조혁신컨설팅 690개사 내외

* 진단, 컨설팅의 기업 부담금 없음

신청·접수

◉ 공고(예정) 시기 : 1분기 내 사업공고 예정

◉ 신청방법 : 구조혁신지원사업(www.kosmes.or.kr/3t) 온라인 신청

◉ 제출서류 : 신용정보제공동의서, 재무제표 및 기타 증빙서류

◉ 추진절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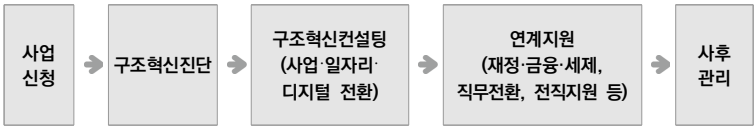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구조개선과
  (전화) 044-204-7482 (메일) 22mrj@korea.kr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업구조개선처
  (전화) 055-751-9702 (메일) 85choihs@kosmes.or.kr
- 구조혁신지원사업 홈페이지(www.kosmes.or.kr/3t)

참고사항

① 전년도 사업공고

- 공고명 : 2025년 구조혁신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
  - (경로) 구조혁신지원사업 홈페이지 〉 알림광장 〉 공지사항 〉 2025년 구조혁신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
  - (홈페이지)

Q&A

Q **컨설팅 분야별 중복지원이 가능할까요?**

A 사업전환(디지털 전환)과 산업·일자리전환은 분야별 세부내용이 상이하므로 중복지원이 가능합니다.

Q **본 사업의 신청시 기업부담금이 있나요?**

A 진단 및 컨설팅의 경우 별도의 기업부담금은 없습니다.

선제적 자율구조개선 프로그램

사업개요

중진공과 협약은행·투자기관(벤처캐피탈, PE)이 협력하여 위기징후 중소기업을 선제 발굴하고, 구조개선을 지원하여 신속한 경영정상화를 촉진

* 협약은행 :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경남은행, 농협은행, 산업은행, 국민은행, IM뱅크,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기술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지원대상

- 아래 유형❶~❷에 해당하는 위기징후 중소기업 중 구조개선 추진을 통한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높은 기업

구분		유형❶ 협약은행 추천	유형❷ 투자기관 추천
지원대상		중진공 및 협약은행 대출잔액을 보유*한 위기징후 중소기업	당해 구조개선 목적의 투자유치* 예정 또는 완료 위기징후 중소기업
		* 당해 협약은행 신규대출 완료 또는 예정 시 중진공 대출잔액 보유요건 적용제외	* 벤처캐피탈(VC), PE 등 투자자가 구조개선 목적으로 지분투자, 출자전환 등을 하는 경우
자격요건	위기징후	(중진공) 조기경보등급 주의·예비경보 (단, 중진공 신용위험등급 최하위 등급(CR13) 기업 제외) 또는 (은행권) 기업신용위험평가 B·C등급 또는 (신용정보회사) 기업신용평가 BB~CC등급	
	업력/형태	업력 3년 이상 법인기업	

	권리침해/체납	가압류, 세금체납 등 권리침해 및 체납 사실이 없는 기업
	기업상태	회생절차 신청 및 개시내용 해당사항 없음
	감사의견	최근 결산년도 감사의견이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이 아닌 기업
	융자공고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공고 상 융자제한기업 미해당

* 세부 내용은 변경 될 수 있음

지원내용

- 중진공과 금융기관이 협력하여 신규대출, 만기연장, 금리조정 등 금융지원 및 경영개선계획 수립을 통한 구조개선 지원

구 분		지 원 내 용
금융지원	신규대출	시설(10년, 60억원 한도)·운전(5년, 3년간 15억원 한도(연 10억원 한도)), 고정금리(2.5%)
	만기연장	기존 대출금의 만기연장(1년)
	금리조정	기존 대출금의 금리조정(신용위험등급에 따라 차등)
경영개선계획 수립		재무실사, 기업가치평가 등을 통해 정상화 가능성을 검토하고 경영개선안 도출

* 협약 금융기관(채권은행·투자기관)의 금융지원 세부조건은 개별협의

- 지원규모 : 융자예산 총 2,000억원 예정

신청·접수

- 공고 시기 : '25년 12월 22일
- 신청방법 : 중진공 관할 지역본·지부 및 협약 금융기관 상담(상시접수)

- 추진절차 : 금융기관, 중진공(지역본·지부) 등 기업 상담·추천 → 사전검토 → 금융기관 공동 금융자원 사전협의 → 현장실사 → 금융기관 공동 금융지원 최종협의 → 지원결정 → 기업지원 → 이행점검

절 차	내 용	비 고
상담·추천	• 기업 상담 후 자격요건 부합 기업을 중진공(기업개선팀)에 추천 - 기업의 경영애로 상황, 기업신용평가등급, 업력 및 기업형태, 사업장 등 권리침해 및 세금 체납 여부, 감사의견 등 확인	중진공 (지역본·지부) 협약은행 등
사전검토	• 추천기업의 경영정상화 가능성 등 사전검토 - 정상화 가능성(재무개선 전망, 연체기록, 차입금 수준, 금융기관 공동지원 여부 등), 성장잠재력(혁신업종, 인증·특허·R&D 등), 정책 우선도(고용·수출 등) 종합 검토	중진공 (기업개선팀)
금융기관 사전협의	• 협약은행 공동 금융지원 가능성 사전협의 - 채권잔액을 보유한 모든 협약 금융기관에 중진공 금융지원 예상 내역 등 사전검토 결과를 공유하고, 공동 금융지원 가능성 사전협의	중진공 (기업개선팀)
현장실사	• 구조개선진단(약식)·경영개선계획 수립(심층) 및 지원타당성 평가 - 기업 경쟁력 및 경영애로 원인 분석, 재무분석, 정상화 계획 검토·제시, 재무실사, 기업가치평가(청산·계속가치) 실시	중진공 (지역본·지부) 회계법인
금융기관 최종협의	• 협약 금융기관 공동 금융지원 가능성 최종협의 - 현장실사 결과보고서와 최종 중진공 금융지원 예정내역을 협약 금융기관에 공유하고, 공동 금융지원 가능성 최종확인	중진공 (기업개선팀)
지원결정	• 금융지원 최종 지원결정 - 신규대출, 만기연장, 금리조정 등	중진공 (지역본·지부) 협약은행 등
기업지원	• 지원결정 내용 실행 - 신규대출 약정, 만기연장 및 금리조정 등 진행	중진공 (지역본·지부) 협약은행 등
이행점검	• 정상화계획 이행현황, 경영성과 등 점검	회계법인 진단전문가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구조개선과
  (전화) 044-204-7481 (메일) mashall98@korea.kr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재도약성장처 기업개선팀
  (전화) 055-751-9922~7 (메일) mksong@kosmes.or.kr

성실경영평가 제도

사업개요

성실 실패기업인의 발굴 및 육성을 통해 재창업자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실질적인 재기지원으로 원활한 재기환경 조성

〈 전년대비 달라지는 내용 〉

구분	'25년	'26년
지원내용 (성실경영 심층평가 우대혜택 (중진공))	재창업자금 특별만기연장 (~25.12.31)	재창업자금 한도우대(5억→10억) ('26 신설)

지원대상

- (성실경영평가) 폐업이력이 있는 예비 또는 업력 7년 이내 재창업자
- (성실경영 심층평가) 성실경영평가 통과자 (유효기간 내)

지원내용

- (성실경영평가) 재창업 전 분식회계, 고의부도, 부당해고 등을 하지 않고 성실하게 경영하였는지 여부를 평가하여 재정지원 대상자 선별에 활용
  - *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시행령 제19조 및 별표1에 따른 경영관련 법령, 노동관계 법령 위반 여부 등 평가
  - * 심의 탈락 시 6개월 간 재신청 제한, 결과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 이의 신청 시 성실경영평가 재심 진행

기 관	우대혜택 내용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재창업 자금(융자) 지원 대상 자격요건
창업진흥원	▪ 재도전성공패키지 지원 대상 자격요건
신용회복위원회	▪ 채무감면 지원 대상 자격요건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 재창업 자금 보증 지원 대상 자격요건

◉ (성실경영 심층평가) 폐업 전·후 적극적 성실경영 노력 및 재기성공역량(준비도) 등심층평가하여 재기지원 사업 참여혜택 우대

* 서류평가 통과자 대상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폐업 전·후의 성실경영 노력 및 재기성공역량 등을 대면평가

기 관	우대혜택 내용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재창업자금 금리우대(△0.3%p) ▪ 재창업자금 한도우대(5억→10억) ▪ 창업성공패키지 청년창업사관학교 서류평가 면제 ▪ 동종업종 재창업자 창업기업 인정
창업진흥원	▪ 재도전성공패키지 일반형 서류평가 면제 ▪ 예비, 초기, 도약(일반형) 창업패키지 서류평가 면제 (대표자 연령이 만 39세 이하인 자 한정)
기술보증기금	▪ 재도전 재기지원보증 심사시 '도덕성평가' 우대
SGI서울보증	▪ 무담보 이행 및 인허가 우대보증 지원
한국신용정보원	▪ 파산·회생 등 부정적 신용정보 블라인드
한국무역보험공사	▪ 수출신용보증(선적전) 무역금융 보증한도(1.5배), 보증료할인(20%)

신청·접수

◉ 공고(예정) 시기 : '26.1.1.~'26.12.31. 연중 상시 신청·접수

◉ 신청방법 : 재도전종합지원센터(www.rechallenge.or.kr)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 제출서류 : 신청서(양식), 가점 증빙서류 등
- 추진절차 :
  - (성실경영평가)

① 지원사업 신청	② 성실경영평가	③ 평가결과 통보 및 확인증 발급	④ 지원사업 신청
재창업자→수탁기관 재창업자→중진공	기업경영 및 노동 관계 법령 위반사실 조회	통과 여부 안내 및 확인증 발급	통과기업→각 기관

  - (성실경영 심층평가)

① 지원사업 신청	② 서면평가	③ 심층평가
심층평가 신청서 등 제출	가점자료 기반 우수성 평가	성실경영 노력, 재기준비도 등 발표평가 (심사위원회)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재도약성장처 : 02-2130-1450, 1451
- 재도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www.rechallenge.or.kr)

참고사항

① 지원사업 소개

- 제목 : 성실경영평가 사업소개, 성실경영평가제도 홍보영상
  - (경로) 재도전종합지원센터(www.rechallenge.or.kr) 〉 알림마당 〉 동영상게시판
  - (홈페이지)

Q&A

Q **성실경영평가 통과자의 경우, 평가결과 유효기간이 있을까요?**

A 성실경영평가를 통과한 경우, 통과한 날부터 만 3년간 평가결과가 유효합니다.

진로제시컨설팅

사업개요

경영위기 기업을 전문가가 방문, 진단하여 구조개선, 사업정리 또는 회생에 대한 정보를 제공 및 연계지원

구분	'25년	'26년
신청접수	'24. 11월~	'25. 11월~

지원대상

- 경영위기를 겪고 있거나 재창업 지원을 받은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

신청제외 대상

- 휴·폐업 기업
- 지원제외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
- 재기컨설팅사업에 수행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는 기업 또는 그 특수관계 기업

지원내용

- 지원규모 : 361개사
- 지원금액 : 기업 당 최대 1천만원 한도, 자부담율 10%

- 지원 세부내용
  - (기초진로제시 컨설팅) 전문가가 경영위기 기업을 방문 진단하여 구조개선, 사업정리 또는 기업회생 가능 여부에 대한 진로를 제공
  - (재창업자 컨설팅) 재창업 지원을 받은 기업의 과거 실패 분석을 통해 성공적 재기를 위한 경영컨설팅 제공
  - (사업정리 컨설팅) 기업유지가 곤란하거나 만성적 적자운영으로 사업정리를 희망하는 기업의 전문분야별 사업정리 지원

구 분		투입일수	보수액
기초 진로제시 또는 재창업자 컨설팅	재무 분석	3MD	180만원
	기술사업성 분석	2MD	60만원
사업정리	3가지 전문분야* * 세무/노무/법무분야	분야당 1~2MD	총 360만원 (분야별 120만원)

신청·접수

- 공고(예정) 시기 : 수시접수
- 신청방법 : 홈페이지(www.mssmiv.com)를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 제출서류 : 신청서, 사업계획서, 신용정보동의서 등

  * 홈페이지(www.mssmiv.com)에서 신청서 등 확인
- 추진절차

신청 → 평가 (서면·현장) → 바우처 협약 (중진공↔수요기업) → 바우처 발급 (중진공↔수요기업) →

서비스 계약 (수요기업↔중진공↔수행기관) → 사업수행 → 사업비 정산 (중진공↔수행기관)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구조개선과
  (전화) 044-204-7484 (메일) ljh150@korea.kr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각 지역본지부 및 재도약성장처
  (전화) 055-751-9624, 9626 (메일) ljy2290@kosmes.or.kr

회생컨설팅

사업개요

회생가능성이 높은 기업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신청부터 회생계획 인가까지 전문가 상담 절차 진행 등을 지원

(워크아웃의 경우 실사 및 자구계획 작성비용 지원)

구분	'25년	'26년
신청접수	'24.11월~	'25.11월~

지원대상

- 회생 컨설팅 : 진로제시컨설팅 결과 '회생지원가능'으로 처방받은 기업 또는 일반·법인회생 신청기업 중 컨설팅을 희망하는 기업
- Pre-회생 컨설팅 : 협업법원에 자율구조조정(ARS) 적용 회생신청, Pre-ARS 신청을 한 기업, 하이브리드 구조조정 신청을 한 기업 중 협업법원이 지원대상으로 추천한 기업
- 개인회생 컨설팅 : 개인회생을 신청한 기업 중 기본중위소득 125% 이상인 기업
- 워크아웃 컨설팅 : 주채권은행에 워크아웃을 신청한 기업 중 워크아웃 실사 및 자구계획 작성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

신청제외 대상

- 휴·폐업 기업
- 지원제외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
- 재기컨설팅사업에 수행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는 기업 또는 그 특수관계 기업
- 회생컨설팅 사업 신청·접수가 거절된 기업으로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
- 회생컨설팅 사업을 신청한 기업 중, 별도의 조사위원이 선임되는 경우
- 신청 시 동 사업을 수행 중(완료보고서 제출 전)인 기업
- 최근 5년간 회생컨설팅 프로그램을 3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
- 워크아웃 컨설팅 신청기업 중 실사 및 자구계획 작성이 완료되어 은행 관리 절차 개시·연장결과가 통보된 기업

지원내용

- 지원규모 : 172개사
- 지원금액 : 기업 당 최대 3천만원, 자산 규모에 따라 자부담율 차등 적용(10%~)
- 지원 세부내용
  - (회생, Pre-회생, 개인회생) 회생 신청부터 회생 인가까지 전 과정에 대한 상담 및 자문

구분	내용
재무 · 법무	■ 회생신청서 ■ 심문답변서 ■ 채권목록표 ■ 시부인표 ■ 회생계획안 ■ 2차 집회서류 ■ 회계세무 자문내용 ■ 회생관련 전반적인 조력(채권자+법원 연결 역할)

  - (워크아웃) 워크아웃 관리절차 개시 및 연장에 필요한 실사 및 자구계획 수립 지원

신청·접수

- 공고(예정) 시기 : 수시접수

- 신청방법 : 홈페이지(www.mssmiv.com)를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 제출서류 : 신청서, 사업계획서, 신용정보동의서 등

  * 홈페이지(www.mssmiv.com)에서 신청서 등 확인
- 추진절차

신청 → 평가 (서면·현장) → 바우처 협약 (중진공↔수요기업) → 바우처 발급 (중진공↔수요기업) →

서비스 계약 (수요기업↔중진공↔수행기관) → 사업수행 → 사업비 정산 (중진공↔수행기관)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구조개선과
  (전화) 044-204-7484 (메일) ljh150@korea.kr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각 지역본지부 및 재도약성장처
  (전화) 055-751-9624, 9627, 02-2130-1452
  (메일) ljy2290@kosmes.or.kr

내일채움공제

사업개요

중소·중견기업 사업주와 근로자가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금에 복리 이자를 더하여 3년 이상 장기 재직한 근로자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하는 정책성 공제

지원대상

- 중소·중견기업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上 지원업종 영위기업

- 중소·중견기업 근로자(핵심인력)

  중소·중견기업 대표자가 지정한 인력(학력, 경력, 자격무관)으로 직무기여도가 높아 사업주가 장기재직이 필요하다고 지정한 근로자

신청제외 대상

-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 휴·폐업, 세금(국세, 지방세) 체납기업

지원내용

- 가입기간 : 3년 이상

  * '25.1월부터 3년형 가입가능

- 공제납입금 : 중소·중견기업과 핵심인력이 최소 3년 이상 1,224만원 이상(매월 34만원 이상) 공동적립

  「핵심인력 : 사업주 = 1 : 2」의 비율로 납부
- 적립금액 : 연간 400만원 이상 적립(3년 1,224만원, 5년 2,000만원 이상)
- 공제금리 : 변동금리 적용

신청·접수

- 공고 시기 : 상시모집
- 신청방법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 기업·신한·우리은행을 방문하여 공제계약 청약 또는 홈페이지(www.sbcplan.or.kr)에서 청약신청
- 제출서류 : 청약서
- 추진절차 :

공제 청약	→	가입심사 및 승인	→	공제부금 납입	→	공제계약 성립	→	매월납입 (최소 36개월 이상)	→	만기공제금 수령
지역본부 등/ 온라인		중진공		사업주/ 핵심인력		중진공		사업주/ 핵심인력		핵심인력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인력정책과 : 044-204-7791, 7796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성과보상처 : 055-751-2974~2975
-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 www.sbcplan.or.kr
- 내일채움공제 고객센터 ; 1588-6259

Q&A

Q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할 수 있는 핵심인력의 자격은 무엇인가요?**

A 핵심인력은 직무 기여도가 높아 해당 중소기업의 대표자가 장기 재직이 필요하다고 지정한 상시 근로자로서 학력, 연령, 자격, 경력 등의 제한이 없습니다.(대표자, 실질 경영주, 일용직 근로자 제외)

Q **내일채움공제 가입혜택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A **(기업)**

- 기업납입금에 대한 비용인정 및 세액공제 지원

* 비용인정 : 기업납입금 전액 손금(법인기업) 산입 또는 필요경비(개인기업) 인정

* 세액공제 :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일부 세액공제 적용

(재직자)

- 3년 이상 가입 후 공제금 수령 시 기업기여금에 대한 근로소득세 감면 (일반 50%, 청년 90%)

* 최대주주(법인) 또는 대표자(개인)의 직계존비속 등 특수관계인은 감면 제외

** 일부 사유(휴·폐업, 법인해산 사유)의 중도해지자도 소득세 감면 적용

- 휴가비 지원, 건강검진, 온라인 교육 등 다양한 교육·복지혜택 지원

Q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도 가입할 수 있나요?**

A 2025년 9월 1일 이후부터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 또한 가입이 가능합니다.

용어 설명

기업납입금 : 내일채움공제 가입기업이 납입한 공제부금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사업개요

중소기업 사업주와 근로자가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금에 이자를 더하여 3년 또는 5년 재직한 근로자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하는 정책성 공제

지원대상

- 중소기업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上 지원업종 영위기업

- 중소기업 근로자((예비)핵심인력)

  중소기업 대표자가 지정한 인력(학력, 경력, 자격무관)으로 직무 기여도가 높아 사업주가 장기재직이 필요하다고 지정한 근로자

신청제외 대상

-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 휴·폐업, 세금(국세, 지방세) 체납기업

지원내용

- 가입 기간 : 3년*, 5년

  *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3년형 출시(2025.09)

- 공제 납입금 : 사업주와 핵심인력이 3년간 최대 2,298만원 또는 5년간 최대 3,980만원 공동적립(매월 12~60만원, 이자포함*)

  「핵심인력 : 사업주 = 1 : 0.2」의 비율로 납부
- 적립금액 : 3년간 460~2,298만원, 5년간 796~3,980만원(이자포함*)
- 공제금리 : 기업납부금(변동금리 적용), 근로자 납부금(최대 4.5%*)

  * '최대 4.5% (기본금리 2.5% + 우대금리 2.0%)

신청·접수

- 공고 시기 : 상시모집
- 신청방법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 기업·신한·우리은행을 방문하여 공제계약 청약 또는 홈페이지(www.sbcplan.or.kr)에서 청약신청
- 제출서류 : 청약서
- 추진절차* :

공제 청약*	가입 승인	공제부금 납입	계좌 신청	계좌 개설	공제계약 성립	매월 납입	만기공제금 수령
온라인	중진공	사업주	핵심 인력	은행	중진공	사업주/ 핵심인력	핵심인력

  * (기존) 기업(중진공), 재직자(은행) 별도 가입창구 → (변경) 기업, 재직자 단일 가입(중진공)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인력정책과 : 044-204-7791, 7796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성과보상처 : 055-751-2974~2975
-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 www.sbcplan.or.kr
- 내일채움공제 고객센터 ; 1588-6259

Q&A

Q **내일채움공제 대비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의 다른 점은?**

A 내일채움공제와 주오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는 다음과 같이 가입요건, 가입기간, 납입비율, 적용금리 등이 다름

구분		내일채움공제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가입 요건	기업	중소·중견기업	중소기업
	재직자	정규직 근로자	모든 근로자
가입기간		3년~10년	3년, 5년
납입비율		핵심인력:기업 = 1:2 이상	핵심인력:기업 = 1:0.2
적용금리		2.37% ('25.4분기 기준)	최대 4.5% (기본금리* 2.5%+우대금리 2.0%)
월 적립금액 (기업+재직자)		월 34만~300만원	월 12만원~60만원

* '25.4분기 기준 은행별 금리
(IBK기업은행) 가입 후 3년 고정, 이후 2년간 변동
(하나은행) 가입 후 5년 고정
(농협은행) 가입 후 5년 고정
(국민은행) 가입 후 5년 고정

Q **유사자산형성 지원사업(청년도약계좌 등)이나 기존 내일채움공제 참여 중이라도 중복가입이 가능한가요?**

A 중복가입이 가능합니다.

청년연계형 내일채움공제

사업개요

청년내일채움공제를 만기한 근로자, 중소·중견기업이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금에 복리이자를 더하여 3년 재직한 근로자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하는 정책성 공제

지원대상

- 중소·중견기업

  청년내일채움공제(2년형, 3년형)

- 중소기업 근로자((예비)핵심인력)

  중소기업 대표자가 지정한 인력(학력, 경력, 자격무관)으로 직무 기여도가 높아 사업주가 장기재직이 필요하다고 지정한 근로자

신청제외 대상

-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 휴·폐업, 세금(국세, 지방세) 체납기업

지원내용

- 가입 기간 : 3년
- 공제 납입금 : 사업주와 핵심인력이 3년간 1,008만원 공동 적립

- (근로자) 3년간 504만원 적립 (월 14만원 x 36개월)
- (기　업) 3년간 504만원 적립 (월 14만원 x 36개월)

- 적립 금액 : 3년간 1,008만원
- 공제 금리 : 변동금리 적용

신청·접수

- 공고 시기 : 상시모집
- 신청방법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 기업·신한·우리은행을 방문하여 공제계약 청약 또는 홈페이지(www.sbcplan.or.kr)에서 청약 신청
- 제출서류 : 청약서
- 추진절차 :

공제 청약	가입심사 및 승인	공제부금 납입	공제계약 성립	매월납입 (60개월)	만기공제금 수령
지역본부 등 /온라인	중진공	사업주/ 핵심인력	중진공	사업주/ 핵심인력	핵심인력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인력정책과 : 044-204-7791, 7796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성과보상처 : 055-751-2974~5
-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 www.sbcplan.or.kr
- 내일채움공제 고객센터 : 1588-6259

Q&A

Q **청년연계형 내일채움공제는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자만 가입가능한가요?**

A 네. 맞습니다. 해당 공제는 청년내일채움공제(2년형, 3년형) 만기 후 해당기업에 계속 근무중인 근로자만 지원대상이 됩니다.

용어 설명

청년내일채움공제(고용부) : 미취업 청년의 노동시장 유입 등을 목적으로 중소(중견)기업과 청년근로자(신규채용자)가 2년간 공제금 적립 후 만기 시 청년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정책성 공제

기관별, 월별 지원사업 및 사업공고 현황

◉ 기관명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공고 시기	지원사업명	사업공고명	문의처
'25년 12월	혁신창업사업화자금	2026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계획 공고	1811-3655
	신성장기반자금		
	신시장진출지원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재도약지원자금		
	수출바우처	2026년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참여기업 1차 모집공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055-751-9721,9722)
1월	밸류체인안정화자금 (동반성장네트워크론)	2026년 중소기업 동반성장네트워크론 지원계획 공고 (향후 일정 변동 가능)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02-2130-1412)
	밸류체인안정화자금 (매출채권팩토링)	2026년 중소기업 매출채권팩토링 지원계획 공고 (향후 일정 변동 가능)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02-2130-1415)
	기업인력애로센터 활용 취업 지원	기업인력애로센터 활용 취업 지원 사업 구인기업 및 구직자 모집 공고	매칭지원센터 (KTcs 1899-3001)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26년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 사업 참여기관 모집 공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055-751-9862,9863, 9865,9867)
	중소기업 인력양성대학 (기술사관 육성사업)	2026년도 중소기업 인력양성대학 모집 공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055-751-9875)
	중소기업 인력양성대학 (중소기업 계약학과)	2026년도 중소기업 인력양성대학 모집 공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055-751-9818)
	중소기업-근로자간 성과 공유 확산 사업(상시모집)	성과공유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055-751-9825)
	중소기업 외국전문인력 활용 지원사업(글로벌 인재 취업 선도대학)	2026년도 글로벌 인재 취업 선도 대학 모집 공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055-751-9452)
	중소기업 외국전문인력 활용 지원사업(K-수출 전사 아카데미)	2026년도 K-수출전사 아카데미 운영기관 공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055-751-9452)
	중소기업 외국전문인력 활용 지원사업(비자추천)	2026 중소벤처기업부 숙련기능 인력(E-7-4) 전환추천 공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055-751-9879)
	중소기업 외국전문인력 활용 지원사업(비자추천)	2026 중소벤처기업부 외국전문 인력(E-7-1) 고용추천 공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055-751-9879)

공고 시기	지원사업명	사업공고명	문의처
	청년창업사관학교-기본과정	창업성공패키지 청년창업사관학교 입교생 모집 공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055-751-9241)
	글로벌창업사관학교-심화과정	창업성공패키지 글로벌창업사관학교 입교생 모집 공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02-2130-1426)
	딥테크창업사관학교-심화과정	창업성공패키지 딥테크창업사관학교 입교생 모집 공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미정)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2026년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1차 지원계획 공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055-751-9847)
	중소기업 탄소중립 설비투자 지원	중소기업 탄소중립 설비투자 지원 사업 공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055-751-9849)
	탄소중립 사업화 지원 사업	탄소중립 사업화 지원사업 공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055-751-9524)
2월	온라인수출플랫폼	온라인수출플랫폼 사업 고비즈 수출지원 참여기업 모집 공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1588-6234)
	온라인수출플랫폼	온라인수출플랫폼 사업 수출계약 대응지원 참여기업 모집 공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1588-6234)
	전자상거래수출시장 진출	글로벌쇼핑몰 활용 판매지원사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055-751-9763,9768, 9777)
	스타트업 AI기술인력 양성사업 (이어드림 스쿨)	스타트업 AI기술인력 양성 (이어드림 스쿨) 청년인재 모집 공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02-2130-1418)
	중소기업 기후공시, 공급망 실사대응 기반구축	중소기업 기후공시, 공급망 실사대응 기반구축 공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055-751-9526)
3월	수출바우처	2026년 레전드50+ 전용 수출바우처 참여기업 모집 공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055-751-9721,2)
	글로벌비즈니스센터 (GBC)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입주기업 상시모집 공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055-751-9685,9675, 9673)
	해외인력 취업매칭 지원	해외인력 취업매칭 지원사업 참여 모집 공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031-490-1368)
	디지털기반 자동화 MRV보급사업	디지털기반 자동화MRV보급사업 공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055-751-9774)
4월	수출바우처	2025년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2차 참여기업 모집공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055-751-9721,9722)
매월	코리아스타트업센터 (KSC)	2026년 K-스타트업센터(KSC) 참여기업 모집공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055-751-9683, 9688)

제 2 부

기술보증기금

지원사업(전년대비) 달라지는 내용

◉ 기관명 : 기술보증기금

구분	'25년도	'26년도
기술보증	고객협조사항 ▹ 마이데이터 방식은 개인기업을 대상으로 디지털지점에서 간편인증을 통한 온라인 자료제출 방식을 의미함	고객협조사항 ▹ 마이데이터 방식은 디지털지점에서 고객 간편인증을 통한 온라인 자료제출 방식을 의미함
기술선도 산업지원 프로그램	(프로그램) 신성장 미래전략산업 우대지원 프로그램	(프로그램) 기술선도 산업지원 프로그램
	(지원대상) 신성장 미래전략산업 영위기업	(지원대상) 6대 핵심성장엔진(Ai, Bio, Contents&Culture, Defense, Energy, Factory)으로 기술선도성장을 위한 정책적 지원 필요성이 높은 6대 분야, 22대 세부산업을 영위하는 기술선도 미래전략산업 영위기업
	지원내용 (지원대상) Track2(경영애로기업) (지원내용) • 경영컨설팅 제공 및 경영개선보증 지원 • 경영악화 방지를 위한 저신용기업 특별보증 (우대내용) • 운전자금 산정한도 확대(120%) ※ 기업경영개선보증, 저신용 특별보증으로 지원	지원내용 (지원대상) Track2(초혁신경제 선도기업) (지원내용) • 기술보증 • 기술이전 및 도입 지원 • 보증연계투자, 예비 유니콘 등 선정사업 우대 지원 (우대내용) • 운전자금 산정한도 확대(130%) • 보증료 감면(0.3%p X 3년) • 보증비율 상향(95%) * 기술사업평가등급 A등급 이상 전액보증
	Q&A '신성장 미래전략산업'의 5대 분야 18대 세부산업	Q&A '기술선도 미래전략산업'의 6대 분야 22대 세부산업
유동화회사 보증	지원규모(계획): 5,000억원	지원규모(계획): 3,000억원
보증연계 투자	지원규모(계획): 750억원	지원규모(계획): 500억원

구분	'25년도	'26년도
중소기업 기술거래·사업화 촉진 지원 사업	(사업명) 글로벌 기술수요발굴·매칭 지원사업 (사업내용) 기술보유기업(국내)·기술수요기업(해외) 간 매칭 지원	(사업명) 글로벌 진출기업 역략강화 (사업내용) 해외로 기술이전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의 컨설팅 지원
	(지원대상) 신탁기술, 일반기술	(지원대상) 신탁기술, 파산기술
탄소가치 평가보증	지원규모 4,800억원	지원규모 5,500억원
탄소가치 평가보증	지원규모 2,100억원	지원규모 2,800억원
문화산업 완성보증	지원규모 1,200억원	지원규모 1,000억원
벤처기업 확인평가	신청제외 대상업종 중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포함	신청제외 대상업종 중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삭제

기술보증

사업개요

담보력이 부족하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의 기술성, 사업성 등 미래가치에 대한 평가를 기반으로 보증서를 발급하여, 신기술사업자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원활하게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전년대비 달라지는 내용 〉

구분	'25년	'26년
제출서류	고객협조사항 ▹ 마이데이터 방식은 개인기업을 대상으로 디지털지점에서 간편인증을 통한 온라인 자료제출 방식을 의미함	고객협조사항 ▹ 마이데이터 방식은 디지털지점에서 고객 간편인증을 통한 온라인 자료제출 방식을 의미함

지원대상

◉ 신기술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 등

신청제외 대상

- 부당하게 채무를 면탈하여 기금의 건전성을 훼손한 자
- 휴업 중인 기업
- 대출금을 빈번히 연체하는 기업
- 기보, 신보, 재단 사고기업 등

지원내용

- 기업이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대출받는 각종 자금에 대하여 기술보증 지원
- 전체 보증규모 및 보증지원계획

(단위 : 조원)

구 분	보증잔액(계획)				보증공급(계획)			
	'25년		'26년 (B)	증감 (B-A)	'25년		'26년 (D)	증감 (D-C)
	계획 (A)	실적 (11월)			계획 (C)	실적 (11월)		
총 보증	29.3	31.4	29.5	+0.2	28.9	30.8	29.0	+0.1
신규					6.0	6.8	4.5	-1.5
갱신·만기연장					22.9	24.0	24.5	1.6
기술보증	28.1	30.2	28.1	-	28.3	30.2	28.5	+0.2
신규					5.5	6.3	4.2	-1.3
갱신·만기연장					22.8	23.9	24.3	+1.5
유동화회사보증	1.2	1.2	1.4	+0.2	0.6	0.6	0.5	-0.1
신규					0.5	0.5	0.3	-0.2
차환					0.1	0.1	0.2	+0.1

* 직접보증 기준임.

** '26년 계획의 경우, 중기부 업무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신청 · 접수

- 공고(예정) 시기 : '26.1.1.~'26.12.31. 상시 신청·접수
- 신청방법 : 기술보증기금 디지털지점(www.kibo.or.kr/dbranch) 및 전국 영업점
- 제출서류

구 분		자 료 명	고객 협조사항	
고객 준비 서류	온라인 자료 제출	▹ 기술사업계획서	▹ 디지털지점에서 온라인 제출 * 양식 다운받아 작성 후 파일 업로드 또는 직접 제출 가능	서식
		▹ 주주명부 ▹ 신분증 사본 ▹ 임차계약서 사본(사업장·거주주택)	▹ 디지털지점에서 온라인 제출	-
기금 수집 서류	대법원 등기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기금에 소유 부동산 소재지 사전 고지	-
	행정정보 공동이용 or 스크래핑 or 마이데이터 (선택)	▹ 주민등록표 등·초본 ▹ 사업자등록증명 ▹ 납세증명서 등(국세 및 지방세)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부가가치세 신고자료 ▹ 표준재무제표(최근3개년) 등	▹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 대표자·법인에 대한 행정정보 이용항목 사전동의 ▹ 스크래핑 방식은 디지털지점에서 고객 인증서를 통한 온라인 자료제출 방식을 의미함 ▹ 마이데이터 방식은 디지털지점에서 고객 간편인증을 통한 온라인 자료제출 방식을 의미함	사전 동의
	금융거래	▹ 금융거래확인서	▹ 전자금융거래확인서 제공 사전동의	

* 기금수집서류 발급수수료는 기금 부담

심사·평가 주요내용

▸ 기업의 기술력, 사업전망, 경영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기술사업타당성평가 등)

◉ 추진절차

단 계 별	취 급 자	주 요 내 용
보증신청	신청기업	영업점 방문 또는 디지털지점(인터넷) 신청
↓		
상담	영업점 담당자	보증금지·제한 해당여부, 기술사업내용 등을 검토하여 계속 진행여부 결정 및 절차안내
↓		
서류 제출	신청기업	기술사업계획서 등 제출 (필요서류는 종류에 따라 고객이 디지털지점에 제출하거나, 고객의 협조를 받아 기금직원이 직접 수집)
↓		
기술평가	영업점 담당자	신청기업으로부터 접수한 자료 등을 예비(사전)검토 후 현장실사 실시하여 기술성과 사업타당성 등을 평가
↓		
심사·승인 후 보증서발급	영업점 담당자	기술평가결과, 사업전망, 경영능력, 신용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최종승인시 보증약정 및 보증서 발급

문의처

- 기술보증기금 (전화) 1544-1120
  (홈페이지) www.kibo.or.kr
- 기술보증기금 기술보증부 (전화) 051-606-7459
  (이메일) 2760@kibo.or.kr

용어 설명

기술사업타당성평가 : 기업이 특정기술 또는 아이디어를 신규로 사업화하거나 현재 추진 중인 기술사업의 투자를 확대하고자 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의 기술성과 사업타당성을 평가하는 것

기술선도 산업지원 프로그램

선도경제로의 전환의 축이 될 기술선도 미래전략산업 영위기업 및 초혁신 선도기업 등에 대한 원활한 자금 공급을 통해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및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키기 위한 보증상품

〈 전년대비 달라지는 내용 〉

구분	'25년	'26년
프로그램	신성장 미래전략산업 우대지원 프로그램	기술선도 산업지원 프로그램
지원대상	신성장 미래전략산업 영위기업	6대 핵심성장엔진(Ai, Bio, Contents&Culture, Defense, Energy, Factory)으로 기술선도성장을 위한 정책적 지원 필요성이 높은 6대 분야, 22대 세부산업을 영위하는 기술선도 미래전략산업 영위기업
지원내용	(지원대상) Track2(경영애로기업) (지원내용) • 경영컨설팅 제공 및 경영개선보증 지원 • 경영악화 방지를 위한 저신용기업 특별보증 (우대내용) • 운전자금 산정한도 확대(120%) ※ 기업경영개선보증, 저신용 특별보증으로 지원	(지원대상) Track2(초혁신경제 선도기업) (지원내용) • 기술보증 • 기술이전 및 도입 지원 • 보증연계투자, 예비 유니콘 등 선정사업 우대 지원 (우대내용) • 운전자금 산정한도 확대(130%) • 보증료 감면(0.3%p X 3년) • 보증비율 상향(95%) * 기술사업평가등급 A등급 이상 전액보증
Q&A	'신성장 미래전략산업'의 5대 분야 18대 세부산업	'기술선도 미래전략산업'의 6대 분야 22대 세부산업

지원대상

- 우리경제 6대 핵심성장엔진(Ai, Bio, Contents&Culture, Defense, Energy, Factory)으로 기술선도성장을 위한 정책적 지원 필요성이 높은 6대 분야, 22대 세부산업

6대 분야	22대 세부산업
AI· 첨단 네트워크 (A)	△ AI·AX △빅데이터 △차세대 모빌리티 △차세대 보안·네트워크 △ 양자기술
바이오·뷰티 (B)	△ 레드바이오 △그린,화이트바이오 △디지털헬스케어 △뷰티테크
문화콘텐츠·서비스 (C)	△ 문화콘텐츠 △혁신형지식서비스
방산 (D)	△ 우주항공·해양 △첨단방위산업 △방산기반산업
에너지·환경 (E)	△ 차세대 원자력 △신재생에너지 △에너지인프라
첨단제조 (F)	△ 소재·부품·장비 △로봇 △차세대 반도체 △차세대 디스플레이 △ 차세대 배터리

지원내용

- 지원 세부내용 : 기술선도 미래전략산업 영위기업에 대해 성장유망기업과 초혁신경제 선도기업 Two-Track으로 금융·비금융 패키지 지원

구분	Track 1 (성장유망기업)	Track 2 (초혁신경제 선도기업)
지원 대상	(핵심기업) 미래전략산업 영위기업 (일반기업) 미래전략산업 영위기업과 거래중인 기업	미래전략산업 영위기업 중 AI·초혁신 산업 영위기업
지원 내용	• 기술보증 • 기술이전 및 도입 지원 • 보증연계투자, 예비 유니콘 등 선정사업 우대 지원	• 기술보증 • 기술이전 및 도입 지원 • 보증연계투자, 예비 유니콘 등 선정사업 우대 지원
우대 내용	핵심 • 운전자금 산정한도 확대(120%) • 보증료 감면(0.2%p × 3년) • 보증비율 상향 (95%)	• 운전자금 산정한도 확대(130%) • 보증료 감면(0.3%p X 3년) • 보증비율 상향(95%) * 기술사업평가등급 A등급 이상 전액보증

신청 · 접수

- 공고(예정) 시기 : ’26.1.1.~’26.12.31. 상시 신청·접수
- 신청방법 : 기술보증기금 디지털지점(www.kibo.or.kr/dbranch) 및 전국 영업점

문의처

- 기술보증기금 (전화) 1544-1120 (홈페이지) www.kibo.or.kr
- 기술보증기금 기술보증부 (전화) 051-606-7475 (이메일) 2512@kibo.or.kr

Q&A

Q **'기술선도 미래전략산업'의 6대 분야 22대 세부산업의 내용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주세요.**

A

6대 분야	22대 세부산업	상세 내용
AI·첨단 네트워크 (AI)	① AI·AX	• 인공지능, 머신러닝, 딥러닝 등 인공지능 관련 산업 및 AI를 적용하는 산업
	② 빅데이터	• 데이터 분석 소프트웨어, 데이터 시각화 등 빅데이터 관련 산업
	③ 차세대 모빌리티	• 자율주행, UAM, 스마트카 등 모빌리티 산업
	④ 차세대 보안·네트워크	• 5G·6G 및 통신인프라, 사물인터넷, 에지컴퓨팅,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 복호화 등 보안·네트워크 산업
	⑤ 양자기술	• 양자컴퓨터, 양자통신, 양자센서 등 양자기술 산업
바이오·뷰티 (BIO)	⑥ 레드바이오	• 제약 · 의료분야 바이오 산업
	⑦ 그린, 화이트바이오	• 농업 · 식품분야(그린) 및 친환경분야(화이트) 바이오 산업
	⑧ 디지털 헬스케어	• 원격의료, 디지털치료제, AI진단 등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⑨ 뷰티테크	• 혁신형 화장품, 미용 의료기기 등 뷰티테크 산업
문화콘텐츠·서비스 (Culture, Contents)	⑩ 문화콘텐츠	• K-콘텐츠·컬처, 웹툰, 게임 등 문화콘텐츠 산업
	⑬ 혁신형 지식서비스	• 공유경제플랫폼, 핀테크, 스마트물류 시스템 등 혁신형 지식서비스 산업
방산 (Defense)	⑭ 우주항공·해양	• 우주항공(인공위성, 드론 등)·해양(첨단선박, 화물창 등) 관련 산업
	⑮ 첨단 방위산업	• 드론, 지능형무기, 무인무기체계 등 첨단 방위산업
	⑯ 방산기반산업	• 엔진, 추진체, 정밀부품 등 방산기반산업
에너지·환경 (Energy)	⑰ 차세대 원자력	• 소형모듈원전(SMR) 등 차세대 원전 산업
	⑱ 신재생에너지	• 수소에너지, 태양광, 풍력, 수력 등 신재생에너지 산업
	⑱ 에너지 인프라	• 차세대 전력망(스마트그리드 등), 고압직류송전(HVDC), 에너지 저장장치, 탄소포집 등 에너지 인프라 산업
첨단제조 (Factory)	⑳ 소재/부품/장비	•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서 정하는 소재 · 부품 · 장비 산업
	㉑ 로봇	• 정밀제어, 지능형 로봇, AI휴머노이드 등 로봇 관련 산업
	㉒ 차세대 반도체	• AI반도체, 전력반도체, SIC반도체 등 반도체 관련 산업
	㉓ 차세대 디스플레이	• OLED, 마이크로 LED, QNED 등 디스플레이 산업
	㉔ 차세대 배터리	• 이차전지, 리튬황, 흐름전지 등 배터리 관련 산업

혁신성장산업 및 제4차 산업혁명 지원 프로그램

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요소인 초연결성(인간↔인간, 인간↔사물, 사물↔사물), 초지능성(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관련 기술 및 기업을 육성하고, 제조·서비스혁신의 기반이 되는 스마트공장과 스마트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관련 기업을 우대지원

지원대상

◉ 프로그램별 지원대상

구 분	대 상 기 업
제4차 산업혁명 지원 프로그램 (Industry 4.0 FIRST보증)	▹ IoT, AI, 바이오 등 제4차 산업혁명 관련 사업(기술) 영위기업과 DNA+BIG3* 분야 * Data, Network, AI,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 (핵심기업) 기술사업평가등급 BBB이상 또는 DNA+BIG3분야 • (일반기업) 기술사업평가등급 B이상
스마트제조·서비스 보증	▹ 스마트공장 도입기업 및 공급기업 / 스마트서비스 기업 • 스마트공장 도입기업 - 정부 등의 스마트공장(스마트공방 포함) 보급사업 참여기업 - 정부의 구축수준 확인제도를 통한 스마트공장구축확인 기업 - 기금의 자체구축 스마트공장 판별표상 요건 충족기업 - '첫 공장 스마트화'를 추진하는 유망 제조 스타트업 • 스마트공장 공급기업 - 정부 등의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참여기업 - 정부의 스마트공장 공급기업 인정기업 • 스마트서비스 기업 - 혁신성장산업 중 스마트서비스 분야 관련품목을 생산하며 별도 판별표 충족하는 기업

지원내용

- 제4차 산업혁명 지원 프로그램
  - (핵심기업) 보증비율 95%, 보증료 0.3%p 감면
  - (일반기업) 보증비율 90%, 보증료 0.2%p 감면
- 스마트제조·서비스 보증
  - (스마트공장 도입기업) 보증비율 90~100%, 보증료 0.3~0.5%p 감면

    * 구축단계에 따라 0.5% 또는 0.7% 고정보증료율 적용 가능
  - (스마트공장 공급기업) 보증비율 90%, 보증료 0.3%p 감면
  - (스마트서비스 기업) 보증비율 95%, 보증료 0.3%p 감면

신청 · 접수

- 공고(예정) 시기 : '26.1.1.~'26.12.31. 상시 신청·접수
- 신청방법 : 기술보증기금 디지털지점(www.kibo.or.kr/dbranch) 및 전국 영업점

문의처

- 기술보증기금
  (전화) 1544-1120 (홈페이지) www.kibo.or.kr
- 기술보증기금 기술보증부
  (전화) 051-606-7687 (이메일) 2655@kibo.or.kr

Q&A

Q **혁신성장산업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주세요.**

A 혁신성장산업이란 정부의 육성분야 및 시장수요와 기술변화를 반영하여 선정한 것으로, '혁신성장 공동기준'에서 정하는 '9대 테마, 31개 분야, 240개 품목'을 말합니다.

* 9대 테마 : 제조·모빌리티, 소재·부품, 에너지, 환경·스마트 농축수산, 바이오헬스, ICT·디지털, 반도체·디스플레이, 인공지능, 융합지식서비스

비대면·디지털기업 우대보증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시대로의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사람간 접촉을 최소화하는 '비대면 비즈니스 모델 영위기업'과 비대면을 위한 기반기술인 '디지털 기술 관련 기업'을 육성 · 지원하기 위한 보증상품

지원대상

- 정부 집중육성 분야이자 일자리창출 효과가 큰 비대면기업 및 디지털기업
  - (비대면기업) ICT 기술 등을 활용하여 기존의 제조 생산·서비스 전달 과정에서 사람 간 접촉을 최소화하거나 감소시킨 비즈니스 모델 영위기업
  - (디지털기업) 全 산업과 융·복합이 가능한 핵심 인프라 분야인 DNA* 및 ICT를 이용하는 '제4차 산업혁명' 관련 영위기업

  * Data, Network, AI

지원내용

- 핵심기업과 일반기업으로 구분하여 투트랙(Two-Track) 지원
  - (핵심기업) '비대면기업' / '디지털기업으로 기술사업평가등급 BBB이상'
    - ▸ 보증비율 95%, 보증료 0.3%p 감면
  - (일반기업) '디지털기업으로 기술사업평가등급 B이상'
    - ▸ 보증비율 90%, 보증료 0.2%p 감면

- 최근 6개월 이내 ICT 인력 신규 고용기업에 대해 고용인원에 따라 최대 5억원의 보증지원 한도가산(고용인원 1인당 최대 75백만원)

신청 · 접수

- 공고(예정) 시기 : '26.1.1.~'26.12.31. 상시 신청·접수
- 신청방법 : 기술보증기금 디지털지점(www.kibo.or.kr/dbranch) 및 전국 영업점

문의처

- 기술보증기금
  (전화) 1544-1120 (홈페이지) www.kibo.or.kr
- 기술보증기금 기술보증부
  (전화) 051-606-7687 (이메일) 2655@kibo.or.kr

Q&A

Q **비대면 분야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주세요.**

A 중기부가 선정한 "①웨어러블 ②원격의료(진단, 치료), 병원·의료 관련 플랫폼 ③온라인 교육시스템 ④온라인 교육컨텐츠 ⑤원격근무, 화상 시스템 ⑥온라인 홍보, 고객응대 ⑦스마트 금융 ⑧온라인 소비재(식품 등) 제조판매 ⑨생활중개 플랫폼 ⑩스마트 상점 ⑪전자상거래 ⑫게임 ⑬콘텐츠 ⑭소통 ⑮여행·숙박·장거리이동 ⑯물류 플랫폼, 배송대행 ⑰드론·무인기, 자율차 ⑱빅데이터, AI ⑲가상현실(AR/VR) ⑳클라우드 ㉑로봇 ㉒사물인터넷(IoT) ㉓지능형/차세대 반도체 ㉔5G ㉕정보보안" 분야를 말합니다.

일자리창출 지원 프로그램(굿잡보증 등)

일자리창출 효과가 높게 나타나는 창업기업 및 지식서비스·신성장 산업 영위기업 등에 중점 보증지원하고, 중소기업의 신규인력 고용에 소요되는 인건비를 지원함으로써 직·간접적으로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는 보증상품

지원대상

◉ 굿잡보증

- 고용유형별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 운영

구 분		대 상 기 업
고용창출 (Track1)	점핑잡 (Jumping-Job)	• 과거 1년전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 20% 이상 고용증가
	쉐어링잡 (Sharing-Job)	• (정규직전환) 최근 1년 이내 2명 이상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 (여성고용) 최근 1년 이내 경력단절여성 재고용 • (지방고용) 지방 중소기업으로 과거 1년전 대비 3명 이상 고용 증가 • (장애인고용) 최근 1년 이내 장애인 고용 • (특성화고) 최근 1년 이내 특성화고 또는 마이스터고 졸업자 고용 • (일자리안정) 최근 1년 이내 2명 이상 일자리 안정자금 수혜 • 일자리제공형 사회적기업(단, 상시근로자 5인 이하인 기업 제외) • 상생형 지역일자리 참여기업
고용유지 (Track2)	베스트잡 (Best-Job)	•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유지 * 과거 1년전 대비 고용감소시 제외

◉ 일자리창출 한도가산

- 보증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규 근로자를 고용한 신기술 사업자의 경우 운전자금 보증에 대해 신규고용인력별 보증지원 한도가산

지원내용

◉ 굿잡보증

구 분	주 요 내 용	우 대 사 항
고용창출 (Track1)	• 인력채용에 직접 소요되는 자금에 대해 보증지원 • 원자재 구입 등 운전자금과 공장신축, 설비도입 등 시설자금에 대해 보증지원	• 보증비율 우대(95%) • 보증료 0.4%p 감면
고용유지 (Track2)		• 보증비율 우대(90%) • 보증료 0.3%p 감면 • 인건비 증가금액에 대해 운전자금 3억원까지 지원

◉ 일자리창출 한도가산

- 한도 가산은 최고 5억원 이내로 하며, 신규고용인력 1인당 가산금액은 신규고용인력의 나이, 기술자격에 따라 차등 결정

구 분	한도가산금액(1인당)
만 39세 이하 중급기술인력 이상	50백만원
만 30세 이하 초급기술인력	40백만원
그 밖의 인력	30백만원

신청 · 접수

◉ 공고(예정) 시기 : ’26.1.1.~’26.12.31. 상시 신청·접수

◉ 신청방법 : 기술보증기금 디지털지점(www.kibo.or.kr/dbranch) 및 전국 영업점

문의처

◉ 기술보증기금
(전화) 1544-1120 (홈페이지) www.kibo.or.kr

◉ 기술보증기금 기술보증부
(전화) 051-606-7345 (이메일) 2037@kibo.or.kr

창업기업 우대지원

사업개요

기술력 기반의 창업을 유도하여 미래의 성장동력을 육성하고 일자리 창출을 확대하기 위해 창업기업에 대한 다양한 보증상품을 마련하여 우대지원

지원대상

구 분	대 상 기 업
맞춤형 창업기업보증	• 신기술사업을 영위하는 창업후 7년 이내인 중소기업으로, 맞춤형 창업육성분야에 해당하는 기업
청년창업 기업보증	• 청년창업기업(창업후 7년 이내로 실제경영자가 만 17~39세인 기술창업기업)
중장년 기술경력자 창업보증	• (숙련형) 혁신성장산업을 영위하면서, 대표자(실제경영자)가 만 40세 이상의 고급기술자 또는 특급기술자에 해당하는 (예비)창업기업 • (세대융합형) 혁신성장산업을 영위하면서, 대표자를 포함한 경영진이 '중장년+청년'으로 구성된 창업후 3년 이내 (예비)창업기업

지원내용

<table>
<tr><th>구 분</th><th colspan="3">주 요 내 용</th><th>우 대 사 항</th></tr>
<tr><td>맞춤형
창업기업
보증</td><td colspan="3">• 특성별로 구분된 4대 맞춤형 창업육성 분야*를 선정하여 집중지원
* 지식문화창업, 이공계챌린저창업, 기술경력·뿌리창업, 첨단·성장연계창업</td><td>• 보증비율 우대(90%～100%)
• 보증료 0.3～0.4%p 감면 (1억원 이내 1.0% 고정보증료)
• 지식재산권 건당 운전자금 추가 한도가산(2억원 이내)
* 특허권 건별 30백만원 등</td></tr>
<tr><td rowspan="3">청년창업
기업보증</td><td>기본
우대</td><td colspan="3">• 보증비율 우대(95%)
* 창업후 1년 또는 1억원 이내인 경우 전액보증
• 보증료 0.3%p 감면</td></tr>
<tr><td rowspan="2">추가
우대</td><td>청년창업
기업우대
프로그램</td><td>창업후 7년 이내
청년창업기업</td><td>• 지원한도 3억원
• 창업후 5년 이내 0.3% 고정보증료</td></tr>
<tr><td>청년
테크스타
보증</td><td>창업지원사업
참여기업 중
우수기업으로
추천받은
청년창업기업 등</td><td>• 보증비율 우대(100%)
• 창업후 5년이내 및 3억원 이내 0.3% 고정보증료
* 상품에 따라 6억원까지 적용 가능</td></tr>
<tr><td>중장년
기술경력자
창업보증</td><td colspan="3">• 혁신성장산업을 영위하는 중장년 기술경력자 창업에 대해 우대지원</td><td>• 보증비율 우대(95~100%)
• 보증료 최대 0.7%p 감면</td></tr>
</table>

신청 · 접수

- 공고(예정) 시기 : ’26.1.1.~’26.12.31. 상시 신청·접수
- 신청방법 : 기술보증기금 디지털지점(www.kibo.or.kr/dbranch) 및 전국 영업점

문의처

- 기술보증기금
  (전화) 1544-1120 (홈페이지) www.kibo.or.kr
- 기술보증기금 기술보증부
  (전화) 051-606-7472 (이메일) 2100@kibo.or.kr

Q&A

Q **4대 맞춤형 창업육성분야 지원대상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A 4대 맞춤형 창업육성분야는 아래와 같습니다.

지식문화 창업	• 혁신형 지식서비스산업 또는 선도콘텐츠산업 영위기업
이공계 챌린저창업	• 대표자가 이공계 출신자인 기업
기술경력·뿌리창업	• 대표자가 만40~59세로서 동업계 종사경력 10년 이상인 제조업(뿌리산업 포함) 영위기업
첨단·성장 연계창업	• (첨단산업) 첨단기술·제품 확인기업, 지식기반 제조업 영위기업, 혁신성장산업 영위기업 • (유관기관 선정자)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 선정되어 2년 경과하지 않은 기업

소셜벤처(S-Venture) 임팩트 보증

사회성과 혁신성장성을 갖춘 소셜벤처기업을 적극 발굴하고 사회연대 경제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금융 지원 상품으로서 보증 우대 지원을 통해 ESG 관련 사회문제 해결 및 혁신성장을 견인

지원대상

- 「소셜벤처기업 판별기준」에 따른 사회성 및 혁신성장성 충족기업

* 사회성 및 혁신성장성 판별표에 의한 평가점수의 합계가 각각 70점이상인 기업

신청제외 대상

- 부당하게 채무를 면탈하여 기금의 건전성을 훼손한 자
- 휴업중인 기업, 대출금을 빈번히 연체하는 기업 또는 기보, 신보, 재단 사고 기업 등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4에 해당하는 기업

지원내용

구 분	우 대 사 항
대상자금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
산정특례	같은 기업당 운전자금보증금액 2억원이하
보증비율	100% 전액보증
보증료	0.5%p 감면

신청 · 접수

- 공고(예정) 시기 : '26.1.1.~'26.12.31. 상시 신청·접수
- 신청방법 : 기술보증기금 디지털지점(www.kibo.or.kr) 및 전국 영업점
- 추진절차

단 계 별	취 급 자	주 요 내 용
보증신청	신청기업	영업점 방문 또는 디지털지점(인터넷) 신청
상담	영업점 담당자	보증금지·제한 해당 여부, 사회성 및 기술사업내용 등을 검토하여 계속 진행 여부 결정 및 절차안내
서류 제출	신청기업	기술사업계획서 등 제출 (필요서류는 종류에 따라 고객이 디지털지점에 제출하거나, 고객의 협조를 받아 기금직원이 직접 수집)
소셜벤처 판별 및 기술평가	영업점 담당자	신청기업으로부터 접수한 자료 등을 예비(사전)검토 후 소셜벤처 판별심사 및 현장실사 실시하여 사회성과 혁신성장성 등을 평가
심사·승인 후 보증서 발급	영업점 담당자	사회적 가치, 혁신성장성, 기술등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종승인 후 보증약정 및 보증서 발급

문의처

- 기술보증기금 소셜벤처가치평가센터(☎ 02-3407-2900), 고객센터(☎ 1544-1120), 소셜벤처스퀘어(sv.kibo.or.kr)

Q&A

Q **소셜벤처(S-Venture) 임팩트 보증은 소셜벤처기업만 신청 가능한가요?**

A 소셜벤처(S-Venture)임팩트 보증은 소셜벤처기업 전용 보증상품이며, 소셜벤처스퀘어(sv.kibo.or.kr)를 통해 판별 인정받거나, 보증신청 시 소셜벤처기업으로 판별 인정될 경우 보증신청 가능합니다.

Q **우리 기업이 소셜벤처기업인지 사전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A 공고문과 함께 안내드린, 사업계획서 작성예시(샘플)를 확인하시고 작성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예시(샘플)는 신청자가 사업계획서를 보다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참고자료(예시)이며 선정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용어 설명

소셜벤처스퀘어(sv.kibo.or.kr) : 소셜벤처기업 판별, 사회적 가치 측정 및 소셜벤처 관련 지원사업소식 등을 기술보증기금이 지원하고 운용하는 소셜벤처 전용 사이트

클린플러스 보증

별도의 중개사업자를 선정하여 사용자기반의 간편하고 안정적인 운영자금 집행 플랫폼을 구축함으로써, 자금사용의 투명성과 고객의 보증부대출 이용 편의성을 모두 향상한 보증상품

〈 전년대비 달라지는 내용 〉

구분	'25년	'26년
지원내용	협약체결기관 : 기업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경남은행,부산은행	협약체결기관 : 기업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경남은행,부산은행, 농협은행

지원대상

- 정상적인 사업영위 과정에서 발생한 물품·용역 대금(외주비 포함), 인건비, 임차료 등의 결제목적 회전성 운전자금에 대해 보증지원(근보증)

지원내용

- 기보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에 대한 근보증 채무에 대해 우대지원
  - 보증비율 95%(최초 취급후 5년간)

- 보증료 0.5%p 감면(최초 취급후 5년간)
- 협약체결기관 : 기업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경남은행, 부산은행, 농협은행

◉ 모니터링 실시

- (자금집행 모니터링) 중개사업자는 보증기업이 플랫폼에 입력한 자금용도 정보와 자금용도별 증빙자료를 대조하여 일치여부 등을 검증
- (이상거래 모니터링) 기보는 중개사업자로부터 전송받은 대출요청 정보에 대해 이상거래로 의심되는 정보를 차단하며, 필요할 경우 사전 통제

신청 · 접수

◉ 공고(예정) 시기 : '26.1.1.~'26.12.31. 상시 신청·접수

◉ 신청방법 : 기술보증기금 디지털지점(www.kibo.or.kr/dbranch) 및 전국 영업점

◉ 추진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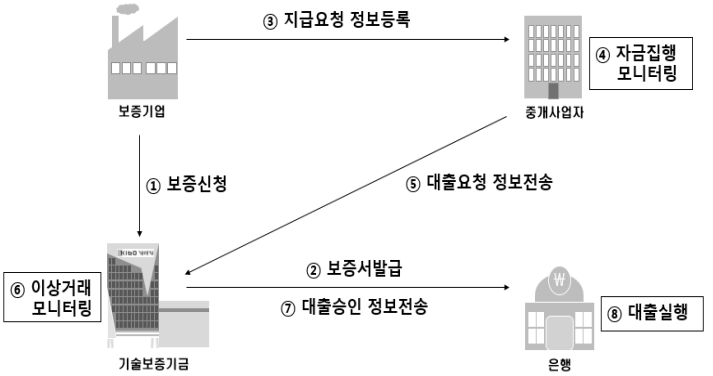

- (보증기업) 중개사업자가 제공하는 플랫폼을 통해 직접 대출요청 정보 입력
- (중개사업자) 보증기업이 입력한 정보의 이상여부 사전점검 후 이상이 없을 경우 기금 및 은행에 대출요청 정보 전송
- (은행) 대출요청 정보에 따라 지급상대처에 대출실행

문의처

- 기술보증기금
  (전화) 1544-1120 (홈페이지) www.kibo.or.kr
- 기술보증기금 기술보증부
  (전화) 051-606-7468 (이메일) 1986@kibo.or.kr

용어 설명

클린플러스보증 플랫폼 : 기업이 대출요청 정보를 입력하고 그에 따라 자금 집행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웹 또는 모바일 형식의 시스템

문화산업완성보증

사업개요

문화상품의 제작사가 제작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에 보증서를 발급하고, 문화상품의 제작을 완성하여 인도시 수령하는 판매대금이나 관련 수익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는 제도

〈 전년대비 달라지는 내용 〉

구분	'25년	'26년
지원규모	1,200억원	1,000억원

지원대상

- 신청자격 : 문화상품*을 제작하는 기업(문화산업전문회사 포함)
  * 문화상품은 방송, 공연, 영화, 애니메이션, 게임, 캐릭터, 디지털콘텐츠, 음악, 만화, 출판에 한함
- 지원조건 : 선판매계약금액 이내 보증신청 여부에 따라 차등화

보증신청금액	대상기업의 요건
선판매계약금액 이내	• 제작비의 30%이상 자금조달 확정(본건 대출 제외)
선판매계약금액 초과	• 제작비의 50%이상 자금조달 확정(본건 대출 제외) * 단, 기술사업평가등급 A 이상인 경우 제작비의 30%이상 자금조달 확정
1억원 이하	• 제작비 대비 자금조달 요건 적용 생략

* 자금조달 확정 : 자기자금, 선판매계약금액, 투자계약금액, 크라우드펀딩 모집금액, 차입금 등

* 선판매계약금액 : 제작사가 문화상품 제작 완료 전에 선판매계약에 의해 유통사에게 판매하기로 한 판매금액(부가가치세액 제외)

지원내용

◉ 최대 보증지원 금액 : 같은 기업당 최대 지원한도 15억원* 이내

* 기술사업평가등급 A등급 이상인 수출용 또는 방송용(드라마, 예능, 애니메이션 등) 문화콘텐츠 제작기업에 대하여는 같은 기업당 완성보증금액 50억원 이내

◉ 보증금액결정(기술사업평가등급별 차등 지원)

- 기술사업평가등급별 제작비 지원비중 (최저 20% ~ 최고 70%)

기술사업평가등급	제작비 지원비중	가 감 비 중
A 이상	60% 이내	• 가산(+20%) : 수출콘텐츠 • 가산(+10%) :「혁신성장공동기준」문화콘텐츠 분야(영화, 방송, 음악, 애니메이션, 캐릭터), 융복합콘텐츠, 유통사가 국내 OTT인 콘텐츠,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콘텐츠 • 차감(-10%) : 채권양수도계약 제3자 대항요건 미충족
BBB, BBB+	50% 이내	
BB, BB+	40% 이내	
B, B+	30% 이내	

* 혁신성장공동기준 문화콘텐츠 : 영화, 방송, 케이팝, 애니메이션, 웹툰, 특수효과

* 수출콘텐츠: 수출계약서 등에 의거 수출을 전제로 제작하는 문화콘텐츠

* 융복합콘텐츠: 기존 콘텐츠 영역에 기술, 타장르, 타산업와의 다각적인 융복합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콘텐츠

* 유통사가 국내 OTT인 콘텐츠: 국내 자본이 50% 이상인 OTT 사업자에 유통하는 문화콘텐츠

*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콘텐츠: 예술인 고용보험에 가입한 문화콘텐츠

- 지원규모 : 1,000억원

신청 · 접수

- 공고(예정) 시기 : '26.1.1. ~ '26.12.31. 상시 신청·접수
- 신청방법 : 기술보증기금 디지털지점(www.kibo.or.kr) 및 문화콘텐츠금융센터·콘텐츠벤처투자금융센터에 상담요청 및 신청
- 제출서류 : 기술사업계획서, 선판매계약서, 문화콘텐츠 제작예산서 등

심사·평가 주요내용

▸ 문화콘텐츠 제작계획, 자금조달계획, 판매계획 등을 고려한 문화콘텐츠 제작의 완성가능성, 보증금액의 적정성 등 프로젝트 위주로 평가

문의처

- 기술보증기금 : (전화) 1544-1120 / www.kibo.or.kr
  - 서울문화콘텐츠금융센터 (전화) 02-3297-8500
  - 경기콘텐츠벤처투자금융센터 (전화) 031-725-7857
  - 부산콘텐츠벤처투자금융센터 (전화) 051-726-1300
  - 대전콘텐츠벤처투자금융센터 (전화) 042-480-1312

Q&A

Q **선판매계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신청이 불가한가요?**

A 보증신청 시점에 문화콘텐츠 선판매계약이 없어도 향후 판매계약 체결이 확실시 되는 경우에 한해 문화산업완성보증 심사가 가능하며, 선판매계약 체결 이후 보증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용어 설명

선판매계약 : 제작사와 유통사 간 제작 완성 후 인도 예정인 문화콘텐츠에 대해 판매조건 등이 합의된 계약으로, 문화콘텐츠의 유형 및 특성, 유통 과정에 따라 구체적 명칭은 다름

* 예시: (방송) 방송프로그램 제작 계약, (영화) 배급계약, (공연) 대관계약 및 티켓판매대행계약 등

고부가서비스 프로젝트 보증

정보통신 솔루션 개발, 문화콘텐츠 제작 등 고부가서비스 용역 수행 기업이 소요예산 범위 내에서 계약서 등에서 정한 계약기간 이내에 용역공급을 완료하도록 필요자금에 대해 보증을 지원

지원대상

- 신청자격 : 고도의 창조력이 체화되고 지식집약도와 경제적·문화적 파급효과가 큰 혁신형 지식서비스산업 및 선도콘텐츠산업 영위기업 중 고부가서비스 용역계약 체결 기업 또는 체결 예상 기업

혁신형 지식서비스산업	선도콘텐츠산업
▸ 소프트웨어개발 및 공급업 ▸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 연구개발업 / 전문디자인업 /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 교육지원 서비스업 ▸ 창작, 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등 ▸ 전시, 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 ▸ 전자상거래 소매업 및 중개업	▸ 게임산업/공연산업/광고산업 ▸ 방송산업 ▸ 음악, 영화, 비디오, 애니메이션산업 ▸ 정보서비스산업 ▸ 출판산업/캐릭터산업

신청제외 대상

- 부당하게 채무를 면탈하여 기금의 건전성을 훼손한 자
- 휴업중인 기업, 대출금을 빈번히 연체하는 기업 또는 기보, 신보, 재단 사고기업 등

지원내용

- 최대 보증지원 금액 : 같은 기업당 최대 30억원 이내

  * 용역공급계약 체결 이전에는 최대 10억원 이내

- 보증금액결정(기술사업평가등급별 차등 지원)

  - 기술사업평가등급별 제작비 지원비중

기술사업 평가등급	용역공급계약前 지원		용역공급계약後 지원
	총제작비 지원비중	보증지원 가능금액	총제작비 지원비중
A 이상	20% 이내	10억원	60% 이내
BBB+, BBB		8억원	50% 이내
BB+, BB		6억원	40% 이내
B+ 이하		2억원	30% 이내

신청 · 접수

- 신청·접수 시기 : '26.1.1. ~ '26.12.31. 상시 신청·접수
- 신청방법 : 기술보증기금 디지털지점(www.kibo.or.kr) 및 영업점·문화콘텐츠금융센터 ·콘텐츠벤처투자금융센터에 상담요청 및 신청

심사·평가 주요내용

▸ 기업의 기술력, 사업전망, 경영능력 등 종합적 검토 및 용역수행능력, 자금조달계획 등을 고려한 프로젝트계약 완수가능성 등을 중심으로 프로젝트의 성공가능성 여부 종합적으로 심사

문의처

- 기술보증기금 : ☎ 1544-1120 / www.kibo.or.kr

  - 서울문화콘텐츠금융센터 (☎ 02-3215-5971)
  - 경기콘텐츠벤처투자금융센터 (☎ 031-725-7857)
  - 부산콘텐츠벤처투자금융센터 (☎ 051-726-1300)
  - 대전콘텐츠벤처투자금융센터 (☎ 042-480-1312)

기후환경테크·환경산업 영위기업 보증

사업개요

기후테크 산업성장, 환경보전 및 지속가능한 발전 등 국가 및 사회 가치의 실현을 위해 기후테크·환경산업 영위 기업의 성장에 필요한 자금을 보증으로 지원하는 제도

지원대상

- 신청자격
  - (기후테크기업 우대보증) 기후변화대응 기술을 개발 또는 사업화 하는 기업
  - (녹색보증) 녹색산업 영위기업 또는 신재생에너지 발전기업
  - (환경산업 영위기업 우대보증) 우수환경기업, 미세먼지저감기업, 물산업 영위기업
- 지원조건 :
  - (기후테크기업 우대보증) 기후테크보증 판별기준* 충족하는 기업으로 기술사업평가등급 B등급 이상

* ① 기후변화대응 기술 판별: 한국형 탄소중립 100대 핵심기술, 온실가스 저감 또는 처리 기술, 기후변화 관측·예측 및 예방 기술 또는 영향 제거 기술, 기후 시장 진출을 위한 기술, 국내외 기후변화 대응 사업 또는 프로젝트 참여 경험 및 향후 수주전략 수립 여부 등

* ② 기후테크 산업 유형: 클린테크(재생에너지, 에너지신산업, 탈탄소에너지 등), 카본테크(탄소포집, 공정혁신, 모빌리티 등), 에코테크(자원순환, 폐기물 절감, 업사이클링), 푸드테크(대체식품, 스마트식품, 애그테크), 지오테크(우주·기상, 기후적응, AI·데이터·금융)

- (녹색보증) 화석에너지 사용을 대체하고 에너지와 자원 효율을 높이며,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재화를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영위

* 신재생에너지 발전기업의 경우 「전기사업법」에 의한 발전사업 및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영위하고, 녹색보증 판별기준에 따라 녹색보증 대상으로 확인된 사업자에게 지원

- (환경산업 영위기업 우대보증) 우수환경기업 판별, 미세먼지 대응기술 사업화 또는 관련 업종 영위, 환경산업 특수분류표 중 물산업 관련 업종 영위 또는 혁신형 물기업

◉ 우대사항 :

- (기후테크기업 우대보증) 95% 부분보증, 보증료율 0.2%p 감면
- (녹색보증) 보증료율 0.2%p 감면
- (환경산업 영위기업 우대보증) 90% 부분보증, 보증료율 0.2%p 감면

신청제외 대상

▸ 부당하게 채무를 면탈하여 기금의 건전성을 훼손한 자
▸ 휴업중인 기업, 대출금을 빈번히 연체하는 기업 또는 기보, 신보, 재단 사고기업 등

지원내용

◉ 지원 자금 : 운전자금, 시설자금

신청 · 접수

◉ 공고(예정) 시기 : '26.1.1. ~ '26.12.31. 상시 신청·접수

◉ 신청방법 : 기술보증기금 디지털지점(www.kibo.or.kr) 및 영업점에 상담 요청 및 신청

문의처

◉ 기술보증기금 녹색콘텐츠금융부 (전화) 051-606-7391

탄소가치평가보증

사업개요

탄소가치평가보증은 탄소중립을 선도하는 혁신 중소·벤처기업의 육성 및 탄소중립 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고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기업을 발굴·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보증지원제도

〈 전년대비 달라지는 내용 〉

구분	'25년	'26년
지원규모	4,800억원	5,500억원

지원대상

- 신청자격 : 고효율 설비도입, 연료전환, 공정전환·개선, 온실가스 저감기술 개발·사업화 등 온실가스 감축 성과가 있거나 예상되는 全 분야 기업
- 우대사항 : 탄소감축 기여 수준에 따라 보증비율 우대(90~95% 부분보증) 적용 및 보증료 감면 차등화(0.2~0.4%p 감면)

신청제외 대상

- 부당하게 채무를 면탈하여 기금의 건전성을 훼손한 자
- 휴업 중인 기업, 대출금을 빈번히 연체하는 기업 또는 기보, 신보, 재단 사고기업 등

지원내용

- 저탄소 인프라 확충, 탄소저감기술, 저탄소 경제사회로의 공정 전환에 소요되는 시설 및 운전자금 보증지원
  - 기존 운전자금 산정금액에 탄소가치평가금액을 가산하여 추가 지원

  * 시설자금은 해당 소요자금한도 이내 지원

온실가스 감축 소요자금 (운전자금 소요자금 산정금액)	+	탄소가치 산출액	=	보증가능금액

- 지원금액 : 5,500억원 (‘26년)

신청·접수

- 공고(예정) 시기 : ’26.1.1.~’26.12.31. 상시 신청·접수
- 신청방법 : 기술보증기금 디지털영업점(www.kibo.or.kr) 및 녹색기술금융센터를 통해 보증상담 신청
- 선정평가 : 탄소가치평가모델(KCVM) 및 기후기술평가모형(CTRS) 등을 활용하여 환경적 가치를 보증심사에 반영

  *【탄소가치평가모델(KCVM)】기금이 개발한 고난도 가치평가체계로서 기업이 기후환경기술 · 프로젝트의 사업화를 통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온실가스 감축량을 화폐단위로 평가하는 모델

① 온실가스 감축기간 결정 → ② 온실가스 추정 감축량 산정 → ③ 화폐가치 환산 → ④ 할인율 결정 → ⑤ 탄소가치 산출

◉ 추진절차

단 계 별	취 급 자	주 요 내 용
보증신청	신청기업	영업점 방문 또는 디지털지점(인터넷) 신청
상담	영업점 담당자	보증금지·제한 해당여부, 기술사업내용 등을 검토하여 계속 진행여부 결정 및 절차안내
서류 제출	신청기업	기술사업계획서 등 제출 (필요서류는 종류에 따라 고객이 디지털지점에 제출하거나, 고객의 협조를 받아 기금직원이 직접 수집)
기술평가	영업점 담당자	신청기업으로부터 접수한 자료 등을 예비(사전)검토 후 현장실사 실시하여 기술력, 탄소가치, 사업타당성 등을 평가
심사·승인 후 보증서 발급	영업점 담당자	기술평가결과, 사업전망, 경영능력, 신용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최종승인시 보증약정 및 보증서 발급

문의처

◉ 기술보증기금 녹색콘텐츠금융부 (전화) 051-606-7346

- 서울 녹색기술금융센터 (전화) 02-2155-3786
- 수원 녹색기술금융센터 (전화) 031-8006-1550
- 대전 녹색기술금융센터 (전화) 042-610-2224
- 부산 녹색기술금융센터 (전화) 051-606-6511

택소노미평가보증

사업개요

택소노미평가보증은 녹색기술·환경산업 기업이 영세성을 극복하고, 경쟁력을 갖춘 강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따른 녹색경제활동을 영위하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보증지원

〈 전년대비 달라지는 내용 〉

구분	'25년	'26년
지원규모	2,800억원	2,100억원

지원대상

- 신청자격 : 녹색경제활동을 영위하는 기업
- 지원조건 : K-택소노미에 적합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녹색기술·환경산업 기업
- 우대사항 : K-택소노미 적합성 평가 단계별로 보증비율 우대(90~95% 부분보증) 적용 및 보증료 감면(0.2~0.4%p 감면) 차등화

신청제외 대상

- 부당하게 채무를 면탈하여 기금의 건전성을 훼손한 자
- 휴업중인 기업, 대출금을 빈번히 연체하는 기업 또는 기보, 신보, 재단 사고기업 등

지원내용

- 지원 세부내용 : 녹색경제활동에 소요되는 운전 및 시설자금 보증지원
- 지원금액 : 2,100억원 (‘26년)

신청 · 접수

- 공고(예정) 시기 : ‘26.1.1.~‘26.12.31. 상시 신청 · 접수
- 신청방법 : 기술보증기금 디지털영업점(www.kibo.or.kr) 및 녹색기술금융센터를 통해 보증상담 신청
- 제출서류 : K-택소노미 적합성 평가 신청서, 배제기준 및 보호기준 검토를 위한 서약서(체크리스트), 녹색경제활동 증빙서류 등
- 선정평가 : K-택소노미 적합성 평가시스템(KTAS)을 활용하여 해당 자금의 사용 목적별로 4단계 적합성 평가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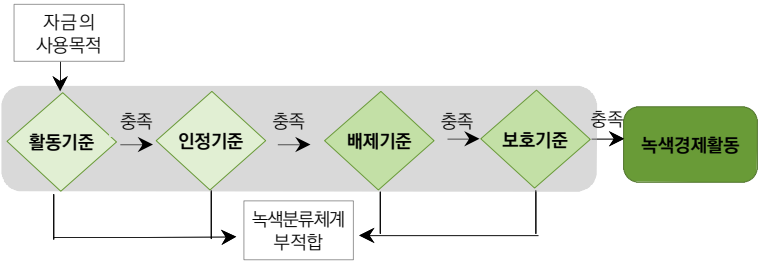

심사·평가 주요내용

평가기준	세부내용
활동기준 (1단계)	해당 자금의 사용 목적이 활동기준에 부합하는지 평가
인정기준 (2단계)	해당 자금의 사용 목적이 6대 환경목표 중 하나 이상의 환경목표 달성을 위한 기술적 기준에 부합하는지 평가
배제기준 (3단계)	해당 자금의 사용 목적이 환경피해 판단기준(DNSH*기준)에 따른 요건에 부합하는지 평가 * 환경목표 달성 과정에서 다른 환경목표에 심각한 피해를 주지 않아야함
보호기준 (4단계)	해당 자금의 사용 목적이 인권, 노동, 안전, 반부패, 문화재 파괴 등 관련 법규 위반여부 평가

◉ 추진절차

단 계 별	취 급 자	주 요 내 용
보증신청	신청기업	영업점 방문 또는 디지털지점(인터넷) 신청
상담	영업점 담당자	보증금지·제한 해당여부, 기술사업내용 등을 검토하여 계속 진행여부 결정 및 절차안내
서류 제출	신청기업	기술사업계획서 등 제출 (필요서류는 종류에 따라 고객이 디지털지점에 제출하거나, 고객의 협조를 받아 기금직원이 직접 수집)
기술평가	영업점 담당자	신청기업으로부터 접수한 자료 등을 예비(사전)검토 후 현장실사 실시하여 기술력, K-택소노미 적합여부, 사업타당성 등을 평가
심사·승인 후 보증서발급	영업점 담당자	기술평가, 사업전망, 경영능력, 신용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최종승인시 보증약정 및 보증서 발급

문의처

◉ 기술보증기금 녹색콘텐츠금융부 (전화) 051-606-7346

- 서울 녹색기술금융센터 (전화) 02-2155-3786
- 수원 녹색기술금융센터 (전화) 031-8006-1550
- 대전 녹색기술금융센터 (전화) 042-610-2224
- 부산 녹색기술금융센터 (전화) 051-606-6511

참고사항

◉ 제목 : 탄소중립 플랫폼

(내용) 탄소감축 및 택소노미 적합성 판단 자가진단 시스템

- (경로) 기술보증기금 홈페이지 〉 하위메뉴 중 탄소중립 플랫폼 접속
- (홈페이지)

R&D 보증

사업개요

- 정부의 재정한계를 극복하고 기업의 자체 R&D투자 활성화를 위해 R&D전주기에 걸쳐 맞춤형 금융지원
- R&D를 개발·사업화단계로 구분하고, 각 단계별 특성에 맞는 평가방법과 소요자금 사정기준을 적용하여 R&D자금을 지원

지원대상

- R&D 개발 및 개발된 과제의 사업화를 추진 중인 중소기업

신청제외 대상

- ▸ 부당하게 채무를 면탈하여 기금의 건전성을 훼손한 자
- ▸ 휴업중인 기업, 대출금을 빈번히 연체하는 기업 또는 기보, 신보, 재단 사고기업 등

지원내용

- R&D과제의 개발, 사업화에 필요한 자금 지원
- 개발단계 자금
  - R&D 평가표에 의한 등급이 'B등급 이상'이고 경제성 분석 결과 '경제성이 인정'된 기업

구 분	주 요 내 용
개발 단계	• 대상과제 : 신청일 현재 2년 이내에 개발이 완료되는 과제 • 대상자금 - (연구개발자금) 연구개발과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직·간접적으로 소요되는 자금 - (개발완성자금) 디자인, 시제품 제작 등 개발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소요되는 자금

- 사업화단계 자금(기업단위)
  - KTRS(KTRS-SM)평가표에 의한 '사업화타당성'이 인정된 개발 완료 과제

구 분	주 요 내 용
사업화 단계	• 대상과제 - 개발기간 종료 후 3년 이내의 기업자체 R&D 과제 - 최근 3년 이내 개발성공 판정을 받은 정부출연 R&D 과제 - 최근 3년 이내 기술이전을 받은 공공연이전 R&D 과제 • 대상자금 : R&D 성공과제의 사업화에 소요되는 운전 및 시설자금

신청·접수

- 공고(예정) 시기 : '26.1.1.~'26.12.31. 상시 신청·접수
- 신청방법 : 기술보증기금 디지털지점(www.kibo.or.kr) 및 전국 영업점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기술사업계획서 등

심사·평가 주요내용

- ▸ 기업의 기술력, 사업전망, 경영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기술사업타당성평가 등)
- ▸ 기술력을 보유하면서 사업안정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기업에 적정한 보증금액을 지원

◉ 추진절차

단 계 별	취 급 자	주 요 내 용
보증신청	신청기업	영업점 방문 또는 디지털지점(인터넷) 신청
상담	영업점 담당자	보증금지·제한 해당여부, 기술사업내용 등을 검토하여 계속 진행여부 결정 및 절차안내
서류 제출	신청기업	기술사업계획서 등 제출 (필요서류는 종류에 따라 고객이 디지털지점에 제출하거나, 고객의 협조를 받아 기금직원이 직접 수집)
기술평가	영업점 담당자	신청기업으로부터 접수한 자료 등을 예비(사전)검토 후 현장실사 실시하여 기술력, 탄소가치, 사업타당성 등을 평가
심사·승인 후 보증서발급	영업점 담당자	기술평가결과, 사업전망, 경영능력, 신용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최종승인시 보증약정 및 보증서 발급

문의처

◉ 기술보증기금 (☎ 1544-1120 / www.kibo.or.kr)

특허기술가치평가보증

사업개요

지식재산처와의 「우수특허기술 사업화지원 협약」에 의해 특허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고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특허기술의 가치평가를 통해 금융을 지원

지원대상

- 특허권을 사업화하는 중소기업으로 기술사업평가등급 'B등급' 이상인 기업

신청제외 대상

- ▸ 부당하게 채무를 면탈하여 기금의 건전성을 훼손한 자
- ▸ 휴업중인 기업, 대출금을 빈번히 연체하는 기업 또는 기보, 신보, 재단 사고기업 등

지원내용

- 신청일 현재 등록된 특허권 또는 출원 특허의 사업화에 소요되는 운전자금을 지원
  - 기술가치평가를 통해 산출된 기술가치금액 이내에서 같은기업당 10억원 한도로 지원
- 지식재산처의 기술평가수수료 지원결정 시 기술평가료 5백만원 중 3백만원은 지식재산처(한국발명진흥회)가 지원하며, 지원금을 제외한 평가비용 2백만원은 금융기관 또는 신청기업이 부담

- 보증비율(90%~95%), 보증료(0.3%p~0.5%p 감면) 등 우대지원
- 정부 지원사업 또는 금융기관(국민, 기업, 신한, 우리, 하나, 아이엠뱅크, 광주은행)과 협약에 의한 보증의 경우 평가료 지원

유의사항

▸ 보증지원은 등록된 특허권 또는 출원 특허에 한하여 운용되며, 여타 지식재산(S/W, 저작권 등)은 기술보증기금의 지식재산(IP)평가보증으로 취급 가능

신청·접수

- 공고(예정) 시기 : '26.1.1.~'26.12.31. 상시 신청·접수
- 신청방법 : 기술보증기금 디지털지점(www.kibo.or.kr) 및 전국 영업점
- 제출서류

구 분		자 료 명	고객 협조사항	
고객 준비 서류	온라인 자료 제출	▹ 기술사업계획서	▹ 디지털지점에서 온라인 제출 * 양식 다운받아 작성 후 파일 업로드 또는 직접 제출 가능	서식
		▹ 주주명부 ▹ 신분증 사본 ▹ 임차계약서 사본(사업장·거주주택)	▹ 디지털지점에서 온라인 제출	-
기금 수집 서류	대법원 등기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기금에 소유부동산 소재지 사전 고지	-
	행정정보 공동이용 or 스크래핑 or 마이데이터 (선택)	▹ 주민등록표 등·초본 ▹ 사업자등록증명 ▹ 납세증명서 등 (국세 및 지방세)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부가가치세 신고자료 ▹ 표준재무제표 (최근3개년) 등	▹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 대표자· 법인에 대한 행정정보 이용항목 사전동의 ▹ 스크래핑 방식은 디지털지점에서 고객 인증서를 통한 온라인 자료제출 방식을 의미함 ▹ 마이데이터 방식은 개인기업을 대상으로 디지털지점에서 간편인증을 통한 온라인 자료제출 방식을 의미함	사전 동의
	금융 거래	▹ 금융거래확인서	▹ 전자금융거래확인서 제공 사전동의	

* 기금수집서류 발급수수료는 기금 부담

심사·평가 주요내용

▸ 신청 기술의 기술성, 시장성, 사업화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추진절차

문의처

◉ 기술보증기금 (☎ 1544-1120 / www.kibo.or.kr)

- 기술평가부 (051-606-7642)

참고사항

① 전년도 사업공고

◉ 공고명 : 2025년 IP보증연계 지식재산평가지원 사업 공고 및 신청서식

- (경로) 한국발명진흥회 〉 지원사업 〉 지식재산 금융 · 사업화 〉 IP보증연계 지식재산 평가지원 〉 공지사항
- (홈페이지)

지식재산(IP) 평가보증

사업개요

우수 지식재산(IP)의 창업, 사업화 촉진을 위해 금융지원하는 제도로, 사업화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기술력 우수기업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는 지식재산(IP)의 가치를 기반으로 보증을 지원

지원대상

- 지식재산을 활용하여 창업·사업화하는 중소기업으로 기술사업평가 등급 'B등급' 이상인 기업
- 대상 지식재산: 산업재산권, 저작권, 신지식재산권, 임치된 지식재산 등
  - 단, 개발 진척도가 '제품화완료', '양산준비', '양산' 단계에 있는 지식재산

신청제외 대상

- 지식재산의 권리자가 신청기업과 동일하지 않은 경우
- 전용실시권의 경우 계약의 존속기간이 보증접수일로부터 5년 미만인 경우
- 심사청구가 되지 않은 출원 단계의 특허

지원내용

- 지식재산(IP)의 기술가치평가를 통한 사업화자금 보증지원

- 보증비율(90%~95%), 보증료(0.3%p~0.5%p 감면) 등 우대 지원
- 정부 지원사업 또는 금융기관(국민, 기업, 아이엠뱅크, 신한, 우리, 하나, 농협, 수협, 경남, 부산, 전북은행)과 협약에 의한 보증의 경우 평가료 지원

신청·접수

- 공고(예정) 시기 : '26.1.1.~'26.12.31. 상시 신청·접수
- 신청방법 : 기술보증기금 디지털지점(www.kibo.or.kr) 및 전국 영업점
- 제출서류

구 분		자 료 명	고객 협조사항	
고객 준비 서류	온라인 자료 제출	▹ 기술사업계획서	▹ 디지털지점에서 온라인 제출 * 양식 다운받아 작성 후 파일 업로드 또는 직접 제출 가능	서식
		▹ 주주명부 ▹ 신분증 사본 ▹ 임차계약서 사본 (사업장·거주주택)	▹ 디지털지점에서 온라인 제출	-
기금 수집 서류	대법원 등기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기금에 소유부동산 소재지 사전 고지	-
	행정정보 공동이용 or 스크래핑 or 마이데이터 (선택)	▹ 주민등록표 등·초본 ▹ 사업자등록증명 ▹ 납세증명서 등 (국세 및 지방세)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부가가치세 신고자료 ▹ 표준재무제표 (최근3개년) 등	▹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 대표자· 법인에 대한 행정정보 이용항목 사전동의 ▹ 스크래핑 방식은 디지털지점에서 고객 인증서를 통한 온라인 자료제출 방식을 의미함 ▹ 마이데이터 방식은 개인기업을 대상으로 디지털지점에서 간편인증을 통한 온라인 자료제출 방식을 의미함	사전 동의
	금융거래	▹ 금융거래확인서	▹ 전자금융거래확인서 제공 사전동의	

* 기금수집서류 발급수수료는 기금 부담

심사·평가 주요내용

▸ 신청기술의 기술성, 시장성, 사업화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추진절차

지원대상 결정	지 원 절 차					
신청·접수	**평가등급 산출**	**지원여부 결정**	**가치금액 산출**	**지원금액 결정**	**보증서 발급**	
기술평가 계약체결 →	KTRS 등 기술평가모형 적용 →	기술사업 타당성평가 "B등급"이상 →	기술가치 평가 →	기술가치 평가금액 이내 →	은행대출 실행	

문의처

◉ 기술보증기금 (☎ 1544-1120 / www.kibo.or.kr)

- 기술평가부 (051-606-7637)

참고사항

① 전년도 사업공고

◉ 공고명 : 2025년 소프트웨어 기술금융지원 사업공고

- (경로) 정보통신산업진흥원 〉 주요사업 〉 지원분야 〉 SW기술 가치확보 및 사업화지원
- (홈페이지)

- 공고명 : 2025년 데이터 가치평가 지원사업 공고
  - (경로)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홈페이지)

- 공고명 : 2025년 기술임치기업 및 기술가치평가 및 IR지원사업 참여 기업 모집 공고
  - (경로)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 재단소식 〉 공지사항/사업공고 〉 사업공고
  - (홈페이지)

기술평가

사업개요

무형의 기술을 대상으로 그 기술의 기술성, 시장성, 사업성 등을 평가하여 금액, 등급, 의견 등으로 표시하는 제도로서, 기술가치평가, 기술사업 타당성평가, 종합기술평가 등으로 분류하며 평가목적, 용도 등에 따라 다양하게 운용

〈 기술평가의 범위 〉

기술성	시장성	사업성
• 기술의 개요 • 국내외 기술동향 • 기술개발환경 및 기술수준 등	• 시장규모 및 특성 • 동업계 현황 • 시장수요 전망 등	• 매출전망 • 가격과 품질경쟁력 • 사업추진의 타당성 등

지원대상

- 특허법에 의하여 등록되어 있거나 출원중인 권리
- 실용신안법에 의하여 등록되어 있거나 출원중인 권리
- 디자인보호법에 의하여 등록된 권리
- 저작권법에 의하여 등록된 프로그램
- 신기술사업자가 보유한 기술 등

신청제외 대상

▸ 기술의 권리 등에 관하여 분쟁 중에 있는 경우 등

지원내용

종 류	주 요 내 용
기술가치 평가	• 벤처기업 현물출자 특례대상 산업재산권 등의 평가 • 외국인 출자 산업재산권 등의 평가 • 기술의 담보가치를 산정하기 위한 평가 • 기술의 이전·거래 기준가격 산정을 위한 평가 • 기술 관련 사업의 이전, 양수도 등을 위한 평가 • 기타 기술 또는 기술사업 관련 가치평가
기술사업 타당성평가	• 벤처기업 확인 및 이노비즈기업 선정 평가 • 발명의 사업성 평가 • 기술개발관련자금, 창업자금 또는 육성자금의 지원대상자 선정 등을 위한 평가 • 금융기관 등의 여신심사용 기술평가 • 기술이전·거래 등을 위한 타당성 평가 • R&D 평가 • 소셜벤처기업 지원을 위한 평가 • 보증지원을 위한 평가 • 팩토링 이용기업 등록을 위한 평가 • 기술평가 플랫폼의 원천기술 평가 및 KTRS-FM 자가진단평가
종합 기술평가	• 금융기관, 벤처캐피탈, 엔젤투자자 등의 투자용 평가 • 벤처기업의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평가 • 주식가치평가 • 기술신용정보 산출 및 제공을 위한 평가 • 혁신성장역량지수(Tech-Index) 평가

신청·접수

- 공고(예정) 시기 : '25.1.1.~'25.12.31. 상시 신청·접수
- 신청방법 : 기술보증기금 디지털지점(www.kibo.or.kr) 및 전국 영업점
- 제출서류 : 기술평가신청서, 기술사업계획서(기술가치평가용, R&D 평가용 등)

심사·평가 주요내용

▸ 신청기술의 기술성, 시장성, 사업화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추진절차

신청·접수	◦ 기술을 보유한 자 ◦ 투·융자, 현물출자 등을 위하여 평가를 필요로 하는 자 등
예비평가	본 평가에 앞서 신청인으로부터 접수한 자료 등을 활용하여 아래 사항을 검토 ◦ 접수 자료의 적정 여부 ◦ 특정자금 지원사업의 경우 지원대상 요건 여부 ◦ 기술성, 시장성 및 사업성 등에 관한 개략 사항
본 평 가	예비평가를 기초로 현장실사 및 보완조사 방법에 의하여 아래 사항을 검토 〈현장(면담)실사〉 ◦ 기술개발 조직 및 인력, 기술개발실적 등 기술개발능력 확인 ◦ 제품개발계획 및 진척도, 완성도 등 제품화 능력 확인 ◦ 생산설비 보유상황 및 가동상태 등 생산화 능력 확인 〈보완조사〉 ◦ 인쇄 매체, 인터넷 등을 통한 관련 자료 수집 ◦ 거래처, 동업계 또는 금융기관 등을 통한 조회 ◦ 대내외 각종 기술정보 및 산업동향 정보의 조회
기술자문/ 평가심의	◦ 필요 시 기술평가의 전문성과 신뢰도 제고를 위해 외부전문가의 기술자문 실시 및 평가의 적정성 등에 관한 심의·의결 실시
평과결과 통보	◦ 기술평가서 또는 소정 양식에 의거 신청인 등에게 통보

문의처

● 기술보증기금 (☎ 1544-1120 / www.kibo.or.kr)

● 개방형 기술평가 플랫폼 K-TOP (www.kibo.or.kr/ktop)

- 기술평가부 (051-606-7599)

재도전 재기지원보증

실패하였지만 우수한 기술력과 건전한 기업가 정신을 갖추고 있어 재기 가능성이 높은 기업 또는 채무자에 대해 채무조정(또는 회생지원보증)과 신규보증을 지원

지원대상

- 실패기업* 또는 재도전 경영자**가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인 기업

  * 실패기업 : 기보가 대위변제 후, 기보에 대한 구상채무의 변제의무가 남아 있는 기업

  ** 재도전 경영자 : 실패기업의 구상채무에 대하여 변제책임이 있는 채무자

신청제외 대상

- ▸ 실패기업 또는 재도전 경영자가 '금융질서문란정보'를 보유한 경우
- ▸ 재기지원보증 신청기업이 기금 외의 다른 채권자에게 채무변제의무 보유한 경우(다중채무자)

  * 기타 상세내용은 영업점 문의

지원내용

- 경영자의 채무조정(또는 회생지원보증)과 신규자금 지원
- 채무조정 : 채무감면, 분할상환 등의 방법으로 채무를 조정
- 회생지원보증 : 구상채무를 정상대출로 전환하기 위한 보증

- 보증한도 : 최대 30억원(회생지원보증 포함)
- 지원금액 : 기보의 기본재산을 활용한 운용배수 방식으로 운용

신청 · 접수

- 공고(예정) 시기 : '26.1.1.~'26.12.31. 상시 신청·접수
- 신청방법 : 기술보증기금 디지털지점(www.kibo.or.kr) 및 전국 영업점(재기지원센터)
- 제출서류 : 기술사업계획서 등(세부사항은 영업점 문의)
- 추진절차

영업점		재기심사위원회		영업점
채무조정(회생지원보증)과 재기지원보증 승인요청	→	재기지원 심사승인 (도덕성평가 포함)	→	채무조정(회생지원보증) 및 신규보증 실행

문의처

- 기술보증기금 (☎ 1544-1120 / www.kibo.or.kr) 재기지원센터
  - (서울동부재기지원센터) 02-3433-4700
  - (서울서부재기지원센터) 02-881-1611
  - (수원재기지원센터) 031-899-9300
  - (인천재기지원센터) 032-830-5700
  - (대전재기지원센터) 042-610-2255
  - (대구재기지원센터) 053-251-5696
  - (광주재기지원센터) 062-360-4689
  - (부산재기지원센터) 051-601-1900
  - (경남울산재기지원센터) 051-330-1500

참고사항

- 재도전 재기지원보증 제도 소개
  - (경로) 기보 홈페이지 〉 주요업무 〉 기술보증 〉 재기지원보증 제도 〉 재도전 재기지원보증
  - (홈페이지)

Q&A

Q **재창업 재기지원보증과 재도전 재기지원보증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A 재창업 재기지원보증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과 함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사업자금 대출에 대하여 기보와 신보가 보증을 하고, 재도전 재기지원보증은 기보가 단독으로 재기기업인에게 채무조정(또는 회생지원보증)과 신규자금을 지원하는 보증으로, 보증대상 및 요건, 절차에 차이가 있습니다.

Q **회생절차·신용회복지원절차를 정상변제중이면 누구든지 재도전 재기지원보증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기술보증기금에 대한 구상채무가 있고, 이를 포함해 회생절차 또는 신용회복절차에서 채무조정을 받은 실패기업 및 채무자여야 합니다. 또한 해당 절차의 변제계획에 따라 정상 변제 중이어야 하는 등 세부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재창업 재기지원보증

실패하였지만 우수한 기술력과 건전한 기업가 정신을 갖추고 있어 재기 가능성이 높은 기업 또는 채무자에 대해 채무조정과 신규보증을 지원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중 폐업, 채무과다 등 기타 사유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보증채무를 부담하였던 대표이사 또는 실제경영자로서, 주채무와 보증채무(법인에 대한 보증채무 포함)를 합한 금액이 30억원 이하인 자

신청제외 대상

- 재창업 예정인 업종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정한 중소기업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 재창업 신청전 실패한 업종이 비영리업종, 사치향락업종, 음식업, 숙박업, 소매업, 금융업, 보험업, 부동산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가구내 고용 및 자가소비생산활동, 국제 및 외국기관에 해당하는 업체

지원내용

- 경영자의 채무조정과 재창업자금을 지원
- 채무조정(신용회복위원회)
  -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보유한 상각채권 및 대지급일 또는 연체기산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채권의 원금은 최대 75% 감면

- 재창업자금지원(자금보증 : 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 / 자금집행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대출한도 : 최대 30억원(운전자금은 10억원 이내)
  - 신청자격 : 사업자등록 후 7년 이내의 재창업중소기업
- 지원금액 : 자금집행기관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재창업자금 범위 이내

신청 · 접수

- 공고(예정) 시기 : '26.1.1.~'26.12.31. 상시 신청·접수
- 신청방법 : 기술보증기금 디지털지점(www.kibo.or.kr) 및 전국 영업점(재기지원센터),신용회복위원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 제출서류 : 기술사업계획서 등(세부사항은 영업점 문의)
- 추진절차

재창업지원 신청	→	성실경영 평가	→	사업성평가	→	재창업자금 지원 결정	→	재창업 보증실행 (사후관리)
기보,신보, 중진공 신용회복위원회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		평가기관		신복위 (재창업지원위원회)		영업점

문의처

- 기술보증기금 (☎ 1544-1120 / www.kibo.or.kr) 재기지원센터
  - (서울동부재기지원센터) 02-3433-4700
  - (서울서부재기지원센터) 02-881-1611
  - (수원재기지원센터) 031-899-9300
  - (인천재기지원센터) 032-830-5700

- (대전재기지원센터) 042-610-2255
- (대구재기지원센터) 053-251-5696
- (광주재기지원센터) 062-360-4689
- (부산재기지원센터) 051-601-1900
- (경남울산재기지원센터) 051-330-1500

참고사항

- 재창업 재기지원보증 제도 소개
  - (경로) 기보 홈페이지 〉 주요업무 〉 기술보증 〉 재기지원보증 제도 〉 재창업 재기지원보증
  - (홈페이지)

Q&A

Q **신청후 평가진행시 성실경영평가 기관과 사업성 평가기관을 신청인이 지정할 수 있나요?**

A 성실경영평가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수행하며, 사업성 평가기관은 기보, 신보, 중진공 및 민간평가기관(NICE, KED)중에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Q **절차가 다소 복잡하고 관련된 기관이 많은데 처리 소요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A 채권기관의 채무조정 절차와 성실경영평가자를 선별하는 절차가 수반되는 지원사업으로 처리기간은 2~3개월 가량 정도 소요됩니다.

지식재산공제

사업개요

기업이 공제에 가입하여 적립한 부금을 바탕으로 지식재산권 관련 비용지급사유(지식 재산권 출원, 분쟁, 사업화 등) 발생 시 납부 부금액의 최대 5배까지 저리 대출을 지원하는 사업

지원대상

- 신청자격 : 공제계약 청약일 현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중견기업

신청제외 대상

- (가입) 담배·주류 중개업 또는 도매업, 주점업, 무도장 운영업,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욕탕업 및 마사지업, 카지노 운영업
- (대출) 부금납부월수 6개월 또는 부금납부일수 180일을 경과하지 않았거나 대출신청일 현재 부금의 납부를 지연하고 있는 경우, 대출금의 원리금 상환이 연체중이거나 휴업, 폐업, 해산 등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아니한 때 등

* 자세한 내용은 지식재산공제 약관을 참고하실 것

지원내용

- 부금 납입
  - 적금(월 10만원~1천만원) 또는 예금(최소 1천만원~최대 5억원) 형태로 납입

- 납부 부금에 대한 이자 지급(만기 이후 우대이자 지급) 및 해지 시 원금 보장

◉ 지식재산비용대출

- 산업재산권의 국내외 출원, 국내외 지식재산권 심판, 재심, 심결 취소소송, 국내외 지식재산권 침해소송, 지식재산 이전 및 사업화 사유 등 발생 시 납부 부금액의 최대 5배까지 대출 (단, 분쟁 비용 즉시대출의 경우 납부 부금액의 3배 이내 대출 가능)

◉ 경영자금대출

- 일시적으로 경영자금이 필요한 경우 납부 부금액의 90% 한도 내에서 대출

◉ 부가서비스

- 법률자문서비스, 우선심사신청료 지원, 기술보증기금 보증료 감면 등 혜택 제공

* 자세한 내용은 지식재산공제 홈페이지를 참고하실 것

신청·접수

◉ 공고(예정) 시기 : '26.1.1.~'26.12.31. 상시 신청·접수

◉ 신청방법 : 지식재산공제 홈페이지(www.ipmas.or.kr)를 통한 비대면 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기보 전국 영업점을 통해서도 대면 신청 가능

◉ 지식재산비용대출 심사·평가 주요내용 : 공제대출 사유(지식재산 국제출원, 소송 등) 발생 여부 및 소요비용의 적정성 등

◉ 추진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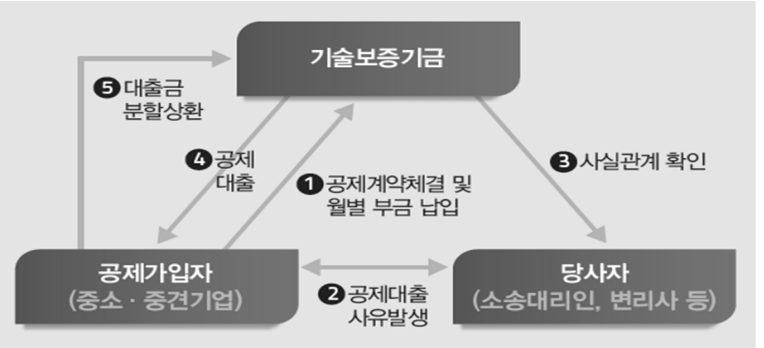

문의처

◉ 기술보증기금 지식재산공제부 (☎ 051-606-7535,7340,7333)

◉ 기술보증기금 지식재산공제센터
(☎ 02-3484-8900, www.ipmas.or.kr)

중소기업 기술거래·사업화 촉진 지원사업

사업개요

- 중소기업의 개방형 기술혁신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기술거래시장의 기반을 조성하고 이전기술의 성공적인 사업화를 지원

〈 전년대비 달라지는 내용 〉

구분	'25년	'26년
지원사업 신설 및 변경	글로벌 기술수요발굴·매칭 지원사업 • 기술보유기업(국내)·기술수요기업(해외) 간 매칭 지원	글로벌 진출기업 역량강화 • 해외로 기술이전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의 컨설팅 지원
	기술이전 중개수수료 지원사업 • 신탁기술, 일반기술의 기술이전 중개수수료 지원	기술이전 중개수수료 지원사업 • 신탁기술, 파산기술의 기술이전 중개수수료 지원
	기술거래 연계 민간기술 가치평가	(삭제)
	기술거래 사업화 통합지원사업	(삭제)

지원대상

- 신청자격 : 기술거래 시장 참여자인 중소기업·기술보유기관·민간기술거래기관 등
- 지원조건 : 개별 사업공고문 참조(세부 사업별 상이)
- 우대사항 : 개별 사업공고문 참조(세부 사업별 상이)

신청제외 대상

- 기업 부도
- 조세 및 공과금(국세, 지방세, 4대보험)을 체납중인 기업
- 금융기관 대출금을 연체중인 기업
- 폐업 또는 휴업 상태에 있는 기업
- 기업 또는 대표자가 신용관리정보 대상자로 등록된 상태에 있는 기업
- 파산, 회생절차, 개인회생절차의 개시를 신청한 기업
- 그 외 지원 제외대상은 모집공고 확인

지원내용

- 지원 세부내용 : 공급기술 중심의 기술거래 시장에서 핵심 수요자인 중소기업 중심의 기술거래 활성화를 통해 기술혁신을 적극 지원
  - 해외진출 희망기업 컨설팅 지원, 기술거래 수수료 부담 경감을 위한 중개수수료 지원

지원 사업명	지원 내용
글로벌 진출기업 역략강화	해외진출 희망기업 대상 글로벌 기술사업화 관련 전문기관의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중소기업의 글로벌 개방형 혁신 지원(10건)
기술이전 중개수수료 지원사업	외부기술 도입 과정에서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기술이전 중개수수료 지원(150건 내외)

신청·접수

- 공고(예정) 시기 : 2~3월
- 신청방법 : 스마트 테크브릿지(tb.kibo.or.kr) 온라인 신청·접수, 이메일 등
- 제출서류 : 신청 기본서류, 신청자격 증빙서류 등
- 선정평가 : 개별 사업공고문 참조(세부 사업별 상이)

심사·평가 주요내용

▸ 개별 사업공고문 참조(세부 사업별 상이)

◉ 추진절차

모집공고		신청 · 접수		선정평가		사업수행		사업비 지급
중소벤처기업부	➔	중소기업	➔	사업수행기관	➔	중소기업, 사업수행기관	➔	사업수행기관
스마트 테크브릿지 등		스마트 테크브릿지 등		서류·현장평가 등		스마트 테크브릿지 등		스마트 테크브릿지 등

문의처

◉ 기술보증기금 기술거래보호부 (051-606-7640, infra@kibo.or.kr)

◉ 스마트 테크브릿지(https://tb.kibo.or.kr) 참조

참고사항

① 전년도 사업공고

◉ 공고명 : 2025년 중소기업 기술거래 활성화 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 (경로) 스마트 테크브릿지 〉 소통과 공유 〉 공지사항 〉 공지사항
- (홈페이지)

기술신탁관리

사업개요

중소기업의 우수기술을 보호하고 공정하게 중견·대기업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기술을 신탁받아 특허 관리, 기술이전 중개, 특허전략 수립 등의 서비스를 지원

지원대상

- 우수 특허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 (단, 법인기업에 한함)

신청제외 대상

- 기술보유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신탁계약의 체결 및 그로 인한 권리, 의무를 이행할 행위능력이 없는 경우
- 기술보유자에 대하여 파산, 회생절차, 청산절차 등이 개시되었거나 위 절차들의 원인이 되는 사실관계가 존재하는 경우
- 기술보유자가 신탁대상 기술의 적법한 권리자가 아닌 경우
- 전용실시권, 통상실시권, 질권, 양도담보권 등이 설정(예정)된 기술
-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 권리침해가 있거나 고소·고발, 소송, 심판, 강제집행 등 사법 또는 행정절차가 진행 중인 기술
- 공동명의 기술
- 기타 위탁자 혹은 신탁대상 기술로 부적합한 경우

지원내용

- 연차등록료 납부기일 관리, 대행 및 비용 지원
  - ＊ 예산범위 내에서 연차등록료의 최대 70% 지원(최대 연간 30만원)

- 신탁기술을 대상으로 기술이전 중개 및 기술료 징수 서비스 지원
- 신탁기술에 대한 특허심판, 특허침해소송 등 분쟁 법적 대응
  * 소송비용은 위탁자가 부담
- 신탁기술 특허전략컨설팅 비용 지원
  * 예산범위 내에서 컨설팅 비용 90%까지 지원(최대 지원한도 450만원)
- 신탁기술이전에 대한 지식재산 인수보증 지원시 보증비율 우대
  * 전액보증(보증비율 100%)으로 우대 지원

신청·접수

- 공고(예정) 시기 : '26.1.1.~'26.12.31. 상시 신청·접수
- 신청방법 : 기술보증기금 스마트 테크브릿지(tb.kibo.or.kr) 및 전국 영업점
- 제출서류 : 신탁신청서류, 정보이용동의서 등
- 추진절차

기술신탁 신청/상담	사전체크 리스트 점검	선별평가	계약체결	기술신탁 서비스
영업점	영업점	본점 실무선별 심의회	영업점	본점, 기술 혁신센터 등

- (사전체크리스트) KPAS(기보 특허자동평가시스템) 등급 등 필수 요건 확인
- (선별평가) 기술/시장성, 기술이전 가능성 등 타당성 평가

문의처

- 기술보증기금 기술거래보호부
  (☎ 051-606-7394 / www.kibo.or.kr)

Q&A

Q **기술신탁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A 신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년 단위로 운영하며 최대 2년까지 계약하실 수 있으며, 신탁기간 종료 전 1회에 한해 1년 범위 이내에서 신탁기간을 연장하실 수 있습니다.

기술임치

사업개요

핵심 영업비밀 등을 특허와 같이 공개하지 않고 제3의 신뢰성 있는 기관에 보관함으로써 기술유출이 발생할 경우 기술보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제도

지원대상

- 핵심기술의 내용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고 기술·경영상 비밀을 보호받고자 하는 중소기업

지원내용

- 기술상 정보
  - 시설·제품의 설계도 및 매뉴얼
  - 물품의 생산/제조방법
  - 물질의 배합 방법 및 성분표
  - 연구개발 보고서 및 데이터 등
- 경영상 정보
  - 기업의 운영 및 관리와 관련된 기밀서류(재무, 회계, 인사, 마케팅, 노무, 생산 등)

- 기업의 매출과 관련된 기밀서류(원가, 거래처, 각종 보고서 및 매뉴얼) 등

신청·접수

- 공고(예정) 시기 : ‘26.1.1.~‘26.12.31. 상시 신청·접수
- 신청방법 : 기술보증기금 테크세이프(ts.kibo.or.kr)
- 추진절차

회원가입	계약신청서 작성	임치물 전송 계약서 등록	전자서명	임치증서 발급
기업	기업	기업, 기보 본점	기업, 기보 본점	기업

문의처

- 기술보증기금 기술거래보호부
  (☎ 051-606-7394 / www.kibo.or.kr)

Q&A

Q **특허와 비교했을 때 임치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A 기술공개의 대가로 받게 되는 특허권과 같이 청구항이라는 일정범위에 대해 독점배타적인 권한은 없지만, 임치제도는 기술정보에 대해 개발기업을 제외하고 열람이 불가하며, 기술이 유출되지 않는 한 영구적 기술보호가 가능합니다. 또한 특허출원 및 등록을 위한 고가의 비용이 소요되지 않는 장점 등이 있습니다.

Q **기술임치제도가 법적으로 효력이 있나요?**

A 임치된 기술은'상생협력법 제24조의3제2항'(실명으로 등록된 임치기업의 기술에 대하여 〈중략〉 다툼이 있으면 임치기업이 임치물의 내용대로 개발한 것으로 추정한다)에 따라 법적 추정력이 부여되어 소송에서 유리한 증거자료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TTRS(증거지킴이)

사업개요

사업제안, 입찰, 공모 등 기술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비공식 기술탈취 증거자료를 향후 법적 분쟁 시 활용하기 위해 신뢰성 있는 제3의 기관인 기보에 체계적이고 안전하게 보관하는 제도

지원대상

- 사업제안, 입찰, 공모 등 기술거래를 준비하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내용

- 기술자료 거래기록 등록 서비스
  - 제안서, 거래 요청의향서, 녹음파일, 이메일 등 기술협상 전반에 걸친 거래자료
  - 거래상대 담당자의 근무부서와 이름
  - 자료 피요구 시 부당하게 느꼈던 정황 등
  - 임치한 기술의 거래 관련 TTRS* 서비스 이용 시 등록비용 전액 지원

* TTRS : Technology data Transaction record Registration System

신청·접수

- 공고(예정) 시기 : ‘26.1.1.~‘26.12.31. 상시 신청·접수
- 신청방법 : 기술보증기금 테크세이프(ts.kibo.or.kr)

문의처

- 기술보증기금 기술거래보호부
  (☎ 051-606-7394 / www.kibo.or.kr)

참고사항

Q **TTRS는 어떨 때 이용해야 하나요?**

A 다음과 같은 사례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거래처(대기업)로부터 자동차 부품 개발 오더를 받아 1년간 약 2억원을 투입해 부품과 설비를 제작했고, 납품 제안단계에서 설계도면 등 특허 관련 자료 일체를 요구해 어쩔 수 없이 제공했는데, 일방적인 거래 불가 통보를 받았고, 알고보니 상대기업이 다른 업체에 우리 기술자료를 넘겨 그 회사가 전량 납품하기로 계약이 체결됨('18.9월 중기중앙회, 기술탈취 실태조사)

Q **TTRS와 기술임치제도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A 가장 큰 차이점은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물입니다. 기술임치제도는 외부로 유출이 우려되는 핵심비밀을 보호하고자 하는 기업이 기술 및 경영상의 중요한 정보를 목적물로 임치함으로써 기술을 보호하는 제도라면, TTRS는 다른 기업과 거래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이 부당하게 기술자료를 유출당하지 않도록 거래 전반에 걸친 다양한 자료(이메일, 녹취록, 거래 요청 의향서, 거래 당시 정황) 등을 목적물로 등록함으로써 향후 소송자료로 활용하는 제도입니다.

중소벤처기업 M&A 지원사업

사업개요

기술보증기금은 기업인수·합병(M&A)를 통해 신사업 전환 및 구조조정, 가업승계 등을 추진하는 중소벤처기업에 M&A수요발굴·중개·기술보호·인수금융지원까지 맞춤형으로 M&A를 지원

지원대상

- M&A를 추진중인 중소벤처기업

지원내용

- M&A 수요발굴·중개 지원
- M&A에 필요한 자금 지원
- M&A 과정상의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기술보호 지원
- 추진절차

상담/신청	M&A수요 예비검토	M&A 중개추진	M&A 계약체결	M&A 보증지원 (필요시)
- M&A지원센터 - 스마트 테크 브릿지	- M&A지원 센터	- M&A지원 센터, 민간 중개기관	-M&A지원 센터, 민간 중개기관	- M&A지원센터 - 기술혁신센터

신청·접수

- 공고(예정) 시기 : ’26.1.1.~’26.12.31. 상시 접수
- 신청방법 : 기술보증기금 스마트 테크브릿지(tb.kibo.or.kr) 및 M&A지원센터
- 제출서류 : 필수서류 별도 안내

문의처

- 기술보증기금 기술거래보호부 : www.kibo.or.kr

보증연계투자

사업개요

기술력 및 사업성이 우수한 기술혁신선도형 중소기업에 보증과 연계하여 기보가 직접 투자함으로써 기술혁신선도형 중소기업의 직접금융 활성화를 위하여 도입한 제도

〈 전년대비 달라지는 내용 〉

구분	'25년	'26년
지원규모(계획)	750억원	500억원

지원대상

◉ 신청자격 :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중소기업

- ▸ 법인설립 후 5년 이내의 창업기업
  - * 단, R&D기업, 미래전략사업 영위기업 등 정책적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기업은 업력 제한 없음
- ▸ 기보와 보증 거래 중이거나 보증 승인을 받은 기업
- ▸ 투자용 기술평가등급 TI8등급 이상의 우수기술기업

지원내용

- 투자종류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방식
  - 주식(보통주, 상환전환우선주 등), 전환사채, 조건부지분인수계약(SAFE) 등
- '26년 신규투자 지원계획 : 500억원 이내
- 지원금액 : 업체당 최대 30억원 (보증금액 포함 200억원 이내)

신청·접수

- 공고(예정) 시기 : '26. 1월 ~ '26. 12월 상시 접수
- 신청방법 : 기술보증기금 전국 영업점 방문 신청
- 투자심사 주요내용 : 기술평가 절차를 기반으로 기업의 기술성·시장성·사업성 및 수익성 등 투자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심사
- 추진절차

상담/접수	예비검토/기술평가	투자심사/조건협상	투자결정	투자실행(계약체결)
영업점	(콘텐츠) 벤처투자금융센터, 기술혁신센터	(콘텐츠) 벤처투자금융센터, 기술혁신센터	(콘텐츠) 벤처투자금융센터, 기술혁신센터, 투자심의회	(콘텐츠) 벤처투자금융센터, 기술혁신센터

문의처

- 기술보증기금 관할 영업점 또는 신청기업 본사·사업장 인근 영업점
  - 전국 영업점 연락처는 홈페이지(www.kibo.or.kr) 참조
- 고객센터 (☎ 1544-1120)

벤처투자연계보증

사업개요

민간벤처캐피탈 등이 투자한 기술중소기업의 기술개발·사업화 등에 필요한 자금을 후속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Scale-up을 지원하는 우대보증 제도

〈 전년대비 달라지는 내용 〉

구분	'25년	'26년
지원규모(계획)	3,500억원	4,500억원

지원대상

- 신청자격 : 벤처투자기관으로부터 5억원 이상 투자를 유치*한 창업후 7년 이내의 비상장** 중소기업

  * 기보VC파트너스의 투자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코넥스 상장기업은 지원 가능

  - (지원대상 투자) 주식회사의 주식(보통주식, 종류주식),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인수 또는 유한회사의 출자

    * 단,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등기하는 신주(유한회사의 경우 신출자) 또는 신사채 인수에 한하며, 구주(유한회사의 경우 구출자지분) 또는 구사채 인수분은 투자로 불인정

신청제외 대상

- 부당하게 채무를 면탈하여 기금의 건전성을 훼손한 자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 휴업중인 기업, 대출금을 빈번히 연체하는 기업 또는 기보, 신보, 재단 사고기업 등

지원내용

- 특례지원 : 기술사업평가등급* BB등급 이상인 경우, 운전자금 보증금액 10억원까지 투자금액과 추정매출액 중 큰 금액의 1/2 지원 가능

  * 보증 신청시 기술보증기금이 기술평가 진행

- 보증비율 : 100% 전액보증
- 보증료 : 1%(고정보증료)
  - 지방소재기업, 최근 2년 내 10억원 이상 투자유치기업, 최종 기업가치가 500억원 이상인 기업에 대해서는 0.8% 고정보증료 적용
- 투자옵션부보증으로 운용
  - (옵션내용) 보증금액의 20% 이내에서 기보가 신주인수권을 취득(최소 5천만원)

  * (행사기간) 보증일로부터 5년 이내, (행사가격) 행사 직전 투자 단가

- 상환의무 부여
  - 당초 보증금액 이상의 누적 후속투자* 유치시 당초 보증금액의 20% 상환 의무 부여

  * 보증 취급 이후 투자금액 합산(법인등기사항증명서 등기 기준, 개인투자 및 전환사채 포함)

- '26년 지원규모 : 투자연계보증* 총 4,500억원

  * 투자연계보증 : VC투자매칭특별보증, 엔젤투자연계보증, 벤처투자연계보증, 아기유니콘특별보증, 예비유니콘특별보증, 벤처대출연계보증

신청·접수

- 공고(예정) 시기 : '26.1.1.~'26.12.31. 상시 신청·접수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기술보증기금(www.kibo.or.kr) 접속 – 디지털지점 – 회원가입 – 창업·투자 – 복합금융 – 투자연계보증 – 신청하기 – 기업정보, 신청내용 입력
  - 오프라인 신청 : 전국 영업점
- 제출서류 : 투자유치내역서, 기술사업계획서 등

심사·평가 주요내용

▸ 기술성, 시장성, 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기술평가 및 보증심사

- 추진절차

단 계 별	취 급 자	주 요 내 용
보증신청	신청기업	영업점 방문 또는 디지털지점(인터넷) 신청
상담	영업점 담당자	지원대상 확인·보증금지·제한 해당여부, 기술사업내용 등을 검토하여 계속 진행여부 결정 및 절차안내
서류 제출	신청기업	투자유치내역서·기술사업계획서 등 제출 (필요서류는 종류에 따라 고객이 디지털지점에 제출하거나, 고객의 협조를 받아 기금직원이 직접 수집)
기술평가	영업점 담당자	신청기업으로부터 접수한 자료 등을 예비(사전)검토 후 현장실사를 실시하여 기술성과 사업타당성 등을 평가
심사·승인 후 보증서발급	영업점 담당자	기술평가결과, 사업전망, 경영능력, 신용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최종승인 시 보증약정 및 보증서 발급

문의처

- 전국 영업점 (관할 영업점 정보 및 연락처는 기금 홈페이지 (www.kibo.or.kr) 참조)
- 고객센터 (☎ 1544-1120)

용어 설명

투자옵션 : 기금이 기업에게 보증을 지원하고, 그 보증부대출 상환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금이 기업에서 발행하는 신주인수를 위해 납입하는 주금 납입금으로 충당함으로써 기업의 자본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벤처투자기관 : 벤처투자회사, 벤처투자조합, 개인투자조합,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신기술사업투자조합, 금융기관, 외국투자회사 등 벤처투자를 수행하는 기관

기보파트너스 : 벤처·엔젤투자 활성화를 위해 기보가 선정한 투자 전문가 그룹으로, 기보VC파트너스(한국벤처캐피탈협회 등으로부터 추천받은 우수 벤처캐피탈 등) 및 기보엔젤파트너스(창업기획자 등)로 구성

엔젤투자연계보증

사업개요

엔젤투자를 유치한 창업기업에 특례보증을 지원하여 기업의 신속한 성장 및 엔젤투자 생태계 활성화를 도모하는 보증상품

지원대상

- 신청자격 : 최근 3년 이내*에 기보엔젤파트너스로부터 3천만원 이상의 투자를 유치한 기술사업평가등급 B등급 이상의 창업 7년 이내** 기업

  * 자본금 변동 등기일로부터 보증 접수일자까지의 기간

  ** 법인설립일자로부터 보증 접수일자까지의 기간

신청제외 대상

- 가장납입 또는 엔젤투자자와 엔젤투자기업이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 부당하게 채무를 면탈하여 기금의 건전성을 훼손한 자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 휴업중인 기업, 대출금을 빈번히 연체하는 기업 또는 기보, 신보, 재단 사고기업 등

지원내용

- 특례지원 : 아래 기준 중 선택 적용

- 엔젤투자금액의 2배 이내(최대 3억원)

  * 단, 엔젤투자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1억원까지,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 2억원까지 지원 가능

- 투자금액과 추정매출액 중 많은 금액의 1/2 범위(최대 5억원)

◉ 보증비율 : 100%

◉ 보증료 : 0.7%(고정보증료)

◉ 투자옵션부보증으로 운용

- (옵션내용) 보증지원 이후 후속투자 유치시 보증금액의 20% 이내(최소 5천만원)에서 기보가 신주인수권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투자 전환

  * (행사기간) 보증일로부터 5년 이내

  * (행사가격) 행사 직전 투자 단가(최종 투자건의 기업가치 기준)

◉ '26년 지원금액 : 투자연계보증* 총 4,500억원

  * 투자연계보증 : VC투자매칭특별보증, 엔젤투자연계보증, 벤처투자연계보증, 예비유니콘특별보증, 아기유니콘특별보증, 벤처대출연계보증

신청·접수

◉ 공고(예정) 시기 : '26.1.1.~'26.12.31. 상시 신청·접수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기술보증기금(www.kibo.or.kr) 접속 – 디지털지점 - 회원가입 – 창업·투자 – 복합금융 – 투자연계보증 – 신청하기 – 기업정보, 신청내용 입력

- 오프라인 신청 : 전국 영업점

◉ 제출서류 : 투자유치내역서, 기술사업계획서 등

심사·평가 주요내용

▸ 기술성, 시장성, 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기술평가 및 보증심사

● 추진절차

단 계 별	취 급 자	주 요 내 용
보증신청	신청기업	영업점 방문 또는 디지털지점(인터넷) 신청
상담	영업점 담당자	지원대상 확인·보증금지·제한 해당여부, 기술사업내용 등을 검토하여 계속 진행여부 결정 및 절차안내
서류 제출	신청기업	투자유치내역서·기술사업계획서 등 제출 (필요서류는 종류에 따라 고객이 디지털지점에 제출하거나, 고객의 협조를 받아 기금직원이 직접 수집)
기술평가	영업점 담당자	신청기업으로부터 접수한 자료 등을 예비(사전)검토 후 현장실사 실시하여 기술성과 사업타당성 등을 평가
심사·승인 후 보증서발급	영업점 담당자	기술평가결과, 사업전망, 경영능력, 신용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최종승인시 보증약정 및 보증서 발급

문의처

● 전국 영업점
(관할 영업점 정보 및 연락처는 기금 홈페이지(www.kibo.or.kr) 참조)

● 고객센터 (☎ 1544-1120)

용어 설명

투자옵션 : 기금이 기업에게 보증을 지원하고, 그 보증부대출 상환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금이 기업에서 발행하는 신주인수를 위해 납입하는 주금납입금으로 충당함으로써 기업의 자본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기보파트너스 : 벤처·엔젤투자 활성화를 위해 기보가 선정한 투자 전문가 그룹으로, 기보VC파트너스(한국벤처캐피탈협회 등으로부터 추천받은 우수 벤처캐피탈 등) 및 기보엔젤파트너스(창업기획자 등)로 구성

VC투자매칭 특별보증

민간 VC 등으로부터 투자를 유치하는 기업에 유사 규모의 보증을 레버리지 방식으로 매칭 지원하여 스케일업을 가속화하는 보증상품

지원대상

- 벤처투자기관으로부터 투자*를 유치하고,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비상장** 중소기업

  * 기보VC파트너스의 투자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코넥스 상장기업은 지원 가능

  - (투자요건) 보증신청일 이전 2년 이내에 20억원 이상의 투자*를 유치하여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에 등기가 완료된 경우
  - (등급요건) 기술사업평가등급* BB등급 이상

  * 보증신청시 기술보증기금에서 기술평가 실시

- '아기유니콘 육성사업'에 선정된 기업
- TIPS R&D 성공기업(성공 판정 후 1년 이내, 누적 투자금액 20억원 이상) 또는 포스트 팁스(Post-TIPS) 참여기업 (보증신청일 기준 협약 기간 이내)

신청제외 대상

- 부당하게 채무를 면탈하여 기금의 건전성을 훼손한 자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 휴업중인 기업, 대출금을 빈번히 연체하는 기업 또는 기보, 신보, 재단 사고기업 등

지원내용

- 보증한도 : 최대 50억원 (기보증금액 포함)
- 특례지원 : 운전자금보증금액 20억원까지는 투자금액과 추정 매출액 중 큰 금액의 1/2까지 지원 가능
- 보증비율 : 95% 전액보증 (단, 협약은행 거래시 100% 전액보증)
- 보증료 : 0.7%(고정보증료)
- 투자옵션부보증으로 운용
  - (옵션내용) 보증금액의 20% 이내에서 기보가 신주인수권을 취득(최소 5천만원)

  * (행사기간) 보증일로부터 5년 이내, (행사가격) 행사 직전 투자 단가
- '26년 지원규모 : 투자연계보증* 총 4,500억원

  * 투자연계보증 : VC투자매칭특별보증, 엔젤투자연계보증, 벤처투자연계보증, 예비유니콘특별보증, 아기유니콘특별보증, 벤처대출연계보증

신청·접수

- 공고(예정) 시기 : '26.1.1.~'26.12.31. 상시 신청·접수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기술보증기금(www.kibo.or.kr) 접속 – 디지털지점 - 회원가입 – 창업·투자 – 복합금융 – 투자연계보증 – 신청하기 – 기업정보, 신청내용 입력
  - 오프라인 신청 : 전국 영업점
- 제출서류 : 투자유치내역서, 기술사업계획서 등

심사·평가 주요내용

▸ 기술성, 시장성, 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기술평가 및 보증심사

◉ 추진절차

단 계 별	취 급 자	주 요 내 용
보증신청	신청기업	영업점 방문 또는 디지털지점(인터넷) 신청
상담	영업점 담당자	지원대상 확인·보증금지·제한 해당여부, 기술사업내용 등을 검토하여 계속 진행여부 결정 및 절차안내
서류 제출	신청기업	투자유치내역서·기술사업계획서 등 제출 (필요서류는 종류에 따라 고객이 디지털지점에 제출하거나, 고객의 협조를 받아 기금직원이 직접 수집)
기술평가	영업점 담당자	신청기업으로부터 접수한 자료 등을 예비(사전)검토 후 현장실사 실시하여 기술성과 사업타당성 등을 평가
심사·승인 후 보증서발급	영업점 담당자	기술평가결과, 사업전망, 경영능력, 신용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최종승인 시 보증약정 및 보증서 발급

문의처

◉ 전국 영업점
(관할 영업점 정보 및 연락처는 기금 홈페이지(www.kibo.or.kr) 참조)

◉ 고객센터 (☎ 1544-1120)

Q&A

Q **기보VC파트너스로부터 투자실적이 있어야 신청 가능한가요?**

A 네. 기보VC파트너스인 VC로부터 투자받은 실적이 있는 기업만 신청 가능합니다.

Q **최근 2년 이내 20억원 투자요건은 기보VC파트너스로부터 받은 투자 실적만 인정되나요?**

A 아닙니다. 모든 벤처투자기관의 투자실적이 인정됩니다. 다만 해당 기업의 전체 투자 유치 건 중 기보VC파트너스의 투자 실적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용어 설명

투자옵션 : 기금이 기업에게 보증을 지원하고, 그 보증부대출 상환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금이 기업에서 발행하는 신주인수를 위해 납입하는 주금납입금으로 충당함으로써 기업의 자본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벤처투자기관 : 벤처투자회사, 벤처투자조합, 개인투자조합,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신기술사업투자조합, 금융기관, 외국투자회사 등 벤처투자를 수행하는 기관

기보파트너스 : 벤처·엔젤투자 활성화를 위해 기보가 선정한 투자 전문가 그룹으로, 기보VC파트너스(한국벤처캐피탈협회 등으로부터 추천받은 우수 벤처캐피탈 등) 및 기보엔젤파트너스(창업기획자 등)로 구성

유동화회사보증

사업개요

중소·중견기업 및 벤처투자회사가 원활히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신규 회사채를 기초자산으로 유동화증권을 발행 후 자본시장에 매각하여 발행대금을 기업에 지원

〈 전년대비 달라지는 내용 〉

구분	'25년	'26년
지원규모(계획)	5,000억원	3,000억원

지원대상

◉ 지원대상

구분		대상
유동화증권		중소기업, 중견기업*(벤처투자회사** 포함)
	녹색유동화증권	K-택소노미의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중소·중견기업

* 총자산액이 5천억원 미만인 기업

** 상시종업원 1천명 이하, 총자산 1천억원 이하인 기업

◉ 신청자격 :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중견기업(벤처투자회사 포함)

구분*	기술사업평가등급	신용평가회사 회사채등급
중소기업	BB등급 이상	-
중견기업	BB등급 이상	BB-등급 이상

* 벤처투자회사의 경우 별도 요건(벤처투자회사 평가점수, 회사채등급 등) 적용

신청제외 대상

- 기술성 및 사업성 등 평가결과 지원 타당성이 낮은 경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
- 지원 제한업종 영위기업
- 기타 기보 내규에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신용도취약기업 등

지원내용

◉ 지원구조 : 개별기업이 발행한 회사채를 유동화회사(SPC)가 매입 후 보증으로 신용이 보강된 유동화증권을 발행·매각하여 자금을 조달

〈유동화회사보증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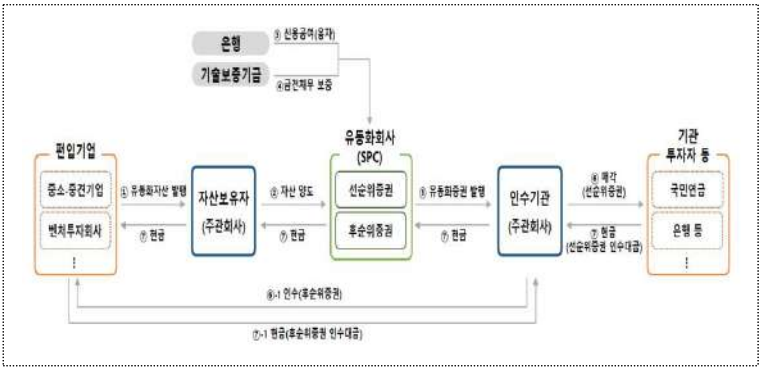

- 개별 편입기업이 발행한 회사채를 주관증권사가 인수 후 유동화회사(SPC)에 양도
- 은행이 유동화회사(SPC)에 제공한 신용공여(융자)에 대해 기보가 지급보증을 통해 신용 보강을 지원
- 유동화증권은 선순위증권과 후순위증권으로 구분되고, 선순위증권은 매각 후 대금을 편입기업에게 제공, 후순위증권은 편입기업이 직접 인수

- 지원한도 : 중소기업 최대 150억원, 중견기업 최대 250억원

  * 기술사업평가등급, 차입금 및 매출액 기준 등에 따라 한도 차감

- 지원 세부내용 : 3년(신규) 또는 2년(차환) 만기 회사채 발행(만기 일시상환)

  - (후순위증권) 발행금액의 연율 1% 수준으로 편입기업이 인수
  - (발행금리) 무보증 공모사채 AAA등급의 민평금리를 기준으로 편입기업의 기술·재무등급에 따라 차등 적용
  - (이차보전) 녹색유동화보증의 경우 한국산업환경기술원에서 3년간 이차보전* 지원

  * 연차별 지원 내용: (중소) 3%p→1.5%p→1.5%p (중견) 2%p→1%p→1%p 이내

- '25년 신규보증 지원현황 : 5,091억원
- '26년 신규보증 지원계획 : 약 3,000억원

신청·접수

- 공고(예정) 시기 : '26년 3월, 8월
- 신청방법 : 기술보증기금 디지털지점* 및 전국 영업점 방문 신청

  * 디지털지점(www.kibo.or.kr/dbranch)▶기술보증▶보증신청▶유동화보증신청

- 추진절차

단 계	주요내용	비 고
지원신청	- 온라인(기보 홈페이지) 또는 영업점 전화 · 방문 신청	기보 영업점
서류 및 현장심사	- 신청기업 제출서류 검토 및 상담 진행 - 현장심사를 통해 기술성 및 사업성 평가 실시	기보 영업점
최종심의	- 기술력, 사업전망 등 검토하여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 결정	기보 유동화보증심의회
유동화증권 발행 및 매각	- 유동화증권을 발행하여 기관투자자 등에게 매각	기보 벤처투자금융센터

- 신청서류 : 디지털지점 내 유동화회사보증 서식 참조

  * 디지털지점(www.kibo.or.kr/dbranch)▶기술보증▶서식/자료▶유동화회사보증서식

문의처

- 기술보증기금 관할 영업점 또는 신청기업 본사·사업장 인근 영업점
  - 전국 영업점 연락처는 홈페이지(www.kibo.or.kr) 참조
  - 벤처투자회사는 벤처투자금융센터(02-2280-4861)로 문의
- 고객센터 (☎ 1544-1120)

참고사항

- 전년도 사업공고 : 2025년 제2차 유동화회사보증 지원 공고
  - (경로) 기술보증기금 〉 소식·자료 〉 언론·홍보 〉 공지사항
  - (홈페이지)

벤처기업확인평가

사업개요

기술보증기금은 '98년부터 벤처기업확인 평가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제도개편 후 '20.12월 벤처기업확인 전문평가기관으로 지정되어, 혁신성장유형, 연구개발유형, 예비벤처유형을 평가

〈 전년대비 달라지는 내용 〉

구분	'25년	'26년
신청제외 대상업종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삭 제

지원대상

◉ 벤처확인평가유형 및 요건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유 형	요 건
공통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혁신성장 기업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
연구개발 기업	▹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 기업부설창작연구소, 기업창작전담부서 중 하나를 보유 ▹ 신청일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4분기 연구개발비가 5천만원 이상이고, 같은 기간 총매출액 중 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5~10% 이상 (창업 후 3년 미경과 기업 및 매출액이 없는 기업은 비율적용 배제) ▹ 사업성 평가 우수
예비벤처 기업	▹ 법인설립 또는 사업자등록을 준비중인 자 ▹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

신청제외 대상

▸ 벤처기업대상에서 제외되는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

순번	업 종 명	표준산업분류
1	일반 유흥 주점업	56211
2	무도 유흥 주점업	56212
3	기타 주점업	56219
4	카지노 운영업	91242
5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49
6	무도장 운영업	91291

* 업종 및 분류코드는 「통계법」제22조에 따른 통계청장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름

수수료

◉ 벤처 확인 수수료[1)]

구 분		신규	연장
혁신성장유형		45.5만원	55.5만원
	이노비즈 연계[2)]	29만원	39만원
연구개발기업		34.5만원	44.5만원
예비벤처기업		34.5만원	44.5만원
	벤처 재확인[3)]	28만원	-

1) 기업 부담금 기준, 부가가치세 포함

2) 이노비즈 인증보유 기업이 혁신성장유형으로 벤처기업확인평가 신청한 경우 (이노비즈 유효기간 시작일로부터 6개월 이내 벤처확인 신청)

3) 예비벤처확인 이후 1년 이내 벤처재확인 신청한 경우(혁신성장유형 신청에 한함)

신청·접수

- 공고(예정) 시기 : ’26.1.1.~’26.12.31. 상시 신청·접수
- 신청방법 :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www.smes.go.kr/venturein)
-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법인등기부등본, 부가세 과세표준증명원, 제무제표 등

  * 제출서류 목록은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www.smes.go.kr/venturein) 자료실에서 확인 가능

- 추진절차

벤처기업 확인신청	→	서류 제출, 수수료 납입	→	전문 평가기관 배정	→	현장실사 및 평가진행	→	벤처기업확인 위원회 심의·의결	→	결과 통보 및 확인서 발급
신청기업		벤처기업 확인기관		벤처기업 확인기관		기보		벤처기업 확인기관		벤처기업 확인기관

문의처

- 기술보증기금(☎ 1544-1120 / www.kibo.or.kr)
- 벤처기업확인기관(☎ 1566-6487)

이노비즈(Inno-Biz) 선정평가

사업개요

이노비즈(Inno-Biz)란 혁신(Innvation)과 기업(Business)의 합성어로 기술우위를 바탕으로 경쟁력을 확보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의미하며, 기술보증기금은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제도 운영규정」 제2조에 의한 평가기관으로, 이노비즈 선정평가를 수행

지원대상

◉ 신청자격에 해당하고 자가진단결과 650점 이상인 기업

구 분	내 용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고, ▹ 설립 후 3년 이상이며 정상 가동중인 기업
선정절차	▹ 온라인 자가진단 650점 이상인 업체를 대상으로 기술보증기금에서 현장실사 및 기술평가시스템에 의거 평가 실시
선정기준	▹ 기술혁신시스템 점수 700점 이상이고, ▹ 개별기술평가등급 B등급 이상인 기업

신청제외 대상

- 연체, 국세체납 등으로 인하여 신용관리정보대상자로 규제를 받고 있는 기업
- 어음교환소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기업
- 파산, 회생절차개시,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이 있거나 청산에 들어간 기업 (단, 회생의 경우 법원의 회생인가결정 후 법원에 제출한 회생계획안 또는 변제계획안의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을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업체는 이노비즈 신청 가능)
- 이노비즈대상에서 제외되는 업종 영위기업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제도 운영규정 [별표2])

신청·접수

- 공고(예정) 시기 : ’26.1.1.~’26.12.31. 상시 신청·접수
- 신청방법 : 이노비즈넷(www.innobiz.net)
- 평가료
  - 신규 평가료 70만원, 연장 평가료 40만원(부가가치세 별도)
  - 이노비즈 인증평가를 받은 기업이 인증유효기간 시작일로부터 6개월 이내 벤처기업확인(혁신성장유형)을 신청하는 경우 15만원 감면
  - 이노비즈 인증평가를 받은 기업이 60일 이내 보증신청하는 경우 기술평가료 20만원 감면
  - 이노비즈 인증을 받은 기업이 기보 이노비즈 신규 평가 완료일 전·후 30일 이내 지식재산공제에 가입한 경우 20만원 지원
- 제출서류 : 신청서, 기술사업계획서, 각종 인증서 및 산업재산권 관련 서류 등

  * 신청양식은 이노비즈넷(www.innobiz.net)에서 다운로드
- 추진절차

신청 및 온라인 자가진단 (‘이노비즈넷’)	→	현장평가 및 평가결과 등록	→	이노비즈기업 선정 및 확인서 발급
신청기업		기술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부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발급)

문의처

- 기술보증기금 : ☎ 1544-1120 / www.kibo.or.kr
- 이노비즈넷 : ☎ 031-628-9600 / www.innobiz.net

Q&A

Q **이노비즈 실사 시 준비사항은 어떻게 되는지요?**

A Inno-Biz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1차 온라인 자가진단 후 2차 현장평가를 통한 실사과정을 거쳐 최종 Inno-Biz로 선정됩니다. 2차 현장평가에서는 온라인 자가진단에서 자체 평가했던 내용에 대하여 기업이 사실대로 평가를 했는지의 신뢰성 유무를 확인하며, 기업이 보유한 개별기술에 대한 현황과 보유기술에 대한 혁신성 및 기술성 등을 평가하므로 실사 기업은 이에 따른 검증자료와 기술에 대한 일련의 서류 및 설명자료를 준비하면 됩니다.

중소기업팩토링

판매기업이 매출채권을 팩터(factor)에게 양도하고, 팩터는 판매기업을 대신하여 구매기업으로부터 매출채권을 회수하는 단기금융서비스

지원대상

- (판매기업) 기술성 · 사업성이 우수한 신기술사업자인 중소기업
  (구매기업) 기술성 · 사업성이 우수한 신기술사업자 등
  * 중소기업, 총자산 5천억원 미만 중견기업 포함
  (매출채권) 결제기일이 30일 이상 90일 이내인 매출채권(전자세금계산서 한정)

지원이 안되는 기업

- 구매기업과 관계기업인 판매기업
- 금융결제원의 거래정지통보처분을 받은 기업
- 면세사업자, 해외소재기업 등
- 당기 말 기준 회계기간이 360일 이상인 재무제표를 2기 미만 보유 기업
- 당좌거래기업(가계당좌 제외)

지원내용

- 지원한도
  - 당기 매출액*1회전기간 이내에서 기업당 최고한도 30억원
  - 기술사업평가등급별 차등한도 부여
- 지원규모 : ‘26년 1,000억원 규모의 팩토링금융 공급 예정

◉ 지원효과

구분	매출채권 팩토링 이용효과	
판매기업	▪ 연쇄부도 방지(상환청구권 無)	▪ 매출채권 조기현금화
	▪ 금융비용 절감(낮은 할인율)	▪ 재무건전성 제고(차입금 미계상)
구매기업	▪ 금융비용 절감(보증료 차감 등)	▪ 편리한 대금결제(만기일 자동출금)
	▪ 상생협력·동반성장	▪ 재무건정성 제고(차입금 미계상)

신청·접수

◉ 기술보증기금 홈페이지(www.kibo.or.kr)내 팩토링 플랫폼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 기술보증기금과 거래중인 기업은 담당 영업점으로 문의 및 신청가능

처리절차

◉ 팩토링 플랫폼을 통해 등록심사부터 매출채권 매입 등 절차 진행

등록 심사	팩토링 약정	양도 계약	매출채권 발행	팩토링 신청	매출채권 매입	매출채권 회수
기업조사 기술평가 등록심사	약정체결	양도계약 승낙신청 양도승낙	채권발행	매입신청	매입심사 대금지급 매입통지	대금회수 (결제기일)
기보	판매기업 구매기업	판매기업 구매기업	구매기업	판매기업	기보	기보

문의처

◉ 기술보증기금 팩토링 전담팀(☎ 051-606-7353, 7355, 7654)

기관별, 월별 지원사업 및 사업공고 현황

◉ 기관명 : 기술보증기금

공고 시기	지원사업명	사업공고명	문의처
1월	서울형 BIRD 프로그램	「서울형 BIRD 프로그램」참여 기업 모집 및 지원계획 공고	051-606-6554,5
	충남형 BIRD 프로그램	「충남형 BIRD 프로그램」참여 기업 모집 및 지원계획 공고	051-606-6554,5
	대전형 BIRD 프로그램	「대전형 BIRD 프로그램」참여 기업 모집 및 지원계획 공고	051-606-6554,5
	벤처기업확인평가	벤처기업확인평가	기술보증기금: 1544-1120 벤처기업확인기관: 1566-6487
	이노비즈(Inno-Biz) 선정평가	이노비즈(Inno-Biz) 선정평가	기술보증기금: 1544-1120 이노비즈넷: 031-628-9600
2월	기술이전 중개수수료 지원사업	기술이전 중개수수료 지원사업	051-606-7640
3월	글로벌 진출기업 역량강화	글로벌 진출기업 역량강화	051-606-7640
	IP평가보증	SW기술가치확보 및 사업화지원	NIPA, SW융합 전략팀 이호연 책임 (043-931-5317)
	IP평가보증	데이터 가치평가 지원사업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유통기획팀 (02-3708-5342, 5346)
	'26년 IP보증연계 지식재산평가지원 사업	'26년 IP보증연계 지식재산평가지원 사업 공고 및 신청서식	한국발명진흥회 이지영 대리 (02-3459-2944)
	유동화회사보증	2026년 제1차 유동화회사보증 지원 공고	기술보증기금: 1544-1120
8월	유동화회사보증	2026년 제2차 유동화회사보증 지원 공고	기술보증기금: 1544-1120

제 3 부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소기업·소상공인 등 신용보증지원

소기업·소상공인 등의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 등에 대하여 보증을 지원함으로써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자금융통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지원

지원대상

-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의한 소상공인
  - * 도박·사행성게임, 사치, 향락, 부동산, 담배 등 일부업종 보증지원 제한
- 우선지원대상기업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의한 소상공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지역특화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금을 추천받은 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지역신용보증재단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기업 중 최종 보증채무이행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기업 및 그 기업의 연대보증인이 운영하는 기업
- ▸ 휴업 중인 기업, 대출금을 빈번히 연체하는 기업, 회생·개인회생·파산 신청기업 등

지원내용

- 소기업·소상공인 등이 금융회사 등에 대하여 부담하는 각종 채무에 대한 보증

- 대출보증, 어음보증, 이행보증, 지급보증의 보증, 납세보증, 시설 대여 보증 등

◉ 보증한도

분 야	내 용	보증한도
운전 자금	• 매출액 한도 적용 – **(제조업·제조관련 서비스업)** 당기 매출액의 1/3~1/4이내 또는 최근 3~4개월 매출액 – **(기타업종)** 당기 매출액의 1/4~1/6이내 또는 최근 2~3개월 매출액 • 소액의 경우 소상공인신용평가모형의 평가결과에 따른 보증한도내	8억원 이내
시설 자금	• 당해 시설의 소요자금 범위 내	

신청·접수

◉ 사업장 소재지 지역신용보증재단 방문을 통한 보증신청

심사·평가 주요내용

▸ 영업 및 재무상황, 사업성 등에 신용평가모형을 적용하여 종합 평가

제출서류

◉ 대부분의 신청 서류는 고객의 사전 동의를 거쳐 전자적 방식 등을 통해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직접 수집

고객 제출서류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신용보증신청서
지역신보 직접수집	•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사업자등록증명원 • 표준재무제표증명원 • 금융거래확인서 등 • 국세납세증명서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휴·폐업증명원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처리절차

보증서상담 및 신청서 교부	▹ 사업장 소재지의 지역신용보증재단
↓	
서류접수	▹ 신용보증신청서 등
↓	
신용조사	▹ 사업장을 방문하여 신용상태 · 보증지원 타당성 조사
↓	
보증심사 및 보증결정	▹ 신청서류와 현장실사결과를 내부심사기준에 의해 심사하여 보증지원 여부 및 지원금액 결정
↓	
보증서 발급	▹ 신용보증약정 체결 ▹ 보증료 납부

지원규모

- 2026년 보증잔액 43.9조원으로 운용

(단위 : 건/억원)

구 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25.11월
보증공급	건수	570,247	1,102,797	1,000,959	1,207,608	976,292	948,423	990,179
	금액	140,238	285,069	246,341	270,848	244,350	253,408	274,021
보증잔액	건수	1,134,637	1,735,669	1,939,361	2,279,027	2,195,866	2,057,083	1,998,765
	금액	230,184	394,222	430,769	465,757	446,220	427,154	443,643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금융과 : (전화) 044-204-7528, 044-204-7525
- 신용보증재단중앙회(보증기획부)
  (전화) 1588-7365 (이메일) guarantee@koreg.or.kr
- 참고 '지역신용보증재단 연락처' 참조

영세관광사업자 금융지원 협약보증

신용과 담보력이 부족하여 관광기금 융자대상에서 제외되었던 관광업체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를 위한 상품

지원대상

- 신청자격 : 아래 3가지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중소기업
  - 신용보증신청 접수일 현재 사업자등록 후 가동(영업)중
  -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정하는 관광사업자
  - 대표자의 개인신용평점이 355점 이상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지역신용보증재단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기업 중 최종 보증채무이행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기업 및 그 기업의 연대보증인이 운영하는 기업
- ▸ 휴업 중인 기업, 대출금을 빈번히 연체하는 기업, 회생·개인회생·파산 신청기업 등

지원내용

- 일반지원기업 : 대표자의 개인신용평점이 355점 이상이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정하는 관광사업자, 업체당 최대 200백만원 이내
- 소액지원기업 : 일반지원 대상기업 중 신청금액 2천만원 이하인 중소기업, 업체당 최대 20백만원 이내

신청·접수

- 사업장 소재지 지역신보 방문을 통한 보증신청

심사·평가 주요내용

▸ 영업 및 재무상황, 사업성 등에 신용평가모형을 적용하여 종합 평가

신청서류

- 대부분의 신청 서류는 고객의 사전 동의를 거쳐 전자적 방식 등을 통해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직접 수집

고객 제출서류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신용보증신청서
지역신보 직접수집	•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사업자등록증명원 • 표준재무제표증명원 • 금융거래확인서 등 • 국세납세증명서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휴·폐업증명원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처리절차

보증서상담 및 신청서 교부	▹ 사업장 소재지의 지역신용보증재단
↓	
서류접수	▹ 신용보증신청서 등
↓	
신용조사	▹ 사업장을 방문하여 신용상태 · 보증지원 타당성 조사
↓	
보증심사 및 보증결정	▹ 신청서류와 현장실사결과를 내부심사기준에 의해 심사하여 보증지원 여부 및 지원금액 결정
↓	
보증서 발급	▹ 신용보증약정 체결 ▹ 보증료 납부

지원규모

- 보증규모 : 2,900억원
  * 취급 금융회사 : 농협은행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금융과 : (전화) 044-204-7528, 044-204-7525
- 신용보증재단중앙회(보증기획부)
  (전화) 1588-7365 (이메일) guarantee@koreg.or.kr
- 참고 '지역신용보증재단 연락처' 참조

Q&A

Q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정하는 관광사업자는 무엇인가요?**

A 일반·국내·해외여행업, 관광·소형·의료관광 등 호텔업, 전문휴양업, 유원시설업,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등 총 35개 업종이 문체부 관광기금 융자지원 대상업종으로 선정되어 있습니다.

재해중소기업 특례보증

공장, 점포 및 시설이 재해로 파손되거나 유실되어 피해를 입은 재해중소기업에 대한 신속한 보증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

지원대상

- 신청자격 :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중 지자체로부터 "재해중소기업 확인증" 또는 "피해사실 확인서" 등을 발급받은 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 휴업 중인 기업, 대출금을 빈번히 연체하는 기업, 금융거래확인서 기준일 현재 연체중인 기업 등
- 재해 발생일 이후에 사업자등록을 득한 기업
-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당해 재해복구자금에 대한 보증을 받은 기업

* 단, 특별재해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상 사업개시일이 재해 발생일 이전으로서, 사업자등록증 취득 이전에 물품(용역) 거래계약(매입·매출) 등 사업개시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기업의 경우에는 지원 가능

지원내용

- 보증한도 : 3억원 또는 재해피해금액(또는 재해복구 소요자금) 중 적은 금액

신청·접수

- 사업장 소재지 지역신용보증재단 방문을 통한 보증신청

심사·평가 주요내용

▸ 영업 및 재무상황, 사업성, 재해 피해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신청서류

- 대부분의 신청 서류는 고객의 사전 동의를 거쳐 전자적 방식 등을 통해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직접 수집

고객 제출서류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신용보증신청서 • 재해중소기업 확인증 또는 피해사실 확인서 등
지역신보 직접수집	•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사업자등록증명원 • 표준재무제표증명원 • 금융거래확인서 등 • 국세납세증명서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휴·폐업증명원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처리절차

보증서상담 및 신청서 교부	▹ 사업장 소재지의 지역신용보증재단
↓	
서류접수	▹ 신용보증신청서 등
↓	
신용조사	▹ 사업장을 방문하여 신용상태 · 보증지원 타당성 조사
↓	
보증심사 및 보증결정	▹ 신청서류와 현장실사결과를 내부심사기준에 의해 심사하여 보증지원 여부 및 지원금액 결정
↓	
보증서 발급	▹ 신용보증약정 체결 ▹ 보증료 납부

지원규모

- 보증규모 : 상시 지원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금융과
  (전화) 044-204-7528, 044-204-7525
- 신용보증재단중앙회(보증기획부)
  (전화) 1588-7365 (이메일) guarantee@koreg.or.kr
- 참고 '지역신용보증재단 연락처' 참조

장애인기업 특례보증

장애인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로 장애인기업에 대한 경영안정 및 성장지원을 통해 장애인의 사회적·경제적 자립을 도모하고 고용 기회를 확대

지원대상

- 신청자격 : 기업 또는 대표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 같은기업당 보증금액 50백만원 초과시 업력 6개월 이상일 것

장애인기업 요건

- 장애인복지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지자체로부터 장애인등록증을 받은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3항에 의거 국가보훈처로부터 상이등급을 받은 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제7항에 의거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된 자

지원이 안되는 기업

- 지역신용보증재단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기업 중 최종 보증채무이행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기업 및 그 기업의 연대보증인이 운영하는 기업
- 휴업 중인 기업, 대출금을 빈번히 연체하는 기업, 회생·개인회생·파산 신청 기업 등

지원내용

- 보증한도 : 업체당 최대 100백만원 이내

신청·접수

- 사업장 소재지 지역신용보증재단 방문을 통한 보증신청

심사·평가 주요내용

▸ 영업 및 재무상황, 사업성 등에 신용평가모형을 적용하여 종합 평가

신청서류

- 대부분의 신청 서류는 고객의 사전 동의를 거쳐 전자적 방식 등을 통해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직접 수집

고객 제출서류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신용보증신청서 • 장애인 확인증 • 고엽제법 적용대상 확인원 등
지역신보 직접수집	•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사업자등록증명원 • 표준재무제표증명원 • 금융거래확인서 등 • 국세납세증명서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휴·폐업증명원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처리절차

보증서상담 및 신청서 교부	▹ 사업장 소재지의 지역신용보증재단
↓	
서류접수	▹ 신용보증신청서 등
↓	
신용조사	▹ 사업장을 방문하여 신용상태 · 보증지원 타당성 조사
↓	
보증심사 및 보증결정	▹ 신청서류와 현장실사결과를 내부심사기준에 의해 심사하여 보증지원 여부 및 지원금액 결정
↓	
보증서 발급	▹ 신용보증약정 체결 ▹ 보증료 납부

지원규모

- 보증규모 : 상시 지원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금융과
  (전화) 044-204-7528, 044-204-7525
- 신용보증재단중앙회(보증기획부)
  (전화) 1588-7365 (이메일) guarantee@koreg.or.kr
- 참고 '지역신용보증재단 연락처' 참조

Q&A

Q **"업력 6개월 이상"을 판단하는 업력산정기준은 무엇인가요?**

A 업력 산정은 개인기업은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연월일, 법인기업은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설립연월일부터 신용보증신청 접수일까지의 기간으로 산정합니다.

사회적경제기업 특례보증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소비자생활협동조합에 대한 보증지원을 통해 사회적금융 활성화 및 지역경제발전을 도모

지원대상

◉ 신청자격 : 기업 또는 대표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예비) 사회적기업	-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 기업 - 지자체 및 정부부처 지정 예비사회적기업 (※ 영리사업자에 한함)
협동조합	-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한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종협동조합연합회
(예비) 마을기업	-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 · 도지사가 지정한 (예비)마을기업 (※ 영리사업자에 한함)
자활기업	- 국민생활기초보장법에 의한 자활기업 (※ 영리사업자에 한함)
소비자생활 협동조합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의한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소비자협동조합연합회, 소비자생활협동조합전국연합회

지원이 안되는 기업

- 지역신용보증재단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기업 중 최종 보증채무이행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기업 및 그 기업의 연대보증인이 운영하는 기업
- 휴업 중인 기업, 대출금을 빈번히 연체하는 기업, 회생·개인회생·파산 신청기업 등

지원내용

- 보증한도 : 업체당 최대 400백만원 이내

신청·접수

- 사업장 소재지 지역신용보증재단 방문을 통한 보증신청

심사·평가 주요내용

▸ 영업 및 재무상황, 사업성 등에 신용평가모형을 적용하여 종합 평가

신청서류

- 대부분의 신청 서류는 고객의 사전 동의를 거쳐 전자적 방식 등을 통해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직접 수집

<table>
<tr><td>고객 제출서류</td><td>• 임대차계약서 사본
• 신용보증신청서
• 각 지원대상별 증빙서류
<table><tr><td>사회적기업</td><td>고용노동부 장관의 사회적기업 인증서 사본</td></tr><tr><td>예비사회적기업</td><td>자자체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사본</td></tr><tr><td>협동조합,
소비자생활 협동조합</td><td>조합설립신고필증(설립인가증) 사본,
출자지분표 사분</td></tr><tr><td>마을기업</td><td>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 · 도지사가 지정한
(예비)마을기업 지정서(확인서)</td></tr><tr><td>자활기업</td><td>지자체 인증서 사본</td></tr></table></td></tr>
<tr><td>지역신보
직접수집</td><td>•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사업자등록증명원
• 표준재무제표증명원
• 금융거래확인서 등
• 국세납세증명서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휴·폐업증명원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td></tr>
</table>

처리절차

보증서상담 및 신청서 교부	▹ 사업장 소재지의 지역신용보증재단
↓	
서류접수	▹ 신용보증신청서 등
↓	
신용조사	▹ 사업장을 방문하여 신용상태 · 보증지원 타당성 조사
↓	
보증심사 및 보증결정	▹ 신청서류와 현장실사결과를 내부심사기준에 의해 심사하여 보증지원 여부 및 지원금액 결정
↓	
보증서 발급	▹ 신용보증약정 체결 ▹ 보증료 납부

지원규모

- 보증규모 : 상시지원

  * 취급 금융회사 : 국민·기업·농협·신한·우리·하나·경남·광주·아이엠·부산·전북·신협·새마을금고·농협·산림조합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금융과
  (전화) 044-204-7528, 044-204-7525
- 신용보증재단중앙회(보증기획부)
  (전화) 1588-7365 (이메일) guarantee@koreg.or.kr
- 참고 '지역신용보증재단 연락처' 참조

온[溫, ON]택트 특례보증

코로나19로 부상한 비대면 문화에 대응하고, 신속한 보증지원이 가능하도록 프로세스를 혁신하여 재단과 은행 방문없이 전 과정을 앱(APP)을 통해 처리하는 보증상품

지원대상

- 신청자격 : 아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개인기업
  - 신용보증 접수일 현재 사업자등록 후 1년 경과하여 가동(영업) 중이며, 대표자의 개인신용평점이 745점 이상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지역신용보증재단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기업 중 최종 보증채무이행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기업 및 그 기업의 연대보증인이 운영하는 기업
- ▸ 휴업 중인 기업, 대출금을 빈번히 연체하는 기업, 회생·개인회생·파산 신청기업 등

지원내용

- 보증한도 : 업체당 최대 28.5백만원 이내

신청·접수

- 은행 모바일 App을 통한 비대면 신청

심사·평가 주요내용

▸ 영업 및 재무상황, 사업성 등에 신용평가모형을 적용하여 종합 평가

신청서류

- 대부분의 신청 서류는 고객의 사전 동의를 거쳐 전자적 방식 등을 통해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직접 수집

고객 제출서류	• 임대차계약서 사본
은행 직접수집 (스크래핑)	• 사업자등록증명 • 소득금액증명(3개년) • 부가세과세표준증명(3개년) •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3개년) • 국세납세증명원 • 지방세납세증명원 • 주민등록등본(최근 5년 주소 변동사항 포함) • 현금영수증 매출정보 • 전자세금계산서 매출정보 • 카드 매출정보

처리절차

보증신청 접수	▹ 은행 모바일 App
↓	
보증심사 및 보증결정	▹ 스크래핑 자료 기반 시스템 자동 심사에 의해 보증지원 여부 및 지원금액 결정
↓	
보증서 발급	▹ 신용보증약정 체결 ▹ 보증료 납부

지원규모

- 보증규모 : 1조원

  * 취급 금융회사 : 국민·농협·신한·우리·기업·하나·아이엠·경남·제주은행, 케이·토스·카카오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금융과
  (전화) 044-204-7528, 044-204-7525
- 신용보증재단중앙회(보증기획부)
  (전화) 1588-7365 (이메일) guarantee@koreg.or.kr
- 참고 '지역신용보증재단 연락처' 참조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협약보증

성장잠재력을 갖춘 기업가형 소상공인이 지역 상권을 견인하는 거점 브랜드로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전용 상품

지원대상

◉ 신청자격 : 아래의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① 기업가형 소상공인

1)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의 "로컬 크리에이터 육성 사업" 에 선정된 기업
2) 소진공의 "강한 소상공인 성장 지원사업"에 선정된 기업
3) 소진공로부터 "소상공인 복합융자사업"에 선정된 기업
4)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백년가게(또는 백년소공인)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

② 예비 기업가형 소상공인

- 신용보증신청 접수일 현재 사업자등록 후 가동(영업)중이며, 소진공의 신사업창업사관학교를 수료한 후 사업화자금을 지원받은 중소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 지역신용보증재단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기업 중 최종 보증채무이행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기업 및 그 기업의 연대보증인이 운영하는 기업
- 휴업 중인 기업, 대출금을 빈번히 연체하는 기업, 회생·개인회생·파산 신청기업 등

지원내용

- 보증한도 : (기업가형 소상공인) 업체당 최대 4억원 이내
  (예비 기업가형 소상공인) 업체당 최대 2억원 이내

신청·접수

- 사업장 소재지 지역신보 방문을 통한 보증신청

심사·평가 주요내용

▸ 영업 및 재무상황, 사업성 등에 신용평가모형을 적용하여 종합 평가

신청서류

- 대부분의 신청 서류는 고객의 사전 동의를 거쳐 전자적 방식 등을 통해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직접 수집

고객 제출서류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신용보증신청서 등
은행 직접수집 (스크래핑)	•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사업자등록증명원 • 표준재무제표증명원 • 금융거래확인서 등 • 국세납세증명서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휴·폐업증명원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처리절차

보증서상담 및 신청서 교부	▹ 사업장 소재지의 지역신용보증재단
↓	
서류접수	▹ 신용보증신청서 등
↓	
신용조사	▹ 사업장을 방문하여 신용상태 · 보증지원 타당성 조사
↓	
보증심사 및 보증결정	▹ 신청서류와 현장실사결과를 내부심사기준에 의해 심사하여 보증지원 여부 및 지원금액 결정
↓	
보증서 발급	▹ 신용보증약정 체결 ▹ 보증료 납부

지원규모

- 보증규모 : 1,005억원

  * 취급 금융회사 : 국민은행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금융과
  (전화) 044-204-7528, 044-204-7525
- 신용보증재단중앙회(보증기획부)
  (전화) 1588-7365 (이메일) guarantee@koreg.or.kr
- 참고 '지역신용보증재단 연락처' 참조

녹색기업지원 특례보증

기업환경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ESG가치 실천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육성하기 위한 보증상품

지원대상

- 신청자격 : 현재 사업자등록 후 가동(영업)중 아래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

1) 녹색확인기업
① 녹색인증기업 : 녹색기술인증기업, 녹색전문기업확인기업, 녹색기술제품확인기업
② 녹색제품인증기업 : 환경표지제품, 우수재활용(GR)제품, 저탄소인증제품
③ ESG경영인증기업 : ISO(국제표준화기구) 인증을 받은 기업

2) ESG 경영 실천 기업
① 고용유지 및 창출기업, ② 장애인 고용기업, ③ 가족친화인증기업, ④ 지역사회 공헌기업, ⑤ ESG교육 수료기업, ⑥ 리사이클링업 영위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 지역신용보증재단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기업 중 최종 보증채무이행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기업 및 그 기업의 연대보증인이 운영하는 기업
- 휴업 중인 기업, 대출금을 빈번히 연체하는 기업, 회생·개인회생·파산 신청기업 등

지원내용

- 보증한도 : 4억원 이내

신청·접수

- 사업장 소재지 지역신보 방문을 통한 보증신청

심사·평가 주요내용

▸ 영업 및 재무상황, 사업성 등에 신용평가모형을 적용하여 종합 평가

신청서류

- 대부분의 신청 서류는 고객의 사전 동의를 거쳐 전자적 방식 등을 통해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직접 수집

고객 제출서류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신용보증신청서 등 • 각 지원 대상별 증빙서류
지역신보 직접수집	•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사업자등록증명원 • 표준재무제표증명원 • 금융거래확인서 등 • 국세납세증명서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휴·폐업증명원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처리절차

보증서상담 및 신청서 교부	▹ 사업장 소재지의 지역신용보증재단
↓	
서류접수	▹ 신용보증신청서 등
↓	
신용조사	▹ 사업장을 방문하여 신용상태 · 보증지원 타당성 조사
↓	
보증심사 및 보증결정	▹ 신청서류와 현장실사결과를 내부심사기준에 의해 심사하여 보증지원 여부 및 지원금액 결정
↓	
보증서 발급	▹ 신용보증약정 체결 ▹ 보증료 납부

지원규모

- 보증규모 : 1,000억원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금융과
  (전화) 044-204-7528, 044-204-7525
- 신용보증재단중앙회(보증기획부)
  (전화) 1588-7365 (이메일) guarantee@koreg.or.kr
- 참고 '지역신용보증재단 연락처' 참조

수출유망 중소기업 지원 특례보증

국내외 경기침체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수출기업 및 수출 가능성이 높은 유망 중소기업에 대해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는 보증상품

지원대상

- 신청자격 : 현재 사업자등록 후 가동(영업)중 아래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① 수출지원사업 선정기업
: 중소벤처기업부의 글로벌 강소기업 1,000+에 선정된 기업

② 일반 수출기업 지원
1) 대표자 개인신용평점이 710점 이상으로
2) 당기 또는 최근 1년 이내 수출실적 보유 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 지역신용보증재단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기업 중 최종 보증채무이행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기업 및 그 기업의 연대보증인이 운영하는 기업
- 휴업 중인 기업, 대출금을 빈번히 연체하는 기업, 회생·개인회생·파산 신청기업 등

지원내용

- 보증한도 : 본건 2억원 이내

신청·접수

- 사업장 소재지 지역신보 방문을 통한 보증신청

심사·평가 주요내용

▸ 영업 및 재무상황, 사업성 등에 신용평가모형을 적용하여 종합 평가

신청서류

- 대부분의 신청 서류는 고객의 사전 동의를 거쳐 전자적 방식 등을 통해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직접 수집

고객 제출서류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신용보증신청서 등 • 수출실적 증명서
지역신보 직접수집	•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사업자등록증명원 • 표준재무제표증명원 • 금융거래확인서 등 • 국세납세증명서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휴·폐업증명원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처리절차

보증서상담 및 신청서 교부	▹ 사업장 소재지의 지역신용보증재단
↓	
서류접수	▹ 신용보증신청서 등
↓	
신용조사	▹ 사업장을 방문하여 신용상태 · 보증지원 타당성 조사
↓	
보증심사 및 보증결정	▹ 신청서류와 현장실사결과를 내부심사기준에 의해 심사하여 보증지원 여부 및 지원금액 결정
↓	
보증서 발급	▹ 신용보증약정 체결 ▹ 보증료 납부

지원규모

- 보증규모 : 200억원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금융과
  (전화) 044-204-7528, 044-204-7525
- 신용보증재단중앙회(보증기획부)
  (전화) 1588-7365 (이메일) guarantee@koreg.or.kr
- 참고 '지역신용보증재단 연락처' 참조

소기업·소상공인 전환보증

대출금 원금 상환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기업·소상공인에게 만기상환 구조 전환을 통해 경영안정을 지원하는 보증상품

지원대상

- 신청자격 : 재단의 보증을 이용 중인 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 지역신용보증재단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기업 중 최종 보증채무이행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기업 및 그 기업의 연대보증인이 운영하는 기업
- 휴업 중인 기업, 대출금을 빈번히 연체하는 기업, 회생·개인회생·파산 신청기업 등

지원내용

- 보증한도 : 전차보증의 잔액 범위 내

신청·접수

- 사업장 소재지 지역신보 방문을 통한 보증신청

심사·평가 주요내용

- 영업 및 재무상황, 사업성 등에 신용평가모형을 적용하여 종합 평가

신청서류

- 대부분의 신청 서류는 고객의 사전 동의를 거쳐 전자적 방식 등을 통해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직접 수집

고객 제출서류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신용보증신청서 등
지역신보 직접수집	•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사업자등록증명원 • 표준재무제표증명원 • 금융거래확인서 등 • 국세납세증명서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휴·폐업증명원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처리절차

보증서상담 및 신청서 교부	▹ 사업장 소재지의 지역신용보증재단
↓	
서류접수	▹ 신용보증신청서 등
↓	
신용조사	▹ 사업장을 방문하여 신용상태 · 보증지원 타당성 조사
↓	
보증심사 및 보증결정	▹ 신청서류와 현장실사결과를 내부심사기준에 의해 심사하여 보증지원 여부 및 지원금액 결정
↓	
보증서 발급	▹ 신용보증약정 체결 ▹ 보증료 납부

지원규모

- 보증규모 : 6조원

  * 취급 금융회사 : 국민·농협·신한·우리·하나·기업·SC제일·IM뱅크·부산·광주·전북·경남·제주·신협·지역농협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금융과
  (전화) 044-204-7528, 044-204-7525
- 신용보증재단중앙회(보증기획부)
  (전화) 1588-7365 (이메일) guarantee@koreg.or.kr
- 참고 '지역신용보증재단 연락처' 참조

KB소상공인컨설팅과 함께하는 금융지원 협약보증

경기침체 장기화로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 국민은행 소상공인컨설팅과 연계한 금융지원 보증상품

지원대상

- 신청자격 : 현재 사업자등록 후 가동(영업)중으로, 국민은행 KB소상공인컨설팅센터로부터 본 협약보증을 추천받은 소기업·소상공인인 개인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 지역신용보증재단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기업 중 최종 보증채무이행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기업 및 그 기업의 연대보증인이 운영하는 기업
- 휴업 중인 기업, 대출금을 빈번히 연체하는 기업, 회생·개인회생·파산 신청기업 등

지원내용

- 보증한도 : 같은기업당 재단보증금액 1억원 이내

신청·접수

- 사업장 소재지 지역신보 방문을 통한 보증신청

심사·평가 주요내용

- 영업 및 재무상황, 사업성 등에 신용평가모형을 적용하여 종합 평가

신청서류

◉ 대부분의 신청 서류는 고객의 사전 동의를 거쳐 전자적 방식 등을 통해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직접 수집

고객 제출서류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신용보증신청서 등
지역신보 직접수집	•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사업자등록증명원 • 표준재무제표증명원 • 금융거래확인서 등 • 국세납세증명서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휴·폐업증명원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처리절차

보증서상담 및 신청서 교부	▹ 사업장 소재지의 지역신용보증재단
↓	
서류접수	▹ 신용보증신청서 등
↓	
신용조사	▹ 사업장을 방문하여 신용상태 · 보증지원 타당성 조사
↓	
보증심사 및 보증결정	▹ 신청서류와 현장실사결과를 내부심사기준에 의해 심사하여 보증지원 여부 및 지원금액 결정
↓	
보증서 발급	▹ 신용보증약정 체결 ▹ 보증료 납부

지원규모

- 보증규모 : 1,050억원

  * 취급 금융회사 : 국민은행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금융과
  (전화) 044-204-7528, 044-204-7525
- 신용보증재단중앙회(보증기획부)
  (전화) 1588-7365 (이메일) guarantee@koreg.or.kr
- 참고 '지역신용보증재단 연락처' 참조

소상공인 비즈플러스 카드보증

대내외 경영 여건 악화로 사업운영이 어려운 중·저신용 소상공인에 기업구매카드와 연계한 보증지원을 통해 단기 자금 유동성 지원 및 내수 활성화를 도모하는 보증상품

지원대상

- 신청자격 : 현재 사업자등록 후 1년이상 가동(영업)중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기업·소상공인

① 대표자의 개인신용평점이 579점 이상 879점 이하

* 2025.1.1. 이후 특별재해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업은 595점 이상시 지원가능

② 연매출 12백만원 이상 또는 최근 2개월 매출액 2백만원 이상인 기업

※ 지원대상 조건 관련하여 추후 제도개선 예정

지원이 안되는 기업

- 지역신용보증재단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기업
- 휴업 중인 기업, 대출금을 빈번히 연체하는 기업, 회생·개인회생·파산 신청기업 등

지원내용

- 보증한도 : 본건 9백만원 이내

신청·접수

- (비대면) 보증드림 앱을 통한 온라인 보증신청

  * 경기도 소재 기업의 경우 "Easy-One"

- (대면) 사업장 소재지 지역신보 방문을 통한 보증신청

심사·평가 주요내용

▸ 영업 및 재무상황, 사업성 등 종합 평가

신청서류

- 대부분의 신청 서류는 고객의 사전 동의를 거쳐 전자적 방식 등을 통해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직접 수집

고객 제출서류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신용보증신청서 등
지역신보 직접수집	•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사업자등록증명원 • 표준재무제표증명원 • 금융거래확인서 등 • 국세납세증명서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휴·폐업증명원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처리절차

보증신청 접수	▹ 지역신용보증재단 APP(보증드림, 경기지역의 경우 Easy-One), 재단 영업점 방문 신청
↓	
보증심사 및 보증결정	▹ 비대면 자동 심사 혹은 직원 확인에 의해 보증지원 여부 및 지원금액 결정
↓	
보증서 발급	▹ 신용보증약정 체결
↓	
카드발급 신청 및 발급	▹ 기업은행 카드 어플 및 영업점 통해 카드발급

지원규모

- 보증규모 : 6,300억원

  * 취급 금융회사 : 기업은행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경영안정정책과

  (전화) 044-204-7857, 044-204-7847
- 신용보증재단중앙회(보증기획부)

  (전화) 1588-7365 (이메일) guarantee@koreg.or.kr
- 참고 '지역신용보증재단 연락처' 참조

폐업 분할상환 특례보증(폐업 특례 브릿지보증)

재단의 보증을 이용 중 코로나19 등 경기침체로 인해 폐업한 자에 대한 재기를 지원하는 보증상품

지원대상

- 신청자격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재단의 보증을 이용 중이며 '20.4.~'25.6월 중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있음

② 사업장이 폐업한 상태

③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의 95에 해당하거나 연간소득 8천만원 이하

④ 재단의 보증사고기업으로 처리되지 않은 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 국세체납 등 신용관리정보 보유기업
- 자가주택(폐업한 자가사업장 포함) 권리침해 보유기업
- 브릿지보증을 취급할 금융회사의 연체대출금 보유기업
  * 브릿지보증 대상 전차보증 만기경과로 인한 연금연체 발생건은 제외

지원내용

- 보증한도 : 전차보증의 주채무 잔액 범위 내
- 우대사항 : 보증료 전액 지원, 15년 장기분할상환

신청·접수

- (대면) 사업장 소재지 지역신보 방문을 통한 보증신청

심사·평가 주요내용

▸ 영업 및 재무상황, 사업성 등에 신용평가모형을 적용하여 종합 평가

신청서류

- 대부분의 신청 서류는 고객의 사전 동의를 거쳐 전자적 방식 등을 통해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직접 수집

고객 제출서류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신용보증신청서 등
지역신보 직접수집	•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사업자등록증명원 • 표준재무제표증명원 • 금융거래확인서 등 • 국세납세증명서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휴·폐업증명원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처리절차

보증서상담 및 신청서 교부	▹ 사업장 소재지의 지역신용보증재단
↓	
서류접수	▹ 신용보증신청서 등
↓	
신용조사	▹ 신용상태 · 보증지원 타당성 조사
↓	
보증심사 및 보증결정	▹ 신청서류와 현장실사결과를 내부심사기준에 의해 심사하여 보증지원 여부 및 지원금액 결정
↓	
보증서 발급	▹ 신용보증약정 체결 ▹ 보증료 납부

지원규모

- 보증규모 : 3,750억원

  * 취급 금융회사 : 농협·신한·우리·하나·기업·국민·SC제일·수협·아이엠·부산·광주·제주·전북·경남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금융과
  (전화) 044-204-7528, 044-204-7525
- 신용보증재단중앙회(보증기획부)
  (전화) 1588-7365 (이메일) guarantee@koreg.or.kr
- 참고 '지역신용보증재단 연락처' 참조

골목상권 살리기 금융지원 협약보증

골목상권 소상공인의 자금 부담 완화 및 사업 안착을 도모하는 보증상품

지원대상

- 신청자격 : 대표자의 개인신용평점이 710점 이상이며 아래 하나에 해당하는 가맹점

① 일반
- '상권활성화구역' 인접 읍·면·동에 소재한 기업
- '자율상권구역' 인접 읍·면·동에 소재한 기업
- 전통시장법에 따른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소재 기업

② 우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디지털온누리상품권 가맹점
- 한국간편결제진흥원의 제로페이 가맹점

지원이 안되는 기업

- 지역신용보증재단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기업 중 최종 보증채무이행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기업 및 그 기업의 연대보증인이 운영하는 기업
- 휴업 중인 기업, 대출금을 빈번히 연체하는 기업, 회생·개인회생·파산 신청기업 등

지원내용

- 보증한도 : 4.5천만원 이내

신청·접수

- (대면) 사업장 소재지 지역신보 방문을 통한 보증신청

심사·평가 주요내용

▸ 영업 및 재무상황, 사업성 등에 신용평가모형을 적용하여 종합 평가

신청서류

- 대부분의 신청 서류는 고객의 사전 동의를 거쳐 전자적 방식 등을 통해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직접 수집

고객 제출서류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신용보증신청서 등
지역신보 직접수집	•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사업자등록증명원 • 표준재무제표증명원 • 금융거래확인서 등 • 국세납세증명서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휴·폐업증명원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처리절차

보증서상담 및 신청서 교부	▹ 사업장 소재지의 지역신용보증재단
↓	
서류접수	▹ 신용보증신청서 등
↓	
신용조사	▹ 신용상태 · 보증지원 타당성 조사
↓	
보증심사 및 보증결정	▹ 신청서류와 현장실사결과를 내부심사기준에 의해 심사하여 보증지원 여부 및 지원금액 결정
↓	
보증서 발급	▹ 신용보증약정 체결 ▹ 보증료 납부

지원규모

- 보증규모 : 1,800억원

  * 취급 금융회사 : 기업은행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금융과
  (전화) 044-204-7528, 044-204-7525
- 신용보증재단중앙회(보증기획부)
  (전화) 1588-7365 (이메일) guarantee@koreg.or.kr
- 참고 '지역신용보증재단 연락처' 참조

소상공인 성장촉진 보증대출

성장 유망 소기업·소상공인을 발굴하고, 경쟁력 강화 및 경기활성화를 위한 보증상품

지원대상

- 신청자격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기업·소상공인
  ① 사업자등록 후 가동(영업)중이며 업력1년 이상
  ② 대표자의 개인신용평점이 710점 이상
  ③ 경쟁력 강화 체크리스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고 이를 입증한 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 지역신용보증재단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기업 중 최종 보증채무이행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기업 및 그 기업의 연대보증인이 운영하는 기업
- 보증제한업종 영위기업, 최근 매출액이 없거나 휴업 중인 기업, 연체와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지역재단의 다른 신규보증을 기 이용중인 기업(단기간 중첩보증 1년 제한), 회생·개인회생·파산 신청기업 등

지원내용

- 보증한도 : (개인기업) 45백만원 이내
  (법인기업) 90백만원 이내

신청·접수

- (대면) 사업장 소재지의 은행* 방문을 통한 보증신청

  * 취급 금융회사 : 농협·신한·우리·하나·기업·국민·SC제일·수협·제주·아이엠·부산·광주·전북·경남

  * 인터넷전문은행(카카오·케이·토스뱅크)은 추후 취급 예정

심사·평가 주요내용

▸ 영업 및 재무상황, 사업성 등에 신용평가모형을 적용하여 종합 평가

신청서류

- 대부분의 신청 서류는 고객의 사전 동의를 거쳐 전자적 방식 등을 통해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직접 수집

고객 제출서류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신용보증신청서 등
지역신보 직접수집	•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사업자등록증명원 • 표준재무제표증명원 • 금융거래확인서 등 • 국세납세증명서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휴·폐업증명원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처리절차

보증서상담 및 신청서 교부	▹ 사업장 소재지의 금융회사
↓	
서류접수	▹ 신용보증신청서 등
↓	
신용조사	▹ 신용상태 · 보증지원 타당성 조사
↓	
보증심사 및 보증결정	▹ 신청서류 등을 내부심사기준에 의해 심사하여 보증지원 여부 및 지원금액 결정
↓	
보증서 발급	▹ 신용보증약정 체결 ▹ 보증료 납부

지원규모

- 보증규모 : 3조원(연간 1조원)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금융과
  (전화) 044-204-7528, 044-204-7525
- 신용보증재단중앙회(보증기획부)
  (전화) 1588-7365 (이메일) guarantee@koreg.or.kr
- 참고 '지역신용보증재단 연락처' 참조

생계형 적합업종 금융지원 협약보증

생계형 적합업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을 보호·육성하고, 경영안정과 경쟁력 강화 도모하는 보증상품

지원대상

- 신청자격 : 신용보증신청 접수일 현재 사업자등록 후 가동(영업) 중이며, 대표자 개인신용평점이 710점 이상인 소기업 · 소상공인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 (적합업종) 생계형 적합업종을 영위중인 기업
  - (유사업종) 생계형 적합업종 관련 소분류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 중 적합업종이 아닌 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지역신용보증재단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기업 중 최종 보증채무이행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기업 및 그 기업의 연대보증인이 운영하는 기업
- ▸ 휴업 중인 기업, 대출금을 빈번히 연체하는 기업, 회생·개인회생·파산 신청기업 등

지원내용

- 보증한도 : 5천만원 이내

신청·접수

- (대면) 사업장 소재지 지역신보 방문을 통한 보증신청

심사·평가 주요내용

▸ 영업 및 재무상황, 사업성 등에 신용평가모형을 적용하여 종합 평가

신청서류

- 대부분의 신청 서류는 고객의 사전 동의를 거쳐 전자적 방식 등을 통해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직접 수집

고객 제출서류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신용보증신청서 등
지역신보 직접수집	•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사업자등록증명원 • 표준재무제표증명원 • 금융거래확인서 등 • 국세납세증명서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휴·폐업증명원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처리절차

보증서상담 및 신청서 교부	▹ 사업장 소재지의 지역신용보증재단
↓	
서류접수	▹ 신용보증신청서 등
↓	
신용조사	▹ 사업장을 방문하여 신용상태 · 보증지원 타당성 조사
↓	
보증심사 및 보증결정	▹ 신청서류와 현장실사결과를 내부심사기준에 의해 심사하여 보증지원 여부 및 지원금액 결정
↓	
보증서 발급	▹ 신용보증약정 체결 ▹ 보증료 납부

지원규모

- 보증규모 : 300억원

  * 취급 금융회사 : 농협은행·케이뱅크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금융과
  (전화) 044-204-7528, 044-204-7525
- 신용보증재단중앙회(보증기획부)
  (전화) 1588-7365 (이메일) guarantee@koreg.or.kr
- 참고 '지역신용보증재단 연락처' 참조

햇살론(자영업자) 신용보증

일반 영세기업, 저신용·저소득 자영업자에게 담보로 활용할 수 있는 보증서를 제공함으로써, 소기업, 소상공인 등이 서민금융회사에서 자금을 지원

지원대상

- 신청자격 : 저신용, 저소득 자영업자(농림어업인, 무등록 소상공인포함)

지원이 안되는 기업

- 지역신용보증재단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기업 중 최종 보증채무이행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기업 및 그 기업의 연대보증인이 운영하는 기업
- 휴업 중인 기업, 대출금을 빈번히 연체하는 기업 등

지원내용

구 분		햇살론(자영업자)
지원목표		5조원('10.7.26 ~)
대출기관		지역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상호저축은행
보증기관		전국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세종제외)
금융회사 업무위탁		▹ 보증신청서류 안내 및 접수
지원 대상	기본요건	자영업자(무등록·무점포 포함)
	공통요건	▹ 저신용자(개인신용평점 744점 이하로서 연소득 4,500만원 이하) ▹ 저소득자(기초생활 수급자 또는 연소득 3,500만원 이하)
	추가요건	성실이행자(개인회생·개인워크아웃 프로그램의 변제계획에 따라 9회이상 성실하게 상환 중인자 / 대환자금 지원 불가)
지원한도		운영자금: 2천만원 창업자금: 5천만원 대환자금: 3천만원 * 대환자금 : 대부업체·캐피탈사·저축은행 및 신용카드업을 겸영하는 은행과 신용카드사의 16% 이상 고금리 채무 대환용

- 금융회사 거래상황, 재무상태, 사업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신청서류

- 대부분의 신청 서류는 고객의 사전 동의를 거쳐 전자적 방식 등을 통해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직접 수집

고객 제출서류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신용보증신청서 • 변제금납입확인서(회생지원 프로그램 성실이행) • 창업교육·컨설팅 이수 확인서류 등(창업기업) • 대부업 채무정보 조회서(대환대출)
지역신보 직접수집	•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사업자등록증명원 • 표준재무제표증명원 • 금융거래확인서 등 • 국세납세증명서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휴·폐업증명원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처리절차

업무구분	업무처리 내용	담당기관
보증상담 신청접수	▪ 신용보증 대상여부 및 보증금액 상담 ▪ 보증신청자 신용보증 신청서 및 제출서류 접수 - 사업자등록증(무등록 소상공인 확인서), 사업장임차계약서,사업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등	서민금융사
↓		
보증심사 대출	▪ 접수서류 후 지역신용보증재단에 송부 * 지역신용보증재단 전자보증서를 받고 대출	서민금융사 (위탁업무 수행)
	↓	
	▪ 현장실사를 통한 사업영위사실 확인 ▪ 심사기준표에 의거 보증심사 * 햇살론소상공인평가표에 따라 한도사정 ▪ 전자보증서 서민금융사에 송부	지역신용 보증재단

지원규모

(단위 : 건/억원)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 11월	누계 (3개년치)
보증 공급	건수	10,992	8,002	5,369	24,363
	금액	1,237	888	606	2,731
보증 잔액	건수	54,557	45,329	36,526	
	금액	3,507	2,888	2,056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금융과
  (전화) 044-204-7528, 044-204-7525
- 신용보증재단중앙회(보증기획부)
  (전화) 1588-7365 (이메일) guarantee@koreg.or.kr

지역신용보증재단

담보력이 부족한 소기업·소상공인 등에게 보증서를 제공함으로써 소기업·소상공인 등이 은행에서 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

지원대상

-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등

  * 도박·사행성게임, 사치, 향락, 부동산 등 일부업종은 보증지원 제한

- 우선지원대상기업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의한 소상공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지역특화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금을 추천받은 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지역신용보증재단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기업 중 최종 보증채무이행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기업 및 그 기업의 연대보증인이 운영하는 기업
- ▸ 휴업 중인 기업, 대출금을 빈번히 연체하는 기업, 회생·개인회생·파산 신청기업 등

지원내용

- 소기업·소상공인 등이 금융기관 등에 대하여 부담하는 각종 채무에 대한 대출 보증

◉ 보증한도 : 동일기업당 최고 8억원 (신보 및 기보의 기 보증금액 포함)

분 야	내 용	보증한도
운전자금	• 매출액 한도 적용 - (제조업·제조관련 서비스업) 당기 매출액의 1/3~1/4이내 또는 최근 3~4개월 매출액 - (기타업종) 당기 매출액의 1/4~1/6이내 또는 최근 2~3개월 매출액 • 소액의 경우 소상공인신용평가모형의 평가결과에 따른 보증한도내	8억원 이내
시설자금	• 당해 시설의 소요자금 범위 내	

신청·접수

◉ 사업장 소재지 지역신용보증재단

제출서류

◉ 대부분의 신청 서류는 고객의 사전 동의를 거쳐 전자적 방식 등을 통해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직접 수집

구 분	제출서류	자료수집방법
지역신보 직접수집	•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주민등록표등·초본 • 사업자등록증명원 • 재무제표 등 • 금융거래확인서	• 인터넷 등기소(대법원) • 행정정보공유시스템(행정안전부) • 국세청 홈텍스 • 세무자료전송시스템(KED) • 금융기관 전산연계
고객제출	• 임대차계약서 사본	

처리절차

보증상담 및 신청서 교부	• 사업장 소재지의 지역신용보증재단 • 기업현황을 설명할 수 있는 분(기업대표자 상담 원칙)
서류접수	• 신용보증신청서 • 대표자 주민등록표등·초본 •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임대차계약서 (사업장 및 거주주택) • 금융거래확인서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인 경우) 등 *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 및 지역신보가 직접 수집
신용조사	• 사업장을 방문하여 신용상태·보증지원 타당성 조사
보증심사 및 보증결정	• 신청서류와 현장실사결과를 내부심사기준에 의해 심사하여 보증지원 여부 및 지원금액 결정
보증서 발급	• 신용보증약정 체결 • 보증료 납부

지원규모

- 26조원 보증공급 계획(보증잔액 43.9조원)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금융과
  (전화) 044-204-7528, 044-204-7525
- 신용보증재단중앙회(보증기획부)
  (전화) 1588-7365 (이메일) guarantee@koreg.or.kr
- 참고 '지역신용보증재단 연락처' 참조

Q&A

Q 햇살론 신용보증의 지원절차는?

A

업무구분	업무처리 내용	담당기관
보증상담 신청접수	■ 신용보증 대상여부 및 보증금액 상담 ■ 보증신청자 신용보증 신청서 및 제출서류 접수 - 사업자등록증(무등록 소상공인 확인서), 사업장임차계약서, 사업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등	서민금융기관
보증심사 대출	저신용무등록사업자	
	■ 접수서류 후 지역신보에 송부 * 지역신보 전자보증서를 받고 대출	서민금융기관 (위탁업무 수행)
	■ 현장실사를 통한 사업영위사실 확인 ■ 심사기준표에 의거 보증심사 * 햇살론소상공인평가표에 따라 한도사정 ■ 전자보증서 서민금융사에 송부	지역신보

참고

지역신용보증재단 연락처 (신용보증서 발급 관련)

- 지역신용보증재단(1588-7365)

재 단 명	전 화 번 호	홈페이지
강원재단	(033) 260-0001	www.gwsinbo.or.kr
경기재단	1577-5900	www.gcgf.or.kr
경남재단	1644-2900	www.gnsinbo.or.kr
경북재단	1588-7679	www.gbsinbo.co.kr
광주재단	(062) 950-0011	www.gjsinbo.or.kr
대구재단	(053) 560-6300	www.ttg.co.kr
대전재단	(042) 380-3800	www.sinbo.or.kr
부산재단	(051) 860-6600	www.busansinbo.or.kr
서울재단	1577-6119	www.seoulshinbo.co.kr
세종재단	(044) 865-0550	www.sjsinbo.or.kr
울산재단	(052) 289-2300	www.ulsanshinbo.co.kr
인천재단	1577-3790	www.icsinbo.or.kr
전남재단	(061) 729-0600	www.jnsinbo.or.kr
전북재단	(063) 230-3333	www.jbcredit.or.kr
제주재단	(064) 750-4800	www.jcgf.or.kr
충남재단	(041) 530-3800	www.cnsinbo.co.kr
충북재단	(043) 249-5700	www.cbsinbo.or.kr
신보중앙회	(044) 270-4202	www.koreg.or.kr

제 4 부

신용보증기금

지원사업(전년대비) 달라지는 내용

◉ 기관명 : 신용보증기금

구분	'25년도	'26년도
신용보증 사업	ㅇ 지원규모 : 보증잔액 61.3조원으로 운용 예정	ㅇ 지원규모 : 보증공급 63.9조원으로 운용 예정
창업기업 육성 프로그램 (Start-up NEST)	ㅇ 지원대상 : 3년 이내 스타트업 ㅇ 신청접수 : 상·하반기 연 2회 공모	ㅇ 지원대상 : 3년 이내 스타트업 (일부 전형은 7년 이내 스타트업도 지원 가능) ㅇ 신청접수 : 상반기 중 연 1회 공모
혁신스타트업 성장지원 프로그램	ㅇ 지원내용 - 보증한도 : 뉴본펭귄보증 최대 10억원	ㅇ 지원내용 - 보증한도 : 뉴본펭귄보증 최대 20억원
유동화회사 보증	ㅇ 제도개요 - 발행금리 : 녹색자산유동화증권(G-ABS) 편입기업은 중소기업 3%p, 중견기업 2%p의 이차보전 지원(2차년도 이후부터는 1차년도 지원률의 50% 이내)	ㅇ 제도개요 - 발행금리 : 녹색자산유동화증권(G-ABS) 편입기업은 중소기업 3%p, 중견기업 2%p의 이차보전 지원(2차년도 이후부터는 1차년도 지원률의 50% 이내)
밸류업 프로그램	ㅇ 지원대상 : 제조업, 고용창출기업, 혁신형 중소기업, 신성장동력산업 영위기업 ㅇ 지원규모 : 연 600억원 지원 예정	ㅇ 지원대상 : 제조업, 고용창출기업, 혁신형 중소기업, 신성장동력산업 영위기업, 녹색성장산업 영위기업 ㅇ 지원규모 : 연 550억원 지원 예정
빌드업 프로그램	ㅇ 지원대상 - 신청자격 : 제조업 등 - 경영애로 판단지표 : 어느 하나 충족 - 신청제외대상 : 업력 7년 이하 등 ㅇ 지원규모 : 연 400억원 지원 예정	ㅇ 지원대상 - 신청자격 : 녹색성장산업 영위기업 추가 - 경영애로 판단지표 : 2개 이상 충족 - 경영애로 판단지표 : 상시종업원수 정체 또는 감소 요건에 제한(7인이상) 추가, EBITDA이자보상배율 2미만 및 부채비율 300% 초과 400% 이하, 총자본세전계속사업이익률 3% 미만 요건 추가 - 신청제외대상 : 신용평가등급 KR5 이상 추가 ㅇ 지원규모 : 연 550억원 지원 예정

구분	'25년도	'26년도
매출채권보험	ㅇ 지원대상 - 업력 : 제한 없음 ㅇ 지원규모 : '25년 보험인수 21.5조원으로 운용	ㅇ 지원대상 - 업력 : 1년 이상 (일부 상품은 업력 1년 미만 가입 가능) ㅇ 지원규모 : '26년 보험인수 21.7조원으로 운용
컨설팅	ㅇ 지원규모 : - 경영·특화컨설팅 : 年 18억원 내외 - 소상공인 성공드림 컨설팅 : 年 37억원(3,000건) 내외	ㅇ 지원규모 : - 경영·특화컨설팅 : 年 21억원 내외 - 소상공인 성공드림 컨설팅 : 年 27억원(1,800건) 내외
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z) 선정평가	ㅇ 지원내용 - 비금융 지원 : 컨설팅 비용분담 비율 우대(80% 비용 지원, 4백만원 한도) * 메인비즈협회에서 인정한 '혁신역량 우수기업'의 경우 컨설팅비용 90%까지 지원	ㅇ 지원내용 - 비금융 지원 : 컨설팅 비용분담 비율 우대(90% 비용 지원, 4백만원 한도) * 메인비즈협회에서 인정한 '혁신역량 우수기업'의 경우 컨설팅비용 100%까지 지원
중소·중견기업 팩토링	ㅇ 지원규모 : '25년 2,000억원 규모의 팩토링 공급예정	ㅇ 지원규모 : '26년 2,500억 규모의 팩토링 공급예정
녹색 공정전환 보증	ㅇ 지원내용 - 보증비율 : 95%(전액해지 시설자금은 100%) - 보증료율 : 산출보증료에서 0.2~0.3%p 차감 또는 고정요율(0.5%) 적용 ㅇ 지원규모 : '25년도 연간 7,200억원 지원	ㅇ 지원내용 - 보증비율 : 90%(전액해지 시설자금은 100%) - 보증료율 : 산출보증료에서 0.3~0.5%p 차감 또는 고정요율(0.5%) 적용 ㅇ 지원규모 : '25년도 연간 6,500억원 지원(예정)
무탄소 에너지보증	ㅇ 지원내용 - 보증료율 : 산출보증료에서 0.3~0.5%p 차감 또는 고정요율(0.5%) 적용	ㅇ 지원내용 - 보증료율 : 산출보증료에서 0.3%p 차감 또는 고정요율(0.5%) 적용

신용보증사업

사업개요

기업의 미래성장성을 평가하여 기업 경영에 필요한 각종 채무에 대한 보증을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이 자금융통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지원

〈 전년대비 달라지는 내용 〉

구분	'25년	'26년
지원규모	보증잔액 61.3조원으로 운용 예정	보증공급 63.9조원으로 운용 예정

지원대상

◉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 및 법인과 이들의 단체

- 단, 보증기관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구상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기업으로서 부당하게 채무를 면탈하여 보증기관의 건전성을 훼손한 기업 등은 보증금지

보증지원 타당성이 낮은 일부 업종과 신용상태가 현저히 악화되어 계속 기업의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판단되는 기업을 추가 제한

▸ (업종) 도박, 사행성게임, 사치, 향락, 부동산, 담배 관련 업종 등

▸ (신용상태) 휴업중인 기업, 대출금을 빈번히 연체하는 기업, 신용관리정보 보유 기업 등

지원내용

◉ 기업이 금융기관 등에 대하여 부담하는 각종 채무에 대한 보증

보증종류	주 요 내 용
대출보증	기업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을 대출받는 데에 따른 보증 ▸일반운전자금, 설비투자자금, 무역금융, 구매자금융 등
제2금융 보증	기업이 제2금융기관으로부터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을 대출받는 데에 따른 보증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
상거래 담보보증	중소기업이 상거래계약과 관련하여 부담하는 대금지급채무에 대한 보증
어음보증	기업이 상거래의 담보 목적 또는 결제수단으로 주고 받는 어음에 대한 보증 ▸담보어음 보증 및 지급어음, 받을어음에 대한 보증
이행보증	기업이 공사, 납품을 위한 입찰 또는 계약체결을 할 때 담보로 이용되는 보증 ▸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 차액보증금, 지급보증금, 하자보수보증금
지급보증의 보증	기업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지급보증에 대한 보증 ▸신용장 개설에 대한 지급보증 등
납세보증	기업이 국세 및 지방세 납세의무와 관련하여 세무서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세금을 분할납부, 징수유예를 받고자 할 때 담보로 이용되는 보증

◉ 보증한도

- 같은기업당 보증한도 : 30억원

  * 신용이 취약하거나 규정에서 따로 정하는 기업은 15억원 이내로 제한

  * 국민경제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금 또는 기업의 경우 50~200억원까지 지원가능

자 금 종 류	보증한도
■ 혁신리딩기업, 혁신아이콘에 대한 보증	200억원
■ 혁신기업국가대표 1000 선정기업, 소부장 협력모델 기업에 대한 보증	150억원
■ 구매자금융, 무역금융, 전자상거래보증, 이행보증 등 ■ 해외투자자금, 해외사업자금 보증 ■ 지식기반기업, 녹색성장산업 영위기업, 신성장동력산업 영위기업	70억원
■ 수출기업에 대한 보증	50억원

* 보증심사등급에 따라 차등

- 운전자금 보증한도 : 매출액한도와 자기자본한도 중 적은 금액
  * 매출액한도 : 추정매출액의 1/2 ~ 1/6 이내
  * 자기자본한도 : 자기자본의 300% 이내
- 시설자금 보증한도 : 소요자금을 바탕으로 별도 산정

신청·접수

◉ 고객이 직접 필요자금에 대한 보증상담을 신청
- 신용보증기금 홈페이지(www.kodit.co.kr)에서 온라인 신청
- 영업점 방문 신청

제출서류

◉ 고객의 사전동의를 거쳐 전자적 방식 등을 통해 신보가 직접 수집

구 분	수집(제출)자료	자료수집 경로
신보 직접 수집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고객이 법인번호, 부동산 소재지 고지 시 인터넷 등기소(대법원)에서 수집
	• 주민등록등·초본 • 사업자등록증명 • 납세증명서(국세, 지방세) • 해외이주신고확인서 • 보험료 납부(완납)증명	고객 동의 시 행정정보공유 시스템(행정안전부)에서 수집
	• 부가세과세표준증명 • 매입처별·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 재무제표	세무대리인이 자료 전송 시 메타게이트를 통해 수집
	• 금융거래확인서	고객 동의 시 전산으로 수집
고객 제출	• 임대차계약서 • 주주명부 • 기업개요표	고객이 FAX 또는 현장조사시 제출 (홈페이지 내 온라인 자료제출 가능)

처리절차

단 계 별	처 리 내 용
신청 상담	• 신보 홈페이지를 통한 보증상담신청 또는 영업점 방문을 통한 보증상담신청 • 보증상담을 통해 보증신청 내용의 타당성 및 기본적인 신용상태 등을 사전검토
↓	
자료수집 조사	• 신용조사 및 보증심사에 필요한 자료 수집 (신보가 직접 수집하며, 일부자료는 고객이 제출) • 수집된 자료, 사업장 방문 등을 통한 신용조사
↓	
보증심사 승인	• 법령 및 규정상 보증대상이 되는지의 여부 검토 • 신청기업의 신용상태, 사업전망, 보증지원 금액의 적정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	
약정 보증서 발급	• 신용보증 약정체결: 고객의 자서날인 (신보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비대면 전자약정 가능) • 신용보증서 발급 및 보증료 수납

지원규모

- 보증공급 63.9조원으로 운용 예정

  * '25년 지원현황 (11월말 기준) : 63.4조원

문의처

- 신용보증기금
  1588-6565 (홈페이지 : www.kodit.co.kr)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Q&A

Q **신보에서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주요 보증제도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A

구 분	내 용
수출중소기업에 대한 보증프로그램	· 수출기업 및 수출희망기업에 맞춤형 보증 지원
창업기업에 대한 보증프로그램	· 창업기업에 대해 업력· 유형별 맞춤형 지원
고용창출기업에 대한 보증프로그램	· 고용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보증 상품 지원* * 고용창출 우수기업에 대한 보증, 고용의 질 우수기업에 대한보증 등
신성장동력산업 육성 보증프로그램	· 혁신성장 공동기준에 따른 혁신성장 품목 영위기업 등 지원
시설자금특례보증	· 사업장 신축·매입, 기계설비 도입 등 시설자금에 대한 보증
공동 프로젝트 보증	· 혁신성, 경쟁력이 우수한 공동 프로젝트(공동 제조, 생산, 구매, 납품, 연구개발 등)에 대한 사업단위 보증 지원
문화산업 영위기업 보증프로그램	· 문화관련 전·후방산업 영위기업(제작, 유통 등) 지원
혁신스타트업 성장지원 프로그램	· 스타트업 성장단계별로 최대 70억원까지 지원하는 맞춤형 프로그램
혁신리딩기업 선정제도	· 글로벌 중견기업 육성을 위해 최대 200억원까지 지원하는 중소-중견 스케일업 프로그램
혁신아이콘 지원 프로그램	· 혁신적 비즈니스모델을 갖춘 유니콘 육성을 위해 최대 200억원까지 지원하는 스케일업 프로그램
기 타	· 데이터 가치평가 보증, 지식재산 보증 등

Q **보증료 산정 절차는 어떻게 되며, 보증료율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 보증료는 보증금액에 보증료율을 곱하여 보증서 발급일로부터 보증기한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수납하며, 보증료율은 보증심사등급별 기준요율에서 일정률을 가산 또는 차감하여 연율 0.5%부터 3.0%까지 범위에서 운용합니다.

창업기업 육성 프로그램(Start-up NEST)

사업개요

잠재력을 갖춘 스타트업이 본격적인 성장궤도로 진입할 수 있도록 금융·비금융을 결합한 융복합 지원을 제공하는 초기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

〈 전년대비 달라지는 내용 〉

구분	'25년	'26년
지원대상	3년 이내 스타트업	3년 이내 스타트업 (일부 전형은 7년 이내 스타트업도 지원 가능)
신청접수	상·하반기 연 2회 공모	상반기 중 연 1회 공모

지원대상

- 4차 산업혁명 관련 혁신성장 분야*를 영위하는 3년 이내** 스타트업 (예비창업자 포함)

  * 첨단제조·자동화, 화학·신소재, 에너지, 환경·지속가능, 건강·진단, 정보통신, 전기·전자, 센서·측정, 지식서비스 등

  ** 일부 전형은 최대 7년 이내 스타트업도 지원 가능

신청제외 대상

- 「신용보증규정」에서 정한 보증금지기업 및 보증제한기업
- 「보증심사방법 운용기준」에서 정한 보증제한업종, 보증취급유의업종 영위기업
- 타기관(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의 유사 지원사업* 수료자 또는 수행중인 자 및 중도탈락·포기자

  * 유사 지원사업 예시: 기술보증기금 '기보 벤처캠프'

지원내용

◉ 액셀러레이팅

- 초기 창업기업 육성을 위해 컨설팅, 멘토링, 네트워킹, 정보제공 등을 복합 지원(사업계획 진단, 성장전략 코디네이팅, 시장 포지셔닝, IR 스토리텔링 역량강화 등)

◉ 금융지원

- NEST기업 액셀러레이팅 수행 평가등급 등을 반영하여 신용 보증 지원, 투자 지원(신보 직접투자, 민간 액셀러레이터 Seed 투자, 협업기관 공동투자) 및 신용보험 가입 시 보험료 할인 등 우대

◉ 성장지원

- 창업기업의 해외진출, 경쟁력강화를 위한 기술컨설팅, 대기업 연계 및 네트워킹, M&A컨설팅 및 M&A보증을 통한 사업확장과 회수전략 지원, 거래소시장별 맞춤형 IPO 지원

신청·접수

◉ 신보 ON-Biz(www.kodit.co.kr/sut/index.do)를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상반기 중 연 1회 공모)

심사·평가 주요내용

- 대표자 및 팀 역량, 비즈니스 모델의 경쟁력·시장성, 기업가 정신, 제품·서비스 경쟁력, 사업화 가능성, 지속 성장 가능성 등

제출서류

- 지원서, 사업계획서 등

처리절차

- (선정절차)

모집공고 → 신청·접수 → 1차선발(서류심사) → 최종선발(발표평가)

- (지원절차)

최종선발 → 액셀러레이팅 → 금융지원 → 성장지원

지원규모

- 150개사 내외 선발

문의처

- 신용보증기금 4.0창업부 : 053-430-4370
- 신용보증기금 1588-6565 (홈페이지: www.kodit.co.kr)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혁신스타트업 성장지원 프로그램

사업개요

기술성 및 혁신성이 우수한 혁신스타트업을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보증 프로그램

〈 전년대비 달라지는 내용 〉

구분	'25년	'26년
지원내용	- 보증한도 : 뉴본펭귄 보증 최대 10억원	- 보증한도 ; 뉴본펭귄 보증 최대 20억원

지원대상

- 혁신성장 분야를 영위하는 10년 이내 스타트업

신청제외 대상

- (보증금지기업) 보증기관에서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 미회수 기업 등
- (보증제한기업) 대출금을 빈번하게 연체하는 기업, 신용관리정보 보유기업, 휴업중인 기업 등

지원내용

- 뉴본펭귄 보증

- 창업 후 5년 이내의 연구개발 단계에 있는 기업에 대하여 최대 20억원의 보증한도로 R&D연구개발 자금 지원

- 리틀펭귄 보증
  - 창업 후 7년 이내의 초기사업화 또는 본격성장 단계에 있는 기업에 대하여 최대 20억원의 보증한도로 Credit-Line을 설정하여 자금 지원
- 퍼스트펭귄 보증
  - 창업 후 7년 이내의 연구개발, 초기사업화 또는 본격성장 단계에 있는 기업에 대하여 최대 40억원의 보증한도로 Credit-Line을 설정하여 자금 지원
- Pre-ICON 보증
  - 창업 후 2년 이상 10년 이하의 도약 단계에 있는 기업에 대하여 최대 70억원의 보증한도로 Credit-Line을 설정하여 자금 지원

신청·접수

- 연중 영업점 방문 및 인터넷(www.kodit.co.kr)을 통해 신청

제출서류

- 고객의 사전동의를 거쳐 전자적 방식 등을 통해 신보가 직접 수집

  * 신보가 직접 수집이 불가한 자료에 한하여 고객이 제출
- (신보 직접 수집)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사업자등록증명, 재무제표, 금융거래확인서 등
- (고객 제출) 임대차계약서 등

처리절차

- (처리절차)

신청 및 상담 → 자료수집 및 조사 → 보증심사 및 승인 → 약정 및 보증발급

- (처리내용)
  - 신청 및 상담 : 신보 홈페이지 또는 영업점 방문을 통한 보증상담 신청 → 보증상담을 통해 보증신청 내용의의 타당성 및 기본적인 신용상태 등을 사전검토
  - 자료수집 및 조사 : 신용조사 및 보증심사에 필요한 자료 수집 → 수집된 자료, 사업장 방문 등을 통한 신용조사
  - 보증심사 및 승인 : 법령 및 규정상 보증대상이 되는지 여부 등 검토, 신청기업의 신용상태, 사업전망, 보증지원 금액의 적정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 약정 및 보증서 발급 : 신용보증 약정 체결(고객의 자서날인) 신용 보증서 발급 및 보증료 수납

문의처

- 신용보증기금 4.0창업부 : 053-430-4368
- 신용보증기금 1588-6565 (홈페이지: www.kodit.co.kr)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용어 설명

Credit Line : 운전자금 보증한도와 기간을 미리 정하여 두고 연차별로 보증을 지원하는 한도거래 방법

혁신아이콘 지원 프로그램

사업개요

우수 중견기업 또는 글로벌 혁신기업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혁신 스타트업을 선정하여 지원하는 신보의 대표 스케일업 프로그램

지원대상

◉ 공개모집 개시일 현재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중소기업

- 단, 신보 투자기업은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대상 기업으로 운용

구분	세부내용
업력	▪ 공개모집 개시일 현재 업력 2년 이상 12년 이하
대상분야	▪ 신성장동력산업, 유망서비스, 초격차 미래전략산업 분야 중 하나의 대상분야를 영위
기업규모	▪ 당기 또는 최근 1년간 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이고, 최근 2개년 연평균 매출증가율 10% 이상 또는 ▪ 기관투자자로부터 유치한 누적투자금액이 30억원 이상

신청제외 대상

- 보증금지·보증제한 대상기업 및 보증제한 업종 영위기업
- 기업규모별 선별지원 대상기업
- 기술보증기금 '예비유니콘 특별보증'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

지원내용

- 지원 세부내용 : 보증 & 투자 지원 병행 및 기업의 성장단계 및 상황에 맞는 다양한 비금융 서비스 제공
  - (보 증) 3년간 최대 200억원의 운전자금 보증지원(투자한도 포함)
  - (투 자) 최대 30억원의 보증연계투자 지원
  - (비금융) 맞춤형 컨설팅, 홍보활동 지원, 해외진출 및 판로지원, 기술·특허 자문 등
  - (성과공유) 혁신아이콘 선정기업이 성과목표를 달성한 경우 기업이 선택한 방식으로 성과의 일부를 혁신 생태계 구성원과 공유

성과목표			
투자 유치	기업 공개	외형 성장	기타

→

성과공유 방식				
신보 투자	고용 창출	사회적 가치실현	재능 기부	기타

신청·접수

- 공고(예정) 시기 : 2월, 8월 예정 (상·하반기 각 1회 공고 예정)
- 접수방법 : 신청기업이 직접 신보ON-Biz (www.kodit.co.kr/sut/index.do)를 통해 온라인 신청·접수
- 제출서류 : 혁신아이콘 지원서, 사업계획서, 정보수집·이용 동의서 등

선정규모

- 연간 10개사 내외 선정

선정절차

- ‘후보기업 모집 → 예비심사 → 본심사 → 최종 확정’의 4단계 프로세스를 통해 선정

후보기업 모집	예비심사	본심사	최종 확정
■ 공개모집	■ 서류검증 심사 (2배수 내외)	■ 기초정보 확인 ■ 발표평가 ⇒ 혁신아이콘 선정	■ 보증심사·승인 ⇒ 보증지원

심사·평가 주요내용

▸ 예비심사 통과 기업을 대상으로 「혁신아이콘 선정심의위원회」가혁신성, 성장성, 지속가능성, ESG경영, 경영역량 등을 평가

문의처

- 신용보증기금 스케일업금융센터 혁신아이콘팀 : 02-710-4675
- 신용보증기금 4.0창업부 : 053-430-4367
- 신용보증기금 1588-6565 (홈페이지: www.kodit.co.kr)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Q&A

Q **혁신아이콘 선정기업에 대한 우대혜택으로는 어떠한 것이 있나요?**

A 혁신아이콘 선정기업에 대해서는 ▲3년간 최대 200억원의 신용보증 제공, ▲최저보증료율(0.5%) 적용, ▲협약은행을 통한 0.7%p 추가 금리인하 지원, ▲해외진출, 각종 컨설팅, 홍보 지원 등 다양한 금융·비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Q **대상분야와 기업규모의 세부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A 대상분야, 기업규모 등에 대한 세부요건은 공개모집 시 공고문을 통해 안내 예정입니다.

직전 2025년 제14기 혁신아이콘 선정을 위한 공고문 및 지원대상 세부요건은 신보ON-Biz(www.kodit.co.kr/sut/index.do) 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Q **혁신아이콘으로 선정된 대표 기업으로는 어떤 기업이 있나요?**

A 혁신아이콘 대표기업으로는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한 '버킷플레이스'를 비롯하여,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루닛', '뷰노', '오픈엣지테크놀로지', '퀄리타스반도체', '크라우드웍스' 등이 있습니다.

보증연계투자

사업개요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 및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보증과 투자를 연계하여 지원하는 복합금융상품으로, 신용보증기금이 가치창출능력과 미래성장 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의 유가증권을 직접 인수하여 중소기업에 자금을 지원

지원대상

- 기술력 및 경영진의 경영능력이 우수하고 사업전망이 양호한 비상장 중소기업으로서, 신용보증을 이용 중이거나 투자와 보증을 동시에 신청한 기업. 단, 창업기업 등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도가 높은 기업의 경우는 우선적으로 투자

신청제외 대상

- (투자제한기업) 기업구조조정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최대주주인 기업, 회생절차 등 구조조정절차가 진행중인 기업 등
- (보증금지기업) 보증기관에서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 미회수 기업 등
- (보증제한기업) 휴업중인 기업, 신용관리정보 보유기업, 대출금을 빈번하게 연체하는 기업 등

지원내용

- 개별기업 당 투자한도
  - 30억원으로 운용하되, 미래성장성등급별로 차등적용
- 투자종류 : 주식(보통주, 우선주) 또는 사채(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교환사채) 인수, 프로젝트 투자, 조건부지분인수계약(SAFE) 투자 등
- 투자기간 : 주식 3년~10년, 사채 5년이내

신청·접수

- 신용보증기금 스타트업지점 및 영업점에 신청 및 접수

심사·평가 주요내용

▸ 투자대상기업 대표자의 경영능력, 사업성·기술성 및 재무건전도 등 투자타당성을 종합적으로 심사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및 신용보증 신청 시 수집 자료 등
  - 단, 기수집된 자료 중 투자심사일 현재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집 생략 가능

처리절차

- (보증연계투자 업무처리순서)

지원규모

- 700억원 이내(매년 사업계획에 따라 변동)
  * '25년 지원현황 : 673억원 투자예정

문의처

- 신용보증기금
  1588-6565 (홈페이지 : www.kodit.co.kr)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Q&A

Q **현재 신용보증 거래가 없어도 투자 신청이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현재 신용보증 거래가 없더라도 보증과 투자를 동시에 신청하여 투자 실행 전까지 신용보증을 사용 중이면 가능합니다.

용어 설명

상환전환우선주 : 채권처럼 만기 때 투자금 상환을 요청할 수 있는 상환권, 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 할 수 있는 전환권, 회사 청산이나 M&A시 잔여 재산이나 매각대금 분배에 보통주보다 유리한 권리를 가지는 우선권을 가지고 있는 '종류주식'입니다.

전환사채 : 일정한 조건에 따라 채권을 발행한 회사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채권을 말합니다.

신주인수권부사채 : 사채발행 후 일정기간 내에 미리 약정된 가격(신주인수 가격)으로 당해 발행회사에 일정한 수 또는 금액에 해당하는 신주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입니다.

프로젝트 투자 : 중소기업이 타 사업과 회계의 독립성을 유지하며 개발 및 제작하는 프로젝트에 자금 지원 후 수익을 분배받는 투자 방식으로 투자 대상은 주로 영화 공연 게임 등 문화콘텐츠 장르입니다.

조건부지분인수계약(SAFE) 투자 : [Simple Agreement for Future Equity] 기업가치 산정 없이 선투자 후, 기업이 적격 후속투자자로부터 투자 유치 시 후속투자자가 선정한 기업가치를 기준으로 신보에게 신주를 교부(자본화)하는 투자 방식입니다.

투자옵션부보증

사업개요

미래성장성이 높은 창업초기 기업에 대하여, 기업의 자본증자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증자참여권)가 부여된 보증을 지원한 후, 기업의 경영성과 등에 따라 투자전환을 결정하는 투·융자 복합금융상품

지원대상

- 설립 후 7년 이내 비상장 중소기업으로(상법상 주식회사) 미래 성장가능성이 높은 기업

신청제외 대상

- (보증금지기업) 보증기관에서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 미회수 기업 등
- (보증제한기업) 휴업중인 기업, 신용관리정보 보유기업, 대출금을 빈번하게 연체하는 기업 등

지원내용

- 제도 개요
  - 창업초기 기업에 대해 기업의 자본증자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증자참여권)가 부여된 보증상품으로, 기업경영성과, 후속투자 등에 따라 투자전환

〈투자옵션부보증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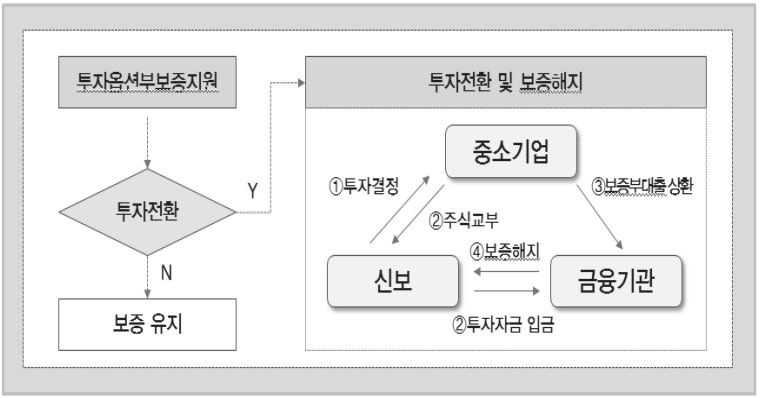

◉ 지원 내용

보증한도	• 같은 기업당 최대 10억원
보증기한	• 5년으로 운용
보 증 료	• 0.5% 고정 보증료율
보증비율	• 100%
증자참여권	• 행사기간 내 보증부대출 상환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보가 납입하고 이를 기업이 발행하는 신주를 인수하기 위한 주금납입금으로 충당함으로써 기업의 자본증자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계약조건	• (행사기간) 보증취급 후 1년 경과시점부터 4년간. 단, 후속투자 유치, 상장절차 진행 및 기업가치 상승 등 사유 발생 시 보증취급 후 3개월 경과시점부터 행사가능 • (행사가격) 기관투자자 투자 유치 시 1주당 발행가액 100% 등

신청·접수

◉ 신용보증기금 스타트업지점 및 영업점에 신청 및 접수

심사·평가 주요내용

▸ 보증신청기업의 미래성장가능성에 중점을 두고 심사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및 신용보증 신청 시 수집 자료 등

처리절차

- 투자옵션부보증 업무처리순서

상담·접수 → 신용조사 → 심사 → 보증서 발급

지원규모

- 400억원 이내(매년 사업계획에 따라 변동)
  - * '25년 지원현황 : 400억원 지원예정

문의처

- 신용보증기금 1588-6565 (홈페이지 : www.kodit.co.kr)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Q&A

Q **증자참여권 행사가격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A 증자참여권의 행사가격은 기관투자자의 후속투자 1주당 발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후속투자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투자전환심사 시점에 신보가 산정한 가격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는 창업초기 기업의 기업가치 산정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후속투자 유치 시 평가된 가치에 연동하는 최근 투자시장의 추세를 반영한 것입니다.

용어 설명

증자참여권 : 신보가 보증기업의 자본증자(신주 발행)에 참여(인수)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후속투자 : 후속투자란 신보가 인정한 기관투자자가 신보의 투자옵션부 보증을 받은 기업이 발행한 주식 또는 증권연계형 사채를 투자하는 것을 말합니다.

유동화회사보증

사업개요

기업이 회사채 발행 등을 통해 직접금융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

〈 전년대비 달라지는 내용 〉

구분	'25년	'26년
제도개요	- 발행금리 : 녹색자산유동화증권(G-ABS) 편입기업은 중소기업 3%p, 중견기업 2%p의 이차보전 지원(2차년도 이후부터는 1차년도 지원률의 50% 이내)	- 발행금리 : 녹색자산유동화증권(G-ABS) 편입기업은 중소기업 3%p, 중견기업 2%p의 이차보전 지원(2차년도 이후부터는 1차년도 지원률의 50% 이내)

지원대상

◉ 다음의 신용등급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 · 중견기업

중소기업	▪ CPA 감사보고서 보유 : 신보 미래성장성등급 K10 이상 ▪ CPA 감사보고서 미보유 : 신보 미래성장성등급 K9 이상
중견기업	▪ 신용평가회사의 회사채등급 BB- 이상

◉ 지원 불가 기업

채무불이행 기업	■ 보증금지기업, 보증제한기업, 회생 ·구조조정절차 진행 기업 ■ 변제 이행기간 3년 미만 또는 변제이행률 60% 미만 회생 조기종결 기업 ■ 당기 CPA 감사의견이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 인 기업
지원타당성이 낮은 기업	■ 금융업 영위 기업(단,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전업 부동산신탁사는 제외)

◉ 지원 유의 기업

채무불이행 기업	■ 변제 이행기간 3년 초과 & 변제이행률 60% 초과 회생 조기종결 기업
신용상태 취약기업	■ 최근 2개년 동안 EBITDA이자보상배율이 1미만인 기업 (미래성장성등급K5(회사채등급BB+) 이하) ■ 업종별 부채비율 상한선 초과기업, 기업가치가 0이하인 기업 ■ 총 차입금(이번 신청건 포함)이 당기매출액을 초과하는 기업
재무구조 개선 대상기업	■ 회생· 기업구조조정 종결 후 2년 이내 기업인 경우 ■ 기업구조조정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최대주주인 기업

* 지원 유의 기업의 경우, 보증사업심사위원회 의결을 통하여 편입 여부 결정

제도개요

◉ 개별 기업이 발행하는 회사채 등을 유동화회사(SPC)가 매입하여 유동화자산(기초자산)을 구성한 후, 이를 기초로 유동화증권을 발행

- 유동화증권은 선순위증권과 후순위증권으로 구분 발행
- 선순위 증권에 대하여 신보가 원리금에 대한 신용보증 제공

◉ 신보의 보증으로 AAA등급으로 상향된 선순위증권은 직접금융시장에 매각하고, 후순위 증권은 회사채 발행 기업이 매입

〈유동화회사보증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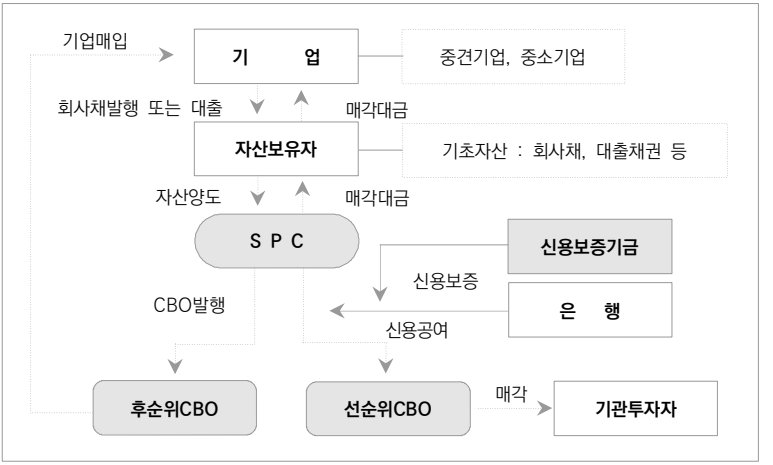

● 지원한도는 아래의 각 한도 중 가장 적은 금액 이내

① 편입한도

- 중견기업

(단위:억원)

회사채등급	A-이상	BBB+	BBB	BBB-	BB+	BB	BB-
일반	350			300	250	170	100

- 중소기업

(단위:억원)

미래성장성등급	K3이상	K4	K5	K6	K7	K8	K9	K10
일반	300	250	200	180	100	70	60	50

(주1) CPA 감사보고서 비보유기업은 최고 50억원까지 지원 가능

(주2) 지원 한도는 정부 정책 등에 따라 상향 가능

② 매출액·자기자본 한도

매출액	• 제조업 및 유망·특화서비스기업 : 추정매출액의 1/3~1/4 이내 • 그 밖의 업종 영위기업 : 추정매출액의 1/4~1/6 이내
자기자본	• 회사채등급 BB 이하인 기업(미래성장기업군 Ⅲ군)의 경우 자기자본의 3배 이내

(주1) 신보, 기보 및 보증재단의 일반보증+투자금액+기업어음 차환발행기업 지원

(주2) 특별대출보증 금액+ 유동화회사보증 기초자산 편입금액(이번 신청 건포함) 기준

◉ 발행금리

- 무보증 공모사채(3년) AAA등급 민평금리 기준으로 편입기업의 신용등급에 따라 차등 적용
- 녹색자산유동화증권(G-ABS) 편입기업은 중소기업 3%p, 중견기업 2%p 이차보전 지원(2·3차년도는 1차년도의 50% 이내), 회사채 금리 0.2%p 차감 지원

신청·접수

◉ 연중 상시 발행

- 중소기업: 전국 영업점
- 중견기업: 유동화보증센터

심사·평가 주요내용

▸ 신용등급 요건을 충족한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의 경쟁력, 미래성장성, 기업가치 및 채무상환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편입 여부 결정

제출서류

◉ 편입신청서류는「신용보증 제출서류 」참조

처리절차

구 분	상담·신청	편입심사	보증심사	보증승인
중 소 기 업	영 업 점	영업점 보증심사등급 (신용보증기금)	유동화보증 센터	보증사업 심사위원회
중 견 기 업	유동화 보증센터	혁신성장심사센터 전문심사센터 유동화보증센터 회사채등급 (신용평가회사)		

문의처

- 신용보증기금 1588-6565 (홈페이지 : www.kodit.co.kr)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Q&A

Q **유동화회사보증 지원 대상 기업은 몇 년 만기 회사채를 발행하나요?**

A 신규 이용 기업은 3년 만기 회사채를 발행하며, 조기상환할 경우 조기상환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용어 설명

SPC(Special Purpose Company) : 회사채 또는 대출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기초자산으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하는 특수목적의 법인

후순위채권 : 채무변제순위가 선순위채권에 비해 뒤지는 채권으로, 선순위 채권의 상환이 완료되고 잉여현금이 남아있을 경우 채권의 원리금이 지급

밸류업 프로그램

사업개요

성장 가능성이 있으나 재무지표 취약 등 복합적 경영위기 기업에게 신보가 주도적으로 기업개선에 필요한 솔루션을 지원하여 계속기업 가치를 향상시키고 부실을 예방하기 위한 재도약지원 프로그램

〈 전년대비 달라지는 내용 〉

구분	'25년	'26년
지원대상	제조업, 고용창출기업, 혁신형 중소기업, 신성장동력산업 영위기업	제조업, 고용창출기업, 혁신형 중소기업, 신성장동력산업 영위기업,녹색성장산업 영위기업
지원규모	연 600억원 지원 예정	연 550억원 지원 예정

지원대상

- 신청자격 : 총여신 100억원 이하인 중소기업 중 경영상태가 취약*한 제조업, 고용창출기업, 혁신형 중소기업, 신성장동력산업 영위기업, 녹색성장산업 영위기업
  - * 당기 매출액 25% 이상 감소, 부채비율 400% 초과, 2년 연속 영업손실 또는 영업현금흐름 부(-) 또는 EBITDA이자보상배율 1미만, 자기자본 잠식 중 어느 하나

신청제외 대상

- 당기매출액 20억원 미만, 업력 5년 이하, 부적합 업종*
  * 개인서비스, 농업·육가공, 인력공급, 슈퍼마켓, 의료소매, 음식점, 건설기계 임대 등
- 직접보증잔액 3억 미만, 당해연도 신규증액보증 취급기업
- 부실사유 발생기업 등

지원내용

구 분	V(Ⅰ) 프로그램	V(Ⅱ) 프로그램
지원방식	신보 단독지원	채권은행과 공동지원
지원기간	3년+1년(연장가능)	좌동
지원내용	▸ 신규보증(최고 50억원) ▸ 컨설팅(내외부 경영진단) ▸ 보증료 차감 ▸ 만기연장 보장 ▸ 보험료 할인(10% 할인)	▸ V(Ⅰ) 지원 ▸ 협약은행 채무 재조정 - 최대 2%p 금리인하 - 수수료 면제
협약은행		기업, 하나, 농협, 신한

신청·접수

- 담당 영업점을 통해 신청
- 제출서류 : 재무제표 등 보증신청 관련 서류, 경영개선계획서
- 선정평가 : 단계별 평가 방법

심사·평가 주요내용

- 부실(심화)기업 등 대상 제외, 컨설팅을 통한 만성적 위기기업 선별, 심사 시 재도약평가표 및 내·외부 심의위원회 운용

- 지원절차

대상기업 발굴	지원 사각지대의 경영취약 기업 발굴
↓	
상담 · 접수	대상요건 해당여부 검토
↓	
컨설팅 실시	현상 진단 및 계속기업 검증, 경영개선을 위한 방안 제시
↓	
지원계획 수립	기업체의 재도약을 위한 경영개선계획안 작성
↓	
프로그램 심사	심의위원회를 통한 프로그램 지원 타당성 검토
↓	
프로그램 지원	특별약정 체결 및 경영개선계획에 필요한 프로그램 지원

지원규모

- 연 550억원 지원 예정 (매년 사업계획에 따라 변동)

문의처

- 신용보증기금 기업개선부 : 053-430-4428
- 신용보증기금 1588-6565 (홈페이지: www.kodit.co.kr)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Q&A

Q **심사기간은 얼마나 소요되나요?**

A 밸류업 프로그램은 프로그램 심사 이전 경영상태 진단을 위한 컨설팅을 실시합니다. 컨설팅 종류에 따라 1~2개월의 수행기간이 필요하며, 컨설팅 완료 이후 프로그램 심사에 들어가므로 접수 이후 최소 2개월의 기간이 소요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빌드업 프로그램

사업개요

일시적인 경영애로 기업에 대해 신용보증기금이 주도적으로 자구계획 이행에 필요한 솔루션을 지원하여 신속한 정상화 및 성장성 회복을 통해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부실을 예방하기 위한 사전 구조개선 종합지원 프로그램

〈 전년대비 달라지는 내용 〉

구분	'25년	'26년
지원대상	- 신청자격: 제조업 등 - 경영애로 판단지표: 어느 하나 충족 - 신청제외대상: 업력 7년 이하 등	- 신청자격: 녹색성장산업 영위기업 추가 - 경영애로 판단지표: 2개 이상 충족 - 경영애로 판단지표: 상시종업원수 정체 또는 감소 요건에 제한(7인 이상) 추가, EBITDA이자보상배율 2미만 및 부채비율 300% 초과 400% 이하, 총자본세전계속사업이익률 3% 미만 요건 추가 - 신청제외대상: 신용평가등급 KR5 이상 추가
지원규모	연 400억원 지원 예정	연 550억원 지원 예정

지원대상

- 신청자격 : 일반보증 이용기업 중 일시적 경영애로*에 직면한 제조업, 고용창출기업, 혁신형 중소기업, 고용창출기업, 신성장동력산업 영위기업, 수출기업, 녹색성장산업 영위기업

* (경영애로 판단지표) 당기 재무제표 기준 매출액, 총자산의 정체 또는 감소, 상시종업원수가 7인 이상인 기업의 상시종업원수 정체 또는 감소, 신보 신용평가등급 2년 연속 동일 또는 하락, EBITDA이자보상배율 2미만, 부채비율 300%초과 400%이하, 총자본세전계속사업이익률 3% 미만 중 2개 이상에 해당. 단, 정체는 평가 기간 동안 연평균 성장률이 5% 이내인 경우를 기준으로 하고, 감소는 2년 이상 감소 의미

신청제외 대상

- 업력 7년 이하, 보증이용기간 3년 이하, 신용평가등급 KR5 이상
- 부실사유 발생기업 등

지원내용

- 지원 세부내용 : 기업의 성장 가능성 및 자구계획안 실현 가능성 심사를 통해 지원여부가 결정되며, 아래의 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 내용 상이

〈컨설팅 후 지원〉	〈집중지원〉
성장가능성은 높지만 자구계획 실현가능성이 낮은 기업 → 자구계획 수정 관련 컨설팅 진행 후 지원 결정	성장 가능성 및 자구계획 실현가능성이 모두 높은 기업 → 선제적 지원 후 필요 시 컨설팅 진행
지원제외	〈신용보증 재조정 지원〉
	자구계획 실현가능성은 높지만 성장가능성이 낮은 기업 → 만기연장, 당초 보증비율 계속 적용 등

신청·접수

- 담당 영업점을 통해 신청
- 제출서류 : 재무제표 등 보증신청 관련 서류, 자구계획안
- 선정평가 : 단계별 평가 방법

심사·평가 주요내용

- 부실(심화)기업 등 대상 제외, 심사 시 성장성 및 자구계획안 심사 및 내·외부 심의위원회 운용

- 지원절차

대상기업 발굴	지원 사각지대의 경영애로 기업 발굴
↓	
상담 · 접수	대상요건 해당여부 검토
↓	
지원심사	성장성 및 자구계획 심사, 필요시 컨설팅 진행
↓	
심의위원회	신규보증 승인 여부 심사
↓	
지원안내	지원구분 별 지원내용 안내
↓	
프로그램 지원	특별약정 체결 및 자구계획에 필요한 프로그램 지원

지원규모

- 연 550억원 지원 예정 (매년 사업계획에 따라 변동)

문의처

- 신용보증기금 기업개선부 : 053-430-4428
- 신용보증기금 1588-6565 (홈페이지: www.kodit.co.kr)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매출채권보험

사업개요

- 기업이 물품 또는 용역을 외상으로 제공하고 대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 대비하는 보험
- 중소기업은 경기 전망이 불투명할 경우 매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매출채권보험에 가입하면 이러한 불확실성을 크게 줄일 수 있음

〈 전년대비 달라지는 내용 〉

구분	'25년	'26년
지원대상	업력 : 제한 없음	업력 : 1년 이상 (일부 상품은 업력 1년 미만 가입 가능)
지원규모	'25년 보험인수 21.5조원으로 운용	'26년 보험인수 21.7조원으로 운용

지원대상

- 보험계약자 기본 가입 요건

규 모	업 력	업 종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1년 이상 (일부 상품은 업력 1년 미만 가입 가능)	제한 없음 (일부 부적합 업종 제외)

* 직전 3개년 평균 매출액 3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

신청제외 대상

- 다음과 같은 기업은 보험에 가입할 수 없음
  - * 보증기관(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 등)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구상채권을 회수하지 못하였거나 부실처리한 기업, 휴폐업 기업 등
  - * 도박·게임, 사치·향락, 주류·담배 관련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등 보험계약 제외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 다음과 같은 기업에 대한 채권(외상매출금+받을어음)은 보험에 가입할 수 없음
  - *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금융회사, 보험계약자의 관계기업, 해외 소재기업, 현금거래기업, 청약일 현재 매입채무의 변제를 연체중인 기업 등

지원내용

- 구매자의 폐업 또는 해산, 부도사유 발생, '회생절차 등'의 신청, 결제지연 등의 사유로 매출채권 또는 어음대금을 회수하기 어려운 경우 가입보험금액과 실제손해금액에 보상률을 곱한 금액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보험금을 지급

보험한도

- 매출채권보험 : 신청기업(계약자)에 대해 최고 100억원
- 어음보험 : 신청기업(계약자)에 대해 최고 10억원

보험료

- 매출채권보험은 보험가입 매출채권, 어음보험은 보험금액에 대하여 0.1% ~ 5.0%

  (일부 보험상품은 보험금액에 대하여 0.2% ~ 2.0% 적용)

상품종류

유형별	종류별	표준처리기간	보험대상
매출채권 보험	다사랑보험	15일	다수 구매처에 대하여 장래 발생할 매출채권
	한사랑보험	8일	개별 구매처에 대하여 장래 발생할 매출채권
	온라인보험	실시간	
어음보험	포괄어음보험	15일	다수 구매처에 대하여 장래 발생할 어음
	개별어음보험	8일	개별 구매처에서 이미 취득한 어음

신청·접수

- 회사소재지와 가까운 신용보증기금 신용보험센터 및 영업점에서 신청 가능

  (온라인보험은 홈페이지 내 매출채권보험 플랫폼에서 신청·가입 가능)
- 신용보증기금과 거래중인 기업은 거래 관할점으로 신청

심사·평가 주요내용

- ▸ 계약자 및 구매자(어음관련인 포함)의 재무자료 등을 토대로 신용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보험인수금액, 구매자 확정, 인수여부 등 결정

제출서류

- 매출채권보험 : 매출채권보험청약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최근 4분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등 매출관련자료, 법인인감증명서 등

  * 온라인보험의 경우 관할점 방문 · 서면 서류제출 없이 비대면으로 가입 가능
- 어음보험 : 어음보험청약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받을어음 및 세금계산서 사본, 당기 매출액 확인자료 등

처리절차

지원규모

- ‘26년 보험인수 21.7조원으로 운용

문의처

- 신용보증기금 신용보험부 : 053-430-4384
- 신용보증기금 1588-6565 (홈페이지 : www.kodit.co.kr)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Q&A

Q **보험금 지급청구 사유는?**

A 구매자에게 아래의 네 가지 사유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 어음교환소로부터 거래정치처분을 받게 될 부도사유가 발생한 때
- 폐업 또는 해산 등기된 때
- 회생, 파산, 개인회생 절차의 개시신청이 있는 때
- 외상매출금을 결제기일까지 상환하지 아니하고 2개월이 경과한 때

Q **보험금 지급청구 시 필요서류는?**

A 보험금 지급청구시 아래의 서류를 신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보험금지급청구서(신보가 정하는 서식) 및 보험증권 사본
- 매출채권의 발생 관련 서류 및 실제손해금액 산정 서류 사본 (인수증, 화물송장,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결제내역서 등)
- 매출채권이 어음상 채권인 경우 해당 받을어음 사본 (전자어음인 경우 부도전자어음 확인서)
- 기타 보험금 지급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용어 설명

매출채권 : 상품·제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상거래와 관련되어 발생하는 "외상매출금"과 "받을어음"

보험가입 매출채권 : 매출채권보험에서 보험계약자와 개별 구매기업 사이에서 향후 1년간 발생될 매출채권총액에 인수비율(보험가입비율)을 곱한 금액으로서 보험에 가입될 금액

보험금액 : 매출채권보험에서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자(신보)가 보험계약자에게 보상할 수 있는 최고 한도액으로 보험가입매출채권을 매출채권회전율로 나누어 산출

잡매칭(Job Matching)

사업개요

구인난 해소, 인건비 부담 완화 등 중소기업 고용문제 해결 및 취업 활성화를 위하여 구인기업과 구직자를 연계하는 일자리를 지원

지원대상

- 구인을 희망하는 중소·중견기업 및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

지원내용

- 잡클라우드
  - 신보 홈페이지 내 채용플랫폼을 운영하여 중소기업 상시 구인·구직활동 지원
- 온라인 채용박람회
  - 전문 채용플랫폼 연계를 통해 신보 추천기업 전용 채용관을 개설하여 우수 중소기업과 우수 인재 일자리 매칭 지원
- 유관기관 협업 프로그램
  - 유관기관의 고용지원사업과 연계하여 기업의 맞춤형 인재 채용, 인건비 절감 지원

신청·접수

- 신청방법
  - (잡클라우드) 홈페이지(www.kodit.co.kr) - 신보ON-Biz – 경영지원 - 잡클라우드
  - (그 외) 프로그램별 참여기업 모집 시 신청방법 별도 안내
- 추진절차

모집공고	→	신청 · 접수	→	참여기업 선정	→	채용절차 진행
신보, 유관기관		구인기업		신보, 유관기관		구인기업, 구직자

문의처

- 신용보증기금 고객지원부 : 053-430-4511

컨설팅

사업개요

-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다양한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컨설팅을 지원
- 경영진단과 심층 분석을 통해 개선점을 도출하고 솔루션을 제공하여 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하는 사업

〈 전년대비 달라지는 내용 〉

구분	'25년	'26년
지원규모	- 경영·특화컨설팅 : 年 18억원 내외(매년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변동) - 소상공인 성공드림 컨설팅 : 年 37억원(3,000건) 내외	- 경영·특화컨설팅 : 年 21억원 내외(매년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변동) - 소상공인 성공드림 컨설팅 : 年 27억원(1,800건) 내외

지원대상

- 신보의 보증·투자·보험기업 및 경영지도를 희망하는 기업 또는 개인

신청제외 대상

- ▸ 연간 컨설팅 비용 지원금액이 10백만원을 초과하는 기업
- ▸ 각종 인증, 투자유치, 사업계획서 작성, 디자인 개발 의뢰, 시스템 도입(구축) 등 용역성 서비스

지원내용

- 경영컨설팅
  - 경영전략, 인사조직, 마케팅, 재무회계, 생산관리 정보화(IT), ESG 경영 분야에 대한 컨설팅
- 특화컨설팅
  - 기업공개(IPO), M&A, 해외진출, 기술개발·사업화, 가업승계, 지식재산(IP) 등의 분야에 대한 컨설팅
- 데이터컨설팅
  - 신용관리컨설팅(CRC컨설팅), 거래처위험관리컨설팅(CRM컨설팅), BIR컨설팅 등
    - * CRC(Credit Risk Control)컨설팅 : 기업의 신용위험관리 능력을 배양
    - * CRM(Customer Risk Management)컨설팅 : 기업의 거래처 위험관리 능력을 배양
    - * BIR(Business Insight Report)컨설팅 : 보증심사 시 활용한 기업 분석 정보를 보고서로 재구성하여 고객에게 제공함으로써 기업의 데이터 분석 및 활용 능력을 배양
- 소상공인 성공드림 컨설팅
  - 소상공인 제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저금리대환 위탁보증 이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영업상황에 따른 레벨업(경영개선)·체인지업(재도전 지원) 컨설팅 제공
- 지원한도

구 분	지원 비율	최대 지원금
경영·특화컨설팅	60 ~ 100%	최대 10백만원
데이터컨설팅	100%	전액 무료

신청·접수

- (경영·특화/소상공인 성공드림 컨설팅) : 홈페이지(www.kodit.co.kr)-신보On-Biz - 경영지원 - 컨설팅 신청 및 관리

◉ (데이터컨설팅) 영업점 담당자에게 신청 또는 홈페이지에서 신청

심사·평가 주요내용

▸ 컨설팅 분야, 지원 필요성 등을 검토

* 신청순서, 신청사유, 애로사항, 지원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지원 순서 결정

제출서류

◉ 컨설팅 신청서, 고객정보 활용동의서 등

처리절차

신청·접수 → Kick-off 미팅* → 컨설팅 계약 → 컨설팅 진행 → 중간보고 → 결과 브리핑 → 만족도 조사 → 사후관리

* Kick-off 미팅 : 기업, 컨설턴트, PM이 대면하여 컨설팅 방향 및 과업 범위, 진행일정, 컨설팅 비용 등을 협의하기 위한 미팅

지원규모

◉ (경영·특화컨설팅) 年 21억원 내외(매년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변동)

* '25년 지원현황(11월말) : 경영컨설팅 430건, 특화컨설팅 404건

◉ (소상공인 성공드림 컨설팅) 年 27억원(1,800건) 내외

문의처

◉ 신용보증기금 고객지원부

(경영·특화컨설팅) 053-430-4498~4499

(소상공인 성공드림 컨설팅) 053-430-4512, 4514

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z) 선정평가

사업개요

경영혁신 활동을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갖춘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기술, 자금, 판로 등의 연계 지원으로 우수 중소기업으로 육성하는 제도

〈 전년대비 달라지는 내용 〉

구분	'25년	'26년
지원내용	- 비금융 지원 : 컨설팅 비용분담 비율 우대(80% 비용 지원, 4백만원 한도) * 메인비즈협회에서 인정한 '혁신역량 우수기업'의 경우 컨설팅비용 90%까지 지원	- 비금융 지원 : 컨설팅 비용분담 비율 우대(90% 비용 지원, 4백만원 한도) * 메인비즈협회에서 인정한 '혁신역량 우수기업'의 경우 컨설팅비용 100%까지 지원

지원대상

- 신청자격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업력 3년 이상인 기업
- 유효기간 : 선정일로부터 3년

신청제외 대상

- 게임, 도박, 사행성, 불건전 소비업종
- 연체, 국세체납 등으로 인하여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 〈별표 1〉 신용정보관리기준 3. 신용도판단정보, 5. 공공정보의 1) 체납정보 등"에 등록 중인 기업
- 어음교환소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기업
- 파산, 회생절차개시, 개인회생절차 개시 신청이 있거나 청산에 들어간 기업(단, 회생의 경우 법원의 회생인가결정을 받은 후 법원에 제출한 회생계획안 또는 변제계획안의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을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업체는 예외)
-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재무상태표 기준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기업
-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재무상태표 기준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기업

지원내용

◉ 금융 지원

- (보증료율 차감) 0.1%p ~ 0.2%p(우수 경영혁신형 기업)
- (부분보증비율 우대) 85% ~ 90%(우수 경영혁신형 기업)
- (보험료율 할인) 매출채권보험료 5% 할인
- (협약보험 가입 시) 보험료율 15% 할인, 보험인수비율 최대 85%
- (금융지원 협약보증 운용) 은행별 지원내용 상이

◉ 비금융 지원

- 컨설팅 비용분담 비율 우대(90% 비용 지원, 4백만원 한도)

* 메인비즈협회에서 인정한 '혁신역량 우수기업'의 경우 컨설팅비용 100%까지 지원

신청·접수

◉ 신청방법 : 메인비즈 홈페이지(www.smes.go.kr/mainbiz)에서 온라인 신청

◉ 제출서류 : 법인등기부등본(해당 시), 사업자등록증 사본, 재무자료 등

- 선정평가 : 신청기업을 방문하여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평가지표'에 따라 평가하여 평가 결과 700점 이상인 기업을 메인비즈로 선정
- 평가수수료(기업 부담) : 신규 55만원, 연장 44만원 / 부가세 포함

심사·평가 주요내용

▸ 공정, 마케팅, 조직 부문에 있어 경영혁신 활동 및 성과를 평가

- 추진절차

신청 및 온라인 자가진단	→	현장평가 신청	→	현장평가 수행	→	메인비즈 선정 및 확인서 발급
신청기업		자가진단 점수 600점 이상인 경우 신청		신보가 신청기업 방문하여 평가		평가결과 700점 이상인 경우 선정

문의처

- 신용보증기금 고객지원부 : 053-430-4511
- 한국경영혁신형중소기업협회 : 1666-5001

용어 설명

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z) : 제품 및 공정 중심의 기술혁신과 달리 마케팅, 조직혁신 등 비기술 분야의 경영혁신 활동을 수행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 경영혁신 활동을 수행하여 혁신성과를 얻고 있는 중소기업

기업연수 및 경영정보 제공

사업개요

중소기업 임직원의 실무역량 및 경영환경 변화 대응력 강화를 위한 맞춤형 기업연수 실시 및 시의성 높은 경영정보를 타켓형으로 제공하여 중소기업 역량을 제고

지원대상

- 연수를 희망하는 중소·중견기업 임직원

지원내용

- 경영환경 변화 대응에 필요한 기업 맞춤형 기업연수 실시
  - (혁신성장기업) 해외진출, 디지털 전환 등 혁신주도형 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컨설팅과 연계한 연수 과정 지원
  - (일자리창출기업) 잡매칭 사업과 연계하여 인재 고용 등 국가 경제 성장에 이바지하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연수 제공
  - (ESG도입기업) 중소기업의 ESG경영 실천을 통한 지속가능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실무 중심의 연수프로그램 운영

구 분	연수 내용	횟 수*
오프라인 연수	각 기업별 특성에 따라 집합연수 실시	5회
온라인 연수	기업연수 접근성 제고를 위한 비대면 연수프로그램 제공	5회
사이버 연수	비즈니스 가이드 및 경영자 아카데미를 활용한 자율선택형 연수 지원	연중 수시

* 연수 횟수는 변동 가능

- 다양한 경영정보 제공으로 중소기업 경영역량 제고
  - (경영자아카데미) 중소기업 경영자의 경영역량 강화 지원을 위한 CEO인터뷰, 리더십 강의, 경영 트렌드 정보 등을 무료 제공
  - (비즈니스가이드) 중소기업 직원의 실무역량 향상을 위한 ESG 경영, 인사·노무, 경영, 회계·세무 등 다양한 분야의 연수 콘텐츠 무료 제공
  - (뉴스레터·CEO리포트) 중소기업 경영에 도움이 되는 신용보증 정책, 칼럼 등 경영지원 관련 정보를 온라인으로 매월 제공

신청·접수

- 연수 신청방법
  - 신보 홈페이지(www.kodit.co.kr) → 신보On-Biz → 경영지원 → 기업연수 → 집합연수
- 경영정보 이용방법 :
  - 신보 홈페이지(www.kodit.co.kr) → 신보On-Biz → 경영지원 → 기업연수(비즈니스가이드) or 경영자아카데미

문의처

- 신용보증기금 고객지원부 : 053-430-4514

중소·중견기업팩토링

사업개요

- 신보가 매출채권을 매입하면서 판매기업에 자금을 선지급(Factoring)하고, 결제기일에 구매기업으로부터 거래대금을 회수하는 금융상품
- 구매기업이 대금을 상환하지 않더라도 판매기업에 책임을 묻지 않는 상환청구권 없는 방식으로 기업의 연쇄도산 리스크를 해소

〈 전년대비 달라지는 내용 〉

구분	'25년	'26년
지원규모	2,000억원 규모	2,500억원 규모

지원대상

구 분	대상요건
판매기업	원활한 물품 및 용역 제공이 가능한 중소·중견기업 (매출액 3,000억 미만)
구매기업	외부감사 대상기업
매출채권	결제기일이 30일 이상 90일 이내인 과세대상 매출채권

신청제외 대상

- 구매기업과의 거래기간이 6개월 미만인 판매기업
- 구매기업과 관계기업인 판매기업
- 건설업, 면세사업자, 해외소재기업 등

지원내용

- 지원한도
  (판매기업) 최고한도 100억원, (구매기업) 최고한도 50억원 거래규모, 신용등급 등에 따라 최고한도 이내에서 기업별 한도 차등 운용
- 지원효과

구 분	효 과		
구매기업	신규 결제수단	금융비용 無	보증료 차감 등
판매기업	금융비용 절감	신속한 현금화	상환청구권 無

신청·접수

- 신규 고객은 팩토링 전담팀을 통한 유선상담
- 신용보증기금과 거래중인 기업은 거래 영업점으로 문의 가능

심사·평가 주요내용

- 대표자 경영능력, 제품·서비스 경쟁력, 신용도, 미래성장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

제출서류

- 고객정보활용동의서, 기업 재무자료(재무상태표 등), 주주명부 등

처리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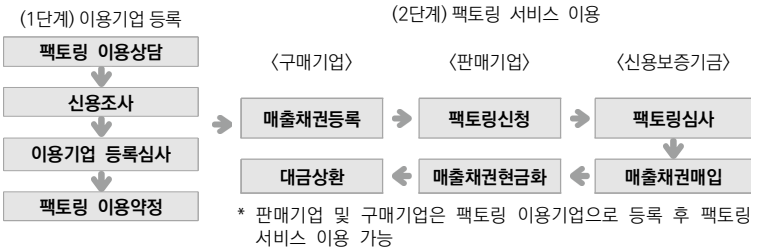

* 판매기업 및 구매기업은 팩토링 이용기업으로 등록 후 팩토링 서비스 이용 가능

지원규모

- '26년 2,500억원 규모의 팩토링 공급 예정
  - * '25년 지원현황 (11월말기준) : 1,982억원

문의처

- 신용보증기금 스케일업금융센터 팩토링전담팀 : 02-710-4568, 4634
  대전금융허브센터 팩토링전담팀 : 042-865-2831
- 신용보증기금 1588-6565 (홈페이지: www.kodit.co.kr)

Q&A

Q **안심거래플랫폼 이용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A 신용보증기금 홈페이지 내 안심거래플랫폼(www.kodit.co.kr/safe)으로 접속하시면 서류제출부터 약정 및 팩토링 신청까지 비대면 이용이 가능합니다. 보다 자세한 상품 안내도 보실 수 있습니다.

※ 단, 공동인증서(사업자용, 대표이사 개인용) 필요

녹색 공정전환 보증

사업개요

온실가스 감축 등 기업이 탄소중립에 필요한 자금의 대출에 대하여 보증한도, 보증비율, 보증료율 등 지원조건 우대를 통해 중소·중견기업의 탄소중립 이행노력을 지원

〈 전년대비 달라지는 내용 〉

구분	'25년	'26년
지원내용	- 보증비율 : 95%(전액해지 시설자금은 100%) - 보증료율 : 산출보증료에서 0.2~0.3%p 차감 또는 고정요율(0.5%) 적용	- 보증비율 : 90%(전액해지 시설자금은 100%) - 보증료율 : 산출보증료에서 0.3~0.5%p 차감 또는 고정요율(0.5%) 적용
지원규모	'25년도 연간 7,200억원 지원	'26년도 연간 6,500억원 지원(예정)

지원대상

-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는 저탄소 사업전환 기업, 저탄소 기술혁신 기업 등을 중심으로 지원

구 분	주요 내용
저탄소 사업전환 기업	· 저탄소 설비 도입, 공정 개선, 에너지 효율화 등 추진기업
저탄소 기술혁신 기업	· 친환경 분야 제품·기술 생산 또는 개발 기업
저탄소 프로젝트 기업	·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영위하거나 K-RE100 참여 또는 친환경 운송수단 도입 기업

신청제외 대상

- (보증금지기업) 보증기관에서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무 미상환 기업 등
- (보증제한기업) 휴업 중 기업, 신용관리정보 보유기업, 대출금의 빈번한 연체 기업 등

지원내용

◉ 지원분야

- 온실가스 저감시설 도입에 소요되는 시설자금
- 저탄소·친환경 제품 및 기술의 생산확대 등에 필요한 운전·시설자금

◉ 보증한도

- 신용등급별 최고보증한도는 중소기업 100억원, 중견기업 200억원

◉ 보증비율

- 90%(전액해지 시설자금은 100%)

◉ 보증료율

- 산출보증료에서 0.3~0.5%p 차감 또는 고정요율(0.5%) 적용

신청·접수

◉ 고객이 직접 필요자금에 대한 보증상담을 신청

- 영업점 방문, 유선 신청 또는 신용보증기금 홈페이지 (www.kodit.c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심사·평가 주요내용

- 보증 신청기업의 신용평가 외에 온실가스 감축량* 평가를 추가하여 보증심사에 반영

* 생산공정이나 제품·기술의 에너지(전기·연료) 사용량 등의 절감효과

제출서류

- 고객의 사전동의를 거쳐 전자적 방식 등을 통해 신보가 직접 수집
  - 신보가 직접 수집이 불가한 자료(사업계획서, 온실가스 감축 추진 계획서 등)에 한하여 고객이 제출

처리절차

신청 및 상담 → 자료수집 및 조사 → 보증심사 및 승인 → 약정 및 보증발급

지원규모

- '26년도 연간 6,500억원 지원(예정)

문의처

- 신용보증기금 혁신성장금융센터 : 053-430-4346, 053-430-4657
- 신용보증기금 1588-6565 (홈페이지: www.kodit.co.kr)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무탄소에너지보증

사업개요

신·재생에너지 및 원전 등 무탄소에너지 관련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여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무탄소에너지 보급 확대 및 관련 산업을 육성

〈 전년대비 달라지는 내용 〉

구분	'25년	'26년
지원내용	- 보증료율 : 산출보증료에서 0.3~0.5%p 차감 또는 고정요율(0.5%) 적용	- 보증료율 : 산출보증료에서 0.3%p 차감 또는 고정요율(0.5%) 적용

지원대상

- 클린테크 산업 영위기업,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K-RE100 참여(희망) 기업

신청제외 대상

- (보증금지기업) 보증기관에서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무 미상환 기업 등
- (보증제한기업) 휴업 중 기업, 신용관리정보 보유기업, 대출금의 빈번한 연체 기업 등

지원내용

- 지원분야
  - 클린테크 산업 영위기업의 사업확장 등에 소요되는 운전 및 시설자금
  -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설치에 필요한 시설자금
  - REC구매, PPA 계약 체결 등 K-RE100 이행에 소요되는 운전자금
- 보증한도
  - 신용등급별 최고보증한도는 중소기업 100억원, 중견기업 200억원
- 보증비율
  - 90% ~ 100%
- 보증료율
  - 산출보증료에서 0.3%p 차감 또는 고정요율(0.5%) 적용

신청·접수

- 고객이 직접 필요자금에 대한 보증상담을 신청
  - 영업점 방문, 유선 신청 또는 신용보증기금 홈페이지 (www.kodit.c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제출서류

- 고객의 사전동의를 거쳐 전자적 방식 등을 통해 신보가 직접 수집
  - 신보가 직접 수집이 불가한 자료에 한하여 고객이 제출

처리절차

신청 및 상담 → 자료수집 및 조사 → 보증심사 및 승인 → 약정 및 보증발급

지원규모

- ’26년도 연간 1,250억원 지원(예정)

문의처

- 신용보증기금 혁신성장금융센터 : 053-430-4347, 053-430-4349
- 신용보증기금 고객센터 1588-6565 (홈페이지: www.kodit.co.kr)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기관별, 월별 지원사업 및 사업공고 현황

◉ 기관명 : 신용보증기금

공고시기	지원사업명	사업공고명	수행기관	대표 연락처
2월 (예정)	유니콘 육성 프로그램	제15기 혁신아이콘 모집	신용보증 기금	02-710-4675 053-430-4367
2월 (예정)	창업기업 육성 플랫폼 (Start-up NEST)	Start-up NEST 제19기 모집	신용보증 기금	053-430-4370
8월 (예정)	유니콘 육성 프로그램	제16기 혁신아이콘 모집	신용보증 기금	02-710-4675 053-430-4367

제 5 부

한국수출입은행

지원사업(전년대비) 달라지는 내용

◉ 기관명 : 한국수출입은행

구분	'25년도	'26년도
첨단전략산업 우대지원 프로그램	ㅇ 지원대상 - 첨단전략 산업 품목*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 * 반도체, 바이오, 미래모빌리티, 배터리, 첨단전기·전자(5대 분야 69개 품목)	ㅇ 지원대상 - 첨단전략 산업 품목*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 * 반도체, 바이오, 미래모빌리티, 배터리, 첨단전기·전자(5대 분야 62개 품목)
환위험관리 지원 프로그램	ㅇ 비금융서비스 - 고객기업 대상 환위험관리 설명회 개최	(삭제)

2025년 수출중소기업 지원제도

수출중소기업의 수출경쟁력 회복 및 해외진출 촉진을 위해 첨단전략산업 우대지원 프로그램, 히든챔피언 프로그램, 상생금융 프로그램 등을 통해 금융지원을 지속 강화

지원내용

- 중소기업 주요 우대프로그램
  - 첨단전략산업 우대지원 프로그램
  - 수출초보기업 및 수출초기기업 육성 프로그램
  - 히든챔피언 프로그램
  - 기술금융 프로그램
  - 상생금융 프로그램
  - 환위험관리 금융·비금융서비스
- 중소기업 주요 금융상품

분 야		상 품 명
대 출	수 출	수출촉진자금, 수출성장자금, 수출이행자금
	수 입	수입자금
	해외사업	해외투자자금, 해외사업자금, 현지법인사업자금, 해외사업활성화자금
보 증	이행성보증	수출이행성보증, 수입이행성보증, 해외사업이행성보증
외국환	수 출	수출환어음매입, 수출팩토링, 포페이팅, 신용장확인
	수 입	수입신용장, 수입팩토링

5-2

첨단전략산업 우대지원 프로그램

첨단전략산업 지원을 통해 우리경제의 新성장동력을 육성하기 위한 금융지원 프로그램

〈 전년대비 달라지는 내용 〉

구분	'25년도	'26년도
지원 대상	반도체, 바이오, 미래모빌리티, 배터리, 첨단전기·전자 등 5대 분야 69개 품목	반도체, 바이오, 미래모빌리티, 배터리, 첨단전기·전자 등 5대 분야 62개 품목 ※ 혁신성장공동기준 개편을 반영한 품목의 병합으로 당행 첨단전략산업 지원범위 변화 없음

지원대상

- 첨단전략산업 품목*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

  * 반도체, 바이오, 미래모빌리티, 배터리, 첨단전기·전자(5대 분야, 62개 품목)

지원내용

- 첨단전략산업 품목에 대한 맞춤형 우대 지원
  - 대출한도 확대(최대 10%p) 및 금리 우대(최대 △1.2%p)
  - 수수료 우대(최대 50%)
  - 금리전환옵션(3년 이상 변동금리 대출 → 고정금리 전환)
  - 대출조건 : 각 여신상품별 지원조건에 따름

처리절차

문의처

- 한국수출입은행 여신총괄부 : 02-3779-6259 / 02-3779-6256
- 지점 및 출장소

- 부산지점 : 051-817-9249
- 창원지점 : 055-287-6843
- 광주지점 : 062-710-7899
- 대전지점 : 042-489-9585
- 수원지점 : 031-259-6605
- 구미출장소 : 054-462-7102
- 원주출장소 : 033-748-0535
- 대구지점 : 053-260-4105
- 울산지점 : 052-274-5285
- 전주지점 : 063-271-6138
- 청주지점 : 043-237-0469
- 인천지점 : 032-235-6102
- 여수출장소 : 061-643-7713

5-3

수출초보기업 및 수출초기기업 육성 프로그램

연간 해외 직수출 5백만불 이하의 수출 초기단계 중소기업에 대한 우대지원을 통해 수출 중견기업으로 육성

지원대상

- 승인신청 직전년도 연간(1월~12월) 직수출 규모가 5백만불 이하인 중소기업

지원내용

- 지원상품 : 수출촉진자금대출, 수출성장자금대출, 수출이행자금대출, 수입자금대출, 해외투자자금대출, 해외사업자금대출, 수출이행성보증, 해외사업이행성보증, 수출입거래 관련 외국환
- 우대사항
  - 대출금리 : 최대 0.3%p 인하
  - 대출한도 : 수출성장자금 대출시 수출실적의 100%까지 한도 확대

처리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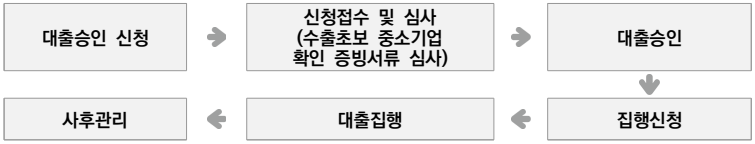

문의처

- 한국수출입은행 여신총괄부 : 02-3779-6253 / 02-3779-6256
  중소중견금융1부 : 02-6252-3416 / 02-6252-3422
- 지점 및 출장소

- 부산지점 : 051-817-9249
- 대구지점 : 053-260-4105
- 창원지점 : 055-287-6843
- 울산지점 : 052-274-5285
- 광주지점 : 062-710-7899
- 전주지점 : 063-271-6138
- 대전지점 : 042-489-9585
- 청주지점 : 043-237-0469
- 수원지점 : 031-259-6605
- 인천지점 : 032-235-6102
- 구미출장소 : 054-462-7102
- 여수출장소 : 061-643-7713
- 원주출장소 : 033-748-0535

5-4

히든챔피언 프로그램

수출 중소중견기업 중 기술력과 성장잠재력을 인정받은 정부인증기업과 각 시도별 선정한 지역주력산업을 영위하는 지역선도기업에 대한 우대지원

지원대상

- 수출 중소중견기업 중 정부인증기업(월드클래스 등) 또는 지역선도기업

실행절차

- 기업 선정 → 맞춤형 서비스 제공
  - 기업 선정
    - * 자격요건 : 직전 회계연도의 매출액이 1조원 미만이면서 수출액 U$10백만 이상이고, 일정 신용등급 이상인 중소중견기업 중 아래 ① 또는 ② 조건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단, 최근 3년 이내 업무상 배임·횡령 등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공정거래법 등 법위반 사실로 판결을 받은 기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① 정부인증기업(월드클래스, 소부장 강소기업 등)
  - ② 지역주력산업 영위 기업중 고용증가기업(고용자수 증가율 3% 이상)
    - * 선정절차 : 연 1회, 자격요건 충족 확인 및 해당 여부에 따라 선정
    - * 선정기간 : 선정일로부터 1년 이내

- 맞춤형 서비스제공

* 금융서비스 : 금리우대 및 대출한도 확대 등 맞춤형 금융 제공
* 비금융서비스 : 환위험설명회, 해외수입자 신용조사 등 기업의 경영활동에 필요한 비금융서비스 제공

문의처

- 한국수출입은행 중소중견금융1부 : 02-6252-3416 / 02-6252-3422

5-5

기술금융 프로그램

담보력은 부족하지만 기술력이 우수한 혁신형 중소기업의 성장 지원 및 개발기술의 사업화 추진을 위하여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의 우수성과 시장성을 평가하여 여신을 지원

지원대상

-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내용

- 중소기업이 기술금융 지원 신청시 적격 기술신용평가기관(TCB)*에 기술신용평가를 의뢰하여 산출한 해당 기업의 기술평가등급으로 신용등급 평가를 대체하거나, 신용등급평가시 기술력을 적극 반영하여 여신지원

  * 적격 기술신용평가기관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기술신용조회업' 인가를 받은 기관 중, 수출입은행이 선정한 공신력 있는 기술신용평가기관, 나이스평가정보, 이크레더블 등)

① 기술신용제도

- 지원대상기업 : 중소기업
- 지원대상거래 : 다음 두 가지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

  * 기술력 평가등급 양호 이상(S,A) & 수출거래 안전성 평가점수* 70점 이상

* 수출이행능력 점수 70점 이상 & 수출거래 안전성* 평가점수 70점 이상
* '차세대 수출거래', '수출초보 중소기업' : 수출거래 안전성 평가점수 60점 이상인 경우에도 지원 가능

- 지원상품 : 수출이행자금대출, 수출성장자금대출
- 우대사항
  * 신용등급평가 생략 가능
  * 정책조정률에 따른 우대금리 제공(최대 0.3%p)

② 기술우대제도

- 지원상품 : 중소기업 대상 모든 여신(대출 및 보증)
- 우대사항 : 신용등급평가시 해당 기업의 기술력 적극 반영

신청·접수

◉ 한국수출입은행 본점, 지점 및 출장소

지원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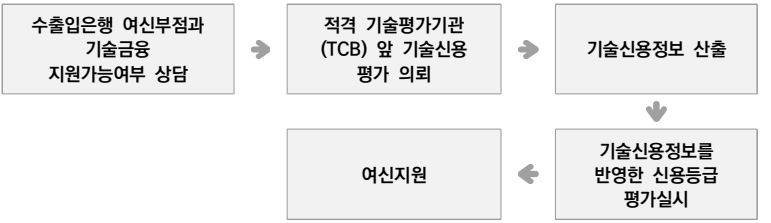

문의처

◉ 한국수출입은행 여신총괄부 : 02-3779-6253 / 02-3779-6256
중소중견금융1부 : 02-6252-3418 / 02-6252-3421

지점 및 출장소

- 부산지점 : 051-817-9249
- 대구지점 : 053-260-4105
- 창원지점 : 055-287-6843
- 울산지점 : 052-274-5285
- 광주지점 : 062-710-7899
- 전주지점 : 063-271-6138
- 대전지점 : 042-489-9585
- 청주지점 : 043-237-0469
- 수원지점 : 031-259-6605
- 인천지점 : 032-235-6102
- 구미출장소 : 054-462-7102
- 여수출장소 : 061-643-7713
- 원주출장소 : 033-748-0535

상생금융 프로그램(해외동반진출 파트너십)

수출입은행과 상생협력약정을 체결한 상생대기업과 해외에 동반진출한 협력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해외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

지원대상

- 상생대기업과 해외에 동반진출한 협력 중소중견기업

지원내용

- 지원상품 : 해외투자자금대출, 현지법인사업자금대출, 해외사업금융보증, 해외사업이행성보증, 수출팩토링
- 우대사항 : 정책조정률을 통한 우대금리 적용
- 대출조건 : 각 여신상품별 지원조건에 따름

신청·접수

- 한국수출입은행 본점, 지점 및 출장소

처리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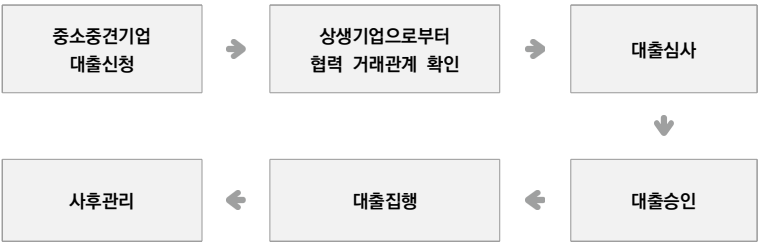

문의처

- 한국수출입은행 중소중견금융1부 : 02-6252-3420 / 02-6252-3429
  중소중견금융2부 : 02-6252-3460 / 02-6252-3458
- 지점 및 출장소

- 부산지점 : 051-817-9249
- 창원지점 : 055-287-6843
- 광주지점 : 062-710-7899
- 대전지점 : 042-489-9585
- 수원지점 : 031-259-6605
- 구미출장소 : 054-462-7102
- 원주출장소 : 033-748-0535
- 대구지점 : 053-260-4105
- 울산지점 : 052-274-5285
- 전주지점 : 063-271-6138
- 청주지점 : 043-237-0469
- 인천지점 : 032-235-6102
- 여수출장소 : 061-643-7713

상생금융 프로그램(상생수출 활성화)

수출입은행과 상생협력약정을 체결한 상생대기업이 추진하는 수출 프로젝트에 지원대상 물품을 공급하는 협력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수출이행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

지원대상

- 상생대기업이 거래관계를 확인한 협력 중소중견기업

지원내용

- 지원대상거래
  - 상생대기업의 현지법인에 지원대상 물품 등을 수출하거나 상생기업 앞 수출물자나 수출용 원자재를 공급하는 거래
  - 상생대기업의 해외수주사업과 관련하여 물품 등을 수출하는 거래
  - 상생대기업 중 공공기관이 법률 및 마케팅 등 경영지원, 정책자금을 지원하는 수출거래와 관련하여 수출물자나 수출용 원자재를 공급하는 거래
- 지원상품 : 수출성장자금대출, 수출이행자금대출, 수출촉진자금대출, 수출이행성보증
- 우대사항 : 정책조정률을 통한 우대금리 적용
- 대출조건 : 각 여신상품별 지원조건에 따름

신청·접수

- 한국수출입은행 본점, 지점 및 출장소

처리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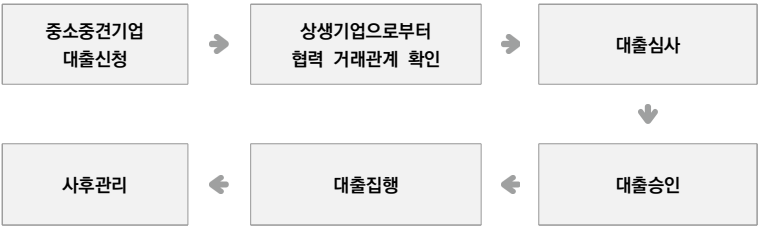

문의처

- 한국수출입은행 중소중견금융1부 : 02-6252-3420 / 02-6252-3429
  중소중견금융2부 : 02-6252-3460 / 02-6252-3457
- 지점 및 출장소

- 부산지점 : 051-817-9249
- 창원지점 : 055-287-6843
- 광주지점 : 062-710-7899
- 대전지점 : 042-489-9585
- 수원지점 : 031-259-6605
- 구미출장소 : 054-462-7102
- 원주출장소 : 033-748-0535
- 대구지점 : 053-260-4105
- 울산지점 : 052-274-5285
- 전주지점 : 063-271-6138
- 청주지점 : 043-237-0469
- 인천지점 : 032-235-6102
- 여수출장소 : 061-643-7713

상생금융 프로그램(상생협력대출)

수출입은행과 상생협력약정을 체결한 상생대기업 앞 수출용 원부자재를 납품하는 협력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수출입은행이 납품대금을 직접 지급함으로써 자금 유동성을 지원

지원대상

- 수출입은행과 상생협약을 체결한 원청 상생대기업
  (실질수혜기업 : 수출용 원부자재를 납품하는 중소중견협력기업)

지원내용

- 지원대상거래
  - 상생대기업에 대한 중소중견협력기업의 수출용 원부자재 등의 납품거래
- 대출조건
  - 대출한도설정금액 : 대출신청전월기준 과거 1년동안 중소중견협력기업의 차주앞 수출용 원부자재 공급실적의 1/2 이내에서 설정
    * 단, 한도설정시 개별대출기간을 1년으로 약정한 경우, 과거 1년간 납품실적 범위내 설정 가능
  - 대출한도사용기간 : 한도설정일로부터 1년
    * 단, 수출목적물의 제작기간이 1년 이상이고 수출입은행과의 거래기간이 2년 이상인 차주의 경우 한도사용기간 2년 가능

- 대출금액 : 중소중견협력기업의 수출용 원부자재 등의 납품거래에서 발생한 금액 중 다음 각 호 중 하나

* 대금 결제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건으로서 차주사가 산정하여 신청한 금액
* 대출승인신청일 직전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주사가 현금결제한 금액

- 대출기간 : 건별 개별대출 취급일로부터 상환기일까지 6개월 단, 차주사의 한도 사용기간이 2년인 경우, 1년 이내 가능

신청·접수

- 한국수출입은행 본점, 지점 및 출장소

처리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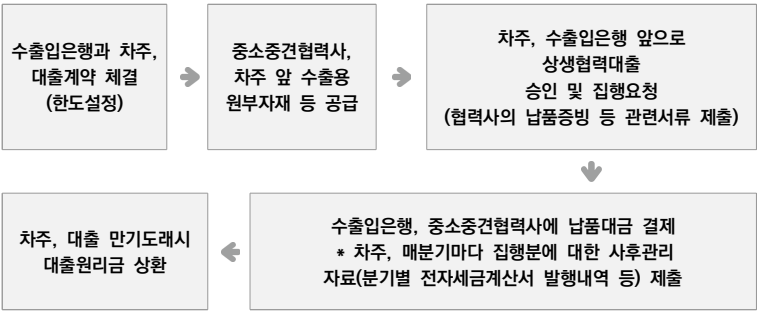

문의처

- 한국수출입은행 중소중견금융1부 : 02-6252-3420 / 02-6252-3429
  해양금융단 : 051-922-8875 / 051-922-8885

5-9

환위험관리 지원 프로그램

중소중견기업의 환위험관리를 지원

〈 전년대비 달라지는 내용 〉

구분	'25년	'26년
비금융서비스	고객기업 대상 환위험관리 설명회 개최	(삭제)

금융서비스

- 통화전환옵션
  - 개요 : 대출 취급 후 대출만기 1개월 전까지 대출통화를 '외화 ↔ 원화' 또는 '외화 ↔ 여타 외화'로 전환할 수 있는 선택권을 무상으로 부여
  - 실행절차

약정체결 (대출 승인시점) → 대출집행 → 통화전환 요청 (만기 1개월전까지) → 옵션행사 통화전환 → 대출상환 (전환통화)

해외투자정보

- 국제지역정보 : 해외진출에 필요한 주요 신흥국의 경제, 산업 및 투자환경 등의 정보 제공

- 산업경제정보 : 조선, 플랜트, 신재생에너지, IT, 서비스산업 등에 대한 산업정보 제공
- 해외투자통계 : 우리기업의 해외투자 현황 제공

  * 관련 정보는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홈페이지(keri.koreaexim.go.kr) 게시

문의처

- 금융서비스 : 한국수출입은행 본점, 지점 및 출장소
- 해외투자정보 :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02-6252-3591)

제 6 부

한국무역보험공사

국외기업 신용조사 서비스

수출기업이 의뢰한 국외기업에 대한 신용정보를 해외신용조사기관 등에 의뢰하여 입수한 후, 이를 근거로 공사 평가 기준에 따라 신용등급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신용조사 보고서로 제공

제도개요

- K-SURE의 해외지사 및 전 세계 신용조사기관을 통해 정보를 조사한 후 신청인에게 신용조사 보고서를 제공하는 서비스
- 신용조사 서비스를 이용하는 수출기업은 공사가 제공하는 신용조사보고서를 통해 국외기업의 기본정보, 재무현황, 경영성과 등을 확인

〈신용조사 보고서 종류〉

보고서 종류	정보제공 내역	목 적
요약보고서	재무정보, 주주현황, 관계회사 등 기업정보, 국가정보, 신용평가결과(등급) 등	정보 수집 및 무역보험 이용을 위한 등급 책정
Full Report	공사 요약보고서, 해외조사기관 조사보고서 원본(영문)	상세 정보 수집

유의사항

- 국외기업 신용조사는 통상 2주 내외 정도 소요되며, 현지 사정에 따라 조사 거절, 불가, 지연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일정상 여유있게 신청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공사의 신용조사 서비스는 신청기업이 의뢰한 수입자의 신용도를 조사, 평가하는 서비스로서 해당 수입자 명의로 체결한 수출입 계약의 진위 여부 확인은 서비스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접수

- 공사 홈페이지(www.ksure.or.kr) 회원가입 후 온라인 신청

이용절차

- 신용조사 신청 → 조사 및 평가 → 보고서 조회 → 수수료 납부의 순서로 이용

① 국외기업 신용조사 신청 (이용기업 → K-SURE)

- K-SURE DB에 수입자 정보가 없는 경우 수입자 신용조사 의뢰 (K-SURE ON)

☞ 수입자의 상호, 연락처, 주소, 담당자 등 정확한 정보 입력 필요

☞ 수수료 납부방법 선택(가상계좌 입금, 신용카드 등)

② 해외 신용조사기관 앞 조사 의뢰 및 조사보고서 접수 (K-SURE ↔ 해외기관)

- 약 2~3주간 현지 신용조사 후 조사보고서 접수

③ 신용평가 실시 및 보고서 발송 (K-SURE → 이용기업)

- 신용평가 실시
- 요약보고서(등급 포함) 자동 발송 (신청자 이메일)

☞ Full Report는 K-SURE ON에서 직접 조회

④ 수수료 납부(후불제) (이용기업 → K-SURE)

- 신청시 선택한 납부방법에 따라 납부

수수료

〈신용조사 수수료 : 중소중견기업〉

보고서종류	가격(VAT 포함)		
	일반조사	재무제표미비*	신용조사불가자 or 장기소요(40일초과)
요약보고서	33,000원	22,000원	면제
Full Report	49,500원	33,000원	면제

* 주요 재무정보만 있는 경우도 포함

** 공사는 고객의 원활한 대외거래를 지원하기 위해 상당 규모의 조사비용을 자체적으로 부담하고 있음

〈수수료 청구 및 납부 방법〉

수납 방식	청구방법	납부
가상계좌입금	당월 중 조사완료건 전체에 대한 수수료 일괄 청구 및 세금계산서 발행 ☞ 조사 완료일의 다음달 첫영업일 ☞ 마스터대표사용자 및 신청자에게 이메일로 발송되며, 모든 사용자가 K-SURE ON에서 조회 가능	일괄 납부 ☞ 조사 완료일 익월 27일
신용카드	조사완료시 건별 납부안내	건별 납부 ☞ 조사 완료일 당월 말일까지

문의처

- 무역보험공사 : 1588-3884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수출신용보증(선적전)

수출기업이 수출물품을 제조, 가공하거나 조달할 수 있도록 외국환은행, 수출유관기관 등으로부터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을 때 공사가 연대보증

지원대상

- 신용상의 문제가 없는 수출기업

지원분야

- 무역금융 및 관련 지급보증, 완제품 내국 신용장(Local L/C)개설
- 무역협회 무역기금
- 수출입은행 수출성장자금 및 수출이행자금 대출
- 수출용원자재 수입신용장 개설(내국수입유산스 신용장개설 포함)
- 기타 공사가 인정하는 자금 대출

지원내용

- 수출기업이 수출물품을 제조·가공하거나 조달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을 때 무역보험공사가 연대보증 → 수출기업이 자체담보 제공 없이 수출이행 자금대출 가능

신청·접수

- 무역보험공사 각 영업점

보증방법

- 회전보증 : 근보증, Revolving방식
- 개별보증 : 개별 신용장기준 수시보증

신청서류

- 청약서, 상사현황표, 금융기관거래상황확인서, 수출실적확인서, 재무제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고객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주주현황표, 법인인감증명서, 임차계약서 등
- 신청양식은 홈페이지(www.ksure.or.kr) '신청서류 - 보험보증 청약 - 수출신용보증'에서 다운로드

보증절차

- 신용보증 청약 → 신용보증 한도심사 → 보증약정 체결 → 보증료 납부 → 보증서 발급 → 신용보증부 대출

문의처

- 무역보험공사 : 1588-3884
- 전화상담은 국번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수출신용보증(선적후)

금융기관이 수출신용보증서를 담보로 하여 수출거래와 관련한 환어음 또는 선적서류를 매입하는 방법으로 수출기업에게 대출한 후, 그 대출금이 상환되지 않을 경우 무역보험공사가 대지급

지원대상

- 신용상의 문제가 없는 수출기업

지원분야

- 수출대금 결제기간 2년 이내 수출거래

지원내용

- 수출기업이 외상 수출 결제일 전에 수출대금을 조기에 회수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공사 단기수출보험 연계가입을 통해 수입자 미결제로 인한 보증사고 발생 시 수출기업의 피해 방지*

  * 수입자 미결제로 인한 보증사고 및 대위변제 시 공사가 수출자 앞 가지는 구상채권은 연계 단기수출보험 지급보험금으로 상계처리

신청·접수

- 무역보험공사 각 영업점

신청서류

- 청약서, 상사현황표, 금융기관거래상황확인서, 거래현황표, 수출거래실적 증명서, 수출실적확인서, 재무제표, 주주현황표, 법인인감증명서 등
  * 신청양식은 홈페이지(www.ksure.or.kr) '신청서류 - 보험보증청약 - 수출신용보증'에서 다운로드

처리절차

- 수출자·수입자 신용조사 및 평가 → 신용보증 청약 → 보증한도 책정 → 보증약정체결 → 보증서 발급 → 대출통지(기업⇒공사) → 보증료 및 보험료 납부(기업⇒공사) → 신용보증부 대출

문의처

- 무역보험공사 : 1588-3884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수출신용보증(매입)

금융기관이 수출신용보증서를 담보로 하여 수출거래와 관련한 환어음 또는 선적서류를 매입하는 방법으로 수출기업에게 대출한 후, 그 대출금이 상환되지 않을 경우 무역보험공사가 대지급

지원대상

- 신용상의 문제가 없는 수출기업

지원분야

- 수출대금 결제기간 1년 이내 통관 및 비통관* 수출거래

  * 수출신용보증(매입) 약관 제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거래

지원내용

- 수출기업이 외상 수출 결제일 전에 수출대금을 조기에 회수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수출기업의 편의를 위해 이용절차를 간소화*하고 담보력을 높인 보증 상품

  * 수출기업 수출통지 생략 및 연간 보증료 1회 선납

신청·접수

- 무역보험공사 각 영업점

신청서류

- 청약서, 상사현황표, 금융기관거래상황확인서, 수출거래실적 증명서, 수출실적확인서, 재무제표, 주주현황표, 법인인감증명서 등
  - * 신청양식은 홈페이지(www.ksure.or.kr) '신청서류 - 보험보증청약 - 수출신용보증'에서 다운로드

처리절차

- 수출자·수입자 신용조사 및 평가 → 신용보증 청약 → 보증한도 책정 → 보증료 납부 및 보증약정체결 → 보증서 발급 → 선적서류 매입

문의처

- 무역보험공사 : 1588-3884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수출신용보증(포괄매입)

금융기관이 수입자 구분 없이 수출신용보증서를 담보로 하여 수출거래와 관련한 선적서류를 매입하는 방법으로 수출기업에게 대출한 후, 그 대출금이 상환되지 않을 경우 무역보험공사가 대지급

지원대상

- 신용상의 문제가 없는 수출기업
- 대출기간 180일 이내 통관 및 비통관* 수출거래

  * 수출신용보증(포괄매입) 약관 제2조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거래

지원내용

- 수출기업이 모든 수입자와의 외상 수출거래 시 결제일 전에 수출대금을 조기에 회수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수출기업의 편의를 위해 이용절차를 간소화*하고 담보력을 높인 보증 상품

  * 수입자 신용조사 생략, 제출서류 간소화 및 보증료 인하

신청·접수

- 무역보험공사 각 영업점

신청서류

- 청약서, 사업장 및 연대보증인 현황, 주주현황표, 고객정보이용 조회동의서, 법인인감증명서 등
  - * 신청양식은 홈페이지(www.ksure.or.kr) '신청서류 - 보험보증청약 - 수출신용보증'에서 다운로드

처리절차

- 수출자 신용평가 → 신용보증 청약 → 보증한도 책정 → 보증료 납부 및 보증약정체결 → 보증서 발급 → 선적서류 매입

문의처

- 무역보험공사 : 1588-3884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단기수출보험(선적후)

수출자가 수출대금의 결제기간 2년 이하의 수출계약을 체결하고 물품을 수출한 후, 수입자(L/C거래의 경우 개설은행)로부터 수출대금을 받을 수 없게 된 때에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

지원대상

- 단기수출보험은 수출자가 수출거래로부터 발생하는 대금미회수 위험 담보
- 단기수출보험은 건전한 수출발전을 도모하는 정책적인 목적으로 수출기업이 보다 안심하고 수출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하며, 특히 대량의 수출거래를 지속적으로 하는 수출기업에 있어서 대금미회수위험에 대한 관리장치로서 중요한 역할 수행

지원분야

- 신용위험 : 수입기업(또는 L/C개설은행)의 지급불능, 지급지체, 수입화물에 대한 인수거절 등
- 비상위험 : 전쟁위험, 송금위험, 환거래 제한 등

지원내용

가입대상 거래

구 분	내 용
일반수출	• 국내에서 외국으로의 수출을 말하며, 국내에서 자체 생산하거나 국내 제조업체로부터 구매한 물품을 수출하는 방식
위탁가공무역	• 해외에 진출한 국내기업의 현지법인이 생산·가공한 물품 또는 제3국 기업에 위탁하여 동국에서 가공한 물품을 제3국에서 수입국으로 직접 선적하는 거래

구 분	내 용
중계무역	• 제3국에서 생산된 물품을 구매하여 제3국에서 수입국으로 직접 선적하는 방식
재 판 매	• 수출자가 해외지사(현지법인 포함)에 물품을 수출하고, 동 해외지사가 당해 물품을 현지 또는 제3국에 재판매하는 거래

운영방식

- 개별보험 : 수출자와 특정 수입자와의 거래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위험을 평가하여 수출보험에 부보하는 방식
- 포괄보험 : 사전에 보험계약자(수출기업)와 보험자(무역보험공사)가 포괄보험 특약을 체결함으로써, 특정상품 또는 결제조건 등 미리 대상 수출거래의 범위를 정하여 의무적으로 수출보험에 가입토록 하고 보험자도 이를 자동적으로 인수하는 방식
- 개별보험과 포괄보험의 장단점

구 분		개 별 보 험	포 괄 보 험
장점	수출자	• 고위험거래에 대해서만 선택적 보험부보 신청 가능	• 고위험거래에 대한 보험부보 용이
	공 사	• 고위험거래에 대한 인수거절 가능	• 위험분산 용이
단점	수출자	• 고위험거래 부보 곤란	• 저위험거래·부보 의무
	공 사	• 위험분산 곤란	• 고위험거래 인수 의무

◉ 인수한도 및 보상한도

구 분	개 별 보 험
인수한도	• 특정 바이어와의 수출거래에 대하여 보험을 이용할 수 있는 최대한도 (최대보험계약 체결 가능한도) ☞ 다만, 예외적으로 수출입자간 수출계약 건별로 보험계약 체결 가능
보상한도	• 포괄보험에 있어서 동일한 수출입자간 거래에 대하여 보상할 수 있는 최대 누적액 ☞ 개별보험에 있어서 인수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보험부보가 불가능하나, 포괄 보험의 경우, 한도 제한 없이 보험관계는 성립되나 사고발생시 보상한도 범위내에서 보상

◉ 보험 조건

구 분	내 용
보험가액	수출대금
부 보 율	• 일반수출, 위탁가공무역 : 중소기업 100%, 중견기업 97.5%, 대기업 95% • 중계무역 : 95% 이내 • 국별인수방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보험금액	보험가액×부보율
지급보험금	손실액×부보율

보 험 료

◉ 보험료는 보험금액에 수입자 신용등급(신용장거래인 경우 신용장 개설은행 소재 국가등급), 결제조건 및 결제기간에 따라 결정

◉ 단기수출보험은 수출자보험으로서 약관의 면책사항에 해당하거나 수출계약이행과정에서 귀책이 있는 경우 보상받을 수 없음

신청·접수

◉ 무역보험공사 각 영업점

신청서류

수출자 평가

- 수출자 신용조사 의뢰서, 고객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사업자등록증사본, 최근3년간 재무제표(감사보고서)
- K-SURE ON(사이버영업점) 미가입 업체의 경우, 마스터 대표 사용자 지정(변경)신청서

수입자 신용평가

- 온라인 신청이므로, 서류제출 필요없음 (K-SURE ON 가입 및 로그인 후, 신용조사신청에서 수입자상호,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등 기재)
- 요약보고서 선택시 수수료 33,000원(부가세 포함)

단기수출보험 청약서

- 사이버수출보험에서 온라인 청약
- 필요시 거래경위서, 수출거래실적증명서 등 첨부 가능

문의처

- 무역보험공사 : 1588-3884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단기수출보험(중소중견Plus+)보험

보험계약자인 수출기업은 연간 보상한도에 대한 보험료를 납부하며, 수입자 위험, 신용장 위험, 수입국 위험 등 보험계약자가 선택한 담보위험으로 손실이 발생할 때 공사는 책임금액 범위 내에서 손실을 보상

지원내용

- 해외 수입자의 수출대금 미지급시 수출 중소중견기업에게 해당 손실 보상
- 1년간 최대 50개 수입자와의 모든 수출거래에 대해 최대 중소기업 150만불, 중견기업 450만불까지 손실 보상(개별 수입자당 최대 U$50만 이내 보상)

담보내용 및 책임한도

담보위험	기본 (필수가입)	무신용장 거래의 신용위험 및 비상위험 신용장 거래의 신용위험 및 비상위험
	선택	클레임 위험[중소기업 限]
책임한도	기본 (필수가입)	중소 최대 150만불 (중견 최대 450만불) [개별 수입자당 최대 U$50만 이내 보상]
	선택	클레임 위험 [최대 5만불]
수 출 자	최근1년간 수출실적 U$50백만 이하의 신용도에 문제가 없는 중소·중견기업	
수 입 자	고위험인수제한국 및 이란 소재, 수입자 R급, 30일 이상 결제지연 제외 [최대 50개사]	

신청·접수

- 무역보험공사 각 영업점

처리절차

- 수출자 신용조사 → 청약서류 제출 → 책임금액·거래수입자 선택 → 한도책정 → 보험료 납부 및 증권 교부

문의처

- 무역보험공사 : 1588-3884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환변동보험

수출, 수입 및 해외투자에 따른 외화획득 또는 대금지급 과정에서 환율변동으로 인한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에 금액을 원화로 확정하여 환율변동의 불확실성 위험을 커버하는 상품

지원대상

- 중소 및 중견 수출입기업

  * 수입의 경우 수출용원자재 등 수입보험 지원대상 물품뿐만 아니라 소재 · 부품 · 장비업체도 지원

지원내용

- 환변동보험은 환율변동의 불확실성으로부터 기업을 보호하는 보험 상품으로, 기업의 영업이익을 사전에 원화로 확정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통화(수출 기준) : USD, JPY, EUR, CNY)
- 시중은행을 통한 환위험 헤지가 어려운 중소수출입기업이 손쉽게 환위험을 관리할 수 있도록 절차 간소화 및 비용부담 축소
- 환변동보험은 기본적으로 환율하락시에는 손실을 보상하지만 환율 상승시에는 이익금을 회수 (수출 일반형 기준)

〈 환변동보험 상품 안내(수출 기준) 〉

구 분	내 용	특 징
일반형 (수출형 기준)	환율 하락시 보험금 지급 환율 상승시 이익금 납부	환율 하락시 환차손을 지급받고, 환율 상승시 환차익을 납부
완전보장 옵션형	환율 하락시 보험금 지급	이익금 납부 없음
부분보장 옵션형	환율 하락시 보험금 지급 (단, 통화당 최대 80원까지 보장)	이익금 납부 없음

* 자세한 상품 설명은 환위험관리 지원센터(www.ksure.or.kr/rh-fx/index.do)에서 확인가능

신청서류

- 인수한도 책정 신청서 및 헤지수요 조사표
- 최근 1년(또는 전년도) 또는 최근 3년간 수출입실적 증명서(무역협회 또는 은행 등 확인)
- 외환파생상품 거래내역확인서 (은행 등 헤지거래기관)
- 사업자 등록증 사본, 법인 인감증명서, 통장사본, 고객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등

* 공사 홈페이지(www.ksure.or.kr)에서 다운로드 가능

처리절차

보험료

일반형	보험료율=기본요율 x (1-중소·중견기업 할인율*)
옵션형	기본 요율(0.005%) + 시장요율(옵션 프리미엄**)

* 중소기업 15%, 중견기업 10% 할인율 적용

** 옵션의 시장가격으로 중소중견기업 할인율 배제

※ 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수산무역협회, 지자체 등에서 환변동보험료 지원사업 시행중 (공사 홈페이지 내에서 세부요건, 지원 내역·절차 확인 가능)

청약 및 결제

- K-SURE ON 홈페이지(on.ksure.or.kr)에서 청약 및 결제신청

문의처

- 무역보험공사 : 1588-3884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Q&A

Q **환변동보험 인수한도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A 수출기업의 경우 최근 1년간(또는 전년도) 수출실적의 최대 100% 범위내에서 수출기업의 신용등급, 실수요 헤지금액 등을 감안하여 책정됩니다.

Q **보장되는 환율과 정산의 기준이 되는 결제환율은 어떻게 결정이 되나요?**

A (보장환율) = 청약일의 시장평균환율 + 기간별 SWAP POINT
(결제환율)
① 결제일 월말지정 = 결제일자의 최초고시 매매기준율
② 결제일 월중지정 = 결제신청일 시장평균환율 + 해당월 최종 영업일까지의 SWAP POINT
③ 조기결제 신청시 = 조기결제신청일의 시장평균환율 + 만기일이 속한 해당 월의 최종영업일까지 SWAP POINT

수입보험(수입자용, 금융기관용, 글로벌공급망)

장기안정적인 확보 또는 적기 수입을 요하는 원유, 원목, 광물, LNG 등 주요자원, 시설재 및 첨단제품 등의 수입거래를 지원하는 제도

지원분야

- 수입자용 : 국내기업이 선급금 지급조건 수입거래에서 비상위험 또는 신용위험으로 인해 선급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 발생하는 손실 보상
- 금융기관용/글로벌공급망 : 금융기관이 수입에 필요한 자금을 수입기업에 대출(지급보증)한 후에 대출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 발생하는 손실 보상

수입 품목

(수입자용, 금융기관용)

- 주요자원(철, 동, 아연, 석탄, 원유) 및 시설재 등

  * 품목 해당 여부는 '한국무역보험공사 홈페이지(www.ksure.or.kr) → 보험종목 → 수입보험 화면 내 대상거래를 통해 확인

(글로벌공급망)

- 소재·부품·장비·뿌리·방위산업 영위업체가 수입하는 물품(사치성 물품 제외)

보상 한도

- 수입자용 : 선급금 비율은 수입계약금액의 30% 이내로 하며, 부보율 100% (중견기업은 97.5%, 대기업은 95%)
- 금융기관용 : 대출(지급보증)원금 + 약정이자
- 글로벌공급망 : 금융기관 손실액의 90%

지원대상

- 수입자용: 선급금 지급후 2년 이내 선적되어야 하는 지원대상물품의 수입거래(중계무역 제외)
  - * 국내 수입자(보험계약자) 공사신용등급 F급 이상 제조업체, 해외 수입계약상대방 공사신용등급 D급 이상
- 금융기관용 : 대출기간 1년 이내의 대출 또는 지급보증 (중계무역 제외)
  - * 국내 수입자(채무자) 공사신용등급 F급 이상
- 글로벌공급망 : 대출기간 1년 이내의 대출 또는 지급보증 (중계무역 제외)
  - * 국내 수입자(채무자) 공사신용등급 E등급 이상의 소재·부품·장비·뿌리산업·방위산업 중소중견 제조기업

신청·접수

- 무역보험공사 국내지사

제출서류

- 수입보험청약서, 상사현황표, 수입실적증명서, 금융거래확인서 등
  - * 한국무역보험공사 홈페이지(www.ksure.or.kr) → 보험종목 → 수입보험 → 신청서류

처리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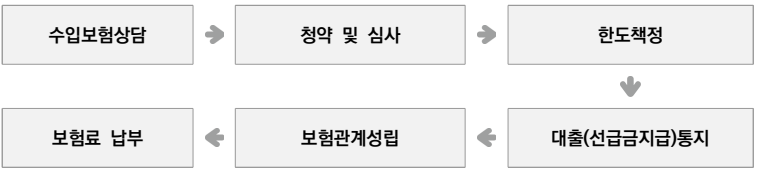

문의처

- 무역보험공사 : 1588-3884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해외채권 회수지원 서비스

무역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기업의 해외 미수채권 회수 지원을 위해 한국무역보험공사는 해외채권 회수컨설팅 및 회수대행 서비스 제공

지원대상

- 해외 거래 후 미수채권 발생 또는 발생이 우려되는 국내기업

신청제외 대상

▸ 채권자의 공사 신용등급이 R등급*, 공사가 청구한 수수료 등 미납 시, 수입관련 선수금, 사인 간 금전거래 채권
* 신용불량 등의 사유로 공사가 책정한 불량등급

지원내용

- 해외채권 회수컨설팅
  - 해외 미수채권 발생 또는 발생이 우려 되는 수출기업에 공사의 채권회수 노하우를 공유하여 자체회수 지원 등 회수컨설팅 서비스 무료 제공

* 채무인정자료 확보, 수입자와의 협상, 클레임 대응방법 등 공사의 축적된 채권 회수 노하우를 수출자에게 제공

- 해외채권 회수대행
  - 공사가 보유한 전세계 110여개 해외채권 추심 네트워크를 활용해 수출기업의 해외 미수채권에 대해 채권회수 대행

- 수수료는 성공불 조건으로, 회수금에 대한 성공수수료* 납부 (법적조치 비용 등 선납 비용 제외)

* 성공수수료 수준은 채무자 소재지 및 추심기관에 따라 상이하나, 추심기관 수수료 약 20%, 공사수수료 2% 내외(부가세 별도)

유의사항

- 추심대행 약관 등에 따라 회수대행 수임이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 소멸시효 완성 건, 수출 물품에 대한 채무자의 클레임 제기 건, 채무자 파산·회생절차 신청이 완료된 건 등

- 해외채권 회수율은 1년만 지나도 급격히 감소하는 점을 감안 조기 회수상담 권장

신청·접수

- 공사 홈페이지 내「해외채권 회수지원 서비스」신청
  - 접속경로 : [한국무역보험공사 홈페이지] - [사업안내] - [해외채권 회수지원 서비스] - [상담신청]
  - 공사 홈페이지(https://www.ksure.or.kr)

신청서류(회수대행)

- 채권추심위임장(공사 홈페이지 다운로드 가능)
- 채권관련 서류
  - 계약서, 선적서류, 환어음, 수출입자간 서신, 기타 참고서류 등
- 채권자 관련서류
  - (법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사용시)
  - (개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신분증, 인감증명서

이용절차

- 해외채권 회수지원 서비스 이용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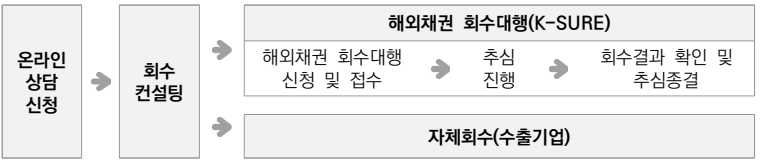

문의처

- 무역보험공사 : 1588-3884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Q&A

Q **채권 회수대행 서비스를 신청할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나요?**

A 공사 해외채권 회수대행 서비스는 채권자로부터 채권추심 권한을 위임받아 추심업무를 수행하는 서비스로 공사의 보험사업과는 무관하며 채권회수를 보장하거나 채권을 매입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Q **회수되기까지 기간이 얼마나 소요되나요?**

A 채권의 예상 회수기간은 채권의 상태와 채무자의 태도에 따라 다릅니다.
짧게는 몇 개월 길게는 수년 동안 진행되며 진행경과에 따라 추심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에는 공사가 위임을 해지할 수도 있습니다.

제 7 부

기업은행

2025년 중소기업대출 지원현황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운전자금 또는 시설자금을 기업의 규모, 형태, 소요자금 한도 내에서 대출을 지원

주요상품

주요 대출상품	상 품 개 요	담당자
스마트동산 담보 대출	• IoT(사물인터넷) 기술로 동산담보 가치를 제고하여 담보력이 부족한 기업에게 대출한도 및 금리를 우대 지원	과장 문지영
IP사업화 자금 대출	• 담보력은 약하나 우수 기술력을 보유한 중소기업에게 IP를 담보로 자금지원	차장 김동선
IBK강소기업대출	• 수출·기술·문화콘텐츠 등의 분야에서 혁신성과 성장 잠재력을 갖춘 우수 중소·중견기업에게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자금 지원	과장 문지영
수출입기업 유동성 지원 자금대출	• 급격한 환율변동에 따른 수출채산성 및 가격경쟁력 악화로 일시적인 자금곤란을 겪고 있는 수출입 중소기업의 원활한 경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자금지원	차장 염창봉
IBK문화콘텐츠 대출	• 문화콘텐츠 관련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에게 당행 특별출연금을 재원으로 신용보증서 등을 담보로 자금을 지원하는 대출상품입니다.	대리 박민지
IBK시설투자대출	• 경상적인 생산 및 영업활동을 위하여 시설투자를 하고자 하는 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과장 황현승
IBK토지분양협약 대출	•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은행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민간 산업단지 시행사가 분양하는 토지의 수분양자에 대하여 "토지분양대금 반환청구권"을 담보로 취득하고 중도금 및 잔금 납부에 필요한 자금 또는 타행 토지분양협약대출의 대환자금을 대출	과장 황현승
중기부R&D 사업화 자금대출	• 중소벤처기업부 추천 R&D 과제 성공기업, 수행기업 및 대표성과기업을 대상으로 사업화 자금지원	과장 박진휘

스마트동산 담보대출

IoT(사물인터넷) 기술로 동산의 담보자산 가치를 제고하여 담보력이 부족한 기업에게 대출한도 및 금리를 우대 지원

지원대상

- 본인 소유의 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제공할 예정인 기업

지원분야

-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

대출한도

- (운전자금) 담보감정평가액의 100% 이내
- (시설자금) 소요시설자금의 최대 90% 이내

대출기간

- 상환방식에 따라 최장 4년 이내

담보운용

- (대상) IoT 디바이스로 관리 가능한 유형자산 및 재고자산
- (주담보) 유형자산 최대 60%, 재고자산 최대 55% 이내 운용

우대사항

- 최대 연 1.0%p 이내 추가 금리감면 가능

문의처

- IBK기업은행 기업고객부 : 02-729-7492

IP사업화자금대출

담보력은 약하나 우수 기술력을 보유한 중소기업에게 IP를 담보로 자금을 지원하는 대출상품

지원대상

- 전문평가기관의 특허기술 가치평가를 받은 우수 IP를 보유한 중소기업으로 '지원대상 점검항목' 및 '기술등급'을 모두 충족한 기업
  - (지원대상 점검항목)

▸ 당행 소기업·소액결제성·중기업 신용평가 기업 중
신용평가등급 A-등급 이상이면서 기술등급 T4이상이거나,
신용평가등급 BBB+등급이면서 기술등급 T3이상이고 빅데이터등급 4이상 기업
단, 혁신기업*은 신용평가등급, 기술등급에 불문하고 지원 가능

* IBK기업은행 평가 전문인력이 기술력 심층심사를 통해 선정

▸ 조기경보기업(예비주의, 주의, 경보)이 아닌 기업

▸ 부채비율 400% 미만 기업

▸ 최근 2년간 계속적인 결손을 시현하지 않은 기업

▸ 총자산 5억원 이상 기업

▸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이자비용) 1배 이상인 기업

▸ 전년도 또는 분기별 과거 1년간 매출액 10억원 이상 기업

지원분야

- 운전자금

대출한도

- (운전자금) 전문평가기관의 특허기술 가치평가금액 이내에서'당행 신용평가등급' 및 'TCB평가서상 기술등급'에 따라 차등 운용

대출기간

- (운전자금) 최대 5년

담보운용

- 특허기술 가치평가금액의 40%를 주담보로 인정

우대사항

- 특허기술 가치평가 비용(500만원)지원
- 최대 연 1.0%p 이내 추가 금리감면 가능

문의처

- IBK기업은행 혁신금융부 : 02-729-3763

IBK강소기업대출

수출·기술·문화콘텐츠 등의 분야에서 혁신성과 성장 잠재력을 갖춘 우수 중소·중견기업에게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자금을 지원하는 대출상품

지원대상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중소 또는 중견기업

부 문	대 상 기 업
수 출	1. 수출실적이 USD 1,000,000불(연간) 이상인 수출기업 2. 상기 요건 충족기업으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 수출강소기업(IBK), 글로벌 강소기업(중기부), 월드클래스 300 프로젝트 대상기업(중기부), 코스닥 라이징스타(KRX), 글로벌 전문기업(산업부), AEO 공인획득기업(관세청), 세계일류상품 육성사업' 지원대상 기업(KOTRA)
기 술	IBK강소기업 등 우수 기술력 보유기업
문화콘텐츠	'문화콘텐츠강소기업'(IBK)

지원분야

- 운전자금, 시설자금

대출기간

- (운전자금) 5년 이내로 운용
- (시설자금) 일시상환 3년 이내, 분할상환 15년 이내로 운용

문의처

- IBK기업은행 기업고객부 : 02-729-7492

수출입기업유동성 지원자금대출

급격한 환율변동에 따른 수출채산성 및 가격경쟁력 악화로 일시적인 자금곤란을 겪고 있는 수출입 중소기업의 원활한 경영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대출상품

지원대상

- 환율변동으로 일시적인 자금곤란을 겪고 있는 수출입 중소기업

지원내용

구 분	내 용
자금용도	수입결제자금, 수출물품의 원자재구입 및 생산에 소요되는 자금 등
대출과목	중소기업자금대출
대출기간	1년 이내. 다만, 분할상환식 신용보증서(부분신용보증서 포함) 담보대출의 경우 보증기관에서 정한 대출기간 범위 이내
대출한도	동일인당 5억원 이내(본부 승인여신은 승인금액 범위 내)

문의처

- IBK기업은행 기업고객부 : 02-729-7494

IBK문화콘텐츠대출

문화콘텐츠 관련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에게 당행 특별출연금을 재원으로 신용보증서 등을 담보로 자금을 지원하는 대출상품

1. IBK문화콘텐츠대출

지원대상

- ‘문화콘텐츠 업무협약에 의한 문화콘텐츠 산업분류코드’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중 보증기금으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은 기업

① K콘텐츠 혁신성장 협약보증서를 발급받은 기업
② 문화산업 정책보증서를 발급받은 기업
③ 콘텐츠 크리에이터 협약보증서를 발급받은 기업

지원규모

- 1,600억원(보증지원 한도 기준)

판매기간

- 보증한도 소진 시까지

대출한도

- 신용보증서상 대출금액 범위 내

2. IBK문화콘텐츠 완성보증부대출

지원대상

-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추천위원회로부터 융자를 추천 받고 보증기금으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은 중소기업

지원분야

- 운전자금 (수시로대출 제외)

대출기간

- 신용보증서 보증기간 범위 내

대출한도

- 신용보증서상 대출금액으로 최대 50억원 이내

문의처

- IBK기업은행 기업고객부 : 02-729-7111

IBK시설투자대출

기업의 경상적인 영업활동 및 시설투자에 필요한 소요자금을 지원하는 대출

대출대상

- 경상적인 생산 및 영업활동 등을 위하여 시설자금을 받고자 하는 기업

지원내용

- 기업의 경상적인 생산 및 영업활동을 위하여 시설투자를 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장부지자금, 사업장매입자금, 경락부동산자금, 건물자금, 기계자금, 수입기계자금, 사업장임차자금을 지원하는 대출

- 사업장부지자금 : 자가사업장 마련을 위하여 대출취급일로부터 1년 이내에 건물 착공이 가능한 부지구입(분양포함)자금(토지정리비 및 토지조성비 포함)
- 사업장매입자금 : 기존 사업장의 매입자금 및 건설·분양중인 사업장(아파트형공장 포함)이 분양자금
- 경락부동산자금 : 법원(한국자산관리공사 포함), 경매(공매 포함), 부동산(기계기구, 설비 및 준부동산 포함) 매입자금
- 건물자금 : 건물(구축물 포함)의 신축 및 증·개축과 기타 이에 준하는 수선 또는 변경 등을 위한 개·보수자금

- 기계자금 : 기계자금(중고 기계기구 포함), 설비 및 준부동산의 구입 및 설치자금
- 수입기계자금 : 국외에서 기계기구, 설비 및 준부동산을 신용장방식(D/P, D/A포함) 또는 송금방식으로 수입·결제하고자 하는 자금. 다만, 수출입공고에서 관련부처장관이 수입제한품목으로 고시한 품목은 제외
- 사업장임차자금 :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통해 사업장을 임차(대출취급일로부터 1월 이내에 임차사업장 입주가 가능한 경우를 말함)하는 자금

융자조건

- 융자범위 : 소요시설자금의 80% 이내
- 대출기간 : 최장 15년(단, 사업장임차자금은 3년 이내에서 계약기간 범위 내)
- 상환방법 : 분할상환 또는 일시상환

문의처

- IBK기업은행 기업고객부 : 02-6322-5205

IBK토지분양협약대출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은행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민간 산업단지 시행사가 분양하는 토지의 수분양자에 대하여 "토지분양대금 반환청구권"을 담보로 취득하고 중도금 및 잔금 납부에 필요한 자금 또는 타행 토지분양협약대출의 대환자금을 대출하는 여신상품

대출대상

- IBK기업은행과 협약을 체결한 분양기관 또는 시행사가 공급하는 토지를 분양(전매포함)받고, 총 분양금액(계약금 포함)중 분양기관별 소정비율 이상을 납부하여 동 분양기관으로부터 대출추천을 받은 중소·중견기업

대출한도

- 토지분양대금의 80% 이내

지원내용

구 분	내 용
대출과목	• 기업 : 중소기업시설자금대출, 일반시설자금대출
대출기간	• 기업 : 15년 이내 * 일시상환방식 : 3년 이내
대출한도	• 토지분양대금의 80% 이내로 분양기관 추천서상 추천금액 이내 • 본부승인을 받은 경우, 본부 승인금액 이내

유의사항

- IBK기업은행과 토지분양협약대출을 지원하기 위해 업무 협약을 체결한 분양기관 또는 시행사를 제외하고는 토지분양협약대출 지원이 불가함에 유의

문의처

- IBK기업은행 기업고객부 : 02-6322-5205

중기부 R&D 사업화자금대출

기술력 우수 기업 지원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천한 R&D 과제 성공기업, 수행기업 및 대표성과기업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는 대출상품

지원대상

-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천한 R&D 과제 성공기업, 수행기업 및 대표성과기업

지원분야

-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

대출한도

- 동일인당 연간 50억원 이내

대출기간

- (운전자금) 5년 이내로 운용
- (시설자금) 일시상환 3년 이내, 분할상환 15년 이내로 운용

우대사항

- 최대 연 1.3%p 이내 금리감면 가능

문의처

- IBK기업은행 기업고객부 : 02-729-7661

제8부

한국산업은행

온렌딩대출

사업개요

산업은행이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은행 및 여신전문금융회사를 통하여 장기·저리의 자금을 공급하는 정책자금 대출상품

지원대상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으로 ▹ 금융감독원 표준신용등급체계상 6~11등급에 해당하는 기업
중견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상 중견기업으로 ▹ 금융감독원 표준신용등급체계상 7~11등급에 해당하는 기업

신청제외 대상

- 중개금융기관 자산건전성 기준 요주의 이하 기업
- 한국신용정보원「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해 신용도판단정보 및 공공정보가 등록된 기업(대표자, 회사지분의 30% 이상 보유자 중 최대주주 포함)
- 비영리법인 및 단체, 조합, 협회
- 온렌딩 취급제한업종 영위기업 등
- 기타 정책금융 지원 취지에 부적합한 목적(임대용 부동산 등)의 경우 취급제한 가능

지원내용

◉ 지원 대상 분야

구분	중소기업	중견기업
원화일반 온렌딩	• 시설/운영자금 지원	-
특별온렌딩	• 시설/운영자금 지원 • 원화일반온렌딩 지원대상에 해당함과 동시에 아래의 조건 중 하나이상 충족하는 중소기업에 금리우대 또는 대출한도 추가 - 신산업육성 - 수출기업우대 - 소부장·첨단전략산업 - 창업·벤처기업 - 산업전환 지원 - 탄소중립 지원 - 지역경제활성화(지방소재) - 지방은행 우대 - 일자리 창출기업	• 시설/운영자금 지원 • 원화일반온렌딩 지원대상에 해당함과 동시에 아래의 조건 중 하나이상 충족하는 중견기업에 금리우대 또는 대출한도 추가 - 수출기업우대 - 소부장·첨단전략산업 - 지역경제활성화(지방소재)
리스 자금 온렌딩	• 원화일반온렌딩 지원대상에 해당함과 동시에 금융리스 방식을 통해 기계 설비 등(리스물건이 승용차인 경우 제외)을 도입할 소요자금 지원	-
외화자금 온렌딩	• 시설/운영자금 지원 • 자금용도 - 해외사용 실수요 목적 시설 및 운영자금	-

◉ 대출한도

구분	일반온렌딩	특별온렌딩
중소기업	100억원	200억원
중견기업	-	300억원

※ 신산업육성, 수출기업우대, 창업·벤처기업지원 등 상품별 지원 요건은 거래하고자 하는 중개금융기관(시중은행 및 여신전문금융회사)앞 문의

※ 기업별 총 온렌딩대출한도(중소기업 200억원, 중견기업 300억원)는 초과 불가

신청 · 접수

- 신청기간 : 연중 상시(한도 소진시까지)
- 신청방법 : 산업은행 방문 없이 은행 및 여신전문금융회사 영업점(중개금융기관)을 방문하여 신청

  * '26년도 온렌딩대출 취급 가능 중개금융기관
    - 은행 : 중소기업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아이엠뱅크,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농협은행, 수협은행
    - 여신전문금융회사 : 현대커머셜, 우리금융캐피탈, 애큐온캐피탈, 한국캐피탈, 아이엠캐피탈

문의처

- 한국산업은행 간접투융자금융실 : 02-787-0570
  - 단, 온렌딩대출 지원 가능 여부는 거래하시는 중개금융기관(은행, 여전사)의 영업점에서 확인하실 수 있음
- 한국산업은행 온렌딩금융 플랫폼(onlending.kdb.co.kr)
- 한국산업은행 홈페이지(www.kdb.co.kr) → 기업금융정보 → 온렌딩·간접투자 → 온렌딩대출

Q&A

Q **온렌딩대출 신청은 산업은행에 가서 직접 해야할까요?**

A 온렌딩대출은 산업은행에서 신청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평소 이용하시던 주거래은행 등 중개금융기관 영업점을 통해서 상담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Q **중소·중견기업이라면 어떤 기업이든 상관없이 다 신청가능한가요?**

A 아닙니다. 온렌딩대출은 금감원 기업표준신용등급 체계상 6~11등급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및 7~11등급에 해당하는 중견기업에 한하여 지원되고, 취급이 제한되는 업종이 있습니다. 금감원 기업표준신용등급 구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대출 가능 여부는 거래하시는 중개금융기관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2편

유관기관 (비금융기관)

제1편

유관기관 (금융기관)

제1부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제2부 ▸ 기술보증기금
제3부 ▸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제4부 ▸ 신용보증기금
제5부 ▸ 한국수출입은행
제6부 ▸ 한국무역보험공사
제7부 ▸ 기업은행
제8부 ▸ 한국산업은행

제2편

유관기관 (비금융기관)

제1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제2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제3부 ▸ 창업진흥원
제4부 ▸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제5부 ▸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제6부 ▸ 중소기업중앙회
제7부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제8부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제9부 ▸ 한국무역협회
제10부 ▸ 한국경제인협회 중소기업협력센터
제11부 ▸ 대한상공회의소

제 1 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원사업(전년대비) 달라지는 내용

◉ 기관명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구분	'25년도	'26년도
혁신 소상공인 창업지원	500명 내외	550명 내외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230개사 내외	280개사 내외
로컬브랜드 창출	8개팀	10개팀
강한 소상공인 성장지원	220개사 내외	240개사 내외
우리동네 크라우드펀딩	-	-
혁신 소상공인 투자연계	-	-
글로벌 소상공인 (K-소상공인)육성	-	'26년 신규 사업
혁신 소상공인 AI 활용지원	-	'26년 신규 사업
백년 소상공인 육성	-	지원규모 확대('25. 100개 사 → '26. 300개 사), 민·관 상생협력을 통한 판로확대 및 브랜드 홍보 지원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 지원예산 : 11,300백만원 - 지원조건 : 5인이상 및 구성원 50% 이상이 소상공인인 협업체 지원금액 : 조합별 최대 1억원	- 지원예산 : 6,825백만원 - 지원조건 : 5인이상 및 구성원 50% 이상이 소상공인인 협동조합 지원금액 : 조합별 최대 3억원
소공인 스마트제조 지원	-	현장수요를 반영하여 스마트장비(H/W) 지원방식 변경(임차→구매) 및 지원규모 확대(1,800개사 → 2,000개사)
소공인 클린제조 환경조성	-	국비 지원 한도 확대하고(최대 420만원 → 700만원), 산업안전 박람회 참가 지원을 통해 안전 제품 홍보 추진('25년 1,700개사 84억원 → '26년 1,800개사 126억원)
소공인 판로개척 지원	-	· '2025년 보조사업 연장평가' 결과에 따라 보조율 조정(80% → 70%) · 현장의견을 반영하여 해외특화 바우처 신설 및 국고보조금 지원확대(1,800만원→2,000만원) · 예산 감소로 인한 지원규모 축소(290개사→250개사)

구분		'25년도	'26년도
지역소공인육성 (舊 소공인지원 센터 설치)		-	-
지역상권 육성 (글로컬 상권)		-	'26년 신규사업
지역상권 육성 (로컬거점 상권)		-	'26년 신규사업
지역상권 육성 (유망 골목상권)		-	'26년 신규사업
소상 공인 온라인 판로 지원 사업 (역량 강화 교육)	1:1 방문교육	(지원규모) 1,000명	(지원규모) 1,500명
	디지털 특성화 대학	(지원규모) 2,000명	(지원규모) 1,500명
	플랫폼 협업 교육	(지원대상) 해외 진출의지가 있으며 활용교육이 필요한 소상공인(해외)	(지원대상) 해외 진출의지가 있으며 입점 가능 상품을 보유한 소상공인(해외)
	e-러닝	-	-
소상 공인 온라인 판로 지원 사업 (글로 벌시장 지원)	글로벌 패키지	-	-
	해외 쇼핑몰 입점 지원	- (지원대상) ①해외플랫폼 旣입점, ②해외 판매 제품 보유, ③백년 소상공인 중 1개 이상 해당하는 소상공인 (지원내용) 브랜드 등록, 광고·프로모션, 컨설팅, 풀필먼트 종합 지원	- (지원대상) ①플랫폼사 협업교육 수료 소상공인 중, ②플랫폼 상품 등록을 완료한 소상공인 (지원내용) 플랫폼 사별 모객 및 매출 향상을 위한 광고·마케팅 집중지원
	글로벌 쇼룸	-	-
	온라인 수출 물류 지원	-	- (지원내용) 해외 이커머스 활용 소상공인 수출 물류비·풀필먼트 서비스 지원신규
희망리턴패키지		- 지원대상 (재기사업화) 경영개선 선별기준 매출 감소 10%이상 위기지역 소상공인	- 지원대상 (재기사업화) 경영개선 선별기준 세분화 매출감소 10%~50% / 50%이상* * 경영진단을 통해 참여기회 부여 여부판단 위기지역 소상공인 소상공인365 경영개선 권고 소상공인('26.7~, 시범)
		- 지원내용 (사업정리컨설팅) 기 폐업자의 경우 재기전략, 부동산 분야 컨설팅 지원 불가	- 지원내용 (사업정리컨설팅) 폐업 여부와 무관하게 재기전략, 부동산 분야 컨설팅 지원 가능

구분	'25년도	'26년도
	(점포철거) 최대 400만원 지원 (특화취업)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24억원) * 2,000명 (재기사업화) 국고보조금과 자부담 1:1매칭	(점포철거) 최대 600만원 지원 * 단, 폐업일자에 따라 상이 (특화취업)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36억원) * 3,000명, 20만원×6개월 (재기사업화) 국고보조금과 자부담 2:1 매칭
	(사업정리컨설팅, 채무조정, 법률자문, 재기사업화, 점포철거, 특화취업지원, 일반 재창업교육) →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 (hope.sbiz.or.kr)	(사업정리컨설팅, 채무조정, 법률자문, 재기사업화) →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 (hope.sbiz.or.kr) (점포철거, 특화취업지원, 일반 재창업교육) → 소상공인24 홈페이지 (hope.sbiz.or.kr)
소상공인 고용 보험료 지원사업	-	-
불공정거래 피해 상담센터 지원	(지원분야)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분야	(지원분야)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 소상공인 노동관련 분쟁 피해
시장경영지원 (舊. 시장경영 패키지)	사업지원패키지(공동마케팅, 온라인마케팅, 상인교육, 경영자문) 인력지원패키지(시장매니저, 배송매니저)	역량강화(상인교육, 경영자문) 인력지원(시장매니저, 배송매니저)
특성화시장 육성 사업 (문화관광형시장)	구분사업 명 : 특성화시장 육성사업(문화관광형시장) ① 화재공제 가입률 45%이상 ② 상인회 가입률 80% 이상 ③ 상인회비 납부율 80% 이상 ④ 온누리상품권 가맹률 80% 이상, 충전식 카드 가맹률 75%이상(모두 충족)	구분사업 명 : 전통시장육성(문화관광형시장) ① 화재공제 가입률 50%이상 ② 상인회 가입률 80% 이상 ③ 상인회비 납부율 80% 이상 ③ 온누리상품권 지류 가맹률 80%, 디지털(카드+모바일) 가맹률 70%이상(모두 충족)
특성화시장 육성 사업 (첫걸음 기반조성)	-	삭제
특성화시장 육성 사업 (디지털 전통시장)	-	삭제
청년몰 활성화사업	-	이관(전통시장육성재단)
특성화시장 육성 사업 (백년시장)	-	계속
전통시장육성 (브랜드시장)	-	신설

구분	'25년도	'26년도
전통시장 화재공제	-	특약상품 신설 (화상5대 골절 수술 위로금)
	지원한도 최대 6천만원	지원한도 최대 1억원
전통시장 안전 관리패키지	공용구간 지원은 총 사업비의 10% 이내	공용구간 지원은 총 사업비의 20% 이내
	소방, 전기, 가스 , 기타분야 안전시설물	스마트 안전기술, 쿨링포그, 이동식 냉풍기 지원 항목 추가
	민간화재보험 및 화재공제 가입률 45% 이상	민간화재보험 및 화재공제 가입률 50% 이상
온누리상품권 발행	-	-
소상공인빅데이터 플랫폼 (소상공인365)	상권분석, 경영진단, 트렌드 정보, 소상공인 통계 등을 제공하는 소상공인 빅데이터 플랫폼	AI 기반 경영진단 서비스 고도화 및 상권정보 통계 정보 제공 확대
일반경영 안정자금	-	-
특별경영안정 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일시적경영애로) - (매출감소 기준) 매출액 10%이상 감소하고 상권활성화구역 인접 시·군·구 등 총 11개 유형 중 하나에 해당 필요 - (매출감소 예외)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등 7개	긴급경영안정자금(일시적경영애로) 개편 - (매출감소 기준) 매출액 15%이상 감소 - (매출감소 확인대상) 삭제 - (매출감소 예외)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등 5개
	재도전특별자금 (지원대상) - (희망형) 희망리턴패키지(사업화자금) 수혜기업, 이커머스 미정산 피해 관련 특별자금 수혜기업 (한도·금리) - (희망형) 1억원, 기준+0.6%p	재도전특별자금 희명형 개편 및 도약형 신설 (지원대상) - (희망형) 희망리턴패키지(사업화자금) 선정기업 - (도약형) 재장업 후 성장하는 성실상환 소상공인 (한도·금리) - (희망형) 1억원, 기준+0.6%p - (도약형) 2억원, 기준+0.4%p
	대환대출 - (대상채무) '24.7.3 이전 취급 대출 - (대출한도) 사업자대출 5천만원, 사업용도 가계대출 1천만원	대환대출 대상채무 및 한도 확대 - (대상채무) '25.6.30 이전 취급 대출 - (대출한도) 사업자대출 5천만원, 사업용도 가계대출 5천만원

구분	'25년도	'26년도
성장기반자금	상생성장지원자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 (상생형) 상생협약 플랫폼 입점 소상공인 - (TOPS형) TOPS프로그램 수혜기업 (한도·금리) - 운전 2억원. 시설 10억원/ 기준금리+0.2%p	상생성장지원자금 지원대상 개편 (지원대상) - (일반형) TOPS 1단계 기업 - (성장형) TOPS 2단계, 플랫폼 추천기업 - (도약형) Post-Tops 선정기업 (한도) - (일반형) 운전 7천만원 - (성장형) 운전 1억원, 시설 5억원 - (도약형) 운전 2억원, 시설 10억원 (금리) 기준금리+0.4%p
	소공인특화자금 (지원대상) - (일반형) 업력무관 소공인 (한도·금리) - 운전 1억원, 시설 5억원/ 기준금리+0.6%p (대출방식) 대리대출	소공인특화자금 지원대상 개편 (지원대상) - (일반형) 일반 소공인(업력무관) - (유망형) 소공인 특화지원 참여기업, 백년 소공인 (한도·금리) - (일반형) 운전 1억원, 시설 5억원/ 기준금리+0.6%p - (유망형) 운전 2억원, 시설 10억원/ 기준금리+0.4%p (대출방식) - (일반형) 대리대출 - (유망형) 직접대출

혁신 소상공인 창업지원

사업개요

성장 가능성이 높은 유망 아이템으로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 소상공인을 선발하여 교육, 창업아카데미, 피칭대회, 사업화 지원금, 보육공간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여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기반을 마련

〈 전년대비 달라지는 내용 〉

구분	'25년	'26년
지원규모	500명 내외	550명 내외

지원대상

- 신청자격 : 예비창업자로 생활·서비스의 혁신 아이디어를 통해 창업하려는 자, 자신이 보유한 고유의 기술·노하우를 기반으로 창업하려는 자
- 지원조건 : 예비창업자
- 우대사항 : 경력단절여성, 성실 상환자 등

신청제외 대상

-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음식점업(561), 주점 및 비알코올 음료점업(562), 자동차 판매업(451), 자동차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452), 산업용 농·축산물 및 동·식물 도매업(462), 기계장비 및 관련 물품 도매업(465), 종합소매업(471)으로 창업하려는 자
  * 단, 이종업종 간 결합 · 구독경제 · ICT 기술 등의 융합 등에 기반한 창업 희망 아이템(아이디어)인 경우 선정평가를 통해 혁신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지원 가능할 수 있음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 대상 업종으로 창업하려는 자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자로 규제 중인 자
  *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 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 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는 참여 가능(국세, 지방세 등 특수채무의 경우는 완납 필수)
-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자
- 정부지원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
- 사업 공고일부터 사관학교 경영체험교육 시작일까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자(업종불문)
- 신사업창업사관학교 기 수료생(기수 불문)
- 중소벤처기업부 및 타 중앙부처에서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창업사업화 지원 사업*을 수행 중인 자
  *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사업자등록)을 전제로 창업 아이템의 사업화를 위한 시제품 제작비, 마케팅비 등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사업
-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참여 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세부 내용은 공고 시 변경 될 수 있음

지원내용

- 지원 세부내용 : 준비된 소상공인 창업 및 전주기별 맞춤형 지원
  - (창업역량강화) 창업아카데미와 미니피칭대회를 통한 업종별 심화 과정 운영 및 창업교육, 상담 및 코칭 수시 실시
  - (사업화 지원) 사업화자금(최대 4천만원) 차등 지원 및 보육공간 제공
  - (정책자금) 졸업기업 대상 정책자금(직접대출) 연계(최대 1억원)
- 지원규모 : 총 550명 내외
- 지원금액 : 225억원
  * 세부 내용은 공고 시 변경 될 수 있음

신청·접수

- 공고(예정) 시기 : 1~2월
- 신청방법 : 홈페이지(http://www.sbiz24.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온라인작성), 사업계획서, 가점 증빙서류 등
  - * 선정 후, 사업자등록사실여부사실증명원 등 신청요건 확인을 위해 제출 필요
- 선정평가 : 사업화지원금 확정 등 서류평가→발표평가를 통해 지역별 최종 선정

심사·평가 주요내용

- ▸ 서류심사 시, 창업아이디어, 사업계획의 적정성, 성장성, 발표심사 시, 사업화 가능성, 창업 아이디어, 창업자의 사업수행 능력 등을 평가

- 추진절차 :

모집 및 신청·접수	→	선정평가	→	선정결과 통보	→	사업화 지원	→	창업지원 프로그램
중기부·전담기관		전담·주관기관		전담·주관기관		전담·주관기관		전담·주관기관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성장촉진과
  (전화) 044-204-7285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창업지원실
  (전화) 042-363-7769, 7726, 7738
  (이메일) ok007@semas.or.kr
- 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참고사항

① 전년도 사업공고

◉ 공고명 : 2025년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예비창업자 모집 공고

- (경로) 신사업창업사관학교 〉 알림정보 〉 공지사항
- (홈페이지)

Q&A

Q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A 유망아이템으로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 소상공인(공고일 기준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자)라면 누구나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사업개요

지역의 자원과 문화 특성을 소재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결합해 사업적 가치를 창출하는 로컬크리에이터(지역가치 창업가)를 발굴·육성

〈 전년대비 달라지는 내용 〉

구분	'25년	'26년
지원규모	230개사 내외	280개사 내외

지원대상

- 신청자격 : 로컬크리에이터 정의 및 요건에 충족하는 소상공인
- 지원조건 : 소상공인
- 우대사항 : 신사업창업사관학교, 강한 소상공인 성장지원 등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사업 수혜업체 우대

신청제외 대상

- 로컬지원사업 기 수혜자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을 영위하거나 예정인 경우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경우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 중인 경우
-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 사업의 참여 제한 등 제재조치를 받는 경우
- 신청일 현재 '기업의 부도, 휴·폐업' 중인 경우
-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중소, 중견, 대기업 등)
- 고용노동부 장관이 공개한 기간 내에 있는 임금 체불 사업주
- 비영리 개인사업자·법인, 단체 또는 조합

지원내용

- 지원 세부내용 : 사업화 자금(로컬크리에이터 BM 구체화, 멘토링, 브랜딩, 마케팅 등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 지원)
- 지원규모 : 280개사 내외
- 지원금액 : 86억원

* 세부 내용은 공고 시 변경 될 수 있음

신청·접수

- 공고(예정) 시기 : 1~2월 예정
- 신청방법 :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소상공인확인서, 사업자등록증, 가점 증빙서류 등
- 선정평가 : 1단계(서류평가) -> 2단계(발표평가)

심사·평가 주요내용

- 개인(지역성·성장가능성), 협업 및 브랜드(협업성, 성장가능성)

◉ 추진절차

모집공고	→	신청 · 접수	→	선정평가 (서류, 발표)	→	사업화 지원	→	후속 지원
중기부·전담기관		전담·주관기관		전담·주관기관		전담·주관기관		전담·주관기관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성장촉진과
(전화) 044-204-7854, 7283
(이메일) lcsdoit@korea.kr, kts6294@korea.kr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창업지원실
(전화) 042-363-7735, 7736 (이메일) local@semas.or.kr

◉ 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참고사항

① 전년도 사업공고

◉ 공고명 : '25년 로컬크리에이터(개인·협업) 참여 소상공인 모집공고

- (경로) 소상공인24-지원사업신청
- (홈페이지)

Q&A

Q **로컬크리에이터(개인)신청 시 사업장 소재지와 해당 지역자원의 활용 소재지가 다른 데 이런 경우 사업 신청이 가능한가요? 어떻게 신청하면 되나요?**

A 현재 사업자등록증 기준상 해당 지역자원의 활용 소재지와 다르다면 해당 지역자원을 기준으로 해당 권역(주관기관)으로 신청해주시면 되고 협약만료 1개월 전까지 본점의 소재지를 활용자원의 소재지로 변경하여야 합니다.

용어 설명

로컬크리에이터(지역가치 창업가) : 지역의 자원·문화적 특성과 아이디어를 결합해 사업적 가치를 창출하는 창업가

로컬브랜드 창출

사업개요

골목상권 내 로컬크리에이터·소상공인 등이 상호간의 사업아이템 및 지역의 인적·물적 자산을 연결하는 로컬브랜드 구축

〈 전년대비 달라지는 내용 〉

구분	'25년	'26년
지원규모	8개팀	10개팀

지원대상

- 신청자격 : 로컬크리에이터 정의 및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이 대표기업이 되어 대표기업 포함 3개사 이상 팀을 구성
- 지원조건 : 소상공인
- 우대사항 : 신사업창업사관학교, 로컬크리에이터 육성사업, 강한 소상공인 성장지원 등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사업 수혜업체 우대

신청제외 대상

- 로컬지원사업 기 수혜자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을 영위하거나 예정인 경우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경우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 중인 경우
-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 사업의 참여 제한 등 제재조치를 받는 경우
- 신청일 현재 '기업의 부도, 휴·폐업' 중인 경우
-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중소, 중견, 대기업 등)
- 고용노동부 장관이 공개한 기간 내에 있는 임금 체불 사업주
- 비영리 개인사업자·법인, 단체 또는 조합
-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지원내용

- 지원 세부내용 : 골목상권의 브랜드화를 위한 기업간 연계 아이템 개발 및 사업화, 골목상권 BI 제작, 환경개선·디자인 등에 소요되는 자금 지원
- 지원규모 : 10개팀 내외
- 지원금액 : 24억원

  * 세부 내용은 공고 시 변경 될 수 있음

신청·접수

- 공고(예정) 시기 : 1~2월 예정
- 신청방법 : 소상공인 24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소상공인확인서, 사업자등록증, 가점 증빙서류 등
- 선정평가 : 1단계(서류평가) -〉 2단계(발표평가)

심사·평가 주요내용

▸ 대표기업 및 팀 역량, 사업수행계획, 지속가능성

◉ 추진절차

모집공고	→	신청 · 접수	→	선정평가 (서류, 발표)	→	사업화 지원	→	후속 지원
중기부·전담기관		전담·주관 기관		전담·주관 기관		전담·주관 기관		전담·주관 기관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성장촉진과
(전화) 044-204-7854, 7283
(이메일) lcsdoit@korea.kr, kts6294@korea.kr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창업지원실
(전화) 042-363-7735, 7736 (이메일) local@semas.or.kr

◉ 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참고사항

① 전년도 사업공고

◉ 공고명 : '25년 로컬브랜드 창출팀 모집공고

- (경로) 소상공인24 - 지원사업신청
- (홈페이지)

강한 소상공인 성장지원

사업개요

기업가정신, 창의·혁신적 아이템 등을 보유한 소상공인을 발굴·선별하여 다양한 분야와의 융합·연결 및 사업화자금을 지원

〈 전년대비 달라지는 내용 〉

구분	'25년	'26년
지원규모	220개사 내외	240개사 내외

지원대상

- 신청자격 : 「소상공인기본법」 제 2조에 따른 소상공인
- 지원조건 : 소상공인
- 우대사항 : 신사업창업사관학교, 로컬크리에이터 육성사업 등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사업 수혜업체 우대

신청제외 대상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
- 신청일 현재 '기업의 부도, 휴·폐업' 중인 경우
-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중소, 중견, 대기업 등)
- 고용노동부 장관이 공개한 기간 내에 있는 임금 체불 사업주
- 정부 사업에 참여 제한(부정수급 등) 중인 경우
- 사치향락적 소비·투기 조장 업종
- 비영리 개인사업자·법인, 단체 또는 조합

지원내용

- 지원 세부내용 : 팀빌딩 프로그램 및 사업모델(BM) 고도화에 소요되는 사업화 자금 등 지원
  - (팀빌딩) 스타트업, 창작자 등 사업 수행 시 협업할 전문 파트너 매칭 및 네트워킹 지원과 사업 관련 경영, 마케팅 등 멘토링 지원
  - (사업화 자금) 신제품 제작, 마케팅 등에 소요되는 사업화 비용 지원
- 지원규모 : 240개사 내외
- 지원금액 : 231억원

  * 세부 내용은 공고 시 변경 될 수 있음

신청·접수

- 공고(예정) 시기 : 1~2월 예정
- 신청방법 : 소상공인 24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
-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소상공인 확인서 등
- 선정평가 : 1단계(서류평가) -〉 2단계(발표평가)

심사·평가 주요내용

▸ 신청자격 요건확인, 사업아이템, 성장가능성 등 확인

모집공고	신청 · 접수	선정평가 (서류, 발표)	1차 오디션	2차 오디션	후속 지원
중기부·전담기관	전담·주관기관	전담·주관기관	전담·주관기관	전담·주관기관	전담·주관기관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성장촉진과
  (전화) 044-204-7854, 7283
  (이메일) lcsdoit@korea.kr, kts6294@korea.kr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창업지원실
  (전화) 042-363-7723, 7737, 7723
  (이메일) strong@semas.or.kr
- 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참고사항

① 전년도 사업공고

- 공고명 : '25년 강한 소상공인 성장지원사업 소상공인 모집공고
  - (경로) 소상공인24-지원사업신청
  - (홈페이지)

Q&A

Q **강한 소상공인 성장지원사업은 무엇인가요?**

A 기업가 정신, 장인 정신 등을 보유한 소상공인 대상으로 창작자, 스타트업 등 전문 파트너와의 협업을 통해 사업모델(BM) 고도화 지원을 위한 사업입니다.

우리동네 크라우드펀딩

사업개요

소상공인에 적합한 크라우드펀딩 방식의 민간자금 연계를 통해 기업가형 소상공인으로 육성

지원대상

- 신청자격 :「소상공인기본법」제 2조에 따른 소상공인
- 지원조건 : 소상공인

신청제외 대상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
- 신청일 현재 '기업의 부도, 휴·폐업' 중인 경우
-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중소, 중견, 대기업 등)
- 고용노동부 장관이 공개한 기간 내에 있는 임금 체불 사업주
- 정부 사업에 참여 제한(부정수급 등) 중인 경우
- 사치향락적 소비·투기 조장 업종
- 비영리 개인사업자·법인, 단체 또는 조합

지원내용

- 지원 세부내용 : 크라우드펀딩 교육·코칭, 크라우드펀딩 오픈·홍보 지원, 펀딩수수료 등 펀딩에 필요한 제반사항 지원

- 지원규모 : 1,333개사 지원
- 지원금액 : 40억원

  * 세부 내용은 공고 시 변경 될 수 있음

신청·접수

- 공고(예정) 시기 : 1~2월 예정
- 신청방법 : 사업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
-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소상공인 확인서, 세금 및 매출관련 서류 등
- 선정평가 : 총 2단계 평가(서류→ 신용심사)를 통해 최종 선정

심사·평가 주요내용

▸ 신청자격 요건확인, 사업아이템, 성장가능성 등 확인

- 추진절차

모집공고	→	신청 · 접수	→	현장방문	→	선정 및 펀딩개시	→	후속 지원
중기부·전담기관		전담·주관기관		전담·주관기관		전담·주관기관		전담·주관기관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성장촉진과
  (전화) 044-204-7285, 7830
  (이메일) kimdu9424@korea.kr, cy4733@korea.kr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창업지원실
  (전화) 042-363-7727, 7725 (이메일) strong@semas.or.kr
- 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참고사항

① 전년도 사업공고

- 공고명 : '24년 우리동네 크라우드펀딩 소상공인 모집공고
  - (경로) 소상공인24-지원사업신청
  - (홈페이지)

Q&A

Q **우리동네 크라우드펀딩 사업은 무엇인가요?**

A 유망 소상공인 대상으로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자금 조달을 위해 펀딩 교육, 컨설팅 수수료 등 펀딩에 제반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용어 설명

크라우드펀딩 : 자금 조달이 필요로 하는 수요자가 온라인 플랫폼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 대중들에게 자금을 모으는 방식

BM(Business Model) :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를 어떻게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마케팅하며, 수익을 창출할 것인가 하는 계획 또는 사업 아이디어

혁신 소상공인 투자연계

사업개요

소상공인 중 소기업으로 성장이 가능한 기업을 선발, 브랜딩·마케팅·제품 고도화 등을 집중 지원, 기업으로서의 성장을 지원

지원대상

- 신청자격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지원조건 : 소상공인
- 우대사항 : 신사업창업사관학교, 로컬크리에이터 육성사업, 강한 소상공인 성장지원 등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사업 수혜업체 우대

신청제외 대상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
- 신청일 현재 '기업의 부도, 휴·폐업' 중인 경우
-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중소, 중견, 대기업 등)
- 고용노동부 장관이 공개한 기간 내에 있는 임금 체불 사업주
- 정부 사업에 참여 제한(부정수급 등) 중인 경우
- 사치향락적 소비·투기 조장 업종
- 비영리 개인사업자·법인, 단체 또는 조합

지원내용

- 지원 세부내용 : 성장단계의 기업가형 소상공인에게 투자자(창업기획자·VC 등)가 선 투자 하는 경우, 최대 3배(2억원 한도)까지 사업화 자금 지원
- 지원규모 : 300개사 내외
- 지원금액 : 300억원

* 세부 내용은 공고 시 변경 될 수 있음

신청·접수

- 공고(예정) 시기 : 2~3월 예정
- 신청방법 : 소상공인24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소상공인 확인서, 세금 및 매출관련 서류 등
- 선정평가 : 전문 심의위원회를 통한 평가

심사·평가 주요내용

▸ 안정성, 수익성, 활동성, 사업모델의 혁신성 등 확인

- 추진절차

발굴·선정	→	투자적절성 검토	→	사업신청	→	선정·평가	→	사업화자금 지원
민간투자사		주관기관		소상공인		주관기관		주관기관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성장촉진과
  (전화) 044-204-7854, 7283
  (이메일) lcsdoit@korea.kr, kts6294@korea.kr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창업지원실
  (전화) 042-363-7727, 7725 (이메일) strong@semas.or.kr
- 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참고사항

① 전년도 사업공고

- 공고명 : '25년도 혁신 소상공인 투자연계지원 소상공인 모집공고
  - (경로) 소상공인24-지원사업신청
  - (홈페이지)

Q&A

Q **혁신 소상공인 투자연계지원 사업은 무엇인가요?**

A 소상공인 중 기업으로 성장가능성이 높거나 또는 글로벌 진출이 가능한 기업가형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민간 투자자가 선 투자하는 경우 최대 3배(2억원 한도)까지 사업화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기업으로의 압축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글로벌 소상공인(K-소상공인) 육성

사업개요

유망 소상공인의 제품을 수출형으로 전환하고 맞춤형 해외판로 연결하여 소비재 수출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육성

지원대상

- 신청자격 : 수출을 희망하는 소상공인
- 지원조건 : 소상공인
- 우대사항 : 신사업창업사관학교, 로컬크리에이터 육성사업, 강한 소상공인 성장지원 등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사업 수혜업체 우대

지원내용

- 지원 세부내용 : 국내에서 인정받은 제품을 수출형 브랜드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제품 · 패키징 · 디자인 등의 개발 · 개선 지원
- 지원규모 : 100개사
- 지원금액 : 95억원

* 세부 내용은 공고 시 변경 될 수 있음

신청·접수

- 공고(예정) 시기 : 2~3월
- 신청방법 : 소상공인24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소상공인 확인서, 세금 및 매출관련 서류 등
- 선정평가 : 전문 평가위원회를 통한 평가

심사·평가 주요내용

▸ 수출 성공 가능성, 활동성, 사업모델의 혁신성 등 확인

- 추진절차

모집공고	→	신청 · 접수	→	선정평가	→	교육 및 사업화지원	→	후속 지원
중기부·전담기관		전담·주관기관		전담·주관기관		전담·주관기관		전담·주관기관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성장촉진과
  (전화) 044-204-7854, 7283
  (이메일) lcsdoit@korea.kr, kts6294@korea.kr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창업지원실
  (전화) 042-363-7727, 7737, 7723
- 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참고사항

① 2026 사업공고 : ‘26년 신규사업

혁신 소상공인 AI 활용지원

사업개요

AI를 활용한 제품개발 및 서비스 도입으로 소상공인의 비용절감, 업무효율화 및 차별화된 제품 · 서비스 창출을 지원

지원대상

- 신청자격 : AI 도입을 원하는 소상공인
- 지원조건 : 소상공인
- 우대사항 : 신사업창업사관학교, 로컬크리에이터 육성사업, 강한 소상공인 성장지원 등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사업 수혜업체 우대

지원내용

- 지원 세부내용 : AI 활용 교육 및 AI 전문 멘토(기관)과의 멘토링, 실전모델 적용을 위한 사업화자금 지원
- 지원규모 : AI활용교육 2,000명, 사업화지원 680여명
- 지원금액 : 144억원

* 세부 내용은 공고 시 변경 될 수 있음

신청·접수

- 공고(예정) 시기 : 2~3월
- 신청방법 : 소상공인24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소상공인 확인서, 세금 및 매출관련 서류 등
- 선정평가 : 전문 평가위원회를 통한 평가

심사·평가 주요내용

▸ AI 도입 필요성, 활동성, 사업모델의 혁신성 등 확인

- 추진절차

모집공고	→	신청 · 접수	→	선정평가	→	교육 및 사업화지원	→	후속 지원
중기부·전담기관		전담·주관 기관		전담·주관 기관		전담·주관 기관		전담·주관 기관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성장촉진과
  (전화) 044-204-7854, 7283
  (이메일) lcsdoit@korea.kr, kts6294@korea.kr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창업지원실
  (전화) 042-363-7735, 7736
- 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참고사항

① 2026 사업공고 : '26년 신규사업

백년소상공인 육성 사업

사업개요

백년소상공인 육성 사업은 오랜 업력을 보유하고 지역사회 공헌도가 높은 우수 소상공인을 발굴하여 성장과 판로 개척을 지원

지원대상

- 신청자격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각호에 따른 요건을 갖춘 소상공인
  - (백년가게) 제조업 제외, 업력 30년 이상 소상인
  - (백년소공인) 제조업, 업력 15년 이상 소공인

신청제외 대상

▸ 휴·폐업 중인 경우, 프랜차이즈 가맹점인 경우, 기타 사행성 업종 등 백년소상공인 지정에 부합하지 않아 중기부장관이 시행계획에 공고한 경우

지원내용

- 백년소상공인 현판 및 지정서 제공, 온·오프라인 홍보 활동 및 정책사업 우대 트랙 개설 등 연계 지원

〈 세부 지원내용 〉

지원항목	지원내용
홍보활동	백년소상공인 지정서 및 현판제공, 소개집 등 오프라인 홍보물 제작
판로지원	공공 · 민간 협력 온 · 오프라인 판로 개척 지원
연계지원	중기부 내 타 소상공인 지원사업*에 가점 부여, 별도트랙 신설 등 우대 * 강한소상공인,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소공인 판로지원 등

신청·접수

- 중소벤처기업부 사업공고에 따라 신청·접수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소공인성장촉진단 : 044-204-7293, 7280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공인지원팀 : 042-363-7905, 7906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www.sbiz.kr) 사업공고 참고

참고사항

① 전년도 사업공고

* 단, 지원자격 등 세부지원요건이 변경됨에 따라 '26년 사업공고 내용 확인 필요

- 공고명 : 2025년 백년소상공인(백년가게·백년소공인) 선정 공고
  - (경로) 소상공인24 홈페이지 〉 지원사업신청 〉 소진공 공고조회 〉 '백년' 검색
  - (홈페이지)

Q&A

Q **백년소상공인 신규 모집의 구체적인 모집 시기가 궁금합니다.**

A 2026년 상반기 중 소상공인24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 게시 예정입니다.

용어 설명

백년소상공인 : 백년가게, 백년소공인을 통칭하는 용어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사업

사업개요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사업은 5인 이상 소상공인의 협업을 지원하여 소상공인 간 공동사업 및 판로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성장을 촉진

〈 전년대비 달라지는 내용 〉

구분	'25년	'26년
지원대상	소상공인 비율이 50% 이상인 소상공인 **협업 추진주체**	소상공인 비율이 50% 이상인 소상공인 **협동조합 등**
지원유형	상권형, 산업형, 조합형	공동사업, 판로지원
신청요건	사업 **신청** 시 소상공인 요건 확인	사업 **선정** 시 소상공인 요건 확인

지원대상

- 신청자격 : 5인 이상이고 소상공인 50% 이상으로 구성된 협동조합 등
  * 협동조합 등 : 협동조합기본법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등기 완료된 수익사업을 하는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
- 지원조건 : 매출액 및 매출증가율 기준으로 단계별(성장, 도약, 혁신성장) 신청

- 우대사항 : 청년, 여성, 장애인, BM경진대회 수상이력 등

신청제외 대상

- ▸ 휴·폐업 및 부도,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자, 부정수급 등으로 정부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기업
-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원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기업

지원내용

- 지원 세부내용 : 마케팅, 브랜드 개발, 공동장비 등 공동사업 및 온·오프라인 판로진출 지원(공동사업의 경우 사업비의 20% 내외 협동조합 자부담 필수)

지원구분	지원내용
공동장비	· 공동사업을 위해 필요한 품목당 3백만원 이상의 장비 지원
공동일반	· 공동사업을 위한 개발, 브랜드, 마케팅, 네트워크 등 지원
판로지원	· 온·오프라인 전용 기획전 개최, 박람회 참여 등 판로 확대 지원

* 사업비는 공급가액 기준 지원으로, 부가가치세는 자기부담금 외 별도 부담

- 지원규모 : 협동조합 80개사 내외
- 지원금액 : 68억원

신청·접수

- 공고(예정) 시기 : '26년 1월말
- 신청방법 :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coop.sbiz.or.kr)
-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명, 가점증빙서류 등
- 선정평가 :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심사·평가 주요내용

- 비즈니스모델, 조합역량, 사업지속성, 협동조합 가치확립

- 추진절차 : 사업공고 → 서류검토 → 현장검증(해당 시) → 발표평가 및 선정심의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지역상권과 :
  044-204-7883, mimemy2@korea.kr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상권실 :
  042-363-7922, coop@semas.or.kr
- 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참고사항

① 전년도 사업공고

- 공고명 : '2025년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공동사업 공고
  - (경로)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홈페이지 〉 공동사업 〉 모집공고
  - (홈페이지)

Q&A

Q **'25년 설립 조합으로, 매출액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신청 가능한가요?**

A '25년·'26년 설립 조합이라면, 매출액 유무와 관계없이 '성장단계'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공인 스마트제조지원

사업개요

소공인이 수작업 위주 작업공정을 디지털 기술(IoT, AI 등)과 접목하여 스마트화할 수 있도록 하드웨어(H/W), 소프트웨어(S/W) 구축 등을 지원

〈 전년 대비 달라지는 내용 〉

구분	'24년	'25년
지원규모	1,800개사 내외	2,000개사 내외
지원내용	H/W 및 S/W 임차지원	H/W 구매지원, S/W 임차지원

지원대상

- 신청자격 :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도시형소공인
  -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 제조업체

신청제외 대상

▸ 휴·폐업 및 부도,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자, 부정수급 등으로 정부사업에 참여 제한중인 기업

※ 그 외 신청자격 및 신청 제외 대상 관련 세부내용 등은 모집공고 확인

지원내용

- 하드웨어(H/W) 구매비, Saas형 소프트웨어(S/W) 임차비 등 지원
- 지원규모 : 2,000개사 내외
- 지원금액 : 업체당 국비 42백만원 이내(국비 70%, 자부담 30%)
- 주요 사업절차

모집공고	선정평가	협약수행	결과보고
사업 참여 소공인 모집 공고	소공인 적격여부 판단 및 선정평가	협약 체결 및 소공인 과제 수행 (장비 도입 등)	과제 수행 결과 보고 및 완료 점검 등

신청·접수

- 공고(예정) 시기 : '25. 1~2월
- 중소벤처기업부 사업공고에 따라 신청·접수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지역상권과 : 044-204-7882, 7361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공인지원실 : 042-363-7912, 7913, 7914, 7920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www.semas.or.kr) '지원사업' 참고

참고사항

① 전년도 사업공고

- 공고명 : 2025년 스마트제조 지원사업 소공인(개별형) 모집 공고

- (경로) 소상공인24 〉 지원사업신청 〉 소진공 공고조회 〉 '2025년 스마트제조 지원사업 소공인(개별형) 모집 공고' 검색
- (홈페이지)

Q&A

Q **기존 '스마트제조지원사업' 수혜 소공인도 신청 가능한가요?**

A 24년~25년 수혜 소공인은 불가능합니다. 수혜소공인은 협약종료 후 2년 동안 도입기술 의무사용기간을 명시한 바, 신청 불가능합니다.

Q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는 구입이 가능한가요?**

A 하드웨어는 가능합니다. 스마트화를 위해 도입하는 하드웨어(장비)는 구매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소프트웨어는 임차지원으로 구입 불가)

용어 설명

IoT : '사물인터넷'을 칭하며, 사물에 센서를 부착해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인터넷으로 주고받는 기술이나 환경을 의미

소공인 클린제조환경조성

사업개요

소공인 작업장 내 현장진단을 통해 산업재해 예방 및 에너지효율화 개선을 위한 환경개선 비용 지원

〈 전년대비 달라지는 내용 〉

구분	'25년	'26년
지원한도	중대재해 : 최대 700만원 일반 : 최대 420만원	최대 700만원
지원유형 신설	-	(산업안전 박람회) 안전 장비 제조 소공인의 산업안전 박람회 참가 지원을 통해 안전의식 제고 및 제품 홍보 추진

지원대상

- 신청자격 :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규정된 소공인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 제조업체)
- 지원조건 : 국비 한도 내 안전환경조성, 에너지효율개선, 산업안전 박람회 중 1개 항목 선택지원 (최대 7백만원, 국비 70%)

신청제외 대상

▸ 휴·폐업 및 부도,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자, 부정수급 등으로 정부사업에 참여 제한중인 기업, 동사업 기수혜자, 당해연도 유사사업 수혜자

지원내용

- 지원 세부내용

지원항목	지원내용	지원한도	
		국비(70%)	자부담(30%)
안전환경 조성	• (교육) 중대재해 등 작업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 (장비교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장치 교체·개보수, 안전장비 지원	700만원 이하	300만원 이상
에너지 효율개선	• (교육) 탄소중립 수준진단을 바탕으로 인식 개선 및 실천 교육 • (장비교체) 작업공정별 에너지절감을 위한 고효율장비, 온실가스 감축 설비 등 교체·개보수 지원		
산업안전 박람회	• 안전 장비 제조 소공인의 국내·외 산업안전 박람회 참가 비용 지원 (부스 사용료, 집기 임차료 등)	350만원 이하	150만원 이상

* 국비 한도 내, 교육비용 공단 별도 지원

- 지원규모 : 약 1,800개사
- 지원금액 : 126억원 이내

신청·접수

- 중소벤처기업부 사업공고('26.1월)에 따라 신청·접수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소공인촉진단 : 044-204-7882, 7297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공인지원실 : 042-363-7904, 7906
- 소상공인24 홈페이지(www.sbiz24.kr) 사업공고 참고

참고사항

① 전년도 사업공고

◉ 공고명 : 2025년 소공인 클린제조환경조성 사업 모집 공고

- (경로) 소상공인24 홈페이지 〉 지원사업신청 〉 '2025년 소공인 클린제조환경조성 사업 모집 공고' 검색
- (홈페이지)

Q&A

Q **3년 전에 클린제조환경조성 사업 지원을 받았습니다. 올해도 사업 신청이 가능한가요?**

A 아니오, 신청 불가능합니다.

클린제조환경조성 사업은 대표자를 기준으로 한 번만 지원 가능합니다.

용어 설명

중대재해처벌법 :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도록 경영책임자에게 의무를 부과한 법률입니다. 경영책임자가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

소공인 판로개척 지원

사업개요

제품품질력과 성장잠재력을 보유한 소공인을 대상으로 국내·외 판로 개척 바우처 지원을 통해 우수소공인으로 성장촉진 및 매출향상에 기여

〈 전년대비 달라지는 내용 〉

구분	'25년	'26년
지원내용	국비 보조율 80%	국비 보조율 70%
지원규모	290개사	250개사
지원금액	18백만원	20백만원
바우처확대	-	해외특화

지원대상

- 신청자격 :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규정된 소공인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 제조업체)
- 지원조건 : 국비한도(업체당 20백만원) 내 지원

신청제외 대상

▸ 휴·폐업 및 부도,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자, 부정수급 등으로 정부사업에 참여 제한중인 기업

지원내용

- 지원 세부내용 : 전시회참가, 마케팅, 매장입점 지원 등

지원항목	지원내용
전시회 참가	• 국내·외 전시·박람회 참가비(부스임차비, 집기임차비 등) 지원
마케팅	• 국내·외 광고지원(옥외광고, 지면광고, 와이드칼라 등) • 국내·외 콘텐츠 제작지원(카달로그, 리플릿, 영상제작, BI·CI 개발 지원 등)
매장입점	• 국내·외 오프라인몰(백화점, 아울렛, 대형마트, 팝업스토어 등) 입점을 위한 집기임차비, 판매수수료 비용 등 지원
해외특화	• B2B 플랫폼 입점지원, 제품현지화, 통번역지원, 국제물류비, 무역보험, 컨설팅 등

- 지원규모 : 약 250개사
- 지원금액 : 66.9억원 이내

신청·접수

- 중소벤처기업부 사업공고('26.1월)에 따라 신청·접수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소공인촉진단 : 044-204-7882, 7297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공인지원실 : 042-363-7915, 7917, 7919
- 소상공인24 홈페이지(www.sbiz24.kr) 사업공고 참고

참고사항

① 전년도 사업공고

- 공고명 : '24년 소공인 판로개척 지원사업 모집공고

- (경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www.semas.or.kr) - 공지사항
- (홈페이지)

Q&A

Q **소공인 판로개척 바우처 항목 중 복수지원이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최대 2천만원 한도 內, 바우처 판로지원항목 중 복수 선택이 가능합니다.

용어 설명

바우처지원 : 전시회 참가, 마케팅, 매장입점, 해외특화 등 각 지원항목을 뜻하며, 최대 2천만원 한도 內 필요항목 자율선택

지역소공인육성(舊 소공인지원센터 설치·운영)

사업개요

소공인 집적지(구) 활성화와 소공인 협업 등 지원을 위한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구축 및 소공인 특화지원센터를 설치·운영 등을 지원

지원대상

- 지원대상
  - (특화지원센터) 소공인 관련 비영리기관
  - (복합지원센터) 「지방자치법」 제2조 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 * 각 센터는 소관 집적지 소공인(10인미만 제조업)을 지원

신청제외 대상

▸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소공인 집적지 요건 미충족 지역 및 소공인 지원센터 운영기관으로 부적합한 영리법인 등

지원내용

- 지원 세부내용
  - (특화지원센터) 교육, 컨설팅, 특화사업 등을 위한 운영비 지원
  - * 상호 정보교류, 경영·기술역량 배양 등을 위한 교육사업
  - * 협업을 통한 공동개발, 네트워크 구축 등 지역·업종에 특화된 사업 프로그램

- (복합지원센터) 기획, 디자인, 제품개발, 판매 등을 위한 인프라 구축비 지원

  * (공용장비) 신소재 개발 등을 위한 제조·가공, 계측·검사 등 장비 도입

  * (전시·판매장) 고객, 바이어 대상 소공인 우수제품 전시·판매장 조성

  * (교류·창작공간) 회의실, 교육실, 디자인실, 체험 공간 등 조성

- 지원규모 : 복합지원센터 신규 1곳(2년간 25억원 이내)
  특화지원센터 40곳 내외(센터당 3.2억원 이내)

신청·접수

① 특화지원센터

- 특화지원센터 모집 : 중소벤처기업부 사업공고에 따라 신청·접수(상반기)
- 센터별 지원대상(소공인) 모집 : 센터 별 사업일정에 따라 모집 시기 상이

  * 센터별 사업 세부내용 및 지원조건은 해당 소공인지원센터에 문의

  * 신청 및 제출서류 : 각 지원센터별 신청방법 문의

② 복합지원센터

- 중소벤처기업부 사업공고에 따라 신청·접수(상반기)

  * 단, 예비공모 미신청 지자체는 본공모 신청불가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소공인성장촉진단 : 044-204-7882, 7361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공인지원실
  042-363-7903, 042-363-7908, 042-363-7909
- 특화지원센터별 문의처
  https://www.sbiz24.kr/#/cmmn/gnrl/Conts/70

참고사항

① 전년도 사업공고

- 공고명 : 2025년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신규 운영기관 모집
  - (경로)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알림소식 〉 사업공고 〉 '2025년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운영기관 모집공고' 검색
  - (홈페이지)
  - (경로) 소상공인24 홈페이지 〉 소진공 공고조회 〉 '2025년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신규 운영기관 모집' 검색
  - (홈페이지)

지역상권 육성(글로컬 상권)

사업개요

국내외 관광객이 이동·숙박·식음·체험 등 K-컬처를 소비하는 글로컬 상권 조성을 위해 글로벌 브랜드 개발, 앵커스토어 육성 등 집중 지원

지원대상

- 신청자격 : 인바운드 관광 경쟁력 있는 상권 컨소시엄(세부요건 등 별도 공고 예정)

지원내용

- 관광·문화·역사 등 K-컬처를 상권과 결합하여 국내외 관광객이 체험·소비하는 글로벌한 상품으로 개발 및 고도화 지원
  - 국내외 관광객이 찾는 상권의 앵커스토어를 육성하고 로컬창업·유입 및 소상공인 역량강화, 방문객 편의 제고 등 종합 지원
- 지원규모 : 신규 6곳 내외 (예산 150억원)

신청·접수

- 중소벤처기업부 사업공고에 따라 신청·접수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지역상권과 : 044-204-7884, 7887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상권실 : 042-363-7603, 7929, 7610
- 소상공인24(www.sbiz24.kr) 및 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사업공고 참고

참고사항

- 2026년 신규사업

Q&A

Q **상권 컨소시엄이란 무엇인가요?**

A 사업을 수행할 주관기관(상권육성 전문법인, 로컬기업, 로컬크리에이터 법인 등)과 지방정부, 상인·주민 등으로 구성된 연합체로 구체적인 사항은 사업공고를 통해 안내할 예정입니다.

지역상권 육성(로컬거점 상권)

사업개요

지역의 특화산업·제조업 등과 접목한 로컬콘텐츠 개발, 상권 브랜딩 등을 종합 지원하여 지역경제와 로컬의 거점상권으로 조성

지원대상

- 신청자격 : 특색있는 지역자원을 보유한 상권 컨소시엄(세부요건 등 별도 공고 예정)

지원내용

- 지역특색(특화산업·제조업 등)을 활용한 로컬콘텐츠 및 특화상품 개발, 소상공인 역량강화 등 상권 브랜딩 및 경쟁력 강화 지원
  - 상권 방문 매력도 제고를 위한 공간 재생·활성화, 소상공인·방문객 거점 조성, 상권환경 개선 등 종합 지원
- 지원규모 : 신규 10곳 내외 (예산 100억원)

신청·접수

- 중소벤처기업부 사업공고에 따라 신청·접수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지역상권과 : 044-204-7884, 7887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상권실 : 042-363-7603, 7929, 7610
- 소상공인24(www.sbiz24.kr) 및 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사업공고 참고

참고사항

- 2026년 신규사업

Q&A

Q **상권 컨소시엄이란 무엇인가요?**

A 사업을 수행할 주관기관(상권육성 전문법인, 로컬기업, 로컬크리에이터 법인 등)과 지방정부, 상인·주민 등으로 구성된 연합체로 구체적인 사항은 사업공고를 통해 안내할 예정입니다.

지역상권 육성(유망 골목상권)

사업개요

상인 조직화 등이 이루어지지 않아 자생적 기반이 부족한 소규모 골목상권의 협동조합 결성 등 공동체 조직화와 역량강화, 골목 브랜딩·마케팅을 종합지원

지원대상

- 신청자격 : 조직화 기반 구축이 가능하고 골목의 정체성·콘텐츠·환경 개선을 통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골목상권 컨소시엄(세부 요건 등 별도 공고 예정)

지원내용

- 골목상권의 상인조직 설립, 협동조합 결성, 역량강화 교육, 네트워킹 등 조직화 지원으로 기초 역량 강화 지원
  - 공동브랜드 개발 및 골목 브랜딩, 골목환경 개선, 현황분석·진단을 통한 상권 발전방안 수립 등 유망 골목상권 경쟁력 강화를 위한 패키지 지원
- 지원규모 : 신규 50곳 내외 (예산 125억원)

신청·접수

- 중소벤처기업부 사업공고에 따라 신청·접수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지역상권과 : 044-204-7885, 7886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상권실 : 042-363-7603, 7929, 7610
- 소상공인24(www.sbiz24.kr) 및 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사업공고 참고

참고사항

- 2026년 신규사업

Q&A

Q **상권 컨소시엄이란 무엇인가요?**

A 사업을 수행할 주관기관(상권육성 전문법인, 로컬기업, 로컬크리에이터 법인 등)과 지방정부, 상인·주민 등으로 구성된 연합체로 구체적인 사항은 사업공고를 통해 안내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사업개요

소비·유통환경의 비대면·디지털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사업장에 스마트기술* 도입을 지원

* 주문(키오스크), 생산(조리로봇), 서비스(스마트미러, 서빙로봇), 경영(매출분석 AI) 등

〈 전년대비 달라지는 내용 〉

구분	'25년	'26년
지원 내용	▸ 렌탈형, S/W형 단년도 지원 ▸ 구입형 모든 기술 지원한도 500만원	▸ 렌탈형, S/W형 2년간 지원 ▸ 구입형 배리어프리 기기 지원한도 700만원 (일반기술은 동일하게 500만원 한도)
지원 규모	11,000개	16,000개

지원대상

◉ 지원조건 :「소상공인 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신청제외 대상

- 소상공인 지원제외업종
- 비영리사업자인 경우(단, 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 예외)
-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경우 (법인일 경우 법인만 해당)
- 대표자 본인의 신청이 아닌 대행업체 및 기술공급업체(대리점 포함)를 통해 대리신청하는 경우
- 정해진 기한 이내 기술설치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
- '20~'25년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기지원 상점
  (단, 배리어프리 무인정보단말기, 경영지원 소프트웨어는 중복보급 가능)
  * '20~'21년 스마트오더만 지원받은 상점은 국비지원 한도금액 중 35만원을 차감하여 지원 가능
  ** 경험형 스마트마켓(똑똑마켓), 상생형 스마트상점으로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상점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 (단, 배리어프리 무인정보단말기, 경영지원 소프트웨어는 중복보급 가능)
- 소상공인의 지급보증보험 발급이 불가한 경우
- 그 외 지원 제외대상은 모집공고 확인

지원내용

◉ 지원 세부내용 : 스마트기술 도입비용 최대 10백만원 지원

<table>
<tr><th colspan="2" rowspan="2">구분</th><th colspan="3">구입형</th><th rowspan="2">렌탈형</th><th colspan="2">S/W형</th><th rowspan="2">선도형</th></tr>
<tr><th>보편[1)]</th><th>그 외</th><th>배리어프리</th><th>개인</th><th>가맹점</th></tr>
<tr><td colspan="2">지원내용</td><td colspan="2">일반기술
(서빙·조리로봇, 전자칠판, 사이니지 등) 구입비</td><td>배리어프리 무인정보단말기 구입비</td><td>배리어프리 무인정보단말기기, 서빙·조리로봇 2년 렌탈비</td><td colspan="2">경영지원 소프트웨어 2년 사용료</td><td>기술 패키지 및 주문제작 기술 구입비</td></tr>
<tr><td colspan="2">지원한도</td><td colspan="2">500만원</td><td>700만원</td><td>연 350만원</td><td colspan="2">연 30만원</td><td>1,000만원</td></tr>
<tr><td rowspan="2">국비지원비율</td><td>일반</td><td>50%</td><td colspan="2">70%</td><td>70%</td><td rowspan="2">100%</td><td rowspan="2">90%</td><td>70%</td></tr>
<tr><td>우대[2)]</td><td>60%</td><td colspan="2">80%</td><td>80%</td><td>80%</td></tr>
</table>

1) 보편기술 (2개) : 전자칠판, 사이니지

2) 국비지원비율 우대대상 : 장애인 사업주, 간이과세자, 1인 자영업자, 고령 사업주

◉ 지원규모 : 총 16,000개 내외

◉ 지원금액 : 349억

신청·접수

- 공고(예정) 시기 : 3월초
- 신청방법 : 스마트상점 누리집(www.sbiz.or.kr/smst/index.do) 온라인 신청·접수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소상공인확인서, 자부담 완화 증빙서류 등
- 선정평가 : 서류 및 현장평가(선도형 주문제작 기술만 해당)를 통해 최종 선정
- 심사·평가 주요 내용 : 스마트기술 활용의지 및 역량, 스마트기술 이해도, 사업 이해도, 스마트기술 적합성 등
- 추진절차 :

모집공고	신청·접수	선정평가	선정·발표
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

도입기술 매칭	기술보급	보급기술 현장점검	정산 및 결과보고
소상공인 ↔ 기술기업	기술기업 → 소상공인	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디지털소상공인과
  (전화) 044-204-7875, 7876
  (이메일) younghun8607@korea.kr, wjddls623@korea.kr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디지털지원실
  (전화) 042-363-7803, 7806
  (이메일) hanu@semas.or.kr, gosemas@semas.or.kr

- 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 스마트상점 콜센터(1600-6185)

참고사항

① 전년도 사업공고

- 공고명 : 2025년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참여 소상공인 모집 공고
  - (경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홈페이지)
- 공고명 : 2025년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주문제작기술형 참여 소상공인 모집공고
  - (경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홈페이지)
- 공고명 : 2025년 우수기술 패키지형 보급사업 소상공인 모집 공고
  - (경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홈페이지)

Q&A

Q **어떤 스마트기술을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스마트상점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누리집에 없는 기술 공급기업에서 기술 지원은 불가합니다. 다만, 기성품이 아닌 주문제작이 필요한 스마트 기기는 별도 모집하여 지원할 예정입니다.

Q **소상공인 점포당 도입해야 하는 스마트기술의 수는 제한이 있나요?**

A 없습니다. 단, 여러개의 스마트기술을 도입하는 경우 지원한도 내에서 국비가 지원됩니다.

Q **프랜차이즈 가맹점/직영점인데 신청 가능한가요?**

A 「소상공인 기본법」상 소상공인(신청제외대상 제외)은 신청가능하며,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가능 여부로 소상공인 여부를 판단합니다.

용어 설명

배리어프리 무인정보단말기 : 장애인·고령자 등이 쉽게 접근·이용할 수 있는 무인정보단말기(터치스크린 등 전자적 방식으로 정보를 화면에 표시하여 제공하거나 서류 발급, 주문·결제 등을 처리하는 기기)

* 자세한 내용은 무인정보단말기UI플랫폼(kioskui.or.kr) 누리집 참조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지원 사업(역량강화교육)

사업개요

온라인 진출·활용을 위한 역량강화 교육을 통해 소상공인 온라인 시장 성공 안착을 유도, 판로확대 및 경쟁력 제고

〈 전년대비 달라지는 내용 〉

구분	'25년	'26년
1:1방문교육	- (지원규모) 1,000명	- (지원규모) 1,500명
디지털 특성화대학	- (지원규모) 2,000명	- (지원규모) 1,500명
플랫폼 협업교육	- (지원대상) 해외 진출의지가 있으며 활용교육이 필요한 소상공인(해외)	- (지원대상) 해외 진출의지가 있으며 입점 가능 상품을 보유한 소상공인(해외)
e-러닝	-	-

지원대상

- 신청자격 : 온라인 진출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일부 예비창업자 포함)
  * (디지털특성화대학) 예비창업자 일부 포함 지원
- 지원조건 : 소상공인기본법 상 소상공인

신청제외 대상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 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 중인 자
- 공고일 기준 휴·폐업 중인 사업자
-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 그 외 지원 제외대상은 모집공고 확인

지원내용

- 지원 세부내용 : 소상공인 디지털 역량수준을 고려, 온라인 성장 단계별 교육 지원

구분	사업명	지원내용	교육시간
준비	1:1 방문교육	· 온라인 진출의사가 있으나, 디지털 활용 수준 및 경영 여건으로 집체교육 참여가 어려운 소상공인 대상 1:1 방문교육 운영	4시간
기초	디지털 특성화대학	· 지역 대학을 활용, 디지털 활용역량 초급 수준 소상공인 대상 온·오프라인 온라인 플랫폼 입점 교육 지원	30시간
실전	플랫폼 협업교육	· 기술 및 시장 트렌트에 신속 대응이 가능한 국내·외 플랫폼사와 협업, 교육·컨설팅을 통해 플랫폼 운영애로 해소	(국내) 15시간 (해외) 20시간
공통	e-러닝 교육	· 소상공인 지식배움터 및 유관기관 연계를 통해 온라인 진출 단계별 온라인 교육 커리큘럼 제공	-

- 지원규모 : 총 40,000명 내외

  * (사업별 지원규모) 1:1방문교육 1,500개사, 디지털특성화대학 1,500개사, 플랫폼협업교육 3,000개사, e-러닝 교육 34,000개사

- 지원금액 : 70억 원

신청·접수

- 공고(예정) 시기 : 2월
- 신청방법 : 소상공인 24(www.sbiz24.or.kr) 온라인 신청·접수
- 제출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사업자등록증, 소상공인확인서
- 선정평가 : 총 2단계 평가(자격검증→ 서류)를 통해 최종 선정

심사·평가 주요내용

▸ 교육 참여 의지, 사업아이템 평가 등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디지털소상공인과
  (전화) 044-204-7876, 044-204-7877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디지털지원실
  (전화) 042-363-7822, 7825, 7826
  (이메일) online@semas.or.kr

참고사항

① 전년도 사업공고

- 공고명 : 2025년 디지털전환지원센터(DT센터) 1:1 현장방문교육
  - (경로) 소상공인24 → 지원사업신청 → 소진공 공고조회
  - (홈페이지)

- 공고명 : 「2025년 소상공인 디지털 특성화대학」소상공인 모집 안내
  - (경로) 소상공인24 → 지원사업신청 → 소진공 공고조회
  - (홈페이지)
- 공고명 : 「2025년 소상공인 플랫폼 협업교육」소상공인 모집 공고
  - (경로) 소상공인24 → 지원사업신청 → 소진공 공고조회
  - (홈페이지)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지원 사업 (글로벌시장지원)

사업개요

소상공인 온라인 수출을 위한 단계별 지원으로 해외 진출 성공률을 높이고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소상공인으로 육성

〈 전년대비 달라지는 내용 〉

구분	'25년	'26년
글로벌패키지	-	-
해외쇼핑몰 입점지원	- (지원대상) ①해외플랫폼 旣입점, ②해외 판매 제품 보유, ③백년 소상공인 중 1개 이상 해당하는 소상공인 - (지원내용) 브랜드 등록, 광고·프로모션, 컨설팅, 풀필먼트 종합 지원	- (지원대상) ①플랫폼사 협업교육 수료 소상공인 중, ②플랫폼 상품 등록을 완료한 소상공인 - (지원내용) 플랫폼 사별 모객 및 매출 향상을 위한 광고·마케팅 집중지원
글로벌쇼룸	-	-
온라인 수출 물류 지원	-	- (지원내용) 해외 이커머스 활용 소상공인 수출 물류비·풀필먼트 서비스 지원신규

지원대상

- 신청자격 : 「소상공인 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지원조건 : 해외 플랫폼 旣입점, 전년도 수출 실적 보유 등(지원 유형별 상이)

◉ 우대사항 :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지원 사업(역량강화 교육) 수혜자 등

신청제외 대상

- ▸ 지원 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 ▸ 해외 수입제품, 대기업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 해외OEM 제품은 계약서 첨부시 신청 가능
-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사실이 있는 경우
- ▸ 휴 · 폐업 중인 경우
- ▸ 부정수급 등으로 정부사업에 참여 제한 중인 경우

지원내용

◉ 지원 세부내용 : 국내 소상공인의 성공적인 해외 시장 진출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플랫폼 입점부터 수출 물류비 지원까지 수준·단계별 지원

구분	지원내용
글로벌 패키지	· 해외 진출 초기 소상공인 대상 맞춤형 패키지* 지원·운영 * 입점지원 패키지, 홍보 패키지, 컨설팅 패키지, 특허·지재권 패키지
해외 쇼핑몰 입점지원	· 해외 플랫폼 진출 업체 대상 플랫폼 內 광고·마케팅·프로모션 지원
글로벌 쇼룸	· 해외 오프라인 팝업스토어 및 박람회 참가 지원, 바이어 상담회, 현지 인플루언서 연계 홍보, 온라인 기획전 등 지원
온라인 수출 물류 지원	· 해외 이커머스 활용 소상공인 대상 수출 상품 입·출고부터 현지 배송 및 사후관리까지 全 과정 물류 서비스 지원

◉ 지원규모 : 소상공인 2,200개사*

* (사업별 지원규모) 글로벌패키지 400개사, 해외쇼핑몰입점지원 1,500개사, 글로벌 쇼룸 100개사, 온라인 수출 물류 지원 200개사

◉ 지원금액 : 총 10,333백만원

구분	국비	자부담	
		금액	비율
글로벌 패키지	인당 최대 400만원	최대 150만원(부가세 포함)	20%
해외쇼핑몰 입점 지원	인당 최대 300만원	-	-
글로벌 쇼룸	년간 4개국 쇼룸 운영	현지 항공·체류비 자부담	-
온라인 수출 물류 지원	인당 최대 600만원	최대 192만원(부가세 포함)	20%

신청·접수

- 공고(예정) 시기 : '26년 2월(1차), 5월(2차 예정)
- 신청방법 : 소상공인24(www.sbiz24.or.kr) 온라인 신청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가점 증빙서류 등
- 선정평가 : ①자격검증 → ②선정평가 → ③최종선정

심사·평가 주요내용

▸ 전년도 수출 실적, 제품 경쟁력, 인증 여부, 수출 노력도 등

- 추진절차 :

① 사업신청·접수	② 지원대상 선정 (선정위원회)	③ 사업 수행	④ 지원 완료 및 우수사례 발굴
공단	공단	공단, 수행기관	중기부·공단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디지털소상공인과 : (전화) 044-204-7877, 7876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온라인판로팀 : (전화) 042-363-7823, 7824

참고사항

① 전년도 사업공고

◉ 공고명 : 2025년 글로벌 패키지 소상공인 모집공고

- (경로) 소상공인24 홈페이지 → 지원사업 신청 → 소진공 공고조회
- (홈페이지)

◉ 공고명 : 2025년 해외쇼핑몰 소상공인 모집공고

- (경로) 소상공인24 홈페이지 → 지원사업 신청 → 소진공 공고조회
- (홈페이지)

◉ 공고명 : 2025년 글로벌 쇼룸 소상공인 모집공고

- (경로) 소상공인24 홈페이지 → 지원사업 신청 → 소진공 공고조회
- (홈페이지)

② 기타사항

◉ 제목 : 글로벌시장지원사업 소상공인 FAQ

- (경로) 소상공인24 홈페이지 → 지원사업 신청 → 소진공 공고조회 〉 검색창 '글로벌' 검색 〉 모집공고 內 FAQ 확인
- (홈페이지)

희망리턴패키지

사업개요

소상공인의 경영위기를 개선하고, 폐업부담 경감 및 신속한 재기를 위해 폐업에서 취업, 경영개선·재창업까지 패키지로 지원

〈 전년대비 달라지는 내용 〉

구분	'25년	'26년
지원 대상	(재기사업화) 경영개선 선별기준 - 매출 감소 10%이상 - 위기지역 소상공인	(재기사업화) 경영개선 선별기준 세분화 매출감소 10%~50% / 50%이상* * 경영진단을 통해 참여기회 부여 여부판단 - 위기지역 소상공인 - 소상공인365 경영개선 권고 소상공인 ('26.7~, 시범)
지원 내용	(사업정리컨설팅) 기 폐업자의 경우 재기전략, 부동산 분야 컨설팅 지원 불가 (점포철거) 최대 400만원 지원 (특화취업)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24억원) * 2,000명 (재기사업화) 국고보조금과 자부담 1:1매칭	(사업정리컨설팅) 폐업 여부와 무관하게 재기전략, 부동산 분야 컨설팅 지원 가능 (점포철거) 최대 600만원 지원 * 단, 폐업일자에 따라 상이 (특화취업)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36억원) * 3,000명, 20만원×6개월 (재기사업화) 국고보조금과 자부담 2:1 매칭
신청 접수	(사업정리컨설팅, 채무조정, 법률자문, 재기사업화, 점포철거, 특화취업지원, 일반 재창업교육) →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 (hope.sbiz.or.kr)	(사업정리컨설팅, 채무조정, 법률자문, 재기사업화) →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 (hope.sbiz.or.kr) (점포철거, 특화취업지원, 일반 재창업교육) → 소상공인24 홈페이지 (hope.sbiz.or.kr)

지원대상

- 신청자격 : 경영위기 또는 폐업(예정) 소상공인 *사업별 신청조건 상이
- 지원조건 : 사업별 공고 참고

신청제외 대상

- 비영리사업자
- 임대사업자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 그 외 지원 제외대상은 세부 사업별 모집공고 확인

지원내용

① (원스톱폐업지원) 사업정리 컨설팅, 점포철거지원, 법률자문, 채무조정 등을 통한 신속하고 안전한 폐업 지원

* (사업정리컨설팅) 폐업 및 재기를 위한 분야별(재기 전략, 세무, 부동산, 심리, 직무·직능) 컨설팅을 통한 원활한 사업정리 및 재기 경로 제공

* (점포철거지원) 점포 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 지원(3.3㎡(평)당 20만원/ 최대 총 600만원)

* 최대 한도는 폐업일('25년 7월 11일) 기준 상이

* (법률자문) 폐업 및 재기과정에서 발생하는 세무, 노무, 임대차계약, 금융 등에 대한 법률자문

* (채무조정) 채무·신용 문제를 신속하게 해소 할 수 있도록 채무조정 솔루션 제공

② (특화취업지원) 폐업 후 구직마인드 함양 위한 단계별 취업교육, 전직장려수당 지급 및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 지원

* (취업교육) 임금 근로자로의 전환을 위한 취업 의지 강화 교육(기초+심화)

* (전직장려수당) 심화교육 수료 시 60만원 + 심화교육 수료 후 12개월 이내에 취업을 완료하고 일정기간 이상 근속 시40만원 지급(최대 100만원)

* (국민취업지원연계) 심화교육 수료 후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시 최대 6개월간 월 20만원 추가 연계 수당 지원(최대 120만원)

③ (재기사업화 지원) 소상공인*의 경영위기 극복 및 준비된 재창업 육성을 위해 전문가 진단 및 맞춤형 개선 전략, 사업화 자금 등을 연계**지원

* 매출액 감소, 중소기업 특별 지원지역·특별재난지역 등 소재, 기폐업 후 사업자 미보유 소상공인 등

** 빅데이터 기반의 경영·재창업 진단, 맞춤형 재기 전략과제 밀착관리, 국비 최대 2천만원(소상공인 2:1 자부담 매칭) 사업화자금 지원 등

신청·접수

- 공고(예정) 시기 : 1월~12월(예산소진 시 까지, 사업별 상이)
- 신청방법

① (사업정리컨설팅, 채무조정, 법률자문, 재기사업화)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hope.sbiz.or.kr) 통한 온라인

② (점포철거, 특화취업지원, 일반 재창업교육)
소상공인24(sbiz24.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 제출서류 : 신청서 및 동의서, 소상공인 여부 등 사업별 공고 참고

문의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재기지원실 : www.semas.or.kr
-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hope.sbiz.or.kr),
  소상공인24(sbiz24.kr),
- 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 소상공인통합콜센터(1533-0100)

참고사항

- 희망리턴패키지 사업 공고문을 통해 사업에 대한 상세정보 확인 가능
  - (경로) 희망리턴패키지 → 알림마당 → 사업공고(통합공고)
  - (홈페이지)

1-22 사장님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어요!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舊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개요

소상공인이 예기치 않은 폐업 시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도록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보험료를 지원

지원대상

- 신청자격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사업주)

신청제외 대상

- 비영리사업자
- 그 외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이 불가한 업종

지원내용

- 지원 세부내용 : 소상공인이 납부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의 50~80%를 환급 지원
- 지원규모 : 4만 2천명 내외
- 지원금액 : 153억원

신청·접수

- 공고시기 : 1~12월(예산소진 시까지)
- 신청방법
  - (고용보험 신규 가입자)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total.comwel.or.kr) 접속 및 로그인(회원가입) 후 고용보험 가입과 고용보험료 지원을 동시 신청
  - (고용보험 기존 가입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 '소상공인24'(sbiz24.kr) 접속 및 로그인(회원가입) 후 '2026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검색하고 신청
- 제출서류 : 공공마이데이터 이용 · 활용 동의를 하는 경우 제출서류 없음
  - 공공마이데이터 이용 · 활용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 아래의 서류 제출 필요

제출서류	발급방법 및 기간
① 영리 목적 사업을 하는 기업 여부 확인 -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최근 1개월 이내 발급 서류로 제출 필요)	① 온라인 : 홈택스 ② 오프라인 : 무인민원발급기, 관할세무서
② 매출액 확인 - (일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 (면세)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① 온라인 : 홈택스 ② 오프라인 : 관할세무서, 무인민원발급기 ※ 발급기간 : 창업일에 따라 ①~⑤ 중 택1 ① 직전 3개 사업연도(36개월) ② (① 불가 시) 직전 2개 사업연도(24개월) ③ (①, ② 불가 시) 직전 1개 사업연도(12개월) ④ (①~③ 불가 시)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달부터 12개월까지 ⑤ (①~④ 불가 및 창업 12개월 미만) 창업일이 속하는 달부터 신청일이 속하는 달까지 모두 제출
③ 상시근로자 수 확인	
가.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① 건강보험공단 어플, 홈페이지, 지사방문 ②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장소 : 구청, 주민센터 등 전국 6,244곳 장소문의 : 정부민원안내콜센터 국번없이 110)
나.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택1 - 건강보험 월별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현황 (※ 사업주 외 근로자의 개인정보 (성명, 주민번호)는 검정펜 등으로 보이지 않도록 가림 처리 필수) -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① 온라인 :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홈택스 ② 오프라인 : 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 발급기간 : 창업일에 따라 ①, ② 중 택1 ① 직전 사업연도 1년(12개월) ② (직전 사업연도 사업기간이 12개월 미만) 신청일이 속하는 월부터 12개월까지 가능한 기간 모두 제출

* 소상공인확인서(유효기간 내)를 제출한 경우 매출액 및 상시근로자 수 확인 서류 생략 가능
-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또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http://sminfo.mss.go.kr) 발급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발급하는 착한임대인 세액공제용 소상공인확인서는 불인정

● 추진절차

모집공고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	고용보험 가입, 납부실적 확인	고용보험료 지원
중기부	신청인 → 근로복지공단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근로복지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신청인

문의처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근로복지공단 특례가입기획부)
  - (전화) 1588-0075(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재기지원실)
  - (전화) 1533-0100(통합콜센터)

참고사항

① 전년도 사업공고

- 공고명 : 2025년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공고
  - (경로) 소상공인24(sbiz24.kr) 〉 로그인 〉 지원사업신청-소진공 공고조회 〉 검색어 '고용보험료' 입력, 조회 〉 2025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공고
  - (홈페이지)

Q&A

Q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먼저 가입하고,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을 하는 건가요?**

A
- 네, 근로복지공단의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먼저 가입을 하신 후에, 고용보험료 지원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방법은 근로복지공단의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total.comwel.or.kr)에서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과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을 한 번에 하실 수 있습니다.

Q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을 하는데 필요한 서류가 있나요?**

A
- 지원대상인 '소상공인' 여부 확인을 위한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 신청 시 공공마이데이터 이용 · 활용에 동의를 하시는 경우에는 별도 서류 제출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Q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을 하면, 지원을 받는데 얼마나 걸리나요?**

A
- 고용보험료 지원을 신청하신 월에 해당하는 보험료부터 5년까지 지원이 되며, 보험료를 납부하시면 약 2개월 후에 신청하신 본인 명의의 계좌로 환급이 됩니다. (예. 1월 10일 고용보험 가입, 고용보험료 지원을 신청하고, 1월 보험료를 법정납부기한인 2월 10일까지 납부 시 다음달인 3월 23일경 환급)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 상담센터 운영

소상공인의 불공정거래 피해 및 노동분야 피해*를 상담하고 법률 전문가 및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지원

* 노동분야 피해 : 소상공인 입장에서 겪을 수 있는 노동관련 분쟁 피해

지원대상

- 신청자격 : 불공정거래 및 노동분야 관련분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신청제외 대상

-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
  * 그 외 사업 시행공고 상 신청 제외 대상으로 규정한 경우

지원내용

- (피해상담) 피해관련 법률전문가(변호사 등) 무료 상담
- (피해구제) 분쟁조정 및 소송시 변호사 수임 지원(자부담 있음)
- (예방교육)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영상 및 피해 사례집 배포

신청·접수

- 전국 78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방문접수

- 홈페이지(http://www.sbiz.or.kr/unfair/main.do) 접수
- 전화상담 접수 (1599-0209)
- 추진절차

피해상담 신청(연중)	→	변호사 상담 및 연계지원	→	처리결과 확인 등 사후관리
소상공인		전문가(변호사, 가맹거래사등) 및 전문기관 (공정거래조정원 등)연계 지원		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

문의처

-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 : 1599-0209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 : (전화) 044-204-7825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법무윤리팀 : (전화) 042-363-6941

참고사항

① 전년도 사업공고

- 공고명 : 2025년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구제 지원 시행공고
  - (경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홈페이지)

시장경영지원(舊 시장경영패키지)

사업개요

정책 수요자 스스로 선택·설계·추진하는 사업을 통해 전통시장의 자생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발전 유도

〈 전년대비 달라지는 내용 〉

구분	'25년	'26년
지원내용	사업지원패키지(공동마케팅, 온라인마케팅, 상인교육, 경영자문) 인력지원패키지(시장매니저, 배송매니저)	역량강화(상인교육, 경영자문) 인력지원(시장매니저, 배송매니저)

지원대상

- 신청자격 : 「전통시장법」제2조의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상인조직)를 보유한 곳

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에 따른 상인회
② 「유통산업발전법」 제18조에 따른 상점가진흥조합
③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시장·상점가 상인을 조합원으로 설립한 협동조합
④ 「민법」에 따라 시장상인이 설립한 법인
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의 8에 따른 상권관리기구
⑥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

- 같은 법 제66조에 의한 상인연합회(시·도 지회 포함)

● 지원조건 : 시장당 국비 36백만원 이하(국비 80% 이하, 지방비·자부담 20% 이상, 자부담은 지자체 부담 가능)

우대사항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0조에 의거, '24년, '25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 중인 지자체에 소속된 곳
- 화재감지기 설치율이 전체 영업점포(노점 제외, 빈점포 제외)의 60% 이상인 곳
- 화재공제(보험)의 공설시장 의무가입 조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납입 공제료를 지원받는 전통시장
- 화재공제(보험) 가입률이 전체 영업점포(노점 제외, 빈점포 제외) 대비 60% 이상인 전통시장
- 풍수해보험(6형) 가입률이 전체 영업점포(노점 제외, 빈점포 제외) 대비 30% 이상인 전통시장(해당 시장의 경우, 개별점포 보험증서 필수 제출)
- 최근 3년간('23~'25년) 시장경영지원(구 시장경영패키지) 이력(예산)이 없거나 적은 곳
- 사업자등록(국세청)을 한 자의 비율이 높은 곳
- 온누리상품권 가맹률, 카드형 온누리상품권 가맹률이 높은 곳

신청제외 대상

- 접수 마감일 기준 해당 전통시장·상점가의 영업 점포 수 대비 화재공제(공단) 또는 화재보험(민간)의 가입률이 50% 미만인 곳
- 접수 마감일 기준 사업주체(상인조직)가 금융기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압류, 국세·지방세 미납 등으로 정상적인 보조금 수령이 어려운 곳
- 접수 마감일 기준 최근 3년 내 기관 또는 기관의 대표가 보조금법 관련 위반으로 처벌받거나 정부지원사업에 참여 제한 제재 중인 곳
- 상권활성화사업(舊 상권르네상스) 지원 중인 시장('26년 지원예정 포함)
  ※ 상권활성화사업(舊 상권르네상스) 선정구역 내 개별시장도 포함
- '26년에 "전통시장 육성사업(舊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지원이 예정된 곳 단, 인력지원 부문은 중복 수행 가능
- 상권활성화구역에 소속된 개별시장도 별도 신청 가능하나, 해당 상권활성화구역이 선정될 경우 개별시장 신청 건은 선정 제외(중복지원 불가)

지원내용

- 지원 세부내용 : 지원예산 한도 내에서 상인회 자율적으로 역량 강화(상인교육, 경영자문), 인력지원(시장매니저, 배송매니저) 등 지역·상권별 특성을 반영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구분	사업부문	사업 내용
역량 강화	상인교육	‣ 경영, 마케팅, 서비스. 제품개발, 세법, 회계, ICT, 우수시장 견학 등 ‣ 기타 경영현대화를 위한 이론 및 실습교육
	경영자문	‣ 일반경영자문 : 경영전략, 법인설립, 특허·인증 등 ‣ 기타 시장 경영 관련 자문
인력 지원	시장매니저	‣ 상인회 일반 행정사무 및 행정관리 업무 수행 - 회계·사무 등 행정업무, 정부보조사업 관리업무, 상품권 관리업무 등
	배송매니저	‣ 전통시장·상점가 내 공동 택배, 배달 등의 주문 및 배송의 관리 ‣ 근거리 직접 배송의 운영 및 관리

- 지원규모 : 362곳
- 지원금액 : 시장당 국비 36백만원 이하

신청·접수

- 공고(예정) 시기 : ’25년 10월(‘26년 사업 공고)
- 신청방법 : 온라인(전자문서, 소상공인24(www.sbiz24.kr))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점포 명부 확인서, 가점 증빙 서류 등
- 선정평가 : 선정평가위원회(지방청, 소진공, 지자체, 외부전문가) → 심의조정위원회(지방청, 소진공, 지자체, 외부전문가) → 최종선정(중기부)

심사·평가 주요내용

‣ 정량(60점), 정성(40점), 가·감점(±10점)
  * 정량 지표 : 온누리상품권 가맹률, 시장 상인회 가입률, 가격 표시율 등
  * 정성 지표 : 타당성, 효과성, 노력도, 협력도

◉ 추진절차

사업 공고	지방청별 예산 규모 배분	사업 신청	신청 내용 평가
중기부	중기부	‘상인회 등’	지방청, 소진공

정산	사업수행	선정 통보	지원 시장 선정
소진공 ↔ 수행기관	상인회 ↔ 수행기관	소진공 → 상인회 등	지방청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과 : 044-204-7893, 7902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시장경영지원실 : 042-363-7637~9

참고사항

①전년도 사업공고

◉ 공고명 : ‘25년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모집공고

- (경로)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 사업공고
- (홈페이지)

Q&A

Q **사업 신청시 선택한 사업부문만 수행할 수 있나요?**

A 사업 선정 후, 소진공의 사업계획서 승인을 통해 신청시 선택한 사업내용의 변경(예산, 사업 부문 등)이 가능합니다. 단, 국비 증액은 불가합니다.

Q **2명 이상 인력지원이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인력 구성 및 신청 가능합니다.

전통시장육성(舊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사업개요

지역의 역사·문화·관광 자원과 연계하여 전통시장의 차별화된 경쟁력 강화 및 시장별 브랜딩 전략을 고도화하여 지역 랜드마크로 육성

〈 전년대비 달라지는 내용 〉

구분	'25년	'26년
신청사업	① 특성화시장 육성사업(문화관광형시장, 첫걸음기반조성, 디지털 전통시장) ② 신규사업 신설(백년시장 육성)	① 사업명 변경 *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 전통시장육성 ② 첫걸음기반조성, 디지털 전통시장 폐지 ③ 신규사업 신설(전통시장육성(브랜드시장))
신청요건	① 화재공제 가입률 45%이상 ② 상인회 가입률 80% 이상 ③ 상인회비 납부율 80% 이상 ④ 온누리상품권 가맹률 80% 이상, 충전식 카드 가맹률 75%이상(모두 충족)	① 화재공제 가입률 50%이상 ② 상인회 가입률 80% 이상 ③ 상인회비 납부율 80% 이상 ③ 온누리상품권 지류 가맹률 80%, 디지털(카드+모바일) 가맹률 70%이상(모두 충족)
우대요건	① 전체 점포 대비 '20.1월 이후 임대료 인하 점포가 20%이상인 곳 ② 전통시장 상인과 임대인 간의 상생협약 동의률(70~80%이상) ③ 협동조합 설립이 완료된 곳	삭제

지원대상

- 신청자격 :「전통시장법」제2조의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상인조직)를 보유한 곳

- 지원조건 : (문화관광형시장) 2년간, 최대 10억원 이내
  (브랜드 전통시장) 2년간, 최대 30억원 이내
- 우대사항(공통)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0조에 의거, '24년, '25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 중인 지자체에 소속된 곳
  - 화재감지기 설치율이 전체 영업점포(노점 제외, 빈점포 제외)의 60% 이상인 곳
  - 화재공제(보험)의 공설시장 의무가입 조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납입 공제료를 지원받는 전통시장
  - 화재공제(보험) 가입률이 전체 영업점포(노점 제외, 빈점포 제외) 대비 60% 이상인 전통시장
  - 풍수해보험(6형) 가입률이 전체 영업점포(노점 제외, 빈점포 제외) 대비 30% 이상인 전통시장(해당 시장의 경우, 개별점포 보험증서 필수 제출)

신청제외 대상(문화관광형시장 기준)

- 공고일 기준 온누리상품권 부정 유통에 가담한 것으로 확인되어, 과태료 처분을 받은 상인회 중 접수 마감일 기준 과태료를 미납한 상인회
- 중기부 또는 공단으로부터 '사업 참여제한' 기간 중에 있는 경우
- 글로벌명품시장 또는 지역선도형시장 등을 지원받은 경우
- 최근 1년 내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또는 청년몰 사업 추진 중 중도 포기한 시장
- '24년도 선정('25년 종료) 문화관광형 육성사업 지원 시장
- '25년도 선정 첫걸음기반조성 지원 시장
- '15년 ~ '25년도 골목형시장 및 문화관광형시장 지원 횟수가 3회 이상인 시장
- 상권활성화사업(舊 상권르네상스) 지원 중인 시장('26년 지원예정 포함)

지원내용

- 문화관광형시장 : 지역 문화·관광자원을 연계하여 시장 고유의 특장점을 집중 육성하는 상인 중심의 프로젝트 지원

- 문화, 관광, 역사 등 지역특색과 연계한 시장 투어코스 개발, 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 관광콘텐츠 육성
- 전통시장의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대표상품 개발 또는 개발 완료된 상품의 홍보 · 마케팅 등 판로개척 지원

* 지원규모 : 총 47곳 내외(도약시장 포함) / 지원금액 : 시장당 2년간, 최대 10억원 이내

◉ 백년시장(계속) : 향후 100년이상 지속할 수 있는 역사를 갖춘 전통시장을 발굴하여 경제·문화·사회적 랜드마크로 육성

- 향후 백년을 이어갈 수 있는 역사, 시장의 상징성을 살린 브랜드 구축, 역사·문화적 특색을 활용한 스토리텔링 등
- 백년시장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활용하여 인테리어, 테마거리 조성 등 지역 랜드마크 도약 기반 마련
- 백년 브랜드를 활용한 굿즈, 특화 상품, 체험 행사 개발 등 백년시장 지속가능한 수익원 창출

* 지원규모 : 총 2곳 내외 / 지원금액 : 시장당 3년간, 최대 40억 이내

◉ 브랜드 전통시장 : 시장의 역사·문화적 자산을 기반으로 지역 내 구심점이 되도록, 브랜드 컨설팅부터 수익창출까지 맞춤형 패키지 지원

- 전문 컨설팅을 통해 시장별 브랜딩 전략을 고도화하여 테마 공간, 컨텐츠, 디지털 기반 인프라까지 종합 지원
- 문화형, 생활형, 유통형 등 시장의 기능에 따라 특성별 시설 조성 및 외관 개선
- 시장 고유 서사와 연계하여 특화행사, 관광 상품, 체험형 서비스, 굿즈 등 시그니처 컨텐츠 개발
- 간편결제, 모바일 오더, 온라인몰 연계 등 디지털 기반을 조성하여 고객 접근성 제고

* 지원규모 : 총 10곳 내외 / 지원금액 : 시장당 2년간 최대 30억 이내

신청·접수

- 공고 시기 : 매년 9 ~ 10월 중
- 신청방법 : 소상공인24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
- 제출서류 : 계획서, 가점 증빙서류 등
- 선정평가 : 총 4단계 평가(기초 → 현장 → 서류 → 발표)를 통해 최종 선정

심사·평가 주요내용

▸ 기초자격, 현장 실사, 사업계획서 등 평가

- 추진절차

모집공고 (9월 중)		신청 · 접수 (9월~10월)		선정평가 (11월)		선정 (12월 중)
중기부·소진공	→	전통시장 (서류제출) → 시·군·구(신청) → 시·도(추천) → 소진공(접수)	→	소진공(기초평가) 및 평가위원단 (현장평가·발표평가)	→	중기부(선정심의) 및 소진공(결과발표)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과 : (전화) 044-204-7902, 7893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특성화지원팀
  (전화) 042-363-7662~3, 7672~4
  (이메일) culture@semas.or.kr

참고사항

① 전년도 사업공고

- 공고명 : '25년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모집공고

- (경로)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 사업공고
- (홈페이지)

Q&A

Q **문화관광형시장 제외 요건('15~'25, 지원횟수 3회 이상) 관련하여 '14년 선정('14~'16)의 경우에도 지원횟수로 포함되나요?**

A 지원 기준이기 때문에 '14년 선정도 지원 횟수로 포함됩니다.

Q **문화관광형시장 관련, 2년 최대 10억 이내에서 희망하는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신청단계에서 사업계획서 작성 시 최대 금액(10억)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이후 최종 선정 시 지원시장별 사업비는 시장규모, 지원이력 등을 고려하여 확정내시로 통보할 예정이며 시장에서 자체적으로 정할 수 없습니다.

Q **선정 이후 중도 포기하면 제재조치가 있나요?**

A 평가 도중 포기는 제재조치가 없으나, 사업선정(확정내시) 이후 포기는 제재조치가 있습니다.

또한, 지자체 예산 부족으로 인하여 사업선정 이후 사업 포기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제재조치가 있습니다.

Q **디지털전통시장, 첫걸음기반조성 사업은 '26년에 운영하지 않나요?**

A 해당 사업은 정부 정책 방향성으로 인하여 폐지되었습니다. 이에 '26년 신규 모집 물량은 없으나 '25년에 디지털 고도화 사업으로 선정된 전통시장 2년차 대상에 한해 '26년까지 사업 운영됩니다.

청년상인 육성(舊 청년몰 활성화)

사업개요

예비 청년상인의 전통시장 창업 지원, 기지원 기청년몰의 사후지원 및 청년상인의 자생력 강화 도약지원 등으로 젊은 고객 유입을 통한 전통시장 활력 제고 및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 기여

〈 전년대비 달라지는 내용 〉

구분	'25년	'26년
신청사업	① 청년몰 활성화사업 ② 청년상인 육성	① 청년몰 활성화사업 이관(전통시장육성재단) ② 청년상인 육성 이관(전통시장육성재단)

전통시장 화재공제

사업개요

전통시장 상인을 대상으로 저가의 보장성 공제사업을 도입, 가입자 납부 공제료로 재원을 조성하여 화재 피해 발생시 가입한도 내 실손을 보상

〈 전년대비 달라지는 내용 〉

구분	'25년	'26년
지원내용	-	특약상품 신설 (화상5대 골절 수술 위로금)
	지원한도 최대 6천만원	지원한도 최대 1억원

지원대상

- 신청자격 :전통시장 특별법 상 전통시장 內 개별점포(등록, 인정)

신청제외 대상

- 전통시장 구회 외 점포
- 사업자 등록증이 없는 점포
- 소재지가 불명확한 점포

지원내용

- 가입목적물 : ① 건물(자기점포, 임차점포), 시설(내외부 마감재, 조명시설 및 부대시설) 및 집기, ② 재고자산, ③ 타인의 신체 및 재물(화재배상책임 특약)
- 가입기간 : 가입일(공제료 납입일)로부터 1,2,3년 선택
- 보상방식 : 가입한도(최대 건물 5천만원, 동산 5천만원) 내 실손보상
- 상품구성 : 기본상품(재물손해), 임차자배상책임 특약, 화재배상책임, 음식물배상책임, 화재벌금, 시설소요·관리자 배상책임 특약, 점포휴업일당 특약, 화상·5대 골절 수술 위로금
- 납입방법 : 일시납
- 공 제 료 : 건물구조급수에 따라 2개 등급(A, B)으로 차등

〈가입 상품 예시〉

구분			2천 만원 (건물/동산 각 1천만원)	4천만원 (건물/동산 각 2천만원)	6천만원 (건물/동산 각 3천만원)	8천만원 (건물/동산 각 4천만원)	1억원 (건물/동산 각 5천만원)
주계약	재물 손해	A급	66,000원	66,000원	132,000원	198,000원	66,000원
		B급	101,500원	101,500원	203,000원	304,500원	101,500원
특 약	화재배상책임		- 추가공제료 : 연 6,200원 - (대인) 1인당 사망1억, 부상 2천만원 한도 / (대물) 1억 한도				
	임차자 배상책임		- 가입시 건물요율의 10% 할인 적용				
	음식물 배상책임		추가공제료 : 연 16,600원 - (대인) 1인당 1천만원, 1사고당 1억원 한도 - (대물) 1사고당 1천만원, 공제기간(1년다원)중 5천만원 한도 (자기부담금 30만원)				
	화재벌금 특약		추가공제료 : 100원 계약자의 벌금형 확정 판결에 따른 실손 보상(형법170조) 1.5천만원 / (형법171조)2천만원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 특약		- 추가공제료 : 26,600원 - (대인) 1인당 1천만원, 1사고당 1억원 한도 - (대물) 1사고당 1억원, 공제기간(1년다원) 중 1억원 한도 (자기부담금 10만원)				
	점포휴업일당 특약		- 추가공제료 : 2,400원 - 1사고당 30일 한도(매 1년마다 총 60일 한도) - 점포휴업 일당(3일 초과)=복구기간 내 휴업일수X1일당 가입금액(5만원)				
	화상·5대 골절 수술 위로금		- 추가공제료 : 연 300원 - 1사고당 500,000원				

신청·접수

- 공고(예정) 시기 :상시 가입
- 신청방법
  - 전통시장 화재공제 홈페이지에서 가입신청서 작성
  - 상담사를 통해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 신청서 작성
- 제출 서류 : 화재공제 가입 신청서 , 건축물대장 또는 등기부 등본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과 : 044-204-7898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시장경영지원실 : 042-363-7612

Q&A

Q **화재공제 가입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전통시장 화재공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가입신청 하시거나, 화재공제 상담사를 통해 오프라인으로 가입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Q **화재공제 가입시 제출서류는 어떤 것이 있나요?**

A 가입신청서와 사업자등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업자등록증 1부, 건물구조급수를 A급으로 선택할 경우 건물 자재를 확인할 수 있는 건축물대장 또는 등기부등본 1부가 필요합니다.

전통시장 화재 안전점검

사업개요

전통시장 시설물에 대한 사전점검을 통해 화재 등 안전 위험요인을 파악 · 개선하고, 소방 · 전기 · 가스 등 분야별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체계적인 안전점검 및 안전교육을 지원

지원대상

- 전국 전통시장 대상 3년 단위 주기적 점검
  - 지역 · 규모 · 예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상설점포 없이 노점으로만 구성 된 시장
▸ 영업점포 수가 10개 이하인 시장

지원내용

- 전통시장의 공용부분·개별점포 시설물에 대한 분야별 화재안전 점검 및 개별 점검결과보고서 작성·제공(500곳 내외 시장)
  - 소방 · 전기 · 가스 분야별 시설물 점검
  - 상인 체험형 안전교육 실시(소화기, 소화전 등 소방설비 사용법 등 교육)

- 분야별 안전시설 취약정도에 따라 시장별로 안전등급화하여 점검 보고서 작성 및 전산시스템을 활용한 관계기관 간 점검결과 공유

〈분야별 점검내용〉

구분	점 검 내 용	비고
소방	• (공용구간) 소방시설 관리 및 공용 소화기 비치 수량·상태, 아케이드 및 방화문 설치 · 유지, 시설 개·보수비용 산정 등 • (개별점포) 소화기 비치여부 및 보급비용 산정, 자동확산 소화장치, 스프링클러 등 소화시설 보유 및 관리실태 등	분야별 상인 안전교육 실시 및 시장별 안전 등급화
전기	• (공용구간) 아케이드 작동 전기설비, 주차장·쉼터·상인회 사무실 등 전기설비, 전기안전관리자 상주 여부 등 • (개별점포) 절연, 인입구배선, 누전차단기, 옥내·외 배선, 접지 상태 등	
가스	• 공용구간 및 개별점포의 LPG 시설, 도시가스 시설 점검 * 가스누출 점검, 감지기상태 점검, 가스용기 보관함 점검 등	

신청·접수

- 별도 신청 절차 없음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과 : 044-204-7898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시장경영지원실 : 042-363-7615

Q&A

Q **점검 후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설 개·보수도 해 주나요?**

A 공용부분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시설현대화사업 예산으로 시설물 개·보수 지원이 가능하며, 개별점포의 안전시설물은 중기부의 안전관리패키지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이 가능합니다.

전통시장 안전관리패키지

사업개요

재해로부터 안전한 전통시장의 조성을 위해 전기·소방·가스·기타 분야에 대해 개별점포 내 안전시설의 설치 · 정비를 지원

〈 전년대비 달라지는 내용 〉

구분	'25년	'26년
지원대상 지원내용	공용구간 지원은 총 사업비의 10% 이내	공용구간 지원은 총 사업비의 20% 이내
	소방, 전기, 가스 , 기타분야 안전시설물	스마트 안전기술, 쿨링포그, 이동식 냉풍기 지원 항목 추가
지원조건	민간화재보험 및 화재공제 가입률 45% 이상	민간화재보험 및 화재공제 가입률 50% 이상

지원대상

● 신청자격 :

1) 시장단위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의한 전통시장·상점가·골목형 상점가·상권활성화구역(이하 '전통시장')으로서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곳
- 영업점포의 30% 이상 또는 100개 점포 이상 안전관리패키지를 신청한 곳

- 영업점포 기준 민간화재보험 및 화재공제 가입률 50% 이상인 곳

2) 개별점포단위 (노후전선설비)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의한 전통시장·상점가·골목형 상점가·상권활성화구역(이하 '전통시장') 내 개별점포로서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곳
- 전기안전등급 D,E등급인 점포
- 화재공제 및 민간화재보험에 가입한 점포(공고마감일 기준)

● 우대사항

- 최근 5년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미수혜 시장
- 소방·가스·전기등급 C이하로 화재 위험이 높은 시장
- 화재보험(공제+민간화재보험) 가입률이 높은 시장(구간별 가점)
- 기타 공고시 안내되는 사항

신청제외 대상

▸ 영업점포의 30% 미만이 신청한 시장
▸ 민간자부담 확보가 불가능한 시장
▸ 동일한 지원사업에 선정 된 지 5년 미만인 곳

지원내용

● 지원 세부내용 : 전통시장 개별점포 내 안전시설물 지원

사업부문	지원품목 예시
전기분야	▸ 전통시장 개별점포 내 전기설비 개선(차단기 및 분전반, 옥내배선, 콘센트, 스위치 등)
소방 분야	▸ 개별점포별 화재알림시설(감지기, 수신기, 속보기 등) 설치 ▸ 개별점포의 화재 안전 품목
가스분야	▸ 개별점포별 가스 안전시설물 설치(가스 보관함, 가스누출 경보기, 가스차단기 등)
기타분야	▸ 개별점포의 화재 안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품목 ▸ 풍수해, 폭염*·폭설·폭우 등을 예방할 수 있는 시설물 * 쿨링포그, 이동식 냉풍기 ▸ 스마트안전기술(AI 화재감시 CCTV, 원격점검 시스템, 지능형출동시스템 등)

- 지원규모 : 67곳
- 지원금액 : 115억원

신청 · 접수

- 공고(예정) 시기 : 26년 신청 접수 완료(27년 공고는 '26.8월 예정)
- 신청방법 : 상인회가 관할 기초지자체 접수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동의서 등 공고문 내 서류 작성
- 선정평가
  - 현장평가(해당 점포의 사업 타당성, 계획 적정성 등)
    * 지방청, 시도담당자, 전기안전전문가 3인의 평가위원으로 구성
  - 서류평가(예산의 적정성, 사업의 필요성 등)
    * 전기안전전문가 등 5인의 평가위원으로 구성
- 추진절차 : 전통시장 → 시 · 군 · 구 → 시 · 도 → 중기부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과 : 044-204-7898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시장경영지원실 : 042-363-7616

참고사항

① 2026 사업공고

- 공고명 : 2026년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공고
  - (경로)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 사업공고
  - (홈페이지)

Q&A

Q **공용구간에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A 개별점포에 대해 지원하고 있지만, 총사업비의 20% 내에서 공용구간 지원이 가능합니다.

온누리상품권 발행

사업개요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판매 촉진을 위해 발행하는 법정 상품권으로, 전국 24.2만여개의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

상품권구매처

- 지류상품권 : 16개 금융기관
  - 신한은행·우리은행·국민은행·대구은행·부산은행·광주은행·전북은행·경남은행·기업은행·농협은행·수협은행·하나은행·수협중앙회·신협·새마을금고·우체국
- 디지털상품권 : '디지털온누리' 앱(APP)

  * 기업구매는 https://onnuribiz.komscopay.com/에서 구매가능

상품권구매한도

- 개인구매
  - 지류상품권 : 50만원(5%할인)
  - 디지털상품권 : 100만원(7~10%할인)
- 기업구매(구매한도없음)
  - 지류상품권 : 할인없음
  - 디지털상품권 : 할인없음

상품권사용처

- 전국 전통시장, 상점가(골목형상점가 포함) 및 상권활성화구역, 자율상권구역 내 가맹점 및 백년소상공인 가맹점포에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
-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은 온라인 전통시장관에서 온라인 사용 가능
  - 온라인 사용처는 디지털온누리 App 혹은 온라인 사용처*에서 확인

  * https://onnurigift.or.kr/online_market

상품권종류

- 지류상품권 : 5천원권, 1만원권
- 디지털상품권 : 1천원 이상 충전

발행규모

- '26년 약 5.5조원 발행

문의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 1357 → 0번
-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콜센터 : (개인) 1670-1600,
  (기업) 1670-4007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상품권사업실
  (전화) 042-363-7640, 7651, 7634, 7636, 7642~4, 6852~9
-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과
  (전화) 044-204-7874, 7900, 7908

Q&A

Q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이란 무엇인가요?**

A 디지털 온누리 앱에 등록하여 등록한 계좌를 통해 상품권 구매(충전) 후, 실물 카드결제 방식 혹은 QR결제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전용 상품권입니다.

Q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사용 혜택은 무엇인가요?**

A
① 별도의 카드발급 없이 고객이 기존 보유한 카드를 등록해 카드결제 방식과 동일하게 사용 가능(삼성페이, 카드사 앱결제 가능)
② 상품권 할인혜택과 카드사용실적 반영 가능
③ 전통시장에서 사용시 소득공제 40% 적용

용어 설명

온라인가맹 : 온라인가맹은 ongift.or.kr으로 기존 오프라인 가맹신청(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가맹신청서 제출)과 별도로 간편하고 신속하게 가맹신청 가능한 방법을 말함

소상공인 빅데이터 플랫폼(소상공인365)

사업개요

민·관 협업을 통한 소상공인 데이터 확보·연계로 소상공인 빅데이터 플랫폼(소상공인365) 구축·운영하여 준비된 창업과 경영역량 강화 및 데이터 기반 정책 제공

〈 전년대비 달라지는 내용 〉

구분	'25년	'26년
지원 내용	상권분석, 경영진단, 트렌드 정보, 소상공인 통계 등을 제공하는 소상공인 빅데이터 플랫폼	AI 기반 경영진단 서비스 고도화 및 상권정보 통계 정보 제공 확대

지원대상

- 全국민(예비 창업자 및 소상공인), 정책담당자

지원내용

- 준비된 창업 및 경영안정을 위해 상권정보 및 사업장별 경영진단을 제공하는 '소상공인 빅데이터 플랫폼(소상공인 365)' 구축
  - (상권분석) 선택 영역별(발달상권, 행정동 등) 매출, 인구, 배달, 업종 등 창업에 필요한 정보 제공

- (경영진단) 소상공인별 비즈니스 환경 및 현황을 분석하여 경쟁력, 생존가능성, 성장전망, 고객관심도 등으로 시각화하여 제공
- (트렌드) 빅데이터 기반 핫플레이스 테마 상권, SNS 트렌드 등 최근 이슈 정보 및 축제, 관광 등 소상공인 관심정보 제공
- (소상공인 통계) 지역별·업종별 소상공인 현황을 실시간 변동이 가능하도록 시각화하여 제공
- (AI 챗봇) 소상공인이 상권정보 및 지원정책을 자연어로 질의하고 답변 받을 수 있는 AI기반 대화형 서비스 제공

〈 빅데이터 플랫폼 주요 서비스〉

상권분석	경영진단
트렌드	**소상공인 통계**

AI 챗봇

〈AI 정책정보〉	〈AI 상권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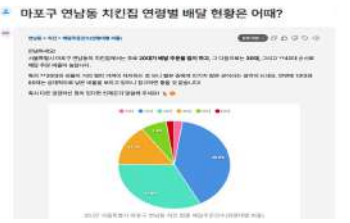

문의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빅데이터실
  (전화) 042-363-7569,7546,7547
  (이메일) bigdata@semas.or.kr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통합콜센터 : 1533-0100

이용방법

- (PC·모바일) 소상공인365 홈페이지(https://bigdata.sbiz.or.kr)

일반경영안정자금

사업개요

일반 소상공인(업력 무관)의 소상공인 자생력 제고 및 생업안전망 구축을 위해 경영활동 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

지원대상

- 신청자격 :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

신청제외 대상

- 불건전 업종 등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 영위하는 경우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경우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자로 규제 중인 경우
- 휴·폐업 중인 경우 등

지원내용

자금명	지원대상	대출한도	대출금리	대출기간
일반경영 안정자금	일반 소상공인 (업력 무관)	7천만원	기준금리 +0.6%p	5년 (2년 거치)

* 정책자금 기준금리 '25.4분기 기준 : 2.71%(분기별 변동)

신청·접수

- 신청기간 : 소상공인정책자금(ols.semas.or.kr) 홈페이지 내 별도 공지
- 신청·접수 :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ols.semas.or.kr)에서 온라인 접수
- 대리대출

	① 지원대상확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② 대출심사 (보증기관 또는 금융기관)	③ 대출 실행 (금융기관)
보증서부 대출	정책자금지원대상 확인 후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 발급	보증기관 심사에 따라 보증여부 결정 및 보증서 발급	보증서 담보 대출실행
신용·담보부 대출		금융기관 심사에 따라 대출여부 결정	신용 또는 부동산 담보 대출실행

문의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www.semas.or.kr)
-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ols.semas.or.kr)
- 전화상담은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1533-0100(정책자금콜센터)

참고사항

① 전년도 사업공고

- 공고명 : 2025년도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
  - (경로)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 알림소식 〉 사업공고
  - (홈페이지)

특별경영안정자금

사업개요

재난 피해, 일시적 경영애로, 금융소외 계층(장애인, 중·저신용자 등), 등에게 경영안정을 위한 자금 지원

〈 전년대비 달라지는 내용 〉

구분	'25년	'26년
자금 개편	긴급경영안정자금(일시적경영애로) - (매출감소 기준) 매출액 10%이상 감소하고 상권활성화구역 인접 시·군·구 등 총 11개 유형 중 하나에 해당 필요 - (매출감소 예외)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등 7개	긴급경영안정자금(일시적경영애로) 개편 - (매출감소 기준) 매출액 15%이상 감소 - (매출감소 확인대상) 삭제 - (매출감소 예외)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등 5개
	재도전특별자금 (지원대상) - (희망형) 희망리턴패키지(사업화자금) 수혜기업, 이커머스 미정산 피해 관련 특별자금 수혜기업 (한도·금리) - (희망형) 1억원, 기준+0.6%p	재도전특별자금 희명형 개편 및 도약형 신설 (지원대상) - (희망형) 희망리턴패키지(사업화자금) 선정기업 - (도약형) 재장업 후 성장하는 성실상환 소상공인 (한도·금리) - (희망형) 1억원, 기준+0.6%p - (도약형) 2억원, 기준+0.4%p
	대환대출 - (대상채무) '24.7.3 이전 취급 대출 - (대출한도) 사업자대출 5천만원, 사업용도 가계대출 1천만원	대환대출 대상채무 및 한도 확대 - (대상채무) '25.6.30 이전 취급 대출 - (대출한도) 사업자대출 5천만원, 사업용도 가계대출 5천만원

* 정책자금 기준금리 '25.4분기 기준 : 2.71%(분기별 변동)

지원대상

◉ 신청자격 :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

신청제외 대상

- 불건전 업종 등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 영위하는 경우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경우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자로 규제 중인 경우
- 휴·폐업 중인 경우 등

지원내용

자금명	지원대상	대출한도	대출금리	대출기간
긴급경영 안정자금	재해확인증 발급 소상공인	1억원	2.0%	5년 (2년 거치)
	일시적 경영애로 소상공인	7천만원	정책자금 기준금리	5년 (2년 거치)
장애인기업 지원자금	장애인 기업	1억원	2.0%	7년 (2년 거치)
신용취약 소상공인 자금	중·저신용 소상공인	3천만원	정책자금 기준 금리 +1.6%p	5년 (2년 거치)
재도전 특별자금	(일반형) 재창업 준비단계, 재창업 초기단계, 채무조정 성실상환 소상공인 (희망형) 희망리턴패키지 사업화자금 선정기업 (도약형) 재창업 후 성장하는 성실상황 소상공인	(일반형) 7천만원 (희망형) 1억원 (도약형) 2억원	(일반형) 기준+1.6%p (희망형) 기준+0.6%p (도약형) 기준+0.4%p	5년 (2년 거치)
청년고용 연계자금	청년대표 및 청년고용 소상공인	7천만원	정책자금 기준금리	5년 (2년 거치)
대환대출	7% 이상 고금리 대출 보유 중·저신용 소상공인	5천만원	4.5%	① 비거치형 10년(비거치) ② 거치형 10년(2년)

* 정책자금 기준금리 '25.4분기 기준 : 2.71%(분기별 변동)

- 지원방법 : 직접대출 / 대리대출
- 직접대출 수행기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대리대출 취급 금융기관(18개) : 국민, 기업, 신한, 우리, KEB하나, 부산, 대구, 광주, 전북, 경남, SC제일, 제주, 농협은행, 산업, 수협은행, 새마을금고, 신협, 산림조합중앙회

신청·접수

- 신청기간 : 소상공인정책자금(ols.semas.or.kr) 홈페이지 내 별도 공지
- 신청·접수 :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ols.semas.or.kr) 온라인 접수
- 직접대출

신청·접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심사평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약정 체결 및 대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적격여부 검토 (정책자금 지원가능 여부 판단)	→	기업(소상공인) 평가를 통한 대출한도 금액 산정	→	대출약정 체결 및 대출 실행

- 대리대출

	① 지원대상확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② 대출심사 (보증기관 또는 금융기관)		③ 대출 실행 (금융기관)
보증서부 대출	정책자금지원대상 확인 후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 발급	→	보증기관 심사에 따라 보증여부 결정 및 보증서 발급	→	보증서 담보 대출실행
신용·담보부 대출		→	금융기관 심사에 따라 대출여부 결정	→	신용 또는 부동산 담보 대출실행

문의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www.semas.or.kr)
-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ols.semas.or.kr)
- 전화상담은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1533-0100(정책자금콜센터)

참고사항

① 전년도 사업공고

- 공고명 : 2025년도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
  - (경로)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 알림소식 〉 사업공고
  - (홈페이지)

성장기반자금

사업개요

유망 소상공인의 성장촉진을 도모하기 위한 자금 지원

〈 전년대비 달라지는 내용 〉

구분	'25년	'26년
자금 개편	상생성장지원자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 (상생형) 상생협약 플랫폼 입점 소상공인 - (TOPS형) TOPS프로그램 수혜기업 (한도·금리) - 운전 2억원. 시설 10억원/ 기준금리+0.2%p	상생성장지원자금 지원대상 개편 (지원대상) - (일반형) TOPS 1단계 기업 - (성장형) TOPS 2단계, 플랫폼 추천기업 - (도약형) Post-Tops 선정기업 (한도) - (일반형) 운전 7천만원 - (성장형) 운전 1억원, 시설 5억원 - (도약형) 운전 2억원, 시설 10억원 (금리) 기준금리 + 0.4%p
	소공인특화자금 (지원대상) - (일반형) 업력무관 소공인 * 대리대출 (한도·금리) - 운전 1억원, 시설 5억원/ 기준금리+0.6%p (대출방식) 대리대출	소공인특화자금 지원대상 개편 (지원대상) - (일반형) 일반 소공인(업력무관) - (유망형) 소공인 특화지원 참여기업, 백년 소공인 (한도·금리) - (일반형) 운전 1억원, 시설 5억원/ 기준금리+0.6%p - (유망형) 운전 2억원, 시설 10억원/ 기준금리+0.4%p (대출방식) - (일반형) 대리대출 - (유망형) 직접대출

지원대상

◉ 신청자격 :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

신청제외 대상

- 불건전 업종 등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 영위하는 경우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경우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자로 규제 중인 경우
- 휴·폐업 중인 경우 등

지원내용

자금명	지원대상	대출한도	대출금리	대출기간
소공인 특화자금	(일반형) 업력무관 소공인 (유망형) 소공인 특화지원 참여기업, 백년 소공인	(일반형) 운전 : 1억원 시설 : 5억원 (유망형) 운전 : 2억원 시설 : 10억원	(일반형) 정책자금 기준금리 +0.6%p (유망형) 정책자금 기준금리 +0.4%p	운전 : 5년 (2년 거치) 시설 : 8년 (3년 거치)
혁신성장 촉진자금	(일반형)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수료, 스마트기술 도입 등 (혁신형) 스마트공장, 매출신장, 수출 소상공인, 소상공인 졸업 후보기업 등	(일반형) 운전 : 1억원 시설 : 5억원 (혁신형) 운전 : 2억원 시설 : 10억원	정책자금 기준금리 +0.4%p	운전 : 5년 (2년 거치) 시설 : 8년 (3년 거치)
민간투자연계 형매칭융자	전문 운영기관을 통해 투자금을 지원받은 소상공인	최대 민간투자금 5배 & 5억원	정책자금 기준금리 +0.4%p	8년 (3년 거치)
상생성장 지원자금	(일반형) TOPS 프로그램 1단계 수혜기업 (성장형) TOPS 프로그램 2단계 수혜기업, 소진공과 상생협약을 맺은 온라인 플랫폼 입점 소상공인 (도약형) Post-Tops 선정기업	(일반형) 운전 : 7천만원 (성장형) 운전 : 1억원 시설 : 5억원 (도약형) 운전 : 2억원 시설 : 10억원	정책자금 기준금리 +0.4%p	운전 : 5년 (2년 거치) 시설 : 8년 (3년 거치)

* 정책자금 기준금리 '25.4분기 기준 : 2.71%(분기별 변동)

- 지원방법 : 직접대출 / 대리대출
- 직접대출 수행기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대리대출 취급 금융기관(18개) : 국민, 기업, 신한, 우리, KEB하나, 부산, 대구, 광주, 전북, 경남, SC제일, 제주, 농협은행, 산업, 수협은행, 새마을금고, 신협, 산림조합중앙회

신청·접수

- 신청기간 : 소상공인정책자금(ols.semas.or.kr) 홈페이지 내 별도 공지
- 신청·접수 :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ols.semas.or.kr) 온라인 접수
- 직접대출

신청·접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심사평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약정 체결 및 대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적격여부 검토 (정책자금 지원가능 여부 판단)	→	기업(소상공인) 평가를 통한 대출한도 금액 산정	→	대출약정 체결 및 대출 실행

- 대리대출

	① 지원대상확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② 대출심사 (보증기관 또는 금융기관)		③ 대출 실행 (금융기관)
보증서부 대출	정책자금지원대상 확인 후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 발급	→	보증기관 심사에 따라 보증여부 결정 및 보증서 발급	→	보증서 담보 대출실행
신용·담보부 대출		→	금융기관 심사에 따라 대출여부 결정	→	신용 또는 부동산 담보 대출실행

문의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www.semas.or.kr)
-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ols.semas.or.kr)
- 전화상담은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1533-0100(정책자금콜센터)

참고사항

① 전년도 사업공고

- 공고명 : 2025년도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
  - (경로)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 알림소식 〉 사업공고
  - (홈페이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분할상환 특례지원

사업개요

코로나19 기간 누적된 채무로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정책자금 차주 대상으로 상환기간 연장 및 금리 감면을 지원

지원대상

- 소상공인 정책자금(직접대출)을 이용하면서 성실상환 중이나, 일시적 경영애로를 겪고 있어 상환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소상공인

지원이 안되는 기업

- 신청기업 또는 대표자(실제 경영자 포함)가 국세·지방세 체납중인 경우
- 신청기업 또는 대표자(실제 경영자 포함)가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 관리규약"에 따라 신용도판단정보, 공공정보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
- 신청기업 또는 대표자가 현재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금을 30일 초과 연체중인 경우
- 신청기업 또는 대표자의 타 금융기관의 대출금이 현재 연체중인 경우
- 자가(임차)사업장 또는 대표자(실제 경영자 포함) 소유 자가주택에 대한 권리침해사실이 있는 경우 또는 권리침해사실이 해제되었더라도 권리침해 해제시점(등기접수일자 기준)이 3개월 이내인 경우
- 신청업체가 휴·폐업 중인 경우

선정요건

- '20년 4월~'25년 6월 중 영업한 소상공인 중 다음의 코로나19 피해로 인한 경영애로 사항 중 1개 이상 해당하는 자

〈 코로나19 피해로 인한 경영애로 사항 〉

구분	내용
매출감소	'20년~'23년 中 연말 매출액 대비 '24년말 매출액이 감소한 경우
다중채무자	지원대상 채무를 제외하고 코로나19 기간('20.1.1~'23.12.31)에 발생한 타 금융기관의 잔존 채무가 1개 이상인 경우
중·저신용자	신청시점 기준 중저신용자(NCB 839점 이하)에 해당하는 자
부실징후	소진공에서 부실징후를 포착하여 자체 모니터링 중인 업체

지원내용

구분	내용
상환기간 최대 7년 연장	상환연장 신청 계좌(직접대출)의 가중평균 잔여 상환기간 + 최대 7년(84회) · (통합계좌 운용) 복수의 대출을 이용 중인 경우 상환연장 신청 계좌의 총 잔액을 통합하여 상환기간이 연장된 하나의 대출계좌를 개설 ※ 단, 보유한 직접대출 계좌들에 고정금리·변동금리가 혼재된 경우, 고정금리 통합계좌와 변동금리 통합계좌의 2계좌 생성
금리(1%p) 감면	상환연장 신청 계좌(직접대출)의 가중평균 적용금리 + 가산금리* - 1%p(감면) ※ 가산금리 : 정상계좌(0.2%), 30일 이하 연체계좌(0.4%) · 감면기간 : 연장된 총 상환기간의 만기일까지 적용

신청·접수

- 신청기간 : '25.7.30(수) ~ '26.6.30(화), 18:00
  - * 단, 예산 소진 시까지
- 신청방법
  - (온라인)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ols.semas.or.kr)
  - (오프라인) 전국 78개 소상공인지원센터

◉ 추진절차

신청·접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심사평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약정 체결 및 실행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적격여부 검토 (지원가능 여부 판단)	경영애로 및 정상화 가능성 심사	분할상환 약정 체결 및 실행

문의처

◉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ols.semas.or.kr)

◉ 전화상담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1533-0100(정책자금콜센터, 내선1번)

참고사항

① 사업공고

◉ 공고명 : 2025년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분할상환 특례지원 시행 수정 공고

- (경로)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 알림소식 〉 사업공고
- (홈페이지)

기관별, 월별 지원사업 및 사업공고 현황

◉ 기관명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공고시기	지원사업명	사업공고명	문의처
'25년 10월 (마감)	시장경영지원	2026년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공고	042-363-7637~9
	전통시장육성(문화관광형)	2026년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공고	042-363-7662~3, 7672~4
'25년 12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분할상환 특례지원	2025년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분할상환 특례지원 시행 수정 공고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1533-0100 (정책자금콜센터, 내선1번)
12월 말	일반경영안정자금 등 3개	2026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	중소기업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소상공인통합콜센터 (1533-0100)
1월	전통시장육성 (브랜드 전통시장)	전통시장 육성(브랜드 전통시장) 지원사업 모집공고	042-363-7662, 7672
	소공인 스마트제조지원	소공인 스마트제조지원	042-363-7912, 7908, 7909
	소공인 클린제조환경조성	소공인 클린제조 환경조성	042-363-7904, 7906
	소공인 판로개척지원	소공인 판로개척지원	042-363-7915, 7917, 7919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구축·운영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구축·운영	042-363-7902, 7908
	백년 소상공인 육성	백년소상공인(백년가게, 백년소공인) 지원	042-363-7905, 7606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2026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통합콜센터 1533-0100
	희망리턴패키지	2026년 희망리턴패키지 사업 시행 공고	042-363-7702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사업 모집공고	042-363-7922
2월	혁신 소상공인 창업지원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예비창업자 모집공고	042-363-7726, 7738
	강한 소상공인 성장지원	강한 소상공인 성장지원사업 소상공인 모집공고	042-363-7723, 7737,7723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로컬크리에이터(개인·협업) 참여 소상공인 육성 공고	042-363-7735, 7736
	로컬브랜드 창출	로컬브랜드 창출팀 모집공고	042-363-7735, 7736
	우리동네 크라우드펀딩	우리동네 크라우드펀딩 소상공인 모집공고	042-363-7727, 7725

	소상공인 온라인판로 지원사업 (역량강화교육)	2026년 디지털 특성화대학 소상공인 모집 안내	042-363-7826
	소상공인 온라인판로 지원사업 (역량강화교육)	2026년 디지털전환지원센터 (DT센터) 1:1 현장방문 멘토링 소상공인 모집	042-363-7825
	소상공인 온라인판로 지원사업 (역량강화교육)	2026년 플랫폼 협업교육 소상공인 모집(국내)	042-363-7825
	소상공인 온라인판로 지원사업 (글로벌시장지원)	2026년 해외 플랫폼 협업 교육&진출 지원 소상공인 모집공고	042-363-7823, 7824
	소상공인 온라인판로 지원사업 (글로벌시장지원)	2026년 글로벌 패키지 소상공인 모집공고	042-363-7823, 7824
	소상공인 온라인판로 지원사업 (글로벌시장지원)	2026년 온라인 수출 물류 지원 소상공인 모집공고	042-363-7823, 7824
	지역상권육성(글로컬, 로컬거점, 유망 골목상권) 사업	지역상권육성 통합공고	042-363-7603
3월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 지원	2026년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구제 공고	042-363-6941
	혁신 소상공인 투자연계	혁신 소상공인 투자연계지원 소상공인 모집 공고	042-363-7727, 7725
	혁신 소상공인 AI 활용지원	혁신 소상공인 AI 활용지원 ('26년 신규사업으로 변동 소지 있음)	042-363-7735, 7736
	글로벌 소상공인(K-소상공인) 육성	글로벌 소상공인 (K-소상공인) 육성 ('26년 신규사업으로 변동 소지 있음)	042-363-7727, 7737.,7723
	소공인 특화지원센터 운영·지원	소공인 특화지원센터 설치·운영	042-363-7903, 7909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참여 소상공인 모집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스마트상점콜센터 (1600-6185)
	소상공인 온라인판로 지원사업 (글로벌시장지원)	2026년 글로벌 쇼룸 소상공인 모집공고	042-363-7823, 7824
5월	소상공인 온라인판로 지원사업 (글로벌시장지원)	2025년 글로벌 패키지 소상공인 모집공고(2차)	042-363-7823, 7824
	소상공인 온라인판로 지원사업 (글로벌시장지원)	2025년 글로벌 쇼룸 소상공인 모집공고(2차)	042-363-7823, 7824
9월	시장경영지원	2027년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모집공고(예정)	042-363-7637~9

제 2 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지원사업(전년대비) 달라지는 내용

◉ 기관명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table>
<tr><th>구분</th><th>'25년도</th><th>'26년도</th></tr>
<tr><td rowspan="2">중소기업기술혁신 개발사업</td><td><table><tr><th>세부사업</th><th>내역사업</th></tr><tr><td rowspan="3">중소기업기술혁 신개발사업</td><td>수출지향형</td></tr><tr><td>시장확대형</td></tr><tr><td>시장대응형</td></tr></table></td><td><table><tr><th>세부사업</th><th>내역사업</th></tr><tr><td rowspan="2">중소기업기술혁 신개발사업</td><td>글로벌선도기술</td></tr><tr><td>중소기업유망기술</td></tr></table></td></tr>
<tr><td>신규과제 435개 / 617억원</td><td>신규과제 451개 / 1,012억원</td></tr>
<tr><td>민관공동기술 사업화(R&D)</td><td>(지원사업)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 (R&D)에서 지원
* 시장확대형
(기술이전사업화, 구매연계·상생협력)

(지원조건) 최대 2년, 6-8억원 이내
* (기술이전사업화) 최대 2년, 8억원 이내
* (구매연계·상생협력) 최대 2년, 6억원 이내

(지원내용) (기술이전사업화-) R&D지원</td><td>(지원사업) 민관공동기술사업화 (R&D)에서 지원
* 기술이전사업화, TRL점프업(신설), 구매연계·상생협력

(지원조건) 최대 2년, 1-6억원 이내
* (기술이전사업화) (1단계) 9개월, 1억원, (2단계) 최대 2년, 10억원 이내
* (TRL점프업) (1단계) 9개월, 1억원, (2단계) 최대 2년, 10억원 이내
* (구매연계·상생협력) 최대 2년, 6억원 이내

(지원내용) (기술이전사업화·TRL점프업) 단계별(PoC·PoM→ R&D) 지원
* '26년 1단계(PoC·PoM)만 지원, '27년 1,2단계 지원

(가점) (구매연계·상생협력) 성실 의무이행 수요처 우대 가점 부여</td></tr>
<tr><td>투·융자연계기술 개발(R&D)</td><td>(지원내용)<table><tr><th>내역</th><th>지원기업 (개)</th><th>지원규모 (최대)</th></tr><tr><td>스케일업 팁스</td><td>572</td><td>3년, 15억</td></tr><tr><td>딥테크 챌린지 프로젝트 (DCP)</td><td>30</td><td>3년, 36억</td></tr><tr><td>융자연계형</td><td>90</td><td>2년, 5억</td></tr></table></td><td>(지원내용)<table><tr><th>내역</th><th>내내역</th><th>기업수</th><th>지원규모 (최대)</th></tr><tr><td rowspan="2">스케일업 팁스</td><td>일반형</td><td>681</td><td>3년, 20억</td></tr><tr><td>특화형</td><td>100</td><td>3년, 30억</td></tr><tr><td rowspan="2">글로벌 팁스</td><td>일반형</td><td>114</td><td>4년, 50억</td></tr><tr><td>특화형</td><td>10</td><td>4년, 60억</td></tr><tr><td rowspan="2">딥테크 챌린지 프로젝트 (DCP)</td><td>기술 도전형</td><td>59</td><td>3년, 50억</td></tr><tr><td>생태계 혁신형</td><td>5</td><td>4년, 200억</td></tr><tr><td>융자 연계형</td><td>-</td><td>90</td><td>2년, 5억</td></tr></table></td></tr>
<tr><td>창업성장기술개발 (R&D)</td><td>(디딤돌) 첫걸음 트랙 내 여성참여 활성화 R&D 지원

(TIPS) 일반, 딥테크, 글로벌 TIPS 지원</td><td>(디딤돌) 여성참여활성화 R&D를 첫걸음 트랙으로 이동 및 도약 트랙 내 전략기술R&D 신설
(TIPS) '딥테크 트랙'을 '일반형 트랙' 후기 지원 프로그램으로 재편</td></tr>
</table>

구분	'25년도	'26년도
	(TIPS) 일반 트랙 최대 2년, 5억원	(TIPS) 일반 트랙 최대 2년, 8억원
	(디딤돌) 25년 4월 공고	(디딤돌) 첫걸음: 25년 12월, 도약: 26년 3월
디지털기반 중소제조산재예방 기술개발(R&D)	신규	전년도 동일(공고 해당월 및 사업설명 내용 일부수정)
중소기업 수출 핵심 품목 탄소감축 기술개발사업	-	(지원대상) 기술개발(공급) 및 수출(수요) 중소기업, 산·학·연 등 공동연구 개발기관, 탄소감축 효과 실증(검증) 기관 등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지원내용) 중소기업 수출 핵심품목 탄소감축 기술 확보부터 현장 실증을 통한 감축효과 확인까지 완결성 있는 기술개발 지원 - (R&D) 탄소감축이 시급한 중소기업 수출 2대 핵심품목(철강, 알루미늄)에 대한 탄소감축 기술개발 지원 - (실증) 기술 적용 시 공정 조건·생산 제품별 예상 감축 효과 확인, 수요 기업 생산공정에 적용하여 실제 감축량 확인 등 단계별 실증 (지원조건) -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최대 5년, 55억원 이내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비중) 75% 이내
표준공정 기반 공정 최적화 기술개발 (R&D)	-	- 내역1 : 사전연구 및 제조현장진단 - 지원내용 : 4개기관, 17.5억 (기관당 4.37억, 6개월 이내) - 내역2 : 공정최적화 R&D - 지원내용 : 10개 과제, 12.5억원 이내 (과제 당 최대 2년, 10억 이내 지원)
중소제조 특화 Multi AI Agent 개발(R&D)	-	- 내역사업 : PoC 시범연구 - 지원과제 : 12개 과제 내외 - 지원예산 : 36억 (과제당 3억, 6개월 이내 지원) - 지원대상 : 공급기업 및 수요기업 컨소시엄 - 지원분야 : 중소제조 특화 산업 4개 분야(①식품, ②뷰티, ③제약, ④자동차부품)

구분	'25년도	'26년도
산학연 Collabo R&D	◦ (지원유형) - 일반형 예비연구 (8개월, 0.5억원 이내) - 컨소시엄형 예비연구 (8개월, 2억원 이내) - 일반형 사업화 R&D (최대 24개월, 2.6억원 이내) ◦ (가점항목) - 레전드 50+ 선정기업(2점), 산학협력 마일리지(1~2점), 인재육성형 중소기업(1점), 중소기업인력양성대학과 산학협약을 체결한 기업(1점) -〈 신 설 〉	◦ (지원유형) ※ 사업계획에 따라 예비연구 지원 종료 - 일반형 사업화 R&D (최대 24개월, 2.6억원 이내) - 컨소시엄형 사업화 R&D (최대 24개월, 10.4억원 이내) ◦ (가점항목) - 레전드 50+ 선정기업(2점), 산학협력 마일리지(1~2점), 인재육성형 중소기업(1점), 중소기업인력양성대학과 산학협약을 체결한 기업(1점) - 민간투자유치실적(1억원 이상) 보유기업 1점 * 접수 마감일 기준 3년 이내 체결한 투자계약서
지역혁신선도기업 육성(R&D)	주력(주축)산업 영위 중소기업 * 주력산업분야 KSIC코드 보유 중소기업	개편 주력산업 영위 중소기업 * 주력산업분야 + 연관산업 KSIC코드 보유 중소기업
신진 연구인력 채용지원	(지원내용-연구인력) 신진 연구인력을 채용한 중소기업에게 최대 3년간 기준연봉의 50% 지원	① 안 신진 연구인력을 채용한 중소기업에게 최대 3년간 기준연봉의 40% 지원 * 단, 연구인력 장기 재직 기업인 경우 최대 3년간 50% 지원 ② 안 신진 연구인력을 채용한 중소기업에게 최대 3년간 기준연봉의 40% 지원
고경력 연구인력 채용지원	(지원조건-연구인력) 채용(예정) 연구인력은 정규직만 가능하며 공고일로 1년 전에서 공고일 이전까지 채용이 완료된 자	채용(예정) 연구인력은 정규직*만 가능하며 공고일로 1년 전에서 공고일 이전까지 채용이 완료된 자 * 근로계약 범위 내에서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등 유연근무제 가능인력 포함
중소기업 연구인력 현장맞춤형 양성지원	(지원대상-연구인력)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이며 학위취득(예정)자 (4학년 2학기 이상) 및 구직자. 단,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경우, 국내대학에서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에 한함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이며 학사 학위 취득(예정)자(4학년 2학기 이상) 또는 전문학사 학위취득자 중 연구경력 2년 이상인 자 및 구직자,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경우, 국내대학에서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에 한함
혁신제품 지정사업	(신청자격) 최근 5년 내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 R&D사업 수행 완료(성공) 후 그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	(신청자격) R&D사업 수행 완료(우수, 보통)

<table>
<tr><th>구분</th><th>'25년도</th><th>'26년도</th></tr>
<tr><td></td><td>(신청제외대상)
▸ 물품식별번호 세부품명이 제조물품*이 아닌 경우
* 신청제품이 직접생산(또는 협업승인**)이 아닌 단순 공급 또는 OEM제품으로 확인될 경우, 평가 이후에라도 '조달 적합성검토' 단계에서 보류 또는 제외대상이 될 수 있음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39조의2에 따른 협업승인대상 기업은 협업기업선정 확인서 제출

(신청접수)
- 상반기 2월, 하반기 8월

(구매상담회)
1회</td><td>(신청제외대상)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39조의2에 따른 협업승인대상 기업은 협업기업선정 확인서 제출(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지정된 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의 경우에는 직접생산확인서 제출)

(신청접수)
- 상반기 1월, 하반기 7월

(구매상담회)
2회</td></tr>
<tr><td>스마트공장 구축지원</td><td><table><tr><th>구분</th><th>'25년</th></tr><tr><td>지원기간</td><td>(고도화) 최대 9개월,
(동일수준) 최대 6개월</td></tr><tr><td>지원한도</td><td>(고도화) 최대 2억원,
(동일수준) 최대 0.5억원</td></tr></table></td><td><table><tr><th>구분</th><th>'26년</th></tr><tr><td>지원기간</td><td>최대 9개월</td></tr><tr><td>지원한도</td><td>최대 2억원 이내
(단, 목표수준별 2회,
2.5억원 한도)</td></tr></table></td></tr>
<tr><td>자율형공장 구축지원</td><td><table><tr><th>구분</th><th>'25년</th></tr><tr><td>기획기관 요건</td><td>• (실적) AI·DT 관련 컨설팅 실적 10건 이상 보유
• (인력) AI·DT 관련 컨설팅 경험 상근 컨설턴트 5명 이상 보유</td></tr><tr><td>기획기관 선정</td><td>• 요건통과 기관에 대해 기획기관 Pool 구성 및 운영</td></tr><tr><td>기획지원</td><td>• 과제기획 후 현장평가 결과에 따라 과제당 최대 20백만원 차등 지급</td></tr><tr><td>성능지표</td><td>• (공정혁신지표) 6개 중 2개 이상
• (자율형지표) AI·DT 반영 1개 이상</td></tr></table></td><td><table><tr><th>구분</th><th>'26년</th></tr><tr><td>기획기관 요건</td><td>• (실적) AI·DT 관련 컨설팅·기업지원, 과제관리·운영 실적 10건 이상 보유
• (인력) AI·DT 관련 컨설팅·기업지원, 과제관리·운영 상근 컨설턴트 5명 이상 보유</td></tr><tr><td>기획기관 선정</td><td>• 요건검토 및 수행능력평가를 거쳐 기획기관 선정 및 기획기관 Pool 구성
* 지역TP 기본 지정</td></tr><tr><td>기획지원</td><td>• 기획지원 후 최종선정에 따른 협약체결 결과에 따라 과제당 최대 20백만원 차등 지급</td></tr><tr><td>성능지표</td><td>• (공정혁신지표) 8개 중 2개 이상
• (자율형지표) AI·DT 반영 2개 이상</td></tr></table></td></tr>
<tr><td>스마트공장 공급기업 역량진단</td><td>• 지원분야
- 기본진단, 심화진단</td><td>• 지원분야
- 기본-심화진단 통합, 제조AI진단 시행</td></tr>
<tr><td>제조DX멘토단 활용지원사업</td><td>• 내역사업(3개)
- 사전기획, 구축지도, 사후관리</td><td>• 내역사업(4개)
- 사전기획, AX기획, 구축지도, 사후관리</td></tr>
<tr><td>클라우드 제조 솔루션 지원사업</td><td>• 사업분야 명칭 변경 : 클라우드화, 종합솔루션화</td><td>• 사업분야 명칭 변경 : 단독형 클라우드화, 통합형 클라우드화</td></tr>
</table>

<table>
<tr><th>구분</th><th>’25년도</th><th>‘26년도</th></tr>
<tr><td>제조데이터 상품 가공 지원</td><td>• 우대사항
- 제조데이터 라이브러리 거래실적(3)
- 제조데이터 표준(5)</td><td>• 우대사항
- 제조데이터 라이브러리 거래실적(3)
- (신설) ‘25년 제조데이터 컨설팅 (수시모집) 완료 기업(3)</td></tr>
<tr><td>중소기업 스마트 서비스 지원</td><td><table><tr><th>구분</th><th>’25년</th></tr><tr><td>지원 규모</td><td>• 신규 120개사 내외, 기업당 최대 5천만원(총사업비 50% 이내)
• 고도화 25개사 내외, 기업당 최대 1억원(총사업비 50% 이내)
• 통합솔루션 4개사 내외 기업당 최대 5억원(총사업비 50% 이내)</td></tr><tr><td>신청 방법</td><td>• 스마트서비스 지원사업 사업관리시스템 (www.smb-service.kr)을 통한 온라인 신청</td></tr></table></td><td><table><tr><th>구분</th><th>’26년</th></tr><tr><td>지원 규모</td><td>• 신규 150개사 내외, 기업당 최대 5천만원(총사업비 50% 이내)
• 고도화 25개사 내외, 기업당 최대 1억원(총사업비 50% 이내)</td></tr><tr><td>신청 방법</td><td>•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 (www.smart-factory.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 사업관리시스템 통합에 따른 온라인 신청 방법 변경</td></tr></table></td></tr>
</table>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R&D)

사업개요

중소기업의 글로벌 시장확대와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략기술 개발 및 글로벌 기술협력을 통한 R&D지원으로 중소기업의 혁신 성장을 촉진하도록 지원

〈 전년대비 달라지는 내용 〉

<table>
<tr><th>구분</th><th>'25년</th><th>'26년</th></tr>
<tr><td>사업구조 개편</td><td><table><tr><th>세부사업</th><th>내역사업</th></tr><tr><td rowspan="3">중소기업기술 혁신개발사업</td><td>수출지향형</td></tr><tr><td>시장확대형</td></tr><tr><td>시장대응형</td></tr></table></td><td><table><tr><th>세부사업</th><th>내역사업</th></tr><tr><td rowspan="2">중소기업기술 혁신개발사업</td><td>글로벌선도기술</td></tr><tr><td>중소기업유망기술</td></tr></table></td></tr>
<tr><td>지원규모</td><td>신규과제 435개 / 617억원</td><td>신규과제 451개 / 1,012억원</td></tr>
</table>

지원대상

-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지원조건

<table>
<tr><th colspan="2">구분</th><th>개발기간 및 지원한도</th><th>정부지원연구개발비 비중</th><th>지원방식</th></tr>
<tr><td rowspan="2">글로벌선도 기술개발</td><td>수출지향형</td><td>최대 2년, 10억 이내</td><td>65% 이내</td><td rowspan="3">자유공모 (품목지정), 지정공모</td></tr>
<tr><td>글로벌협력형</td><td>최대 5년, 25억 이내</td><td>75% 이내</td></tr>
<tr><td colspan="2">중소기업유망기술개발</td><td>최대 3년, 100억 이내</td><td>75% 이내</td></tr>
</table>

신청제외 대상

- 사업에 참여하는 연구개발기관, 대표자, 연구책임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사업에 참여하는 연구개발기관, 대표자, 연구책임자가 접수마감일 현재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관리지침의 지원 제외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 자세한 사항은 세부사업 공고 확인

지원내용

- 지원 세부내용 : 최대 2~5년, 5억~100억원 이내 지원
  - 글로벌선도기술개발(540억원) : 수출 유망 중소기업의 글로벌 기술경쟁력 확보 및 해외시장 진출 촉진을 통한 사업화 성과 창출을 위해 기술개발 지원
  - 중소기업유망기술개발(472억원) : 중소기업의 기술자립과 혁신 역량 강화를 위해 전략분야 중심의 기술개발 지원
- 지원규모 : 신규과제 451개 내외
- 지원금액 : 신규과제 1,012억원

신청·접수

- 공고(예정) 시기 : 1월 ~ 6월
- 신청방법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 제출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신청자격서류 등
  * 자세한 내용은 세부사업 공고 확인
- 선정평가 : 서면 및 대면평가

심사·평가 주요내용

- 연구개발계획서 및 사업목적과의 부합성 등을 중심으로 평가

◉ 추진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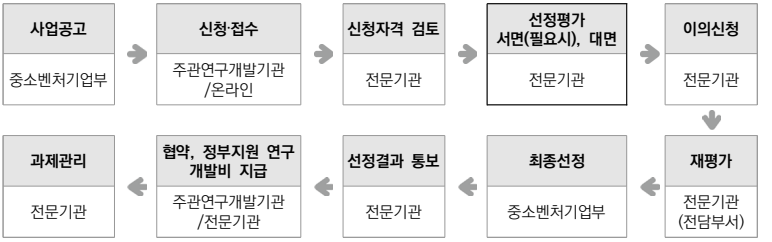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과 : 044-204-7766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기술혁신사업실
(전화) 044-300-0532~0538, 0541~0548
(이메일) 311@tipa.or.kr

◉ 사업문의(1357), 시스템 문의(1877-2041)

참고사항

① 전년도 사업공고

◉ 공고명 : 2025년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

- (경로) IRIS-사업정보-사업공고-마감-'기술혁신개발사업' 검색
- (홈페이지)

Q&A

Q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신청자격 중에서 '졸업제'란 무엇인가요?**

A 졸업제란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을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5회 이상(단, 최근 7년 간 3회 이상) 수행한 중소기업은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없는 제도입니다.

*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관리지침' 및 세부사업 공고 참조

Q **협약체결 이후 연구개발비 집행시, 연구개발계획서에 명시하지 않은 물품을 구매할 수 있나요?**

A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물품은 연구개발계획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구매는 가능합니다. 다만, 연구개발기관이 사용하는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 또는 연리기관이 사용하는 연구실운영비는 연구개발계획서에 명시된 물품에 한하여 구매 가능합니다.

용어 설명

- **자유공모** : 신청기업이 자유롭게 지원대상 과제를 도출하여 응모하는 과제
- **지정공모** : 기술수요조사 등에 의하여 발굴된 지원대상 기술 분야를 지정하여 공고한 과제

민관공동기술사업화(R&D)

사업개요

기획부터 시장 진출까지 민관 협력형 기술사업화 전주기 지원을 통한 공급-수요간 기술성숙도 간극 최소화

〈 전년대비 달라지는 내용 〉

<table>
<tr><th>구분</th><th>'25년</th><th>'26년</th></tr>
<tr><td>지원사업</td><td><table><tr><th>세부사업</th><th>내역사업</th></tr><tr><td rowspan="2">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
(R&D)</td><td>기술이전사업화</td></tr><tr><td>구매연계·상생협력</td></tr></table></td><td><table><tr><th>세부사업</th><th>내역사업</th></tr><tr><td rowspan="3">민관공동
기술사업화
(R&D)</td><td>기술이전사업화</td></tr><tr><td>(신설) TRL점프업</td></tr><tr><td>구매연계·상생협력</td></tr></table></td></tr>
<tr><td>지원조건</td><td>(기술이전사업화) 최대 2년, 8억원 이내

(구매연계·상생협력) 최대 2년, 6억원 이내</td><td>(기술이전사업화)
(1단계) 9개월, 1억원, (2단계) 최대 2년, 10억원 이내

(TRL점프업)
(1단계) 9개월, 1억원, (2단계) 최대 2년, 10억원 이내

(구매연계·상생협력) 최대 2년, 6억원 이내</td></tr>
<tr><td>지원내용</td><td>(기술이전사업화) R&D 지원</td><td>(기술이전사업화·TRL점프업)
단계별(PoC·PoM → R&D) 지원
* '26년 1단계(PoC·PoM)만 지원, '27년 1, 2단계 지원 예정</td></tr>
<tr><td>가점</td><td>신설</td><td>(구매연계·상생협력) 성실 의무이행 수요처 우대가점 부여</td></tr>
</table>

지원대상

◉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내역사업	지원대상
기술이전사업화	(주관연구개발기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중소기업 중 공공기술을 이전받아 후속 상용화 기술개발을 하고자 하는 기업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에 기술을 이전해주는 공공 연구기관·대학 등(필요 시)
TRL점프업	(주관연구개발기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중소기업 중 공공기술을 이전받아 후속 상용화 기술개발을 하고자 하는 기업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에 기술을 이전해주는 공공 연구기관·대학 등 * 1단계는 필요 시, 2단계 과제 선정 시 공동연구개발기관 참여 필수
구매연계·상생협력	(구매연계) 수요처의 '구매계약서' 또는 '구매동의서'를 받은 중소기업 (상생협력) 투자기업의 '투자동의서'를 받은 중소기업

* 자세한 사항은 세부사업 공고 확인

◉ 지원조건 : 총 연구개발비의 75% 이내

구분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비중	지원방식
기술이전사업화	(1단계) 9개월, 1억원 (2단계) 최대 2년, 10억원	75% 이내	자유공모
TRL점프업			지정공모
구매연계·상생협력	최대 2년, 6억원		자유, 지정공모

* 기술이전사업화·TRL점프업은 '26년 1단계 과제만 지원

신청제외 대상

- ▸ 사업에 참여하는 연구개발기관, 대표자, 연구책임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 사업에 참여하는 연구개발기관, 대표자, 연구책임자가 접수마감일 기준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관리지침의 지원 제외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 자세한 사항은 세부사업 공고 확인

지원내용

◉ 지원 세부내용

- 기술이전사업화(200억원) : 대학·출연연 등 공공연구기관에서 개발된 우수 기술을 역량있는 중소기업이 이전받아 사업화를 위한 연구개발 지원
- TRL점프업(100억원) : 전략기술분야 실험실 단계의 고난도 기술을 기술성숙도(TRL) 향상하여 사업화하기 위한 산·학·연 공동 연구개발 지원
- 구매연계·상생협력(303억원) : 수요처 및 투자기업이 구매 또는 투자 의사를 밝히고 개발을 제안한 과제에 대해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지원

〈 기술이전사업화·TRL점프업 지원내용 〉

기술이전사업화 · TRL점프업	1단계('26년 지원)	2단계('27년 지원)
	PoC·PoM 9개월, 1억원	사업화R&D 최대 2년, 10억원 이내

* 기술이전사업화·TRL점프업은 '27년 2단계 사업화R&D 과제 선정 시 공공기술거래플랫폼을 통해 기술이전 계약 체결 필수

** '26년 기술이전사업화/TRL점프업 내역사업은 1단계(PoC·PoM)만 지원, '27년 1단계 수행 완료 과제를 대상으로 우수과제를 선정(경쟁방식(2:1))·2단계(사업화R&D) 지원 예정

◉ 지원규모 : 총 500개 과제 내외

◉ 지원금액 : 603억원(신규)

신청·접수

- 공고(예정) 시기 : 1월(기술이전사업화, 구매연계·상생협력), 3월(TRL 점프업), 5월(구매연계·상생협력)
- 신청방법 : 범부처 통합 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 제출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신청자격서류 등

  * 자세한 사항은 세부사업 공고 확인
- 선정평가 : 서면 및 대면 평가

심사·평가 주요내용

▸ 연구개발계획서 및 사업목적과의 부합성 등을 중심으로 평가

  * 심사·평가 내용이 사업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세부사업 공고 확인

- 추진절차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과
  (전화) 044-204-7763 (이메일) cookie27@korea.kr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기술상용화사업실
  (전화) 044-300-0655, 0671, 0673(이메일) 711@tipa.or.kr
- 사업문의(1357), 시스템 문의(1877-2041)
  정책정보(www.bizinfo.go.kr)

참고사항

① 전년도 사업공고

- 공고명 : 2025년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기술이전사업화) 상반기 시행계획 공고
  - (경로)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사업정보-사업공지-사업공고
  - (홈페이지)
- 공고명 : 2025년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구매연계형) 하반기 시행계획 수정공고
  - (경로)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사업정보-사업공지-사업공고
  - (홈페이지)
- 공고명 : 2025년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상생협력형) 하반기 시행계획 수정공고
  - (경로)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사업정보-사업공지-사업공고
  - (홈페이지)

투·융자연계기술개발(R&D)

사업개요

투·융자연계기술개발사업은 민간투자사(VC 등), 연구개발전문회사 등 민간 전문역량을 활용하여 기술집약형 유망 중소벤처기업을 발굴하고, 민간투자와 연계하여 정부 R&D 지원 및 매칭투자를 통해 기업의 스케일업 촉진 및 글로벌 진출을 지원

〈 전년대비 달라지는 내용 〉

<table>
<tr><th>구분</th><th>'25년</th><th>'26년</th></tr>
<tr><td rowspan="2">투·융자연계기술 개발(R&D)</td><td>(지원계획)
<table>
<tr><th>구분</th><th>지원기업(개)</th><th>지원규모(최대)</th></tr>
<tr><td>스케일업 팁스</td><td>572</td><td>3년, 15억</td></tr>
<tr><td>DCP</td><td>30</td><td>3년, 36억</td></tr>
<tr><td>융자 연계형</td><td>90</td><td>2년, 5억</td></tr>
</table></td><td>(지원계획(안))
<table>
<tr><th colspan="2">구분</th><th>지원기업 (개)</th><th>지원규모 (최대)</th></tr>
<tr><td rowspan="2">스케일업 팁스</td><td>일반형</td><td>681</td><td>3년, 20억</td></tr>
<tr><td>특화형</td><td>100</td><td>3년, 30억</td></tr>
<tr><td rowspan="2">글로벌 팁스</td><td>일반형</td><td>114</td><td>4년, 50억</td></tr>
<tr><td>특화형</td><td>10</td><td>4년, 60억</td></tr>
<tr><td rowspan="2">DCP</td><td>기술 도전형</td><td>63</td><td>3년, 50억</td></tr>
<tr><td>생태계 혁신형</td><td>5</td><td>4년, 200억</td></tr>
<tr><td>융자 연계형</td><td>-</td><td>90</td><td>2년, 5억</td></tr>
</table></td></tr>
</table>

지원대상

-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서 정한 중소기업
- 지원조건

구분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정부출연금 비율	지원방식
스케일업 팁스	일반형	최대 3년 20억 원	75% 이내	자유공모, 지정공모
	특화형	최대 3년 30억 원		
글로벌 팁스	일반형	최대 4년 50억 원		
	특화형	최대 4년 60억 원		
딥테크 챌린지 프로젝트 (DCP)	기술도전형	최대 3년 50억 원		
	생태계혁신형	최대 4년 200억 원		
융자연계형		최대 2년 5억 원		

- 우대사항 : 장애인 기업, 여성기업,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소재 기업,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소재 위기업종 관련 기업 등

  ※ 가·감점 관련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확인

신청제외 대상

- 주관연구개발기관 등의 신청자격 및 신청요건이 부적합한 경우
- 신청과제가 기술개발사업의 지원목적 및 공고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경우 등

  ※ 신청제한 및 지원제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확인

지원내용

- 지원 세부내용

구분	세부 내용
스케일업 팁스	• 10억 원 이상의 투자를 유치한 스케일업 단계(Series A) 중소벤처기업에 기술혁신 및 기술사업화 지원
글로벌 팁스	• 해외투자 유치 등으로 글로벌 진출 가능성을 입증한 기업에 기술 고도화 및 글로벌 시장 개척을 위한 R&D 지원
딥테크 챌린지 프로젝트 (DCP)	• 도전·혁신적 R&D에 중소벤처가 과감히 도전할 수 있도록 임무 중심 R&D 프로젝트를 출제, 민간투자 연계방식으로 선정·지원
융자연계형	• 기술·기업가치에 기반한 보증(기보)을 통해 은행융자를 유치한 기업에 R&D와 후속 자금확보(융자)을 연계하여 중소기업의 스케일업을 전주기로 지원

- 지원규모 : 총 540개 과제, 2,667억 원 지원

구분		지원기업 수	지원규모
스케일업 팁스	일반형	300	최대 3년 20억 원
	특화형	100	최대 3년 30억 원
글로벌 팁스	일반형	90	최대 4년 50억 원
	특화형	10	최대 4년 60억 원
딥테크 챌린지 프로젝트 (DCP)	기술도전형	35	최대 3년 50억 원
	생태계혁신형	5	최대 4년 200억 원
융자연계형		-*	최대 2년 5억 원

* '26년 기 선정된 계속과제만 지원

신청 · 접수

- 공고(예정) 시기 : 상시(2026년 2월 이후)
- 신청방법 : 범부처 통합 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 제출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재무제표, 가점 증빙서류 등
- 선정평가 : 서면 또는 대면평가

심사·평가 주요내용

- ▸ 접수된 사업계획서 내용, 사업목적과의 부합성 등을 중심으로 평가
- ▸ 신청자격, 기술개발 및 사업화 역량, 과제중복성, 사업비 계상, 재무제표 등 증빙서류 확인
- ▸ 기술성·사업성, 연구개발 역량 등에 대한 평가 실시

※ 심사·평가 내용이 내역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세부 사항은 공고 확인

- 추진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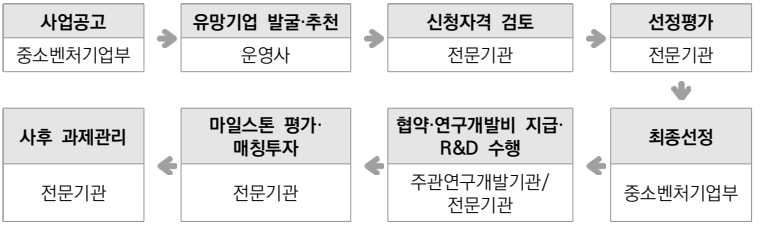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혁신정책과 : (전화) 044-204-7747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스케일업팁스실 :
  (전화) 02-2280-0420~0429

참고사항

① 전년도 사업공고

- 공고명 : 2025년 스케일업 팁스 기업 지원계획 통합 공고
  - (경로) IRIS(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 사업정보 → 사업공지 → 사업공고
  - (홈페이지)

창업성장기술개발(R&D)

사업개요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창업 초기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기술창업 활성화 및 창업 초기 중소기업의 성장 촉진

〈 전년대비 달라지는 내용 〉

구분	'25년	'26년
지원구조 개편	(디딤돌) 도약 트랙 내 여성참여활성화 R&D 지원 (TIPS) 일반, 딥테크, 글로벌 TIPS 지원	(디딤돌) 여성참여활성화 R&D를 첫걸음 트랙으로 이동 및 도약 트랙 내 전략기술R&D 신설 (TIPS) '딥테크 트랙'을 '일반형 트랙' 후기 지원 프로그램으로 재편
지원단가 상향	(TIPS) 일반 트랙 최대 2년, 5억원	(TIPS) 일반 트랙 최대 2년, 8억원
공고시기	(디딤돌) 25년 4월	(디딤돌) 25년 12월, 26년 3월

지원대상

-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원칙으로 하되, 창업 7년 이하(신산업 분야 기술창업기업은 10년 이하)이며 과제별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기업

  * 내역사업별 특성에 따라 매출액 등 신청자격이 다르므로 개별 사업공고를 반드시 참조

- 지원조건

내역사업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정부출연금 비율	지원방식
디딤돌		최대 1.5년, 2억원	75% 이내	자유공모, 품목지정
TIPS	일반	최대 2년, 8억원		
	딥테크	최대 3년, 15억원		

신청제외 대상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대표자, 연구책임자 등)가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회수금 또는 제재부가금,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 중인 경우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에 명시

지원내용

- 지원 세부내용 : 2개 내역사업으로 구분하여 최대 1.5~3년, 2~15억원 지원
  - 디딤돌(711억원) : 잠재 가능성을 보유한 혁신 아이디어, 고도화 기술 등 성과 창출이 가능한 도약기술을 단계별로 지원
  - TIPS(1,624억원) : 민간 투자사를 통해 우수한 창업기업을 선별하고 민간투자와 정부자금을 매칭하여 기술개발 지원
- 지원규모 : 신규 과제 총 1,668개 지원
  - (디딤돌) 868개, (TIPS) 800개
- 지원금액 : 신규 과제 총 2,335억원 (디딤돌 : 711억원 , TIPS : 1,624억원)

신청 · 접수

- 공고(예정) 시기 : (디딤돌) (1차) '25년 12월, (2차) '26년 3월 (TIPS) 상시
- 신청방법 : 범부처 통합 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 제출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재무제표, 가점 증빙서류 등
- 선정평가 : 서면 또는 대면평가

심사·평가 주요내용

- 접수된 사업계획서 내용, 사업목적과의 부합성 등을 중심으로 평가
- 신청자격, 기술개발 및 사업화 역량, 과제중복성, 사업비 계상, 재무제표 등 증빙서류 확인
- 기술성·사업성, 선행연구 성과, 연구개발역량 등에 대한 평가 실시
  * 심사·평가 내용이 사업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세부사업 공고 확인

추진절차(세부추진절차는 각 공고에서 확인)

① 디딤돌

사업공고	신청·접수	신청자격 검토	서면평가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연구개발기관	전문기관	전문기관

과제관리	협약·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지급	최종선정	대면평가
전문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 전문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전문기관

② TIPS

사업공고	신청 · 접수	투자심사	창업기업 추천	선정평가
중소벤처 기업부	주관연구 개발기관 → 운영사	운영사	운영사 → 전문/운영기관	전문/운영기관

사후관리	최종평가	과제관리, 최종점검	협약· 연구개발비지원	선정 결과보고
전문기관	전문/운영기관	운영사, 전문/운영기관	주관연구 개발기관 /전문기관	전문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주관연구개발기관) 과제신청 창업기업,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운영사) 창업기획자, 초기 전문VC, 선도·벤처기업 등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 (디딤돌) 기술개발과
  (전화) 044-204-7763 (이메일) cookie27@korea.kr
- (TIPS) 신산업기술창업과
  (전화) 044-204-7645 (이메일) psh0912@korea.kr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디딤돌) 창업성장사업실
  (전화) 044-300-0552, 0558 (이메일) 331@tipa.or.kr
- (TIPS) 스타트업팁스실
  (전화) 02-2280-0461 (이메일) tips@tipa.or.kr

■ 사업문의(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디지털기반중소제조산재예방기술개발

사업개요

’25년 신규사업으로 50인 미만 중소기업의 산업재해 감소 및 예방체계 확립을 위한 디지털기반 산재예방 R&D 지원

〈 전년대비 달라지는 내용 〉

구분	’25년	’26년
지원대상	주관연구개발기관(공급기업)·공동연구개발기관Ⅱ(도입기업)·대학·연구기관 등이 참여한 컨소시엄	(동일)
지원내용	· (R&D) 50인 미만 중소제조업 분야 산업재해 감소 및 예방체계 확립에 필요한 디지털 기반 산업재해 예방·진단·점검·대응을 위한 기술개발 · (실증) R&D 결과물의 제조현장 적용을 위해 50인 미만 도입기업(제조업)을 Test- Bed로 활용하여 실증 및 보급·확산 촉진	· (R&D) 50인 미만 중소기업의 산업재해 감소 및 예방체계 확립에 필요한 디지털 기반 산업재해 예방·진단·점검·대응을 위한 기술개발 · (실증) R&D 결과물의 산업현장 적용을 위해 50인 미만 도입기업(제조업)을 Test- Bed로 활용하여 실증 및 보급·확산 촉진
지원조건	·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 최대 2년, 6.6억원 ·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지원한도 : 75%이내	(동일)

지원대상

◉ 신청자격 : 주관연구개발기관(공급기업)·공동연구개발기관Ⅱ(도입기업)·대학·연구기관 등이 참여한 컨소시엄

* 세부 신청자격, 지원조건, 우대기준은 공고문 참조

구분		지원 대상
주관연구 개발기관	공급기업 (필수)	산업현장 안전 관련 진단·점검·예방·대응을 위한 개발기술 및 역량을 보유한 중소기업
공동연구 개발기관 I	공동개발 (선택)	산업현장 안전 관련 진단·점검·예방·대응을 위한 개발기술 및 역량을 보유한 대학, 연구소 등
공동연구 개발기관 II	도입기업 (필수)	산업현장 안전 관련 진단·점검·예방·대응 기술 및 시스템을 실증할 Test-bed를 제공하고 개발된 시스템을 적용할 수 있는 50인 미만 제조 중소기업 (2개 이상)

◉ 지원조건 : 총 연구개발비의 75% 이내

구분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지원한도	지원방식
디지털기반중소제조 산재예방기술개발	최대 2년, 6.6억 원	75% 이내	품목지정

지원이 안되는 기업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가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회수금 또는 제재부가금,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기업의 부도/휴·폐업,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창업 3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이며, 부채비율 계산시 투자유치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기업이 자본전액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창업 3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자격요건은 사업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세부 사업별 공고 확인

지원내용

◉ 지원 세부내용

- (R&D) 50인 미만 중소기업의 산업재해 감소 및 예방체계 확립에 필요한 디지털 기반 산업재해 예방·진단·점검·대응을 위한 기술개발

* 산업 안전센서, 개인화 웨어러블 장비, 모니터링 제품, 로봇 개발, 각종 안전 솔루션 등 도입기업 수요기반 제품개발을 통해 성과물 확산

- (실증) R&D 결과물의 산업현장 적용을 위해 50인 미만 도입기업을 Test-Bed로 활용하여 실증 및 보급·확산 촉진

◉ 지원규모 : 총 20개(신규)

◉ 지원금액 : 16.5억원('25), 총 264억원('25~'28년)

신청·접수

◉ 공고(예정) 시기 : 5월

◉ 신청방법 : 온라인(인터넷)을 통한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 연구개발계획서 신청 : http://www.smtech.go.kr 또는 http://www.iris.go.kr
→ 회원가입 → 로그인 → 온라인과제관리 또는 과제접수
→ 과제신청 → 연구개발계획서 내용입력

* 사업별 신청 · 접수 방법이 다를 수 있으므로 세부사업 공고 확인

◉ 제출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신청자격서류 등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명시

◉ 선정평가 : 서면 및 대면 평가

심사·평가 주요내용

▸ 연구개발계획서 및 사업목적과의 부합성 등을 중심으로 평가
* 심사·평가 내용이 사업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세부사업 공고 확인

◉ 추진절차

사업공고	→	신청 · 접수	→	선정평가	→	협약체결, 정부지원금 지급	→	최종점검·평가 기술료 납부
중소벤처 기업부		주관연구개발 기관		전문기관		전문기관		전문기관

* (주관연구개발기관) 과제 신청기업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문의처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창업성장사업실
  (전화) 044-300-0556 (이메일) 331@tipa.or.kr
- 범부처 통합 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1877-2041)
- 사업문의(☏1357), 정책정보(www.bizinfo.go.kr)

Q&A

Q **주관연구개발기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디지털기반중소제조산재예방기술개발 지원대상은 주관연구개발기관(필수, 공급기업)과 공동연구개발기관Ⅱ(필수, 도입기업, 2개 이상), 대학 등이 참여한 컨소시엄입니다.

중소기업 수출 핵심품목 탄소감축 기술개발사업

사업개요

- CBAM('26~) 등 글로벌 탄소 규제의 확대·강화에 따라, 수출 중소기업의 탄소 감축 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R&D 지원

지원대상

-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지원조건

구분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비중	지원방식
중소기업 수출 핵심품목 탄소감축 기술개발사업	최대 5년, 55억 이내	75% 이내	지정공모

신청제외 대상

- 사업에 참여하는 연구개발기관, 대표자, 연구책임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사업에 참여하는 연구개발기관, 대표자, 연구책임자가 접수마감일 현재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 관리지침의 지원 제외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 자세한 사항은 세부사업 공고 확인

지원내용

- 지원 세부내용 : 중소기업 수출 핵심품목 탄소감축 기술 확보부터 현장 실증을 통한 감축효과 확인까지 완결성 있는 기술개발 지원
  - (R&D) 탄소감축이 시급한 중소기업 수출 2대 핵심품목(철강, 알루미늄)에 대한 탄소감축 기술개발 지원
  - (실증) 기술 적용 시 공정 조건·생산 제품별 예상 감축 효과 확인, 수요기업 생산공정에 적용하여 실제 감축량 확인 등 단계별 실증
- 지원규모 : 18개 과제('26 신규)
- 지원금액 : 5,000백만원('26 신규)

신청 · 접수

- 공고(예정) 시기 : 4 ~ 5월
- 신청방법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 제출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신청자격서류 등

  * 자세한 내용은 세부사업 공고 확인
- 선정평가 : 대면평가

심사·평가 주요내용

▸ 연구개발계획서 및 사업목적 부합성, 탄소감축 효과성 등을 중심으로 평가

- 추진절차

문의처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기술혁신사업실
  (전화) 044-300-0532~0538, 0541~0548,
  (이메일) 311@tipa.or.kr
- 사업문의(1357), 시스템 문의(1877-2041)

참고사항

- 기술개발(공급) 및 수출(수요) 중소기업, 산·학·연 등 공동연구개발기관, 탄소감축 효과 실증(검증)기관 등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구성 필수

표준공정 기반 공정최적화 기술개발(R&D)

사업개요

제조공정 참조모델을 활용한 공정 최적화를 통해 공정개선과제를 발굴 및 제조현장을 진단 하고 공정최적화 기술개발(R&D) 지원을 통해 중소 제조기업의 획기적인 KPI 향상 및 경쟁력 제고

지원대상

- 신청자격

내역	내역사업명	지원대상
내역1*	사전연구 및 제조현장진단	정부출연연구소, 전문연구기관, 대학 등
내역2**	공정최적화 R&D 지원	중소 제조기업

* 내역1 : 전문 연구기관이 제조공정 참조모델을 활용하여 공정분석 및 핵심공정기술 발굴, 제조현장 진단을 통한 공정 최적화 방안 도출

** 내역2 : 현장진단 기업 중 공정 KPI 개선효과가 큰 과제를 선정하고, AX·DX 기술을 활용한 공정최적화 및 고도화 R&D 지원

- 지원조건 : 내역사업별 총 연구개발비의 100%, 75% 이내

구분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비중	지원방식
사전연구 및 제조현장진단	최대 6개월, 4.37억 이내	100%	품목지정
공정최적화 R&D	최대 2년, 10억 이내	75% 이내	자유공모

신청제외 대상

- ▸ 사업에 참여하는 연구개발기관, 대표자, 연구책임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 사업에 참여하는 연구개발기관, 대표자, 연구책임자가 접수마감일 현재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 관리지침의 지원 제외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 자세한 사항은 세부사업 공고 확인

지원내용

- 지원 세부내용
  - 사전연구 및 제조현장진단(17.5억원) : 전문연구기관이 제조공정 참조모델을 활용하여 공정 분석 및 핵심공정기술 발굴, 제조현장 진단을 통한 공정 최적화 방안 도출

  * 기관 당 사전연구 및 제조현장진단 최대 6개월, 4.37억 지원 (지원규모 : 4개 연구기관)

  - R&D지원(12.5억원) : 현장진단 기업 중 공정 KPI 개선효과가 큰 과제를 선정하고, AX·DX 기술을 활용한 공정최적화 및 고도화 R&D 지원

  * 과제 당 최대 2년, 10억 지원 (지원규모 : 10개 과제)

- 지원금액 : 30억원(신규, '26년 예산)

신청 · 접수

- 공고(예정) 시기 : 1월(사전연구 및 제조현장진단), 8월(공정최적화R&D)
- 신청방법 : 범정부 통합 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 제출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신청자격서류 등

  * 자세한 사항은 세부사업 공고 확인

● 선정평가 : 서면 및 대면평가

심사·평가 주요내용

▸ 연구개발계획서 및 사업목적과 부합성 등을 중심으로 평가
  * 심사·평가 내용이 사업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세부사업 공고 확인

● 추진절차

* 추진절차의 상세 내용이 사업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세부사업 공고 확인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제조혁신과
(전화) 044-204-7254 (이메일) feast@korea.kr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부설)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제조AX사업실
(전화) 044-300-0979 (이메일) smartrnd@tipa.or.kr

● 사업문의(1357), 시스템 문의(1877-2041)

Q&A

Q **제조공정 참조모델은 무엇인가요?**

A 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 구축 및 신사업 확장을 위해 필요한 공정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조공정별 핵심장비, 핵심관리 데이터 등 표준화된 공정 정보를 도식화한 참조모델입니다.

Q **사전연구 및 제조현장진단은 중소 제조기업이 지원할 수 있나요?**

A 사전연구 및 제조현장진단은 제조공정 참조모델을 활용하여 공정 분석, 핵심공정 기술발굴, 제조현장 진단을 통해 공정최적화 방안을 도출할 수 있는 전문연구기관이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중소 제조기업은 후속 단계인 공정최적화 R&D 사업에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중소제조 특화 Multi AI Agent 개발(R&D)

사업개요

중소 제조업의 비정형 작업 대응력 강화와 공정·품질 최적화를 위한 Multi AI Agent 기술개발 지원으로, AX 전환 촉진 및 지속 가능한 제조혁신 생태계 조성

〈 전년대비 달라지는 내용 〉

구분	'25년	'26년
내역사업	-	PoC 시범연구
지원내용	-	12개 과제, 36억 (과제당 3억, 6개월 이내 지원)

지원대상

- 신청자격 : 공급기업(AI기술 보유) 및 수요기업(제조현장 보유) 컨소시엄 형태 참여
- 지원조건

구분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비중	지원방식
PoC 시범연구	최대 6개월, 3억 이내	75% 이내	자유응모 (품목지정)
R&D지원	최대 24개월, 39억 이내		

신청제외 대상

- ▸ 사업에 참여하는 연구개발기관, 대표자, 연구책임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 사업에 참여하는 연구개발기관, 대표자, 연구책임자가 접수마감일 현재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 관리지침의 지원 제외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 자세한 사항은 세부사업 공고 참고

지원내용

- 지원 세부내용 : Track별 정부지원 한도 및 지원기간 차별지원
  - PoC 시범연구(36억원) : 12개 과제(과제당 최대 3억원, 6개월 지원)

    * AI 자율제조 기술수요가 높고, 파급효과 및 확산성이 높은 중소제조 특화 산업(수출 주력 및 소비자 밀착) 4개 분야(①식품, ②뷰티, ③제약, ④자동차부품) 지원 가능

    ** 분야별 3배수 과제 선정하여 PoC 과제 수행 / 과제평가 후 R&D지원 과제 4개 선정

  - R&D지원(312억원) : 8개 과제(과제당 최대 39억원, 2년 지원)

    * PoC 시범연구 4개 / 스마트제조혁신R&D 종료과제 4개
- 지원규모 : 12개 과제(과제당 최대 3억원, 6개월 지원)
- 지원금액 : 36억원(신규)

신청 · 접수

- 공고(예정) 시기 : 2월
- 신청방법 : 범부처 통합 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 제출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신청자격서류 등

  * 자세한 사항은 세부사업 공고 확인

◉ 선정평가 : 서면 및 대면 평가

심사·평가 주요내용

▸ 연구개발계획서 및 사업목적과의 부합성 등을 중심으로 평가
  * 자세한 사항은 세부사업 공고 확인

◉ 추진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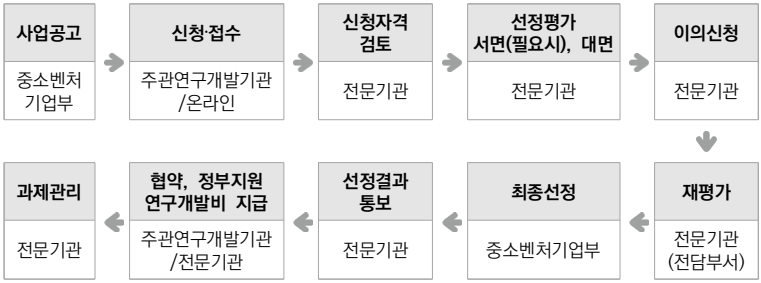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제조혁신과 : 044-204-7255, hjk@korea.kr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부설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 044-300-0976, smartrnd@tipa.or.kr

◉ 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Q&A

Q **컨소시엄을 반드시 구성해야 하나요?**

A 네 공급기업과 수요기업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하셔야 합니다.

Q **중소제조 특화 4개 산업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A 공장등록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을 통해 수요기업의 업종 및 업태를 확인합니다. 증명이 어려운 경우, 산업별 제출서류를 추가 제출받습니다.

Q **PoC 시범연구 수행완료 후, 자동적으로 R&D지원 사업으로 연계되나요?**

A 아닙니다. PoC 시범연구 12개 과제 수행완료 후, 평가를 거쳐 후속 지원 4개 과제를 선별하여 연계 지원합니다.

용어 설명

- **AI Agent** : 대규모 언어모델(LLM) 기반으로, 스스로 문제분석 및 계획 수립을 수행하며, 도구(API, 데이터 등)를 활용하는 인공지능 시스템
- **Multi AI Agent** : 복수의 자율적 AI Agent가 협업하여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는 구조

산학연 Collabo R&D

사업개요

산학연 협력R&D 활성화를 통한 중소기업의 혁신성장 촉진과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중소기업과 대학 또는 연구기관과의 협력R&D를 지원

〈 전년대비 달라지는 내용 〉

구분	'25년	'26년
지원유형	◦ 일반형 예비연구 (8개월, 0.5억원 이내) ◦ 컨소시엄형 예비연구 (8개월, 2억원 이내) ◦ 일반형 사업화 R&D (최대 24개월, 2.6억원 이내)	※ 사업계획에 따라 예비연구 지원 종료 ◦ 일반형 사업화 R&D (최대 24개월, 2.6억원 이내) ◦ 컨소시엄형 사업화 R&D (최대 24개월, 10.4억원 이내)
가점항목 (기타사항)	〈 신 설 〉	◦ 민간투자유치실적(1억원 이상) 보유기업 : 가점 1점 * 접수 마감일 기준 3년 이내 체결한 투자계약서

지원대상

● 신청자격

- (주관연구개발기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하고 있거나 설치계획이 있는 중소기업

  * 2단계(사업화R&D) 신청일까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하여야 함

- (공동연구개발기관) 대학 또는 연구기관

  * 주관연구개발기관(중소기업)과 공동연구개발기관(대학, 연구기관)의 공동책임자 간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이력이 없어야 함

신청제외 대상

- 연구개발기관, 대표자,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기술료 납부 및 납부계획서 제출, 성과실적 입력, 회수금·환수금 및 제재부가금 납부 등)을 불이행한 경우(과제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전까지 해소한 경우는 예외로 함)
- 연구개발기관, 대표자,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주관연구개발기관(중소기업)이 부도 상태인 경우(회생인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함)

지원내용

◉ 단계별 지원(1단계 연구과제 완료 후 2단계 수행)

지원유형	단계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지원한도	지원 방식
컨소시엄형 (2~4개 일반형 과제로 구성)	1단계(예비연구)*	8개월, 2억원 이내	75% 이내	분야 지정
	2단계(사업화R&D)	최대 2년, 10.4억원 이내		
일반형 (산학협력, 산연협력)	1단계(예비연구)*	8개월, 0.5억원 이내		자유 공모
	2단계(사업화R&D)**	최대 2년, 2.6억원 이내		

* 1단계(예비연구) : 사업화 아이템 및 기술 컨셉의 실현 가능성 검증을 위한 연구개발 활동으로 R&D를 통한 기술검증선행기술조사, 사업성 조사 등 사업추진의 타당성 확인

** 2단계(사업화R&D)는 '25년도 1단계(예비연구)를 수행(완료)한 과제만 신청 가능

◉ 세부 과제 유형

구분	일반형 과제	컨소시엄형 과제
과제 유형	개별과제(1:1 협력) 과제1: 주관(기업), 공동(대학) 과제2: 주관(기업), 공동(연구소) 과제N: 주관(기업), 공동(대학)	개별과제의 묶음 과제(多:多 협력) 컨소시엄형 과제 A 세부과제1: 주관(기업), 공동(대학) 세부과제2: 주관(기업), 공동(연구소) 세부과제N: 주관(기업), 공동(연구소)
분야	제한 없음	지역전략분야(레전드50+ 등), 국가전략기술

◉ 지원규모 : 394억원(신규 238.5억원)

신청·접수

- 공고(예정) 시기 : '26. 1월
- 신청방법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 제출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가점* 및 우대사항 증빙자료 등

  * 레전드 50+ 선정기업(2점), 산학협력 마일리지(1~2점), 인재육성형 중소기업(1점), 중소기업인력양성대학과 산학협약 체결 기업(1점), 민간투자유치실적(1억원 이상) 보유기업(1점)

- 선정평가 : 신청자격 요건검토 → 대면평가 → 이의신청 평가 → 선정·협약

심사·평가 주요내용

▸ 기술성, 사업성, 기술개발 보유 역량 수준 등

- 추진절차

'26년 1월		'26년 2월		'26년 3월		'26년 4월
사업공고	→	사업 신청·접수	→	요건검토 및 대면평가	→	최종선정 및 협약
중소벤처기업부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전문기관		전문기관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과
  (전화) 044-204-7767 (이메일) ziantinha@korea.kr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기술상용화사업실
  (전화) 044-300-0654, 0658, 0675
  (이메일) sch@tipa.or.kr, yjsng@tipa.or.kr, iyeazin@tipa.or.kr
-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1877-2041)

참고사항

① 전년도 사업공고

- 공고명 : 2025년도 산학연 Collabo R&D사업(일반형/사업화R&D) 시행계획 공고
  - (경로)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 사업정보 - 사업공지 - 사업공고
  - (홈페이지)

Q&A

Q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반드시 보유해야 하나요?**

A 접수마감일까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반드시 보유해야 하며, 신청 시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를 필수로 제출

Q **1단계 예비연구를 수행한 기업만 2단계 사업화 R&D 신청이 가능한가요?**

A 동 사업은 단계형 사업으로 1단계 예비연구 수행과제만 2단계 신청 가능

지역혁신선도기업육성(R&D)

사업개요

- 지역혁신 선도기업 및 주력산업 육성으로 지역경제 활력 제고

① 주력산업 생태계 구축 : 혁신성·성장성을 갖춘 (예비)선도기업을 중심으로 공급망 내 중소기업 협업과 산학협력 중심 기술혁신을 통해 주력산업 성장 견인

② 지역기업 역량강화 : 지역주력산업 분야 (예비)선도기업으로의 성장잠재력을 보유한 기업의 혁신역량을 강화하여 지속가능한 성장동력 확보

〈 전년대비 달라지는 내용 〉

구분	'25년	'26년
지원대상 (참여요건)	주력(주축)산업 영위 중소기업 * 주력산업분야 KSIC코드 보유 중소기업	개편 주력산업 영위 중소기업 * 주력산업분야 + 연관산업 KSIC코드 보유 중소기업

지원대상

- 신청자격

① 주력산업 생태계 구축 : 지역별 주력산업 분야 중소기업(2개사 이상)과 대학·대·중견기업 컨소시엄

② 지역기업 역량강화 : 지역별 주력산업 분야 잠재기업

- 지원조건 : 총사업비의 75% 이내, 최대 2년간 지원

신청제외 대상

- ▸ 지역산업육성사업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 국세,지방세 체납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과태료 체납, 관세 체납, 고용·산재보험 체납, 임금체불 등 체납 관련 정보가 등록된 경우
  * 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까지 해소하거나 체납처분 유예를 받은 경우,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등
- ▸ 부채 비율이 1,000% 이상,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 ▸ 연구개발기관 또는 연구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기술료 납부, 회수금, 환수금 및 제재부가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그 외 사업 모집공고 상 신청(지원) 제외 대상으로 규정한 경우

지원내용

- 지원 세부내용
  ① 주력산업 생태계 구축 : 지역대학 또는 대·중견기업, 글로벌 기업, 혁신 스타트업, 연구기관 등 다양한 주체와 산·학·연 협력 R&D 추진
  ② 지역기업 역량강화 : 주력산업 내 잠재기업을 선도기업으로 육성하여 잠재기업을 선도기업으로 성장 촉진하기 위한 R&D 지원
- 지원규모
  ① 주력산업 생태계 구축 : ('26년) 157개 과제, 최대 2년간 7억원/연
  ② 지역기업 역량강화 : ('26년) 147개 과제, 최대 2년간 2억원/연
- 지원금액 : '26년 총 96,939백만원(국비)

신청·접수

- 공고(예정) 시기 : 1월
- 신청방법 : SMTECH 홈페이지(www.smtech.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 제출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가점 증빙서류 등

- 선정평가 : 서면평가, 대면평가(사전검토를 통과한 과제에 한함, 필요시 현장실태조사 실시)

심사·평가 주요내용

▸ 개발 내용의 부합성 및 적정성, 수행역량, 사업화 계획의 구체성 및 타당성 등을 종합평가

- 추진절차

사업 공고	➡	신청·접수	➡	선정평가 (서면평가, 대면평가*) * 필요시 현장실태조사 실시	➡	심의위원회 (지원과제 선정 및 예산 확정)	➡	협약 체결	➡	기술개발 지원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혁신정책과 : 044-204-7587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지역특화사업실
  (전화) 044-300-0823, 0827~0829, 0831
  (이메일) abc@tipa.or.kr
- 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참고사항

① 전년도 사업공고

- 공고명 : '25년 지역혁신선도기업육성(R&D) 지원계획 공고
  - (경로) 온라인 홈페이지 – 정보마당 – 알림마당(R&D사업공고)
  - (홈페이지)

Q&A

Q **전략품목에 해당여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A 지원과제가 해당 사업의 전략품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고된 전략품목을 바탕으로 신청기업에서 확인하셔야 하며, 전략품목과 과제의 적합성 여부는 평가위원회에서 전문 위원이 평가합니다.

Q **주력산업 생태계 구축 사업의 경우 반드시 컨소시엄을 구성해야 하나요?**

A 네, 주력산업 생태계구축사업의 경우 지역별 주력산업분야 중소기업 2개사와 대학 또는 대·중견기업, 연구기관 중 1개 이상의 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사업을 신청해야 합니다.

중소기업 연구인력 지원(R&D) (신진 연구인력 채용지원)

사업개요

신진 연구인력의 채용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경쟁력 제고 및 청년 일자리 창출

〈 전년대비 달라지는 내용 〉

구분	'25년	'26년
지원내용 (연구인력)	신진 연구인력을 채용한 중소기업에게 최대 3년간 기준연봉의 50% 지원	①안 신진 연구인력을 채용한 중소기업에게 최대 3년간 기준연봉의 40% 지원 * 단, 연구인력 장기 재직 기업인 경우 최대 3년간 50% 지원
		②안 신진 연구인력을 채용한 중소기업에게 최대 3년간 기준연봉의 40% 지원

지원대상

- 신청자격
  - (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기업
  - (인력)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연구전담요원으로 등록이 가능한 자, 사업공고일 기준 만 39세 이하 청년인력 (당해연도 학위취득예정자 포함)
- 지원조건 : 채용 연구인력은 정규직만 가능하며 ①공고일로부터 1년 전에서 공고일까지 채용을 완료한 자, ②공고일 기준으로 채용하지 않았으나 과제 선정 후 협약 시작일 전까지 고용보험 가입을 완료할 수 있는 자

- 우대사항 : 첨단기술분야(국가전략기술 등)에 해당 기업, 비수도권 지역 소재 중소기업, 지역특화 프로젝트 레전드 50+ 선정 기업 등

신청제외 대상

- 신청기업 대표자, 대표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은 신청 불가
- 타 정부지원 사업의 인건비(현금)지원 불가(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조)

지원내용

- 지원 세부내용 : 중소기업에서 신진 연구인력 채용시 연봉 지원 (최대 3년, 기업별 1명)
- 지원규모 : 총 540명 내외(신규 260명, 계속 280명)
- 지원금액 : 채용인력 기준연봉의 50% 이내

신청·접수

- 공고(예정) 시기 : '26.1월
- 신청방법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 제출서류 : 계획서, 가점 증빙서류 등
- 선정평가 : 신청서류 서면평가

심사·평가 주요내용

- 신청기업의 R&D수행역량, 연구개발과제 수행계획의 적정성, 연구인력의 R&D 수행역량, 지원의 효과성 등

- 추진절차

모집공고	신청접수	선정평가	협약체결	연구수행
1월	2월	3~5월	6월	최대 3년

문의처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지역정책기획실
  (전화) 044-300-0813, 044-300-0842, 044-300-0843
- 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등

참고사항

① 전년도 사업공고

- 공고명 : '25년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채용, 신진) 공고
  - (경로) SMTECH 종합관리시스템/정보마당/R&D 사업공고
  - (홈페이지)

Q&A

Q **신진 및 고경력 연구인력 채용지원사업의 동시 수혜가 가능한가요?**

A 동시 수행 가능 지원과제 수는 기업당 최대 2개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사업명	기 지원 과제 횟수('23년~)	신규 신청 가능 여부
신진 연구인력 채용지원, 고경력 연구인력 채용지원	신진 2회 이상 또는 고경력 2회 이상	신청 불가
	신진 1회 + 고경력 1회	신청 불가
	신진 1회 또는 고경력 1회	신청 가능

* 지원과제 횟수에 따른 신청 제한은 '23년 신규 과제 이후부터 적용
** 중도 포기 과제도 기 지원 과제로 간주

Q **다른 기업에서 연구인력지원사업으로 기 지원 받은 인력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A 동 사업으로 기 지원받은 인력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단, 지원당시 학위보다 상향된 학위를 취득한 인력이 타 기업으로 채용된 경우는 추가 1회에 한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 (예) 학사 → 석사, 석사 → 박사 / 협약 시작일 전까지 학위 취득(예정)자

舊중소기업고급연구인력고용지원사업, 舊고급연구인력활용지원사업,
舊기술혁신형중소기업연구인력지원사업(신진,고경력),
舊퇴직과학기술자활용중소기업기술혁신역량확충사업, 舊초 · 중급
기술개발인력지원사업, 중소기업연구인력지원사업(신진,고경력)

Q **지원기업으로 선정이 되면 3년 동안 계속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 동 사업은 최대 3년간 지원을 받으실 수 있으며, 매년 제출하신 연차 보고서의 적격성 검증을 통해 차년도 계속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Q **지원기간 동안 지원받는 연구인력을 변경할 수 있나요?**

A 접수마감 이후 사업신청 인력(지원 연구인력)은 변경이 불가하나, 지원 연구인력의 참여기간이 6개월 이상일 경우 협약변경을 통해 1회에 한하여 연구인력 변경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연구인력 지원(R&D) (고경력 연구인력 채용지원)

사업개요

고경력 연구인력의 채용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 기술개발역량 강화 및 신중년 일자리 창출

〈 전년대비 달라지는 내용 〉

구분	'25년	'26년
지원조건 (연구인력)	채용(예정) 연구인력은 정규직만 가능하며 공고일로 1년 전에서 공고일 이전까지 채용이 완료된 자	채용(예정) 연구인력은 정규직*만 가능하며 공고일로 1년 전에서 공고일 이전까지 채용이 완료된 자 * 근로계약 범위 내에서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등 유연근무제 가능인력 포함

지원대상

- 신청자격
  - (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기업
  - (인력)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연구전담요원으로 등록이 가능한 자로 학·석·박사 학위 취득 후, 기업·공공연구기관·대학 등에서 연구 경력이 학사 14년, 석사 10년, 박사 5년 이상인 자
- 지원조건 : 채용 연구인력은 정규직만 가능하며 ①공고일로부터 1년 전에서 공고일까지 채용을 완료한 자, ②공고일 기준으로 채용하지 않았으나 과제 선정 후 협약 시작일 전까지 고용보험 가입을 완료할 수 있는 자

- 우대사항 : 첨단기술분야(국가전략기술 등)에 해당 기업, 비수도권 지역 소재 중소기업, 지역특화 프로젝트 레전드 50+ 선정 기업 등

신청제외 대상

- 신청기업 대표자, 대표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은 신청 불가
- 타 정부지원 사업의 인건비(현금)지원 불가(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조)

지원내용

- 지원 세부내용 : 고경력 연구인력을 채용시 연봉 지원 (최대 3년, 기업별 1명)
- 지원규모 : 총 224명 내외(신규 85명, 계속 139명)
- 지원금액 : 채용인력 연봉의 50% 이내(최대 5천만원)

신청 · 접수

- 공고(예정) 시기 : '26.1월
- 신청방법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 제출서류 : 계획서, 가점 증빙서류 등
- 선정평가 : 신청서류 서면평가

심사·평가 주요내용

- 신청기업의 R&D수행역량, 연구개발과제 수행계획의 적정성, 연구인력의 R&D 수행역량, 지원의 효과성 등

- 추진절차

모집공고	신청접수	선정평가	협약체결	연구수행
1월	2월	3~5월	6월	최대 3년

문의처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지역정책기획실
  (전화) 044-300-0813, 044-300-0842, 044-300-0843
- 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등

참고사항

① 전년도 사업공고

- 공고명 : '25년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채용, 신진) 공고
  - (경로) SMTECH 종합관리시스템/정보마당/R&D 사업공고
  - (홈페이지)

Q&A

Q **신진 및 고경력 연구인력 채용지원사업의 동시 수혜가 가능한가요?**

A 동시 수행 가능 지원과제 수는 기업당 최대 2개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사업명	기 지원 과제 횟수('23년~)	신규 신청 가능 여부
신진 연구인력 채용지원, 고경력 연구인력 채용지원	신진 2회 이상 또는 고경력 2회 이상	신청 불가
	신진 1회 + 고경력 1회	신청 불가
	신진 1회 또는 고경력 1회	신청 가능

* 지원과제 횟수에 따른 신청 제한은 '23년 신규 과제 이후부터 적용
** 중도 포기 과제도 기 지원 과제로 간주

Q **다른 기업에서 연구인력지원사업으로 기 지원 받은 인력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A 동 사업으로 기 지원받은 인력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단, 지원당시 학위보다 상향된 학위를 취득한 인력이 타 기업으로 채용된 경우는 추가 1회에 한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 (예) 학사 → 석사, 석사 → 박사 / 협약 시작일 전까지 학위 취득(예정)자

舊중소기업고급연구인력고용지원사업, 舊고급연구인력활용지원사업, 舊기술혁신형중소기업연구인력지원사업(신진,고경력), 舊퇴직과학기술자활용중소기업기술혁신역량확충사업, 舊초·중급기술개발인력지원사업, 중소기업연구인력지원사업(신진,고경력)

Q **지원기업으로 선정이 되면 3년 동안 계속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 동 사업은 최대 3년간 지원을 받으실 수 있으며, 매년 제출하신 연차 보고서의 적격성 검증을 통해 차년도 계속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Q **지원기간 동안 지원받는 연구인력을 변경할 수 있나요?**

A 접수마감 이후 사업신청 인력(지원 연구인력)은 변경이 불가하나, 지원 연구인력의 참여기간이 6개월 이상일 경우 협약변경을 통해 1회에 한하여 연구인력 변경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연구인력 지원(R&D) (공공연 연구인력 파견지원)

사업개요

공공연 연구인력을 중소기업에 파견하여 기술 노하우 전수 및 R&D 수행 지원을 통한 기술혁신역량 강화

지원대상

-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벤처기업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선정한 기업
  -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3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선정한 기업
  - ‘벤처기업’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
  -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14조의2에 의거하여 인정

- 우대사항 : 지방소재 중소기업, 중소기업R&D 우수성과 대표기업 등 우대가점 부여

신청제외 대상

- 동 파견사업으로 기 지원 받은 기업은 지원 제외
  (단, 연장지원 협약종료 이후에도 전직인력 계속 고용 기업은 재신청 가능)
- 이외 사업 모집공고상 신청제한 및 지원제외 대상으로 규정한 경우

지원내용

- 지원 세부내용 : 중소기업 파견 연구인력의 연봉 지원 (최대 3년, 기업별 1명)

  * 추가연장 지원 : 파견인력을 기업소속 정규직으로 채용한 경우 연봉의 60% 지원 (정부) 및 해당 인력에게 별도 인센티브 지급(정부 10%, 기업 5%)

- 지원규모 : 총 81명 이내
- 지원금액 : 파견인력 연봉의 50% 이내

신청·접수

- 공고(예정) 시기 : '26.1월
- 신청방법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 신청기업은 온라인 신청 시, 반드시 파견연구인력과 매칭하여 신청
- 제출서류 : 연구개발 계획서, 가점 증빙서류 등
- 선정평가 : 서면평가 및 현장평가
  - 서면평가 : 신청기업의 R&D수행역량, 연구개발과제 수행계획의 적정성, 연구인력의 R&D수행역량, 지원의 효과성 등을 종합하여 선정
  - 현장평가 : 신청서류와 실제 기업현장 평가 9개 평가항목 중 적격항목 7개 이상인 기업 선정

    * 단, 필수항목(연구개발계획서상 ①연구개발인력, ②연구장비·시설, ③보유기술, ④신청품목 관련 기술(권리) 중 1개라도 부적격일 경우 선정대상에서 제외)

- 추진절차

모집공고	→	신청접수	→	선정평가	→	협약체결	→	연구수행
1~2월		상시		상시		상시		최대 3년

문의처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지역정책기획실
  (전화) 044-300-0813, 044-300-0842, 044-300-0843
- 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등

참고사항

① 전년도 사업공고

- 공고명 : '25년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파견) 공고
  - (경로) SMTECH 종합관리시스템/정보마당/R&D 사업공고
  - (홈페이지)

Q&A

Q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공공연 연구인력과 어떻게 매칭할 수 있나요?**

A 공고문의 매칭시스템을 통해 지원수요서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기업과 공공연 연구인력 간 매칭이 진행됩니다.

☞ (인력 매칭) https://smtech.go.kr/region/rpms/main/main.do → 연구인력 수요 기업 → 공동인증서 인증 → 지원수요서 작성 → 연구인력 매칭

Q **동 사업에 참여 중 중단하게 되는 경우, 파견지원사업을 재신청할 수 있나요?**

A 동 파견사업으로 기 지원받은 기업(기업지원계약 체결)은 재참여가 불가합니다.

중소기업 연구인력 지원(R&D) (중소기업 연구인력 현장맞춤형 양성지원)

사업개요

현장맞춤형 연구인력 양성을 통해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연구인력 확보 및 기술경쟁력 제고

〈 전년대비 달라지는 내용 〉

구분	'25년	'26년
지원 대상 (연구 인력)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이며 학위취득(예정)자(4학년 2학기 이상) 및 구직자. 단,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경우, 국내대학에서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에 한함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이며 학사 학위취득(예정)자(4학년 2학기 이상) 또는 전문학사 학위취득자 중 연구경력 2년 이상인 자 및 구직자,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경우, 국내대학에서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에 한함

지원대상

- 신청자격
  - (인력) 자연·공학·의약계열 학사/석사/박사 학위 취득(예정)자 및 구직자
  - (기업) 자연·공학·의약계열 연구인력 채용수요가 있고, 기업부설 연구소(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가 설치된 중소기업 구직자
- 우대사항 : 현장맞춤형 양성지원사업 Level3 참여기업 중 우수한 성과를 보인 기업에 대해 신진·고경력 연구인력 채용지원사업 참여시 선정 절차 우대

신청제외 대상

▸ 타 정부지원 사업의 인건비(현금)지원 불가(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조)

지원내용

- 지원 세부내용 : 우수 예비연구자 양성 및 채용지원
  - (Level 1) 중소기업-연구인력 매칭
  - (Level 2) 중소기업에 인턴으로 채용된 예비연구자의 학위별 지원금 지원
  - (Level 3) 인턴 과정을 수료한 신진연구자에 대한 기업 내 멘토링 방식의 R&D 프로젝트 수행 지원
- 지원규모 : 총 400명 이내(4개 센터별 100명, 80개 기업)
- 지원금액 : 기업당 최대 1,520만원
  - (Level2) 학위별 차등지급

구분	지원기간	지원금액	비고
학사 학위 취득자	2~4개월	1,300,000원/월	〈기업부담금〉 1) 월급여에서 인턴지원비를 제외한 금액 2) 4대보험료
석사 학위 취득자	2개월	1,600,000원/월	
박사 학위 취득자		1,900,000원/월	

  - (Level3) R&D 프로젝트 지원비 : 10,000천원 ~ 12,000천원

신청 · 접수

- 공고(예정) 시기 : '26.1월
- 신청방법 : 4개 연구인력혁신센터*로 이메일 신청

  * 한국교통대학교, 전북대학교, 국립창원대학교, 호서대학교

- 제출서류 : 연구개발 계획서, 가점 증빙서류 등
- 선정평가 : 신청서류 서면평가

심사·평가 주요내용

▸ 신청기업 평가, 기업 R&D 역량 평가, R&D 계획의 적정성 평가, 연구결과의 기대효과 평가

- 추진절차

모집공고	→	신청접수	→	선정평가	→	협약체결	→	연구수행
1월		상시		상시		상시		1년 이내

문의처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지역정책기획실
  (전화) 044-300-0813, 044-300-0842, 044-300-0843
- 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참고사항

① 전년도 사업공고

- 공고명 : '25년 중소기업 연구인력 현장맞춤형 양성지원사업 공고
  - (경로) 4개 연구인력혁신센터*별 공고
    * 한국교통대학교, 전북대학교, 국립창원대학교, 호서대학교
  - (홈페이지)

Q&A

Q **연구인력혁신센터는 어떤 역할을 수행하나요?**

A 중소기업의 연구인력 양성 및 공급을 위하여 지역 및 산업의 연구인력 수요를 기반으로 중소기업과 연구인력을 매칭하고, 현장맞춤형 단계별 프로그램 운영 및 채용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Q **해당 연구인력혁신센터의 졸업(예정)자만 지원 가능한가요?**

A 해당 연구인력혁신센터의 졸업(예정)자가 아니어도 지원가능합니다.

지역특화산업육성

사업개요

비수도권 주력산업분야 중소기업 대상 기술지도, 사업화, 역량강화 등 메뉴판식 기업성장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혁신성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지원대상

- 신청자격 : 비수도권 지역주력산업 및 시군구 연고산업을 영위하는 지역중소기업
- 지원조건 : 비수도권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
- 우대사항 : 지역별 상이

* 세부 신청자격, 지원조건, 우대사항은 시·도별 모집공고 참조

신청제외 대상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규제 중인 자 또는 기업(법원의 회생인가 기업 등 일부 예외)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 중인 기업, 채무불이행자, 파산·회생기업 등
- 타 기업지원사업에서 동일 품목, 동일 내용을 지원받은 기업
- 자본전액잠식, 부채비율 1,000% 이상 기업
- 이 외 국가R&D 참여제한 기업(대표자) 등

* 그 외 시·도 기업 모집공고 상 신청(지원) 제외 대상으로 규정한 경우

지원내용

- 지원 세부내용
  - 지역주력산업육성 : 지역별 주축산업 및 미래신산업분야 지역 중소기업 대상 기업성장 프로그램(기술개발 진입 및 사업화를 위한 시제품 제작, 기술지도, 디자인, 마케팅, 시험분석, 지식재산권 확보 등) 지원
  - 시군구연고산업육성 : 인구감소·관심지역, 농어촌지역 등 지방소멸 위기에 직면한 시군구 단위 지자체 소재의 중소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지원
- 지원규모 : 비수도권 지역중소기업 2,100개사 내외
  ('26년 사업비 806억원)
- 지원금액 : 기업별 최대 5천만원 이내
  (시군구연고산업은 최대 9천만원 이내)

〈 시군구 연고산업육성 지원내용 〉

지원분류	지원내용
혁신화& 성장촉진	지역의 전통산업 기업군을 ICT·플랫폼 기술 등을 접목하여 고도화하거나 유관기관 간 네트워킹 프로그램 운영
인식개선	육성타겟 기업군의 혁신역량 제고 및 트렌드 인식개선을 위해 교육·컨설팅, 기업의 애로사항 모니터링 프로그램을 지원
사업화지원	기존 시제품제작, 마케팅 외 연고산업 관련 소비재의 해외 진출을 위한 해외 바이어 연계 및 거래처 확장 프로그램 신규 추진
패키지지원	지역 내 유망기업 혹은 유망제품을 선정하여 사업화를 위한 기업수요에 기반한 맞춤형 패키지 기획 및 지원
생산성 향상	노후되었거나 안전장치가 미흡한 생산장비의 개선, 고위험 장비의 DX 전환, 생산라인 효율화 등
외국인 인력채용 프로그램	외국인 인력 채용을 위한 채용박람회 참가, 관련 플랫폼 사용 비용 지역특화형 비자신청 관련 행정 자문 정착을 위한 언어 · 문화 교육 지원 외국인 인력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각종 지침 · 안내서 번역 지원 (프로그램 구성 시 필수)

신청 · 접수

- 신청방법
  - 주관기관(혁신기관)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 (www.smtech.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 지원기업 : 지역특화산업육성 기업지원사업 관리시스템 (smtech.go.kr/region/rms)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 제출서류 : (주관기관) 사업계획서 등, (지원기업) 사업신청서, 수행계획서 등
- 선정평가 : 주관기관 선정 이후 주관기관별 기업모집 공고에 따라 지원기업 선정

심사·평가 주요내용

- 주관기관 : 지역별 테크노파크 정책지정 또는 사전검토, 현장실태조사, 발표평가를 통한 지역혁신기관 선정
  * 사업수행 내용, 추진체계, 기업지원 역량, 기대효과 등을 종합평가
- 지원기업 : 지원 필요성, 지원내용 타당성, 기대효과 등을 종합평가
  * 심사·평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부사업 공고 확인

- 추진절차

(지역혁신기관) 지원기업 모집공고 → (지원기업) 신청·접수 → 사전검토 (예비진단) → 선정평가 및 협약 → 선정기업 지원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혁신정책과 (전화) 044-204-7578, 7587, 7295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지역특화사업실
  (전화) 044-300-0824 (이메일) swyi@tipa.or.kr
- 사업 및 시스템 문의 (1357), 정책정보 (www.bizinfo.go.kr)

Q&A

Q **지원기업으로 참여하고 싶은데, 신청은 언제 할 수 있나요?**

A 지역별 기업지원이 가능한 테크노파크 혹은 지역혁신기관이 주관기관으로 과제를 수행하며, 해당 주관기관에서 지원기업을 모집합니다.

3월부터 지역특화산업육성 기업지원사업 관리시스템 (smtech.go.kr/region/rms) 혹은 주관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기업 모집 공고가 진행됩니다.

Q **지원기업으로 기업지원 서비스를 지원 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A 기업의 지원조건은 매출액, 수출액 및 기업규모, 산업분야 등이 있습니다. 이는 사업별, 프로그램별로 지원조건이 상이하며, 해당 내용은 기업지원사업의 공고문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이 때 지원대상 제외 조건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지역특화산업육성 기업지원사업을 통해 어떤 것을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주력산업 기업지원의 경우, 시제품 제작, 기술지도, 특허·인증 등 기술지원 프로그램과 컨설팅, 제품 고급화, 디자인 및 브랜드 개선, 상품기획, 마케팅 등의 사업화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용어 설명

지역혁신기관 : 지역 내에서 인력·산업 등을 연계·활용하여 기술개발, 인력양성, 사업화 등을 지원 또는 직접 수행하는 기관으로 지역테크노파크, 창조경제혁신센터, 지역특화센터, 지자체연구소, 출연연 지역 분원, 대학 등이 포함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지정사업

사업개요

중소기업 R&D지원사업을 통해 개발된 기술혁신 우수제품을 혁신제품으로 지정하여 초기 판로지원 및 공공구매 연계 활성화 지원

〈 전년대비 달라지는 내용 〉

구분	'25년	'26년
신청자격	최근 5년 내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 R&D사업 수행 완료(성공) 후 그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	R&D사업 수행 완료(우수, 보통)
신청제외대상	▸ 물품식별번호 세부품명이 제조물품*이 아닌 경우 * 신청제품이 직접생산(또는 협업승인**)이 아닌 단순 공급 또는 OEM제품으로 확인될 경우, 평가 이후에라도 '조달적 합성검토' 단계에서 보류 또는 제외대상이 될 수 있음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39조의2에 따른 협업승인대상 기업은 협업기업선정확인서 제출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39조의2에 따른 협업승인대상 기업은 협업기업선정 확인서 제출(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지정된 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의 경우에는 직접생산확인서 제출)
신청접수	(상반기) 2월, (하반기) 8월	(상반기) 1월, (하반기) 7월
구매상담회	1회	2회

지원대상

◉ 신청자격 : 최근 5년 내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 R&D사업 수행 완료(우수, 보통) 후 그 기술을 사업화한 중소기업의 제품

* 신청 전 나라장터(www.g2b.go.kr)에서 조달업체 등록 및 물품식별번호 발급

신청제외 대상 ※ 모집공고 확인 필수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라 혁신제품으로 지정된 이력이 있는 제품
  * 타부처 혁신제품, 조달청 혁신시제품 등 '혁신제품'으로 기지정 되었거나, 신청 중인 제품은 지원불가
  ** 우수조달물품 지정이력이 있는 제품은 추후 지정연장 대상에서 제외
- 물품식별번호가 미기재*되어 있거나 동일 물품식별번호로 4회 이상 탈락한 이력이 있는 제품
  * 공고마감일 이전에 물품식별번호 발급 완료 필수
- 물품식별번호 세부품명이 제조물품*이 아닌 경우
  * 신청제품이 직접생산(또는 협업승인**)이 아닌 단순 공급 또는 OEM제품으로 확인될 경우, 평가 이후에라도 '조달적합성검토' 단계에서 보류 또는 제외대상이 될 수 있음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39조의2에 따른 협업승인대상 기업은 협업기업선정확인서 제출(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지정된 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의 경우에는 직접생산확인서 제출)
- 신청제품과 기 수행한 R&D과제 간 연관성이 없는 경우

지원내용

- 중소기업 R&D지원사업을 통해 개발된 제품의 공공성 및 혁신성 등을 평가·심사하여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으로 지정
  - 정부,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과 계약 시 수의계약 가능(3년)
  - 공공기관과 중소기업 구매상담회 행사, 홍보 등 판로지원

신청·접수

- 공고(예정) 시기 : 1월, 7월
- 신청방법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 (www.smtech.go.kr) 온라인 신청
- 제출서류 : 혁신제품 지정 신청서, 증빙서류 등

심사·평가 주요내용

- 제품의 공공성, 기술혁신성, 시장성 등

◉ 선정절차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과
(전화) 044-204-7767
(이메일) ziantinha@korea.kr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성과확산실
(전화) 044-300-0712, 0715
(이메일) innopro@tipa.or.kr

◉ 사업문의(1357), 정책정보(www.bizinfo.go.kr)

참고사항

① 전년도 사업공고

◉ 공고명 : 2025년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지정제도 시행계획(상반기) 공고

- (경로) SMTECH 〉 정보마당 〉 R&D사업공고
- (홈페이지)

- 공고명 : 2025년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지정제도 시행계획(하반기) 공고
  - (경로) SMTECH 〉 정보마당 〉 R&D사업공고
  - (홈페이지)

용어 설명

물품분류번호(8자리) : 물품의 기능, 용도, 성질에 따라 대, 중 소 세분류로 나누어 번호를 매긴 것

세부품명번호(10자리) : 물품분류번호를 용도, 재질, 형태 등에 따라 세분화하여 번호를 추가(2자리)로 매긴 것

물품식별번호(8자리) : 상기한 물품 분류 내 고유 모델(제품)에 부여되는 고유번호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개요

제품설계·생산공정 개선 등을 위한 스마트공장 솔루션 구축, 솔루션 연동 자동화장비·제어기 센서 등 구입 지원 및 ICT를 접목한 생산현장 맞춤형 생산정보시스템 구축 지원

〈 전년대비 달라지는 내용 〉

구분	'25년	'26년
지원기간	(고도화) 최대 9개월, (동일수준) 최대 6개월	최대 9개월
지원한도	(고도화) 최대 2억원, (동일수준) 최대 0.5억원	최대 2억원 이내 (단, 목표수준별 2회, 2.5억원 한도)

지원대상

- 신청자격 : 국내 중소·중견 제조기업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대기업)은 제외
- 지원조건

구분	지원조건
고도화	기업당 최대 2억원(단 수준별 2.5억원 한도), 총 사업비의 50% 이내(사업별 상이)
고도화(동일수준)	

- 우대사항 : 지원 사업별 세부 공고문 참조

신청제외 대상

- 휴·폐업중인 기업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 유흥·향락업, 숙박·음식점
-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 개별 사업공고에서 '신청제한' 또는 '지원제외' 사항 등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내용

지원 세부내용

유형	지원내용
고도화	기 구축 스마트공장의 활용도와 보급수준 향상을 위한 기존 시스템의 고도화 및 스마트공장 설비와 연계 시스템의 추가 구축·연동을 지원하여 목표 수준 '중간1 이상 또는 동일수준' 달성을 위한 구축지원
고도화(동일수준)	

지원규모

사업명			지원 과제 수	지원 기간(개월)	지원 한도(억원)	지원비율(%)
ICT융합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선도형 제조혁신)	정부형		265	9	2	50
	부처협업형		150	9	2	50
	지역특화형		미정	9	2	50
		레전드50+	50	9	5	50
		도약(Jump-Up)	10	9	5	50
	제조AI특화		400	9	2	50
	대중소상생형		250	9	1.2	30
		상생형AI트랙	20	9	5	50
	R&D성과확산		20	12	5	50

지원금액 : 지원사업별 세부 공고문 참조

신청·접수

- 공고시기 : '25. 11월 ~ / (세부사업별 상이)
- 신청방법 : 사업관리시스템(www.smart-factory.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등(지원사업별 세부 공고문 참조)
- 선정평가 : 요건검토 → 서면평가 → 기술성평가 → 현장확인

심사·평가 주요내용

▸ 기술성평가를 통해 사업계획서 평가 및 지원대상 선정
  * 전문 원가계산기관을 통해 사업비 검토 및 조정 진행
  * 사업별 심사·평가 내용이 다를 수 있으므로 세부사업 공고 확인

- 추진절차 (세부사업별 상이)

문의처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제조혁신사업실
  (전화) 044-300-0957 (이메일) ljh0129@tipa.or.kr
- 사업관리시스템 : www.smart-factory.kr
- 사업문의(1357), 정책정보(www.bizinfo.go.kr)

참고사항

- 통합공고 : (제2025-574호) 2026년 스마트제조혁신 지원사업 통합 공고('25.10.31.)
- 개발사업 : (제2025-587호) 2026년도 정부형 스마트공장 구축 사업 공고('25.11.12.)
- (경로)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

  - 사업안내 - 사업공고

  - (홈페이지)

디지털협업공장 구축사업

사업개요

개별공장의 스마트화 지원을 넘어 스마트공장 간 데이터 기반의 상호 연결을 통해 시너지 창출 및 기업 간 연계성 강화

지원대상

- 신청자격 : 중소·중견 제조기업(5개 이상), 공급기업 컨소시엄, 기획기관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형태
- 지원조건 : 총 사업비 50% 이내 정부지원금 지원
  (컨소시엄당 최대 10억)

구분		지원조건	정부지원금 (최대)
개별 스마트공장 + 공동·협업 스마트시스템	고도화1	• 중간1 수준 이상 스마트공장 구축 * 생산정보 실시간 수집·분석	2억원
	고도화 (동일수준)	• 수준 향상 없이 재신청하는 경우 * 중간1→중간1, 중간2→중간2	0.5억원

- 우대사항 : 대표기업 기준으로 적용하며, 가점 항목당 3점, 최대 5점 부여

구분	항목	세부내용	제출서류
1	수준확인	• '스마트공장 수준확인'를 통해 스마트화 수준 확인을 받은 기업	수준 확인서 (발급일로부터 3년내)
2	스마트공장 솔루션 가동률 우수기업	• 사업공고일 이전 연속 6개월간 스마트공장 솔루션 가동률 100%인 기업 ('21년 이후 구축기업 중 월 가동일 20일 이상)	스마트공장 솔루션 가동률 확인

신청제외 대상

- 휴·폐업중인 기업
- 국세 및 지방세 체납기업
- 유흥·향락업, 숙박·음식점 등 부적합 업종
-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 개별 사업공고에서 '신청제한' 또는 '지원제외' 사항 등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내용

- 지원 세부내용 : 협업체 중심의 공동·협업 스마트 시스템 구축 및 개별 스마트공장 보급 지원
  - (공동 · 협업시스템 구축) 제품 개발 · 생산, 유통 · 물류 관리 등의 컨소시엄 간 연계 및 공동 활용이 가능한 스마트 시스템 구축지원
  - (개별 스마트공장 구축) 제품설계 · 생산공정 개선 등 스마트 솔루션 구축 및 이와 연동되는 자동화장비 · 제어기 · 센서 등 개별기업 지원
- 지원규모 : 6개 컨소시엄 내외
- 지원금액 : 60억원

신청·접수

- 접수기간 : '25. 12. 8.(월) ~ '26. 1. 7.(수), 17시까지
- 공 고 명 : 2026년 디지털협업공장 구축사업 공고
- 신청방법 : 사업관리시스템(www.smart-factory.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등(지원사업별 세부 공고문 참조)
- 선정평가 : 서면평가(사업신청서) → 기술성평가(사업계획서) → 현장확인

심사·평가 주요내용

- 기술성평가를 통해 사업계획서 평가 및 지원대상 선정

● 추진절차

① 사업공고	② 신청 · 접수	③ 요건검토	④ 서면평가
중소벤처기업부	중소 · 중견 컨소시엄	추진기관	추진기관 (DX멘토단)

⑧ 사업착수, 중간점검	⑦ 협약체결	⑥ 현장확인	⑤ 기술성평가(대면)
컨소시엄	추진기관, 컨소시엄	추진기관 (DX멘토단)	추진기관 (DX멘토단)

⑨ 최종점검	⑩ 최종평가 (성공/실패/보완 판정)	⑪ 집중A/S(6개월) (최종평가 "보완" 시)	⑫ 최종재평가 (성공/실패 판정)
전문감리기관	기획기관(DX멘토단)	공급기업	기획기관 (DX멘토단)

문의처

●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제조혁신사업실
(전화) 044-300-0961 (이메일) keun7100@tipa.or.kr

● 사업관리시스템 : www.smart-factory.kr

● 사업문의(1357), 정책정보(www.bizinfo.go.kr)

참고사항

● 공고명 : (제2025-593호) 2026년도 디지털협업공장 구축지원사업 공고('25.11.24.)

- (경로) 스마트공장사업관리시스템 – 사업안내 - 사업공고
- (홈페이지)

Q&A

Q **디지털협업공장 구축 사업은 무슨 사업인가요?**

A 스마트공장 간 데이터 기반의 상호연결을 통해 시너지 창출 및 기업 간 연계성 강화 등을 위해 공동 · 협업 스마트시스템+개별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Q **사업 신청시 조건사항이 있나요?**

A 컨소시엄 형태의 사업으로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 · 중견기업이 최소 5개이상 참여하고, 공급기업과, 기획기관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이 지원대상이며, 세부적인 사항은 모집공고 내 신청자격 및 제출 서류 등 항목을 확인 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어 설명

도입기업 : 공동·협업 스마트 시스템 구축·활용 및 개별 스마트공장 구축·고도화를 희망하는 중소·중견기업

공급기업 : 스마트공장 구축 역량을 보유한 기업 및 협업체로 사업관리 시스템의 '공급기업 Pool'에 등록된 기업

기획기관 : 디지털협업공장을 추진하기 위해서 전략수립 및 컨소시엄 관리 등 체계적으로 기획 · 지원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한 기관

컨소시엄 : "디지털협업공장"의 수행하기 위해 기획기관, 도입기업, 공급기업으로 구성된 협업단

(IEC 62541) OPC 통합 아키텍처 : 설비(하드웨어)-플랫폼-솔루션의 데이터 연계가 가능한 인터페이스의 데이터 교환을 위한 통신 표준

(IEC 63278) Asset Administration Shell for industrial applications (AAS) : 설비의 관리를 위한 센서 및 각종 제원을 저장하는 데이터 저장 캡을 통해 데이터를 저장하고 플랫폼과 솔루션 간 데이터 교환

자율형공장 구축지원

사업개요

- (자율형공장) AI·디지털트윈 기반 실시간 관제, 분석·예측 등 작업자 개입을 최소화하는 자율형공장 구축 지원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 향상

〈 자율형공장 전년대비 달라지는 내용 〉

구분	'25년	'26년
기획기관 요건	• (실적) AI·DT 관련 컨설팅 실적 10건 이상 보유 • (인력) AI·DT 관련 컨설팅 경험 상근 컨설턴트 5명 이상 보유	• (실적) AI·DT 관련 컨설팅·기업지원, 과제관리·운영 실적 10건 이상 보유 • (인력) AI·DT 관련 컨설팅·기업지원, 과제관리·운영 상근 컨설턴트 5명 이상 보유
기획기관 선정	• 요건통과 기관에 대해 기획기관 Pool 구성 및 운영	• 요건검토 및 수행능력평가를 거쳐 기획기관 선정 및 기획기관 Pool 구성 * 지역TP 기본 지정
기획지원	• 과제기획 후 현장평가 결과에 따라 과제당 최대 20백만원 차등 지급	• 기획지원 후 최종선정에 따른 협약체결 결과에 따라 과제당 최대 20백만원 차등 지급
성능지표	• (공정혁신지표) 6개 중 2개 이상 • (자율형지표) AI·DT 반영 1개 이상	• (공정혁신지표) 8개 중 2개 이상 • (자율형지표) AI·DT 반영 2개 이상

지원대상

- (자율형공장) 신청자격 : 국내 중소·중견 제조기업 중 '중간1' 이상 스마트공장 구축기업 또는 '중간1' 이상 수준확인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 휴·폐업중인 기업
- 국세 및 지방세 체납기업
- 유흥·향락업, 숙박·음식점 등 부적합 업종
-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에 참여중인 기업
  (해당 지원사업의 구축기간이 종료된 경우 참여 가능)
- 동일·유사한 사업계획서로 정부에서 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은 경우
- 스마트제조혁신 지원사업에거 '참여제한' 중인 기업

지원내용

- (기획지원) 공정분석 및 실행전략 등 자율형공장 기획지원 등
- (구축지원) AI·DT 적용 가상환경 기반 자율형공장 구축지원 등

지원조건

- (자율형공장) : 총 사업비 50%(6억원) 이내
  (최대 2년, 연 3억원 이내 지원)

구분	지원조건	정부지원금 (최대)
자율형공장	• 중간1 수준 이상 스마트공장 구축 * AI(인공지능), DT(디지털트윈), AAS(제조데이터표준) 적용 필수	6억원(2년)

신청·접수

- 접수기간 : '25년 12월 8일 ~ '26년 1월 7일 17시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 사업관리시스템(www.smart-factory.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등(지원사업별 세부 공고문 참조)
- 선정평가 : 서면평가(사업신청서) → 기획지원 → 기술성(현장심층)평가

심사·평가 주요내용

▸ 기술성(현장심층)평가를 통해 사업계획서 평가 및 지원대상 선정
  * 전문 원가계산기관을 통해 사업비 검토 및 조정 진행
  * 사업별 심사 · 평가 내용이 다를 수 있으므로 세부사업 공고 확인

● (자율형공장) 추진절차

① 사업공고	② 신청 · 접수	③ 요건검토	④ 1차 서면평가
중소벤처기업부	중소 · 중견 컨소시엄	추진기관	추진기관 (평가위원회)

⑧ 협약체결	⑦ 최종선정	⑥ 2차 현장평가	⑤ 기획지원
추진기관-컨소시엄	중소벤처기업부, 추진기관	추진기관 (평가위원회)	도입 · 공급 · 기획기관 (컨소시엄)

문의처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제조혁신사업실
(전화) 044-300-0959 (이메일) sanga0315@tipa.or.kr

● 사업관리시스템 : www.smart-factory.kr

● 사업문의(1357), 정책정보(www.bizinfo.go.kr)

참고사항

● 공고명 : (제2025-601호) 2026년도 자율형공장 구축 지원사업 공고 ('25.11.24일)

- (경로)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 – 사업안내 – 사업공고
- (홈페이지)

스마트공장 수준확인제도

사업개요

중소·중견 제조기업의 자발적인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를 유도하고 스마트화 수준을 진단하는 스마트공장 수준확인 제도 운영

지원대상

- 기업 자체역량으로 스마트공장을 구축한 국내 중소·중견기업
- 자발적으로 고도화를 추진하여 수준 상승이 예상되는 국내중소·중견기업
- 스마트공장 수준확인서 유효기간이 만료된 기업

신청제외 대상

- 휴·폐업중인 기업
- 국세 및 지방세 체납기업
- 유흥·향락업, 숙박·음식점 등 부적합 업종
-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 개별 사업공고에서 '신청제한' 또는 '지원제외' 사항 등에 해당하는 경우
-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에 참여중인 기업(해당 지원사업 종료 후 참여가능)

지원내용

- (스마트화 수준확인) 기업이 제조수준에 대하여 인식 할 수 있도록 기업 스마트화 수준확인 및 수준확인서 제공

- (고도화 전략 제공) 기업이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 방향 결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심사보고서 제공
- (지원규모) : 2,000개사 내외

신청·접수

- 공고(예정) 시기 : '26년 1월
- 신청방법 :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신청
  * 스마트공장 사업관리 시스템(www.smart-factory.kr) 접속 → 회원가입 → 로그인 → 사업 안내 → 사업 공고
- 신청기간 : 공고일로부터 예산 소진시까지 수시 접수

문의처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제조혁신사업실
  (전화) 044-300-0955 (이메일) kim13779@tipa.or.kr
- 사업관리시스템 : www.smart-factory.kr
- 사업문의(1357), 정책정보(www.bizinfo.go.kr)

참고사항

- 통합공고
- 공고명 : 2026년도 스마트 제조혁신 지원사업 통합공고 및 세부 사업 공고
  - (경로)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 – 사업안내 – 사업공고
  - (홈페이지)

공급기업 역량진단

사업개요

공급기업에 대한 객관적인 진단정보를 제공하여 공급기업의 자발적 역량강화 및 도입기업의 양질의 스마트공장 구축을 촉진

〈 전년대비 달라지는 내용 〉

구분	'25년	'26년
지원분야	기본진단 / 심화진단	기본-심화진단 통합 제조AI 역량진단 시행

지원대상

- 신청자격 : 중소·중견기업 중 스마트공장 공급기업
- 지원조건 : 역량진단 진단비용 80%

구분	공급기업 역량진단	AI 역량진단
지원조건	역량진단 진단비용 80% 지원	

신청제외 대상

- 휴·폐업 중인 기업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 유흥·향락업, 숙박·음식점,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 최근 3년이내에 스마트제조혁신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제재조치를 받은 기업
- 공급기업 역량진단 결과확정 후, 6개월 미만 기업

지원내용

- 지원 세부내용 : 중소·중견 공급기업의 역량진단 지원
  - (공급기업 역량진단) 공급기업 역량진단 모델 등을 기반으로 전문 진단원이 역량을 진단하고, 분야별 개선방향 컨설팅 제공
  - (AI 역량진단) 역량진단 참여기업의 제조AI 솔루션 개발역량 평가 및 등급 산정을 통해 진단결과를 기업에 제공
- 지원규모 : 공급기업 775개
- 지원금액 : 8억원

신청·접수

- 공고(예정) 시기 : '26년 3월 예정
- 신청방법 : 사업관리시스템(www.smart-factory.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 제출서류 : 역량진단 신청서 및 관련 동의서 등 공고문 확인 요망

심사·평가 주요내용

▸ 경영, 기술, 프로젝트 관리 역량

- 추진절차

* 관련 내용은 세부사업 공고 확인

- 참고사항 : 스마트공장, 스마트서비스 선정평가 항목에 공급기업 역량진단 결과 반영 예정

문의처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스마트전문기업육성팀
  (전화) 044-300-0972 (이메일) smartfactory@tipa.or.kr
- 사업관리시스템 : www.smart-factory.kr
- 사업문의(1357), 정책정보(www.bizinfo.go.kr)

참고사항

① 전년도 사업공고

- 공고명 : 2025년 스마트공장 공급기업 역량진단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
  - (경로) 스마트공장사업관리시스템 – 사업안내 - 사업공고
  - (홈페이지)

제조DX멘토단 활용지원사업

사업개요

대기업 등 현장경험이 풍부한 제조혁신 전문가(제조DX멘토단)를 활용하여 스마트공장 기획·구축 지도 및 운영 애로사항 해결지원

〈 전년 대비 달라지는 내용 〉

구분	'25년	'26년
사업 추가	3개 내역사업 (사전기획, 구축지도, 사후관리)	4개 내역사업 (사전기획, AX기획, 구축지도, 사후관리)

지원대상

◉ 국내 중소·중견기업

신청제외 대상

- 휴·폐업중인 기업
- 국세 및 지방세 체납기업
- 유흥·향락업, 숙박·음식점 등 부적합 업종
-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 개별 사업공고에서 '신청제한' 또는 '지원제외' 사항 등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내용

구분	지원내용	지원 비중	지원 규모
사전기획	스마트공장 구축을 포함한 제조DX 전략 수립, 제조혁신 지원사업 참여에 필요한 사업계획서 작성 지원 등	85%	500개사
AX기획	공장 내 문제를 AI를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기업별 최적 AI 솔루션 탐색 및 스마트공장 도입 전략 수립, 사업계획서 작성 지원 등		200개사
구축지도	선도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사업에 선정된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스마트공장 설계단계에서의 애로사항 해결 지도 및 노하우 전수 등		400개사
사후관리	부품수리·교체, H/W·S/W 업그레이드 등 솔루션 활용률 제고를 위한 유지보수 지원 등	50% (최대 19백만원)	210개사

신청·접수

- 공고(예정) 시기 : '26년 2월
- 신청방법 :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신청
  - * 스마트공장 사업관리 시스템(www.smart-factory.kr) 접속 → 회원가입 → 로그인 → 사업 안내 → 사업 공고

문의처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부설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전화) 044-300-0961 (이메일) keun7100@tipa.or.kr
- 사업관리시스템 : www.smart-factory.kr
- 사업문의(1357), 정책정보(www.bizinfo.go.kr)

참고사항

- 2026 사업공고
- 공고명 : 2026년 제조DX멘토단 활용지원사업 통합공고 및 지역별 세부 공고
  - (경로)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 – 사업안내 – 사업공고
  - (홈페이지)

클라우드 제조솔루션 지원사업

사업개요

제조솔루션을 공용 클라우드 환경에서 활용가능한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형태의 솔루션 전환 및 종합솔루션 개발·출시

〈 전년 대비 달라지는 내용 〉

구분	'25년	'26년
사업분야 명칭 변경	(클라우드화) (종합솔루션화)	(단독형 클라우드화) (통합형 클라우드화)

지원대상

- 국내 중소·중견 공급기업

신청제외 대상

- 휴·폐업중인 기업
- 국세 및 지방세 체납기업
- 유흥·향락업, 숙박·음식점 등 부적합 업종
-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 최근 3년이내에 스마트제조혁신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제재조치를 받은 기업

지원내용

사업분야	지원내용	지원비중	지원규모
단독형 클라우드화	· 기존 중소 공급기업이 보유·사업화 중인 제조솔루션을 공용 클라우드 환경에서 서비스가 가능한 제조솔루션(SaaS형) 개발 지원(SW → SaaS 전환)	50%	7
통합형 클라우드화	· 업종별 대표 또는 생산공정에 적용가능하고, 사회·정책이슈대응이 가능한 다수 제조솔루션이 연계·통합된 종합솔루션 개발 지원	50%	1

신청·접수

- 공고 시기 : '25년 12월 16일
- 신청방법 :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신청
  - * 스마트공장 사업관리 시스템(www.smart-factory.kr) 접속 → 회원가입 → 로그인 → 사업 안내 → 사업 공고 온라인 신청

문의처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부설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전화) 044-300-0945(사업관리)
- 사업관리시스템 : www.smart-factory.kr
- 사업문의(1357), 정책정보(www.bizinfo.go.kr)

참고사항

① 전년도 사업공고

- 공고명 : 2024년도 스마트 제조혁신 지원사업 통합공고 및 세부 사업 공고
  - (경로)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 – 사업안내 – 사업공고
  - (홈페이지)

제조데이터 상품가공 지원

사업개요

제조데이터 상품화 지원을 통해 제조기업 현장에서 수집·저장된 제조데이터의 품질 향상 및 부가가치 증대 도모

〈 전년대비 달라지는 내용 〉

구분	'25년	'26년
우대사항	제조데이터 라이브러리 거래실적 (3) 제조데이터 표준 (5)	제조데이터 라이브러리 거래실적 (3) **(신설) '25년 제조데이터 컨설팅(수시모집) 완료 기업 (3)**

지원대상

- 신청자격 : 제조데이터를 수집중인 국내 중소·중견 제조기업
- 우대사항 : 아래항목 해당 시 선정평가 가점 반영(최대 6점*까지 인정)

  * 제조데이터 라이브러리 거래실적(3점), '25년 제조데이터 컨설팅(수시모집) 완료 기업(3점)

  ※ 우대사항은 세부내용은 사업공고 참조

신청제외 대상

- 기업의 부도, 휴·폐업중인 기업, 유흥·향락업, 숙박·음식점,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및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 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 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외부감사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년도 말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 제재처분 조치 기간 중인 기업의 경우

지원내용

- 지원 세부내용 : 중소·중견 제조기업 내 축적된 제조데이터를 활용하여 AI 분석용 제조데이터 가공 및 품질검증 등 제조데이터 상품화 지원
- 지원규모 : 25개 개업 내외(최대 4개월, 0.5억원(총사업비의 80% 이내) 지원
- 지원금액 : 12.5억원

신청·접수

- 공고(예정) 시기 : '25년 12월
- 신청방법 :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www.smart-factory.kr) 온라인 신청·접수
-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명원, 최근년도 재무제표 등
- 선정절차 : ①요건검토 → ②선정평가 → ③현장확인 → ④최종선정
- 심사·평가 주요 내용 : 사업 이해도 및 필요성, 사업수행 공정 및 수행방안, 수행 결과물 및 상품화, 프로젝트 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추진절차

① 사업공고	② 신청·접수 (요건검토)	③ 선정평가	④ 현장확인 (원가계산포함)
중소벤처기업부	지원·가공기업 (운영기관)	운영기관 (평가위원회)	운영기관 (평가위원, 원가계산기관)

⑤ 협약·사업착수	⑥ 수시점검 (필요시)	⑦ 최종감리	⑧ 완료점검 (성공·실패 판정)
전문기관, 운영기관, 지원·가공기업	운영기관 (평가위원)	운영기관 (감리기관)	운영기관 (평가위원)

문의처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제조데이터전략실
(전화) 044-300-0941, 0946 (이메일) kosmo1@tipa.or.kr

● 사업관리시스템 : www.smart-factory.kr

● 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참고사항

① 전년도 사업공고

● 공고명 : 2025년 제조데이터 상품가공 지원사업 모집공고

- (경로) home → 사업안내 → 사업공고 → 사업공고
- (홈페이지)

제조 분야 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사업

사업개요

중소·중견기업이 제조현장에 신속하게 적용할 수 있는 AI 응용제품 개발을 지원하여, 중소 제조업에 AX 제품을 빠르게 보급·확산

지원대상

- 신청자격 : 중소·중견 제조기업, 제조AI 기술기업, 지역혁신기관, 대학·연구기관 등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 지원조건 : 사업비의 70% 이내 국비 지원
- 우대사항 : 정부 주관 경진대회 수상 AI 솔루션 적용 과제, 고용노동부 주관 S- OJT 사업 참여 제조기업

신청제외 대상

- 휴·폐업중인 기업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 유흥·향락업, 숙박·음식점
-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 개별 사업공고에서 '신청제한' 또는 '지원제외' 사항 등에 해당하는 경우
- 로봇활용 제조혁신 지원사업 또는 스마트제조혁신 지원사업에서 '참여제한' 중인 기업
- 다음과 같은 형태로 구성된 컨소시엄
  가. 서로 법인격으로 분리되어 있으나, 인적·물적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기관 간 컨소시엄
  나. 사업자 등록번호가 다르더라도 동일법인내 사업장간 컨소시엄

지원내용

- 공모방식 : 테마지정 공고

  * (테마분류) 지원목표와 과제 특성을 반영하여 산업안전·공정혁신·경영혁신·소비자 체감형 등 4대 분류로 구분하고, 사업 공고문과 함께 테마 공개(예정)

- 지원규모 : 36개 과제 내외(1년과제 21개 내외, 2년과제 15개 내외)
- 지원금액 : 총 645억원

  (자부담 30% 별도, 1년과제 최대 20억원 이하, 2년과제 최대 30억원 이하)

- 지원 세부내용 : 산업안전 혁신(중대재해 예방, 작업환경 개선), 인력 문제 완화(단순·반복업무 자동화), 기업 경쟁력 강화(원가절감, 생산 효율 증대)를 목적으로 중소제조 현장문제 해결 및 지역 주력산업 기반의 확산가능한 AX 선도모델 창출

신청 · 접수

- 공고(예정) 시기 : '26. 1월말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 사업관리시스템(www.smart-factory.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등(지원사업별 세부 공고문 참조)
- 선정평가 : 서면평가+대면평가(2배수) → 현장평가 → 최종 선정

심사·평가 주요내용

▸ ❶단기간내 성과창출 가능성, ❷향후 보급확산 용이성, ❸AI 기술을 활용한 중소제조현장 핵심 애로 해결 기여도 중심

- 수요기업(제조기업)의 준비도 및 DX 수준(50%), 제조AI 기술기업의 기술력 및 사업 이력(50%) 균형 반영
- 지역 주력산업 선도형에 지원하는 과제는, 비수도권 지역의 대표 앵커기업 중심으로 성공모델 창출 후 관련 기업군으로 단계적 확산 가능성 중점 평가

● 추진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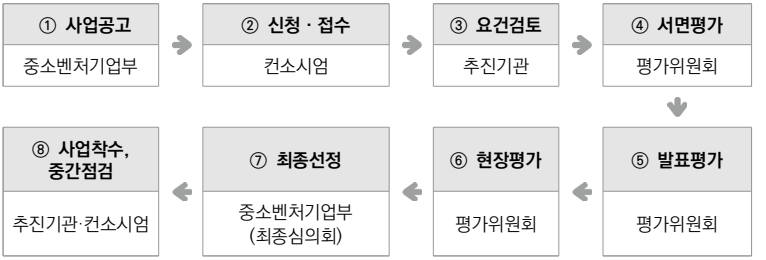

* 평가의견 및 최종심의회 결과에 따라 지원예산이나 기간, 과업범위 등이 조정될 수 있음.

문의처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제조AX전략팀
(전화) 044-300-0903/0904/0907
(이메일) smartfactory@tipa.or.kr

● 사업관리시스템 : www.smart-factory.kr

● 사업문의(1357), 정책정보(www.bizinfo.go.kr)

참고사항

① 테마고시

● 고시기간 : '26.1월초 (예정)

● 고시대상 : 15개 테마정의서

● 고시내용 : 테마품질 진단 및 보완의견 수렴

* 사업관리시스템(www.smart-factory.kr)을 통한 의견 제시

② 사업공고

● 공고기간 : '26.1월말 ~ 2월말 (예정)

● 공고명 : 제조 분야 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사업 수행기관 모집 공고

- (경로)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www.smart-factory.kr) 〉 사업안내 〉 사업공고 〉 세부공고명 상에 '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사업' 검색
- (홈페이지)

용어 설명

지역혁신기관 : 지역의 산업·기술·인재·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혁신 활동을 수행하는 공공·준공공·민간 조직

지역주력산업 : 비수도권 지역의 보유한 산업적·기술적·인적 자원과 연계하여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성장을 목적으로 중점 육성하는 핵심 산업

S-OJT 사업 : 기업맞춤형 현장훈련 지원사업

중소기업 스마트서비스 지원

사업개요

중소기업의 서비스 분야를 대상으로 빅데이터·AI 등 첨단 ICT를 활용한 혁신을 지원하여 서비스 고부가가치화, 신사업(서비스) 창출 등 도모

〈 전년대비 달라지는 내용 〉

구분	'25년	'26년
지원규모	• 신규 120개사 내외, 기업당 최대 5천만원(총사업비 50% 이내) • 고도화 25개사 내외, 기업당 최대 1억원(총사업비 50% 이내) • 통합솔루션 4개사 내외 기업당 최대 5억원(총사업비 50% 이내)	• 신규 150개사 내외, 기업당 최대 5천만원(총사업비 50% 이내) • 고도화 25개사 내외, 기업당 최대 1억원(총사업비 50% 이내)
신청방법	• 스마트서비스 지원사업 사업관리시스템(www.smb-service.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www.smart-factory.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 사업관리시스템 통합에 따른 온라인 신청 방법 변경

지원대상

- 신청자격 : 국내 중소기업(서비스 분야)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도입기업이 공급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사업 신청 (공급기업 없이 단독 참여 불가)

신청제외 대상

(1)~(4) 도입기업만 해당, (5)~(8) 도입·공급 기업 모두 해당
(1) 중소기업 스마트서비스 지원사업 신규과제 참여이력이 있는 기업은 신규과제 참여 불가
(고도화 과제만 참여가능하며, 도입기업 기준 고도화 과제는 1회만 참여가능)
(2)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 참여이력이 있는 기업(참여 중이거나 예정인 기업 포함)
(3) 스마트공방 사업 참여이력이 있는 기업(참여 중이거나 예정인 기업 포함)
(4) 장비 도입이 주목적인 기업
(5) 불건전 소프트웨어 및 공급업 / 유흥·향락업, 주점업
(6) 부도 및 휴·폐업 중인 기업
(7)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8) 그 외 지원 제외 대상은 모집공고 확인

지원내용

- (신규 구축) BM 창출 및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등에 대한 디지털 전환(DX) 솔루션 구축 지원(총예산 75억원)
  - 150개사 내외, 기업당 최대 5천만원(총사업비 50% 이내)
- (고도화) 솔루션 신규 도입 후 매출·고용·고객만족도 등 높은 성과 달성 등 우수기업에 솔루션 고도화 지원(총예산 25억원)
  - 25개사 내외, 기업 당 최대 1억원(총사업비 50% 이내)

신청·접수

- 공고(예정) 시기 : '25.3~4월(예정)
- 신청방법 :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www.smart-factory.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등(세부 공고문 참조)
- 선정평가 : 요건검토 → 서면평가 → 현장평가(실사)를 통해 최종 지원대상 선정

* 서면평가 및 현장평가를 통해 고득점 순으로 지원대상 선정
* 원가계산을 통한 사업비 검토 및 조정 진행 후 최종 협약

심사·평가 주요내용

▸ 추진 의지 및 지원 필요성, 사업추진 목표 · 계획의 적정성, 사업수행 역량, 파급효과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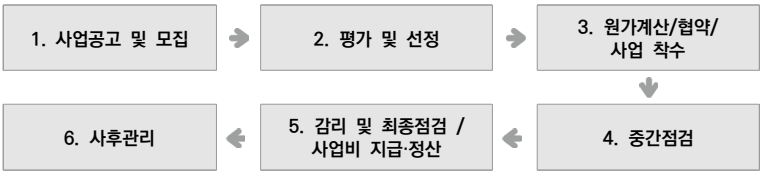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제조혁신과
  (전화) 044-204-7272 (이메일) antyx@korea.kr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전화) 044-300-0977 (이메일) smartservice@tipa.or.kr
- 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참고사항

① 전년도 사업공고

- 공고명 : 2025년 중소기업 스마트서비스 지원사업 공고
  - (경로) 스마트서비스 지원사업 사업관리시스템 (www.smb-service.kr) - 알림마당 - 사업공고
  - (홈페이지)

Q&A

Q **도입-공급기업 컨소시엄을 반드시 구성하여 참여해야 하나요?**

A 스마트서비스 지원사업은 솔루션 구축을 희망하는 도입기업과 솔루션 개발·구축 역량을 보유한 공급기업이 반드시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기관별, 월별 지원사업 및 사업공고 현황

◉ 기관명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공고시기	지원사업명	사업공고명	문의처
'25년 11월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2026년 스마트 제조혁신 지원사업 통합공고 및 정부형 스마트공장 구축사업 공고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 (기정원) 044-300-0957
	디지털협업공장 구축사업	2026년 디지털협업공장 구축지원사업 공고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 (기정원) 044-300-0961
	자율형공장 구축지원	2026년 자율형공장 구축 지원사업 공고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 (기정원) 044-300-0959
'25년 12월	창업성장기술개발 (R&D)	2026년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디딤돌 (첫걸음) 제 1차 과제 시행계획 공고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 (기정원) 044-300-0552,0558
	클라우드 제조솔루션 지원사업	2026년 클라우드 종합솔루션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 (기정원) 044-300-0945
	제조데이터 상품가공 지원	2026년 제조데이터 상품가공 지원사업 모집공고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 (기정원) 044-300-0941,0946
1월	중소기업기술혁신 개발사업	2026년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상반기 시행계획 공고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 (기정원) 044-300-0532~0548
	민관공동기술사업화 (R&D)	2026년도 민관공동기술사업화(R&D) 1차 시행계획 공고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 (기정원) 044-300-0650
	창업성장기술개발 (R&D)	2026년 팁스(TIPS) 창업기업 지원계획 공고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 (기정원) 02-2280-0461
	표준공정 기반 공정 최적화 기술개발 (R&D)	2026년도 표준공정 기반 공정최적화 사전연구(제조현장진단) 전문연구기관 모집 공고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 (기정원) 044-300-0979
	산학연 Collabo R&D	2026년도 산학연 Collabo R&D사업 시행계획 공고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 (기정원) 044-300-0654, 0658, 0675
	지역혁신선도기업 육성(R&D)	2026년 지역혁신선도기업육성(R&D) 지원계획 공고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 (기정원) 044-300-0823, 0827~0829,0831
	신진 연구인력 채용지원	2026년도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 (기정원) 044-300-0813,0842,0843
	고경력 연구인력 채용지원	2026년도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 (기정원) 044-300-0813,0842,0843

공고시기	지원사업명	사업공고명	문의처
	공공연 연구인력 채용지원	2026년도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 (기정원) 044-300-0813,0842,0843
	중소기업 연구인력 현장맞춤형 양성지원	2026년도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 (기정원) 044-300-0813,0842,0843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지정사업	2026년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지정제도 시행계획(상반기) 공고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 (기정원) 044-300-0712,0715
	스마트공장 수준확인제도	2026년 스마트 제조혁신 지원사업 통합공고 및 세부사업 공고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 (기정원)044-300-0955
	제조 분야 AI 응용 제품 신속 상용화 사업	2026년 제조 분야 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사업 수행기관 모집 공고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 (기정원) 044-300-0903,0904,0907
2월	중소제조 특화 Multi AI Agent 개발(R&D)	2026년도 중소제조 특화 Multi AI Agent 개발(R&D) PoC 시범연구 시행계획 공고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 (기정원) 044-300-0976
	제조DX멘토단 활용 지원사업	2026년 제조DX멘토단 활용지원사업 통합공고 및 지역별 세부 공고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 (기정원) 044-300-0961
3월	중소기업기술혁신 개발사업	2026년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하반기(1차) 시행계획 공고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 (기정원) 044-300-0532~0548
	민관공동기술사업화 (R&D)	2026년도 민관공동기술사업화(R&D) 2차 시행계획 공고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 (기정원) 044-300-0650
	창업성장기술개발 (R&D)	2026년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디딤돌(도약) 제 2차 과제 시행계획 공고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 (기정원) 044-300-0552,0558
	스마트공장 공급 기업 역량진단	2026년 스마트공장 공급기업 역량진단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 (기정원) 044-300-0972
	중소기업 스마트 서비스 지원	2026년 중소기업 스마트서비스 지원사업 공고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 (기정원) 044-300-0977
4월	중소기업기술혁신 개발사업	2026년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중소기업유망기술개발(구조혁신(R&D)) 하반기(1차) 접수 안내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 (기정원) 044-300-0532~0548
	중소기업 수출 핵심 품목 탄소감축 기술개발	2026년 중소기업 수출 핵심품목 탄소감축 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 (기정원) 044-300-0532~0538, 0541~0548
	중소기업 스마트 서비스 지원	2026년 중소기업 스마트서비스 지원사업 공고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 (기정원)044-300-0977

공고시기	지원사업명	사업공고명	문의처
5월	중소기업기술혁신 개발사업	2026년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하반기(2차) 시행계획 공고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 (기정원) 044-300-0532~0548
	민관공동기술사업화 (R&D)	2026년도 민관공동기술사업화(R&D) 3차 시행계획 공고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 (기정원) 044-300-0650
	디지털기반중소제조 산재예방기술개발 (R&D)	2026년도 디지털기반 중소제조 산재예방기술개발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 (기정원) 044-300-0561
6월	중소기업기술혁신 개발사업	2026년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중소기업유망기술개발(구조혁신(R&D)) 하반기(2차) 접수 안내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 (기정원) 044-300-0532~0548
7월	중소기업기술혁신 개발사업	2026년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글로벌선도기술개발(함께달리기) 시행계획 공고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 (기정원) 044-300-0532~0548
	중소기업기술혁신 개발사업	2026년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글로벌선도기술개발(이어달리기) 시행계획 공고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 (기정원) 044-300-0532~0548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지정사업	2026년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지정제도 시행계획(하반기) 공고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 (기정원) 044-300-0712, 0715
8월	표준공정 기반 공정 최적화 기술개발 (R&D)	2026년도 표준공정 기반 공정최적화 기술개발(R&D) 시행계획 공고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 (기정원) 044-300-0979
상시	투·융자연계기술 개발(R&D)	투·융자연계기술개발사업 지원계획 통합공고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 (기정원) 02-2280-0421~0429

제 3 부

창업진흥원

지원사업(전년대비) 달라지는 내용

◉ 기관명 : 창업진흥원

구분	'25년도	'26년도
예비창업패키지	(지원규모) 748명	(지원규모) 750명 내외
초기창업패키지	· 지원유형: 일반사업화, 민간투자, 특화창업 · 지원규모: 490개사 내외, 총 예산 455억원	· 지원유형: 일반사업화, 딥테크 특화형, 투자연계 · 지원규모: 614개사 내외, 총 예산 558.52억원
창업도약패키지	· 지원유형 : 일반사업화, 대기업협업, 투자병행 · 지원규모 : 373개사, 59,255백만원	· 지원유형 : 일반사업화, 딥테크특화, 투자연계 · 지원규모 : 460개사, 72,750백만원
초격차 스타트업 프로젝트	지원대상 : 10대 신산업 분야 창업기업 공고시점 : '25. 1월 말(당해연도 초)	지원 대상 : 6대 전략산업 12대 신산업 분야 창업기업 지원 공고시점 : '25.12.29.(직전년도 말)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투자연계형 트랙 도입
K-스타트업 그랜드챌린지	글로벌스타트업센터(서울) 또는 경기창조혁신센터(판교)	글로벌스타트업센터(서울) 또는 주관기관 보육공간 중 선택
글로벌기업 협업프로그램 (Around X)	협업 글로벌 기업 13개사 (구글플레이,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다쏘시스템, 앤시스, 지멘스, AWS, 오라클, IBM, 인텔, 탈레스, 로레알, 에어리퀴드, 앤시스(스페이스))	협업 글로벌 기업 17개사 (구글플레이,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다쏘시스템, 앤시스, 지멘스, AWS, 오라클, IBM, 인텔, 탈레스, 로레알, 에어리퀴드, 앤시스(스페이스), 아스텔라스, OpenAI, 메르세데스 벤츠, HP)
글로벌기업 협업프로그램 (Around X)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동시수행 불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동시수행 가능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지원	협업 자금 최대 1.2억원 내외 지원	협업 자금 최대 1.4억원 내외 지원
창업중심대학	(지원규모) 813개사, 77,408백만원	(지원규모) 820개사 내외, 88,183백만원
재도전성공패키지	(지원예산) 16,629백만원 (지원규모) 201개사(명) (지원구분) 일반형, IP전략형	(지원예산) 14,966백만원 (지원규모) 185개사(명) 내외 (지원구분) 일반형
도전! K-스타트업	통합본선 225팀 진출	예선리그 AI리그(중기부) 신설
스타트업법률지원	(지원금) 심화(250만원) 및 일반 법률상담(100만원) 건당 지원 한도 상이 (지원분야) 계약법 관련, 지식재산권(IP) 보호, 개인정보 보호, 규제 준수 등, 노동법, 투자 및 자금 조달, 기업법무 및 기타 7대 분야	(지원금) 법률 상담 1건당 100만원 지원 (기업당 연간 300만원) (지원분야) 기존 7대분야 + 사업정리·재도전

예비창업패키지

사업개요

혁신적인 기술창업 아이디어를 보유한 예비창업자의 창업 사업화 준비 단계를 지원하여 성공적인 창업시장 안착 유도

〈 전년대비 달라지는 내용 〉

구분	'25년	'26년
지원내용	(지원규모) 748명 내외	(지원규모) 750명 내외

지원대상

◉ 신청자격 : 기술 기반 창업을 준비 중인 예비창업자

* 사업 공고일까지 창업경험(업종무관)이 없거나, 공고일 기준 사업자(개인, 법인) 등록 및 법인 설립 등기를 하지 않은 자

신청제외 대상

- 공고일 기준 신청자 명의의 사업자(개인, 법인) 등록을 보유하고 있거나, 법인 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대표권 있는 사내이사 포함)로 등재된 자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 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기업)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 중인 자(기업)
- 전문기관으로부터 발생한 환수금등의 반환이 종결되지 않은 자(기업)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자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자(기업)
- 2026년 중소벤처기업부 및 타 중앙정부·공공기관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중인 자(기업)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
- 전문기관이 지정한 은행 계좌(사업비 계좌) 개설 및 거래가 불가한 자(기업)
- 2026년 동 사업 주관기관의 전담조직의 장, 전담/겸직인력으로 참여 중 또는 참여 예정인 자(기업)
-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참여 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 그 외 신청자격 및 신청 제외 대상 관련 세부내용 등은 모집공고 확인

지원내용

- 지원 세부내용 : 창업사업화에 소요되는 사업화 자금과 창업프로그램 등 지원
  - (사업화 자금) 시제품 제작, 마케팅,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등에 소요되는 사업화 자금 최대 0.8억원(평균 0.5억원) 지원
  - (창업프로그램) 주관기관의 강점과 특성을 반영하여 BM 고도화, MVP 제작 지원, 창업교육·멘토링, 네트워킹 등 예비창업자를 지원하는 창업프로그램 제공
- 지원규모 : 예비창업자 총 750명 내외

신청·접수

- 공고(예정) 시기 : '26. 1월
- 신청방법 : K-Startup 누리집(www.k-startup.go.kr) 온라인 신청·접수
-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및 가점 증빙서류
- 선정평가 : 요건검토 → 서류평가 → 발표평가

심사·평가 주요내용

▸ 창업 아이템 개발 동기, 경쟁력 확보 방안, 시장진입 전략 및 자금조달 방안, 대표자 및 팀원의 역량 등 종합적으로 평가

- 추진절차

사업 공고		신청 · 접수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화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	창업진흥원 (K-startup)	→	창업진흥원 주관기관	→	창업진흥원 주관기관 예비창업자

문의처

- 전화상담 : 국번없이 1357 (중소기업통합콜센터)
- 창업진흥원 예비재도전실 : 044-410-1803~4, 1806~7, 1809, 1840

참고사항

① 전년도 사업공고

- 공고명 : 2025년도 예비창업패키지 예비창업자 모집 공고
  - (경로) K-STARTUP 〉 사업공고 〉 모집마감 〉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
  - (홈페이지)

Q&A

Q **예비창업패키지 사업은 무슨 사업인가요?**

A 혁신적인 기술창업 아이디어를 보유한 예비창업자의 성공 창업을 위해 사업화 자금, 창업지원 프로그램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여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Q **사업 신청 시 나이 제한이 있나요?**

A 예비창업패키지 신청 시 나이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세부 신청 자격 모집공고 내 신청 자격 및 요건 항목을 확인 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어 설명

예비창업자 : 사업자등록 및 법인설립등기를 하지 않았으며 혁신 기술로 창업을 희망하는 자

BM(Business Model) : 제품 및 서비스를 기반으로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사업 모형

MVP(Minimum Viable Product) : 시장에서의 반응을 보기 위해 핵심 기능 위주로 구현한 제품

초기창업패키지

사업개요

유망 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업력 3년 이내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사업화 자금 및 창업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사업 안정화와 성장 지원

〈 전년대비 달라지는 내용 〉

구분	'25년	'26년
지원유형	① 일반사업화 ② 민간투자 ③ 딥테크 특화(추경)	① 일반사업화 ② 딥테크특화 ③ 투자연계

지원대상

◉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표자이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 제10호에 따른 초기창업기업의 대표자로서 모집공고일 기준 창업 3년 이내인 자

신청제외 대상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기업)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기업)
- 전문기관으로부터 발생한 환수금등의 반환이 종결되지 않은 자(기업)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자(기업)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자(기업)
- 2026년 중소벤처기업부 및 타 중앙정부·공공기관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 중인 자(기업)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

- 신청일 기준 동 사업에 신청하는 사업자가 휴 · 폐업 중인 자(기업)
- 전문기관이 지정한 은행 계좌(사업비 계좌) 개설 및 거래가 불가한 자(기업)
- 2026년 동 사업 주관기관의 전담조직의 장, 전담/겸직인력으로 참여 중 또는 참여 예정인 자(기업)
-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기업)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에 따라 수행 대상에서 배제된 자(기업)
-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 그 외 신청자격 및 신청 제외 대상 관련 세부내용 등은 모집공고 확인

지원내용

◉ 지원 세부내용 : 사업화 자금 및 주관기관 전문역량을 활용한 창업 프로그램 등

〈 세부 지원내용 〉

구분	지원내용
사업화 자금	시제품 제작, 지재권 취득, 마케팅 등에 소요되는 사업화 자금 지원 (최대 1.5억원, 평균 0.7억원)
창업 프로그램	주관기관별 특화 분야 및 전문성을 고려하여 시장진입, 초기투자유치, 실증검증 등을 지원 (주관기관별 상이)

◉ 지원규모 : 614개사 내외

◉ 주요 사업절차

창업기업 선발		사업화 자금		창업프로그램
창업 3년 이내 창업기업	➔	시제품 제작, 마케팅,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등에 소요되는 사업화 비용 지원	⊕	시장진입, 초기 투자유치, 실증·검증 등 주관기관 별 창업프로그램

신청·접수

◉ 공고(예정) 시기 : ’25년 12월~’26년 1월(예정)

* 투자연계형은 ‘26년 하반기 별도 공고 예정

- 신청방법 : K-Startup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및 증빙서류
- 선정평가 : 요건검토 → 서류평가 → 발표평가

심사·평가 주요내용

▸ 창업 아이템의 제품·서비스에 대한 개선과제 및 방향, 성장전략, 대표자 및 기업 보유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문제인식, 실현가능성, 성장전략, 팀(기업) 구성)

- 추진절차

사업 공고		신청 · 접수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화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	창업진흥원 (K-startup)	→	창업진흥원, 주관기관	→	창업진흥원, 주관기관 창업기업

문의처

- 전화상담 : 국번없이 1357 (중소기업통합콜센터)
- 창업진흥원 초기도약실 : 044-410-1864, 1831, 1834, 1836, 1862
- 창업진흥원 지역전략실(투자연계형) : 044-410-1925, 1892

참고사항

① 전년도 사업공고

- 공고명 : 2025년도 초기창업패키지 창업기업 모집 공고
  - (경로) K-Startup 홈페이지 〉 사업공고 〉 모집마감 〉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 〉 '2025년도 초기창업패키지 창업기업 모집 공고' 검색
  - (홈페이지)

Q&A

Q **지원유형 중, '일반사업화', '딥테크 분야', '투자연계' 유형에 동시에 신청 가능한가요?**

A 사업 신청은 가능하지만 동시 수행은 불가합니다. 최초 선정이 확정된 사업을 수행하셔야 합니다.

Q **창업 3년 이내면 누구든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단, 다수의 사업자를 보유하고 계신 경우에는 초기 창업패키지에 신청하시고자 하는 사업자가「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창업'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창업도약패키지

사업개요

도약기 창업기업(업력 3~7년)에 대해 사업모델 및 제품·서비스 고도화에 필요한 사업화 자금, 주관기관 특화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여 스케일업 촉진

〈 전년대비 달라지는 내용 〉

구분	'25년	'26년
지원유형	① 일반사업화 ② 대기업협업 ③ 투자병행 ④ 딥테크 특화(추경)	① 일반사업화 ② 딥테크특화 ③ 투자연계

지원대상

- 신청자격 : ①「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 1항에 따른 창업기업의 대표자로서 모집공고일 기준 창업 3년 초과~7년 이내인 창업기업 및 ②「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5조 4항에 따라 신산업 창업 분야인 창업기업인 경우 업력 10년까지의 기업
- 지원조건 및 우대사항 : 지원유형별 우대사항 상이(모집공고 확인)

신청제외 대상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기업)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기업)
- 전문기관으로부터 발생한 환수금등의 반환이 종결되지 않은 자(기업)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자(기업)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자(기업)
- 2026년 중소벤처기업부 및 타 중앙정부·공공기관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 중인 자(기업)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
- 신청일 기준 동 사업에 신청하는 사업자가 휴 · 폐업 중인 자(기업)
- 전문기관이 지정한 은행 계좌(사업비 계좌) 개설 및 거래가 불가한 자(기업)
- 2026년 동 사업 주관기관의 전담조직의 장, 전담/겸직인력으로 참여 중 또는 참여 예정인 자(기업)
-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기업)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에 따라 수행 대상에서 배제된 자(기업)
-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 그 외 신청자격 및 신청 제외 대상 관련 세부내용 등은 모집공고 확인

지원내용

◉ 지원 세부내용

- (일반사업화) 사업모델 및 제품 · 서비스 고도화에 필요한 사업화 자금(최대 2억원), 주관기관 프로그램(투자유치, 글로벌 진출 등) 지원
- (딥테크특화) 사업화 자금(최대 3억원), 주관기관 프로그램(기술 인증, 글로벌 진출 등) 지원
- (투자연계) 투자유치 실적 보유 비수도권 창업기업 대상 사업화 자금 지원(최대 2억원), 주관기관 프로그램 지원

◉ 지원규모 : 460개사 내외(지원유형별 상이)

신청·접수

◉ 공고(예정) 시기 : '25년 12월~'26년 1월(예정)

* 투자연계형은 '26년 하반기 별도 공고 예정

- 신청방법 : K-Startup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및 증빙서류
- 선정평가 : 요건검토 → 서류평가 → 발표평가

심사·평가 주요내용

▸ 창업 아이템의 제품·서비스에 대한 개선과제 및 방향, 성장전략, 대표자 및 기업 보유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문제인식, 실현가능성, 성장전략, 팀(기업) 구성)

- 추진절차

사업 공고		신청 · 접수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화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	창업진흥원 (K-startup)	→	창업진흥원, 주관기관	→	창업진흥원, 주관기관 창업기업

문의처

- 전화상담 : 국번없이 1357 (중소기업통합콜센터)
- 창업진흥원 초기도약실 : 044-410-1860, 1863, 1866~8
- 창업진흥원 지역전략실(투자연계형) : 044-410-1925, 1892
- 자세한 사항은 K-Startup 홈페이지 참조(www.k-startup.go.kr)

참고사항

- 공고명 : 2025년 창업도약패키지 창업기업 모집공고(전년도 사업공고)
  - (경로) K-Startup 홈페이지 → 사업공고(모집마감) → '2025년 창업도약패키지 창업기업 모집 공고' 검색
  - (홈페이지)

Q&A

Q **중기부 예비창업자 및 초기창업자(업력 3년 이내) 지원사업을 이미 지원받았는데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도 참여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모집공고일 현재 대표님께서 창업 3년 초과 7년 이내인 경우(신산업 창업기업인 경우 업력 10년 이내)에는 예비 또는 초기 창업지원사업 기 수혜 여부와 상관없이 참여 가능합니다.

Q **지원유형 중, '일반사업화', '딥테크 분야', '투자연계' 유형에 동시에 신청 가능한가요?**

A 사업 신청은 가능하지만 동시 수행은 불가합니다. 최초 선정이 확정된 사업을 수행하셔야 합니다.

초격차 스타트업 프로젝트

사업개요

독보적 기술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고, 국가 경제의 미래를 이끌어 갈 유망 초격차 기술 창업기업 발굴 및 사업화 지원

〈 전년대비 달라지는 내용 〉

구분	'25년	'26년
지원대상	**10대 신산업 분야** 창업기업	**6대 전략산업 12대 신산업 분야** 창업기업 지원
공고시점	'25.1월 말(당해연도 초)	'25.12.29.(월)

지원대상

- 신청자격 : 6대 전략산업 12대 신산업 분야 업력 10년 이내 창업기업

〈 6대 전략산업 12대 신산업 분야 〉

6대 전략산업	12대 신산업 분야		
AI·AX	AI	반도체	양자, 보안·네트워크
	로보틱스	모빌리티	
Bio	생명·신약	헬스케어	
Contents	콘텐츠(신설)		
Defence	방산(신설)	우주항공	해양
Energy	친환경	에너지	핵융합
Factory	생산·공정·센서		

- 우대사항 : CES 2026에서 혁신상 수상기업 등(공고문 참조)

신청제외 대상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 중인 자(기업)
  * 법원의 회생인가 기업 등 일부 예외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기업)
  * 성실 납부기업 등 일부 예외
-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임금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기업)
- 신청일 기준 휴·폐업 중인 자(기업)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 중인 자(기업)
  * 법원의 회생인가 기업 등 일부 예외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기업)
  * 성실 납부기업 등 일부 예외
-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임금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기업)
- 신청일 기준 휴·폐업 중인 자(기업)
- 중소벤처기업부 혁신분야 창업패키지 수혜자(기업), 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또는 중앙정부·공공기관의 창업지원사업을 수행 중인 자(기업)
  * 동 사업 접수 마감일 후 3개월 내 종료되는 경우 등 일부 예외
-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지원사업의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를 받은 자(기업)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기업)
- 창업 사업화 지원사업에서 발생한 환수금 등의 반환이 종결되지 않은 자(기업)
-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 그 외 사업 모집공고상 신청(지원) 제외 대상으로 규정한 경우

지원내용

- 지원 세부내용 : 제품·서비스 고도화 및 실증 등에 필요한 창업 사업화 자금(최대 3년간 연간 2억원 지원)
- 지원규모 : 200개사 내외
- 연계 지원 : 중기부 중소기업 R&D(창업성장·기술혁신), 정책자금 및 기술보증 한도, 보증료 및 심사 완화, 수출바우처 사업 가점 등 우대
  * 연계 프로그램은 담당기관별 기준에 따라 별도 심사를 거쳐 기업별 차등 지원
- 프로그램 지원 : 기술사업화, 개방형혁신, 투자유치 주관기관을 통해 기술고도화, 개방형 혁신(대·중견기업 협업), 투자유치 등 지원

〈 프로그램 지원내용 〉

구분	지원내용
기술사업화	• 기술개발 및 고도화, 창업사업화에 필요한 교육 및 멘토링 등
개방형혁신	• 국내·외 대·중견기업·공공 수요 발굴 및 매칭 등
투자유치	• 국내·외 VC·AC 투자유치 지원, 글로벌 IR 참가 지원 등

신청·접수

- 공고(예정) 시기 : '25.12.29.(월) ~ '26.1.23.(금)
- 신청방법 : 홈페이지(www.k-startup.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등
- 선정평가 : 서류 평가 → 발표 평가

심사·평가 주요내용

▸ 기술 수준, 성장 전략, 글로벌 진출 역량

- 추진절차

사업공고	→	신청 · 접수	→	선정평가	→	협약 및 사업화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원 (K-startup)		창업진흥원, 주관기관		창업진흥원, 주관기관, 창업기업

문의처

- 창업진흥원 딥테크전략실 : 044-410-1684, 1689
- 전화상담 : 국번없이 1357 (중소기업통합콜센터)
- 자세한 사항은 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 내 사업공고문 참조

참고사항

① 전년도 사업공고

- 공고명 : 2025년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DIPS) 창업기업 모집수정공고
  - (경로) K-Startup 홈페이지 – 사업공고 – 모집마감
  - (홈페이지)

Q&A

Q **본 사업에 선정되는 경우 3년 지원이 보장 되나요?**

A 사업에 선정되는 경우 3년간 지원이 보장됩니다. 다만, 매년 사업비 배정평가를 통해 당해연도의 정부지원금(최대 2억원) 규모가 결정됩니다.

* (정부지원금 예시1) 1차년도 1.7억원, 2차년도 2억원, 3차년도 1억원 총 4.7억원
* (정부지원금 예시2) 1차년도 2억원, 2차년도 1억원, 3차년도 1.5억원 총 4.5억원

Q **본 사업에 선정 시 사업 수행기간인 3년보다 조기에 사업을 종료할 수 있나요?**

A 창업기업이 최소 1차년도의 사업을 수행 완료하고, 3년의 사업화 과제 목표를 조기에 달성한 경우 심의를 통해 해당 기업을 졸업기업으로 지정하여 사업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단, 졸업기업 신청을 위한 신청 자격*을 충족하는 기업에 한하여 조기 졸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M&A, 상장, 매출·투자 특정 정량 성과 달성 등

Q **R&D과제와 동시에 본 사업을 수행할 수 있나요?**

A 본 사업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으로서, R&D과제와 동시수행을 신청·수행 요건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민관공동창업자발굴육성(TIPS)

사업개요

민간 투자사를 통해 우수 창업기업을 발굴, 민간투자와 정부자금을 매칭 지원하여 고급 기술 인력의 창업 활성화 도모

지원대상

〈 프리 팁스 〉

- 신청자격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에 따른 창업 3년 이내 초기 창업기업 중 투자자로부터 투자를 유치하고 2인 이상으로 구성된 비수도권 소재 기업

  * 신청자격은 사업 공고 시, 신청자격 및 요건 참조

신청제외 대상

-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 환수금 등의 반납이 종결되지 않은 자(기업)
-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기업)
-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자(기업)
- ▸ '팁스 R&D' 또는 중소벤처기업부 및 타 중앙정부·공공기관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 중인 자(기업)
-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중인 자(기업)

※ 그 외 신청제외 대상은 사업 공고 시 신청제외 대상 목록 참조

〈 팁스 연계지원(창업사업화·해외마케팅) 〉

◉ 신청자격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에 따른 창업기업으로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이며, ‘팁스 R&D’ 또는 ‘딥테크 팁스 R&D’ 협약 완료한 창업기업

* 단,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5조제4항에 따라 신산업 창업 분야인 창업기업인 경우, 업력 10년까지의 기업도 신청 가능

** 해외마케팅의 경우, 글로벌 경쟁력 세부기준(해외 투자유치형, 수출 중심형, 해외 창업형, 해외 콘테스트형 등) 중 1개 이상을 충족해야 하며, 세부 내용은 사업 공고 시 신청자격 참조

신청제외 대상

(창업사업화·해외마케팅 공통)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 환수금 등의 반납이 종결되지 않은 자(기업)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기업)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자(기업)
- 창업사업화, 해외마케팅, 포스트 팁스에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한 이력이 있는 자(기업)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중인 자(기업)

※ 그 외 신청제외 대상은 사업 공고 시 신청제외 대상 목록 참조

(창업사업화)

- 중소벤처기업부 및 타 중앙정부·공공기관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사업 수행 중인 자(기업)

(해외마케팅)

- 중소벤처기업부 및 타 중앙정부·공공기관의 ‘글로벌 창업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사업 수행 중인 자(기업)

〈 포스트 팁스 〉

◉ 신청자격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에 따른 창업기업으로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이며, 팁스 R&D 수행 후 “완료(성공)” 판정을 받은 기업 중 아래 요건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창업기업

* 단,「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5조제4항에 따라 신산업 창업 분야인 창업기업인 경우 업력 10년까지의 기업도 신청 가능

- 팁스 R&D 성공 조건 : ① M&A 성사(10억원 이상), ② 기업공개(IPO), ③ 연간 매출액 10억원 이상, ④ 연간 수출액 50만불 이상, ⑤ 신규 고용 15명 이상, ⑥ 직전 3개년도 VC 평균 투자 금액 이상 후속 투자 유치, ⑦ ③~⑥ 요건 중 2가지 이상 각 항목에서 50% 이상 기준 달성 시

** 후속투자는 팁스 선정(협약체결) 이후 실적만 인정

신청제외 대상

-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 환수금 등의 반납이 종결되지 않은 자(기업)
-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기업)
-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자(기업)
- ▸ 팁스 선정 이후 국내·외 투자사로부터 유치한 총 민간 후속 투자금이 100억원 이상인 기업
- ▸ '팁스 R&D' 또는 중소벤처기업부 및 타 중앙정부·공공기관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 중인 자(기업)
-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중인 자(기업)

※ 그 외 신청제외 대상은 사업 공고 시 신청제외 대상 목록 참조

〈 글로벌 팁스 〉

◉ 신청자격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에 따른 창업기업으로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이며, 해외 VC로부터 30만불 이상 투자를 유치하고 해외법인 설립·희망하는 국내 창업기업

* 단,「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5조제4항에 따라 신산업 창업 분야인 창업기업인 경우 업력 10년까지의 기업도 신청 가능

신청제외 대상

-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 환수금 등의 반납이 종결되지 않은 자(기업)
-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기업)
-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자(기업)
- ▸ 중소벤처기업부 및 타 중앙정부·공공기관의 '글로벌 창업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중인 자(기업)
-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중인 자(기업)

※ 그 외 신청제외 대상은 사업 공고 시 신청제외 대상 목록 참조

지원내용

- 지원규모 : 860개사 내외
- 지원내용 : 팁스 운영사(투자사) 등에서 창업기업에 先 투자·보육 후 추천, 정부 R&D 및 창업사업화·해외마케팅 등을 지원

  * 민간 투자(1~2억원) + 정부 매칭 지원(R&D 8억원, 창업사업화·해외마케팅 3억원) + 후속지원(포스트 팁스 7억원, 딥테크 15억원) + 글로벌 팁스(6억원)

- 세부 사업별 지원내용

① 프리 팁스 : 시제품 제작, 지재권 취득, 사업모델(BM) 개선 등 사업화 자금 최대 1억원 지원(8개월)

② 팁스 연계지원(창업사업화·해외마케팅) : 팁스 R&D와 연계하여 시제품 제작 등을 위한 사업화 및 해외 진출을 위한 자금 등 최대 3억원 지원(10개월)

③ 포스트 팁스 : 제품·서비스의 사업화 또는 국내·외 마케팅(판로 확대) 등 사업 고도화를 위한 후속 사업화 지금 최대 7억원 지원(18개월)

④ 글로벌 팁스 : 제품·서비스의 사업화 자금, 현지 진출 프로그램 등 최대 6억원 지원(최대 3년)

신청·접수

- 신청방법 : K-startup 누리집(www.k-startup.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 신청기간 : 2026년 1분기 중
  (예정, 기간 및 일정 등은 사업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증빙서류 등
- 평가 주요 내용 : 아이템의 기술성 및 사업성, 창업기업 역량, 사업 추진 의지 등

● 추진절차 (※ 세부 사업별 절차는 상이할 수 있음)

모집공고		신청 · 접수		평가·선정		협약체결		사업수행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원	→	창업진흥원 (K-startup)	→	주관기관	→	창업진흥원 주관기관 창업기업	→	창업기업

문의처

● 창업진흥원 민관협력실 : 044-410-1715, 1718, 1721~3 /
02-2039-1308, 1354

● 전화상담 : 국번없이 1357 (중소기업통합콜센터)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지원사업

사업개요

글로벌 진출을 희망하는 창업기업의 글로벌 진출 가능성을 타진하고 글로벌 기업으로서 경쟁력 함양 유도

〈 전년대비 달라지는 내용 〉

구분	'25년	'26년
Track 별 선발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투자연계형 트랙 도입

지원대상

-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표자이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창업기업의 대표자로서 모집공고일 기준 창업 후 7년(또는 10년)* 이내인 자

  * 신산업 분야, 초격차 분야 중 1개 이상의 분야에 해당하는 기업에 한하여 업력 10년 이내까지 지원가능

신청제외 대상

-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 ▸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창업 지원사업' 중 동시수행 불가 사업을 수행 중인 자(기업)
-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기업)
- ▸ 신청일 기준 동 사업에 신청하는 사업자가 휴·폐업 중인 자(기업) 등

※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 지원 세부내용 : 창업기업의 해외진출 가능성 검증을 위해 국내외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및 해외진출 자금 등 지원
- 지원규모 : 180개사 내외
- 지원금액 : 30백만원 내외(Track별 상이)

신청·접수

- 공고(예정) 시기 : '26년 4월 예정
- 신청방법 : K-Startup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접수
- 제출서류 : 영문 사업 계획서 등
- 선정평가 : 요건검토 및 서류평가 → 발표평가
- 추진절차

모집공고	→	신청·접수	→	요건검토, 서류/발표평가	→	프로그램
중소벤처기업부		온라인		주관기관		주관기관, 액셀러레이터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창업팀 : 044-204-7684
- 창업진흥원 글로벌전략실 : 02-2039-1652, 044-410-1884, 1887
  dream2@kised.or.kr

참고사항

① 전년도 사업공고명 : (연장) 2025년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지원사업 창업기업 모집 공고

- (경로) 사업공고 - 공고마감
- (홈페이지)

K-스타트업 그랜드챌린지

사업개요

해외 우수 스타트업의 국내 유입 및 아시아 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한국을 아시아 최고의 스타트업 비즈니스 허브로 육성

〈 전년대비 달라지는 내용 〉

구분	'25년	'26년
입주공간	글로벌스타트업센터(서울) 또는 경기혁신센터(판교) 보육공간 중 선택	글로벌스타트업센터(서울) 또는 주관기관 보육공간 중 선택

지원대상

◉ 신청자격 : 외국 국적 보유한 업력 7년 이내 해외 (예비)스타트업

* 신산업 분야는 10년 이내

신청제외 대상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자(기업)
- '16~'25년 동 사업 참여자(기업) ※ 중단(중단처분·중도포기자) 포함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중인 자(기업)
- 동 사업 창업기업 선정을 위한 평가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하는 자
- 개인 사정 및 비자 발급 문제 등으로 인해 한국 입국이 불가능한 자
-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지원내용

- 지원 세부내용 : 액셀러레이팅, 참가지원금 및 상금, 사무공간, 창업 비자 취득, 법인 설립 등
- 지원규모 : 80개사 내외

신청·접수

- 공고(예정) 시기 : '26.4월 예정
- 신청방법 : 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c.org) 온라인 신청
- 제출서류 : 참가신청서, 사업소개자료 등
- 선정평가 : 요건검토 → 서류평가(서면평가) → 영상평가(온라인평가)

심사·평가 주요내용

▸ 국내정착가능성 및 의지, 문제인식, 실현가능성 및 차별성, 팀 역량 등

- 추진절차

공 고	→	창업기업 신청 · 접수	→	요건검토 및 선정평가
중소벤처기업부		K-스타트업 그랜드 챌린지		창업진흥원, 주관기관

↓

사업수행	←	협약체결	←	협약준비
주관기관		창업진흥원-주관기관		수정사업계획서 작성, 계좌개설 및 대응자금(현금) 납부

문의처

- 창업진흥원 글로벌허브실 02-2039-1735
- 전화상담 : 국번없이 1357 (중소기업통합콜센터)

참고사항

① 전년도 사업공고

- 공고명 : Recruitment of (Pre-)startups for 2025 K-Startup Grand Challenge
  - (경로) K-Startup 홈페이지 〉 사업공고 〉 모집마감 〉 공고명 검색
  - (홈페이지)

글로벌기업 협업프로그램(Around X)

사업개요

글로벌 기업이 보유한 인프라와 기술·경영 역량을, 정부와 협업하여 창업기업의 성장(scale-up)과 글로벌 시장으로의 진출 및 안착 등 지원

〈 전년 대비 달라지는 내용 〉

구분	'25년	'26년
협업 글로벌 기업	구글플레이,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다쏘시스템, 앤시스, 지멘스, AWS, 오라클, IBM, 인텔, 탈레스, 로레알, 에어리퀴드, 앤시스(스페이스) 등 13개사	구글플레이,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다쏘시스템, 앤시스, 지멘스, AWS, 오라클, IBM, 인텔, 탈레스, 로레알, 에어리퀴드, 앤시스(스페이스), 아스텔라스, OpenAI, 메르세데스 벤츠, HP 등 17개사
동시수행 가능여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과 동시수행 불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과 동시수행 가능

지원대상

-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표자이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창업기업의 대표자로서 모집공고일 기준 창업 후 7년(또는 10년)* 이내인 자

  * 신산업 분야 중 1개 이상의 분야에 해당하는 기업에 한하여 업력 10년 이내까지 지원가능

신청제외 대상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규제중인 자 또는 기업(법원의 회생인가 기업 등 일부 예외)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 등(성실 납부기업 등 일부 예외)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자(기업)
- 중소벤처기업부 '19~'20년 초기창업패키지(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 또는 창업도약패키지(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 '21~'22년 혁신분야 창업패키지(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 '23~'25년 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받은 자(기업)
- 그 외 사업 모집공고 상 신청(지원) 제외 대상으로 규정한 경우

지원내용

- 지원 세부내용 : 정부는 사업화 자금 및 특화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글로벌 기업은 분야별 전문 서비스, 내 · 외부 인프라 등 제공
  - 정부 : 창업 사업화 자금 최대 2억원(평균 1.2억원), 주관기관 창업 지원 특화 프로그램(교육, 컨설팅, 홍보, 투자유치 등) 제공
  - 글로벌 기업 : 솔루션 무상/할인 제공, 관련 기술 및 비즈니스 컨설팅, 전문가 매칭, 마케팅 지원, 현지 해외실증 지원 등
- 지원규모 : 440개사 내외
- 지원금액 : 평균 1.2억원

신청·접수

- 공고(예정) 시기 : '26.1월 말 ~ 2월 초 예정
- 신청방법 : 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 온라인 신청
-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 선정평가 : 요건검토(업력, 신용정보 등 신청제외 대상 여부 검토) → 서류평가(사업계획서 서면평가) → 발표평가(창업기업 대표자 발표 및 질의응답)

심사·평가 주요내용

▸ 요건 적합성, 사업화 계획, 글로벌 기업 협업 계획 등

◉ 추진절차

공 고	→	창업기업 신청 · 접수	→	요건검토 및 선정평가
중소벤처기업부		K-Startup 홈페이지		창업진흥원, 주관기관, 글로벌 기업

↓

협약체결	←	협약준비	←	지원대상 평가 및 선정 공지
창업진흥원 – 주관기관 – 창업기업		수정사업계획서 작성, 계좌개설 및 대응자금(현금) 납부		K-Startup 홈페이지

↓

사업수행	→	중간(수시)보고 및 점검	→	최종보고 및 점검
창업기업		창업기업, 주관기관, 창업진흥원		창업기업, 주관기관, 창업진흥원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창업팀
044-204-7642,7662, jieunyun17@korea.kr

◉ 창업진흥원 글로벌전략실
02-2039-1274, 044-410-1844,1883, aroundx@kised.or.kr

◉ 전화상담 : 국번없이 1357 (중소기업통합콜센터)

참고사항

① 전년도 사업공고

◉ 공고명 : 2025년 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 창업기업 모집 수정공고

- (경로) K-스타트업 홈페이지 → 사업공고 → 모집마감 → 검색창에 "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 창업기업 모집공고" 검색
- (홈페이지)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지원사업

사업개요

오픈이노베이션(O/I) 수요가 있는 대기업 등과 스타트업 간 협업체계 구축, 협업 수행을 지원하여 기업간 동반성장 촉진

지원대상

- 신청자격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창업기업의 대표자로서 모집공고일 기준 창업 후 7년 이내인 창업기업

  * 단 세부 유형(트랙)에 따라, 업력 10년 이내 신산업 분야 기업도 지원 가능 (모집공고문 세부 기준 확인)

신청제외 대상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기업)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자(기업)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참여제한 중인 자(기업)
- 신청일 기준 동 사업에 신청하는 사업자가 휴·폐업 중인 자(기업)
- 사업비 계좌 개설 및 거래가 불가한 자(기업)
- 동 사업 주관기관 전담조직의 총괄책임자, 전담/겸직인력으로 참여중 또는 참여 예정인 자
-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임금 체불 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
- 최근 1년 이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정거래행위 위반으로 처분을 받은 기업과 그 임원
- 특허, 실용신안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그 외 지원 제외대상은 해당 모집공고 확인

지원내용

- 지원 세부내용 : 스타트업 대상 PoC, MVP 등을 위한 협업지원금 지원
- 지원규모 : 120개사 내외
- 지원금액 : 최대 1.4억원 내외

신청·접수

- 공고(예정) 시기 : '26년 1분기 공고 예정
- 신청방법 : K-Startup 누리집(www.k-startup.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증빙서류 등
- 선정평가 : 요건검토 → 서류평가 → 발표평가

심사·평가 주요내용

▸ 사업이해도, 과제구체성, 실현가능성, 협업가능성 등

- 추진절차

모집공고	신청 · 접수	평가·선정	협약체결	사업수행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원	창업진흥원 (K-startup)	주관기관	창업진흥원 주관기관 창업기업	창업기업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신산업기술창업과 : 044-204-7671, 7643
- 창업진흥원 민관협력실 : 044-410-1720, 1767, 1768
- 전화상담 : 국번없이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정책정보 : 기업마당(www.bizinfo.go.kr)
- K-Startup 누리집(www.k-startup.go.kr) 및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www.mss.go.kr)

참고사항

① 전년도 사업공고

- (경로) K-Startup 홈페이지 〉 사업공고 〉 모집마감 〉 공고명 검색
- (홈페이지)

◉ 공고명 : 2025년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지원사업 문제해결형(Top-Down) · 자율제안형(Bottom-Up) 스타트업 모집공고

- (홈페이지)

◉ 공고명 : 2025년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지원사업 수요기반형(On-Demand) 수요기업 및 스타트업 모집공고

- (홈페이지)

◉ 공고명 : 2025년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지원사업 중견기업-스타트업 오픈이노베이션 챌린지 스타트업 모집공고

- (홈페이지)

◉ 공고명 : 2025년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지원사업 방위산업 스타트업 챌린지 모집공고

- (홈페이지)

Q&A

Q **스타트업 지원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수요기업별 협업을 희망하는 과제에 대하여 스타트업을 모집하고, 선정평가 과정을 통해 최종 선발된 스타트업에 대하여 협업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용어 설명

(수요기업) : 스타트업과 협업을 희망하는 대·중견·공공기관 등

(POC, Proof of Concept) : 제품, 기술, 정보 시스템 등 조직의 특수 문제 해결을 실현할 수 있다는 증명 과정. 아직 시장에 나오지 않은 신제품에 대한 사전 검증

(MVP, Minimum Viable Product) : 최소 기능 제품, 고객의 피드백을 받아 최소한의 기능(features)을 구현한 제품

창업중심대학

사업개요

권역별 창업중심대학을 통해 우수한 사업모델을 보유한 지역 창업기업과 대학생·교수 등 대학발 창업기업에 사업화를 위한 자금과 수요에 기반한 성장 촉진 프로그램을 지원

〈 전년대비 달라지는 내용 〉

구분	'25년	'26년
지원대상	813개사	820개사 내외
지원내용	대학발 창업기업과 지역 산업 기반 창업기업 맞춤형 지원	딥테크 분야, 지역주력산업 연계, 지역 내 창업 등 맞춤형 지원

지원대상

- 신청자격 :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업력 7년 이내)
- 지원조건 및 우대사항 : 지원유형별 상이(모집공고 확인)

신청제외 대상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기업)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기업)
- 창업진흥원으로부터 발생한 환수금등의 반환이 종결되지 않은 자(기업)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자(기업)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참여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

- 창업진흥원이 지정한 은행 계좌(사업비 계좌) 개설 및 거래가 불가한 자(기업)
- 동 사업 주관기관의 전담조직의 장, 전담/겸직인력으로 참여 중 또는 참여 예정인 자(기업)
-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기업)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에 따라 수행 대상에서 배제된 자(기업)
- 그 외 지원 제외대상은 해당 모집공고 확인

지원내용

- 지원 세부내용 : 창업사업화에 소요되는 사업화자금, 글로벌 진출, 민간협력, 투자유치 등 창업기업 역량강화 프로그램 지원
  - 사업화자금 : 시제품제작, 마케팅, 멘토링 등에 소요되는 사업화 비용 지원
  - 프로그램 : 창업중심대학의 역량을 활용한 창업기업 역량강화 프로그램 제공
- 지원규모 :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 820개사 내외
- 지원금액 : 88,250백만원

신청·접수

- 공고(예정) 시기 : '26년 1월(예정)
- 신청방법 : K-Startup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기타 증빙서류 등
- 선정평가 : 요건검토 후, 단계별 평가(서류평가 → 발표평가) 예정

심사·평가 주요내용

- 문제인식, 실현가능성, 성장전략, 팀(기업) 구성

◉ 추진절차

사업 공고	신청 · 접수	요건검토	선정평가 (서류, 발표)	협약 및 사업화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K-startup)	창업진흥원 (K-startup)	창업진흥원 창업중심대학	창업진흥원 창업중심대학	창업진흥원 창업중심대학 (예비)창업기업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청년정책과 : 044-204-7953, 7954

◉ 창업진흥원 대학창업실 : 044-410-1811~1819

◉ 전화상담 : 국번없이 1357 (중소기업통합콜센터)

참고사항

① 전년도 사업공고

◉ 공고명 : 2025년 창업중심대학 (예비)창업기업 모집 공고 (권역 내 일반형)

- (경로) K-Startup 홈페이지 〉 사업공고 〉 모집마감
- (홈페이지)

◉ 공고명 : 2025년 창업중심대학 (예비)창업기업 모집 공고 (지역주력산업 연계형)

- (경로) K-Startup 홈페이지 〉 사업공고 〉 모집마감
- (홈페이지)

◉ 공고명 : 2025년 창업중심대학 청년 예비창업자 모집 공고 (생애최초 청년 예비창업형)

- (경로) K-Startup 홈페이지 〉 사업공고 〉 모집마감
- (홈페이지)

Q&A

Q **현재('25.12월 기준) 창업중심대학은 어느 대학으로 구성되어 있나요?**

A 일반형 창업중심대학은 6개 권역을 기준으로 총 11개 대학이 선정되어 있습니다. 수도권(성균관대학교, 한양대학교), 강원권(강원대학교), 대경권(대구대학교), 동남권(경상국립대학교, 부산대학교), 호남권(전남대학교, 전북대학교), 충청권(충북대학교, 한남대학교, 호서대학교)으로 운영 중입니다.

재도전성공패키지 지원사업

사업개요

폐업 후 재창업을 준비하는 예비재창업자의 재창업 및 재창업기업의 성장 지원, 실패 인식 개선 및 재창업 저변 확대

〈 전년대비 달라지는 내용 〉

구분	'25년	'26년
지원대상	(지원규모) 201개사(명)	(지원규모) 185개사(명) 내외
지원구분	일반형, IP전략형	일반형

지원대상

◉ 신청자격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예비재창업자 또는 재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신청제외 대상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단, ①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 ② 채무조정 절차 진행 중인 자, ③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자, ④ 법원의 개인회생제도 변제계획 인가를 받은 자,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계획 인가를 받은 자는 신청 가능)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기업)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3조(재창업기업 성실경영 평가)에 따른 성실경영 평가에서 부적합으로 판명된 자(기업)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기(旣)선정되어 수행중인 자(기업)
-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지원사업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를 받고 있는 자(기업)
- 「중소벤처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또는 기업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참여제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 그 외 신청자격 및 신청 제외 대상 관련 세부내용 등은 모집공고 확인

지원내용

- 지원 세부내용 : 분야별, 프로그램별 상세 지원내용
- 지원규모 : 185개사(명) 내외
- 지원금액 : 14,966백만원

신청·접수

- 공고(예정) 시기 : '26.1~2월 예정
- 신청방법 :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이메일 등
-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폐업사실증명원, 가점 증빙서류 등
- 선정평가 : 요건검토 → 서류평가 → 발표평가 → 최종선정

심사·평가 주요내용

▸ 문제인식, 실현가능성, 성장가능성, 팀구성 등

- 추진절차 : 모집공고, 신청접수, 선정평가, 협약체결 등

모집공고	신청 · 접수	요건검토	선정평가 (서류, 발표)	협약체결
중기부	전문기관 및 주관기관	전문기관 및 주관기관	전문기관 및 주관기관	전문기관 주관기관 (예비)재창업기업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정책과 : 044-204-7623, 7628
- 창업진흥원 예비재도전실 : 044-410-1983, 1992, 1985, 1987, 1984
- 전화상담 : 국번없이 1357 (중소기업통합콜센터)

참고사항

① 전년도 사업공고

- 공고명 : 2025년 재도전성공패키지 일반형(예비)재창업기업 모집공고
  - (경로) K-Startup 홈페이지 〉 사업공고 〉 모집마감
  - (홈페이지)

Q&A

Q **복수의 사업자(개인, 법인) 운영 중 일부 사업자를 폐업한 경우 재창업에 해당 되나요?**

A 재창업은 폐업을 한 뒤 새로운 중소기업을 설립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에, 복수의 사업자 운영 중 일부 사업자를 폐업한 것은 재창업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Q **개인사업자를 포괄양도양수로 법인전환한 경우 해당 개인기업의 폐업도 폐업이력으로 인정되나요?**

A 포괄양도양수를 통한 개인에서 법인으로의 전환은 폐업 및 재창업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용어 설명

재창업기업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 제6호에 따름

성실경영평가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43조에 따름

창조경제혁신센터

사업개요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해 지역 인재의 창의적 아이디어 사업화 및 창업 등 지원

지원대상

- 예비창업자, 창업 후 7년 이내 기업

지원내용

- 창업지원* : 멘토링, 창업교육, 투자유치IR, 창업경진대회, 창업세미나, 지역 창업자·기업 간 네트워킹, 마케팅·판로 개척, 글로벌 진출 등 지역별 창업생태계 조성 및 활성화 지원

  *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역별 기술특화분야 연계

- 원스톱서비스 지원 : 창업관련 법률·특허·금융·경영(세무회계, 인사노무 등) 원스톱 컨설팅(상담) 서비스

  *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별로 서비스 지원내용 상이

신청·접수

- '26년 연중 수시
  -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 홈페이지(ccei.creativekorea.or.kr) 또는 창조경제혁신센터 직접 방문을 통해 센터별 운영프로그램을 확인하고 온·오프라인 신청·접수(프로그램별로 신청 방식 상이)

    * 원스톱서비스(법률, 회계 등)는 지역별 혁신센터를 방문하여 상담·문의 가능

문의처

- 전화상담 : 국번없이 1357
- 창업진흥원 지역전략실 : 044-410-1802, 1881, 1894, 1927, 1929
- 자세한 사항은 K-Startup 홈페이지 참조(www.k-startup.go.kr)
- 창조경제혁신센터 연락처

지역	연락처	지역	연락처
강원	030-248-7900	세종	044-999-0003
경기	031-8016-1102	울산	052-222-9120
경남	055-256-2700	인천	032-458-5000
경북	054-470-2614	전남	061-661-2002
광주	062-364-9134	전북	060-220-8900
대구	050-759-6380	제주	064-710-1900
대전	042-385-0666	충남	041-536-7888
부산	051-749-8900	충북	040-710-5900
서울	02-720-9100		

- 창조경제혁신센터 대표 홈페이지 : ccei.creativekorea.or.kr

지역	센터별 홈페이지	지역	센터별 홈페이지
강원	ccei.creativekorea.or.kr/gangwon	세종	ccei.creativekorea.or.kr/sejong
경기	ccei.creativekorea.or.kr/gyeonggi	울산	ccei.creativekorea.or.kr/ulsan
경남	ccei.creativekorea.or.kr/gyeongnam	인천	ccei.creativekorea.or.kr/incheon
경북	ccei.creativekorea.or.kr/gyeongbuk	전남	ccei.creativekorea.or.kr/jeonnam
광주	ccei.creativekorea.or.kr/gwangju	전북	ccei.creativekorea.or.kr/jeonbuk
대구	ccei.creativekorea.or.kr/daegu	제주	ccei.creativekorea.or.kr/jeju
대전	ccei.creativekorea.or.kr/daejeon	충남	ccei.creativekorea.or.kr/chungnam
부산	ccei.creativekorea.or.kr/busan	충북	ccei.creativekorea.or.kr/chungbuk
서울	ccei.creativekorea.or.kr/seoul		

판교 창업존 운영

사업개요

Data·Network·AI 등 미래 유망 (예비) 창업기업을 발굴하여 입주 공간, 맞춤형 보육 프로그램 등을 제공함으로써 창업기업의 성장을 집중 지원

지원대상

- 예비창업자, 창업 후 7년 이내 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규제중인 자 또는 기업(법원의 회생인가 기업 등 일부예외)
-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등 (성실 납부기업 등 일부예외)
- ▸ 신청일 현재 휴업 중인 기업
-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자(기업)

* 그 외 사업 모집공고상 신청(지원) 제외 대상으로 규정한 경우

지원내용

- 창업기업 입주공간 및 회의실 등 공용공간 제공
- 보육프로그램 : 교육, 네트워킹, 마케팅, 글로벌 진출

구 분	주요내용
교육	• 최신 선도 기술 세미나, 글로벌 진출 세미나, 실전형 창업교육 등
네트워킹	• 내부(입주사), 외부(대기업 등 연계) 네트워킹 등
마케팅	• 각종 홍보물 제작(브로셔, 동영상, CI 등)
글로벌 지원	• 해외 진출 지원, 해외 전시회 참가지원

- 입주공간 지원 : 120개사 내외

신청·접수

- 연중 수시
- K-Startup 홈페이지 (www.k-startup.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문의처

- 창업진흥원 지역전략실 : 044-410-1802, 1927, 1929
- 창업존 주관기관 : 031-780-9061, 9062
- 판교 창업존 홈페이지(http://www.pangyozone.or.kr)

메이커 스페이스

사업개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실현하고 제조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메이커 스페이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메이커 문화 확산과 제조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교육 및 시제품 제작 등을 지원

지원대상

- 제조 제품 아이디어를 보유한 (예비)창업자 또는 국민 누구나 이용 가능

지원내용

- 인프라 : 메이커 스페이스에 구축된 시설(작업실 등)과 장비(3D 프린터 등)를 지원
- 프로그램 : 메이커 및 제조창업에 대한 교육, 네트워킹, 멘토링 등을 지원

신청·접수

- '26년 연중 수시
  - 제조생산 종합플랫폼 '메이크올' 누리집(www.makeall.com) 또는 메이커 스페이스에 직접 방문하여 교육, 시설, 장비를 확인하고 온·오프라인으로 신청 · 접수(메이커 스페이스별 신청 방식 상이)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생태계과 : (전화) 044-204-7672, 7606
- 창업진흥원 지역전략실
  (전화) 044-410-1802, 1958, 1961, 1962
  (이메일) makerspace@kised.or.kr
- 메이커 스페이스 누리집 : 메이크올(www.makeall.com)

청소년 비즈쿨 지원사업

사업개요

청소년 대상 기업가정신 함양, 창업 교육 등을 통해, 꿈·끼·도전정신 및 진취성을 갖춘 '융합형 창의인재'를 양성

지원대상

- 신청자격 : 초·중·특수학교(초중등교육법 제12조), 고등학교(초중등교육법 제3·4·6조), 각종학교(초중등교육법 제60조), 대안학교(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3), 대안교육기관(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5조), 영재학교(영재교육진흥법 제6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모집내용(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신청제외 대상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 중인 기관 등
※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 지원 세부내용
  - 교내 창업 교육 : 기업가정신 이론, 시제품제작 체험, 창업동아리 등
  - 교외 창업 교육 : 창업 전문기관 연계 프로그램, 비즈쿨 캠프. 경진대회, 해커톤 등

- 기업가정신 강화 : 교과서 홍보·확산, 온·오프라인 교원 직무연수 등
- 비즈쿨 페스티벌 : 선배 창업가 밋업, 멘토링·네트워킹, 비즈쿨 전시·컨퍼런스 등

◉ 지원규모 : 423개 비즈쿨 기관 내외(운영형 220개, 체험형 203개)

◉ 지원금액 : 61.60억원

신청·접수

◉ 공고(예정) 시기 : 1월

◉ 신청방법 : 홈페이지(www.k-startup.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 제출서류 : 사업운영 계획서

◉ 선정평가 : 서류 및 발표평가

* 발표평가는 거점비즈쿨 신청 기관만 해당

심사·평가 주요내용

▸ 사업수행 의지, 사업운영 인프라, 사업운영계획, 특장점 및 홍보 계획 등

◉ 추진절차 : 모집공고, 신청접수, 선정평가, 협약체결, 사업운영, 사업점검 및 정산, 성과평가 등

문의처

◉ 창업진흥원 대학창업실 기업가정신팀(044-410-1963, 1951, 1957)

참고사항

- 공고명 : ’25년 청소년비즈쿨 운영학교(센터) 모집 공고
  - (경로) K-Startup 홈페이지 사업공고(www.k-startup.go.kr 〉 사업공고 〉 모집마감 〉 2025년 청소년 비즈쿨 운영학교(센터) 모집공고)
  - (홈페이지)

도전! K-스타트업

사업개요

범부처 합동으로 창업경진대회를 개최하여 다양한 산업 분야의 유망한 (예비)창업자를 발굴하고, 시상 및 후속지원을 통해 국내 창업 저변 확대

※ '26년 참여부처 : 중기부, 과기정통부, 교육부, 국방부, 문체부, 기후부, 성평등부, 국토부, 지재처, 방사청

〈 전년대비 달라지는 내용 〉

구분	'25년	'26년
예선리그	10개 부처 12개 예선리그	10개 부처 13개 예선리그(AI리그 신설)

지원대상

- 신청자격 : 우수한 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예비 창업자(팀) 및 업력 3년 이내 창업자(팀)

※ 공고일 기준 직원을 고용하지 않고, 부동산임대업만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인 '부동산 임대업' 이력은 창업 업력에 기산하지 않음.

신청제외 대상

- 도전! K-스타트업 왕중왕전 기수상자 또는 수상 아이템(특별상·입상 제외)
- 도전! K-스타트업 통합공고일 기준 누적 투자유치 금액 30억원 초과 기업
- 동일 또는 유사한 아이템으로 과거 다른 창업경진대회에서 누적 상금 3천만원 이상을 받은 자(팀) (예비창업팀의 경우 팀원의 수상내역 포함, 기창업자는 대표자 수상내역만 해당)
- 타인의 특허, 실용신안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아이템

지원내용

- 상금 : 14억원 내외, 20팀(최대 3억원 내외)
- 상장 : 대통령상, 국무총리상, 장관상 등 20점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예비·초기·도약 창업패키지 등) 연계 지원 등

신청·접수

- 공고(예정) 시기 : 1~2월(부처 통합 창업경진대회 공고)
- 신청방법 : 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에 부처 통합공고 후 부처별 예선리그 개별 공고 → 예선리그별 신청
-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증빙서류 등 예선리그별 제출서류
- 추진절차 : 부처별 예선리그 → 통합본선 → 왕중왕전을 거쳐 최종 수상팀 결정

공고 ('26.1.~2.) → 부처별 예선리그 ('26.3.~8.) → 통합본선 ('26.9.~11.) → 왕중왕전 ('26.12.) → 후속지원 ('27.1.~)

〈 '26년도 대회 운영 내용 〉

구분	'25년
예선리그	혁신창업리그(일반), AI리그, 연구자리그, 학생리그(도약, 유학생), 국방리그, 스포츠리그, 관광리그, 콘텐츠리그, 환경리그, 여성리그, 부동산신산업리그, 지식재산리그, 국방과학기술리그
통합본선 진출	225팀 * 예선리그별 통합본선 진출 TO 상이
왕중왕전 진출	30팀(예비창업리그, 창업리그 각 15팀) ※ 최종 수상 20팀(예비창업리그, 창업리그 각 10팀)

문의처

- 전화상담 : 국번없이 1357 (중소기업통합콜센터)
- 창업진흥원 글로벌협력실 : 044-410-1717, 1783
  challengeK@kised.or.kr
- 자세한 사항은 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 참조

참고사항

① 전년도 사업공고

- 공고명 : 『도전! K-스타트업 2025』부처 통합 창업경진대회 공고
  - (경로) K-Startup 홈페이지 〉 사업공고 〉 모집마감 〉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 〉 '『도전! K-스타트업 2025』부처 통합 창업경진대회 공고' 검색
  - (홈페이지)

스타트업 해외전시회

사업개요

국내 유망 창업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 지원을 위해 대륙·시장권별 해외 전시회에서 K-Startup 브랜드를 활용한 전시 참가 및 현지 프로그램 지원

지원대상

- 신청자격 : 모집공고일 기준 업력 7년 이내 창업기업

  * 「신산업 창업 분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신창업 창업 분야 기업의 경우 업력 10년 이내 지원 가능

신청제외 대상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과 사행성 및 환경오염 유발 등 반사회적 성격의 창업 아이템
- 신청일 기준 휴·폐업 중인 자(기업)
- 타인의 특허, 실용신안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사실이 있거나 침해 관련 소송 등의 재판을 진행중인 자(기업) 또는 아이템
-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자(기업)

  - (예외사항) 신청·접수일 내 ①국세징수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강제징수의 유예를 받은 자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체납처분의 유예를 받은 자(기업) 또는 ②국세·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기업)

-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임금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기업)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 중인 자(기업)

  - (예외사항) 신청·접수일 내 ①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기업), ②신용회복위원회 프리워크아웃 또는 개인워크아웃 제도, 새출발기금 제도를 통해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자(기업), ③법원의 회생계획인가 또는 변제계획인가를 받았거나, 파산절차에서 면택결정이 확정된 자(기업), ④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의 '재도전·재창업 재기지원보증' 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용회복위원회의 '재창업 자금지원'을 받은 자(기업)

- 정부지원사업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를 받고 있는 자(기업)
-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지원내용

- 지원 세부내용 : 참가 지원 전시회별 상이
  ① 전시 부스 : 참여 전시회별 K-Startup관 내 전시 공간 부스 지원
  ② 역량강화 프로그램 : 전시회별 글로벌진출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 지원규모 : 참가 지원 전시회별 상이

〈 (예시) '25년도 참가지원 전시회별 지원 규모 〉

구분	Startup Mahakumbh	VIVA Tech	SWITCH	BIBAN	CES 2026
국가	인도(뉴델리)	프랑스(파리)	싱가포르	사우디 (리야드)	미국 (라스베가스)
지원규모	11팀	19팀	31팀	31팀	81팀

신청·접수

- 공고(예정) 시기 : 전시별로 상이(모집공고 확인)
- 신청방법 : K-Startup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 http://www.k-startup.go.kr
-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사업자 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
- 선정평가 : 서류평가 통과자 대상으로 발표평가 진행

심사·평가 주요내용

▸ 글로벌진출 준비정도, 글로벌 성장 가능성, 참여 전시회 적합성 등

- 추진절차 : 전시회별 참여기관 모집공고 → 참여기관별 개별 선발 (신청접수 → 선정평가 및 참여기업 선정) → 역량 강화 프로그램 → 전시회 참여 → 성과공유 네트워킹
- K-Startup통합관으로 운영될 경우, 전시회별 참여기관(유관기관)에서 직접 전시회 참여기업 선정 예정

문의처

- 전화상담 : 국번없이 1357 (중소기업통합콜센터)
- 창업진흥원 글로벌협력실 : 044-410-1713, 1712, 1724, gek@kised.or.kr
- 자세한 사항은 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 참조

참고사항

① 전년도 사업공고

- 공고명 : 『스타트업 해외전시회 지원사업 2025년도 K-Startup 통합관 참여기관 모집공고』
  - (경로) K-Startup 홈페이지 〉 사업공고 〉 모집마감 〉 'K-Startup' 검색
  - (홈페이지)
- 공고명 : 『스타트업 해외전시회 Startup Mahakumbh 2025 참가기업 모집공고』
  - (경로) K-Startup 홈페이지 〉 사업공고 〉 모집마감 〉 'Startup Mhakumbh' 검색
  - (홈페이지)

스타트업 법률지원 사업

사업개요

신산업 분야 (예비)스타트업의 안정적인 경영 활동을 위해 세무·노무·법무 등 관련 법률지원 서비스를 제공

〈 전년대비 달라지는 내용 〉

구분	'25년	'26년
지원내용	심화(250만원) 및 일반 법률상담(100만원) 건당 지원 한도 상이	법률 상담 최대한도 건당 100만원 (기업당 연간 300만원)
자문분야	계약법 관련, 지식재산권(IP) 보호, 개인정보 보호,규제 준수 등, 노동법,투자 및 자금 조달, 기업법무 및 기타 7대 분야	기존 7대분야 + 사업정리·재도전

지원대상

- 신청자격 : 법률·규제애로가* 있는 예비 창업자 또는 신산업 창업 분야** 창업기업

* 투자·자금 유치, 규제준수, 지식재산권(IP) 보호 등

** 신산업 창업분야 :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27개 분야(중기부 고시 제2024-2호)

신청제외 대상

-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에 규정된 업종 및 휴·폐업중인 기업
- 당해 연도의 지원규모를 전액 지원받은 기업
- 기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등 법률지원이 적절하지 않다고 전문기관이 판단한 기업

지원내용

- 지원 세부내용 : 창업기업이 보유한 국내·외 법률·규제애로에 대해 변호사가 지식재산권, 규제, 계약서, 해외 진출 등의 법률상담을 온라인으로 지원

  * 스타트업이 자주·공통적으로 묻는 질문과 답변은 FAQ로 제작하여 제공

- 지원규모·한도 : 360개사 내외
  (기업당 지원한도 등 상세내용은 별도 공고 예정)
- 운영예산 : 11억원

신청·접수

- 공고(예정) 시기 : '26년 1월
- 신청방법 : K-Startup 누리집(www.kstartup.go.kr)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개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등
- 요건검토 : 신청 대상 여부, 상담신청 내용 적정성, 기 수혜이력 등 검토
- 추진절차

모집 공고 ('26년 1월)	→	자문 신청(수시)	→	지원 검토
중소벤처기업부		지원기업		전문기관 등

↓

자문단 매칭	←	법률자문	←	자문비 지급
전문기관 ↔ 지원기업 ↔ 자문단		자문단 ↔ 지원기업		전문기관 → 자문단

문의처

- 전화상담 : 국번없이 1357 (중소기업통합콜센터)
- 창업진흥원 원스톱지원실 : 044-410-1747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

사업개요

법인설립에 필요한 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을 통해 법인 설립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

지원대상

- 자본금 10억원 미만의 주식회사(발기설립),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설립 희망자

신청제외 대상

▸ 비영리법인, 농업법인, 어업법인 등

지원내용

- 상호 검색에서부터 4대 사회보험 가입까지 온라인 원스톱 처리, 등기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 일괄 작성 지원
- 기본사항 입력으로 절차별 신청서, 정관 등 첨부서류 자동 생성
- 진행 단계별(기관별) 진행사항을 알림페이지, SMS 형태로 즉시 통보
- 연계기관(5개) : 대법원 법원행정처(등기시스템), 행정안전부(지방세정보망), 국세청(홈택스), 금융결제원(금융공동망), 4대사회보험센터(4대사회보험연계시스템)

신청·접수

-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 누리집(www.startbiz.go.kr)에서 회원가입 후 또는 비회원으로 사용 가능

처리절차

회원가입 또는 비회원으로 신청 → 회사설립 기본정보 입력 → 은행 잔고증명서 발급신청 → 등록세 신고 및 납부 → 법인설립 등기신청 → 사업자등록 → 4대 사회보험 신청

문의처

-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 콜센터 : 1577-5475
- 창업진흥원 디지털AI실 : 044-410-1655
- 자세한 사항은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 누리집 참조 (www.startbiz.go.kr)

창업기업 확인(창업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사업개요

창업기업제품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 도입에 따른 창업기업 확인서 발급 지원

사업목적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상 창업 요건을 갖춘 창업기업에게 확인서 발급

지원대상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창업기업

지원내용

- 창업기업 확인서*를 보유한 창업기업에게 창업기업제품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공공기관이 연간 구매액의 8% 이상을 창업기업제품으로 구매) 이용 편의 제공 도입에 따른 발급

  * 창업기업확인서 심사 및 발급, 이의신청 처리 :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창업기업확인 시스템 운영 : 창업진흥원

  - 창업기업제품 우선구매제도란 공공기관이 연간 구매액의 8% 이상을 창업기업제품(물품, 공사, 용역)으로 구매

신청·접수

- (신청방법) 창업기업확인시스템(http://cert.k-startup.go.kr)에서 회원가입 및 기업정보 등록 후 창업기업 확인서 발급신청
- (제출서류) 창업기업 해당 요건을 판단할 수 있는 증빙서류
  - (공통서류) 사실증명(총사업자등록내역), 사업자등록증명원, 중소기업확인서
  - (조건별 서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제출용,말소사항 포함), 주주명부, 출자자명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폐업사실증명원, 휴업사실증명원, 상속세·증여세 납부확인서, 증여계약서, 파산선고결정문 등

    * 공공마이데이터 연계 서비스 활용 시 최대 4종 제출서류(사업자등록증명, 중소기업확인서, 폐업·휴업사실증명) 간소화
- (신청 및 처리기간) 상시 신청가능, 신청 접수 후 10일(토요일, 공휴일 제외) 내 처리
- (유의사항) 신청기업의 대표자 외 확인서 신청 불가

문의처

- 창업기업 확인서 발급 콜센터 : 1811-3773
- 창업진흥원 사업관리실 : 044-410-1774, 1779
- 자세한 사항은 창업기업 확인시스템(www.cert.k-startup.go.kr) 참조

참고사항

창업기업확인서 발급기업 대상으로 공공 조달시장 진입 지원 및 공공구매제도 제도인식 개선 등을 위해 다양한 「공공시장 진출 프로그램」 운영

- (조달 교육) 공공시장 특징 이해 및 조달 플랫폼별 입점 방법 등에 대한 교육 지원

- (벤처나라 기관 추천) 창업진흥원 추천 시, 벤처나라 등록·지정 평가에서 가점 2점 부여
- (조달 전시회 참가 지원) 국내 최대 규모 조달전시 '코리아 나라장터 엑스포' 참가 지원

Q&A

Q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순 없나요?**

A 창업기업 확인서 발급은 온라인으로만 신청 가능합니다.

Q **창업기업 확인 자가진단이 무엇인가요?**

A 창업기업 확인 신청 전 [자가진단]을 통해 신청기업이 창업기업에 해당하는지와 필요한 증빙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단, 자가진단은 참고사항일 뿐이며, 실제 창업기업 여부는 창업기업 확인 절차를 통해 신청자 기재사항 및 증빙서류 등을 확인하여 최종 판단합니다.

용어 설명

창업기업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3호에 따름

창업지원포털(K-Startup)

사업개요

(예비)창업자를 위한 창업지원 시책, 창업사업, 창업교육, 창업기반 시설 및 공간 등 창업 정보를 통합 제공

지원대상

- (예비)창업자, 지원기관 관계자, 학생, 일반인 등 대국민

지원내용

- 정부의 창업지원사업을 성장 단계별로 정보 제공
  ① 창업준비(대국민)
  ② 예비창업(예비창업자)
  ③ 창업초기(3년 이내 기업)
  ④ 창업도약(3~7년 기업)
  ⑤ 재창업(재창업자) 등 사용자 정보 기반 맞춤 정보(사업화, 창업교육, 시설·공간·보육, 멘토링·컨설팅, 행사·네트워크, R&D 정보 등) 제공
- 창업사업의 '신청·접수, 협약, 사업비 정산' 등을 온라인 원스톱 서비스 제공
- 창업단계별(예비창업, 창업초기, 창업성장, 재도전) 및 실무(유통, 마케팅, 세무, 회계, 비즈니스 모델 수립 등) 온라인 창업 강좌 서비스
- 지도 기반 창업지원사업 및 주관기관, 입주공간 정보 제공

신청·접수

- K-Startup 누리집(www.k-startup.go.kr)을 통해 대국민 누구나 사용 가능

문의처

- 전화상담 : 국번없이 1357 (중소기업통합콜센터)
- 창업진흥원 디지털AI실 : 044-410-1652~9
- 자세한 사항은 K-Startup 누리집 참조(www.k-startup.go.kr)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

지원개요

- 신청자격 :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
- 지원내용 : ❶스타트업이 기업운영 중에 겪는 애로사항 상담 지원, ❷부처·지자체 창업지원사업 등 유용한 정보 제공
  - * 상담분야 : 법률, 세무·회계, 일반경영, 해외진출, 정부지원사업, 창업공간, 창업행사 등
- 지원절차 : 온·오프라인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 방문 → 상담 진행
  - * 온라인 센터는 K-스타트업 지원 포털(www.k-startup.go.kr) 내 개소 예정 ('26.1분기)

〈 상담 지원 절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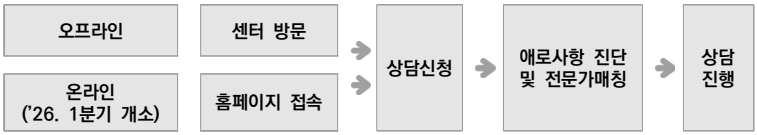

신청·접수

- 신청방법 : 온·오프라인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 방문을 통해 상담 신청
- 제출서류 : (필요시) 사업자등록증 등

- 접수처 : (오프라인) 전국 17개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
  (창조경제혁신센터 내 위치)
  (온라인) 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
  ※'26.1분기 개소

문의처

- 전화상담 : 국번없이 1357 + 4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
- 17개 오프라인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

글로벌 스타트업 센터(GSC)

사업개요

외국인 창업자의 발굴부터 국내 정착까지 지원하는 종합지원센터 역할을 통해 한국 창업 생태계 글로벌화 촉진 및 경쟁력 강화

지원대상

- 7년 이내의 외국인 창업가 및 국내 창업을 희망하는 외국인 등

지원내용

- GSC 지원 세부내용 : 공간 지원, 1:1 컨설팅, 프로그램 운영, 창업비자 등
  - 업무 공간 : 코워킹 스페이스(상시 운영) 및 미팅룸(예약 운영) 제공
  - 행사 등 개최 : 외국인 창업관련 이벤트 및 네트워킹 지원
  - 1:1 컨설팅 : 거주/비자/법인설립/은행/기타 분야별 상담, 교육 및 행정 서비스 대행 등 제공
  - 프로그램 운영 : 단계별 시그니쳐 프로그램, 특허교육 워크샵, 피칭클리닉 등
  - 창업비자 지원 : 오아시스, 스타트업코리아 특별비자 등

참고사항

- 운영시간 : 평일 09:00 - 18:00
- 공간구성 : 상담창구, 코워킹 스페이스, 이벤트홀, 컨퍼런스룸. 미팅룸, 휴게공간 등

기관별, 월별 지원사업 및 사업공고 현황

◉ 기관명 : 창업진흥원

공고 시기	지원사업명	사업공고명	문의처
1월	예비창업패키지	2026년도 예비창업패키지 예비창업자 모집공고	044-410-1803, 1804, 1840
	초기창업패키지	'26년 초기창업패키지(일반형, 딥테크형, 투자연계형) 창업기업 모집공고	044-410-1864, 1831, 1834, 1836, 1862
	창업도약패키지	'26년 창업도약패키지(일반형, 딥테크형, 투자연계형)창업기업 모집 공고	044-410-1860, 1863, 1866~8
	초격차 스타트업 프로젝트	2026년도 초격차 스타트업 프로젝트 (DIPS) 창업기업 모집공고	044-410-1684, 1689
	팁스(TIPS)	2026년 팁스(TIPS) 창업기업 지원계획 통합공고 * 팁스 비R&D 연계사업(창업사업화·해외마케팅) 공고 포함	044-410-1715, 1718, 1721~3 02-2039-1308, 1354
	팁스(TIPS)	2026년 프리팁스(Pre-TIPS) 및 포스트 팁스(Post-TIPS) 지원 계획 통합공고	044-410-1715, 1718,1721~3 02-2039-1308, 1354
	팁스(TIPS)	2026년 글로벌 팁스(Global TIPS) 창업기업 모집공고	044-410-1715, 1718,1721~3 02-2039-1308, 1354
	창업중심대학	2026년 창업중심대학 (예비)창업기업 모집공고	044-410-1811~1819
	재도전성공패키지	2026년 재도전성공패키지 (예비)재창업기업 모집 공고	044-410-1983, 1992
	청소년비즈쿨	'26년 청소년비즈쿨 운영학교(센터) 모집 공고	044-410-1963, 1951, 1957
2월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지원사업	2026년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지원사업 전략과제 해결형 및 민간 선별 · 추천형 스타트업 모집공고	044-410-1720, 1767, 1768
	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	2026년 글로벌기업 협업프로그램 (Around X) 창업기업 모집공고	02-2039-1274 044-410-1844, 1883
	도전! K-스타트업	「도전! K-스타트업 2026」부처 통합 창업경진대회 공고	044-410-1717, 1783

공고 시기	지원사업명	사업공고명	문의처
3월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지원사업	2025년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지원사업 주관기관 모집 공고	02-2039-1652, 044-410-1884, 1887
	K-스타트업 그랜드챌린지	Recruitment of (Pre-)startups for 2026 K-Startup Grand Challenge	02-2039-1735
	판교 창업존 운영	2026년 판교 창업존 신규 입주기업 모집공고	044-410-1802, 1927
4월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지원사업	2026년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지원사업 창업기업 모집 공고	02-2039-1652, 044-410-1884, 1887

제 4 부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지원사업(전년대비) 달라지는 내용

◉ 기관명 :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구분	'25년도	'26년도
동반성장몰 운영 사업	변경내용 없음	변경내용 없음

동반성장몰 운영 사업

사업개요

대기업·공공기관·중소기업·소상공인·납세자 등이 복지포인트,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여 우수한 중소기업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구축된 상생형 쇼핑몰

지원대상

- 신청자격 : 중소기업, 소상공인
- 지원조건 : 전자상거래법에 위반되지 않는 국내 제조상품을 취급하는 중소·소상공인
- 우대사항 : 없음

신청제외 대상

▸ 대기업, 해외브랜드

지원내용

- 우수 중소기업 제품의 동반성장몰(공공기관·대중소기업 도입) 입점 및 판매 지원
- 동반성장몰 구매실적의 공공기관·대중소기업 동반성장지수 등 각종 실적인정
- 도입기관 맞춤형 상시 프로모션 운영 등 다양한 혜택 제공

신청·접수

- 공고(예정) 시기 : 상시 모집(26.1.2.~26.12.31.)
- 신청방법 :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제출서류 : 상품기술서, 증빙서류 등

심사·평가 주요내용

▸ 서류평가 및 상품 판매 적정성 검토

- 추진절차

신청·접수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	심사평가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	결과 안내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판판대로 접속 및 입점신청		서류검토 진행		판매가능여부 결과 통보

문의처

-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동반성장몰팀 : 02-6678-9821~9
-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홈페이지(www.kodma.or.kr) 및 판판대로(www.fanfandaero.kr) 사업공고 참고

참고사항

① 전년도 사업공고

- 공고명 : 동반성장몰
  - (경로) 판판대로 〉 지원사업 공고 〉 유통·판로 〉 동반성장몰
  - (홈페이지)

② 기타사항

- 제목 : 동반성장몰 소개 페이지
  - (경로) 검색창 〉 동반성장몰
  - (홈페이지)

기관별, 월별 지원사업 및 사업공고 현황

◉ 기관명 :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공고시기	지원사업명	사업공고명	문의처
상시	동반성장몰 운영 사업	동반성장몰	02-6678-9821

제 5 부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지원사업(전년대비) 달라지는 내용

◉ 기관명 :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구분	'25년도	'26년도
장애인 맞춤형 창업교육	지원내용 변경 - 온라인교육, 특화교육, 컨설팅, 인턴캠프 등	지원내용 변경내용 - 온라인교육, 컨설팅, 아카데미 등
	신청·접수 변경 - 인턴캠프 관련 신청·접수 내용 추가	신청·접수 변경내용 - 아카데미 관련 신청·접수 내용 추가
발달장애인 가족창업 특화사업장 운영	지권금액 변경 - 24억(국비12억, 지방비 12억)	지권금액 변경 - 22.5억 (국비 12억, 지방비 10.5억)
장애인기업 수출지원	지원내용 신설 - 수출물류비, 해외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해외 IR 등 지원	지원내용 신설내용 - 해외 유망 전시회 한국관 지원 신설
제품디자인 및 시제품 제작지원	지원규모 변경 - 제품디자인 및 시제품 제작지원 15개사 내외 지원	지원규모 변경내용 - 제품디자인 및 시제품 제작지원 20개사 내외 지원
판로지원(인증·마케팅)	지원규모 변경 - 인증획득 또는 마케팅 활동 지원 25개사 내외 지원	지원규모 변경내용 - 인증획득 또는 마케팅 활동 지원 30개사 내외 지원
공공구매제도 운영	신청서류 변경 - 기존 신청서류 접수	신청서류 변경 - 기존 신청서류 + 중소기업 확인서 제출
장애인기업 창업보육실 운영	지원대상 변경 - 사업개시 3년 미만 장애인기업 및 예비창업자	지원대상 변경 - 사업개시 7년 미만 장애인기업 및 예비창업자
	입주조건 변경 - 이행보증보험증권 발급(12개월)	입주조건 변경 - 이행보증보험증권 발급(18개월)

장애인 맞춤형 창업교육

사업개요

장애인 예비창업자 및 재기창업자, 3년 미만의 초기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 이론교육, 전문가와의 1:1 컨설팅, 오프라인 실무교육 등을 통해 성공적인 창업지원

〈 전년대비 달라지는 내용 〉

구분	'25년	'26년
지원내용	온라인교육, 특화교육, 컨설팅, 인턴캠프 등	온라인교육, 컨설팅, 아카데미 등
신청·접수	인턴캠프 관련 신청·접수 내용 추가	아카데미 관련 신청·접수 내용 추가

지원대상

- 신청자격 : 장애인 예비창업자 및 재기창업자, 3년 미만의 초기창업자
- 지원조건 : 사업공고 전일까지 창업경험이 없거나 사업자 등록(개인, 법인)을 하지 않은 자 및 업종을 전환하려는 재기창업자, 사업 개시 3년 미만의 기창업자

지원내용

- 지원 세부내용 : 성공적인 창업을 위한 온라인 창업교육(창업-NET), 1:1 창업 컨설팅, 오프라인 실무교육(창업 아카데미) 지원

- (온라인교육) 장애인 온라인 교육지원시스템(창업-NET)을 통한 창업 기초, 역량강화, 재기, 협동조합, 시각장애인 창업, AI 교육 및 유관기관 강의 콘텐츠 제공
- (컨설팅) 창업 전반 관련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전문가와 1:1 대면 상담을 통해 사업계획서 작성부터 사업자등록 이후까지의 심층 솔루션 제공
- (아카데미) 창업에 관심 있는 청년, 중장년, 시니어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오프라인 실무교육을 진행하여 창업 트렌드 파악 및 역량강화 지원

- 지원규모 : 총 1,930명(온라인 1,510명, 컨설팅 360명, 아카데미 60명)
- 지원금액 : (맞춤형 창업교육) 5.24억원, (기업가역량강화센터) 10억(신규)

신청·접수

- 공고(예정) 시기 : (온라인) 연중 수시, (컨설팅) 2월, (아카데미) 8월
- 신청방법 : 창업-NET(https://start.debc.or.kr/main.do)을 통한 온라인 신청
-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장애인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
- 접수절차 : 필수 제출 서류 누락·미비 여부 확인을 통한 선착순 모집
- 추진절차 : 창업-NET을 통한 온라인 신청 → 교육 및 컨설팅 → 수료증 발급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 : 044-204-7825
- 재단법인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창업지원부 : 02-2181-6521
- (전화상담)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 기업마당(www.bizinfo.go.kr)

참고사항

① 전년도 사업공고

- 공고명 : 2025년 장애인 창업 컨설팅 지원 대상자 모집공고
  - (경로) 재단법인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https://www.debc.or.kr/) 〉 알림마당 〉 사업공고 〉 제목 검색(창업 컨설팅) 〉 전년도 모집 공고문 참고
  - (홈페이지)

② 기타사항

- 제목 : 장애인 창업지원사업 설명자료
  - (경로) 창업-NET 〉 공고 〉 자료실
  - (홈페이지)

장애인 창업 사업화 지원사업

사업개요

창업의지가 있는 장애인 예비창업자 및 업종전환희망자에게 초기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창업 기반 마련

지원대상

- 신청자격 : 장애인 예비창업자 및 업종전환을 희망하는 기창업자
- 지원조건 : '26.1.1.(목) 이후 센터에서 주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장애인 중 예비창업자 및 업종전환희망자
- 우대사항 : 중증, 여성, 저소득, 청년 등에 해당될 경우 가점 부여

신청제외 대상

-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으로 창업을 준비 중인 자
- 비영리사업자(비영리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 등

지원내용

- 지원 세부내용

지원항목	지원내용
매장 인테리어	사업자 소재지 상의 사업장 인테리어 등 내·외부 리모델링에 소요되는 비용
브랜드 개발	CI·BI 디자인, 네이밍 등 브랜드 개발에 소요되는 비용
마케팅 홍보	판로개척·고객확보를 위한 온·오프라인 마케팅·홍보 소요비용
홈페이지·어플리케이션	선정된 사업계획서 상의 아이디어 관련 제품(서비스)의 홍보 및 판매를 위한 홈페이지, 어플리케이션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
집기구입비	사업장 내 집기, 물품구입에 소요되는 비용
폐업지원비용	폐업 후 사업정리(점포철거 등), 구조물 원상복구 작업비용(한도 300만원)

- 지원규모 : 총 65개사(예정)
- 지원금액 : 기업별 최대 2,000만원 한도 지원

신청·접수

- 공고(예정) 시기 : '26년 (상반기) 2월~3월, (하반기) 5월~6월
- 신청방법 : 방문 및 우편, 온라인 접수
- 제출서류 : 자기소개서, 사업계획서, 장애인증명서, 가점 증빙서류 등
- 선정평가 : 서류평가 → 발표평가

심사·평가 주요내용

▸ 창업자의 자질 및 역량진단, 사업계획서 등을 종합평가

- 추진절차

지원신청 및 접수	→	서류평가	→	발표평가	→	사업화자금지원
2월~3월, 5월~6월		4월, 7월		4월, 7월		5월, 8월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 : 044-204-7825
- 재단법인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창업지원부 : 02-2181-6534, changup@debc.or.kr

참고사항

① 전년도 사업공고

- 공고명 : 「2025년 장애인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상반기 대상자 모집 공고
  - (경로) 재단법인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https://www.debc.or.kr/) 〉 알림마당 〉 사업공고 〉 제목 검색(창업사업화) 〉 전년도 모집 공고문 참고
  - (홈페이지)

가치키울 창업스타 발굴전

사업개요

우수한 창업아이템 및 유망 아이디어를 보유한 장애인 예비창업자 및 초기창업자를 발굴·시상하여 창업 분위기 조성

지원대상

- 신청자격 : 장애인 예비창업자 또는 7년 미만의 기창업자
- 지원조건 : 사업공고일 기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설립등록을 하지 않은 장애인, 7년 이내에 창업(개인, 법인)한 장애인
- 우대사항 : 중증/저소득/청년/여성장애인, 아이템 관련 국가기술자격증 보유자, 센터 창업보육실 입주기업 대표자, 센터 주관의 창업교육 수료생 등

신청제외 대상

- 최근 3년 이내 정부부처 주관 창업경진대회 수상자 또는 동일 아이템
- 타인의 특허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아이템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 및 반사회적 성격의 아이템

지원내용

- 지원 세부내용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상 및 상금(최대 1,000만원) 지급
- 지원규모 : 총 11건(대상1, 최우수상2, 우수상2, 장려상6), 예정
- 지원금액 : 총 3,200만원(대상 1,000만원, 최우수 500만원, 우수 300만원, 장려 100만원)

신청·접수

- 공고(예정) 시기 : '26년 3월
- 신청방법 : 방문 및 우편, 온라인(이메일)접수
- 제출서류 : 참가신청서, 사업계획서, 장애인증명서, 가점 증빙서류 등
- 선정평가 : 1차 서류심사 → 2차 발표심사

심사·평가 주요내용

▸ 참가자 문제의식과 창의성, 아이템 필요성과 사업전략 등

- 추진절차

참가신청 및 접수	→	서류심사	→	발표심사	→	시상
3~4월		5월		6월		11월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 : 044-204-7825
- 재단법인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창업지원부 : 02-2181-6534, changup@debc.or.kr

참고사항

① 전년도 사업공고

- 공고명 : 2025년「가치키울 창업스타 발굴전」(창업아이템경진대회) 참가자 모집 공고
  - (경로) 재단법인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https://www.debc.or.kr/) 〉 알림마당 〉 사업공고 〉 제목 검색(경진대회) 〉 전년도 모집 공고문 참고
  - (홈페이지)

발달장애인 가족창업 특화사업장 운영

사업개요

발달장애인 및 가족의 공동창업을 위해 창업 이론 및 기술교육, 지역별 특성에 맞는 생산설비 및 기자재 등을 지원하여 발달장애인 가족의 창업 기반 마련

〈 전년대비 달라지는 내용 〉

구분	'25년	'26년
지원예산	24억(국비 12억, 지방비 12억)	22.5억(국비 12억, 지방비 10.5억)

지원대상

- 신청자격 : 발달장애인 및 가족(보호자)
- 지원조건 : 15개 장애 유형 중 지적 장애인 및 자폐성 장애인

지원내용

- 지원 세부내용 : 발달장애인 및 가족 창업을 위한 교육 훈련 및 실습(1년), 최대 2년간 창업 활동 지원
  (지역별 특성에 맞는 생산설비 및 기자재 등 활용)
- 지원규모 : 발달장애인 특화사업장 7개소 운영
  (1개소당 평균 20팀 교육)
- 지원금액 : 22.5억원(국비 12억, 지방비 10.5억)

신청·접수

- 공고시기 : 연중 수시(결원 발생 시)
- 신청방법 : 방문 및 우편, 온라인 접수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 추진절차

사업공고 및 접수	→	평가 및 선정	→	예비창업자 입주	→	창업/기술교육
연중수시		연중수시		연중수시		연중수시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 : 044-204-7825
- 재단법인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지역육성부, 각 사업장

사업장명	사업장 소재지	연락처
경북 가치만드소	경상북도 안동시 동흥2길 20	054-900-1173
광주 가치만드소	광주 광산구 고봉로126-15	062-511-8330
제주 가치만드소	제주시 아라일동 368-76	064-749-8234
충남 가치만드소	충남 공주시 계룡면 영규대사로747	041-960-1144
경남 가치만드소	경남 진주시 상대동 819-3	055-763-3556
아산 가치만드소	충남 아산시 배방읍 모산로158-15	041-911-6446
익산 가치만드소	전북 익산시 월성동 324-4	063-901-0060

참고사항

① 전년도 사업공고

- 공고명 : 2025년 아산 가치만드소 밀착형 창업교육 교육생 모집
  - (경로) 재단법인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https://www.debc.or.kr/) 〉 알림마당 〉 사업공고 〉 제목 검색(가치만드소) 〉 전년도 모집 공고문 참고
  - (홈페이지)

국내외 전시회 참가지원

사업개요

국내외 유명 전시회 참가를 통해 마케팅 및 판로개척을 할 수 있도록 국내외 전시회 참가비용 지원(부스임차료, 홍보비 등)

지원대상

- 신청자격 : 장애인기업확인서 보유기업
- 우대사항 : 중증장애인, 장애인고용, 사회적기업, 저소득 장애인 등

신청제외 대상

- 지원대상 전시회 개최(주관)자와 지원 신청자(법인)가 동일할 수 없으며 미술품 개인(작품)전, 자체 주관 제품설명회, 법인이 아닌 개인이나 사설단체가 주관하는 전시회 등의 경우 지원불가
- 본 사업을 지원 받아 참가하는 전시회 건에 한정하여 타 정부 및 지자체 등의 지원을 중복으로 받을 수 없으며(직접지원, 간접지원) 추후 해당 사실이 확인될 경우 향후 센터 지원사업 신청 제한
- 상품 및 서비스의 판매·홍보가 주목적이 아닌 행사(ex 학술세미나)
- 전시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되지 않는 전시(박람)회 참가불가
- 휴·폐업중인 기업

지원내용

- 지원규모 : 총 25개사 내외
- 지원금액 : 국내 200만원, 국외 500만원 한도

- 지원 세부내용
  - 국내 : 전시회 부스임차료, 장치비, 홍보비, 활동보조인력비 합산금액의 80%, 200만원 한도지원(부가세 제외)
  - 국외 : 전시회 부스임차료, 장치비, 홍보비, 통·번역비, 운송료, 활동보조인력비 합산금액의 80%, 500만원 한도지원(부가세 제외)

신청·접수

- 공고(예정) 시기 : '26. 2월 예정
- 신청방법 : 온라인(이메일) 또는 우편
- 제출서류 : 신청서, 지원계획서 등
- 선정평가 : 서류평가(고용기여도, 보유인증, 참가준비도, 제품경쟁력 등)
- 추진절차

①사업공고	➔	②신청/접수	➔	③심사 (서류심사)	➔	④완료보고서 제출	➔	⑤지원금지급
2월 중		공고 후 4주		접수 후 14일 이내		전시회참가 후 제출		매월 말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 : 044-204-7825
- 재단법인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기업성장부 : 02-2181-6532

참고사항

① 전년도 사업공고

- 공고명 : 2025년 국내외 전시회 참가 지원사업 모집공고
  - (경로) 재단법인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https://www.debc.or.kr/) 〉 알림마당 〉 사업공고 〉 제목 검색(전시회) 〉 전년도 모집 공고문 참고
  - (홈페이지)

Q&A

Q **참가하는 전시회에 대한 제한사항이 있나요?**

A 전시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되지 않는 전시(박람)회는 지원 불가하며, 상품 및 서비스의 판매·홍보가 주목적이 아닌 행사(ex: 학술세미나) 역시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용어 설명

장애인기업(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제2조(정의) 제2항

가. 장애인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나. 해당 기업에 고용된 상시근로자 총수 중 장애인의 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인 기업. 다만,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에 대하여는 장애인고용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장애인기업 수출지원

사업개요

수출 물류비, 해외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시장개척단, 해외 유망 전시회 한국관 지원 등을 통해 장애인기업의 해외시장 개척 기반 마련

〈 전년대비 달라지는 내용 〉

구분	'25년	'26년
지원내용	수출물류비, 해외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해외 IR 등 지원	해외 유망 전시회 한국관 지원 신설

지원대상

- 신청자격 : 장애인기업확인서 보유기업
- 우대사항 : 중증장애인, 장애인고용, 사회적기업, 저소득 장애인 등

지원제외 대상

- 휴·폐업중인 기업
- 지원기간 중 장애인기업확인서 유효기간이 만료된 업체
- 지원기간 중 지원업체의 비협조 또는 사업포기 시 향후 센터 지원사업에 참여제한

* 선정 이후라도 신청제외 사유가 발생 또는 발견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지원내용

- 지원규모 : 총 100개사 내외
- 지원 세부내용
  - 시장개척단파견 : 수출 타겟국가 시장분석, 사전바이어 발굴 및 검증 후 현지 파견을 진행하여 바이어와의 수출 상담 기회 제공
  - 수출마케팅 : 해외 온라인 마케팅 및 온라인 글로벌 공동전시관 등 지원
  - 해외바이어초청상담회 : 해외 바이어를 국내에 초청하여, 수출 상담회 개최
  - 수출 물류비 : 인코텀즈 C 및 D조건에 해당하는 국제운송비에 대해 최대 5백만원, 80% 한도 지원(공급가액 기준, 부가세 제외)
  - 해외 유망 전시회 한국관 지원 : 해외 바이어 및 참관객이 많은 유망 전시회에 한국관 설치, 바이어 매칭 등 지원

신청·접수

- 공고(예정) 시기 : '26. 2월 예정
- 신청방법 : 온라인(이메일) 또는 우편
- 제출서류 : 신청서, 지원계획서 등
- 선정평가 : 서류평가(고용기여도, 보유인증, 참가준비도, 제품경쟁력 등)
- 추진절차

①사업공고	②신청/접수	③심사 (서류심사)	④수출지원	⑤사후관리
2월 중	공고 후 4주	접수 후 14일 이내	심사 선정 후 지원 (~12월)	지원완료 후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 : 044-204-7825
- 재단법인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기업성장부 : 02-2181-6532

참고사항

① 전년도 사업공고

- 공고명 : 2025년 장애인기업 수출마케팅 지원사업 모집공고
  - (경로) 재단법인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https://www.debc.or.kr/) 〉 알림마당 〉 사업공고 〉 제목 검색(수출) 〉 전년도 모집 공고문 참고
  - (홈페이지)

Q&A

Q **시장개척단 파견의 지원방식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A 센터에서 사전 조사를 통해 수출 유망 국가를 선정 후 해당 국가 진출이 유망한 업종 및 품목을 고려하여 심사를 통해 지원업체를 선정하게 됩니다. 선정 후 바이어 발굴 및 검증을 통해 진성바이어를 매칭하고, 현지 전문 마케터를 통한 현지 마케팅을 지원해드립니다. 또한 현지에 파견(4~5일 일정)하여 수출상담회를 개최하며, 파견 시 항공(50%), 교통, 통역을 지원해드립니다.

용어 설명

인코텀즈 : 국제상업회의소(ICC)가 제정한 무역 규칙으로, 수출자와 수입자 간 인도 방식·비용 부담·위험 이전 시점을 정형화한 약속

* CFR (Cost and Freight, 운임 포함 조건): 지정된 목적항까지의 운임은 수출자가 부담하지만, 화물에 대한 위험은 선적항에서 본선 적재 시 수입자에게 이전됩니다.

*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운임 및 보험료 포함 조건): CFR에 최소 보험료를 수출자가 추가 부담하여 가입하는 조건입니다. (운임 및 보험료까지 부담)

* CPT (Carriage Paid To, 운송비 지급 조건): 지정된 목적지까지의 운송료는 수출자가 부담하지만, 화물에 대한 위험은 최초 운송인에게 인도할 때 수입자에게 이전됩니다.

* CIP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운송비 및 보험료 지급 조건): CPT와 동일하게 운송료를 수출자가 부담하며, 수입자를 위한 최소 수준의 보험 가입 의무도 수출자에게 있습니다.

* DAP (Delivered at Place, 도착지 인도 조건): 지정된 목적지에서 하역 준비된 상태로 수입자에게 화물을 인도합니다. 수입 통관 및 관세만 수입자 부담입니다.

* DPU (Delivered at Place Unloaded, 도착지 양하 인도 조건): 지정된 목적지에서 화물을 하역하여 인도합니다. DAP와의 유일한 차이점은 수출자에게 하역 의무가 있다는 점입니다.

* DDP (Delivered Duty Paid, 관세 지급 인도 조건): 수출자(판매자)의 의무가 최대인 조건입니다. 수입국에서 통관, 관세, 모든 비용까지 수출자가 부담하고 화물을 인도합니다.

제품디자인 및 시제품 제작 지원

사업개요

기술 개발 비용지원을 통해 기업 부담 절감 및 기술 사업화 기반을 마련하고, 장애인기업의 신제품 개발 촉진 및 기업 경쟁력 제고

〈 전년대비 달라지는 내용 〉

구분	'25년	'26년
지원규모	제품디자인 및 시제품 제작지원 15개사 내외 지원	제품디자인 및 시제품 제작지원 20개사 내외 지원

지원대상

- 신청자격 : 장애인기업확인서 보유기업 및 장애인 예비창업자
- 신청조건 : ①참여기업-②제작기업 간 컨소시엄 구성하여 신청
  - ① 참여기업 : 장애인기업확인서 보유기업 및 선정 발표일로부터 50일 이내 사업자등록증 제출이 가능한 자
  - ② 제작기업 : 디자인 전문회사, 금형제작능력 보유기업 등
- 우대사항 : 주관기관 창업아이템경진대회 수상기업 등

신청제외 대상

- 개발비 과다 책정 등 서류상 현격한 미비점이 발견된 경우
- 지원하고자 하는 분야의 목적물을 이미 제작 중이거나 제작이 완료된 경우
- 타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서 기선정된 지원과제 또는 중도 포기한 과제, 현재 사업수행 중이거나 사업비 지원을 받은 과제의 경우
- 금융기관을 통한 계좌개설이 불가능하거나, 이행보증보험 증권 발급이 불가능하거나, 신용상의 문제가 있는 경우 등

지원내용

- 지원규모 : 총 20개사 내외
- 지원금액 : 최대 1,000만원 ~ 3,000만원, 분야별 상이

  * 총사업비=지원금+기업부담금(공급가액의 10~30% 현금 부담과 부가세)

- 지원 세부내용

단계	제품디자인	시제품 제작	
지원 분야	제품디자인	제품설계 및 시제품 목업	시제품 금형
지원 내용	제품디자인개발 및 디자인목업 제작비용	기구설계, 워킹목업, 임베디드소프트웨어개발 비용	시제품금형 제작비용
결과물	최종보고서, 제품디자인설계도, 디자인목업	최종보고서, 기구설계도, 워킹목업, 소프트웨어저작권등록증	최종보고서, 금형 및 시사출품, 시사출 및 조립 완제품
지급 방식	중간결과물 점검(평가) 후 30%, 최종결과물 점검(평가) 후 70% ※ 이행(계약)이행보증보험, 이행(지급)이행보증보험 증권 발급 제출 필수		
지원 금액	최대 1,000만원	최대 2,000만원	최대 3,000만원
협약 기간	협약일로부터 90일 이내	협약일로부터 120일 이내	협약일로부터 120일 이내

신청·접수

- 공고(예정) 시기 : ’26. 3월 예정
- 신청방법 : 온라인(이메일) 또는 우편
-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견적서,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등
- 선정평가 : 총 2단계 평가(서류 → 발표)를 통해 최종 선정

단계	선정 기준	평가 기준
1차 서류	평균 70점 이상, 지원 규모 2배수	사업계획의 적절성, 기술성 및 개발 능력, 성장성 및 기대효과
2차 발표	평균 70점 이상, 지원 규모 내에서 고득점자순 선정	창업자 사업수행능력, 기술성 및 개발능력, 성장성, 기대효과

◉ 추진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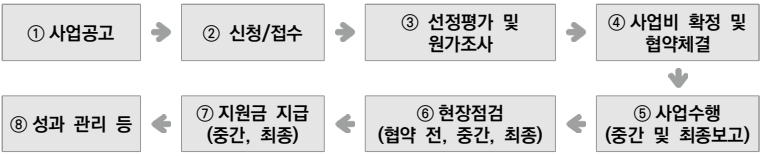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 : 044-204-7825

◉ 재단법인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기업성장부 : 02-2181-6535

참고사항

① 전년도 사업공고

◉ 공고명 : 2025년 장애인기업 제품디자인 및 시제품제작지원사업 모집공고

- (경로) 재단법인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https://www.debc.or.kr/) 〉 알림마당 〉 사업공고 〉 제목 검색(시제품) 〉 전년도 모집 공고문 참고
- (홈페이지)

Q&A

Q **사업비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A 사업비는 전문 원가조사기관의 분석을 통해 확정(조정)되며, 기업 규모(중기업/소기업/예비창업자)에 따라 지원금 및 기업부담금 비율이 차등 적용됩니다. 사후 환급이 가능한 부가가치세, 관세, 잔여 개발비용은 선정기업이 별도 부담합니다.

용어 설명

제품디자인제작지원 : 사업화를 위한 제품디자인을 확정하기 위해 2차원 및 3차원 데이터를 실체로 형상화하여 실제 제품의 형상, 질감, 색상을 점검, 수정할 수 있도록 제품디자인 개발 및 디자인목업 제작비용 지원

제품설계 및 시제품목업제작지원 : 제품디자인을 보유한 기업이 제품의 형태 설계 및 기능설계를 완료하고, 설계된 부품들을 Mock-up 제작하여 조립성을 검토하고, 제품을 제어하기 위한 회로설계, 프로그래밍 등이 실제 제품과 같이 기능하는지를 검토하기 위한 모형을 제작하는 단계로, 상용화 목적의 금형 제작 전 단계 시제품 제작비용 지원

시제품금형 : 디자인 도안 및 기술 개발을 완료하고 그에 따른 제품디자인, 기구설계 도면, 제품 제작도면과 시제품모형(워킹목업 또는 실물모형)을 보유한 기업이 제품을 상용화할 목적으로 시제품 금형(부분품 포함)을 제작할 때 소요되는 비용 지원

판로지원(인증획득 및 마케팅)

사업개요

장애인기업의 우수 기술 사업화 기반 마련을 위한 인증획득 또는 마케팅 활동 비용지원을 통해 장애인기업 제품 신뢰성 확보 및 기업 경쟁력 강화

〈 전년대비 달라지는 내용 〉

구분	'25년	'26년
지원규모	인증획득 또는 마케팅 활동 지원 25개사 내외 지원	인증획득 또는 마케팅 활동 지원 30개사 내외 지원

지원대상

- 신청자격 : 장애인기업확인서 보유기업
- 지원조건 : 당해연도 1.1.~ 사업종료일까지 인증획득 또는 마케팅 활동 최종결과물 제출 기업에 대한 비용지원
- 우대사항 : 중증장애인, 사회적기업, 장애인고용 등

신청제외 대상

- 휴·폐업 중인 자(기업)
- 인증의 갱신, 유효기간 연장 건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자(기업)
- 동일 신청(지원) 건에 대해 정부 및 지자체 등의 지원을 받은 자(기업) 등

지원내용

◉ 지원 세부내용

지원영역	지원항목
인증획득 (컨설팅비, 시험비 포함)	▪ 해외규격인증 : CE, UL, CSA 등 ▪ ISO인증 : ISO9001, ISO14001, ISO22000, ISO45001, ISO13485, ISO37001 ▪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 : 성능인증, NET, NEP, GS인증, 우수 조달제품 등 ▪ 조달가점, 법정의무인증 : KS, 환경표지, GR, K마크, Q마크, HACCP, KC, GMP 등 ▪ 각 정부부처 소관인증 : 고령친화 우수제품, 전통식품품질인증 등 ▪ 기업인증 : 이노비즈, 메인비즈, 벤처기업 ▪ 지식재산 : 국내 특허, 상표, 실용신안, 디자인 등 지식재산권
마케팅	▪ 광고홍보 : 오프라인(TV, 신문지, 지하철 옥외광고 등) 및 온라인(SNS채널 등) 광고 ▪ 브랜드개발 : 브랜드 네이밍, BI, CI 등 제작 ▪ 홍보 동영상 : 회사 및 제품서비스 홍보영상 제작 ▪ 디자인 : 브로슈어, 포스터, 홈페이지 제작

◉ 지원규모 : 총 30개사 내외(인증획득분야 10개사, 마케팅분야 10개사)

◉ 지원금액 : 기업당 1,500만원 한도 내 2건 지원

신청·접수

◉ 공고(예정) 시기 : ’26. 3월 예정

◉ 신청방법 : 온라인(이메일) 또는 우편

◉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견적서,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가점 증빙서류 등

◉ 선정평가 : 서류평가를 통해 최종 선정

심사·평가 주요내용

▸ 기업(제품)사업화 전략, 기업(제품) 경쟁력 등

◉ 추진절차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 : 044-204-7825
- 재단법인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기업성장부 : 02-2181-6529

참고사항

① 전년도 사업공고

- 공고명 : 2025년 장애인기업 판로지원사업(인증&마케팅) 모집공고
  - (경로) 재단법인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https://www.debc.or.kr/) 〉 알림마당 〉 사업공고 〉 제목 검색(인증) 〉 전년도 모집 공고문 참고
  - (홈페이지)

Q&A

Q **인증획득 비용의 범위가 궁금합니다.**

A 인증획득 비용이란 선정기업에서 지출하신 인증비, 시험비, 컨설팅비를 말합니다. 세부적으로 인증비란 인증서 발행비, 인증신청비, 연회비, 심사비, 법정대리인 선임 비용이며, 시험비란 인증에서 규정한 시험 규격에 의거 제품을 시험한 비용이며, 컨설팅비란 인증획득 대행 및 기술자문 등 서비스 비용을 말합니다.

Q **선정기업 발표는 어떻게 하나요?**

A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선정기업 명단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선정기업이 사업 포기 등의 사유로 잔여 예산이 발생할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예비 후보기업에게 순차적으로 연락하여 지원할 예정입니다.

용어 설명

해외규격인증 : 국가별 해외규격인증 지원 대상 인증
(해외규격인증 획득지원센터 참고)

현장실사 : 선정기업 사업장을 방문하여 지원금 지급의 적정성 검토(필요시)

1인 사업주 보조공학기기 지원사업

사업개요

1인 중증장애인 사업주의 경영활동 안정화 및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한 보조공학기기 구입자금 지원

지원대상

- 신청자격 : 장애인기업 확인서를 발급 받은 1인 중증장애인 사업주
- 지원조건 : 선정일로부터 12개월 간 보조공학기기 사용 유지
- 우대사항 : 기업업력(창업초기 우대), 저소득 여부 등

신청제외 대상

- 공고일 기준 장애인기업확인서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 휴·폐업 기업
- 공고일 기준 최근 4년 이내에 동 사업에 선정된 경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공학기기를 지원받아 제한연수(내구연한)가 경과하지 않은 경우. 단, 1백만원 미만의 보조공학기기를 지원받은 경우와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 의료급여 장애인보조기기 사업을 통하여 보조공학기기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 가능

지원내용

- 지원 세부내용 : 보조공학기기 공급가액의 90% 한도 지원
  - 사업주 1인당 최대 5백만원 한도
- 자부담 : 보조공학기기 공급가액의 10% + 부가세

- 지원방식 : 사업비 매칭지원(사업주 선 구매, 지원금 후 지급)
- 지원규모 : 총 30개사 내외

신청·접수

- 공고(예정) 시기 : '26년 3월
- 신청방법 : 이메일, 우편, 방문을 통한 서류제출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1부, 기기 활용계획서 등, 이용 서약서 1부 등
- 선정평가 : 서면평가를 통한 지원자 선정

심사·평가 주요내용

▸ 지원 필요성, 지원 효과성, 기업업력, 가점 사항 등

- 추진절차

① 사업공고 → ② 신청/접수 → ③ 선정평가 및 결과통지 → ④ 보조공학기기 지원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 : 044-204-7825
- 재단법인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기업성장부 : 02-2181-6529

참고사항

① 전년도 사업공고

- 공고명 : 2025년 1인 사업주 보조공학기기 지원 사업 모집공고
  - (경로) 재단법인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https://www.debc.or.kr/) 〉 알림마당 〉 사업공고 〉 제목 검색(보조공학) 〉 전년도 모집 공고문 참고
  - (홈페이지)

Q&A

Q **어떤 기기를 신청할 수 있나요?**

A 모집 공고문 내 '지원 보조공학기기 품목'에 해당하는 보조공학기기를 신청하실 수 있고, 신청된 보조공학기기의 인정여부 및 적합성은 심사 단계에서 결정됩니다.

Q **타기관에서 이미 지원받은 보조공학기기가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없나요?**

A 타기관에서 지원받으신 보조공학기기가 1백만원 미만인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 다만, 1백만원 이상이고 제한연수가 경과하지 않은 기기인 경우 본 사업에서는 지원제외 대상이 됩니다.

Q **여러 개의 기기를 신청할 수 있나요?**

A 최대 3개의 제품을 지원금액 한도(5백만원) 내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단, 1품목에서는 1제품만 신청 가능)

Q **부가세도 지원 대상인가요?**

A 센터는 기기 공급가액의 90%(한도 5백만원)만을 지원하며, 5백만원의 초과분과 부가세는 신청자 본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용어 설명

보조공학기기 : 장애인이 업무 수행 시 필요한 기능을 유지·향상시키는 공학기기, 장비 또는 소프트웨어

1인 사업주 : 모집공고 전일 기준 상시근로자가 없는 것으로 서류 상 확인이 가능한 1인 사업주

MAS 컨설팅 및 등록

사업개요

장애인기업의 공공구매시장 진출 기반 마련을 위한 MAS 등록 및 공공입찰 컨설팅 지원

지원대상

- 신청자격 : 장애인기업확인서를 발급받고 확인기간이 유효한 기업
- 우대사항 : 중증장애인, 청년장애인, 창업 초기기업, 센터 주관 창업교육 수료, 센터 보육실 입주기업

신청제외 대상

- 장애인기업확인서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 기업의 부도, 화의, 법정관리중인 기업
- 금융 불량 거래처로 규제중인 경우
- 국세 및 지방세 체납중인 기업, 휴폐업 중인 기업
- 기타 정상적으로 금융거래가 어려운 경우 등

지원내용

- 지원규모 : 총 96개사 내외
- 지원 세부내용
  - MAS 컨설팅 :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상품등록 지원
    * 기업별 1세부품명 20품목 이내
    *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절차에 맞춘 단계별 전문 컨설턴트 지원

- 전자입찰 컨설팅 : 공공 전자입찰 참여를 위한 전자조달시스템 이용 방법 지도

  * 전자입찰 공고문 분석 및 적격심사 관련 컨설팅
  * 과거 투찰 성향 파악 및 문제점 해결 지도

- 이음장터 컨설팅 : 서비스 공공조달 플랫폼 상품등록 및 활용 방안 지도

  * 상품에 대한 상세 설명 내용 및 관련 서류 작성 지원
  * 기업진단 및 서비스 상품분석 서비스 제공

- 벤처나라 컨설팅 : 조달청 벤처나라 플랫폼 상품등록 및 활용 방안 지도

  * 기업진단 및 서비스 상품분석 서비스 제공
  * 조달청 벤처나라 상품등록을 위한 입점절차, 제출서류 및 신청방법, 평가진행 방식 등 전반적인 컨설팅 진행

신청·접수

- 공고(예정) 시기 : '25. 3월 예정
- 신청방법 : 이메일을 통한 서류제출
- 제출서류 : 신청서, 지원계획서 등
- 선정평가 : 서류평가(고용기여도, 보유인증, 지원필요성, 기대효과 등)
- 추진절차

①사업공고	②신청/접수	③심사 (서류평가)	④컨설팅 지원	⑤사후관리
3월 중	4주	접수 후 14일 이내	컨설팅 : 11월 말까지	지원완료 후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 : 044-204-7825
- 재단법인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기업성장부 : 02-2181-6535

참고사항

① 전년도 사업공고

- 공고명 : 2025년 장애인기업 공공판로 컨설팅 지원사업 모집공고
  - (경로) 재단법인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https://www.debc.or.kr/) 〉 알림마당 〉 사업공고 〉 제목 검색(공공판로) 〉 전년도 모집 공고문 참고
  - (홈페이지)

Q&A

Q **접자입찰 컨설팅의 지원범위는 어디까지 인가요?**

A 투찰 전략(전략적 투찰계획 수립 및 최적의 투찰금액 산정 방법), 서류작성(입찰 및 낙찰에 필요한 제반서류 작성방법), 기업지원(신용평가 등급, 기업진단, 해외조달 컨설팅)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해 드립니다.

용어 설명

MAS(Multiple Award Schedule) : 일정 자격 및 조건(납품 실적, 경영 상태 등)이 일정한 자를 대상으로 협상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면 수요 고객이 직접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자유롭게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업무지원인 서비스

사업개요

근로자가 없는 중증장애경제인을 대상으로 업무를 보조할 수 있는 업무지원인 서비스를 통해 경영활동 안정화 지원

지원대상

- 신청자격 : 근로자가 없는 중증장애경제인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으로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장애경제인

요건	정의
근로자가 없는	· 고용인원이 없는 1인 기업
중증장애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장애경제인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제2조(정의)제2항에 해당하고, 장애인기업 확인서를 발급받고, 확인 기간이 유효한 기업의 대표자

지원내용

- 지원규모 : 총 115개사 내외
- 지원 세부내용

구분	내용
업무보조형	· 일 8시간 미만, 월 160시간 미만(자부담 5%, 부가세 제외) - 센터는 모집된 업무지원인과 이용자 매칭(인력파견 수행기관 운영)
의사소통형	· 수어통역, 점역교정 및 속기 비용 300만원 한도(자부담 5%, 부가세 제외) - 의사소통형 선택 시 의사소통 수행업체를 이용자가 직접 선정
경영지도형	· 컨설팅 소요비용 300만원 한도(자부담 5%, 부가세 제외) - 경영지도형 선택 시 경영지도 수행업체를 이용자가 직접 선정

신청·접수

- 공고(예정) 시기 : '25. 2월 예정
- 신청방법 : 우편 또는 이메일을 통한 서류제출
- 제출서류 : 신청서, 지원계획서 등
- 선정평가 : 서류평가(기업업력, 지원필요성, 활용계획, 효과성 등)
- 추진절차

①사업공고	②신청/접수	③심사 (서류평가)	④업무지원인 매칭	⑤업무지원인 서비스 지원
2월 중	4주	접수 후 14일 이내	대상자 인터뷰를 통한 업무지원 인력 매칭	11월 말까지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 : 044-204-7825
- 재단법인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기업성장부 : 02-2181-6530

참고사항

① 전년도 사업공고

- 공고명 : 2025년 업무지원인 서비스 모집 공고
  - (경로) 재단법인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https://www.debc.or.kr/) 〉 알림마당 〉 사업공고 〉 제목 검색(업무지원) 〉 전년도 모집 공고문 참고
  - (홈페이지)

Q&A

Q **업무지원인은 어떤 업무를 지원하나요?**

A 업무지원인 서비스 유형은 업무보조형, 의사소통형, 경영지도형 3가지로 구분됩니다.

❶업무보조형 : 제품포장, 행정보조, 이동지원, 서류정리, 정보검색 등 경영활동에 필요한 부수적인 업무 지원

❷의사소통형 : 의사소통이 어려운 중증장애경제인을 위한 수어통역, 점역교정 및 속기 지원

❸경영지도형 : 공공조달, 법률회계, 시장분석, 홍보컨설팅 등을 전문컨설팅 기관에서 지원

Q **업무지원인 매칭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A ❶업무보조형 : 센터에서 선정한 인력파견 수행기관에서 지원당사자인 중증장애인 사업주와 인터뷰를 진행하고, 필요 업무에 대해 파악 후 해당 조건에 맞는 인력을 모집하여 매칭합니다.

❷의사소통형 : 의사소통 수행업체(수어통역센터 등)를 이용자가 직접 선정하고, 서비스 이용 후 이용자가 제출한 증빙서류 확인 후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❸경영지도형 : 경영지도 수행업체(컨설팅 전문기관 등)를 이용자가 직접 선정하고, 서비스 이용 후 이용자가 제출한 증빙서류 확인 후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전국장애경제인대회

사업개요

국가 경제발전에 이바지한 모범 장애경제인과 장애인기업 지원 유공자를 선정하여 정부포상을 실시하고, 다양한 부대행사를 통해 장애인기업 관계자의 교류와 성과 확산 촉진

지원대상

- 신청자격 : 모범장애경제인 및 장애인기업 육성에 기여한 개인
- 지원조건

구분	지원조건
모범 장애 경제인	· 경영혁신, 사회공헌 실천, 고용 창출 등 모범적 경영 활동을 통해 국가발전 및 국민생활 향상에 기여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장애경제인으로 3년 이상 장애인기업을 경영한 자
장애인기업 육성 유공자	· 아이디어와 혁신으로 장애인기업 제도개선, 장애인기업 육성·지원 등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지자체, 지원기관 등의 임직원으로서 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신청제외 대상

▸ 2024년도 정부포상 업무지침에 의하여 제외되는 경우
1.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2. 형사처분을 받은 자 중 지침이 정한 기간을 경과하지 않은 자
3. 상훈법 제8조 및 정부 표창 규정 제 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4.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5.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 및 그 임원,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 명단 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 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 제공이 된 체불 사업주
6. 국세기본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자
7. 사회적 물의로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중소벤처기업부 공적심사 규정 제7조에 의하여 제외되는 경우

1.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 요구중이거나 징계처분이 종료되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 직위 해제 후 복직되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사회적 물의가 있거나 감사결과 지적되어 인사조치 후 2년이 경과 되지 아니한 자
4. 직무와 관련하여 경고조치를 당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상훈법 및 정부표창규정(정부포상업무 지침 포함)에 의한 제외대상에 해당하는 자
6. "정부포상 추천대상자 공개검증" 결과 및 공적심의회 심의결과 정부포상 대상자로 추천하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7. 장관표창의 경우 표창추천일 기준, 직전 장관표창 수여일로부터 2년 미경과자 (다만, 우등상, 창안상 및 기타 표창권자가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

지원내용

- 지원 세부내용 : (모범장애경제인)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지식재산처장 표창 (유공자 부문)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표창
- 지원규모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표창 17점, 지식재산처장 표창 5점
- 지원금액 : 해당없음

신청·접수

- 공고(예정) 시기 : 7월
- 신청방법 : 홈페이지 공고를 통한 이메일 또는 우편접수
- 제출서류 : 포상신청서, 공적조서 및 기타증빙서류(공고문 참고)

◉ 선정평가 : 자격검토 → 후보추천

심사·평가 주요내용

- 모범장애 경제인 부문 : 공적기간, 일자리 창출, 국가경제발전 기여도 등
- 유공자 부문 : 공적기간, 사회공헌 실적, 장애인기업 지원실적 및 성과 등

◉ 추진절차

신청·접수	사전평가 (서류/추천심사)	후보추천	결격조회 현장확인	공적심사 위원회	시상식 개최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중소벤처기업부		장애인기업 종합지원센터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 : 044-204-7825

◉ 재단법인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대외협력부 : 02-2181-6524

참고사항

① 전년도 사업공고

◉ 공고명 : 모범 장애경제인 및 장애인기업 육성 유공자 포상 공고

- (경로) 재단법인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https://www.debc.or.kr/) 〉 알림마당 〉 사업공고 〉 제목 검색(경제인) 〉 전년도 모집 공고문 참고
- (홈페이지)

Q&A

Q **전국장애경제인대회는 어떤 행사인가요?**

A 모범 장애경제인과 장애인기업 지원 유공자에 대한 정부포상과 다양한 부대행사(전시회·설명회 등)를 통해 장애인기업이 대한민국 경제를 이끄는 중요한 주체임을 알리고 장애인기업의 성장·발전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과 성과 확산을 촉진하는 행사입니다.

Q **전국장애경제인대회는 포상자 이외에도 누구나 참석할 수 있는 행사인가요?**

A 전국의 장애인기업 대표 및 임직원, 공공구매 수요기관, 장애인 및 중소기업 정책 관계자, 투자사·바이어, 장애인 예비창업자 등 장애인기업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하고 교류할 수 있는 행사입니다.

공공구매제도 운영

사업개요

장애인기업의 판로지원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해 공공기관의 장애인기업 제품 구매를 촉진하여 장애인기업제품 판로확대 및 구매력을 강화하는 다양한 지원

〈 전년대비 달라지는 내용 〉

구분	'25년	'26년
신청서류	기존 신청서류 접수	기존 신청서류 + 중소기업 확인서 제출

지원대상

- 신청자격 :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제2조에 근거, 장애인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기업규모 중기업의 경우, 해당 기업에 고용된 상시근로자 총수 중 장애인을 30% 이상 고용한 기업

  *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았거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 4에 따른 상이등급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정을 받은 사람

신청가능 대상

- 법인사업자(상법상 회사(주식회사, 유한 · 유한책임회사, 합자 · 합명회사))
- 개인사업자
- 협동조합(영리법인, 사회적협동조합)

신청제외 대상

- 민법상 법인(사단법인, 재단법인)
- 특수법인(의료법인, 학교법인, 법무법인, 특허법인, 사회복지법인)
- 기타법인(영농조합법인, 한국장애경제인협회, 연합회)

지원내용

- (장애인기업 확인제도) 장애인기업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해당 기업의 장애인기업 확인을 위한 지원제도로서, 공공구매종합정보망(SMPP)내에서 신청 및 발급 가능함
- (장애인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공공기관은 장애인기업이 직접 생산, 제공 및 수행하는 당해연도 제품(물품·용역·공사)을 구매총액의 1% 이상 장애인기업제품으로 우선 구매해야함
- (소액수의 관련 우대사항) 장애인기업은 국가계약법 또는 지방계약법에 의거, 수의계약 체결 시, 5천만원 이하 금액에 대해서는 1인 수의계약이 가능함
- (신인도 가점 우대) 우수조달물품, 군수품 구매 적격심사, 물품구매 적격심사 등 최대 가점 한도 5점

신청·접수

- 신청절차 : 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 접속 → 중소기업 주요서비스 →기업확인서 신청/발급 → 장애인기업확인서 신청/출력]
-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공통	· 사업자등록증명, 최근 3개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직전 사업연도말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장애인증명서(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서), 중소기업확인서
법인사업자 추가서류	·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함 포함)
협동조합 추가서류	·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조합원 명부, 출자자 명부, 협동조합 정관
중기업 추가서류	· 장애인종업원 장애인증명서,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등록절차

공공구매종합정보망 회원가입 (www.smpp.go.kr)	→	장애인기업 확인신청	→	서류검토 및 현장실사	→	검토 및 발급 (수시 출력가능)
장애인기업		장애인기업		센터, 전문위원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 : 044-204-7825
- 재단법인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지역육성부 : 02-2181-6541
- 장애인기업 확인서 발급 관련 자세한 사항은 공공구매종합정보망(SMPP) 참조

장애인기업 창업보육실 운영

사업개요

우수한 창업아이템을 보유한 창업초기의 장애인기업 및 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비즈니스 공간 및 사무기기, 기업지원정책 등을 지원

〈 전년대비 달라지는 내용 〉

구분	'25년	'26년
지원대상	사업개시 3년 미만 장애인기업 및 예비창업자	사업개시 7년 미만 장애인기업 및 예비창업자
입주조건	이행보증보험증권 발급(12개월)	이행보증보험증권 발급(18개월)

지원대상

- 신청자격 : 장애인 예비창업자 또는 장애인기업
- 지원조건 : 장애인 예비창업자 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7년 미만(공고일 기준) 의 장애인기업
- 우대사항 : ①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상의 중증장애인, ② 여성 또는 청년, ③ 창업교육 수료자, ④ 창업경진대회 수상 이력 보유자

신청제외 대상

- 개인서비스업(컨설팅, 부동산업 등), 여행업, 안마업 등(일반 사무실 용도가 아닌 업종은 불가능)
- 금융기관의 신용불량거래자인 경우
- 국세, 지방세 체납자
- 센터가 운영중인 지역센터에 입주경력이 있는 자
- 타 기관의 보육실에 입주중인 자

지원내용

- 지원 세부내용 : 창업공간 및 사무편의 기자재, IT환경 제공, 기타 교육(지재권, 공공조달 등) 및 상담서비스, 입주기업 인프라 및 네트워크 구축지원사업 제공 등
- 지원규모 : 16개 지역센터 123개 보육실 운영

신청·접수

- 공고(예정) 시기 : 지역별 연중 수시 신청 및 접수
  (창업보육실 공실 발생 시)
- 신청방법 : 방문 · 우편 또는 전자문서 접수
- 제출서류 : 입주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장애인(기업)확인서류 등
- 선정평가 : 총 3단계 평가(지원 신청서 접수-서류 및 면접심사-선정)

심사·평가 주요내용

-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전문분야의 기술을 갖춘 사업

- 추진절차(연중수시)

입주공고 → 신청·접수 → 서류 및 면접심사 → 선정 및 입주계약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 : 044-204-7825
-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지역육성부

지역	담당센터 번호
서울	02-2181-6541
경기	032-322-1940
인천	032-817-1364
대전	042-362-9077
강원 · 충북	043-238-8243
충남	041-331-0505
광주	062-511-8330
전북	063-237-5354
전남	061-285-7867
제주	064-749-8234
울산 · 부산	052-294-7230
대구	053-600-8070
경북	054-842-3773
경남	055-763-3556

참고사항

① 전년도 사업공고

- 공고명 : 대구지역센터 창업보육실 입주기업 모집 공고
  - (경로) 재단법인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https://www.debc.or.kr/) 〉 알림마당 〉 사업공고 〉 00지역센터명 검색
  - (홈페이지)

기관별, 월별 지원사업 및 사업공고 현황

◉ 기관명 :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공고 시기	지원사업명	사업공고명	문의처
2월	장애인 맞춤형 창업교육	창업 컨설팅 지원 대상자 모집공고	02-2181-6521
	장애인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장애인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상반기 모집공고	02-2181-6534
	국내외 전시회 참가지원	국내외 전시회 참가 지원사업 모집공고	02-2181-6532
	장애인기업 수출지원	장애인기업 수출지원사업 모집공고	02-2181-6532
	업무지원인 서비스	업무지원인 서비스 모집공고	02-2181-6530
3월	가치키울 창업스타 발굴전	가치키울 창업스타 발굴전 참가자 모집공고	02-2181-6534
	제품디자인 및 시제품 제작	제품디자인 및 시제품 제작지원 사업 모집공고	02-2181-6535
	판로지원(인증·마케팅)	판로지원(인증·마케팅)사업 모집공고	02-2181-6529
	1인 사업주 보조공학기기 지원	1인 사업주 보조공학기기 지원사업 모집공고	02-2181-6529
	MAS컨설팅 및 등록	공공판로 컨설팅 지원사업 모집공고	02-2181-6535
5월	장애인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장애인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하반기 모집공고	02-2181-6534
7월	전국장애경제인대회	모범 장애경제인 및 장애인기업 육성 유공자 포상 공고	02-2181-6524
8월	장애인 맞춤형 창업교육	장애인 창업 아카데미 참가자 모집공고	02-2181-6521
상시	발달장애인 가족창업 특화사업장 운영	발달장애인 가족창업교육 참여자 모집 공고	02-2181-6571
	창업보육실 운영	장애인기업 창업보육실 입주기업 모집 공고	1588-6072

제 6 부

중소기업중앙회

지원사업(전년대비) 달라지는 내용

◉ 기관명 : 중소기업중앙회

<table>
<tr><th>구분</th><th>’25년도</th><th>’26년도</th></tr>
<tr><td>소기업·
소상공인공제
(노란우산)</td><td>ㅇ 10년 이상 장기가입자 경영악화로 공제 중도해지 시 세부담 완화 (기타소득→퇴직소득)
- 경영악화 기준 : 직전 3년 대비 수입금액 50% 이상 감소
ㅇ 공제 납입한도 상향 : 분기 300만원</td><td>ㅇ 10년 이상 장기가입자 경영악화로 공제 중도해지 시 세부담 완화 (기타소득→퇴직소득)
- 경영악화 기준 : 직전 3년 대비 수입금액 20% 이상 감소
ㅇ 공제 납입한도 상향 : 연 1,800만원</td></tr>
<tr><td>삼성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td><td>상생형(고도화), 지자체 연계형, 식품업(고도화)</td><td>AI 트랙(신설), 상생형(수요맞춤형) 식품업(고도화)
* 지자체 연계형 사업유형 삭제</td></tr>
<tr><td>포스코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td><td>상생형(고도화)</td><td>AI 트랙(신설), 상생형(수요맞춤형)</td></tr>
<tr><td>외국인근로자
고용지원사업</td><td>외국인력 도입규모 : 총 13만명
<table>
<tr><th>구 분</th><th>총 계</th><th>제조업</th><th>조선업</th><th>농축산업</th><th>어업</th><th>건설업</th><th>서비스업</th><th>탄력배정</th></tr>
<tr><td>총 계</td><td>130,000</td><td>72,000</td><td>2,500</td><td>10,000</td><td>8,500</td><td>2,000</td><td>3,000</td><td>32,000</td></tr>
<tr><td>(’24년 대비)</td><td>(-35,000)</td><td>(-23,000)</td><td>(-2,500)</td><td>(-6,000)</td><td>(-1,500)</td><td>(-4,000)</td><td>(-10,000)</td><td>(+12,000)</td></tr>
</table></td><td>외국인력 도입규모 : 총 8만명
<table>
<tr><th>구 분</th><th>총 계</th><th>제조업</th><th>농축산업</th><th>어업</th><th>건설업</th><th>서비스업</th><th>탄력배정</th></tr>
<tr><td>총 계</td><td>80,000</td><td>50,000</td><td>10,000</td><td>7,000</td><td>2,000</td><td>1,000</td><td>10,000</td></tr>
<tr><td>(’24년 대비)</td><td>(-50,000)</td><td>(-22,000)</td><td>-</td><td>(-1,500)</td><td>-</td><td>(-2,000)</td><td>(-22,000)</td></tr>
</table></td></tr>
<tr><td>중소기업
제조물책임
(PL)보험
지원제도</td><td>’24년 지원 지자체 :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강원,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충북, 제주, 파주, 포천
(’25년 지원 지자체 미정)</td><td>’25년 지원 지자체 :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강원,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충북, 파주
(’26년 지원 지자체 미정)</td></tr>
<tr><td>수출컨소시엄
사업</td><td>총 예산 158.5억원</td><td>총 예산 198.3억원</td></tr>
</table>

중소기업 공동구매 전용보증 제도

사업개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현금 고민 없이 원부자재를 구매'할 수 있도록 보증기관(신보, 기보, 지역신보재단)에서 전용 보증서를 발급하여, 기업은행에서 대출

지원대상

- 원부자재 구매를 희망하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 단, 신용보증기관의 신용평가를 거쳐 중소기업·소상공인이 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어야만 활용이 가능한 제도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국세·지방세 체납기업, 대표자 신용불량 기업

지원내용

- 중소기업중앙회와 기업은행이 보증기관(신보·기보·지역신보재단)*에 보증재원을 출연하여 중소기업·소상공인이 현금 부담 없이 원부자재를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 * 지역신보재단 : 경기·인천·대구·부산·광주 경남·충남·제주

- 전용보증 차별성
  - · 5년간 보증발급 수수료 0.5%p 인하
  - · 금융기관 할인수수료(대출금리) 최대 2.0%p 인하

· 업체별 보증한도(매출액의 최대 1/2), 신용평가, 보증비율(95%) 등 우대 적용

* (참고) 국내 구매만 이용 가능(해외구매는 사용 안 됨)

신청·접수

● 참여 신청서를 조합 포탈(johap.kbiz.or.kr)의 '알림마당->공지사항'을 통해 다운받아 작성 후 이메일 또는 팩스 신청

* 자세한 신청서류는 조합 포탈(johap.kbiz.or.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전용보증' 검색) 참조

문의처

● 중소기업중앙회 협업사업실
(전화) 02-2124-3221~3223 Fax. 02-780-9785
(이메일) juy@kbiz.or.kr

참고사항

● 처리절차 : 참여신청(중소기업·소상공인→중소기업중앙회·중소기업협동조합) ⇒ 참여기업 추천(중소기업중앙회→신용보증기관) ⇒ 참여기업 보증심사 및 발급 ⇒ 기업은행 약정 ⇒ 원·부자재 구매 ⇒ 기업은행을 통한 대금결제 ⇒ 결제일에 기업은행 상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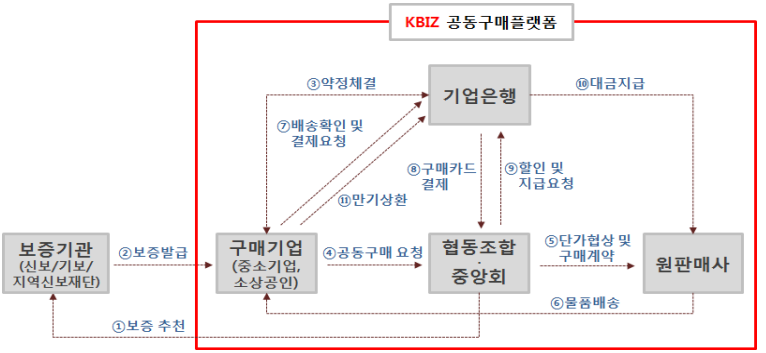

Q&A

Q **대상 및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A 중소기업(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및 소상공인(지역신용보증재단) 중소기업협동조합(신용보증기금)

Q **어떻게 운영되나요?**

A 1. 구매기업 추천(협동조합, 보증기관, 중소기업중앙회) 2. 보증발급(구매기업↔보증기관) 3. 은행약정(구매기업 원판매사 ↔ 은행) 4. 플랫폼 회원가입(구매기업, 원판매사, 협동조합) 순으로 진행됩니다.

Q **어떤 우대사항이 있나요?**

A 보증기관 : 보증한도 우대, 보증료 5년간 0.5%p 우대, 보증비율 95% 적용

IBK기업은행 : 할인수수료 1.0%p 자동감면, B2B결제수수료 면제, 지급보증수수료 면제

용어 설명

공동구매 전용보증 : 원부자재 구매 용도로만 활용할 수 있는 대출보증 상품

보증비율 : 빌린 돈에 대한 보증금의 비율

ex) 보증비율이 100%라면, 빌린 돈의 100%만큼 보증금을 제공

사업조정제도

사업개요

대기업 등의 사업진출로 해당지역, 해당업종 상당수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정부가 대기업에게 일정기간 사업의 인수·개시·확장을 연기(최대 6년)하거나 품목·시설·수량 등을 축소하도록 권고

지원대상

- 신청자격 : (원칙) 해당지역, 해당업종의 중소기업자단체
  (예외) 해당지역·해당업종 중소기업 1/3이상의 동의를 얻은 중소기업
- 지원조건

1) 형식적 요건

- (신청인) 중소기업자단체(중소기업협동조합, 민법에 의한 사단법인으로서 구성원 과반수가 중소기업인 단체, 민법 외 법령에 의한 법인으로서 구성원 과반수가 중소기업인 단체), 중소기업자단체가 없을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해당 지역·해당 업종 중소기업의 1/3이상 동의를 얻어 신청 가능
- (피신청인) 중소기업이 아닌 영리사업자로 대기업 및 대기업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중소기업(상생협력법 제2조 및 제32조 제1항)

2) 실질적 요건

- 대기업 등이 ①사업을 인수·개시·확장함으로써 ②해당지역·해당 업종의 ③중소기업 상당수가 공급하는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④수요를 감소시켜 ⑤중소기업의 경영안정에 현저하게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인정될 때 유효함

신청제외 대상

- ▸ 방위산업발전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사업조정을 할 수 있는 경우
- ▸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 내에서 같은 법 제8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의 경우

지원내용

◉ 지원 세부내용 : 사업조정 신청요건 검토 및 접수

- (신청요건 검토) 사업조정 신청 요건 확인, 신청서류 검토 및 미비 시 보완 요청
- (사업조정 접수) 완비된 서류를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시·도에 송부

신청·접수

◉ 신청시기 : 해당업종 대기업 입점 전 또는 입점 후 180일까지 사업조정 신청 가능

◉ 신청방법 :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www.kbiz.or.kr)를 통한 신청서 다운로드 후 우편 접수

* 서울시 영등포구 은행로30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정책실(우 97242)

◉ 제출서류

- (단체 신청 시) 사업조정신청서, 사업조정신청사유서, 중소기업자 단체의 정관 및 구성원 명부, 사업조정신청 내용이 포함된 이사회 결의서 또는 회의록, 대기업(SSM) 진출에 따라 피해가 예상되는 중소기업 명단, 기타 피해 입증 관련 서류

- (개별중소기업인 신청 시) 사업조정신청서, 사업조정신청사유서, 대기업 진출로 피해가 예상되는 중소기업 1/3이상 동의서, 기타 피해 입증 관련 서류 등

* 개별중소기업인 신청은 해당지역 내 해당업종의 중소기업자단체가 없는 경우에만 가능

◉ 추진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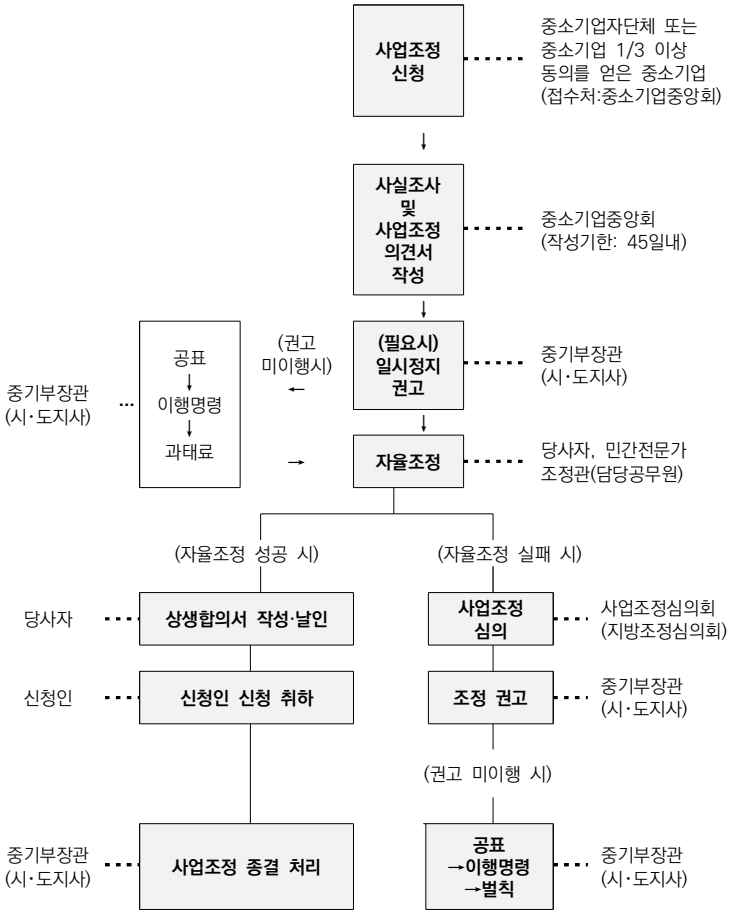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영역조정과
  (전화) 044-204-7937 (이메일) ktg1006@korea.kr
-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정책실
  (전화) 02-2124-3173 (이메일) seyoung@kbiz.or.kr

참고사항

① 전년도 사업공고

- (경로)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 〉 상담센터 〉 사업조정신청 〉 접수현황
- (홈페이지)

Q&A

Q **대기업 SSM은 모두 사업조정 대상이 되나요?**

A 대기업이 직영하거나 혹은 총 개점비용의 51% 이상 대기업이 부담한 점포만 가능합니다. (개점비용 : 임차료, 공사비 등)

Q **대기업이 사업조정심의회 권고를 미이행하면 어떻게 되나요?**

A 권고 미이행 시 이행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명령 미이행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5천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용어 설명

일시정지 권고 : 사업조정 신청 시 대기업이 사업인수·개시 전일 경우 이를 일시적으로 정지시켜 동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물품반입 및 간판설치 등 사업을 위한 직접적 행위를 할 경우 이를 위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명문(名門) 장수기업 확인제도

사업개요

장기간 건실한 기업 운영으로 사회에 기여한 바가 크고, 세대를 이어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중소·중견기업을 명문장수기업으로 확인

지원대상

◉ 중소·중견기업 중 업력이 45년 이상인 기업으로 경제적·사회적 기여·혁신역량 등이 우수한 기업

신청제외 대상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조의3제1항에 따라 아래 업종은 신청대상에서 제외
(한국표준사업분류상 건설업은 대분류, 그 외 업종은 중분류)
* 건설업(F), 부동산업(L68), 금융업(K64), 보험 및 연금업(K65),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K66)

◉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 평가기준에 부합하는 중소·중견기업

* 선정현황 : '17년부터 '25년까지 총 63개사 선정
(중소기업 47개사, 중견기업 16개사)

* 연도별 선정현황(개사) : ('17) 6 → ('18) 4 → ('19) 4 → ('20) 5 → ('21) 11 → ('22) 7 → ('23) 6 → ('24) 10 → ('25) 10

지원내용

- 명문장수기업 확인서 발급(국문, 영문) 및 현판 설치
- 명문장수기업 마크 활용(생산제품 부착 및 회사 홍보에 활용)
- 중소기업 지원사업(수출, R&D 등) 참여시 가점 부여
- 언론 및 SNS 등을 통한 기업 홍보

신청·접수

- 공고(예정) 시기 : 3월
- 신청방법 : 신청서류 및 평가자료를 접수 마감일까지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중앙회, 중견기업은 한국중견기업연합회에 제출 (이메일 및 우편 제출)

  * 제출처

  · 중소기업 : (우 0724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30(여의도동), 중소기업중앙회 기업성장실(3층)

  · 중견기업 : (우 04151)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막로 279(대흥동, 상장회사회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원지원실(5층)

- 제출서류 : 명문장수기업 확인신청서, 평가자료(재무제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등

  * 세부 제출서류는 공고문 참조

선정절차

* 관리기관 : 중소기업중앙회(중소기업),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기업)

선정기준

- 명문장수기업 확인기준표(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 따라 평가결과 80점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심의위원회에서 확인·심의 후 선정

  * 세부평가지표는 공고문 참조

문의처

- 신청·접수
  - 중소기업 : 중소기업중앙회 기업성장실(02-2124-3148)
  - 중견기업 :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원지원실(02-3275-2987)
- 정책문의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제도과(044-204-7452)
- 명문장수기업 홈페이지 : www.time-honored.or.kr

참고사항

① 전년도 사업공고

- 공고명 : 2025년 명문장수기업 모집공고
  - (경로)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 알림소식 〉 사업공고
  - (홈페이지)

- 제출서류 : 명문장수기업 확인신청서, 평가자료(재무제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등

  * 세부 제출서류는 공고문 참조

Q&A

Q **개인기업이 법인기업으로 전환한 경우, 개인기업의 업력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A 개인기업이 법인기업으로 전환한 경우,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에는 개인기업의 업력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사업과 법인의 주된 업종이 같을 것
- 개인사업의 주요 생산시설이 법인에 현물출자되어 있고, 법인이 개인사업자의 사업과 관련된 부채를 모두 인수하였을 것

중소기업 승계자문 프로그램

사업개요

중소기업 승계 관련 세제(가업상속공제제도, 가업승계 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제도)에 대해 전문적 지식을 갖춘 자문위원 등과 승계 관련한 자문을 받기 희망하는 기업을 매칭하여 상담 및 자문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

지원대상

- 기업승계 진행(희망) 중소기업

지원내용

- 상담 및 자문내용
  - 가업상속공제 및 증여세 과세특례제도 설명
  - 가업승계 관련 법률 상담(유류분 소송 등)
  - 가업승계 세제 기본요건 충족 여부 진단 및 세액 추정 등
  - 주식가치평가 및 사업무관자산 비율에 따른 세부담액 추정 등
- 상담방법
  - (세무·법률상담) 온라인·전화·현장 상담
  - (주식가치평가) 현장 상담

* 비상장 중소기업만 대상

* 적정한 주식의 상속 및 증여가액 산정 등의 참고자료로 활용

자문절차

상담신청	→	자문위원 배정	→	상담실시	→	만족도 조사
중소기업		중소기업중앙회		자문위원		중소기업중앙회

신청·접수

- 신청·접수기간 : 상시 접수

  * 예산 소진시 상담이 제한될 수 있음

- 신청방법

  - 온라인 :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www.kbiz.or.kr) 〉 상담센터 〉 중소기업 승계자문 〉 상담신청 〉 자문위원 매칭
  - 전화 : 기업 기본정보 및 자문요청 내용 확인 후 자문위원 매칭 (☎ 02-2124-3147~8)

문의처

- 중소기업중앙회 기업성장실(☎ 02-2124-3147~8)

참고사항

- 공고명 : 중소기업 승계자문 프로그램

  - (경로)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 〉 상담센터 〉 중소기업 승계자문
  - (홈페이지)

무역구제 대리인 선임비용 지원

사업개요

외국 기업의 덤핑, 지식재산권 침해 등 불공정무역행위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이 무역위원회에 무역구제신청을 목적으로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등의 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 대리인 선임비용을 지원

지원대상

-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과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중소기업협동조합
- 지원조건 : 무역위원회에 무역구제 신청으로 인한 대리인 선임비용이 발생한 건
- 우대사항 : 없음

신청제외 대상

- 규정된 사항 없음

지원내용

- 지원 세부내용 : 무역구제 대리인 선임 비용 최대 50% 지원
- 지원규모 : 예산 소진 시 마감
- 지원금액 : 당해 선임계약서에 의한 비용의 50% 미만 범위 내에서 매 건당 5천만 원 미만, 동일 사안 재심사 요청 시 지원 한도 내에서 2회 추가 지원 가능

신청·접수

- 공고(예정) 시기 : 연중 수시 신청
- 신청방법 : 이메일 또는 등기우편 신청
- 제출서류
  ① 대리인 선임계약서 사본
  ② 무역위원회 조사개시 결정의결서 사본
  ③ 대리인 수임비용 지출 증명서류(예:무통장입금증, 입금표 등)
  ④ 중소기업확인서(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⑤ 사업자등록증 사본
  ⑥ 무역피해구제 지원자금 신청서
  (약정서/신청서/지원신청현황/사용인감계)
  ⑦ 계좌통장사본(비용지원을 신청하는 중소기업 등의 통장 사본)
- 선정평가 : 무역구제지원심의회에서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지원 여부 및 지원금액을 결정

심사·평가 주요내용

▸ 무역구제 지원예산 운용요령에 근거하여 심의회가 심사 및 평가

- 추진절차

신청접수	→	무역구제심의회	→	지원여부 결정 및 자금지원
대리인 선임 OR 조사개시 결정 OR 사전조사 신청 후		접수 후 1개월 이내, 서면 심의 가능, 결의서 산출		중소기업중앙회

문의처

- 중소기업중앙회 통상정책실
  (전화) 02-2124-3293, lsh0114@kbiz.or.kr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
  (전화) 044-203-5851, rika3@korea.kr

참고사항

-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 내 '국제통상지원' 페이지 내 '무역구제' 페이지
  - (홈페이지)

Q&A

Q **대리인 선임비용 지원의 정확한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A 무역구제 신청사건과 관련하여 대리인을 선임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지원 범위에 해당하며, 무역위원회 최종 판정에 따른 성공 보수는 제외됩니다.

Q **비용지원 신청 서류를 제출하는 정확한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A 무역위원회로부터 조사개시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무역위원회의 최종 판정일까지 또는, 기획재정부의 최종 결정 통지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Q **비용지원 이후 사후관리가 이뤄지나요?**

A 지원받은 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법령에 위반하여 또는 허위사실 제출에 의한 자금수령이 드러날 경우 전액 또는 일부 금액 환수조치됩니다.

용어 설명

무역구제제도란? : 불공정무역 등으로부터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덤핑수입, 특정외국 물품의 수입급증 등에 대응하여 관세부과, 수량제한 등으로 불공정행위를 시정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무역구제 유형(부과요건)

- 덤핑방지관세제도 : 외국물품이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어 국내산업이 실질적으로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 상계관세제도 : 외국정부의 직·간접 보조금 지급으로 국내 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 세이프가드제도 : 외국물품의 수입급증에 따라 국내산업의 심각한 피해발생 또는 우려의 경우
- 불공정무역행위 : 지적재산권 침해, 원산지표시위반 및 기타 건전한 수출입질서 저해로 국내 산업이 타격을 받을 경우

상사중재 대리인 선임비용 지원

사업개요

코로나19 혹은 국제 분쟁으로 피해가 발생한 중소기업이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신청을 목적으로 대리인(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관세사)을 선임하는 경우 대리인 선임비용을 지원

지원대상

-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과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중소기업협동조합
- 지원조건 : 국제 분쟁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당사자 간의 합의로 중재법상 중재제도를 활용하고자 하는 자
- 우대사항 : 없음

신청제외 대상

- 중재절차에서 중소시업이 중재원에 납부할 비용
- 중재 판정으로 발생하는 중소기업 부담 비용
- 최근 1년간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이력 있는 중소기업

지원내용

- 지원 세부내용 : 중소기업 등이 중재를 위해 대리인을 선임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으로 한정하며, 성공보수 등 기타 비용은 제외
- 지원규모 : 예산 소진 시 마감
- 지원금액 : 1,500만원 지원금액 한도내에서 대리인 선임비용의 50% 이내의 금액으로 결정하며, 동일 사안에 중복하여 지원하지 않음

신청·접수

- 공고(예정) 시기 : 연중 수시 신청
- 신청방법 : 이메일 또는 등기우편 신청
- 제출서류 :

① 지원신청서 및 서약서
② 중재신청 접수일 전후 30일 이내 대리인 선임계약서 사본
③ 비용지출을 입증하는 세금계산서 또는 이체내역
④ 중재원 중재신청서 (또는 반대신청서) 사본
⑤ 중재원 중재사건접수증명원 (코로나19 관련 중재신청 확인용)
⑥ 최근 3개월 이내 발행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⑦ 직인 또는 법인인감증명
⑧ 최근 1년 국세 및 지방세 납세 증명서(유효기간 확인 필수)
⑨ 계좌통장 사본
⑩ 중소기업확인서(유효기간 확인 필수)

- 선정평가 : 상사중재지원심의회에서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지원 여부 및 지원금액을 결정

심사·평가 주요내용

▸ 심의회가 중소기업 상사중재지원사업 운영요령에 의거하여 심사 및 평가

- 추진절차

중재 신청 (대한상사중재원)	→	신청 및 접수 (중소기업중앙회)	→	상사중재심의회 (중소기업중앙회)	→	지원여부 결정 및 자금지원 (중소기업중앙회)
연중 수시		중재신청일 기준 60일 이내		접수 후 60일 이내		

문의처

- 중소기업중앙회 통상정책실
  (전화)02-2124-3135, lsh0114@kbiz.or.kr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
  (전화)044-203-5851, rika3@korea.kr

참고사항

-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 내 '국제통상지원' 페이지 내 '상사중재' 페이지
  - (홈페이지)

Q&A

Q **대리인 선임비용 지원의 정확한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A 무역구제 신청사건과 관련하여 대리인을 선임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지원 범위에 해당하며, 무역위원회 최종 판정에 따른 성공 보수는 제외됩니다.

Q **비용지원 신청서류를 제출하는 정확한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A 무역위원회로부터 조사개시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무역위원회의 최종 판정일까지 또는, 기획재정부의 최종 결정 통지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용어 설명

중재제도란? : 중재(arbitration)란 분쟁 당사자 간의 합의로 법원의 재판이 아닌 당사자들 선정한 중재인의 판정에 의하여 분쟁을 최종 해결하는 제도입니다.

국제중재 법률자문 지원

사업개요

중소기업이 대리인 선임을 하지 않는 국제중재사건의 경우, 정보력 · 행정력 미비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법무법인을 통한 자문 지원

지원대상

-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과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중소기업협동조합
- 지원조건 : 대한상사중재원에 국제중재 신청 시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중소기업이 중재사건 종결 전까지 신청 가능
- 우대사항 : 없음

신청제외 대상

- 규정된 사항 없음

지원내용

- 지원 세부내용 : 상사중재를 신청한 중소기업 등이 국제중재 사건에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경우 국제중재에 대한 법률자문 제공 (2시간 기준)

신청·접수

- 공고(예정) 시기 : 연중 수시 신청
- 신청방법 : 이메일 또는 등기우편 신청
- 제출서류

① 법률자문 지원 신청서

②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신청서(또는 반대신청서) 사본

③ 중소기업확인서

- 선정평가 : 중소기업중앙회 차원으로 '적격' 여부 확인

심사·평가 주요내용

▸ 무역구제 지원예산 운용요령에 근거하여 심의회가 심사 및 평가

- 추진절차

지원 신청 (업체)	→	확인 (중소기업중앙회)	→	법률자문 실시
중재사건 종결 전		'적격' 여부 확인		접수 후 30일 이내

문의처

- 중소기업중앙회 통상정책실
  (전화)02-2124-3293, lsh0114@kbiz.or.kr

참고사항

-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 내 '국제통상지원' 페이지 내 '상사중재' 페이지 중 '국제중재 법률자문 지원' 창

※ 홈페이지를 통해 사업 상세정보 확인이 가능

- (홈페이지)

수출컨소시엄 사업

사업개요

중소기업 간 업종별 또는 품목별 수출컨소시엄*을 구성하여 해외 전시회 및 수출상담회 참가를 지원

* 업종별 협·단체, 수출유관기관 등이 주관단체가 되어 해외전시회 또는 수출상담회별 참여 중소기업 모집·선정

지원대상

- 신청자격 : 주관단체와 참여기업으로 구분하여 선정
  - (주관단체) 업종별 중소기업 단체(조합, 협회 등), 민간전문기업(전문무역상사, 전시전문기업 등), 수출유관기관 등
  - (참여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
- 참여기업 지원조건 : 사업단계별 공통비용의 70%
- 참여기업 우대사항 : 이노비즈, 벤처기업, 여성기업, 납품대금 연동제 참여기업, 글로벌 강소기업 1,000+ 프로젝트 지정기업, K-수출전략품목 지정기업 등

신청제외 대상

- 세금(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 중인 경우
- 한국신용정보원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화의·법정관리·기업회생신청·청산절차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경우
- 기업이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있거나 휴 · 폐업 중인 경우
-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 보조금법 위반 등으로 정부지원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기업 또는 그 특수 관계 기업

지원내용

- 지원 세부내용 : 업종별 컨소시엄별 사전준비, 현지파견, 사후관리 등 3단계로 구분하여 해외진출에 소요되는 공통비용의 일부(70% 이내) 지원

사전준비(1단계)		현지파견(2단계)		사후관리(3단계)
현지시장조사 및 홍보, 바이어 사전 발굴 등 사전비용	→	해외전시회 또는 수출상담회 (전시부스 또는 상담장 임차·장치 등) 현지파견 비용	→	바이어 국내초청 상담회, 국내 업체방문 등 사후관리 비용

- 지원규모 : 컨소시엄 60여개 파견(약 1,300개사)
- 지원금액 : 198.3억원

신청·접수

- 공고(예정) 시기 : (주관단체) '25.10월 / (참여기업) '26년 연중
- 신청방법 : 중소기업해외전시포탈(www.smes.go.kr/sme-expo)에서 신청
  - (주관단체) 로그인 후 홈페이지 메뉴 중 "사업신청 → 주관단체 사업 모집"
  - (참여기업) 로그인 후 홈페이지 메뉴 중 "사업신청 → 수출컨소시엄(전시회) 또는 수출컨소시엄(상담회)"
- 제출서류
  - (주관단체) 참가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운영계획서 등 (사업공고 참조)
  - (참여기업) 참가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수출실적 등 주관단체별 요구 자료

심사·평가 주요내용

▸ 수출실적 등 수출역량, 해외마케팅 추진실적, 참여기업의 제품 및 기술 수준, 수출국 다변화 노력 등

◉ 전체 추진절차

주관단체 사업공고 (중소벤처기업부)	→	신청·접수 (중소기업중앙회)	→	주관단체 선정 (선정평가위원회)
'25. 10월		'25. 10월		'25. 12월

협약체결 및 참여기업 모집 (주관단체)	→	컨소시엄 파견·사업수행 (주관단체·참여기업)	→	사후정산 및 관리 (중소기업중앙회)
(협약체결) '26.1~'26.2월 (참여기업 모집) 수시: '26.1~'26.12월		수시('26.1월~12월)		사업종료 후 30일 이내 결과보고

◉ 참여기업 추진절차

신청 · 접수 (중소기업해외전시포탈)	→	선정평가 (컨소시엄별 주관단체)	→	협약체결 및 기업부담금 납부 (총 사업비의 약 30%)
수시('26.1월~12월)		수시('26.1월~12월)		수시('26.1월~12월)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성장정책과
(전화) 044-204-7504 (이메일) hr0218@korea.kr

◉ 중소기업중앙회 통상정책실
(전화) 02-2124-3295 (이메일) jhyeon1224@kbiz.or.kr

◉ 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등

참고사항

① 사업모집 공고문을 통해 사업에 대한 상세정보 확인 가능

◉ 공고명 : '26년도 수출컨소시엄사업 주관단체 모집공고
- (경로) 중소기업해외시장포털 〉 공지 및 소식 〉 공지사항
- (홈페이지)

- 공고명 : '26년도 수출컨소시엄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
  - (경로) 중소기업해외시장포털 〉 사업신청 〉 수출컨소시엄(전시회)
  - (홈페이지)

Q&A

Q **(주관단체) 해당 전시회사업에 선정되고 다른 지자체로부터 지원을 추가로 받아도 될까요?**

A 주관단체로 선정되셨을 경우, 해당 전시회는 이미 국고지원을 받으셨기 때문에 지원을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지원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Q **(참여기업) 숙박 및 항공비 등 출장 여비도 지원해주시나요?**

A 아닙니다. 부스 임차료, 물품 운송료, 현지 마케팅 등 전시회 사업에 직접적인 부분 대상 국고지원이 가능하며, 참여기업의 항공료 및 국외여비는 지원사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삼성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사업

사업개요

각 기업별 수준에 맞는 스마트공장 구축 및 AI 활용 미래형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하고 삼성의 핵심 노하우를 전수하여 중소·중견 제조현장의 경쟁력 향상 도모

〈 전년대비 달라지는 내용 〉

구 분	'25년	'26년(안)
사업 유형	상생형(고도화), 지자체 연계형, 식품업(고도화)	AI 트랙(신설), 상생형(수요맞춤형) 식품업(고도화)

지원대상

- 신청자격 : 국내 중소· 중견 제조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및「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중견기업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대기업)은 제외
- 우대사항 : 취약지역·계층, 장애인기업, 뿌리기업, 일터혁신 컨설팅 참여기업, FEMS·ESCO 도입기업, 글로벌 강소기업

신청제외 대상

- 휴·폐업중인 기업
- 장비 도입이 주목적인 기업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 유흥·향락업, 숙박·음식점
- 도입 솔루션과 장비가 연동이 안 되는 업체
- 불건전 오락 용품 제조업
- 동일 사업기간 내 他 스마트공장 구축사업 기 신청한 기업
  (단, 지원 사업이 집중AS 기간 중인 경우에는 지원 가능)

지원내용

- 지원 세부내용 : 삼성전자와 중소·중견기업이 협력하여 스마트공장을 구축할 경우 정부가 구축비용의 일부를 지원
- 지원규모 : 약 200억원 (예정)
- 지원 사업을 3Track으로 구분하여 효율적인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구 분	AI 트랙	수요맞춤형			식품업
목표수준	중간1 이상	기초 이상	중간1 이상	동일수준	중간1 이상
지원규모	최대 3억원	최대 6천만원	최대 1.5억원	최대 6천만원	최대 2억원
총 사업비	4억원 내외	1억원 내외	2.5억원 내외	1억원 내외	4억원 내외

※ 지원규모 등 자세한 사업 내용은 변동될 수 있으며, 사업공고 참고 必

신청·접수

- 공고(예정) 시기 : 3~4월 중 예정
- 신청방법 : 스마트공장사업관리시스템(https://www.smart-factory.kr) 온라인 접수
-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국세 및 지방세 납입증명서, 중소(중견)기업 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원, 우대사항 증빙서류 등

- 선정평가 : 요건검토 → 현장실사 → 선정평가위원회 → 원가계산 → 최종선정 및 전자협약 체결
- 추진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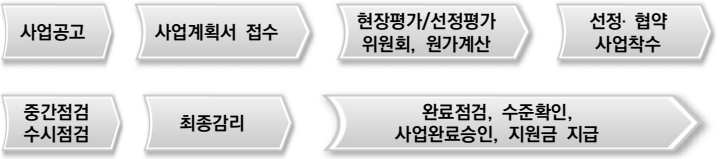

문의처

-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산업실
  (전화) 02-2124-4371, 4319, 4311

참고사항

- 사업 공고 및 사업 추진 매뉴얼 등 자세한 사업 현황은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kbiz.or.kr) → 스마트공장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
  - (경로)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 – 지원사업 – 스마트공장 공지사항
  - (홈페이지)

포스코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사업

사업개요

각 기업별 수준에 맞는 스마트공장 구축 및 AI 활용 미래형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하고 삼성의 핵심 노하우를 전수하여 중소·중견 제조현장의 경쟁력 향상 도모

〈 전년대비 달라지는 내용 〉

구 분	'25년	'26년(안)
사업 유형	상생형(고도화)	AI 트랙(신설), 상생형(수요맞춤형)

지원대상

- 신청자격 : 국내 중소· 중견 제조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및「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중견기업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대기업)은 제외
- 우대사항 : 포스코 또는 포스코 그룹사 거래 기업, 포항 또는 광양 소재 기업, 뿌리기업, ESG 분야 관련 사업 지원기업, 일터혁신 컨설팅 참여기업, 포스코 QSS 혁신 참여 또는 참여 예정 기업

신청제외 대상

- 휴·폐업중인 기업
- 장비 도입이 주목적인 기업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 유흥·향락업, 숙박·음식점
- 도입 솔루션과 장비가 연동이 안 되는 업체
-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 동일 사업기간 내 他 스마트공장 구축사업 기 신청한 기업
  (단, 지원 사업이 집중AS 기간 중인 경우에는 지원 가능)

지원내용

- 지원 세부내용 : 포스코와 중소·중견기업이 협력하여 스마트공장을 구축할 경우 정부가 구축비용의 일부를 지원
- 지원 규모 : 약 30억원

구 분	AI 트랙	수요맞춤형		
목표수준	중간1 이상	기초 이상	중간1 이상	동일수준
지원규모	최대 8억원	최대 6천만원	최대 2.4억원	최대 6천만원
총 사업비	10억원 내외	1억원 내외	4억원 내외	1억원 내외

※ 지원규모 등 자세한 사업 내용은 변동될 수 있으며, 사업공고 참고 必

신청·접수

- 공고(예정) 시기 : 3~4월 중 예정
  -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kbiz.or.kr) → 스마트공장 '공지사항'
- 신청방법 : 스마트공장사업관리시스템(https://www.smart-factory.kr) 온라인 접수
-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국세 및 지방세 납입증명서, 중소(중견)기업 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원, 우대사항 증명서류 등
- 선정절차 : 1차 서류심사 – 2차 현장실사 – 3차 최종심사 등

- 포스코 스마트공장 추진지원단 위원 공동 심사하며, 서류심사 통과 시 현장실사 관련 방문 일정 및 준비사항 별도 안내

◉ 추진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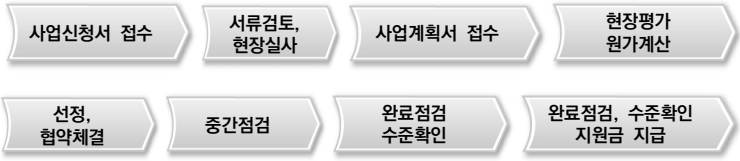

문의처

◉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산업실 (02-2124-4371, 4319)

참고사항

◉ 사업 공고 및 사업 추진 매뉴얼 등 자세한 사업 현황은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kbiz.or.kr) → 스마트공장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

- (경로)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 – 지원사업 – 스마트공장 공지사항
- (홈페이지)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

사업개요

공급원가(원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 상승 시 영세한 수탁중소기업을 대신해 중소기업협동조합(중소기업중앙회)이 위탁기업과 납품대금 조정 협의를 진행

지원대상

- 신청자격 : 중소기업협동조합에 가입한 수탁기업
- 협의대상 : 대기업, 중견기업, 중기업, 공공기관(자체계약) 등
- 신청요건 : 아래 요건 충족 시 신청 가능 (모두 해당해야 함)
  - 수·위탁거래 계약 체결(계약기간 중일 것)
  - 수탁기업이 중소기업협동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사
  - 위탁기업의 규모가 중기업 이상

신청제외 대상

- 중소기업협동조합에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동시에 가입해 있을 경우
- 위탁기업이 중기업이 아닌 소기업일 경우

지원내용

- 납품대금(공급원가) 상승분에 대해 수탁기업을 대신해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이나 중소기업중앙회가 위탁기업과 협의를 진행
  - 위탁기업과 협의가 결렬되면, 중소벤처기업부 분쟁조정 절차로 진행
- 진행 협의절차
  - 중소기업협동조합은 20일, 중소기업중앙회는 15일 내로 서류검토
  - 그 후 위탁기업과 30일 내 협의. 다만 위 기간은 사안에 따라 단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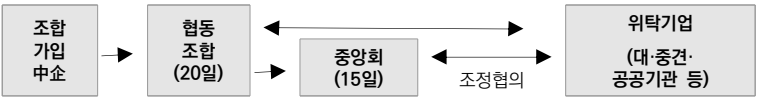

※ 합의 불성립시, 분쟁조정 신청(수탁, 위탁기업 / 조합 / 중앙회 → 중기부)

신청·접수

- 신청방법 : 각 업종별 중소기업협동조합에 신청
  (수·위탁거래 계약기간 내 신청)
- 제출서류 : 공급원가 변동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계약서, 원가내역서 등)

문의처

- 중소기업중앙회 상생협력실 ☎ 02-2124-3207
-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 – 지원사업 – 납품대금 제값 받기 지원
- 납품대금 연동·조정협의 지원 시스템 (kbiz.webcost.co.kr)

Q&A

Q **공급원가 변동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A 계약체결시 작성한 원가내역서, 견적서 등과 실제 지출과 관련한 원가내역서, 견적서, 급여지급내역서, 세금계산서, 카드전표, 현금영수증 등의 비교를 통해 공급원가 변동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위탁기업이 조정협의를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A 위탁기업이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납품대금조정협의를 개시하지 않을 경우 또는 30일 안에 합의에 도달하지 않은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에 분쟁조정 요청 또는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사 후 시정의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중소벤처기업부는 그 시정을 권고하거나 시정명령을 할 수 있으며, 위탁기업의 시정명령 미이행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5천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조정협의 거부 → 분쟁조정 → (시정 필요성 인정될 시)
시정명령 → (미이행시) 공표 → 공표 후 1달 내 시정명령 미이행 →
1년 이하 징역 또는 5천 이하 벌금

용어 설명

수탁·위탁거래 : 제조, 공사, 가공, 수리, 판매, 용역을 업(業)으로 하는 자(이하 "위탁기업")가 물품, 부품, 반제품(半製品) 및 원료 등(이하 "물품 등")의 제조, 공사, 가공, 수리, 용역 또는 기술개발(이하 "제조")을 다른 중소기업(이하 "수탁기업")에 위탁하고, 제조를 위탁받은 중소기업이 전문적으로 물품 등을 제조하는 거래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사업개요

중소기업 판로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이 생산·제공하는 제품에 대해 정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등 공공기관이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운영

지원내용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 운영

- 개요 :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대해 조달계약 체결 시, 입찰 참가자격을 해당제품을 직접 생산하는 중소기업자로 제한
- 신청자격 : ① 중소기업협동조합 등 관련 단체, ② 신청제품을 직접 생산·제공하는 중소기업자 10인 이상
- 지정요건 : 공공기관 연간 구매실적 10억원 이상, 국내 직접 생산 중소기업 수 10개 이상 등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 616개 지정('25~'27)

추천 제외 대상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9조)

- ▸ 지정요건 미충족 또는 증빙서류 미제출
- ▸ 경쟁제품을 직접 생산하는 중소기업자의 과반수가 경쟁제품 지정을 반대하는 경우
- ▸ 중견기업, 대기업 및 수입품이 없는 세부품목. 다만 중견·대기업의 사업 진출 또는 수입품 유입 가능성 등 지정 필요성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추천 가능
- ▸ 최근 5년간(추천년도포함) 3회 이상 독과점 유의품목으로 지정되었거나 독과점 유의품목의 지정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등

◉ 조합 추천 소액수의계약제도 운영

- 개요 :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구매하고자 할 때,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부터 업체를 추천받아 견적(가격경쟁)만으로 구매하는 제도
- 구매기관 : 국가, 지자체 등 판로지원법 제2조 제2호에 의한 기관(법인)
- 구매대상 : 추정가격 1억원 이하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 공공구매종합정보망(smpp.go.kr) - 나의업무 - 소액수의계약추천 - 대상제품 현황에서 확인

◉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우선구매제도 운영

- 개요 : 중소기업협동조합이 3개 이상의 소기업·소상공인과 '공동사업'을 통해 제품화한 경우, 수요기관은 조합이 추천한 업체 간 지명경쟁 또는 제한경쟁으로 구매할 수 있는 제도

공동사업이란? (「판로지원법 시행규칙」제1조의2)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른 협업지원사업의 대상 사업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이 3인 이상의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공동상표를 활용하는 사업
- 조합이 보유하거나 3인 이상의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 공동으로 보유한 특허권을 활용하는 사업
- 조합 또는 3인 이상의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사업으로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의 대상 사업
- 「산업표준화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단체표준인증을 받은 물품 또는 용역의 생산·제공 사업

- 구매기관 : 국가, 지자체 등 판로지원법 제2조 제2호에 의한 기관(법인)
- 구매대상 : ①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전체(금액제한 없음), ②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이외 물품 및 용역(기재부 고시금액 2.3억원 미만)

  * 공공구매종합정보망(smpp.go.kr) - 소개·알림 - 정보조회 - 05.소기업공동사업제품에서 확인

◉ 적격조합 확인제도 운영

- 개요 :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조합원사를 대표해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입찰 참여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
- 신청자격 :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관련 중소기업협동조합

* 공공구매종합정보망(smpp.go.kr) - 소개·알림 - 정보조회 - 06.적격조합 현황에서 확인

신청요건 (「판로지원법 시행령」제9조)

- ▸ 조합원의 1/2 이상이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를 보유한 중소기업자일 것
- ▸ 경쟁제품의 품질관리 및 사후관리 기준을 마련해 운영할 것
- ▸ 정관에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를 허용한다고 명시돼 있을 것
- ▸ 공공구매제도 관련 교육을 연간 10시간 이상 이수한 상근임직원을 2명 이상 둘 것
- ▸ 조합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시장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이 100분의 50 이하일 것 (레미콘 및 아스콘은 100분의 45 이하)

- 유효기간 : 지정일로부터 3년
  (유효기간 만료일 1개월 전 재심사 요청 가능)

문의처

◉ 중소기업중앙회 판로지원실 : (전화) 02-2124-3241~3

◉ 중소기업 공공구매종합정보망 : smpp.go.kr

Q&A

Q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은 언제 지정하나요?**

A 3년마다 업종별 전문위원회, 운영위원회 개최 등을 통해 지정합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유효기간은 2027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Q **적격조합 확인서는 어떻게 발급받나요?**

A 발급을 희망하는 조합은 중소기업중앙회 판로지원실 메일 (009mae@kbiz.or.kr)로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필요한 요건 및 신청양식 등은 공공구매종합정보망의 자료실에 있습니다.

Q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미이행 시 어떤 조치가 있나요?**

A 「판로지원법」제21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는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개선 권고 및 1개월 이내 입찰중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도 이행 점검 결과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고하고 국회에 제출합니다.

대국민 중소기업 인식개선 사업

사업개요

모범적인 경영활동을 펼치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홍보를 통해 부정적 편견을 해소하여 일자리 미스매치 완화 및 대국민 중소기업 이미지 제고

사업내용

- 중소기업 홍보 및 인식개선 콘텐츠 제작

① '행복한 중기씨' 대학생 서포터즈 통한 블로그 운영

- (서포터즈 운영) 연간 16여명의 대학생 서포터즈 통해 카드뉴스, 영상 등 콘텐츠 제작
- (블로그) 누적 방문자 770만명, 누적 콘텐츠 2,700여개에 달하는 블로그

② 중소기업 바로알리기 IDEA 공모전

- 전국민 대상 중소기업 관련 동영상, 포스터 등 부문별 콘텐츠 접수 및 수상

- 대상별 중소기업 바로알기 교육 통한 인식개선
  - (내용) 직업계고 학생·교원, 대학생, 군 장병 등을 대상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편견 해소 교육 제공 및 중소기업 취업 관련 정보 전달
- (서울경제신문 공동) 행복한 중기 일자리 대상 시상
  - (목적) 법인/개인 부문 연간 우수 중소기업 포상

- (규모) 법인 총 13점 시상
- (시상) 매년 11월 말 ~ 12월 초
- (내용) 고용안정·창출, 성장성, 복리후생, 연구개발 등 평가 통해 우수한 중소기업에 포상

신청·접수

① '행복한 중기 일자리대상' 신청·접수

- 공고(예정) 시기 : 매년 9월
- 신청방법 : 홈페이지 통한 온라인 신청 및 이메일 접수
- 제출서류 : 신청서, 공적조서, 서약서, 사업자등록증 등 기타 증빙서류
- 선정평가 : 기업경영기간, 고용안정성 등 정량 평가 및 고용안정 제도 운영 등 정성평가

심사·평가 주요내용

▸ 고용안정, 인식개선 등 중점으로 심사

- 선정규모 : 13개 社 시상
- 추진절차

사업공고 및 신청·접수 (중소기업중앙회)	→	심 사 (중소기업중앙회 및 유관기관)	→	시상식
9~10월 중순		11월 초		11월 말 ~ 12월 초

문의처

-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
  (전화) 02-2124-3273, 3275, smsfes@kbiz.or.kr

「참 괜찮은 강소기업」 플랫폼

사업개요

우수 중소기업 발굴 및 정보제공을 통해 청년 구직자의 중소기업으로의 유입 유도

사업내용

- 기업 신청 절차 없이 한국평가데이터가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 정보를 활용, 기준에 부합하는 기업을 플랫폼에 등재
  - 재무 요건(업종 평균 이상), 임금수준, 퇴직률, 종사자 수, 업력 등 기준
- 위치기반 지역별 우수 중소기업 소재와 채용현황 실시간 모니터링
  - 구직자 주변에 있는 우수기업 지도상 확인, 조건별 검색 가능
- 우수 중소기업·일자리 정보 DB 구축 및 제공
  - 임금·복지·재무·채용공고 등 기업정보 및 지역·업종·복지 등 조건별 검색 기능 제공
  - 취업포털 기업 리뷰 정보를 통해 ①워라밸, ②급여·복지, ③사내문화 분야에서 우수한 기업을 선별해 테마관 구성 및 기업 리스트 제공
  - 공공·민간 주요 취업포털과의 시스템 연계 통한 일자리 정보 상시 업데이트

지원대상

- 대상기업 : 중소기업
  (중소기업법 제2조 중소기업자의 범위에 해당하는 기업)
- 평가기준 : 한국평가데이터 보유 중소기업 200만개 사 중 재무제표 바탕의 종합경쟁력, 구직자 대상 기업매력도, 결격사유 등의 조건에 충족·유사한 기업 1.1만개 사를 플랫폼에 등재
  - (1차평가) 현재시점의 평가항목 합산 값이 60점 이상이며, 구직자에게 추천하기 위한 최소요건* 충족, 결격사유** 미해당 기업

  * (최소 요건) 연봉 3천만원 이상, 업력 5년 이상 등
  ** (결격 사유) 임금체불, 산재발생 공표기업 등

  - (2차평가) 현재 시점 우수기업 중에서 미래시점 평가항목 합산 값이 60점 이상인 기업을 최종 등재

구분	구분	선정된 재무지표	구분	구분	활용 데이터
재무	성장성	총자산증가율	비재무	구직자 대상 기업매력도	임금 수준
	수익성	영업이익률			퇴직율
	안정성	유동비율			월 종사자 수
	활동성	매출채권회전율			업력
	생산성	총자본투자효율			

* 결격사유 : 임금체불, 산재발생 공표기업

지원내용

- 우수 중소기업 소개 및 우량 채용공고 선별 통한 일자리 매칭 지원
  - 타 기관 플랫폼과의 연계 통해 “신입/정규직/연봉 3,000만원 이상”의 우수공고 전용채용관 구축하여 채용 정보 홍보, 인재 추천 등 매칭 지원
  - 플랫폼 등재 기업 대상 홍보 콘텐츠 지원, 온라인 취업설명회 개최 등을 통한 구직자-구인기업 연계 서비스 제공

신청 · 접수

- 선정 시기 : 매년 7월 당해 기업 선정
- 등재 시기 : 매년 8월 중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인력정책과
  (전화) 044-204-7797, okm1110@korea.kr
-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
  (전화) 02-2124-3273, kbiz_job@kbiz.or.kr
- 문의 이메일 : kbiz_job@kbiz.or.kr

참고사항

- 참 괜찮은 중소기업 사이트 : https://www.smes.go.kr/gsmb/
  - (홈페이지)

외국인근로자 고용지원사업

사업개요

중소기업의 인력난 완화를 위해 외국인근로자 고용에 관한 고용신청 대행, 입국 후 교육, 고충상담 및 편의제공, 제도개선 등을 지원

〈 전년대비 달라지는 내용 〉

구분	'25년	'26년
외국인력 도입규모	총 16.5만명	총 8만명

지원대상

-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서비스업, 뿌리·지방·중견기업

지원내용

- 외국인근로자 고용신청대행
  -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발급
  - 사용자와 외국인근로자 간 근로계약 체결 지원
  -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신청 등
  - 고용변동신고 및 고용허가기간 연장신청 안내
  - 업무상 재해 시 산재·사망신고 지원
  - 외국인근로자 고용에 필요한 각종 정보제공

- 외국인근로자 입국후 교육
  - 산업안전, 이탈방지, 기초기능, 한국문화 등 취업교육
  - 건강검진 및 마약검사
- 고충상담 및 편의제공
  - 통·번역 지원 (사업장 방문 및 유선 통화)
  - 외국인근로자 고용과 관련한 고충상담 등
- 외국인력 관련 제도 개선
  - 수시조사를 통한 애로사항 파악
  - 국회, 관련부처 협의를 통한 제도 개선 건의
  - 정책토론회, 제도 설명회를 통한 사업주 제도 안내 및 의견수렴

신청·접수

- 공고(예정) 시기 : ('25년도 기준) 1월, 4월, 7월, 9월, 11월 신청·접수
- 신청방법 :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fes.kbiz.or.kr)를 통해 온라인 접수(PC, 모바일 모두 가능)
  - 접속경로 :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 - [지원사업] - [외국인력 고용 지원] - [지원신청]
  - E-mail, FAX 접수 불가능

문의처

- 중소기업중앙회 외국인력지원센터 : 1666-5916
- 중소기업중앙회 외국인력지원실(본부) 및 각 지역본부(공제사업센터)

지원규모

- 2026년도 외국인력 도입 규모는 80,000명

구 분	총 계	제조업	농축산업	어업	건설업	서비스업	탄력배정
총 계	80,000	50,000	10,000	7,000	2,000	1,000	10,000
('25년 대비)	(-50,000)	(-22,000)	-	(-1,500)	-	(-2,000)	(-22,000)

- 사업장별 고용한도

내국인 피보험자수	총 고용허용인원
1명 ~ 10명	내국인 피보험자 수 + 10명
11명 ~ 50명	30명 (단, 내국인 피보험자 수의 2배를 초과하지 못함)
51명 ~ 100명	35명
101명 ~ 150명	40명
151명 ~ 200명	50명
201명 ~ 300명	60명
301명 이상	80명

※ 내국인 고용기회 보호를 위해 내국인(3개월 평균)이 1명 이상 고용 유지 필요

- 뿌리산업(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 발급하는 뿌리기업확인서 제출 시)은 총 고용허용인원의 20%까지 추가 고용 허용
- 2025 인력부족업종(7개 업종)은 고용허용인원 20% 추가 적용
  - 인력부족, 성장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한 아래 7개 업종에 해당하는 제조업

업종 코드 (한국표준산업분류 중분류 및 소분류)	제조업 세부업종명
10	식료품 제조업
13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외)
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3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311	선박 및 보트 건조업

● 2025 고용허용인원 20% 추가 적용 지역

①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를 제외한 지역

② 경기도 내 인구 20만명 미만 시·군 지역

③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내 인구 20만명 이상인 시·군 지역 중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벽지의 범위에 해당하는 지역

④ 경기도 내 인구 20만명 이상이지만 인구수 당 중소 제조업 사업체 수가 상위 10%인 시·군

비수도권 제조업('26.1월 중 별도 고시)

내국인 피보험자수	허용인원	비수도권 추가 〈기존 20%〉	비수도권 추가 〈상향 30%〉
1명 ~ 10명	내국인수 + 10명	1.2 x (내국인수 + 10명)	1.3 x (내국인수 + 10명)
11명 ~ 50명	30명 (내국인수 2배 이내)	36명 (내국인수 2배 이내)	39명 (내국인수 2배 이내)
51명 ~ 100명	35명	42명	45명
101명 ~ 150명	40명	48명	52명
151명 ~ 200명	50명	60명	65명
201명 ~ 300명	60명	72명	78명
301명 이상	80명	96명	104명

심사·평가 주요내용

- 점수제

항목	지표
가점 (60)	① 기숙사 제공(농업): 20점 ② 우수기숙사 설치·운영 사업장: 최대 2년간 10점 ③ 외국인 고용인원 대비 장기근속자 비율: 15점 ④ 인구감소지역 해당 사업장: 5점 ⑤ 사업주교육 사전 이수 사업장: 5점 ⑥ 위험성평가 인정 사업장: 5점
감점 (60)	① 안전보건상 조치 의무 위반으로 사망재해 발생 사업장: 2년간 20점 ② 노동관계법 위반(중대위반/사업장변경/지도점검): 사안별로 2년간 최대 10점 ③ 출국만기보험료 체납 사업장: 미납 횟수에 따라 최대 5점 ④ 기숙사 요건 미충족(20점) - 시설 기준을 미달한 사업장: 1년간 최대 10점 - 기숙사 정보 미제공(미제출) 및 허위정보 제공 사업장: 각5점 1년간 ⑤ 가축전염병 예방법 위반사업장: 처벌 유형별 1~5점 감점

제출서류

-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발급신청서
- 외국인근로자 고용지원 신청 등 업무대행 계약서
- 외국인 기숙사 시설표 및 건축물 대장 등 증빙서류
- 사업장 및 기숙사 내/외부 사진 총 14가지
  (전경, 냉난방시설, 잠금장치 등)
- 위임장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 신청서식 : 중소기업중앙회
  (http://fes.kbiz.or.kr/ → FAQ → '외국인근로자 활용과 관련한 서류 양식은 어디 있나요?' 클릭)

처리절차

-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신청 절차 흐름도

문의처

- 중소기업중앙회 외국인력지원센터 1666-5916
- 중소기업중앙회 외국인력정보망(http://fes.kbiz.or.kr/)
- 중소기업중앙회 외국인력지원실
  (전화) 02-2124-3282, 3285, 4390~3

참고사항

① 전년도 사업공고

- 공고명 : 2025년 5회차 신규 외국인근로자 신청·접수 안내(중소기업)
  - 접속경로 :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 - [지원사업] - [외국인력 고용 지원] - [공지사항]
  - (홈페이지)

Q&A

Q **외국인근로자 고용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A 최초 3년 동안 고용하고 추가로 1년 10개월 동안 고용할 수 있으며 재입국특례자(舊 성실근로자)도입 등으로 최장 9년 8개월 고용이 가능합니다.

Q **외국인근로자를 도입할 수 있는 국가는 몇 개국이나 되나요?**

A 아시아 17개 국가의 근로자를 도입할 수 있습니다.
네팔, 동티모르, 라오스, 몽골,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스리랑카, 우즈베키스탄, 인도네시아, 중국, 캄보디아, 키르기스스탄, 태국, 파키스탄, 필리핀, 타지키스탄입니다.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제도(노란우산)

사업개요

사업주가 매월 일정부금을 납부하여 폐업, 사망, 질병·부상으로 인한 퇴임, 노령 은퇴 시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위한 퇴직금마련 지원

〈 전년대비 달라지는 내용 〉

구분	2025년	2026년
지원 내용	ㅇ 10년 이상 장기가입자 경영악화로 공제 중도해지 시 세부담 완화 (기타소득→퇴직소득) - 경영악화 기준 : 직전 3년 대비 수입금액 50% 이상 감소	ㅇ 10년 이상 장기가입자 경영악화로 공제 중도해지 시 세부담 완화 (기타소득→퇴직소득) - 경영악화 기준 : 직전 3년 대비 수입금액 20% 이상 감소
	ㅇ 공제 납입한도 상향 - 분기 300만원	ㅇ 공제 납입한도 상향 - 연 1,800만원

지원대상

◉ 신청자격 : 가입당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 사업주

업종분류에 따른 소기업 범위 (중소기업기본법)	
• 제조업(석유정제품·1차 금속)	매출액 140억원 이하
• 제조업(의료용 물질, 의약품 등 13개) • 전기·가스·수도사업	매출액 120억원 이하
• 운수·창고업 • 금융·보험업	매출액 100억원 이하

• 제조업(펄프·종이·종이제품 등 9개), 광업, 건설업 • 농업·임업 및 어업	매출액 80억원 이하
• 도·소매업	매출액 60억원 이하
• 출판·영상·정보서비스	매출액 50억원 이하
• 하수·폐기물처리업 • 부동산업	매출액 40억원 이하
• 전문·과학·기술서비스, 사업지원 및 입대 서비스업 • 예술·스포츠·여가서비스업	매출액 30억원 이하
• 보건·사회복지서비스 • 개인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숙박·음식점업	매출액 15억원 이하

업종분류에 따른 소상공인 범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상시근로자수 10명 미만
• 도매업, 소매업, 서비스업, 기타 업종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

신청제외 대상

- 비영리법인(협동조합, 사단법인, 재단법인 등)
-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무도장 운영업, 카지노 운영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유사의료업 중 시각장애인이 운영하지 않는 안마원 및 안마시술소

지원내용

◉ 공제사유(8개) 발생 시 공제금 지급(연복리 이자율 적용)

- (공제사유) 폐업, 사망, 퇴임, 노령, 자연재난, 사회재난, 질병부상, 회생파산
- (가입기간) 가입 시부터 공제사유 발생 시까지

  * 노령의 경우 60세 이상 10년 이상 납부시 지급

◉ 소득금액에 따라 최대 연 6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

- 가입자의 소득금액 구간별 소득공제 한도 차등 적용
- 공제금 수령 시 퇴직소득세(실효세율 약 3%내외)로 저율과세

〈 소득금액별 소득공제 한도액 〉

개인사업자		법인대표자(총급여 8천만원 이하)	
사업소득금액	소득공제 한도	근로소득금액	소득공제 한도
4천만원 이하	600만원	4천만원 이하	600만원
4천만원~6천만원 이하	500만원	4천만원~6천만원 이하	500만원
6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	400만원	6,625*만원이하 * 총급여 8천만원의 근로소득금액 = 8천만원(총급여)-1,375만원(근로소득공제) =6,625만원	400만원
1억원 초과	200만원	-	

* 2019년 1월 1일 이후 가입자의 경우 공제대상인 사업소득금액에서 부동산임대업소득은 제외되며, 소득공제 한도 산정 시 사업소득 중 부동산임대업 소득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차감

〈 노란우산 가입에 따른 절세효과 예시 〉

대상	사업(근로)소득	소득 공제한도	예상세율(%)	노란우산 절세가능액
개인, 법인 대표	4천만원 이하	600만원	6.6~16.5%	39.6~99만원
	4천만원 초과~6천만원 이하	500만원	16.5%~26.4%	82.5~132만원
	6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 (법인대표는 6,625만원 이하)	400만원	26.4~38.5%	105.6~154만원
개인	1억원 초과	200만원	38.5~49.5%	77~99만원

* 과표구간별 최대 소득공제 한도 적용 가정, 세율은 지방소득세 포함, 관련 세법 개정 시 변경 가능

- 수급권의 보호
  - 공제금은 압류가 금지되어 부도 등 사업 실패 시에도 공제계약자에게 공제금 지급
- 납부 부금 내 대출 가능
  - 일반대출 / 의료, 재해, 회생, 파산, 출산 대출(무이자)
- 상해보험 가입 지원
  - 공제 가입 후 2년 내 상해사망 또는 상해후유장애 발생시 월 부금액의 최고 150배 이내 보험금 지급

- 희망(가입)장려금 지원
  - 지자체별 월 1~3만원 적립 지원(1년간)
- 교육 및 판로지원
  - 역량강화 · 힐링캠프 · 현장강의 · 재기도전 등 교육지원, 국내외 판로지원
- 경영지원단 운영
  - 법률·노무·회계 등 8개 분야 전문가 상담을 통한 경영지원
- 각종 복지서비스 제공
  - 휴양시설, 복지몰, 건강검진, 장례식장 및 웨딩홀 등 전문업체 제휴할인 서비스
- 중간정산 가능
  - 자연재난, 사회재난, 질병부상, 회생파산 4개 공제사유에 한해 중간정산 가능
- 장기가입 혜택
  - 10년 이상 가입자 대상 신청 및 추첨 절차 후 혜택 제공
- 정책보험 바우처 지원
  - 3대 정책보험(풍수해보험·자영업자 고용보험·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가입 시 바우처 지원

가입신청

- 가입기간 : 가입시부터 공제사유 발생시까지
- 월 부금 : 월 5만원 ~ 100만원(분기납 300만원까지 가능)
- 가입방법 : 청약서를 제출하여 청약금(1회차 부금)을 납입
  * 자동이체 지정예금계좌는 청약자 본인 개인명의에 한함
- 서류제출 : 노란우산 가입청약서(소정양식), 사업자등록증 사본, 직전 3년간 매출액 확인 서류,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 가입절차

가입신청	→	청약서 접수	→	자격 심사	→	승낙 여부 통지	→	공제계약 유지
(소기업 및 소상공인)		(중소기업중앙회는 30일 이내 승낙 여부 결정통지)						(소기업 및 소상공인)

* 계약의 승낙 : 중앙회는 공제계약자로부터 청약서 접수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승낙여부 결정
* 청약의 철회 : 공제계약자는 청약일로부터 30일이내에 단순한 변심 등으로 인해 청약철회 가능
* 계약의 취소 : 공제계약자는 청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약관의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을 듣지 못하였을 경우 등으로 인해 계약취소가 가능

문의처

◉ 노란우산 콜센터 : 1666-9988

◉ 노란우산 홈페이지(www.8899.or.kr)

◉ 노란우산 스마트앱(구글 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 “노란우산”)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중소기업 공제사업 기금제도

사업개요

중소기업의 도산방지와 경영안정을 위하여 공제사업기금에 가입한 업체를 대상으로 매출채권의 회수불능에 대한 지원, 상거래 어음·수표의 조기 현금화 지원 및 단기운영 자금을 지원

〈 전년대비 달라지는 내용 〉

구분	2025년	2026년
지원내용	▸ 연간 대출지원 규모 확대 : 총 7,100억원	▸ 연간 대출지원 규모 확대 : 총 7,300억원 ▸ 대출금리 변동사항 반영 * 변동금리

지원대상

-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신청제외 대상

▸ 주점업, 무도장 운영업,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마사지업 등 일부 업종 제외

지원내용

◉ 대출종류 및 지원규모

대출 종류	대출 사유	지원 규모 (연간)
부도매출채권대출	• 상거래로 받은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처리 되거나 외상매출채권이 회수불능상태가 되었을 때	10억원
어음·수표대출	• 상거래로 받은 어음 또는 수표를 현금화하고자 할 때	150억원
단기운영자금대출	• 단기 및 긴급한 운영자금이 필요할 때	7,140억원

◉ 대출조건 및 지원 한도(신용도에 따라 지원 한도 차등 적용)

구분	부도매출채권대출	어음·수표대출	단기운영자금대출
대출 이율	대출금의 1/10을 대손보전준비금으로 공제	신용등급별로 연 4.00~7.42%	신용등급별로 연 4.00%~8.69%
대출 기간	3년(6개월거치)	180일 이내	1~3년
지원 한도	부금잔액의 최고 10배 이내 - 무보증 : 1~7배 이내 - 담 보 : 10배 이내	부금잔액의 최고 10배 이내 - 무보증 : 1~7배 이내 - 담 보 : 10배 이내	부금잔액의 최고 10배 이내 - 무보증 : 1~3배 이내 - 담 보 : 10배 이내
담보 등	• 법인의 대표자 또는 실질적 지배주주 연대 입보 • 부동산담보 및 지역신보보증서 제공시 : 대출한도상향 및 이자율 인하		

◉ 이차보전사업대상의 대출이율 연 1.0~3.0%p 감면

- 중소기업중앙회와 지방자치단체 협약에 의거
- 지자체별 지원금리 및 지원기간이 다르므로 대출 시 확인 요망

부금납부

◉ 부금종류 (총 납부액 1.8억원 한도)

- 10만원~300만원 (10만원 단위)

◉ 부금납부기간

- 3년, 4년, 5년 中 택1

- 지급이자 등
  - 장려금 : 부금납부종료일 후 미해지 시 분기별 지급
  - 만기이자 : 만기 이후 해지시 지급('25.12월 기준 연 3.0%)
  - 중도 해지시 부금납입 회차가 12회 미만인 경우 원금만 지급

가입신청

- 가입 : 인터넷(https://fund.kbiz.or.kr), 방문, 팩스, 공제상담사
- 제출서류 : 가입청약서, 사업자등록증사본, 대표자신분증 사본

대출신청

- 대출 :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운영실 및 각 지역본부·공제사업센터 (부금잔액의 1.5배 이내인 경우 인터넷 원클릭 대출 가능. 단, 법인사업자인 경우 부금잔액내 대출만 가능)
- 제출 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최근 2년간 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담당세무사 확인필), 대표자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부동산등기부등본 등

처리절차

① 공제기금 가입청약	② 공제부금 납부	③ 대출사유 발생	④ 대출신청
중소기업 → 중앙회	중소기업 → 중앙회	중소기업	중소기업 → 중앙회
⑤ 대출심사	⑥ 대출금 결정 및 약정 체결	⑦ 대출금 지급	⑧ 대출금 상환
중앙회	중소기업 → 중앙회	중앙회 → 중소기업	중소기업 → 중앙회

문의처

- 가입 및 대출 상담 :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사업기금 고객센터 (1668-3984)
-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홈페이지 (https://fund.kbiz.or.kr)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 (www.bizinfo.go.kr)

Q&A

Q **대출은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A 공제기금 가입 후 1개월(부금 납부 2회 이상)이 경과되는 날부터 대출 가능합니다.

Q **공제기금대출을 받은 후에도 부금납부를 계속해야 하나요?**

A 부금은 대출유무에 상관없이 공제가입(계약) 당시 정한 부금납부 기간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대출 후 연속해서 3회 이상 부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공제기금 제규정」에 의거 대출금 전액을 상환해야 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부도매출채권 대출업체가 다른 공제기금 대출을 이용할 수 있나요?**

A 부도매출채권대출(1호), 어음·수표대출(2호), 단기운영자금대출(3호)을 총 대출한도액(기업의 신용도에 따라 부금잔액 10배 이내에서 차등 적용)내에서 동시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Q **개인발행 약속어음 및 가계수표도 대출이 가능한가요?**

A 정상적인 상거래로 받은 가계수표 및 약속어음(지급장소가 은행인 경우)은 대출대상이 되며 대출실행일 현재 지급기일이 180일 이내인 경우에 가능합니다.

Q **단기운영자금 대출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A 단기운영자금의 대출기간은 3년 이내입니다.

Q **지방자치단체의 이차보전지원은 항상 받을 수 있나요?**

A 지자체 예산 지원 여부에 따라 어음수표대출 및 단기운영자금 대출의 경우 이자 일부(연1~3%p이내)가 지원될 수 있으며, 지원예산 규모에 따라 조기에 소진될 수 있습니다.

용어 설명

이차보전 : 특정부문에 저금리 자금지원이 필요할 때, 국가가 지원자금의 조달금리와 대출금리의 차액에 대해 보상해주는 것

중소기업 손해공제 지원제도

사업개요

중소기업 경영과정에서 노출되는 화재, 배상책임 등 각종 위험에 대비하도록 공제(共濟) 서비스를 일반보험사보다 저렴하게 공급하여 경영부담 완화를 지원

지원대상

- 신청자격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지원조건 : 공장, 판매장, 사무실, 창고, 시설장치 등 시설소유자 및 임차자 등의 배상책임 지원

신청제외 대상

▸ 개인주택, 아파트 등 주거용 부동산

지원내용

구 분	보장내용
화재공제	공장 및 일반물건 등에 대한 화재위험 보장
기업종합공제	하나의 공제증권으로 화재손해를 포함, 기계, 기업휴지 및 배상책임손해 등을 담보함으로써 기업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리스크를 통합 보장
재산종합공제	화재와 같은 개별 위험뿐만 아니라 다양한 원인으로 인한 재물 손해, 기계적 손해 및 조업중단 등 사업장내 모든 위험 보장

구 분	보장내용
영업배상책임공제	영업상 발생한 제3자의 신체 및 재물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보상 (대상 : 시설소유(관리)자, 도급업자, 주차장, 임차자 등)
근로자재해공제	산재보험에 가입한 업체를 대상으로 산재보상금이나 선원법상의 보상이 지급된 경우에 한하여, 그 금액을 초과한 손해를 보상
소상공인간편실손화재공제	사업장 내 화재사고 뿐만 아니라 시설 및 음식물 배상책임으로 인한 실제 손해를 가입한도 내에서 비례보상이 아닌 실손 보상
소상공인풍수해지진재해공제	지진·태풍·홍수·호우·강풍·폭설 등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실손비용을 보장
규제샌드박스배상책임공제	피공제자가 제공하는 생산물·서비스·인터넷 거래 등으로 인하여 제3자의 신체 또는 재물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보상 (규제샌드박스 사업 참여자 의무 가입)

- 일반보험사 대비 20% 이상 저렴한 보험료로 동일한 보상서비스 제공
  - 공동구매 방식으로 중소기업 일괄 단체가입
    * 참여보험사(6개사) : 삼성화재(주간사), 한화손보, 롯데손보, DB손보, 메리츠화재, KB손보
- 사고다발 위험업종의 보험 인수 확대
  - 도금, 비발포 플라스틱, 창고, 목재가공 등

신청·접수

- 사업시기 : 연중
- 신청방법 : 중소기업중앙회 파란우산 손해공제 홈페이지 (www.insbiz.or.kr)를 통해 설문서 받아 작성 후 팩스 또는 이메일 제출
- 제출서류 : 공제상품별 설문서, 건축물 대장 등

심사·평가 주요내용

▸ 일반적인 업종별 보험료 산정기준에 의한 보험요율 및 협정요율 등 적용

● 추진절차

중소기업	→	중소기업	→	중앙회
전화 상담 (가입서류 안내)		보험료 산출질문서 제출 (팩스/메일)		보험료 산출, 안내 (1~2일 소요, 팩스/메일)

→	중소기업	→	중앙회
	청약서 제출 및 보험료 납입 (팩스, 메일)		보험 증권 및 약관 발급 (우편, 7일 이내 소요)

문의처

● 중소기업중앙회 PL손해공제실 : (전화) 02-2124-4357~8
(팩스) 0502-397-0050
(이메일) : insbiz@kbiz.or.kr

● 홈페이지 : 중소기업 파란우산 손해공제(www.insbiz.or.kr)

중소기업 보증공제 지원제도

사업개요

중소기업이 공공조달 납품시 필요한 보증보험을 민영보증보험사 대비 상대적으로 저렴한 보증료로 제공함으로써 경영부담 완화를 지원

지원대상

- 신청자격 : 공공기관과의 조달계약에 참여하는 중소기업, 협동조합 등
- 지원조건 : 공공기관과의 조달계약 보증에 한함
- 우대사항 : 중소기업이 공공기관과의 조달계약시 제출하는 '보증서'를 담보 없이 저렴한 비용으로 발급

신청제외 대상

▸ 민간계약은 보증공제 대상에서 제외

* 공공기관 : 국가기관, 지자체, 공기업, 준정부기관, 교육청 학교 등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요기관 일체

지원내용

보증 종류	보증 내용
입찰보증	입찰참여자가 낙찰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입찰보증금 납부에 관한 의무이행을 보증
계약보증	계약을 체결한 업체가 계약을 완료하지 않을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계약보증금 납부에 관한 의무이행을 보증
선급금보증	계약과 관련하여 수령한 선금(선급금, 중도금, 착수금)의 반환의무를 보증
하자보증	계약완료 후 하자보수 의무기간 중에 발생한 하자보수에 관한 의무이행을 보증
이행지급보증	기타 공공조달계약 관련한 제반 의무이행과 관련된 보증

- 지원규모 : 동일기업 보증한도 없음
- 지원금액 : 보증한도범위 내 보증

  * 보증한도범위 산출은 Q&A 참고

신청·접수

- 사업시기 : 연중
- 신청방법 : 기업보증공제 홈페이지(www.gbiz.or.kr)에서 상담 및 신청
- 제출서류 : 한도거래보증약정서(본회서식),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심사·평가 주요내용

▸ 기업규모, 영업 활동성 및 신용등급, 한도약정 부금액

- 추진절차

  - 약정 신청

상담 신청 및 보증한도 안내 (1899-0098) → 보증약정서 및 구비 서류 제출 → 보증약정 심사 → 보증약정 체결

  - 보증서 발급(청약) 신청

청약 신청 (온·오프라인) → 청약 심사 → 보증료 납부 → 보증서 발급 (전자보증)

문의처

- 중소기업중앙회 PL손해공제실
  (전화) 02-2124-4341~2 (팩스) 0502-397-0000
- 홈페이지 : 중소기업보증공제(www.gbiz.or.kr)

Q&A

Q **업체별 보증한도(보증가능금액) 산정 방법**

A 업체의 보증한도는 계약자의 기업규모, 영업 활동성 및 신용등급에 의하여 산출하는 기본보증한도와 부금 납부액에 의한 부금보증한도로 구성됩니다.

- 기본보증한도 : 보증계약자인 기업의 매출액 및 자기자본 규모액과 신용등급을 감안하여 산정
- 부금보증한도 : 기업이 보증부금을 납입한 경우 부금잔액의 일정 배수를 추가로 한도 인정

→ 보증한도 및 보증료는 중앙회 담당자와의 통화를 통해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제조물책임(PL)보험 지원제도

사업개요

기업이 제조, 판매, 공급 또는 시공한 제품의 결함으로 발생한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는 PL보험을 일반보험사 대비 20~30% 저렴한 보험료로 제공함으로써 경영부담 완화 지원

지원대상

- 신청자격 : 사업상 필요, 거래처 요구 등 PL보험을 가입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 지원조건 : 완성품 제조업체, 원재료·부품 제조업체, OEM업체, 수출입업체, 유통판매업체, 제품이나 시설물의 설치 및 유지보수업체 등
- 우대사항 : 중소기업의 경우 지자체 PL보험료 지원사업의 대상

지원내용

- 지원 세부내용
  - 일반보험사 대비 20%이상 저렴한 보험료로 동일한 보상서비스 제공

    * 공동구매 방식으로 중소기업 일괄 단체가입

    * 참여보험사(6개사) : 삼성화재(주간사), 한화손보, 롯데손보, DB손보, 흥국화재, 메리츠화재

- 지자체 PL보험료 지원

* 지원규모 : 보험료의 최대 20~30% 이내 환급
(업체당 최대 100~200만원, 예산 소진시까지)

* '25년 지원 지자체 :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강원,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충북, 파주 ('26년 지원 지자체 미정)

신청·접수

- 사업시기 : 연중 (지자체 PL보험료 지원사업은 지자체별 상이)
- 신청방법 : 중소기업 PL단체보험 홈페이지(www.plkorea.com)에서 산출질문서 작성 후 팩스 또는 이메일 제출
- 제출서류 : PL단체보험 산출질문서, 매출액증빙자료,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심사·평가 주요내용

▸ 일반적인 업종별 보험료 산정기준에 의한 보험요율 적용

- 추진절차

- PL보험 가입

중소기업	중소기업	중앙회
전화 상담 (가입서류 안내)	보험료 산출질문서 제출 (팩스/메일)	보험료 산출, 안내 (1~7일 소요, 팩스/메일)

중소기업	중앙회
청약서 제출 및 보험료 납입 (팩스, 메일)	보험 증권 및 약관 발급 (우편, 7일 이내 소요)

- 지자체 지원

중앙회	중소기업	중앙회
매월 PL보험 가입자에 지자체별 지원사업 안내 (신청서류 안내)	지원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사본 등 제출 (팩스/메일)	신청서 접수 및 지역본부별 지자체 보험료 환급 (전월가입자 대상, 익월 지급)

문의처

- 중소기업중앙회 PL손해공제실 : (전화) 02-2124-4351~4
  (팩스) 0502-397-0200
- 홈페이지 : 중소기업PL단체보험(www.plkorea.com)

참고사항

① 지자체 PL보험료 지원사업은 지자체마다 집행시기 및 예산이 상이

② 당월 중소기업 PL보험 가입자 대상으로 익월 문자, 팩스, 이메일 신청 안내

Q&A

Q **PL보험료는 어떻게 산출되나요?**

A 가입대상 품목, 매출액, 보상한도, 공제금액(자기부담금), 담보지역, 사고경력, 인증마크 여부 등을 고려하여 보험료를 산출합니다.

- 가입품목 : 여러 가지 생산품목 중 선택적(전체품목/일부품목)으로 가입
- 보상한도 : 예상 사고피해의 크기, 발생빈도, 수출국가 등을 고려
- 인증마크 할인 : 싱글PPM, Q마크, K마크, S마크, 조달청 우수제품 등

→ 산출질문서 작성 시 어렵거나 궁금한 사항은 중앙회 담당자와의 통화를 통해 친절하게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용어 설명

PL대상 제조물 : 모든 형태의 공업생산물, 농수축산 가공식품
(부동산은 제외, 단 부동산을 구성하는 부속품은 가입대상임)

제 7 부

대 · 중소기업 · 농어업협력재단

지원사업(전년대비) 달라지는 내용

◉ 기관명 : 대 · 중소기업 · 농어업협력재단

구분	'25년도	'26년도
주요 원가 확인 등 연동 약정 체결지원 사업	지원내용 : 물품등의 제조등에 사용되는 원재료 확인	지원내용 : 물품등의 제조등에 사용되는 재료비 및 에너지 경비 확인
성과공유제	적용범위 : 수 · 위탁 기업간 거래	적용범위 : 유통, 플랫폼, 대리점 등 모든 기업간 거래로 확대 (상생협력법 개정, '26)
대·중소기업 동반진출 지원사업	[신규]	업종별(유통·플랫폼·방송) 전문성 결합 과제 도입 * 참여기업당 최대 1억원 한도
	프로젝트형 중장기 과제 도입·운영 * 최대 3년, 최대 10억원 한도	프로젝트형 중장기 과제 지원 확대 * 최대 3년, 최대 20억원 한도
중소기업 기술보호 법무지원단	지원기간 및 시간 : 최대 3개월, 60시간 이내	지원기간 및 시간 : 최대 6개월, 80시간 이내 * 사후대응에 한함
기술보호 선도기업 육성·확산	신청접수 : 연 1회 바우처 연계 지원사업 : 8개	신청접수 : 수시 바우처 연계 지원사업 : 10개
기술자료 임치제도	이용기업이 직접 기술임치 서비스 이용	[신규 도입] 기술임치 대행 서비스 * 기술임치에 대한 접근성·편의성 제고 등을 위하여 '기술임치 대행' 서비스 도입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 지원사업	[지원유형] ①일반형 ②상생형 ③바우처연계 [과제속성] ①일반과제 ②해외연계과제 ③고도화과제 ④S/W 라이선스 등 지원과제 [공급기업 관리] 등록 희망하는 공급기업이 기술보호 울타리에 등록 요청	[지원유형] ①상생형 ②바우처형 [과제속성] ①자체관리형(온프레미스형) ②위탁관리형(SECaaS형/클라우드형) [공급기업 관리] 공급기업의 별도 선정 · 등록 절차를 마련, 기술보호 울타리에 공개하여 공급기업 POOL 관리
민관 공동 전략형 상생 협력사업(창의트랙)	출연 대기업이 신청	주관기업(대기업 또는 중소기업) 신청
민관 공동 전략형 상생 협력사업(공급망 ESG)	전담기관명 : 동반성장위원회	전담기관명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신설]	지원내용 : ESG 우수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

기업간 거래공정화

사업개요

기업 간 수·위탁 거래에서 발생한 불공정거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법률상담, 분쟁조정을 통한 피해 해결을 지원

지원대상

- 수·위탁거래 분쟁조정, 법률상담 : 수탁·위탁거래, 하도급거래 등에서 불공정행위로 인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 공정거래교육 : 불공정거래 피해방지 및 준법의식 함양을 위해 수·위탁 공정거래 교육을 받고자 하는 대기업 및 중소기업 임직원

지원내용

- 불공정거래 신고센터 : 불공정거래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게 수·위탁거래 관련 상담을 통한 법률적 피해구제 및 애로해소 지원
  - 불공정거래행위 전반에 대한 상생협력법, 하도급법 등 관련 법률 위반여부 및 대상여부 검토하여 합리적인 해결방안 제시
    * 협력재단 내 상주하고 있는 전문변호사를 통해 서면·방문·온라인 상담 지원
- 수·위탁분쟁조정 :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해 기업간 수·위탁 거래에서 발생한 분쟁이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해결되도록 분쟁의 자율적 조정* 지원
    * 분쟁당사자 간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조정서의 정본은 민사상 집행력을 가지고, 분쟁조정 신청은 민사상 시효중단 효력이 있음

- 소송비용 지원 : 수·위탁 분쟁조정 신청사건 중 민사소송으로 연계된 경우 중소기업의 피해구제를 위해 소송비용 지원
  (소송비용의 50%, 최대 8백만원)
- 공정거래교육 : 공정거래 준수, 불공정 피해의 사전방지를 위해 대기업 및 중소기업 임직원을 대상으로 공정거래교육 지원

신청 · 접수

- 불공정거래 신고센터 : 전국 불공정거래신고센터 70개소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1357+내선9) 또는 전국 신고센터*
    * 불공정거래신고센터 주요연락처 참조
- 수·위탁분쟁조정 :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 사무국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 유 선 : 대표번호 135+내선9
  - 온라인 : 중소기업 수·위탁거래 종합포털(smes.go.kr/poll)
- 공정거래교육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 이메일 : med@win-win.or.kr
  - 온라인 : 중소기업 수·위탁거래 종합포털(smes.go.kr/poll)

문의처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상생거래지원부 :
  (전화) 대표번호 135+내선9, (이메일) med@win-win.or.kr

참고사항

Q&A

Q **수·위탁거래에 해당하는 위탁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A 제조, 공사, 가공, 수리, 용역 또는 기술개발 위탁이 있습니다. 단순히 사무용품을 구매하거나 가공과정을 거치지 않은 순수 원재료의 구입은 수·위탁 거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 **위탁기업이 수탁기업보다 매출액이 적을 경우에도 수·위탁거래에 해당하나요?**

A 수·위탁거래는 하도급거래와 달리 위탁기업의 매출액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위탁기업의 매출액이 수탁기업보다 적더라도 수·위탁거래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Q **중견기업은 수탁기업이 될 수 없나요?**

A 매출액 3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이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으로부터 위탁을 받는 경우에 수탁기업으로 인정됩니다.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Q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물품의 판매를 위탁하는 경우에도 수·위탁거래에 해당하나요?**

A 수·위탁거래에는 판매위탁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제조나 가공행위 없이 단순판매를 위탁한 경우에는 수·위탁거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불공정신고센터 주요연락처

기관명	연락처	기관명	연락처
중소벤처기업부 불공정거래개선과	044-204-7918	기계산업동반성장 진흥재단	032-680-3903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대표번호 1357+내선9	한국소프트웨어 산업협회	02-2188-6957
서울지방 중소벤처기업청	02-2110-6348	한국정보산업 연합회	02-2046-1421
경기지방 중소벤처기업청	031-201-6978	한국IT서비스산업 협회	02-761-2054
인천지방 중소벤처기업청	032-450-1145	대한전문건설 협회	02-3284-1087
부산지방 중소벤처기업청	051-601-5188	한국전기공사 협회	1566-1177
울산지방 중소벤처기업청	052-210-0050	한국의류산업 협회	02-865-9213
경남지방 중소벤처기업청	055-268-2563	대한건설기계 협회	02-2055-3606
대구·경북지방 중소벤처기업청	053-659-2284	한국플라스틱공업 협동조합연합회	02-2280-8220
광주·전남지방 중소벤처기업청	062-360-9158	한국의료기기산업 협회	02-596-6381
전북지방중소 벤처기업청	063-210-6434	한국전기공업 협동조합	031-724-6142
대전·세종지방 중소벤처기업청	042-865-6131	한국조선해양기자재 공업협동조합	02-783-6952
충북지방 중소벤처기업청	043-230-5331	한국금형공업 협동조합	02-783-1711
강원지방 중소벤처기업청	033-260-1621	한국철근가공업 협동조합	02-813-1735
충남지방 중소벤처기업청	041-415-0635	한국기계공업 협동조합연합회	02-3481-9900
중소기업 중앙회	02-2124-3132	한국금속열처리공업 협동조합	02-712-1072
벤처기업 협회	02-6331-7002	한국골판지산업 협동조합	02-3474-7124

기관명	연락처	기관명	연락처
이노비즈협회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031-628-9625	한국보일러공업 협동조합	02-3432-5302
한국정보통신공사 협회	02-3488-6184	한국피복공업 협동조합	02-710-0832
한국공간정보산업 협동조합	02-830-0233	한국농기계공업 협동조합	041-411-2122
한국주물공업 협동조합	02-780-2611	대한영상콘텐츠제작 협동조합	02-556-0301
한국단조공업 협동조합	02-536-2141	한국펌프공업 협동조합	031-957-5850
한국박스산업 협동조합	02-786-8291	(사)한국제화산업 협회	02-2234-9131
한국공구공업 협동조합	02-711-0989	한국여성경제인 협회	02-369-0926
한국다이캐스트공업 협동조합	02-716-1611	한국감시기기공업 협동조합	02-454-5114
대한기계설비건설 협회	02-6240-1152	(사)서울의류 협회	02-865-9213
한국밸브공업 협동조합	02-782-5611	한국주택가구 협동조합	02-855-5871
한국선박수리공업 협동조합	051-264-0197	한국PCB&반도체 패키징협회	032-831-7629
한국승강기공업 협동조합	02-2025-3125	(사)한국여성벤처 협회	02-3440-7463
한국신발산업 협회	051-317-5202	한국소프트웨어개발 협동조합	053-791-6645
한국자동차산업 협동조합	02-587-0018	(사)IT여성기업인 협회	070-7549-1859
한국스마트조명 협동조합	032-675-9742	르노코리아자동차전국 정비 사업자연합회	02-3431-3001
한국전자산업 협동조합	02-597-9411	㈜전국기아오토큐 연합회협동조합	02-6953-0735
(사)한국포장기계 협회	02-6123-3051	현대정비가맹점 협동조합연합회	02-2038-2558
한국표면처리공업 협동조합	032-423-9305	한국베어링산업 협회	02-784-1705

주요 원가 확인 등 연동약정 체결지원 사업

사업개요

납품대금 연동약정 체결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공신력 있는 전문기관을 통해 주요 원가 확인부터 연동약정 교육·컨설팅까지 전 과정을 지원

지원대상

-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에서 정한 중소기업
  -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위탁·수탁기업 또는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원·수급사업자

신청제외 대상

- ▸ 국세 및 지방세 체납사실이 있는 경우
- ▸ 휴 · 폐업중인 경우
- ▸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인 경우
- ▸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자, 부정수급 등으로 정부사업에 참여 제한중인 경우

지원내용

- 세부내용 : 주요 원가 확인서 발급, 연동약정 컨설팅

구분	지원내용
주요 원가 확인서 발급	· 제조·용역 등 수행에 소요되는 재료비 및 에너지 비용을 원가 분석하여, 주요 원재료 확인서 발급
연동약정 컨설팅	· 연동제 교육, 연동 대상 요건 검토 및 적합한 기준지표 제안 등 연동 약정체결을 위한 컨설팅 지원

- 지원규모 : 1,000건

신청·접수

- 공고(예정) 시기 : '26.3월 ~ 예산 소진 시 까지
- 신청방법 : 접수처 이메일(pis@win-win.or.kr) 로 신청서류 제출
- 제출서류 : 사업참여 신청서,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등
- 요건검토 : 수위탁거래 혹은 하도급거래 여부
- 추진절차

① 사업공고 → ② 신청·접수(상시) → ③ 전문기관 매칭 → ④ 확인서 및 컨설팅 지원 → ⑤ 결과보고서 확인 → ⑥ 만족도 조사

문의처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연동확산지원본부 :
  (전화) 02-368-8962, (이메일) pis@win-win.or.kr

참고사항

① 전년도 사업공고

- 공고명 : 주요 원재료 확인 등 연동약정 체결지원 사업 2025년 참여기업 모집 공고
  - (경로) 납품대금연동제.kr 〉 소통·상담 〉 공지사항
  - (홈페이지)

용어 설명

▸ **납품대금 연동제** :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에 납품하는 물품 등의 주요 원재료의 가격 또는 주요 에너지 경비가 일정 수준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서면 약정을 체결하는 제도

성과공유제

사업개요

- 위·수탁기업 간 사전 약속된 공동혁신활동을 통해 성과를 도출하고, 이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공유

추진근거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상생협력 성과의 공평한 배분)

사업내용

- 성과공유제 계약을 통해 수·위탁기업간 공동 혁신활동을 추진하고 과제수행으로 발생한 성과를 공평하게 배분

  - 성과공유제 핵심 요건

  ① 협력활동 목표 합의

  * (제안방식) 위탁기업 제안모집형(공모). 수탁기업 제안형
  * (협력유형 협의 및 합의) 국산화개발, 신기술개발, 판로공동개척, 기술이전 등

  ② 사전 계약체결

  * (계약체결 시기) 위·수탁기업이 과제 수행 전 계약내용에 대해 합의하고 성과공유계약 체결
  * (계약서 작성 시 필수사항) 1) 성과공유과제의 목표, 2) 위·수탁기업의 공동노력 사항, 3) 성과의 공유방법 명시

③ 성과공유

* (성과공유 방법) 성과공유제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성과를 공유
* (성과공유 방식) 현금배분, 물량 및 매출 확대, 객관적인 경제적 가치로 환산·평가가 가능한 성과물

◉ 참여절차 : "등록 → 확인" 2단계 절차

① 성과공유과제 등록 : 성과공유제 계약서, 사업계획서 등 신청서류 제출

② 성과공유과제 확인 : 과제계약서, 사업계획서, 공동노력 및 성과공유 실적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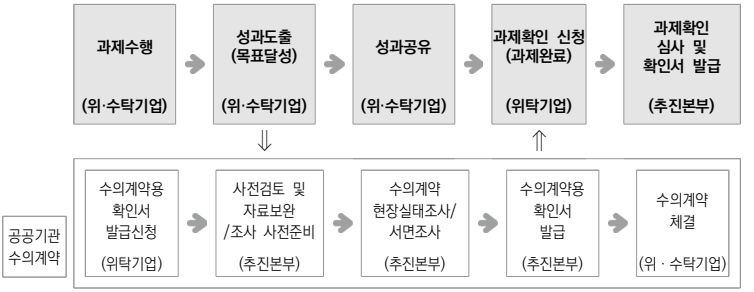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상생협력정책과 : 044-204-7903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상생협력지원부 :
(전화) 02-368-8943, (이메일) benis@win-win.or.kr

◉ 성과공유제 종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 : www.benis.or.kr

상생누리 플랫폼 운영

사업개요

- 대기업 및 공공기관의 상생협력 프로그램 정보를 상생누리 플랫폼 한 곳에 모아 중소기업(협력사·미거래사)이 빠르게 검색,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 제공

지원대상

- 전국 모든 중소기업, 소상공인, 개인사업자 등

구분	지원내용
협력사 오픈	운영기업이 시스템 상 협력사로 승인한 중소기업만 프로그램 조회·참여 가능
계열사 오픈	기존 협력사와 계열사 협력사까지 포함하여 프로그램 조회·참여 가능
부분 오픈	기존 협력사, 계열사 협력사 및 미거래 중소기업까지 프로그램 조회·참여 가능
전체 오픈	모든 중소기업이 해당 프로그램 조회·참여 가능

* 운영기업(대기업 및 공공기관)의 프로그램 운영 정책에 따라 지원 가능한 중소기업의 범위가 상이할 수 있음

지원내용

- 대기업 및 공공기관의 노하우가 담긴 10가지 분야의 상생협력 프로그램 참여기회 제공
  - 각종 프로그램을 상생누리 플랫폼에서 확인 및 신청 가능

* 대기업·공공기관 328개사가 29,176개의 프로그램 등록 및 지원 ('25.11월말 기준, 누적)

〈 상생누리 플랫폼 지원 분야 〉

신청·접수

- 상생누리 사이트(https://www.winwinnuri.or.kr)를 통해 상생협력 프로그램 상시 참여 가능
  - (경로) 상생누리 홈페이지 〉 동반성장 프로그램 〉 모집공고
  - (홈페이지)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상생협력정책과 : 044-204-7903, 7927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홍보부 : 02-368-8757, 8722

Q&A

Q **상생협력 프로그램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기업 회원가입 후 동반성장 프로그램 탭에서 원하는 프로그램의 기업명 혹은 프로그램명으로 검색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Q **기업 당 한 사람만 가입이 가능한가요?**

A 아닙니다. 상생누리를 사용하고자 하시는 분들이라면 제한 없이 모두 가입 가능합니다.

용어 설명

상생협력 프로그램 :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영리성을 띠지 않는 상생협력 지원 목적의 모든 사업, 프로그램, 혜택, 행사 등을 총칭

운영기업 : 대기업, 중견기업, 공공기관 등 상생협력 프로그램을 등록하고 관리하는 주체

참여기업 : 중소기업, 소상공인, 개인사업자, 예비창업자 등 개방되어 있는 상생협력 프로그램을 신청하고 지원하는 주체

상생결제제도

사업개요

거래기업이 결제일에 현금을 받고, 원청 신용도 수준의 낮은 금융비용으로 대금을 조기에 현금화할 수 있는 대금결제

제도내용

- 원청이 상생결제 시 ①대금을 결제일 이전에 약정계좌에 이체하면 ②결제일에 1차 협력사 및 예치계좌(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명의)로 대금이 자동 입금되고, ③2차 이하 기업은 각각의 결제일에 예치계좌에서 대금 지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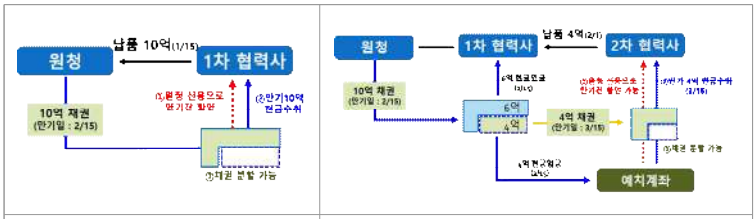

원청 → 1차 협력사	1차 협력사 → 2차 협력사 → 2차 이하 협력사

* 원청이 정부·지자체(교육청 포함)·공공기관인 경우, 5일 이내 대금지급 받는 1차 협력사는 할인(조기현금화) 금지

- 안전한 대금회수 보장
  - 원청의 부도 등 경영환경 악화에 상관없이 결제일에 납품대금을 현금으로 안전하게 회수

- 자금 유동성 개선
  - 결제일 이전에 납품대금을 조기 현금화할 수 있고, 거래처에 미리 지급 가능
- 세액공제 혜택 및 금융수익 발생
  - 상생결제 이용기업은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해 소득세·법인세 감면 및 장려금·환출이자 수익 발생

이용절차

- 상생결제제도 약정체결
  - 원청이 약정한 금융기관과 약정체결
    * 원청의 상생결제 도입여부와 약정 금융기관 사전에 확인 필요
    * (도입 금융기관) 우리, 국민, 신한, 농협, 기업, SC제일, 하나, 경남, iM뱅크, 전북, 부산, 광주은행, 현대커머셜, KB증권 총 14개 금융기관 운영 중
- 상생결제 업무사이트 가입 및 이용
  - 상생결제 업무사이트 가입 후, 지급내역(하위 거래처, 결제일 등) 등록하여 상생결제로 대금 지급
    * 업무사이트는 은행별로 상이, 홈페이지 내 금융기관별 현황 참고

문의처

- 상생결제제도 콜센터(1670-0833)
- 상생결제제도 홈페이지(www.winwinpay.or.kr)

Q&A

Q **상생결제는 현금결제와 무슨 차이가 있나요?**

A 대금 회수 시점은 동일하지만 상생결제 이용 시, 전용예치계좌(상생협력재단 명의)를 통해 안전한 대금회수가 가능하고, 최상단 구매기업의 우수한 신용도를 활용하여 자금 유동성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Q **상생결제는 지급기업과 수취기업이 협력사 관계인 경우에만 활용할 수 있나요?**

A 상생결제는 협력사 관계, 특정 계약관계와 상관없이 사업자 간 거래(B2B거래)면 어떠한 거래에서든 활용 가능합니다.

Q **원청으로부터 상생결제로 대금을 지급받았는데, 하위 거래처에 구매대금 지급 시 상생결제로 지급해야 하나요?**

A 상생결제로 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받은 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거래처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으로 구매대금을 지급해야하는 의무화 규정을 준수 바랍니다.
(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Q **상생결제로 하도급 거래 대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상생결제제도는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전자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는 하도급대금 지급관리시스템 및 전자조달시스템에 해당합니다. 하도급대금 및 노무비를 직접 지급하여 불공정한 하도급거래 관행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용어 설명

장려금 : 하위 거래처에 대금을 보관하는 예치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상생결제 이용기업에 분기별로 지급

환출이자 : 하위 거래처가 조기 현금화 시 지급한 수수료의 일부를 상생결제 이용기업에 지급

대·중소기업 동반진출 지원사업

사업개요

- 대·중견기업, 공공기관 등(주관기업)이 보유한 해외 인프라(거점, 유통망 등) 및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및 판로 개척을 지원
- 주관기업의 업종별·지역별 특성에 맞추어 한류마케팅 현지 유통망 입점, 해외법인 설립, 해외실증(PoC) 등을 지원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특례대상 중견기업, 중소기업 유예기간에 해당하는 중견기업

신청제외 대상

▸ 휴·폐업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 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등 보조금 관련 법에 참여가 제한된 기업 등

신청자격

- 대기업·중견기업·공공기관 등 산업의 선도기업

* 선도기업 : 해당 산업의 리딩 및 보유 인프라, 네트워크를 통해 참여 중소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공공기관 등

주관기업 제한 요건

- 「대·중소기업 동반진출 지원사업 운영지침」에 따른 참여 제한 기업
- 휴·폐업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 거래처로 규제 중인 기업 등 보조금관련 법에 참여가 제한된 기업 등

* 신청자격의 자격부합 여부는 심의·조정위원회를 통해 결정

지원내용

- 소비재 : 글로벌 한류행사 및 한류콘텐츠, 유통 대기업 보유 현지 온·오프 유통망 등을 활용하여 중소기업 제품 마케팅 및 해외판로 개척 지원
- 산업재 : 주관기업의 현지법인 및 영업망, 기술력과 연계 中企 해외 법인 설립, 컨설팅, 해외실증(PoC) 등 현지화 지원

〈 사업 유형별 지원 세부내용 〉

사업 유형	세부내용
소비재	◦(K컨텐츠) 글로벌 문화행사, 콘텐츠, 인플루언서 등을 활용하여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 마케팅 및 판로개척 지원
	◦(유통망) 현지방송 채널 및 온라인커머스, 유통매장 등 온·오프라인 채널을 활용한 중소기업 제품 판매 지원
	◦(주관기업 협업형) 유통·플랫폼·방송사 등 업종별 주관기업의 전문성을 결합하여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단계적으로 지원
산업재	◦(판로개척) 주관기업의 현지 영업망, 해외 브랜드 파워, 기술력 등을 활용한 중소기업 제품·기술 수출 마케팅 지원
	◦(현지화/프로젝트) 주관기업이 추진·협력하는 글로벌 프로젝트 연계 중소기업 현지수주 교섭 및 제품 현지화 개발·시범 설치, 해외 대규모 설비 투자 관련 간접비 등 지원

- 지원규모 : 중소기업 1,100개사 내외
- 지원금액 : 155억원 내외

신청·접수

- 공고시기(예정) : '25.12월~ '26.1월, 6월
- 신청방법 : 상생누리(www.winwinnuri.or.kr)를 통한 온라인 접수
  * 상생누리-대·중소기업 동반진출-공지사항에서 모집공고 확인 및 신청
- 선정평가 : (발표평가) 평가위원회 (최종선정) 심의·조정위원회

심사·평가 주요내용

▸ 주관기업(대기업 및 공공기관 등 산업 內 선도기업)의 운영계획 타당성, 운영능력, 지원규모 및 효과 등

- 추진절차

사업공고 및 과제 접수 → 서류요건 등 검토 → 평가위원회 → 심의·조정위원회 → 주관기업 및 과제 선정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성장정책과 : 044-204-7504, 7509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상생판로지원부 : 02-368-8754, 8764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www.win-win.or.kr) 홈페이지

참고사항

① 전년도 사업공고

- 공고명 : 2025년 대·중소기업 동반진출 지원사업 과제 모집공고(1차)
  - (경로)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www.win-win.or.kr) 홈페이지 재단소식-공지사항/사업공고-사업공고
  - (홈페이지)

Q&A

Q **본 사업을 중소기업이 신청할 수 있나요?**

A 가능하지만, 각 산업을 리딩하여 해외 인프라 및 네트워크를 참여 중소기업에 지원할 수 있는 산업 선도기업일 경우에만 주관기업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지원 혜택을 받는 참여 기업으로 과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참여 중소기업은 주관기업 선정 후 별도로 과제별 참여 중소기업 모집공고를 통해 선정할 예정입니다.

Q **참여하는 대기업과 공공기관은 어떤 혜택이 주어지나요?**

A 대기업과 공공기관은 중소기업의 해외판로 개척지원 활동이 동반성장지수,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에 반영됩니다. 또한 협력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상생협력기금 출연시 해당 출연금의 10%를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통합 기술보호지원반

사업개요

기술침해 사전예방과 사후구제를 통합하여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역량 강화 및 애로사항 해결을 효율적으로 지원

지원대상

-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술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 「중소기업 기술혁신촉진법」제2조제2호에 따른 중소기업자, 「중견기업법」제17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9조의3에 따른 중견기업

신청제외 대상

- 유흥·향락업, 숙박 등 부적합 업종 및 휴·폐업중인 중소기업

지원내용

- 지원 세부내용 : 기술보호 보안·법률 전문가가 기업현장을 방문하여 보안수준 진단 및 맞춤형 자문 지원

사전예방 : 기술보호와 관련된 전반적인 진단·자문·교육 등 진행
사후구제 : 중소기업의 기술 분쟁·유출 피해 발생 시 대응방향 설정, 지원사업 연계 등 초동 지원
스타트업 : 설립일자 7년 미만 창업기업 대상 기술보호 밀착지원

- 지원기간 : 예산 소진 시까지
- 지원규모 : 기본 3일, 단 기업 상황을 고려하여 심화 4일 추가 지원

  * 선도 바우처 협약기업, 기술유출 피해기업 등 중기부·협력재단이 심화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최대 7일 지원 가능

신청·접수

- 기술보호울타리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상시 신청
- 추진절차

① (협력재단) 사업공고 → ② (신청기업) 사업신청 → ③ (협력재단) 요건검토 및 승인·반려 → ④ (신청기업) 전문가선택 → ⑤ (전문가) 기업 현장방문 및 결과보고 → ⑥ (협력재단) 결과검토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실 기술보호과 : 044-204-7687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기술보호지원부
  (전화) 02-368-8918, support@win-win.or.kr
- 기술보호 통합상담·신고센터 02-368-8787

참고사항

- 관련 홈페이지
  - (경로) 기술보호울타리(https://www.ultari.go.kr/) 〉 통합 기술보호지원반
  - (홈페이지)

Q&A

Q **며칠동안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기본 3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중기부·협력재단에서 심화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4일 추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선도바우처 지원사업 참여기업, 기술유출피해기업 등)

Q **보안자문과 법률자문 둘 다 받을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다만, 통합 기술보호지원반 신청은 연 1회만 가능하므로, 신청 시 지원분야(사전예방, 사후구제, 스타트업) 및 희망 전문가(보안, 변호사, 변리사, 노무사)를 모두 선택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Q **신청 접수완료 후 전문가 선택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 접수완료 이후 기업은 기술보호울타리에서 원하는 전문가를 직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약력을 확인 후 희망하는 전문가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전문가 선택이 어려운 경우 재단에 문의해주시면 사업 담당자가 전문가를 배정해 드립니다.

중소기업 기술보호 법무지원단

사업개요

기술보호에 대한 법률지원이 필요한 중소기업에 변호사 또는 변리사를 일대일로 매칭하여 사전예방부터 사후대응까지 법률 자문 지원

지원대상

-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신청제외 대상

-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에 규정된 업종
- 휴·폐업중인 기업
- 외국 자본으로 설립.운영된 기업
- 기타 사유로 사업 참여가 제한된 기업

지원내용

- 지원 세부내용 : 중소기업기술 보호를 위한 사전예방 및 기술침해 사후대응을 위한 법률 자문 지원
  - (사전예방) 영업비밀 및 지재권 관련 계약서, 기술보호 관련 서류 작성 지원 등
  - (사후대응) 기술유출, 분쟁대응 방향설정 및 소송·행정조사 준비 서면작성 지원 등

- 지원규모
  - (사전예방) 기업별 최대 3개월, 60시간 이내(1,500만원 상당)
  - (사후대응) 기업별 최대 6개월, 80시간 이내(2,000만원 상당)

신청·접수

- 공고(예정) 시기 : '26.2월
- 신청방법 : 이메일 접수(law@win-win.or.kr)
- 제출서류

공통 (사전예방, 사후대응)	① 법무지원단 자문신청서 ② 사업자등록증 ③ 중소기업확인서, ④ 개인(법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사전예방' 신청 시 추가 제출	⑤ 창업기업확인서 or 벤처기업확인서 or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확인서 or 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Z) 확인서 중 해당 서류 1부

- 추진절차

사업공고	신청서류 제출	요건 검토	전문가 배정
협력재단	중소기업 → 협력재단	협력재단	협력재단 → 중소기업

자문료 지급	만족도 조사 참여	자문결과 제출	1:1 법률자문
협력재단 → 전문가	중소기업 → 협력재단	전문가 → 협력재단	전문가 → 중소기업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실 기술보호과 : 044-204-7786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기술분쟁지원부 : 02-368-8706
- 기술보호 통합상담·신고센터 : 02-368-8787

참고사항

① 전년도 사업공고

- 공고명 : 2025년도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사업 통합 공고
  - (경로) 기술보호울타리 〉 정보마당 〉 공지사항
  - (홈페이지)

② 기타사항

- 사업안내 : 중소기업 기술보호 디지털 포렌식 지원사업 소개
  - (경로) 기술보호울타리 〉 피해구제 〉 법무지원단
  - (홈페이지)

중소기업 기술침해 손해액 산정 지원사업

사업개요

기술분쟁 시 중소기업이 합리적인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손해액 산정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경영 유도

지원대상

◉ 신청자격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신청제외 대상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에 적용되는 기술로 판명되는 경우
- 디자인, 상표 및 경영 정도 등 경제적 가치로 산정이나 손해를 직접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 중소벤처기업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기술보증기금과 이해충돌 등의 사유로 전문기관에서 손해액 산정이 불가한 경우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휴·폐업 등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불가능한 경우
- 제4호에도 불구하고 기술침해 피해사실이 명확하고 본 사업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도 심의를 통해 지원여부 결정

지원내용

◉ 지원 세부내용

① 손해액 산정 비용의 최대 50~90% 지원(부가세 별도 부담)

- 손해액 산정 수수료 기본 50% 지원, 우대조건 충족 시 최대 90%까지 지원

② 법원으로부터 피해기업으로 확인된 경우 100% 지원 (부가세 별도 부담)

- 침해금지 가처분 인용, 침해금지에 대한 등록무효심판 기각, 권리범위 확인심판 승소, 손해배상 소송의 판결이유에 침해가 인정된 경우 등

신청·접수

- 공고(예정) 시기 : '26.2월
- 신청방법 : 이메일 접수(cod@win-win.or.kr)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개인·법인정보동의서,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확인서,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우대증빙서류 각 1부
- 선정평가 : 법률·기술·회계 전문가로 구성된 손해액 산정 지원단(5인 이상)으로 심의위원회를 편성하여 중소기업 선정심의 항목에 따라 적합성 판단
- 추진절차

사업공고	→	신청 · 접수	→	중소기업 선정	→	협약체결 및 손해액 산정	→	손해액 산정 결과 심의	→	결과 제공
중기부		운영기관		운영기관 (선정심의위)		전문기관 중소기업		전문기관 (최종심의위)		운영기관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실 기술보호과 : 044-204-7782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기술보호지원부 : 02-368-8992
- 기술보증기금 중앙기술평가원 : 02-2155-3772
- 기술보호 통합상담·신고센터 : 02-368-8787
- 기술보호울타리 : www.ultari.go.kr

참고사항

① 전년도 사업공고

- 공고명 : 2025년 중소기업 기술침해 손해액 산정 지원사업 공고
  - (경로) 기술보호울타리〉정보마당〉공지사항
  - (홈페이지)

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중재

사업개요

'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중재 위원회'의 조정·중재를 통한 당사자간 원만한 분쟁해결 지원 및 신속한 피해기업 구제

지원대상

-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법 시행령」 제9조의3에 따른 중견기업** 중 기술유출 분쟁을 겪고 있거나 향후 분쟁 발생의 우려가 있는 자

  *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중소기업기술

  ** 중견기업의 경우, 「공정거래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과 관련된 분쟁기술 건에 한정하여 지원

신청제외 대상

▸ 유흥·향락업, 숙박 등 부적합 업종 및 휴·폐업중인 중소기업 제외

지원내용

- 전·현직 판사, 변호사, 기술전문가 등 3~5인으로 구성된 조정부 또는 중재부가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정 또는 중재로 분쟁해결을 지원

  * 단, 신청기업은 소정의 수수료 납부(조정 최대 55천원, 중재 신청금액에 따라 상이)

- 분쟁사건에 대한 법률 및 기술보호 전문가 자문 지원
  - 조정 신청기업의 법률대리인 선임비용 지원(최대 1,000만원)
  - 조정 불성립 또는 중단 사건이 소송으로 연계되는 경우 심사를 통해 소송비용 지원(최대 2,000만원)
  - 조정 피신청기업의 법률대리인 선임비용 지원(최대 500만원)

  * 단, 피신청인이 중소기업이며 조정이 최종 성립된 경우에 한함
- 조정·중재부 구성일로부터 3~5개월 소요

신청·접수

- 신청방법 : 유선상담 후 방문·우편·이메일·기술보호울타리 (www.ultari.go.kr)로 신청(상시)
- 제출서류 : 분쟁조정·중재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등 증빙자료 등 (www.ultari.go.kr에서 서식 제공)
- 추진절차

① 신청상담	② 서류검토 및 신청서 접수	③ 위원장 보고	④ 조정·중재부 구성
(안내문 송달)	(사건번호 부여)	(조정·중재부 장 지명)	(3~5인)

⑧ 조정안 제시·중재판정	⑦ 조정·중재부 회의	⑥ 사실조사	⑤ 답변서·보완서 접수
(조정 불성립 시 소송비 지원)	(참고인 조사 등)	(필요시)	-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보호과 : 044-204-7786
-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
  02-368-8768, 8769, solomon@win-win.or.kr
- 기술보호 통합상담·신고센터 : 02-368-8787
- 기술보호울타리 : www.ultari.go.kr

중소기업 기술보호 디지털 포렌식

사업개요

중소기업의 내부인력에 의한 기술유출의 사전예방 및 사후피해 대응을 위해 기업 소유의 업무용 디지털 기기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지원

지원대상

-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신청제외 대상

-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에 규정된 업종 및 휴·폐업중인 기업
- 소유권이 불분명한 대상물에 대한 지원을 신청한 기업
- 기타 사유로 사업참여가 제한된 기업

지원내용

- 지원 세부내용 : 기술유출 예방 및 피해 증거 보존·분석을 위한 지원기업 소유의 디지털 기기(PC, 태블릿 등)의 ①디지털 포렌식, ②디지털 이미징 지원

디지털 포렌식(증거 분석)	디지털 이미징(증거 보존)
기술유출 피해 인지 후, 디지털 기기에 남아있는 유출 데이터를 수집·분석하여 증거화 지원	기술유출 피해 인지 후, 디지털 기기에 남아있는 유출 데이터를 수집·분석하여 증거화 지원

- 지원규모 : 기업당 최대 연 5백만원 한도

* 지원금액은 포렌식 전문기업과 상담 후 확정

신청·접수

- 공고(예정) 시기 : '26.2월
- 신청방법 : 이메일 접수(forensic@win-win.or.kr)
- 제출서류 : ①지원신청서, ②개인·기업 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③디지털 포렌식 의뢰물 소유권 확인서, ④의뢰물 소유권 증빙, ⑤사업자등록증, ⑥증소기업확인서
- 추진절차

사업공고	→	신청서 제출	→	전문기업 매칭
협력재단		중소기업 → 협력재단		협력재단 → 중소기업

↓

디지털 포렌식 및 이미징	←	포렌식/이미징 결과 안내	←	포렌식/이미징 비용 지급
전문기업		전문기업 → 중소기업		협력재단 → 전문기업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실 기술보호과 : 044-204-7776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기술분쟁지원부 : 02-368-8714
- 기술보호 통합상담·신고센터 : 02-368-8787

참고사항

① 전년도 사업공고

- 공고명 : 2025년도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사업 통합 공고
  - (경로) 기술보호울타리 〉 정보마당 〉 공지사항
  - (홈페이지)

② 기타사항

◉ 사업안내 : 중소기업 기술보호 디지털 포렌식 지원사업 소개

- (경로) 기술보호울타리 〉 피해구제 〉 디지털포렌식지원사업
- (홈페이지)

중소기업 기술보호 바우처 지원사업 (구. 선도기업 육성)

사업개요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수준진단*에 따라 바우처를 지원하여 선도기업으로 육성함으로써 기술보호 역량 수준을 강화

* 기술보호 수준진단 : 중소기업이 보유한 기술보호 인프라에 대해 세부지표에 따라 정량평가

지원대상

- 신청자격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 우대사항 : 지방소재 기업, 창업기업(7년 이내), 방산(물자)업체, 국가핵심기술보유 기업 등

신청제외 대상

- 휴·폐업 중인 기업
- 유흥·향락업, 숙박·음식업,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등 영위기업
-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 중인 기업
- 3년간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이거나, 최근 결산 기준 자본잠식 해당 기업
- 신청기업의 허위 서류제출 또는 기타 금융거래가 어려운 경우

지원내용

-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역량수준을 진단하고 기업별 상황에 맞는 지원사업 매칭

<table>
<tr><th colspan="3">수준별 점수 및 단계</th><th colspan="3">추천 프로그램</th></tr>
<tr><th>단계</th><th>점수</th><th>기술보호 단계</th><th>분야</th><th>필수패키지</th><th>바우처 연계
지원사업 매칭(안)</th></tr>
<tr><td>Ⅰ 우수</td><td>75점 이상</td><td>선도기업
(3단계)</td><td>약점보완</td><td rowspan="5">수준진단
+
현장컨설팅
(최대3회)
+
수준확인
(추가가능)</td><td rowspan="3">기술자료임치,
기술지킴서비스,
기술유출방지 시스템
구축</td></tr>
<tr><td>Ⅱ 양호</td><td>60점~75점 미만</td><td rowspan="2">유망기업
(2단계)</td><td rowspan="2">보안강화</td></tr>
<tr><td>Ⅲ 보통</td><td>45점~60점 미만</td></tr>
<tr><td>Ⅳ 취약</td><td>30점~45점 미만</td><td rowspan="2">초보기업
(1단계)</td><td rowspan="2">인프라
구축</td><td rowspan="2">통합지원반, 정책보험,
손해액 산정</td></tr>
<tr><td>Ⅴ 위험</td><td>30점 미만</td></tr>
</table>

신청·접수

- 공고(예정) 시기 : ’26.2월
- 신청방법 : 기술보호울타리 홈페이지(www.ultari.go.kr)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개인·기업정보동의서, 사업자등록증, 가점 증빙서류 등
- 추진절차 : 신청 → 자격검토 → 수준진단(적정성 평가) → 연계지원 → 수준확인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보호과 : 044-204-7687
- 기술보호 통합상담·신고센터 : 02-368-8787

참고사항

① 전년도 사업공고

- 공고명 : 2025년 기술보호 바우처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
  - (경로) 기술보호울타리 〉 정보마당 〉 공지사항
  - (홈페이지)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험

사업개요

중소기업의 기술분쟁 과정에서 발생한 법률비용을 보험금으로 보상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적극적인 분쟁 대응 유도 및 재정부담 완화

지원대상

-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국내보험) 특허권·임치기술·실용신안권·디자인권을 보유한 국내 소재 중소기업
  - (해외보험) 해외*에 특허를 등록한 국내 소재 중소기업

    * 북미, 아시아, 유럽, 중동, 중남미

신청제외 대상

- 휴·폐업 중인 기업
- 유흥·향락업,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등 영위 기업

지원내용

- 지원 세부내용 : 보험 목적물(특허, 실용신안, 기술임치, 디자인) 관련 피소상황에 대비하여 법률비용을 지원받을 목적으로 보험 가입 시 일부 보험료 정부 지원

- 지원금액
  - (국내보험) 보험료의 70% 지원, 우대조건* 충족 시 최대 80% 까지 지원

    * 기술보호 선도기업, 창업기업, 벤처기업, 이노비즈기업, 메인비즈기업 등

  - (해외보험) 보험료의 80% 지원
- 보장내용 : 제3자가 제기한 법률분쟁(피소대응) 비용보상, 보험가입자의 기술을 침해한 자에 대한 법률소송 제기(소제기) 비용 등을 보상

〈 기술보호 정책보험 보장내용 〉

구분	피소대응(기본)	소제기(특약 선택)
내용	보험가입자 보험 목적물(기술, 권리)에 대해 제3자가 제기한 법률분쟁 대응 * 경고장, 침해소송 대응 등	보험가입자 보험 목적물(기술,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한 법률소송 제기 * 침해사실 조사, 경고장 발송, 침해소송 등
보장기간	단기(1년) 또는 장기(3년)	
보험효력	가입 즉시	(1년) 3개월 이후, (3년) 6개월 이후
보상금액	최대 5천만원 * 해외보험 최대 1억원	

신청·접수

- 공고(예정) 시기 : ’26.2월
- 신청방법 : 이메일 접수(insurance@win-win.or.kr)
- 제출서류 : ①지원신청서, ②지원동의서, ③개인·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④보험가입 목적물 사본, ⑤사업자등록증, ⑥중소기업확인서, ⑦매출액 증빙자료, ⑧보험료 추가할인 증빙자료(해당 시)

◉ 추진절차

신청서 접수	청약서 작성	기업부담금 납입	정부지원금 지급	가입완료
보험가입 신청서 접수	보험가입 청약서 작성	총 보험료 중 기업부담금 납입	총 보험료 중 정부부담금 지급	보험증권 발행
기업 → 협력재단	기업 → 보험사	기업 → 보험사	협력재단 → 보험사	보험사 → 기업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실 기술보호과 : 044-204-7782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기술분쟁지원부 : 02-368-8714

◉ 기술보호 통합상담·신고센터 : 02-368-8787

참고사항

① 전년도 사업공고

◉ 공고명 : 2025년 기술보호 소송보험(정책보험) 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 (경로) 기술보호울타리 〉 정보마당 〉 공지사항
- (홈페이지)

기술자료 임치제도

사업개요

기업의 핵심 기술자료 및 영업비밀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피해 발생 시 해당 기업의 기술개발 사실 입증

지원대상

- 타업체의 모방 특허 등을 우려, 특허를 출원하지 않는 기업
- 대기업 등 거래기업으로부터 핵심기술 제공을 요구받고 있는 기업
- 영업단계에서 거래기업에게 해당 기술에 대한 신뢰성을 보장받고 싶은 기업

지원내용

- 핵심 기술자료 및 영업비밀을 제3의 기관(대 · 중소기업 · 농어업 협력재단)에 안전하게 보관하여, 기술유출·분쟁 등 문제 발생 시 개발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활용하고, 수·위탁거래 시 사용인의 기술탈취·유용 방지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법적 추정력을 부여

수수료

- 신규 30만원/년(최초 임치계약), 갱신 15만원/년
  - * 창업·벤처기업, 기술혁신형·경영혁신형 중소기업, 국가핵심기술 등을 보유한 기업은 임치수수료 1/3 감면, 5년이상 장기임치시 임치수수료 1/2 감면
  - * 창업기업이 사업계획서 또는 거래제안서 등을 공모전 혹은 거래 예정인 기업으로 제출하기 전 아이디어 보호를 위해 임치제도 무료이용(1년이내) 가능(창업기업 무료, 벤처기업 5만원)

신청·접수

- 온 라 인 : 기술자료임치센터(www.kescrow.or.kr)로 접속
- 오프라인 : 대 · 중소기업 · 농어업협력재단으로 직접 방문
  (방문 전 문의처로 유선 연락 필요)
  - *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 남산스퀘어 7층(충무로 소재)
- 추진절차

신청·접수	→	임치물 확인 및 접수	→	계약체결 및 임치증서 교부	→	임치계약 관리	→	임치물 교부
(상시)		(계약체결 전)		(계약체결 시)		(계약기간 내)		(필요 시)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보호과 : 044-204-7783
- 기술자료임치센터 : 02-368-8484, www.kescrow.or.kr

참고사항

Q&A

Q **기술자료 임치제도란 무엇인가요?**

A 기술자료 임치제도는 '코카콜라 제조비법'과 같은 기술·경영상 핵심 비밀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공신력 있는 제3의 기관에 핵심 기술, 영업비밀 등을 보관하고, 기술유출이 발생할 경우 그 기술의 보유자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Q **기술자료 임치제도와 특허제도의 차이는 뭔가요?**

A 특허권은 일정기간 동안 특정 기술에 대하여 청구범위에 한해 독점 배타적인 권한을 부여 받지만, 기술이 외부로 공개되기 때문에 대체 기술이 쉽게 등장하고 경쟁이 치열해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반면, 기술자료 임치제도는 맡겨놓은 기술정보에 대해 맡긴 사람을 제외하고 그 누구도 열람할 수 없고, 제품 설계도 및 생산제조방법, 소스코드, 원가정보 등 영업활동에 필요한 모든 자료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 지원사업

사업개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술유출방지 인프라 구축을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사전예방 및 기술보호 역량 강화

지원대상

-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 상생형(상생협력기금 연계) : 출연기업이 추천한 협력 중소기업
  - * 바우처연계형(선도기업 육성사업 연계) : 바우처 지원사업 선정된 중소기업
- 우대사항 : 창업기업 및 신규 참여기업 우대

신청제외 대상

- ▸ 휴·폐업 중인 기업
- ▸ 유흥·향락업, 숙박·음식업,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등 영위기업
-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 ▸ 최근 3년간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이거나, 최근 결산 기준 자본잠식에 해당하는 기업(기타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어려운 경우 등)
- ▸ 기타 공고 또는 운영지침 등에 따라 참여제한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 등

지원내용

- 지원 세부내용

과제속성 / 구분	자체관리형 (온프레미스형)	위탁관리형 (SECaaS형 or 클라우드형)
지원대상	기업 내부에 보안 시스템을 구축 · 운영 할 수 있는 기업	보안 전담 인력 부족, 초기 투자 부담이 큰 이유로 클라우드 기반 보안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기업
지원내용	- 보안 장비 도입 및 구매 - 보안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구매 (1회성/기간제) - 온프레미스 구독형 보안 서비스 도입 및 구매 - 시스템 구축 컨설팅 및 구축비 * SECaaS(클라우드 보안 서비스)제외	- SECaaS 복합 패키지* - 클라우드 기반 보안 서비스 이용료(연 단위) - 24/7 보안관제 서비스, 보안 컨설팅, 기술지원 포함 * 온프레미스 장비 · 라이선스는 제외

- 지원규모 : 지원유형별 00개사
- 지원금액 : 참여 기업별 총 사업비의 최대 5천만원
  (위탁관리형은 최대 3천만원)

신청·접수

- 공고(예정) 시기 : ’26년도 상반기
- 신청방법 : 기술보호울타리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참여기업 인력 청렴·보안 서약서 등

  * 지원유형별 상이하여 신청공고 내 상세 안내

- 선정평가 : 신청 기업의 제출 서류를 토대로 서면평가 진행

심사·평가 주요내용

▸ 외부 보안 전문가를 활용하여 참여 기업의 기술보호 추진의지, 기술보호 인식 및 노력 현황, 지원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 추진절차

지원유형	과제유형별 절차
상생협력기금 연계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	**〈 공통 〉** 상생협력기금 출연기업 모집 → 협력기업 추천 및 통합공고(수준진단 필수) → 추천 협력기업 사업 신청(공급기업 Pool 제공) → WINFIS 과제신청 및 출연
	① 자체관리형 지원기업 선정 → 서면평가 → 협약 체결 → 과제수행 및 사업비 지급
	② 위탁관리형 지원기업 선정 → 서면평가 → SECaaS형 보안 서비스 구매 → 서비스 제공 및 사업비 지급
선도기업 육성 연계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	**〈 공통 〉** 선도기업 육성사업 기업 모집 · 선정 →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 희망 기업 대상 수준진단 및 관련 컨설팅 → (컨설팅 결과에 따라) 해당 기업 사업 신청
	① 자체관리형 지원기업 선정 → 서면평가 → 협약 체결 → 과제수행 및 사업비 지급
	② 위탁관리형 지원기업 선정 → 서면평가 → SECaaS형 보안 서비스 구매 → 서비스 제공 및 사업비 지급

문의처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기술보호지원부
(전화) 02-368-8724, 8704, 8765

참고사항

① 전년도 사업공고

● 공고명 : 2025년도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사업 모집공고(일반형)

- (경로) 기술보호울타리 〉 정보마당 〉 공지사항 〉 350번 게시글
- (홈페이지)

- 공고명 : 2025년 기술보호 바우처 연계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 사업 신청·접수 공고(바우처형)
  - (경로) 기술보호울타리 〉 정보마당 〉 공지사항 〉 349번 게시글
  - (홈페이지)

② 기타사항

- 제목 :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지원 사업 소개
  - (경로) 기술보호울타리 〉 사전예방 〉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지원
  - (홈페이지)

민관공동 전략형 상생협력사업(창의트랙)

사업개요

대·중소기업 등 기업 간 자발적 상생협력 확산을 위해 대·중소기업 등이 자율 기획한 창의적 상생협력 과제를 지원

지원대상

- 신청자격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이하 '상생협력기금')을 출연·활용하여 대중소기업 간 창의적 상생협력 과제 추진을 희망하는 내국법인
- 지원조건 : 상생협력기금 출연 내국법인(대기업, 공공기관, 중소기업 등)과 중소기업이 과제에 공동으로 참여
- 우대사항 :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우수사례인 "윈윈 아너스"에 선정된 기업

신청제외 대상

- 휴·폐업 중인 기업
- 본 사업을 통해 참여 제한 처분을 받은 기업

지원내용

- 지원 세부내용 : 창의적 상생협력 과제 추진에 필요한 비용 지원
- 지원규모 : 총 700백만원, 15개 과제 내외

- 지원금액 : 과제당 최대 50백만원 지원
  (국고보조금 50%, 상생협력기금 50% 매칭)

  * 국고보조금 50백만원 지원 시 상생협력기금 50백만원 출연 필요

신청·접수

- 공고(예정) 시기 : '26년 3월
- 신청방법 :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www.gosims.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및 증빙서류 등
- 선정평가 : 신청자격, 제출 서류등을 검토하여 운영위원회를 통한 선정

심사·평가 주요내용

▸ 타당성 평가, 사업성 평가 등

- 추진절차

① 사업공고	② 지원과제 선정 (선정평가)	③ 협약체결 및 상생협력기금 출연	④ 과제수행	⑤ 중간 및 최종평가	⑥ 성과점검 및 모범사례 발굴
상생협력 재단	상생협력재단 (운영위원회)	주관기업 & 출연기업	주관기업 등	상생협력 재단	중기부 & 상생협력재단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상생협력정책과
  (전화) 044-204-7912, 7926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상생협력지원부
  (전화) 02-368-8971, 8746

참고사항

① 전년도 사업공고

- 공고명 : '2025년도 민관 공동 전략형 상생협력사업(창의트랙사업)' 모집 공고
  - (경로)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홈페이지 〉 재단소식 〉 사업공고
  - (홈페이지)

민관공동 전략형 상생협력사업(영세기업)

사업개요

- 영세 중소·소상공인의 자생력 강화를 위해 대기업의 전문성과 자원을 활용해 신제품·신사업 개발을 지원
- 중소·소상공인이 겪는 애로분야(개발, 마케팅, 판로)에 관련 대기업이 수평적 협력, 상호 윈윈을 실천하는 모델을 발굴하여 지원

지원대상

- 신청자격 : 대기업이 보유한 기술, 인력, 판로 등을 활용한 공동 협력 사업을 희망하는 적합업종 영위 중소·소상공인 등
- 지원조건 : 상생협력기금 출연 대기업(중견기업 포함)과 중소·소상공인이 사업에 공동으로 참여 필수
  - 과제 운영을 위한 대기업 참여(상생협력기금 출연 필수)
  - 총괄 수행기업은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 역할 수행

지원내용

- 지원 세부내용 : ① 기술·제품개발, ② 공정개선, ③ 정보시스템구축, ④ 경영·서비스 개선, ⑤ 마케팅·판로개척, ⑥ 성능향상·표준인증 과제 中 택1
- 지원규모 : 총 5개 과제 내외
- 지원금액 : 7억원

신청·접수

- 공고(예정) 시기 : '26년 3월
- 신청방법 :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www.gosims.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사업계획서, 정보제공 활용동의서, 출연확약서), 산출근거 서류 일체, 사업자등록증, 중소·소상공인확인서 등
- 선정평가 : 총 2단계(서류 사전검토→ 발표 및 평가)를 통해 최종 선정

심사·평가 주요내용

▸ ① 사업추진 필요성, ② 계획 및 방법, ③ 사업목표 적정성, ④ 사업추진 타당성, ⑤ 성장 가능성 등을 토대로 평가

- 추진절차 :

사업공고	신청 · 접수	사전검토	선정평가
전담기관	수행기업 전담기관	전담기관	운영위원회
e나라도움, 홈페이지	e나라도움		

최종평가	중간평가 및 잔금지급	협약체결 및 선금지급	선정 및 통보
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 전담기관 수행기업	수행기업 전담기관	전담기관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영역조정과 : 044-204-7914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동반성장지원부 : 02-368-8462, 8458

민관 공동 전략형 상생협력사업(공급망 ESG)

사업개요

대·중소기업 간 공동으로 수행하는 ESG 활동을 지원유형 내 다양한 내용으로 구성하여 자율 과제 형식으로 지원

지원대상

- 신청자격 : (신청 기업) 상생협력기금을 출연하는 내국 법인
  (지원 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따른 중소기업
- 지원조건 : 상생협력기금 출연 시 정부지원금 1:1 매칭
  * 과제 당 정부지원금 최대 2.5억 매칭
- 우대사항 : 정부 ESG 관련 과제 신청기업, 윈윈아너스 선정기업

신청제외 대상

- 휴·폐업중인 중소기업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 중인 기업
- 출연기업과 특수관계자(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8항)가 아닌 기업

지원내용

- 지원 세부내용 : 국내외 ESG 규제 대응, 고객사 ESG 요구 대응, 공급망 ESG 심화지원, 정부 ESG 정책 참여 관련 대·중소기업 ESG 공동 활동 지원

유형	세부 지원 항목
국내외 ESG 규제 대응	① 공급망실사 대응 지원 ② 공급망 온실가스 측검정 지원 ③ 공급망 안전 보건 체계 구축 지원
고객사 ESG 요구 대응	④ 공급망 ESG 이니셔티브 지원 ⑤ 거래기업 ESG 구매정책 대응 지원
공급망 ESG 심화지원	⑥ 공급망 ESG 인증 지원 ⑦ ESG 정보공시 지원
정부 ESG 정책 참여	⑧ NDC, 산업안전 재해 관련 ESG 지원

※ 사업 참여 중소기업 중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중소기업 ESG 표준 가이드라인」 지표 준수율 80% 이상 기업에게는 「ESG 우수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

신청·접수

- 공고(예정) 시기 : '26년 2월
- 신청방법 : 이메일 접수 (esg@win-win.or.kr)
- 제출서류 : 과제신청서, 수행계획서, 특수관계인 및 중복참여 확인서, 수행기관 청렴·보안 서약서, 중소기업 확인서
- 선정평가 : 사전요건 검토 및 서류평가를 통해 최종 선정

심사·평가 주요내용

▸ 지원 필요성(30점), 추진계획 적정성(40점), 예산계획 적정성(10점), 수행기관 역량(10점), 기대효과(10점), 가점(3점)

- 추진절차 : 모집공고, 신청접수, 선정평가, 협약체결, 현장점검, 최종평가

① 신청·접수	② 평가·선정	③ 협약	④ 과제 수행	⑤ 현장 점검	⑥ 최종 평가	⑦ 사업비 정산
이메일 접수	운영 위원회	재단 ↔ 출연기업& 수행기관	수행기관 중소기업	재단	운영 위원회	재단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상생협력정책과 : 044-204-7921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ESG지원부 : 02-368-8425, 8469

기관별, 월별 지원사업 및 사업공고 현황

◉ 기관명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공고 시기	지원사업명	사업공고명	문의처
1월	대·중소기업 동반진출 지원사업	2026년도「대·중소기업 동반진출 지원사업」과제 모집공고(1차)	02-368-8754, 8764
2월	중소기업 기술보호 법무지원단	2026년도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사업 통합 공고	02-368-8706
	중소기업 기술침해 손해액 산정 지원사업	2026년 중소기업 기술침해 손해액 산정 지원사업 공고	02-368-8787
	중소기업 기술보호 디지털 포렌식	2026년도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사업 통합 공고	02-368-8714
	기술보호 선도기업 육성·확산	2026년 기술보호 바우처 지원사업 공고	02-368-8787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험	2026년도 기술보호 소송보험(정책보험) 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02-368-8714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 지원사업	2026년도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 지원사업 공급기업 모집 공고	02-368-8787
	민관 공동 전략형 상생협력 사업(공급망 ESG)	대·중소 자율형 ESG 지원사업	02-368-8425, 8469
3월	납품대금 연동제	주요 원가 확인 등 연동약정 체결지원 사업	02-368-8962
	민관공동 전략형 상생협력사업(창의트랙)	2026년도 민관 공동 전략형 상생협력사업(창의트랙사업) 모집 공고	02-368-8971
	민관 공동 전략형 상생협력(영세기업 경쟁력 강화)사업	민관 공동 전략형 상생협력(영세기업 경쟁력 강화)사업	02-368-8462, 8458
4월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 지원사업	2026년도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 지원기업 신청·접수 공고	02-368-8787
6월	대·중소기업 동반진출 지원사업	2026년도「대·중소기업 동반진출 지원사업」과제 모집공고(2차)	02-368-8754, 8764

제 8 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지원사업(전년대비) 달라지는 내용

◉ 기관명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구분	'25년도	'26년도
KOTRA 해외 전시회 개별참가지원 사업	(지원규모) 약 1,400여개사	(지원규모) 약 1,200여개사
해외 공공조달 선도기업 육성 사업	(기존) 예산지원 불가 항목 : 지사화 사업을 제외한 KOTRA의 타 유료 서비스 사업비용(조사대행,세일즈 출장, 설명회)	(변경) 예산지원 불가 항목: 지사화 사업을 제외한 KOTRA의 타 유료 서비스 사업비용(조사대행,세일즈 출장, 설명회 등) 및 컨설팅사 자문 비용(물류통관·통관인증 관련 제외)
해외 공공조달 선도기업 육성 사업	(기존) 자부담금 반환 지침 : 명시 규정 없음	(변경) 자부담금 반환 지침: 협약 체결 이후 사업 종료까지의 기간 중 3분의 2가 도래한 이후 기업의 요청으로 사업 취소 시 기업 자부담금을 반환하지 아니한다.
FTA해외활용 지원센터 지원 대상	ㅇ 지원대상 ▪ FTA 활용에 도움이 필요한 모든 수출기업 및 현지 바이어 ㅇ 지원내용 ▪ FTA 홍보활동 및 정보제공 - FTA 활용 설명회(웨비나) 및 현지 유명 전시회 공동 홍보부스 운영 - FTA 실무활용가이드북 제공 - 유관기관과 현지 유명 전시회 공동 홍보부스 운영 ▪ FTA 무료 상담서비스 - (상시상담) 관세율, 원산지 등 FTA 활용 전반에 대한 전문가 상담 진행 - (이동상담) 현지기업, 진출기업 밀집 지역 방문 상담 - (헬프데스크) 주요 전시회, 상담회 FTA 활용부스 및 헬프데스크 운영 ▪ FTA 활용 애로해소 지원 - 통관, 인증 등 비관세장벽 사례 발굴 - 유관기관 및 정부기관 협력을 통한 애로해소 지원 등 ㅇ 문의처 ▪ FTA해외활용지원센터 연락처	ㅇ 지원대상 ▪ 해외 바이어 및 국내·해외 진출 중소·중견기업 ㅇ 지원내용 ▪ FTA 활용 관련 관세·비관세 장벽에 대한 기업의 애로해소를 위한 상시 컨설팅 제공 - 국내 관세법인, 현지 자문사(광저우 물류통관법인, 뉴델리 통상 관련 자문사)와의 계약을 통해 전문성 있는 상담 제공 ▪ 현지 설명회, 헬프데스크 운영을 통한 대면 컨설팅 제공 - 현지 관세 전문가들의 네트워킹을 통한 현지 유관기관과의 소통 창구 마련 ▪ FTA를 활용한 글로벌사우스 진출 설명회 및 상담회(국내) 개최 ▪ 발간자료(QR삽입) - 한미 FTA 등 최근 이슈를 반영한 FTA실무활용가이드 영상 제작 - 현지 상담을 기반으로 한 FTA 활용 우수사례집 발간 ㅇ 문의처 ▪ FTA해외활용지원센터 연락처

<table>
<tr><th>구분</th><th>‘25년도</th><th>‘26년도</th></tr>
<tr><td></td><td>
<table>
<tr><th>센 터</th><th>전 화</th><th>이메일</th></tr>
<tr><td>베이징</td><td>(86-10)
6410-6162</td><td>shensy23@
kotra.or.kr</td></tr>
<tr><td>광저우</td><td>(86-20)
2208-1939</td><td>huizhen@
kotra.or.kr</td></tr>
<tr><td>도쿄</td><td>(81-3)
6371-4438</td><td>hyjchoi@
kotra.or.kr</td></tr>
<tr><td>하노이</td><td>(84-24)
3946-0511</td><td>vjddudrbs93
@kotra.or.kr</td></tr>
<tr><td>호치민</td><td>(84-28)
3822-3944</td><td>hjhwang@
kotra.or.kr</td></tr>
<tr><td>뉴델리</td><td>(91-11)
4230-6300</td><td>hanheum_oh
@kotra.or.kr</td></tr>
<tr><td>자카르타</td><td>(62-21)
574-1522</td><td>fariidha@
kotra.or.kr</td></tr>
<tr><td>방콕</td><td>(66-2)
035-1555</td><td>parkhk@
kotra.or.kr</td></tr>
<tr><td>쿠알라룸푸르</td><td>(60-1)
2956-2144</td><td>jason1119@
kotra.or.kr</td></tr>
<tr><td>마닐라</td><td>(63-2)
8894-4084</td><td>benzkang@
kotra.or.kr</td></tr>
<tr><td>프놈펜</td><td>(855-23)
999-099</td><td>fta.bryan@
kotra.or.kr</td></tr>
</table>
KOTRA 본사, 02-3460-3314
</td><td>
<table>
<tr><th>센 터</th><th>전 화</th><th>이메일</th></tr>
<tr><td>베이징</td><td>(86-10)
6410-6162</td><td>shensy23@
kotra.or.kr</td></tr>
<tr><td>광저우</td><td>(86-20)
2208-1623</td><td>kikihuang@
kotra.or.kr</td></tr>
<tr><td>도쿄</td><td>(81-3)
6371-4438</td><td>ej.lee@
kotra.or.kr</td></tr>
<tr><td>하노이</td><td>(84-24)
3946-0511</td><td>yeoram@
kotra.or.kr</td></tr>
<tr><td>호치민</td><td>(84-28)
3822-3944</td><td>khjccb@
kotra.or.kr</td></tr>
<tr><td>뉴델리</td><td>(91-11)
4230-6300</td><td>hanheum_oh
@kotra.or.kr</td></tr>
<tr><td>자카르타</td><td>(62-21)
574-1522</td><td>audrey@
kotra.or.kr</td></tr>
<tr><td>방콕</td><td>(66-2)
035-1555</td><td>parkhk@
kotra.or.kr</td></tr>
<tr><td>쿠알라룸푸르</td><td>(60-1)
2956-2144</td><td>jason1119@
kotra.or.kr</td></tr>
<tr><td>마닐라</td><td>(63-2)
8894-4084</td><td>benzkang@
kotra.or.kr</td></tr>
<tr><td>프놈펜</td><td>(855-23)
999-099</td><td>fta.bryan@
kotra.or.kr</td></tr>
</table>
KOTRA 통상협력팀, 02-3460-7507
</td></tr>
<tr><td>국내복귀기업
지원</td><td>-</td><td>해외사업장 구조조정 요건면제
미 관세피해기업(~2026년 한정),
해외법인 미국수출비중 20%이상,
동법인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24년
동기(분반기) 대비 20% 감소</td></tr>
<tr><td>국내복귀기업
지원</td><td>-</td><td>미 관세 피해기업 가산비율 (~2026년 한정)
25년 4월 2일 이후 선정된 기업 중 관세피해기업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지원비율(11%~50%)에 10% 가산지원(12.1%~55%)하고 합산 후 최대 75% 한도 적용</td></tr>
<tr><td>국내복귀기업
지원</td><td>투자보조금 지원 사업장당
300억원이내(수도권 150억원이내)</td><td>투자보조금 지원 선정 건당
300억원이내
(수도권 150억원이내)</td></tr>
<tr><td>글로벌 AI 리더 양성과정</td><td>연간 2회(상하반기)</td><td>연간 4회(분기별)</td></tr>
<tr><td>맞춤형 해외 연수 과정</td><td>연 4회</td><td>연 2회</td></tr>
<tr><td>AI 디지털 무역 과정</td><td>연 11회</td><td>연 11회</td></tr>
</table>

구분	'25년도	'26년도
글로벌 비즈니스 컨설턴트 양성 과정	연 0회	연 1회
기업 역량별 맞춤형 과정	-	-
글로벌 비즈니스 과정	연 11회	연 9회
국가별 해외 시장 진출 과정	연 9회	연 7회
해외 주재원·파견자 교육과정	신설	개별기업 맞춤형 교육설계 및 시행
해외경제정보 드림(해드림)	(제공정보) 표안 '수출MBTI(기업형 맞춤형 콘텐츠/사업 추천)'	'수출MBTI(맞춤형 콘텐츠/사업 추천)'으로 표현 간소화
해외경제정보 드림(해드림)	(제공정보) 표안 '84개국 129개 해외무역관'	'85개국 131개 해외무역관'으로 현행화
해외경제정보 드림(해드림)	(문의처) 담당부서 및 연락처	담당부서명, 문의처 이메일 주소 현행화
해외경제정보 드림(해드림)	(Q&A) '80개 기관'	'90개 기관'으로 현행화
해외경제정보 드림(해드림)	(용어 설명)의 '수출MBTI' 부분	신설 서비스인 '수출물류 통합정보' 안내로 교체
트라이빅 (TriBIG)	(문의처) 담당부서명 '디지털플랫폼운영센터'	담당부서명 'AI플랫폼팀'으로 현행화
트라이빅 (TriBIG)	(Q&A) '트라이빅은 해외바이어의 대표자명 및 대표연락처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트라이빅은 해외바이어의 대표자명 및 대표연락처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로 정정
지원사업명	디지털무역인력(deXters) 양성사업	AI 무역인재양성 사업
지원사업명	디지털무역종합지원센터(deXter)	AI 무역지원센터
서비스 거점 지원 사업	35개 서비스 거점 무역관 변경	(제외) 후쿠오카, 항저우, 다낭, 멕시코시티 (참여) 밴쿠버, 알마티, 창사, 싱가포르
농식품 해외시장진출 사업 (신규)	-	(사업내용) 농식품 시장개척 전략국가 10개국 대상으로 해외 유통망 입점·판촉 지원 등을 통한 수출 시장 다변화 지원 (지역) 10개 권역 (가나, 과테말라, 남아프리카공화국, 라오스, 인도(뭄바이), 카타르, 아르헨티나, 우즈베키스탄, 칠레, 튀르키예 등 총 10개국)

수출상담회

사업개요

한국 상품 및 서비스의 수입을 희망하는 바이어와 국내 업체의 1:1 상담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국내 업체들의 수출을 지원

지원대상

- 신청자격 : 해외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중소·중견기업
- 지원조건 : 상담회별 상이 (타겟 산업군·해당 품목을 취급하는 기업)

지원내용

- 바이어와 온·오프라인상 1:1 매칭

진행절차

- KOTRA 홈페이지 및 buyKOREA.org에서 연간계획 확인 → 주최기관(KOTRA, 지자체, 유관기관)에 사업신청 → KOTRA 해외무역관을 통해 해당 품목 바이어의 유치 → 주최기관을 통해 확정 바이어와 1:1 상담 주선 추진 → 주최기관 및 KOTRA 해외무역관을 통해 수출상담 후속 지원
- 2026년도 수출상담회 일정은 KOTRA 홈페이지를 참고

Q&A

Q **수출상담회 참가비와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 수출상담회 참가비는 무료입니다. 단 일부 사업의 경우, 쇼케이스 등의 운영에 따라 별도의 행사장 내 국내기업의 전시공간이 제공될 경우, 유료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Q **바이어와 상담 매칭이 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A 해외 바이어와 품목 연관 여부, 바이어의 관심도, 산업군/세부 품목군의 일치 여부 등에 따라 종합 선정됩니다.

해외전시회 단체참가 지원사업

사업개요

KOTRA와 유관기관이 연간 100여개 국제 유명 전시회 및 신흥 유망전시회에 공동으로 한국관을 구성하여 국내 수출업체의 전시회 참가를 도와드림

지원내용

- 지원대상 : 국내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중소·중견기업
- 주요 지원사항 * 각 전시회별 세부 지원사항은 해당 공고문에서 확인 요망
  - 부스 임차료와 장치비의 70% 이내 국고지원
  - 운송비 1CBM 편도 100% 지원
  - 한국관 디렉토리 제작비 100% 지원
  - 한국관 부스 임차, 전시회 참가에 따른 주최측 서류 제출 등 행정지원
  - 한국관 공식 협력사 선정(장치사, 여행사)
  - 사전 마케팅 활용을 위한 관심바이어 리스트 제공
  - 사전 통역원 섭외, 현지 한국관 홍보 등

신청·접수

- 공고(예정) 시기 : 전시회 개최일 4-6개월 전 공고 게재

- 신청방법 :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 무역투자24 또는 글로벌전시플랫폼(GEP)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접수
- 선정평가 : 'KOTRA 참가업체 선정기준'에 따라 본사, 무역관, 공동수행기관이 평가
  - 정책 우대 가점 사항 : 내수기업수출기업화사업 참가기업 또는 내수·수출 초보 기업, 전문무역상사, 정부 지정 수출 유망품목, 혁신적 조달기업 등
- 진행절차 : 기업모집 완료 후 약 21일 이내 평가 및 선정 결과 통보

문의처

- 소관 부처 및 부서명 : KOTRA 해외전시팀
  (전화) 02-3460-7299 / 3334

Q&A

Q **해외전시회 단체참가 신청을 위한 필수서류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A 한국관 참가 신청서, 전시품목 상세서, 사업자등록증, 기업 카탈로그 및 브로셔, 해외전시회 참가를 위한 각서가 있습니다. 모든 서류를 제출해주셔야 신청으로 인정됩니다.

Q **전시회 선정 리스트는 어디에서 볼 수 있나요?**

A 글로벌전시포털(GEP) → 지원안내 → KOTRA 단체참가 접속 후 하단의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외전시회 개별참가 지원사업

사업개요

- 국내 중소·중견기업이 자율적으로 선택한 해외전시회의 참가비를 지원함으로서 해외전시회 참가를 촉진하고 수출을 증대하기 위한 사업

지원대상

- 신청자격 : 2026년 해외에서 개최되는 전문전시회에 개별참가하는 국내 중소·중견기업
  - 중견기업은 총 모집규모의 5% 이내로 선정 및 지원

신청제외 대상

- ▸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또는 채무보증제한'에 속하는 기업
- ▸ 정부부처, 지자체, 유관기관 등의 다른 사업으로 동일한 해외전시회 참가비용에 대해 국고 또는 지방비 등의 중복 수혜기업
- ▸ 관련법상 중소기업에 해당되지만, 대기업 계열사인 경우

지원내용

- 지원 세부내용 : 해외전시회 참가비용 및 해외마케팅 서비스
  - (참가비용 지원) 기업당 해외전시회 1회, 최대 600만원 내 사후 실비지원
  - (해외마케팅 지원) 내수·수출초보기업 대상 해외무역관의 마케팅 서비스 지원

- 지원규모 : 1,200개사 내외
- 참고사항 : 민간 협·단체를 통해 전시회 신청 및 참가 시, 필수 구비서류 제출의 경우에 한해 지원

신청·접수

- 추진일정 : '25.11.21. ~ '26.12.31.
  - 모집('25.11.21.~12. 5.) → 심사(~12.30.) → 발표(12.31.) → 지원('26년 연중)
- 신청방법 : 무역투자24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접수
- 제출서류 : 신청각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등
- 선정평가 : 수출실적, 진출지역 유망성, 기업경쟁력, 전시참가 기대성과, 수혜 실적, 정책호응도, 정부정책 우대에 따른 기타 가산점 항목 존재
- 주요절차 :

모집공고	접수 및 선정평가	정산 및 마케팅 지원	사후 지원
KOTRA	(선정평가) KOTRA, 한국전시산업진흥회	(정산) 한국전시산업진흥회 (지원금 교부) KOTRA (마케팅) KOTRA	KOTRA

문의처

- KOTRA 해외전시팀 : (전화) 02-3460-3330
- 한국전시산업진흥회 : (전화) 02-420-2042
  (이메일) ex@akei.or.kr

Q&A

Q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며 선정 기준점수가 몇 점인가요?**

A 매 모집마다 신청기업 수, 신청가능 기업 수, 신청 기업의 기준 등이 다르므로 선정 기준점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준점수는 안내가 어려우며, 모집공고문 상 기업 선정 기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Q **지원금 정산절차는 어떻게 되며, 입금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A 기업의 해외전시회 참가 → 기업 사후정산 자료 제출 → 운영기관 자료 검토 → 지원금 지급 순으로 이루어지며, 서류를 제출한 순서대로 진행됩니다.

자료 제출 후 입금까지는 행정절차 수행에 따라 약 1~2개월 소요됩니다.

해외유통망 연계 소비재 B2C 수출 지원사업

사업개요

- 지원체계 : 글로벌 유통망과 해외 로컬유통망 입점·판촉 지원

타깃 플랫폼	세부사업
한국에서 해외 직접 입점·판촉 가능	❶ (글로벌 오픈 마켓플레이스) 파워셀러 육성사업 - 입점초보 기업부터 최상위 셀러까지 단계별 직접 입점·판촉 지원 * Amazon(US·JP) / Shopee(동남아) / 이베이 닷컴(전세계 190개국)
해외 현지에서만 입점·판촉 가능	❷ (해외 로컬유통망) 1무역관 1유통망 협력사업 (연중, 전주기) - 코트라 무역관별 최소 1~2개의 유망 로컬유통망과의 중장기 협력파트너쉽 구축을 목표로 입점·판촉 지원 유통망 확대

- 지원기간/장소 : 연중 / 온·오프라인
- 사업규모 : 4,800개사

지원대상

- 신청자격 : 해외 유통망 입점 희망 소비재 기업

지원내용

- (파워셀러 육성사업)
  - (시기/장소) 연중('26.2~11월) / 온라인

- (사업규모) 지원기업 2000개사 , 글로벌 유통망 3개사

* 입점·마케팅교육 웨비나, 인증·상세페이지 제작 지원, 기획마케팅 등 전자상거래 수출 지원

- (1무역관 1유통망 협력사업)
  - (시기/장소) 연중('26.2~11월) / 온·오프라인(해외)
  - (타깃고객) 소비재 분야 중소·중견기업
  - (지원방식)
    (입점) 해외 무역관 발굴 유통망의 입점 정책 등 설명회 개최, 입점 대상 선정을 위한 상담 주선 등
    (판촉) O2O(offline to online)판촉전, 인플루언서 활용 마케팅, 소셜미디어 연계 마케팅 등

신청·접수

- 공고(예정) 시기 : 상반기 중
  (파워셀러 육성사업) 상반기 중
  (1무역관 1유통망 협력사업) 연중
- 신청방법 : 코트라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제출서류 : 기업, 품목 정보
- 선정평가 : 시장성 평가

문의처

- KOTRA 소비재팀 : 02-3460-7747, 7745

한류 활용 해외마케팅 지원

사업개요

글로벌 한류 확산에 따른 파급 효과를 유망 소비재 및 서비스 산업과 연계, 한류박람회 등 한류 활용 마케팅을 추진하여 국내 유망 중소·중견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확대 및 브랜드 제고를 선도적으로 지원

〈 전년대비 달라지는 내용 〉

구분	'25년	'26년
사업명	미니 한류박람회(2회)(폐지)	한류박람회(2회)
사업내용	한류체험과 연계한 B2B·B2C 마케팅 사업	한류체험과 연계한 B2B·B2C 마케팅 사업
지역	2개 권역	`2개 지역

지원대상

- 신청자격 : 한류 기반 소비재 수출기업

지원내용

- 한류박람회(Korea Brand & Entertainment Expo, KBEE) : 한류 홍보대사를 지정, 한류 스타 이벤트와 연계한 B2C 판촉과 B2B 상담회 진행, 해외 진출 및 브랜드 제고 지원

- 대한민국 브랜드엑스포

  국내 소비재 분야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 대·중소 동반 성장 사업, 롯데 그룹과 협업하여 B2B 수출 상담 지원

신청·접수

- 공고(예정) 시기 : 상하반기 각 1회
- 신청방법 : 코트라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제출서류 : 기업, 품목 정보
- 선정평가 : 시장성 평가

문의처

- KOTRA 소비재팀 : 02-3460-7738, 3344

해외 프로젝트 수주 지원 사업

사업개요

〈 전년대비 달라지는 내용 〉

구분	'25년	'26년
지원대상	국내 건설·플랜트·엔지니어링 기업	변동 없음
지원내용	해외 프로젝트 정보 및 발주처 상담 및 애로상담	변동 없음
신청접수	KOTRA 홈페이지	변동 없음

지원대상

- 신청자격 : 해외 프로젝트 수주에 관해 지원이 필요한 국내 건설·플랜트·엔지니어링 기업

지원내용

- 지원 세부내용 : 애로상담, 프로젝트 정보 제공, 해외 발주처 상담
  - (애로상담) : 신청시 내용 검토 후 이메일, 유선 또는 대면 상담 서비스 제공
  - (프로젝트 정보) : KOTRA 해외 조직망을 통해 발굴된 국가별 유망 프로젝트 정보 온라인 조회
  - · 조회 방법: https://dream.kotra.or.kr → 해외경제정보 → 산업·품목정보 → 입찰·조달정보 → 유망프로젝트

· 프로젝트 뉴스레터 발송 : 신규 등재 해외 프로젝트 정보 메일 알림

· 프로젝트 카카오톡 채널 운영 : 해외 프로젝트 동향 및 국내외 프로젝트 행사 안내

- (해외 발주처 상담) : 글로벌 그린허브 코리아(GGHK), MDB 프로젝트 플라자 등 발주처 유치 프로젝트 설명회 및 상담회를 통한 발주처 초청 및 1:1 상담 기회 제공

신청·접수

- 공고(예정) 시기 : 연중
- 신청방법 :
  - (애로상담) : KOTRA 홈페이지(https://www.kotra.or.kr) → 상단 메뉴 중 '문의·상담' → '온라인 상담' → '상담신청'
  - (프로젝트 정보) : KOTRA 해외경제정보드림 홈페이지 (https://dream.kotra.or.kr) 통해 자체 조회
  - (해외 발주처 상담) : 각 사업별 홈페이지 통해 신청
    · 사업 공지 : KOTRA 홈페이지(https://www.kotra.or.kr) → 상단 메뉴 중 '사업신청'*

    * GGHK, MDB 등 KOTRA 홈페이지 내 사업신청 가능
  - (프로젝트 정보 및 해외 프로젝트 동향) : 뉴스레터 및 카카오톡 신청
    · 뉴스레터 : consultants@kotra.or.kr로 뉴스레터 발송 신청
    · 카카오톡 : 카카오톡 → "KOTRA 해외프로젝트 수주지원" 채널 검색
- 제출서류 :
  - (애로상담, 프로젝트 정보) : 별도 제출 서류 없음
  - (해외 발주처 상담) : 홈페이지 접속시 기본정보 입력

- 추진절차 :
  - (애로상담) 이메일 접수 → 애로상담센터 검토 → 1차 상담(국내)→ 필요시 2차 상담(해외무역관) → 지원 조치(조사·상담) → 피드백 및 완료
  - (해외 프로젝트 정보) 별도 절차 없음
  - (해외 발주처 상담) 사업 홈페이지를 통한 사업 신청 및 기업 정보 등록 → 해외 발주처 및 프로젝트 정보 확인(온라인 사전 게재) → 상담주선 기간에 맞춰 홈페이지를 통한 상담 신청 → 상담회 기간 온라인 화상 상담 또는 오프라인 현장 상담 → 상담 결과 제출 → 사후 지원

문의처

- KOTRA 인프라산업팀 (02-3460-3252, 7494)
  (jamie@kotra.or.kr, ernestoyook@kotra.or.kr)

이동 KOTRA

사업개요

수출 및 수출 준비 단계에서 애로를 겪는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KOTRA 수출전문위원이 방문하여 무료로 상담해 드리는 찾아가는 1:1 현장 컨설팅

지원대상

- 신청자격 : 수출관련 상담이 필요한 전국의 중소·중견기업 누구나
- 지원조건 : 없음

지원내용

- 지원 세부내용 : KOTRA 및 수출유관기관 지원사업 안내
  타겟 수출시장 추천 및 현지시장 정보 안내
  해외 수출입 데이터 활용 기업별 목표시장 도출
  무역실무 관련 상담(계약서 및 신용장 검토, 통관절차 안내 등)
  TriBIG(빅데이터 플랫폼) 잠재 바이어 추천
  KOTRA 해외마케팅 사업 참가기업 대상 사후지원 컨설팅

신청·접수

- 공고(예정) 시기 : 연중 상시

- 신청방법 : KOTRA 무역24 (www.kotra.or.kr) 로그인 (*소속 기업회원 등록 필수) → 상단메뉴 [문의·상담] → 좌측 [이동 KOTRA] → 하단 [신청하기]클릭

* 기업 소재지별 해당 지역의 수출전문위원이 유선 상담 후, 기업 맞춤형 무료 방문 상담 지원

문의처

- KOTRA 지방협력팀(사업총괄) (전화)02-3460-7368

지역	지역	수행 부서	연락처
수도권	서울	지방협력팀	02-3460-7374
	경기 남부	KOTRA경기지원본부	031-273-6902
	경기 북부	KOTRA경기북부지원본부	070-7931-0442
	경기 산단	지방협력팀	070-8845-7500
	인천	KOTRA인천지원본부	032-822-9820
	인천 산단	지방협력팀	070-8895-7493
영남권	대구·경북	KOTRA대구경북지원본부	053-659-2549
	구미(경북)	KOTRA대구경북지원본부 구미분소	054-455-2975
	부산	KOTRA부산지원본부	051-740-4153
	울산	KOTRA울산지원본부	052-289-4654
	경남	KOTRA경남지원본부	055-290-0604
호남권	광주·전남·제주	KOTRA광주전남지원본부	062-369-9054
	전북	KOTRA전북지원본부	070-7931-0812
충청권	대전·세종·충남	KOTRA대전세종충남지원본부	042-362-8328
	천안(충남)	KOTRA대전세종충남지원본부 천안분소	041-415-1571
	충북	KOTRA충북지원본부	043-218-2901
강원권	강원	KOTRA강원지원본부	033-261-5312

* 수출유관기관의 마케팅협업관련, 이동KOTRA 현장상담지원 요청 시, 지역별 수행부서로 문의

무역사절단

사업개요

KOTRA가 지차체·유관기관과 지역 산업 중심 전문품목 세일즈단을 구성하여 현지 시장조사·잠재 바이어발굴 및 온·오프라인 수출 상담을 지원하는 해외마케팅 사업

지원대상

- 신청자격 : 해외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국내 중소·중견기업
- 지원조건 : 무역사절단 주관 지자체 소재지 기업
- 우대사항/신청제외 대상 : 각 지자체별로 상이하며, 사업 공고 확인 및 지자체 문의 필요

지원내용

- 지원 세부내용
  - 무역사절단 파견국별 시장 동향 조사 및 잠재 바이어 발굴
  - 목표시장 잠재 바이어와 온·오프라인 상담 지원
  - 지사화사업 등 KOTRA 사업 연계를 통한 사후 지원 등
- 지원규모 : 555개사(사업별 10개사 내외)
- 지원금액 : 사업별 상이

신청·접수

- 공고(예정) 시기 : 상시(사업별 개최기간 3~4개월 전)
- 신청방법 : 무역사절단 파견기관(광역·기초 지자체, 유관기관 등) 또는 KOTRA 홈페이지(www.kotra.or.kr)를 통한 참가 신청
- 제출서류 : 기업·품목 정보, 영문 카탈로그, 인증서 등
- 선정평가 : 신청업체 품목에 대한 해외무역관의 상담주선 가능성 평가와 파견기관의 자체 평가기준에 따른 심사로 선정
- 추진절차

KOTRA홈페이지 연간 계획 확인	→	사절단 파견기관에 참가 신청	→	참가업체 선정
연초(1월경)		연중(신청 기간 준수)		파견 12주 전

↓

상담 A/S 지원	←	현지 수출 상담 실시	←	기업·상품 정보 온라인 등록 (buykorea.org), SNS 광고, 화상 상담 등 상담 준비
수출 상담 후 2개월간		1일간		파견 10주 전

문의처

- KOTRA 지방협력팀(사업총괄) (전화) 02-3460-7371

구분	지역	지역	주관부서	연락처
계획수립/ 사업시행	수도권	서울*	지방협력팀	02-3460-7371
		경기 남부	KOTRA경기지원본부	031-273-6032
		경기 북부	KOTRA경기북부지원본부	070-7931-0743
		인천	KOTRA인천지원본부	032-822-9361
	영남권	대구·경북	KOTRA대구경북지원본부	053-659-2556

구분	지역	지역	주관부서	연락처
		구미		054-455-2970
		부산	KOTRA부산지원본부	051-740-4155
		울산	KOTRA울산지원본부	052-289-8056
		경남	KOTRA경남지원본부	055-290-0602
	호남권	광주·전남·제주	KOTRA광주전남지원본부	062-369-8612
		전북	KOTRA전북지원본부	063-714-3485
	충청권	대전·충남·세종	KOTRA대전세종충남 지원본부	042-862-8313
		천안		041-415-1513
		충북	KOTRA충북지원본부	043-217-0016
	강원권	강원	KOTRA강원지원본부	033-261-5314

참고사항

Q&A

Q **무역사절단 참가 신청은 소재지 구분 없이 연간 사업 내역에 명시된 사업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무역사절단은 광역 및 기초 지자체·유관기관 등 파견기관과 협업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협업기관에 따라 관할 소재지 또는 관련 산업군 대상으로 업체 선정하여 추진하는 사업인바, 관심있는 사업의 주관부서에 먼저 문의하시기를 바랍니다.

Q **서울 지역의 연간 무역사절단 사업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A 서울 지역의 해외사업은 KOTRA 산업 부서별로 사업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바, 업체 품목에 맞는 부서 확인 후, 문의주시기를 바랍니다. (대표전화 1600-7119)

Q **무역사절단 참가비는 얼마인가요?**

A 지자체·유관기관 주최 사절단은 파견기관의 재원으로 사업을 추진하는바(참가기업 출장여비 제외), 업체의 참가비 부담은 없으나, 전시회 연계 사절단이나 세부 프로그램 등 사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로 관심 사업의 주관 부서로 문의하시기를 바랍니다.

Q **무역사절단 참가 신청관련 파견기관에 신청했는데, KOTRA 홈페이지에도 신청해야 하나요?**

A 지자체·유관기관 등 파견기관에서 주로 사업 참가 신청을 접수한 후, 최종 선정기업을 대상으로 KOTRA 홈페이지에 사업 참가토록 하여 시스템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외무역관에서는 바이코리아에 등록한 업체의 상담품목 검토→ 바이어발굴·상담주선→ 상담실적입력 등 시스템화하여 평가하기에 참가업체의 KOTRA 사업신청은 필수사항입니다.

해외 공공조달 선도기업 육성사업

사업개요

〈 전년대비 달라지는 내용 〉

구분	'25년	'26년
활동예산 사용지침	• (예산지원 불가 항목) 지사화 사업을 제외한 KOTRA의 타 유료서비스 사업비용 (조사대행, 세일즈 출장, 설명회)	• (예산지원 불가 항목) 지사화 사업을 제외한 KOTRA의 타 유료 서비스 사업비용(조사대행, 세일즈 출장, 설명회 등) 및 컨설팅사 자문 비용(물류통관·특허인증 관련 제외)
활동예산 사용지침	• (자부담금 반환 지침) 명시 규정 없음	• (자부담금 반환 지침) 협약 체결 이후 사업 종료까지의 기간 중 3분의 2가 도래한 이후 기업의 요청으로 사업 취소 시 기업 자부담금을 반환하지 아니한다.

지원대상

- 신청자격 : 해외조달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중소, 중견기업
- 지원조건 : 평가를 거쳐 선정된 기업 대상 지원(참가비 납부 필수)
- 우대사항 : 혁신조달제품 보유기업(2점), 중소기업기술마켓 인증기업(2점)

신청제외 대상

- ▸ 동 사업 5년 연속 참가한 국내기업은 지원 불가능
- ▸ 사업 참가 신청 후, 평가위원회를 통해 미선정 시 사업 진행 불가능

지원내용

- 지원 세부내용 : 참가 기업의 공공조달 시장 진출을 위한 연간 해외 마케팅 활동 지원 (전시회 참가, 제품홍보 세미나 개최, 홍보 광고 제작 등)
- 지원규모 : 국내 중소·중견기업 13개사
- 지원금액 : 기업당 최대 1천만원 한도 지원 (단, 기업 참가비 300만원 VAT 포함 납부)

신청·접수

- 공고(예정) 시기 : '26.1.2~1.18
- 신청방법 : KOTRA 홈페이지 → 2026 해외 공공조달 선도기업 육성사업 → 참가 신청 및 제출서류 첨부 (용량이 큰 경우 이메일로 접수 p300@kotra.or.kr)
- 제출서류 : 1) 참가신청서 및 서약서, 2) 해외 마케팅 로드맵, 3) 사업자등록증 사본, 4) 기업 소개자료 및 제품 국문 카탈로그, 5) 기업 소개자료 및 제품 영문 카탈로그, 6)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 선정평가 : 기업 제출서류 기반, 선정평가 진행(KOTRA 본사 및 무역관, 외부 평가위원으로 구성)

심사·평가 주요내용

▸ 사업 적합성, 해외 마케팅 역량, 기업 적합성 등 평가

- 추진절차 : 참가기업 모집공고 → 참가기업 선정 → 참가비 납부 및 협약서 체결 → 전담 해외무역관 관리하에 사업 수행 → 결과 보고

문의처

- 산업통상부
- KOTRA 인프라산업팀(02-3460-7482)
- 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등 추가

참고사항

① 2026 사업공고

- 공고명 : 2026 해외 공공조달 선도기업 육성사업
  - (경로) bizinfo.go.kr – 정책정보 – 지원사업 공고
  - (홈페이지)

FTA해외활용지원센터

사업개요

- FTA 활용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와 KOTRA가 9개국 11개 도시에 설립하여 운영
- FTA를 보다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심층 상담을 실시하며 각종 애로해소를 돕고 있음

지원대상

- 해외 바이어 및 국내·해외 진출 중소·중견기업

지원내용

- FTA 활용 관련 관세·비관세 장벽에 대한 기업의 애로해소를 위한 상시 컨설팅 제공
  - 국내 관세법인, 현지 자문사(광저우 물류통관법인, 뉴델리 통상 관련 자문사)와의 계약을 통해 전문성 있는 상담 제공
- 현지 설명회, 헬프데스크 운영을 통한 대면 컨설팅 제공
  - 현지 관세 전문가들의 네트워킹을 통한 현지 유관기관과의 소통 창구 마련

- FTA를 활용한 글로벌사우스 진출 설명회 및 상담회(국내) 개최
- 발간 자료

한미FTA실무활용 가이드영상	FTA 궁금증을 한 권에! FTA센터 상담 FAQ	2024 FTA해외활용 지원센터 우수사례집	FTA를 활용한 글로벌 사우스 진출설명회 영상

- 한미 FTA 등 최근 이슈를 반영한 FTA실무활용가이드 영상 제작
- 현지 상담을 기반으로 한 FTA 활용 우수사례집 발간

신청·접수

- 신청방법 : 문의처로 연락 시 해당 FTA 적용 지역의 센터로 연결

문의처

- FTA해외활용지원센터 연락처

센 터	전 화	이메일
베이징	(86-10) 6410-6162	shensy23@kotra.or.kr
광저우	(86-20) 2208-1623	kikihuang@kotra.or.kr
도쿄	(81-3) 6371-4438	ej.lee@kotra.or.kr
하노이	(84-24) 3946-0511	yeoram@kotra.or.kr
호치민	(84-28) 3822-3944	khjccb@kotra.or.kr
뉴델리	(91-11) 4230-6300	hanheum_oh@kotra.or.kr
자카르타	(62-21) 574-1522	audrey@kotra.or.kr
방콕	(66-2) 035-1555	parkhk@kotra.or.kr
쿠알라룸푸르	(60-1)-2956-2144	jason1119@kotra.or.kr
마닐라	(63-2) 8894-4084	benzkang@kotra.or.kr
프놈펜	(855-23) 999-099	fta.bryan@kotra.or.kr

- KOTRA 통상협력팀, 02-3460-7507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사업개요

국내복귀기업 지원제도는 해외에서 생산활동을 하던 기업이 국내복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투자보조금, 세제혜택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

지원대상

신청자격

필수	세부 내용
해외사업장 2년 이상 운영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 정보통신업, 방역 · 면역산업, 산업발전법상 지식서비스산업에 해당하는 업종으로, 2년 이상 정상영업 활동을 하였을 것
해외사업장의 실질적 지배자가 대한민국의 법인(개인)일 것	해외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대한민국 법인(개인, 재외동포, 외국인 투자기업 가능) 당사자가 종속사업장 중 지원받을 투자사업장명으로 신청

지원조건

이행	세부 내용
해외사업장의 구조조정	해외사업장 ①청산 ②양도 ③생산량 축소 ④구조조정 면제 중 한가지에 해당할 것
국내사업장 투자	해외사업장의 업종과 동일한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 중분류상 동일 또는 유사성 인정)으로, 국내사업장의 신 · 증설 투자유형 중 한 가지를 이행할 것 ① 신설 : 신축 또는 기존 건물을 공장용도로 변경하여 제조시설 설치 ② 증설 : 증축 등 공장건축 연면적을 넓히는 것 ③ 공장매입(임차) 공장을 매입(임차)하고, 제조시설 설치 ④ 유휴면적 투자 : 기존 공장 내 유휴면적에 제조시설 설치

지원내용

인센티브	세부 내용
투자보조금	▸국내사업장 투자에 필요한 입지 및 설비 투자 지원 ▸선정 건당 국비 기준 300~400억원 이내 보조금 지원 (기업당 600억원 한도)
이전보조금	▸해외사업장 이전 소요비용 지원, 선정 건당 국비 기준 4억원 이내 지원
조세감면	▸(법인세) 최대 7년간 100% + 3년간 50% 감면 ▸(관세) 신규·중고 자본재 수입관세 최대 100% 감면
외국인 고용 지원	▸E-7, E-9 비자 발급 지원
구조조정컨설팅	▸해외사업장 구조조정컨설팅 비용의 30%~70% 지원 (USD 20,000한도)
로봇도입지원	▸사업 신청 시 가점(2점) 부여, 과제당 총 사업비의 50% (최대 2.5억원) 지원
입지지원	▸국공유재산 수의계약 허용, 최장 50년 국공유지 임대 가능 ▸산업단지 우선 입주 선정 시 우대
금융지원	▸시설투자금액 90% 이내 대출 지원, 금리우대 최대 50bp ▸운영자금 대출, 소요자금(수출금액)의 80~90%, 금리우대 최대 30bp
보증·보험 지원	▸국내사업장 설치 또는 운영에 소요되는 운전·시설자금 보증 지원
수출마케팅 우대서비스	▸수출24 글로벌대상 서비스 수수료할인(20%), 지사화사업 선정 가점 부여

신청·접수

- 공고(예정) 시기 : 상시모집
- 신청방법 : Invest KOREA 홈페이지 및 이메일 접수
  - Invest Korea 홈페이지(www.investkorea.org) - 국내복귀기업 지원 - 사업신청 - 국내복귀기업 지원 신청

◉ 추진절차

단 계	주요내용	비 고
신청접수	▸ 국내 기업 병의로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신청기업 → KOTRA
검토 · 심사	▸ 국내복귀기업 선정요건 검토 및 1차심사, 해외사업장 현장실사, 외부 평가위원 검토	KOTRA
심사보고	▸ 심사보고서 작성 및 증빙서류 제출	KOTRA → 산업부
선정확인서 발급	▸ 심사보고서 검토, 선정 여부 결정 및 통보	사업부 → 신청기업

문의처

◉ 문의처 : KOTRA 국내복귀지원팀
(02-3460-7361~4, reshoring@kotra.or.kr)

경제외교 활용포털

사업개요

정상급 경제외교 계기를 통해 양국 간 이뤄지는 경제 협력의 성과를 한눈에 확인하고, 우리 기업이 비즈니스 기회를 찾을 수 있도록 경제외교와 관련된 종합 정보를 제공하는 포털 사이트

지원내용

- 경제외교활용포털 (https://president.globalwindow.org) 접속

구 분	주 요 내 용
경제외교 성과	정상회담 계기의 공동성명, 합의내용 및 경제행사 등 경제 · 산업 성과 수록
경제외교 종합정보	정상 순방 및 방한국의 국가 정보, 해외기업 정보, 상품 · 산업 정보, 전시회 정보 등 경제외교 관련 종합 정보 제공
비즈니스 파트너십 지원	정상회담 등 다양한 외교적 계기로 추진하는 경제사절단 모집공고 게재
경제외교 활용사례	경제외교 연계 비즈니스 파트너십 및 후속사업 참가 계기의 수출계약, 투자진출 등 성과 기업사례 공유
후속조치 사업	정상회담 공동성명 · 합의내용에 대한 양국 정부 간의 후속조치 및 관심 기업이 활용 가능한 참가 사업과 결과 안내

문의처

- KOTRA 경제협력지원팀 (02-3460-7693)

참고사항

① 기타사항

◉ 제목 : 경제외교 참가기업 성과사례

- (경로) 경제외교활용포털 〉 경제외교 참가기업 이야기 〉 참가기업 이야기 〉 기업 성과사례
- (홈페이지)

해외전문인력 유치

〈글로벌 인재발굴 서비스〉

사업개요

- 국내기업이 필요로 하는 우수 해외인재 발굴을 돕는 서비스

서비스대상

- 해외인재 발굴 및 채용에 관심있는 국내기업

유치대상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상 E-1(교수), E-3(연구), E-4(기술지도), E-7(특정활동) 및 D-8(기업투자)비자에 해당하는 해외인재

제공정보

- 해외인재 이력서(발굴 인재가 직접 작성한 이력서)

신청·접수

- 신청시기 : 연중 상시

- 신청방법 : 해외인재유치센터 홈페이지(www.kotra.or.kr/gtc_kor) 온라인 신청
- 추진절차
  - 소요 기간 : 인재 발굴 신청 후, 3주

글로벌 인재 발굴 신청 → 글로벌인재 발굴 (KOTRA 해외무역관) → 발굴인재 정보 송부

문의처

- 해외인재유치센터 : 02-3460-7382 contactkorea@kotra.or.kr

〈글로벌 인재발굴 프리미엄 서비스〉

사업개요

- 첨단산업 국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우수 해외인재 발굴 지원을 위한 맞춤형 인재유치 서비스

서비스대상

- 첨단산업* 분야 해외인재 채용수요가 있는 국내 기업

  *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로봇, 방산, 인공지능, 첨단모빌리티

유치대상

- 첨단산업 분야의 해외 기업에 재직 중이거나 해외 교육기관에 재학중인 외국인 또는 내국인으로서 취업이 가능한 자

제공정보

- 해외인재 이력서(발굴된 인재가 직접 작성한 이력서)
- 해외인재 Shortlist : KOTRA가 발굴한 약 3명의 첨단산업 우수 해외인재 핵심정보* 리스트

  * 이직 관심도, 국적, 희망연봉, 학력, 경력, 논문, 특허 등

- 해외인재 리포트 : LTI 기반 링크드인 빅데이터로 분석된 국가, 산업별 채용현황 및 인재 분포 보고서

신청·접수

- 신청시기 : 연중 상시
- 신청방법 : 해외인재유치센터 홈페이지(www.kotra.or.kr/gtc_kor) 온라인 신청
- 추진절차

  - 소요 기간 : 인재 발굴 신청 후, 3주

글로벌 인재 발굴 프리미엄 서비스 신청 → 글로벌인재 탐색/발굴 (KOTRA) → 발굴인재 정보 송부 →

채용인터뷰(선택) → 고용계약 체결(기업) → 비자 추천(선택) 및 국내 정착 지원*

* K-Tech Pass 발급자 대상(8-14 참고 'K-Tech Pass 발급' 참고)

문의처

- 해외인재유치센터 : 02-3460-7399 talent.inquiry@kotra.or.kr

K-Tech Pass 발급

사업개요

- 첨단산업분야 우수 해외인재를 대상으로 탑티어(Top-Tier) 비자 및 정착지원 혜택 수혜에 필요한 자격인정증명서 발급을 지원

발급대상

- 첨단산업*에서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기술개발을 주도할 수 있는 수석 엔지니어급 이상의 우수 해외인재

  *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로봇, 방산, 인공지능, 첨단모빌리티

자격요건

- 공통요건 : 첨단산업 분야 국내기업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외국인
- 자격요건 : 3가지 유형

구분	유형1	유형2	유형3
	연봉, 학력, 경력 모두 충족	유형1 대비 연봉요건 강화, [괄호]에 해당하는 학력 또는 경력 요건 완화	탁월한 역량을 갖춘 인재

연봉		1인당 GNI 3배 이상 (약 1억5천만원)	1인당 GNI 4배 이상 (약 2억원)	첨단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기술 및 지식을 보유하여 그 필요성을 인정하는 자 * 추가 설명자료 제출 필요 및 별도 심사 진행
학력		세계 100대 이과·공과대학 자연과학·공학 분야 석사 or 박사 학위 취득	[세계 100대] 이과·공과대학 자연과학·공학 분야 석사 or 박사 학위 취득	
경력	산업계	세계 500대 기업 3년 포함, 8년 이상 근무	[세계 500대 기업 3년 포함,] 8년 이상 근무	
	연구계	글로벌 우수 연구기관 3년 포함, 박사 취득 후 총 5년 근무	[글로벌 우수 연구기관 3년 포함,] 박사 취득 후 총 5년 근무	

지원내용

- 입국지원
  - 본인 및 가족(배우자, 자녀)에게 최우수 인재 거주(F-2) 비자 발급(배우자 취업 가능)
  - 3년 경과 후 일정 요건 충족시 영주비자(F-5) 전환 가능
  - 동반입국 허용범위 확대(부모, 가사 보조인까지 포함)
  - 출입국 우대카드 제공(본인만 발급, 동반 3인까지 우대심사대 이용가능)
- 체류지원
  - (세제) 10년간 근로소득세 50% 감면
  - (교육) 직계 미성년 자녀의 외국인학교 정원외입학 허용

    * 최종 입학여부는 학교장이 결정
  - (정착) 정착 초기 절차적 불편 최소화를 위한 컨시어지 서비스 제공
  - (주거) 전용 전세보증상품 이용(출시 예정)

신청·접수

- 신청시기 : 연중 상시
- 신청방법 : 해외인재유치센터 홈페이지 (www.kotra.or.kr/gtc_kor) 온라인 신청·접수
- 추진절차
  - 소요 기간 : 서류 완비일로부터 2주

기업-해외인재 고용계약체결 → 발급 조건 확인 및 서류준비 → K-Tech Pass 인증서 발급 신청 → 서류 검토

이력확인 → K-Tech Pass 인증서 발급 → 비자 발급 신청 및 전자 사증 발급 → 컨시어지 서비스 신청(선택)

문의처

- 해외인재유치센터 : 02-3460-7379 ktech.pass@kotra.or.kr

고용추천서 발급 서비스

사업개요

국내 기업(기관)의 해외 전문인력 채용 시, 원활한 비자발급(E-7-1, E-7-S2, E-7-T)을 위해 KOTRA 명의의 고용추천서를 발급

발급분야

- E-7-1 비자 고용추천서 : IT, 기술경영, 나노, 디지털전자, 바이오, 수송 및 기계, 신소재, 환경 에너지 등 8개 분야에 속한 관리자 및 전문가 29개 직종* (홈페이지 참조)

  * '특정활동(E-7) 자격 해당자에 대한 사증 및 체류관리 지침(Hi Korea 체류자격별 통합 안내 매뉴얼)' 내 고용추천서 발급 주체가 KOTRA로 명시된 직종

- E-7-S2 비자 고용추천서 :「산업발전법」제5조에 따른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 35개 산업분야에 종사하는 연구·개발 등 종사자

- E-7-T 비자 고용추천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 제2호에 따라 고시되는 8개 국가첨단전략산업 ('25.12 기준: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로봇, 방산, 인공지능, 첨단모빌리티)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5-115호 별표1 '국가첨단전략산업'

자격요건

구분	자격요건
E-7-1 고용추천서	• 학력 및 경력 요건 (각호 중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자) - 해당분야에 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고졸, 전문학사 해당) - 해당분야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관련분야 1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단, 해당분야 국내대학 학사학위 소지자의 경우에는 경력 불문) - 해당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 소득요건 - 법무부 장관이 확정·공고한 임금 요건 기준 적용
	• 기타요건 - IT, 기술경영, 나노, 디지털전자, 바이오, 수송 및 기계, 신소재, 환경에너지 등 8개 분야에 종사하는 자 (단, 첨단기술이 반영된 제품의 제조·생산·수리 등 일반적인 직무를 수행하는 자는 제외)
E-7-S2 고용추천서	• 학력 및 경력 요건 (각호 중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자) - 해당분야에 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고졸, 전문 학사 해당) - 해당분야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관련분야 1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단, 해당분야 국내대학 학사학위 소지자의 경우에는 경력 불문) - 해당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 소득요건 -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의 1배 이상을 충족하는 자
	• 기타요건 (각호를 모두 충족하는 자) - 첨단산업·기술의 연구·개발 등 직무에 종사하며,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2022-36호에 따른 첨단기술·제품과 정확히 일치하는 분야의 기술·제품 등을 보유하였거나 그 분야에 직접적으로 종사하는 자 - 한국표준직업분류 상의 사무 및 단순노무 업종,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업종 및 그밖에 기타 관계 법령에서 국가 안보 등의 이유로 외국인의 취업을 제한되는 직종에 취업하지 않은 자
E-7-T 고용추천서	첨단기업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법무부 장관이 정한 탑티어(Top-Tier) 비자 요건(=우수 해외인재 기준*)중 소득요건을 제외한 나머지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5-45호 '우수 해외인재 기준에 관한 고시' 참조
	• 학력 요건 - 우수 해외인재 기준에 관한 고시 별표1에서 정하는 대학(세계 100대 대학)에서 이공계분야의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 경력 요건 - 우수 해외인재 기준에 관한 고시 별표2에서 정하는 기업(세계 500대 기업)에서 3년 이상 근무를 포함하여 8년 이상의 첨단산업 분야 관련 근무 경력을 가진 자 - 정부주도 연구소, 별표1에서 정하는 대학(세계 100대 대학)의 연구소 또는 별표2에서 정하는 기업(세계 500대 기업) 부설연구소에서 3년 이상 근무를 포함하여 박사 취득 후 5년 이상의 첨단산업분야 관련 연구경력을 가진 자
	• 소득 요건 - 연간 근로소득이 1인당 GNI 2배 이상인 자

신청·접수

- 이용료 : 무료
- 신청시기 : 연중 상시
- 신청방법 : 해외인재유치센터 홈페이지
  (www.kotra.or.kr/gtc_kor) 온라인 신청·접수
- 추진절차
  - 소요 기간 : 서류 검토일로부터 약 1개월

고용추천서 발급 신청 → 1차 서류 검토 (KOTRA 본사) → 이력 확인 (KOTRA 해외무역관) →
외부 평가위원 심사 → 고용추천서 발급 → 출입국 사무소 제출

문의처

- 해외인재유치센터
  02-3460-7388 ktech.pass@kotra.or.kr

KOTRA아카데미 교육·연수

사업개요

-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글로벌 역량(통상환경·시장트렌드·공급망 재편) 제고 및 누구나 무역할 수 있는 'AI 디지털 무역 전문인력 양성' 교육 제공

지원대상

- 신청자격 : 글로벌 시장 진출 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이 필요한 국내 중소중견기업
- 우대사항 : 소상공인 및 사회적기업 무료 수강 우대(연 3회), 인구감소지역 소재기업 무료 참가(연 2회)

지원내용

교육 과정명	주요 내용
글로벌 AI 리더 양성	중소·중견기업, 공기업/지자체 공무원 대상 AI활용 디지털 역량 향상 교육 과정 ▸ AI 기반 디지털 전환 및 마케팅 전략 등 온오프라인 교육 및 해외 연수
맞춤형 해외 연수 과정	KOTRA 해외무역관 네트워크를 활용한 맞춤형 해외 전시회 연계 벤치마킹 연수 과정 ▸ 오사카 엑스포, 하노버 산업박람회, 선전 메가쇼 등 해외 전시회 연계
AI 디지털 무역 과정	디지털 활용 마케팅 입문·기초·심화 단계별 기업 맞춤형 교육 과정 ▸ 입문(글로벌 이커머스 셀러, 빅데이터 입문), 심화(구글 SEO, SNS 활용 마케팅)

교육 과정명	주요 내용
글로벌 비즈니스 컨설턴트 양성 과정	중소·중견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수출마케팅 컨설턴트 양성 과정 ‣ 글로벌 경영전략 컨설팅, 해외시장 마케팅 방안, 주요 지역 진출전략, 협상 등
기업 역량별 맞춤형 과정	수출 초보·유망·중견기업 대상 역량별 맞춤형 수출 교육 과정 ‣ 수출 첫걸음, 해외 시장 진출 전략 수립 과정
글로벌 비즈니스 과정	성공적인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비즈니스 분야별 실무 역량 강화 과정 ‣ 해외 전시 마케팅, 글로벌 비즈니스 계약 실무, 글로벌 마케팅 과정 등
국가별 해외 시장 진출 과정	해외 유망시장별 전문 인력 육성을 위한 국가별 진출 전략 교육 과정 ‣ 인도네시아, 베트남, 일본, 미국 등 지역전문가 과정

신청·접수

- 공고(예정) 시기 : 연중(강의시작 2개월 前)
- 신청방법 : KOTRA 무역투자24(www.kotra.or.kr) 접속 → '사업신청' 클릭 → 관심 교육과정명 검색 → 교육 담당자별 문의
- 선정평가 : 정원 내 선착순 선정

  * 수출바우처 활용 가능(세부 내용은 각 교육 과정 담당자에게 문의 요망)

문의처

- 전 화 : (본원) 02-3497-1185 / (대전분원) 042-338-1707
- 이메일 : academy@kotra.or.kr

경제외교 활용 사업

사업개요

전략시장에 대한 대통령, 국무총리의 해외순방 및 해외정상 방한 시 비즈니스 파트너십을 개최하여 국내 기업과 해외 파트너 간 1:1 비즈니스 상담을 주선하며, 경제외교 후속사업을 수행하고 사후 관리를 지원

지원대상

- 모든 국내기업

지원내용

- 해외순방 연계 비즈니스 파트너십
  - 1:1 비즈니스 상담회 개최를 통한 기업 간 비즈니스 기회 제공, 정부 간 협력을 통한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 해외정상 방한 연계 비즈니스 파트너십
  - 외국 경제사절단 방한 시 1:1 비즈니스 상담회 개최, 무역·투자 교류의 기회 제공
- 경제외교 후속사업 및 사후관리 지원
  - 비즈니스 파트너십 참가기업의 무역·투자·프로젝트 유망상담 건 상시 지원

- 후속사절단 파견, 후속상담회 개최 등 추진

문의처

- 경제협력총괄팀 : 02-3460-7685
- 경제협력지원팀 : 02-3460-7665

참고사항

① 전년도 사업공고

- 공고명 : 아세안 경제사절단
  - (경로) 경제외교활용포털〉 경제외교 비즈니스 활용〉 비즈니스 파트너십〉 모집공고
  - (홈페이지)

② 경제외교 활용 우수사례

- 제목 : 기업 성과 사례
  - (경로) 경제외교활용포털〉경제외교 참가기업 이야기〉기업 성과 사례
  - (홈페이지)

해외경제정보드림(해드림)

사업개요

-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에 필요한 부처·기관 및 민간에 산재된 분야별 해외진출 정보를 수출 및 시장진출 단계별로 제공하는 범정부 통합 정보 플랫폼
- KOTRA 해외시장뉴스도 해외경제정보드림 사이트에서 확인

지원대상

- 이용자격 : 수출, 해외 투자진출을 원하는 모든 기업, 연구소, 학교 또는 개인은 무료로 이용 가능

이용방법

- 해드림 홈페이지(dream.kotra.or.kr) 접속

  * 일부 서비스는 로그인(기업회원) 필요

제공정보

구 분	주 요 내 용
해외경제 정보	해외진출 관련 기초정보 제공 해외경제정보: 국가별정보, 산업·품목정보, 경제·통상정보
해외진출	진출 단계별 해외수출·투자에 필요한 정보 해외수출: 수출기반준비-해외시장개척-계약및통관-사후관리 등 해외투자: 현지조사-투자준비-투자추진-현지경영-청산·복귀 등
분석서비스	국별모아드림, 수출통합보고서, 지원사업검색, 해외투자분석, 해외시장뉴스 이미지검색, 수출 MBTI(맞춤형 콘텐츠/사업 추천)
해외시장 뉴스	85개국 131개 해외무역관을 통해 수집한 전세계 산업·상품정보, 국가정보 등 수출관련 정보 등

문의처

- KOTRA AI플랫폼팀
  (전화) 02-3460-3304. 3305
  (이메일) bigdream@kotra.or.kr
- KOTRA 해외정보팀
  (전화) 02-3460-7403
  (이메일) qkrtpdus0526@kotra.or.kr

Q&A

Q **해드림의 해외진출 통합정보는 어떠한 기관들이 제공하고 있습니까?**

A 정부(기재부, 관세청 등), 공공기관(코트라, 수출입은행 등), 연구소, 협회, 민간기업 등 현재 90개 기관의 해외진출 정보를 통합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용어 설명

국별모아드림 : 국가개황정보, 출장자료, 산업정보, 보고서 등 해외진출정보를 국가별로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

수출통합보고서 : 품목별 해외진출 정보를 AI가 수집하여 한눈에 보고서 형태로 제공하는 서비스

이미지검색 : KOTRA의 해외시장뉴스에 제공되는 표, 그래프, 사진 등의 이미지 정보를 검색으로 보여주는 서비스

수출물류 통합정보 : 국별 항구현황, 해상스케줄, 물동량 등을 통합 제공하는 물류 전문 현황판 서비스

트라이빅(TriBIG)

트라이빅은 국가 무역·투자 빅데이터를 축적·분석하여 우리 기업에 필요한 품목, 시장, 해외바이어 추천 등의 맞춤형 정보를 서비스

지원대상

- 이용자격 : 수출, 해외 투자진출을 원하는 모든 기업, 연구소, 학교 또는 개인은 무료로 이용가능

이용방법

- 트라이빅 홈페이지(kotra.or.kr/bigdata) 접속

  * 일부 서비스는 기업회원 대상으로만 제공

제공정보

구 분	주 요 내 용
무역투자통계	한국 수출입통계, 글로벌 수출입 통계, 투자 통계 등 한국 무역현황 : 한국 수출입현황을 시장별/HS코드별(10자리)/연월별 제시 글로벌 무역현황 : 전세계 무역현황을 시장별/수출입지역별/HS코드별/연별 제시 외국인직접투자통계 : 외국인직접투자현황(FDI)을 투자지역별/ 연도 및 분기별 제시
국가별 시장정보	국가 개요정보, World Bank 지표, 유망 품목 정보, KOTRA 해외시장뉴스, 무역사기사례, 수입규제정보, 수출상위품목 등
품목별 유망시장	AI 기반 선정 품목별(HS코드 6단위 기준) 30대 수출 유망시장 정보, 국가별 대한국무역통계, 해외시장뉴스, 전시정보, 수입규제 정보 등

해외바이어 정보 (기업회원 대상)	해외바이어 추천 서비스 품목별 해외바이어 : 관심품목 키워드로 코트라DB 및 실수입 해외바이어 검색 기업별 해외바이어 : 등록 관심품목 키워드를 바탕으로 맞춤형 해외바이어 추천
기업별 맞춤정보 (기업회원 대상)	기업 정보를 바탕으로 분석한 맞춤형 유망시장 정보(HS코드 10단위 기준), 관심 바이어, 전시정보, 바이어 구매 인콰이어리 등

문의처

- KOTRA AI플랫폼팀
  (전화) 02-3460-3303
  (이메일) bigdream@kotra.or.kr

Q&A

Q **우리 기업에 꼭 알맞은 해외바이어 추천을 받고 싶으면요?**

A 트라이빅은 귀사에서 직접 입력한 기업 기본정보와 관심품목정보를 바탕으로 AI 알고리즘을 통해 해외 바이어를 추천해드립니다.

KOTRA 홈페이지에서 기업 기본 정보를, BuyKOREA에서 상품 정보를 보다 상세히 업데이트할수록 더욱 적합한 파트너를 추천 받으실 수 있습니다.

Q **해외바이어의 담당자 이메일/전화번호를 알 수 없나요?**

A 트라이빅은 해외바이어의 대표자명 및 대표연락처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해외기업 담당자의 이름, 이메일, 전화번호와 같은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하여 공개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 **트라이빅에서 추천해준 해외바이어와 컨택하고 싶습니다. 연계 서비스가 있을까요?**

A KOTRA 해외시장조사의 '사업 파트너 연결 지원'을 통해 트라이빅에서 추천한 해외바이어의 귀사 제품에 대한 관심 의향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항목별 시장조사'를 통해 트라이빅에서 추천된 품목별 유망시장에 대한 정보조사 서비스도 마련되어 있으니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관세대응 지원 사업

사업개요

통상환경 불확실성 확대 및 美 관세조치 지속에 따라 최신 관세·통상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관세 관련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을 위한 심층컨설팅 및 대체시장 개척 등 종합 지원

〈서비스 개요〉

구분	2026년
지원대상	수출 중인(또는 예정) 중소·중견기업
지원내용	관세대응 119 통합상담창구 운영 온라인 관세확인 시스템 운영 관세법인 심층커설팅 제공 관세대응 지원사업 제공
신청접수	KOTRA 홈페이지를 통한 접수

지원대상

◉ 신청자격 : 수출 중인(또는 예정) 중소·중견기업

신청제외 대상

▸ 별도 없음

지원내용

사업명		지원내용
1	관세 대응 119 통합상담창구	美 관세정책에 따른 원산지별 수출품목 관세율, 대체시장 파트너 발굴, 지원사업 등 중소기업 실시간 애로 상담 지원(수출전문위원 6명, 관세사 2명)
2	미국 관세 관련 최신 정보	美 관세조치 및 기업 영향 분석 등 KOTRA 최신 정보 신속 제공
3	온라인 관세 확인 시스템	미국 수출 제품에 부과되는 국가별 관세(상호관세, 펜타닐 관세, 301조 관세), 품목별 관세(자동차·부품, 철강·알루미늄 및 그 파생상품)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국내 유일의 서비스
4	관세법인 심층컨설팅	빈번한 관세정책 변경으로 우리 기업들이 수출 과정에서 겪고 있는 다양한 애로를 해소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관세 전문가들의 맞춤형 컨설팅 제공(CBP E-Ruling 대행 지원 등)
5	관세대응 지원사업	정보 제공, 컨설팅, 해외 마케팅 사업 등 KOTRA, 정부·유관기관 관세대응 지원사업을 망라하여 제공

- 지원금액 : 이용료 무료

신청·접수

사업명		시행시기	접수 방법
1	관세 대응 119 통합상담창구	상시 접수	- 대표전화: 고객안내센터(1600-7119) → 5번 '관세대응 119' 선택 - 온라인: KOTRA 무역투자24(www.kotra.or.kr) → '미국 통상 정책 관련 관세 대응 119 종합 안내페이지' → 상단 문의·상담 → 온라인상담 → 상담신청 (*24시간 운영) - 카카오톡: 하단 채팅 → 상단 돋보기 아이콘 → 'KOTRA' 검색 → 채널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선택 → 당일 운영시간 확인 후 상담원 채팅 옆 '문의' 클릭 - 상시대면상담: KOTRA 무역투자24 홈페이지 또는 본사 안내데스크에서 신청
2	미국 관세 관련 최신 정보	상시 제공	- KOTRA해외시장뉴스(news.kotra.or.kr) 접속 → 「미국 신정부 출범」배너 클릭 - 카카오톡(KOTRA 세계이슈톡톡 채널 친구 추가 → 정기 발송되는 통상 이슈 확인) - KOTRA 뉴스레터(주 2회 발송, KOTRA 회원가입시 [뉴스레터 수신동의] 체크) - 설명회(서울·지방·해외, 수시 개최, www.kotra.or.kr→ 상단「사업신청」→ 설명회 검색)

3	온라인 관세 확인 시스템	상시 제공	- KOTRA 무역투자24(www.kotra.or.kr) 접속 → 미국 통상 정책 관련 관세 대응 119 종합 안내페이지 클릭 → 온라인 관세확인 시스템 바로가기 클릭 - QR코드 스캔
4	관세법인 심층컨설팅	'26.2. ~ (잠정)	- KOTRA 무역투자24(www.kotra.or.kr) 접속 → '사업신청' 클릭 → 해당 사업명 검색 → 로그인/회원가입 후 참가 신청
5	관세대응 지원사업	'26.2. ~ (잠정)	- KOTRA 무역투자24(www.kotra.or.kr) 접속 → 미국 통상 정책 관련 관세 대응 119 종합 안내페이지 클릭 → KOTRA 관세대응 지원사업 메뉴판 다운로드 및 내용 확인

문의처

- KOTRA 해외진출상담센터(관세대응 119 전담반) :
  - 1600-7119 → ② 음성상담 → ⑤ 관세대응 119
  - 02-3460-7348/7157

해외 진출 및 인증상담

사업개요

중소·중견기업의 해외 진출 및 인증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전화, 온라인, 채팅, 내방상담 등 다양한 방법으로 무료 상담

지원대상

- 신청자격 : 수출, 해외 투자진출 관련 문의가 있는 모든 기업 또는 개인

신청제외 대상

- 기업의 수출과 관련 없는 학술 목적의 문의
- 현지 한국기업·한국인에 대한 평판 및 신인도 등의 문의

지원내용

- 지원 세부내용 :
  - 수출, 투자진출에 대한 전반적 상담 진행

수출	투자 진출
■ 무역실무 전반 ■ 거래선 발굴 방법 ■ 계약관련 서류검토 ■ 인증 및 규격 ■ 대금 결제 및 금융, 수출보험 ■ 해외시장정보 ■ 관세, 통관절차 ■ KOTRA 및 유관기관 지원 사업 안내	■ 지역별 투자 절차 및 법규 ■ 투자진출 유망지역 안내 ■ 법인 설립 절차 및 현지 노동법 안내

- 지역·기능별 상담

지 역	연 락 처	
미주·유럽	대표전화(1600-7119) - 2번(해외 진출 및 인증 상담)	내선 1번
아시아·일본		내선 2번
중화권		내선 3번
중동·아프리카·CIS		내선 4번
인증·규격		내선 5번
무역사기		내선 6번

* 카카오톡 채팅상담 또는 KOTRA 수출투자챗봇으로도 상담 가능

- 지원금액 : 이용료 무료

신청·접수

- 공고(예정) 시기 : 연중 상시
- 신청방법 :
  - (유선 상담) 고객안내센터(1600-7119) → 2번 '해외 진출 및 인증 상담' 선택 → '진출 희망지역' 혹은 '상담분야' 선택
  - (온라인 상담) KOTRA 사업신청 홈페이지(www.kotra.or.kr/biz) → 상단 메뉴 중 '무역투자상담' → '온라인 상담' → '신청하기'
  - (카카오톡 채팅상담) QR코드 스캔 → '채팅하기' 또는 카카오톡 우측 상단 돋보기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검색 → '채팅하기'
  - (방문상담) 전화(02-3460-7218)로 사전예약 (상담내용 및 스케줄 조율) → KOTRA 본관 1층(무역투자상담센터) 방문 상담

문의처

- KOTRA 해외진출상담센터 (전화) 1600-7119

Q&A

Q **대표전화 상담이 가능한 시간은 어떻게 될까요?**

A 월-금(공휴일 제외) 09:00-18:00 상담이 가능하며, 점심시간(12:30-13:30)은 제외입니다.

Q **대표전화 상담 시 지역 구분에 유의해야 할 내용이 있을까요?**

A 홍콩·대만은 3번 중화권, 몽골 및 중앙아시아(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등)는

4번 중동·아프리카·CIS로 문의 바랍니다.

Q **방문상담 희망 시 사전 예약을 꼭 해야 하나요?**

A 방문하시기 전 사전 전화 예약을 통해 고객님의 상담 희망 분야와 사업 내용을 알려주시면, 분야별 담당 전문위원을 지정하여 보다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기에, 가급적 유선을 통한 사전 예약을 부탁드립니다.

수출24 글로벌 대행(해외시장조사) 서비스

사업개요

KOTRA 해외무역관을 통해 잠재 바이어 발굴, 시장동향 조사, 원부자재 공급선 조사 등 수출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조사

지원대상

- 신청자격 : 국내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고 있는 기업

  - 컨설팅 기업의 경우 서비스 이용이 제한됨
  - 공정거래위원회 발표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기업은 수수료 2배 적용

지원내용

- 지원 세부내용 : 수출을 위한 해외시장조사, 파트너 발굴, 글로벌 마케팅 등

사업명		지원내용	수수료 (VAT 별도)
1	항목별 시장조사	수요동향, 수입동향 · 수입관세율, 경쟁동향, 수출동향, 소매가격동향, 유통구조, 품질인증제도, 생산동향 등 조사	15만 원/1항목
2	맞춤형 지원서비스	KOTRA 해외무역관이 섭외한 현지 전문가(또는 전담 인력) 활용, 고객 요구에 맞게 수행하는 맞춤형 유료 심층 서비스	개별 협의를 통해 책정
3	현지 매장 방문조사	신청기업과 유사한 제품을 판매하는 매장을 대리 방문하여 현장 조사, 판매자/소비자 인터뷰, 현장 촬영 등	45만 원

4	소비자 트렌드 설문조사	신청기업의 타겟군 대상 설문조사 * 최대 10문항, 최소 10개 회신 결과 제공	45만 원
5	샘플 테스트 조사	신청기업의 타겟군 대상으로 샘플에 대한 반응을 설문조사 * 최대 10문항, 최소 10개 회신 결과 제공 (배송비 실비부담)	45만 원
6	잠재 바이어 발굴지원	KOTRA 해외무역관이 직접 해외기업을 접촉해 교신의사를 확인 (담당자 정보 포함)	15만 원/개사
7	취급기업 정보조사	KOTRA 해외무역관을 통해 고객의 의뢰 품목을 수입 또는 취급하는 해외기업 상세 정보 제총 (교신지원 미포함)	20만 원/ 10개사
8	거래선 관심도 조사	신청기업이 보유한 해외 수입업체의 귀사 제품에 대한 관심 여부 조사	5만 원/ 개사
9	원부자재 공급선 조사	신청기업의 수출을 위한 완제품 가공 및 제조에 필요한 원부자재 해외 공급업체 발굴 (3개사)	30만 원
10	바이어 구매 성향 조사	수출 희망 제품 취급 바이어 대상 구매 성향 및 제품 현지 경쟁력 등 설문조사 실시	30만 원
11	해외 비즈니스 출장 지원	바이어 상담 주선 등 해외 출장 업무 지원	지역별 상이 (홈페이지 참조)
12	거래 교신 지원	초기 교신이 진행 중인 해외 수입업체와의 거래 교신에 회신 독려, 취지 전달, 의사 확인 등 대리지원	15만 원
13	샘플 대리 전달	분실/오배송 우려되는 경우, 무역관이 샘플을 대리 수령하여 전달	15만 원
14	대리 면담 지원	신청기업이 희망하는 해외 수입업체와 무역관이 대리 면담 진행	45만 원
15	바이어 실태조사	신청기업이 이미 접촉 중인 해외 수입업체(공장 등)를 대리 방문하여 존재 여부, 규모 등 요청사항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	45만 원
16	전시회 대리참관	신청기업이 희망하는 현지 전시회 대리참관, 요청사항 수행, 전시회 현장 정보(사진, 영상 포함), 바이어 명함 확보 등	45만 원
17	수입업체 연락처 확인	기업 존재 여부 및 대표연락처 확인. 연간 5개사까지 무료 지원 * 기업 신용도 및 구매담당자 정보는 서비스 제공 범주에 미포함	1만 원/ 개사

*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수수료 2배

신청·접수

- 신청방법 : 홈페이지를 통한 상시 온라인 신청

① KOTRA 홈페이지 접속 → ② 상단 '사업소개' 메뉴 클릭 → ③ '무역' 〉 '파트너 연결지원' 〉 '시장조사' 클릭 → ④ 하단의 '세부사업보기' 클릭 → ⑤ 희망하는 사업 선택 후 신청서 작성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에서 요구하는 제반서류 (바이어 제공용 브로슈어 등)
- 지원절차 : 서비스 신청 → 사전 유선상담(본사) → 해외무역관 지원 가능여부 사전검토(2주) → 수수료 결제 후 조사 착수(4주) → 결과보고서 제공 → 결과보고서 확인 및 경우에 따라 A/S 요청

문의처

- KOTRA 해외진출상담센터 : (전화) 02-3460-7343 / 7339

Q&A

Q **사회적 경제 기업인데 수출24 글로벌 대행 서비스 수수료 할인을 받을 수 있나요?**

A 예 가능합니다. 사회적 경제 기업 외에도 우수 고용 창출 기업, 우수 방산 기업, 소상공인, 국내복귀기업,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기업 등은 서비스 수수료 일부 할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세 내역은 매년 변동될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역은 홈페이지 및 유선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 **전세계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가요?**

A 예 그렇습니다. 전세계 131개 KOTRA 해외무역관의 사전 검토를 거쳐 조사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현지 사정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신규 접수가 불가한 무역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시 접수 불가의 경우 무역관과 해당 기간을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있으니 신청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기업의 어떠한 요청에 대해서도 모두 조사가 가능한가요?**

A 모든 조사는 해외무역관의 사전 검토 후 진행되며, 아래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① 조사대상이 해당 국가의 수출입 제한 품목인 경우

② 해당 국가의 시장성이 미약하거나 해당 품목 수입업체가 없는 경우

③ 조사대상이 3개월 이내에 이미 조사가 이루어진 품목인 경우

④ 조사로 인하여 지적재산권 분쟁을 유발할 수 있는 경우

⑤ 조사대상이 조사로 인하여 특정 지역에서 우리 업체 간 과다 경쟁이 예상되는 품목인 경우

⑥ 기타 무역관의 특수사정에 의거 조사 기간 내 업무수행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⑦ 사치성 소비재 수입 목적의 조사, 상도덕 또는 현지 법률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는 조사

글로벌 역량 진단(GCL Test)

사업개요

- GCL Test(Global Competence Level Test)는 기업의 수출 및 해외마케팅 부분별 세부역량을 진단하고 역량별 수출 지원 사업을 추천하는 서비스
- 진단 결과를 기업의 해외진출 전략 수립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음

〈 전년대비 달라지는 내용 〉

구분	'25년	'26년
지원내용	전략 및 리더십 역량/기술 여력/상품 경쟁력 역량.마케팅 역량/글로벌 네트워크 역량 총 5개 역량으로 구분	ESG 역량을 추가하여 6개 역량으로 진단 진행

지원대상

- 신청자격 : KOTRA 기업회원

신청제외 대상

▸ 별도 없음

지원내용

- 지원 세부내용 : 기업의 수출역량 성장단계 확인 및 세부역량별 강약점 분석
  - 진단 결과에 따른 맞춤형 지원사업 등 유선컨설팅 제공
- 지원금액 : 이용료 무료

신청·접수

- 공고(예정) 시기 : 연중 상시
- 신청방법 :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① KOTRA 사업신청 홈페이지(www.kotra.or.kr/biz/) 접속

② 상단메뉴 중 '맞춤형 서비스' 클릭

③ 글로벌역량진단(GCL TEST) 클릭

④ 로그인 후 설문 진행

- 추진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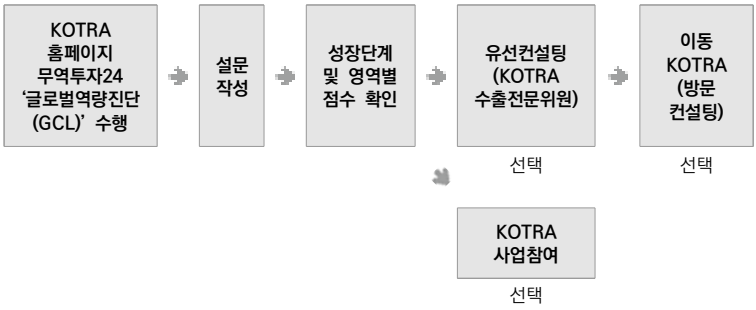

문의처

- KOTRA 해외진출상담센터 : (전화) 1600-7119

Q&A

Q **글로벌 역량진단 각 역량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A

① 전략 및 리더십 역량 : 리더의 수출의지, 수출을 위한 지속적 투자 수준, 수출자금여건, 경영진의 글로벌 리더십

② 기술역량 : R&D투자/집중도/인력규모, R&D중 현지화 제품/서비스 투자 비중, 국내외 지식재산권/해외 인증 확보 수준

③ 상품 경쟁력 : 품질 우위 수준, 가격경쟁력 수준, 제품/브랜드 인지도

④ 마케팅 역량 : 해외 마케팅 전담인력 규모, 마케팅 전담인력의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역량, 해외전시회 참여 빈도, 글로벌 고객 접촉 빈도, 해외시장 모니터링 수준

⑤ 글로벌 네트워크 역량 : 해외 고객사 보유수준/평균거래 유지기간, 해외거점/유통채널 확보 및 활용수준, A/S네트워크 수준, 해외고객 CRM 채널

⑥ ESG 역량: 환경 목표 설정, 친환경 혁신, 법규 준수, 사회적 책임 등 다양한 분야를 통해 기업의 ESG 경영 수준을 측정

열린 무역관

사업개요

KOTRA 해외무역관을 방문하는 고객들에게 근무 시간 중 사무공간, 시장정보 및 기초상담을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

지원대상

- 신청자격 : KOTRA 회원(기업/개인회원)
  * KOTRA 업무영역과 관련된 무역, 투자 등 일반 비즈니스 목적에 한함

지원내용

- 지원 무역관 : 82개국 127개 해외 무역관
  * 여행금지국은 정부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지원하며, 트리폴리, 다마스커스 무역관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세부 내용 : 업무일 기준 1회 최대 5일 이용 가능
  * 현지 공휴일 등 무역관 업무시간 외에는 지원 불가
  * 바이어 상담주선, 통역/차량 지원 등 유료 서비스는 미제공
  * 사무공간 부족 및 타 행사 개최 등 무역관의 공간 및 업무 상황에 따라 지원이 불가할 수도 있음

구분	세부 지원내역	비용
사무공간	회의실, 복사기, 인터넷, 전화, 팩스 등	무료
방문상담	현지 경제동향 등 기초상담 지원	

신청 · 접수

- 공고(예정) 시기 : 연중 상시
- 신청방법 :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고객		무역관		고객
KOTRA 무역투자24 사업신청 페이지 방문 3일전 예약 (업무일 기준)	→	무역관 일정 검토 후 이용 가능 여부 안내 (2일 소요)	→	출장 시행 및 열린무역관 서비스 이용

문의처

- KOTRA 해외진출상담센터 : (전화) 1600-7119

Q **열린무역관 신청 시 선정되는 기준이 있나요?**

A 별도 기준은 없으며, 신청일이 타 기업과 중복되는 경우 선착순으로 배정합니다.

Q **현지 출장 중 급하게 열린무역관을 신청하고 싶습니다. 이용 당일 신청도 가능할까요?**

A 열린무역관은 KOTRA 사업신청 홈페이지를 통해 업무일 기준 최소 방문 3일 전 예약이 필수입니다. 이후 무역관 일정 검토 후 이용 가능 여부를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해외공동물류센터사업

사업개요

해외공동물류센터사업은 해외 현지에 독자적인 물류센터를 구축하기 어려운 중소·중견기업이 현지 KOTRA 협력물류사의 창고를 공동으로 이용

지원대상

- 신청 지역에 물류센터가 필요한 국내에서 수출 중(예정 포함)인 중소·중견기업

신청제외 대상

- 대기업(공정위 발표 대기업군)
- 공공기관
- 수출이력 없는 운수·물류 주선 사업자
- 현지 협력물류사

지원내용

- 지원사항 : 해외 현지창고 보관 및 입출고, 포장, 배송, 반품, 통관, 수입대행 등 풀필먼트 서비스 지원 + 수출마케팅 서비스 지원

* 국제운송(해상, 항공운임 등)은 수출기업 부담으로 진행

- 지원기간 : 협약개시일 ~ 동일년도 10월 31일까지
- 물류창고 내 보관 필수(수입대행·배송·수출마케팅 등은 서비스 가능 시 필요에 따라 이용)
- 무역관 소재 전지역 신청 가능

  * 이란, 리비아, 시리아, 쿠바, 수단, 이스라엘 등은 현지 사정에 따라 제외
- 1개사당 연간 최대 3개 무역관까지 국고지원 사업 신청 가능
- 수출기업의 물류비 절감방안과 현지 최적의 물류수단 확보 등 물류컨설팅 제공
- 지원조건 : 한도총액*의 30%(중소기업) 또는 50%(중견기업) 참가비 납부(VAT 포함)

  * 한도총액(A+B) = 참가비(A) + 국고지원금(B)

중소기업	중견기업	한도 총액(A+B)
참가비(A) 30만원 ~ 360만원 국고지원(B) 70만원 ~ 840만원	참가비(A) 50만원 ~ 600만원 국고지원(B) 50만원 ~ 600만원	최소 100만원 ~ 최대 1200만원

* 무역관별 한도총액 및 참가비

지역	무역관명	한도 총액(참가비)
미국·일본	시카고, 달라스, 디트로이트, 로스앤젤레스, 뉴욕, 실리콘밸리, 워싱턴, 애틀랜타, 후쿠오카, 오사카, 도쿄, 나고야	최소 100만원~ 최대 1,200만원 (중소 30%, 중견 50%)
유럽·캐나다	암스테르담, 아테네, 브뤼셀, 코펜하겐, 프랑크푸르트, 함부르크, 뮌헨, 헬싱키, 런던, 마드리드, 밀라노, 파리, 스톡홀름, 빈, 취리히, 부다페스트, 소피아, 바르샤바, 프라하, 부쿠레슈티, 자그레브, 베오그라드, 브라티슬라바, 리스본, 토론토, 밴쿠버	최소 100만원~ 최대 1,000만원 (중소 30%, 중견 50%)
중국	타이베이, 홍콩, 베이징, 상하이, 다롄, 광저우, 샤먼, 청두, 우한, 칭다오, 창춘, 시안, 선양, 난징, 충칭, 창사, 정저우, 항저우, 톈진, 선전, 하얼빈	최소 100만원~ 최대 800만원 (중소 30%, 중견 50%)
동남아대양주	방콕, 자카르타, 수라바야, 쿠알라룸푸르, 비엔티안, 마닐라, 양곤, 싱가포르, 호치민, 하노이, 다낭, 프놈펜, 오클랜드, 멜버른, 시드니	

기타 (서남아, 중동, CIS, 아프리카, 중남미)	콜롬보, 다카, 카라치, 뉴델리, 첸나이, 뭄바이, 벵갈루루, 콜카타, 암다바드, 아순시온, 보고타, 부에노스아이레스, 과테말라, 리마, 멕시코시티, 파나마, 키토, 산티아고, 상파울루, 산토도밍고, 울란바토르, 모스크바, 블라디보스톡, 노보시비르스크, 상트페테르부르크, 타슈켄트, 키이우, 알마티, 바쿠, 민스크, 이스탄불, 알제, 암만, 바그다드, 카이로, 카사블랑카, 두바이, 리야드, 쿠웨이트, 무스카트, 도하, 아크라, 아디스아바바, 라고스, 나이로비, 요하네스버그, 다레살람, 마푸투, 아비장	

* 지원 무역관은 현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한도 총액은 100만원 단위로 구분(총 12단계 중 택일), 참가비 환불 불가 및 미소진시 차년도 공동물류사업 참가에 불이익

신청·접수

- 공고(예정) 시기 : 일반모집(매년 12월 초), 특별모집(사업 성격에 따라 상이)

  * 전액 국고미지원 서비스는 연중 신청 가능

- 신청방법 : 무역투자24 접속 → '사업신청' 클릭 → 해당 사업명 검색 → 로그인 후 신청
- 제출서류 : 중소기업확인서 또는 중견기업확인서, 회사소개서 등
- 선정평가 : 지원가능 여부 검토(해외무역관) → 참가업체 선정(본사)

심사·평가 주요내용

▸ 수출실적, 수출 다변화 수준, 사업 활용여부, 정책우대, 제출서류 등 종합 검토

- 추진절차 :

① 사업참가 신청

② 지원가능 여부 검토(해외무역관)

③ 참가업체 선정(본사)

④ 선정통보 및 참가비 납부

⑤ 해외무역관과 협약서 체결

⑥ 사업지원 개시

문의처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중소중견기업본부 물류지원실
  (02-3460-3336, 7435, 7428 / logistics_support@kotra.or.kr)

참고사항

① 2026 사업공고

- 공고명 : 2026 해외공동물류센터사업
  - (경로) 무역투자24 〉 사업신청 〉 해당 사업명 검색
  - (홈페이지)

② 기타사항

- 제목 : 해외공동물류센터 리스트
  - (경로) 무역투자24 〉 사업소개 〉 특별 안내페이지 〉 해외공동물류센터
  - (홈페이지)
- 제목 : 수출물류 협업 네트워크
  - (경로) 무역투자24 〉 사업소개 〉 특별 안내페이지 〉 KOTRA 수출물류 협업 네트워크
  - (홈페이지)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사업

사업개요

수출 경험이 부족한 내수기업 또는 수출초보기업 대상으로 무역실무 컨설팅 및 해외 바이어 발굴 지원 등 기업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

〈 전년대비 달라지는 내용 〉

구분	'25년	'26년
지원대상	① 내수기업: 전년도 수출실적 0달러 ② 초보기업: 전년도 수출실적 1~10만달러 미만	① 내수기업: 전년도 수출실적 0~1,000미만 달러 ② 초보기업: 전년도 수출실적 1,000~10만달러 미만

지원대상

- 신청자격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시행령 제3조, 「중견기업 성장 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및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중견기업으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 지원조건 : '25년도 직수출(관세청 통관실적 기준,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의 수취액 제외)

① 0~1,000달러 미만 내수기업 또는 ② 1,000~10만달러 미만 수출초보기업

◉ 우대사항 :

- 영문 카탈로그 보유기업, 홈페이지, 해외 인증 보유기업
- 소상공인, 고용창출 우수기업, 사회적경제기업, ESG 우수기업, 인구감소지역 소재기업

신청제외 대상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 휴·폐업중인 기업
▸ 사업자번호 가운데 2자리가 89(종교단체), 80(개인으로 보는 단체), 83(국가, 지자체 등)

지원내용

◉ 지원규모 : 약 4,500개사 내외

- '25년 관세청 전세계 수출실적이 0~1,000달러 미만인 내수기업 3,000개사
- '25년 관세청 전세계 수출실적 1,000~10만불 미만인 수출초보기업 1,500개사

◉ 지원 세부내용

- (수출 멘토링) 퇴직무역인력인 수출전문위원을 매칭, 무역 실무 안내, 바이어 교신 지원 등 수출 성사에 이르기까지 맞춤형 수출 멘토링 지원
- (수출전략 보고서 제공) HS코드 6자리 기반 수출에 필요한 기초 정보 무료 제공
- (유관기관 연계 지원) 수출 유관기관에서 제공하는 수출 관련 서비스 이용 우대
- (해외 마케팅) 131개 KOTRA 해외무역관에서 발굴한 바이어 인콰이어리 매칭, KOTRA 주관 사업 우선 선발 등

신청·접수

- 공고(예정) 시기 : ’26년 1월 초
- 신청방법 : KOTRA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제출서류 : 온라인 신청서(필수), KOTRA 글로벌역량진단 실시(필수)
- 선정평가 : 자격요건 확인 후 현장평가 진행
- 추진절차

사업공고 → 신청·접수 → 평가 및 선정 → 지원 실시

문의처

- 산업통상부 무역진흥과
- KOTRA 중소혁신기업팀
  (전화) 02-3460-7546, 7543

스타트업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

사업개요

해외 창업 생태계가 발달한 주요국 스타트업 전시회, 컨퍼런스 참가 지원을 통해 글로벌 기업, 현지 스타트업, 정부기관 등 스타트업이 협력 가능한 파트너를 연결하고 협업 기회를 마련

〈 전년대비 달라지는 내용 〉

구분	'25년	'26년
정책 우대 가점 사항	신규수출기업화 또는 내수기업, 전문무역상사, 5대 소비재, 사회적 경제기업, 유턴기업, 뿌리전문기업 등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사업 참가기업 또는 내수수출초보기업, 전문무역상사, 정부 지정 수출 유망 품목, 혁신적 조달기업 등

지원대상

- 신청 대상 : 해외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혁신 제품이나 서비스를 보유한 국내 혁신기업

지원내용

- 스타트업 주요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
  - Web Summit (6월, 밴쿠버), TechCrunch Disrupt (10월, 샌프란시스코), Slush (11월, 헬싱키) 등

- 투자자, 바이어, 글로벌기업 등 해외 유망 파트너 연결
- 현지 글로벌 기업과 오픈이노베이션 추진 지원
- IR피칭, 데모데이, 네트워킹 행사 등 부대행사 참가 지원

신청·접수

- 신청방법 : www.kotra.or.kr에서 온라인 접수
- 신청 기간 : 전시회별 상이
- 선정기준 : 수출실적, 기업경쟁력, 일자리창출, 전시적합성, 정책 우대 가점에 따라 본사, 무역관, 공동수행기관이 평가

심사·평가 주요내용

- 정책 우대 가점 사항 :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사업 참가기업 또는 내수수출초보기업, 전문무역상사, 정부 지정 수출 유망 품목, 혁신적 조달기업 등

문의처

- KOTRA 중소혁신기업팀 : (02-3460-7569)

글로벌 오픈이노베이션 지원사업

사업개요

혁신기술·제품을 보유한 국내 혁신기업과 이를 필요로 하는 글로벌 기업의 개방형 혁신수요를 연결하여 기술실증, 공동개발, 투자유치 등 레퍼런스 구축을 통한 해외 진출 및 스케일업을 지원

〈 전년대비 달라지는 내용 〉

구분	'25년	'26년
문의처	02-3460-7569	02-3460-7547

지원대상

- 신청대상 : 혁신 기술이나 제품을 보유한 국내 혁신기업
- 지원조건 : 해외 시장 진출을 상위 목표로 가지고 있으며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해외 시장에 아직 존재하지 않는 가치를 지속적으로 창출할 수 있는 비상장 기업

신청제외 대상

▸ 위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예) 예비창업자, 혁신기술 및 혁신제품 미보유 기업(단순 소비재), 상장 기업, 국내 법인 미보유 기업 등

지원내용

- 추진 과정

수요 발굴 → 관심기업 발굴 → 글로벌기업 심사 → 상담 및 후속지원

- 해외 무역관을 통해 글로벌 기업의 오픈이노베이션 수요를 발굴하고, 해당 수요에 맞는 적격한 국내 스타트업을 모집, 스타트업과 글로벌 기업간 1:1 상담 또는 해외 피칭데이 개최 등 지원

* TechCrunch, Slush 등 해외 스타트업 전시회 사업과 연계하여 발굴 지역, 대상, 시기 등을 타깃팅 지원

신청·접수

- 신청방법 : www.kotra.or.kr에서 온라인 접수
- 신청기간 : 수요별 상이
- 제출서류 : 사업 신청서, IR 피치덱 등

심사·평가 주요내용

▸ 기술 수요 적합도, 제품의 혁신성, 해외진출 준비 역량 등

문의처

- KOTRA 중소혁신기업팀(02-3460-7547)

용어 설명

오픈 이노베이션(open innovation) : 개방형 혁신. 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 및 아이디어를 외부에서 조달함과 동시에 내부 자원을 외부와 공유하면서 새로운 제품 및 서비스를 만들어 내는 것

CES 혁신상 수상 지원

사업개요

미국 소비자기술협회(CTA)가 선정하는 'CES 혁신상'을 수상할 수 있도록 교육 및 컨설팅을 제공하여 우리 혁신기업이 공신력 있는 레퍼런스를 확보하고 기업 브랜드 가치를 제고할 수 있도록 지원

〈 전년대비 달라지는 내용 〉

구분	'25년	'26년
지원내용	CES 혁신상 영문 신청서 작성 멘토링 - 스토리빌딩 방법, 영어 문법 및 어휘 첨삭	CES 혁신상 영문 신청서 작성 멘토링 - 스토리빌딩 방법, 영어 문법 및 어휘 첨삭, 신청비 환급
지원내용	-	CES 수상기업 전자브로셔 제작 - 수상기업 개요, 수상이력, 투자단계 등

지원대상

- 신청대상 : CES 혁신상에 출품을 희망하는 국내 혁신기업
  - 혁신기술과 심미적인 디자인을 갖춘 제품(기술)을 가진 기업
  - 혁신상 수상 연도에 신규 출시하는 품목을 보유한 기업

지원내용

- 수상 전략 웨비나
  - 실제 혁신상 심사위원 및 수상경험이 있는 기업 초청
- CES 혁신상 영문 신청서 작성 멘토링
  - 스토리빌딩 방법, 영어 문법 및 어휘 첨삭, 신청비 환급
- CES 수상기업 전자브로셔 제작
  - 수상기업 개요, 수상이력, 투자단계 등

신청·접수

- 신청방법: www.kotra.or.kr에서 온라인 접수
- 신청 기간: 6월 중 예정
- 제출 서류: 사업 신청서, 제품 영문 소개자료, 동영상 등

심사·평가 주요내용

- 혁신성 및 디자인의 심미성
- 제품 관련 시각적 자료 보유 여부(이미지, 영문 홍보영상 등)
- 당해 연도 신규 출시 제품 여부
  * 미국 CTA 혁신상 수상 기준 참고

문의처

- KOTRA 중소혁신기업팀(02-3460-7569)

Q&A

Q **지원내용 중에 CES 전시회 참가도 포함되나요?**

A 중소혁신기업팀은 CES 혁신상 수상만을 지원하고 있으므로, CES 전시회 한국관 참가 관련은 'KOTRA 해외전시팀'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Q **이전에 혁신상을 수상했던 제품과 유사한 제품이나, 미선정된 제품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단, 제품에 중요하고 혁신적인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2026년 해외지사화사업

사업개요

〈 전년대비 달라지는 내용 〉

구분	'25년	'26년
참가비	◦ (KOTRA) - 발전 6개월 240만원 - 발전 1년 300~500만원(지역별 차등) ◦ (중진공) - 발전 9개월 225~375만원(지역별 차등) - 확장 800만원	◦ (KOTRA) - 발전 6개월 150~360만원(지역별 차등) - 발전 1년 250~600만원(지역별 차등) ◦ (중진공)(잠정) - 발전 9개월 225~375만원(지역별 차등) - 확장 600만원
모집차수	◦ 8차수	◦ 8차수(잠정)

지원대상

- 신청자격 : 대한민국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협약일 기준으로 이를 유지하고 있는 중소·중견기업
- 지원조건 : 고객사의 제조 품목 및 주력 수출상품을 중심으로 고객사와 무역관이 사전 협의하여 HS Code 6단위 1개 품목으로 지원 대상 결정
- 우대사항 : 정책우대가점(최대10점) 존재

신청제외 대상

- 대기업 :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갱신 · 발표하는 대기업 및 소속회사
- 유관기관 :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ALIO 등재 기준), 비영리 정부 출자 또는 민간기관
- 현지거점 보유기업 : 신청 무역관 소재 도시에 거점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
- 휴·폐업 기업,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 거래처로 규제 중이거나 국세·지방세를 체납 중인 자/기업

지원내용

- 지원 세부내용 : 기관별 지원내용 확인

단계	주요 지원내용	기간	수행기관
진입	기초 시장조사, 잠재바이어 조사, 네트워크 교류, 기초 홍보자료 현지어 번역, 시판매(소비재 전용)	6개월	OKTA
발전	수출성약 지원, 전시·상담회 참가 지원, 물류통관 자문, 출장지원, 기존 거래선관리, 현지 유통망 입점, 인허가 취득지원, 브랜드 홍보, 프로젝트 참가, IP등록, 현지법인 설립 지원	6개월	KOTRA
		1년 / 9개월	KOTRA 중진공
확장	기술수출(제휴), 글로벌 밸류체인 진출, 액셀러레이팅 서비스, 데이터사이언스 컨설팅, 조달진출, 품목별 타겟진출, 인큐베이팅 서비스, O2O 지원 서비스, 현지 투자지원, 법률자문	9개월	중진공

신청·접수

- 공고(예정) 시기 : 연중 상시 모집 (차수별 지원)
- 신청방법 :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주소) www.exportvoucher.com/jisahwa
- 제출서류 : 수출실적, 납세증명서, 가점증빙서류 등
- 선정평가 : 국내평가 + 해외시장성평가

심사·평가 주요내용

- ▸ 국내평가 : 수출실적, 정책우대가점(선택)
- ▸ 해외시장성평가 : 품목 시장성, 품목 경쟁력, 단계 적정성

◉ 추진절차 : 모집공고 – 참가모집 – 선정평가 – 참가비납부 - 사업개시

문의처

◉ 기관별 문의처

- KOTRA 지사화팀 02-3460-7445, 7442, 7437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해외진출사업처 055-751-9714, 9715, 9718
- OKTA 사업운영팀 02-571-5375

참고사항

① 전년도 사업공고

◉ 공고명 : 2025년도 해외지사화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 (경로) 선택형지원사업(해외지사화) - 알림마당 – 지사화 모집공고
- (홈페이지)

② 참여한도

- 진입단계 : 동일 지역 서비스 최대 4회
- 발전, 확장단계 : 동일 지역 및 동일 단계 서비스 최대 7년

Q&A

Q **우리 기업의 지사화사업 참여이력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A 지사화사업의 참여이력은 지사화사업 홈페이지 (www.exportvoucher.com/jisahwa) 〉 로그인 〉 우측 상단 지사화 관리시스템 〉 전체현황 〉 사업수행이력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Q **지사화 사업 신청은 어디서 하죠?**

A www.exportvoucher.com으로 접속하신 뒤 메인 페이지에서 해외지사화사업을 클릭해주시면 해외지사화사업 신청 홈페이지로 접속됩니다. 로그인하신 뒤 중앙 상단의 사업신청 탭을 이용해 신청해주세요.

Q **사업신청은 완료했습니다. 선정결과는 언제 나오나요?**

A 신청접수가 마감되고 업무일 기준 6~7일 뒤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선정결과를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라는 문자 안내를 받으시려면 담당자의 핸드폰 번호가 반드시 등록되어 있어야 하니 회원정보에 휴대폰번호 등록 및 SMS 수신동의 여부를 꼭 확인해주세요.

한국우수상품전

사업개요

- 수출 전략시장을 대상으로 국내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개최되는 단독 해외전시회
- 바이어 초청 전시상담회 외 경제협력 세미나, 사회 공헌 활동(CSR) 등의 연계행사를 개최함으로써 국가브랜드 이미지 제고에도 기여

지원대상

- 신청자격 : 국내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고 있는 중소·중견기업
- 지원조건 : 해당 상품전 공고 확인
- 우대사항 : 인구감소지역 소재기업 선정 우대

신청제외 대상

- 동일한 전시회로 국고 중복 지원을 받는 기업
-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기업
- 그 외 지원 제외대상은 공고 확인

지원내용

- 지원 세부내용 : 전시 쇼케이스 및 바이어 상담회 진행
  - 전시품 편도운송 (1CBM 내)

- 단체항공 및 숙박 주선(항공임 및 숙박비는 출장자 부담)
- 바이어 상담주선 및 현지 체류기간 동안 단체이동 차량 지원
- 온라인 마케팅(Buykorea 전시관 입점 등) 지원

- 지원규모 : 국내기업 약 100개사 내외
- 지원금액 : 전시품 편도 운송비용, 전시장 임차 비용, 부스 디자인 및 장치비 등

신청·접수

- 공고(예정) 시기 : 연중 추진
- 신청방법 : 무역투자 24(www.kotra.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 제출서류 : 신청서(인터넷 신청시 입력), 전시품목 상세설명서, 사업자등록증 등
- 선정평가 : 제출서류 적합성 및 무역관 현지 시장성 평가를 통해 최종 선정

심사·평가 주요내용

▸ 참가 후 기대성과, 현지 시장성 및 바이어 관심도 등

- 추진절차

모집공고 및 신청 · 접수		선정평가		참가기업 선정 및 통보		전시품 운송		전시회 참가
무역투자 24를 통한 신청 및 참가비 납부	→	무역관 평가	→	기업 개별연락	→	공고에 따라 진행	→	전시 쇼케이스 및 바이어 상담회 진행

문의처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진흥과

- KOTRA 전략전시팀
  - (전화) 02-3460-7295, 7272
  - (메일) onlinekoreaexpo.or.kr

참고사항

① 전년도 사업공고

- 공고명 : 2025 오사카 한국우수상품전 쇼케이스
  - (경로) 무역투자 24 → 사업신청
  - (홈페이지)
- 공고명 : 2025 오사카 한국우수상품전 B2B 상담회
  - (경로) 무역투자 24 → 사업신청
  - (홈페이지)

Q&A

Q **한국우수상품전에 참가 가능한 품목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A 한국우수상품전은 국내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개최되는 전시회이며, 한국 제품의 우수한 기술력·품질·디자인·브랜드 등을 알릴 수 있는 제품이라면 모두 참가 가능합니다.

Q **어떤 방식으로 바이어와 상담이 매칭되나요?**

A 바이어 취급 품목 관련성, 관심도, 제품 정보 등을 기반으로 국내기업 및 바이어 상호 상담 신청이 가능한 온라인 사전 매칭을 통해 상담 주선이 이루어집니다.

수출바우처(산업통상부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사업개요

중소·중견기업이 자사의 업종, 수출 역량, 애로 상황에 맞춰 수출 지원 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하여 이용함으로써 수출 역량을 강화하고 통상 애로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

〈 전년대비 달라지는 내용 〉

구분	'25년		'26년	
사업명	산업바우처	관세대응바우처	산업바우처	긴급지원바우처
모집 대상	소부장, 그린, 소비재, 서비스산업 중소·중견기업	무역장벽으로 인한 수출애로가 있는 중소·중견기업	소부장, 그린, 소비재, 서비스산업 중소·중견기업	무역장벽으로 인한 수출애로가 있는 중소·중견기업
모집 시기	'24.12.18.~'25.1.10.	'25.4.2.~'25.4.15.(1차) '25.5.16.~'25.6.5.(2차) '25.8.18.~'25.9.5.(3차)	'25.12.22.~'26.1.9.	'25.12.22.~'26.1.9.(1차) '26년 2분기(2차, 잠정) '26년 3분기(3차, 잠정)
사업 기간	'25.2.1.~'26.1.31.	'25.4.1.~'26.1.31.	'26.2.1.~'27.1.31.	'26.2.1.~'27.1.31.
기업 선정	연 1회	연 3회	연 1회	연 3회(잠정)

지원대상

◉ 신청자격

- (산업/긴급지원바우처 공통)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시행령 제3조, 「중견기업 성장 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및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중견기업 중 각 세부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기업
- (긴급지원바우처) 공통 신청자격 + 아래 최소 1개 조건을 충족하여야 함

❶ '24년 이후 대미 직접수출 또는 간접수출 실적 보유기업

❷ '24년 이후 해외 생산거점으로부터 대미 직수출 실적 보유기업

❸ 미국 외 지역(유럽, 인도 등)에서 통상 애로를 겪고 있는 수출기업

◉ 지원요건 및 바우처 발급액

〈산업바우처〉

세부산업	단계별 지원요건	바우처 발급액
소재·부품·장비	[진입] 22~24년 평균매출액 10억원 미만	[진입] 20백만원 ~ 50백만원
그린	[성장] 22~24년 평균매출액 1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성장] 20벡만원 ~ 70백만원
소비재	[확장] 22~24년 평균매출액 100억원 이상	[확장] 20벡만원 ~ 100백만원
서비스	[진입] 22~24년 평균매출액 10억원 미만	[진입] 20백만원 ~ 30백만원
	[성장] 22~24년 평균매출액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성장] 20벡만원 ~ 50백만원
	[확장] 22~24년 평균매출액 50억원 이상	[확장] 20벡만원 ~ 55백만원

* 수출바우처는 '국고보조금 + 기업분담금'으로 구성

** 국고보조율 : 중소 70%, 중견 50%

〈긴급지원바우처(1차)〉

세부산업	단계별 지원요건	바우처 발급액
소재·부품·장비	[진입] 22~24년 평균매출액 10억원 미만	[진입] 20백만원 ~ 75백만원
그린	[성장] 22~24년 평균매출액 1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성장] 20벡만원 ~ 105백만원
소비재	[확장] 22~24년 평균매출액 100억원 이상	[확장] 20벡만원 ~ 150백만원
		[진입] 20백만원 ~ 45백만원
		[성장] 20벡만원 ~ 75백만원
		[확장] 20벡만원 ~ 82.5백만원

* 수출바우처는 '국고보조금 + 기업분담금'으로 구성

** 국고보조율 : 중소 70%, 중견 50%

◉ 우대사항 : 산업바우처 공고문(12쪽), 긴급지원바우처 1차 공고문(10쪽) 참조

신청제외 대상

- 휴·폐업 기업 또는 가동 중에 있지 않은 기업
- 국세·지방세를 체납 중인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 금융기관 및 신용정보기관에 불량거래처로 등재 또는 민사집행법에 의거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된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 보조금 부정수급 등 부정행위로 인해 수출바우처사업 참여 제한 대상인 기업 또는 그 특수관계기업
- 산업부, 중기부, 농림부, 해수부, 지자체 등 수출바우처 사업(통합형)의 참여기업으로 기선정되어 2026.2.1. 기준 협약이 종료되지 않은 기업
- 수출바우처사업 수행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는 기업 또는 그 특수관계기업
- 2026년 수출바우처 사업 신청기업과 특수관계에 있는 기업
- 대표자 또는 기업이 그 밖의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사행산업 등 국민 정서상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 영위 기업
- 단순 무역상사, 유통기업, 수출플랫폼 기업
- 기타 세부 모집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 자세한 사항은 산업바추어 공고문(3~4쪽), 긴급지원바우처 1차 공고문(3~5쪽) 참조

지원내용

◉ 세부내용 : 매칭펀드(국고+기업분담금)로 조성한 사업비를 재원으로, 참여기업(중소·중견기업)에게 바우처(가상쿠폰)를 발급하고, 참여기업은 민·관 수행기관의 수출지원 서비스를 14대 메뉴에서 자유롭게 선택하여 바우처로 이용. 단, 긴급지원바우처의 경우 통상애로 극복과 직결되는 긴급지원 서비스(예: 전문가 연계 원산지 판정 컨설팅 등) + 수출바우처 6대 서비스* + 관세대응 패키지('25년 관세대응 바우처로 신설된 서비스)에 바우처 총액의 70% 이상 사용하여야 함.

* 수출바우처 6대 서비스 : ①전시회/행사/해외영업지원, ②해외규격인증, ③특허/지재권, ④국제운송, ⑤홍보/광고, ⑥법무·세무·회계 컨설팅

** 산업/긴급지원바우처 모두 획득에 장기간 소요되는 해외인증에 한해 당해연도에 인증 획득이 완료되지 않더라도 심의를 통해 선금을 지원할 예정이며, 국제운송 지원한도 확대(3천만원 → 6천만원) 제도도 '26년까지 유예하여 적용할 예정임

신청·접수

- 신청기간 : (산업/긴급지원 1차) '25.12.22(월)~'26.1.9(금)

  * 긴급지원(2차) : '26년 2분기(잠정), 긴급지원(3차) : '26년 3분기(잠정)

- 신청방법 : 수출바우처 홈페이지(www.exportvoucher.com)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제출서류 : 제출서류 세부내용은 수출바우처 홈페이지 내 공고 내용 참조
- 문의처 : (수출바우처 통합안내센터) ☎ 02-6004-8400

바이코리아(buyKOTRA)

사업개요

- buyKOREA는 전 세계 바이어와 국내 중소기업을 연결해 주는 글로벌 B2B e-마켓플레이스입
- buyKOREA는 한국 상품 해외홍보, 해외 바이어의 구매 인콰이어리 검색, 거래대금 온라인 결제, 국제배송(EMS,DHL) 등 온라인 무역 거래 프로세스를 모두 지원

지원대상

- 신청자격 : 국내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고 있는 중소·중견기업
- 지원조건 : 없음

지원내용

구 분	주 요 내 용
수출상품등록	· 수출상품 등록 가능 · 유튜브(YouTube)에 등록된 상품 동영상을 바이코리아에 등록 가능
인콰이어리 조회	· KOTRA 및 해외바이어가 등록한 구매 인콰이어리 검색 가능
메시지 발송/ 인콰이어리 수신	· 인콰이어리 검색 후 연락희망 바이어에게 메시지 발송 가능 · 자사 상품을 검색한 바이어로부터 인콰이어리 수신 가능
수출대금 결제	· buyKOREA에서 온라인 수출대금 결제 가능 (PG사*와 별도 계약 필요) - VISA, Mastercard, JCB, UnionPay, Alipay, WechatPay, Paypal * Payment Gateway
수출상품 발송	· EMS, DHL 배송접수 및 할인혜택(별도계약필요)
비즈니스행사	· KOTRA의 오프라인 사업신청 가능
TradeShow	· KOTRA 오프라인 사업과 연계하여 비즈니스 매칭 등을 위한 온라인 전시관 운영

신청·접수

- 공고(예정) 시기 : 모집공고 참고(연중 수시)
- 신청방법 : KOTRA 무역투자24(kotra.or.kr) 통한 신청
- 추진절차 :
  - 수출제품 디지털 컨텐츠 제작 및 buyKOREA 상품등록
    - 무역투자24(kotra.or.kr) 접속 → [사업신청] 클릭 → [KOTRA 온라인 사업 신청] 배너에 'buyKOREA 상품등록 지원' 검색 후 신청
  - AI 무역지원센터 특화 디지털 마케팅 지원사업 및 디지털 무역 상담 지원
    - 아래 문의처로 문의
  - AI 무역인재양성 사업
    - 무역투자24(kotra.or.kr) 접속 → [사업신청] 클릭 → [KOTRA 온라인 사업 신청] 배너에 '디지털 무역인력 양성사업' 검색 후 신청

문의처

- 공고(예정) 시기 : 모집공고 참고(연중 수시)
- 신청방법 : KOTRA 무역투자24(kotra.or.kr) 통한 신청
- 추진절차 : 바이코리아 홈페이지 → 기업 회원가입 → 상품등록 및 바이어 연결

AI 무역지원센터

사업개요

국민 누구나 수출할 수 있는 「KOTRA 디지털 무역 플랫폼*」 활성화를 위해 기업·인력이 상시 활용할 할 수 있는 지역 거점 인프라

* 수출 기회 분석·발굴부터 디지털 마케팅, 성약 관리까지 수출 전 과정을 지원할 수 있는 KOTRA 4대 디지털 플랫폼(무역투자24, 해외경제정보드림, TriBIG, buyKOREA)

지원대상

- 신청자격 : 국내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고 있는 모든 기업
- 지원조건 : 없음

지원내용

구 분	주 요 내 용
수출제품 디지털 컨텐츠 제작 및 buyKOREA 상품등록	• AI 기술을 활용하며 수출 희망 제품의 사진, 동영상 등을 촬영하여 제품 세부내역과 함께 buyKOREA* 사이트에 등록 * 공공 부문 최대 B2B 무역 지원 플랫폼(www.buykorea.org) • AI 무역지원센터 방문이 어려운 소재, 부품, 장비 기업의 경우 AI 무역지원센터 운영팀이 사업장에 방문하여 수출제품 디지털 컨텐츠 제작 및 buyKOREA 상품등록 지원
해외 시장 조사	국내 기업은 AI 무역지원센터에서 트라이빅 및 해외경제정보드림을 활용하여 국가별 수입 국가, 규모 등 무역 관련 빅데이터 정보를 얻고 잠재 시장 타겟 가능

유망 바이어 발굴	국내 기업을 AI 무역지원센터에서 자사의 제품·서비스를 홍보하는 컨텐츠 제작 및 AI B2B 플랫폼인 buyKOREA에 입점시키거나, AI 기반 SNS 마케팅(메타·링크드인·구글)으로 전세계에 자사의 제품·서비스 홍보하여 인콰이어리를 수취하고 잠재 고객 발굴 지원
AI 무역인재양성 사업	지역 청년 6-8명과 기업이 한 조가 되어 8주간 디지털 마케팅을 통한 바이어 발굴 및 교신 지원 * AI 활용 buyKOREA 콘텐츠 제작 및 상품등록, SNS(Meta, LinkedIn 등) 마케팅, 무역관 통한 바이어 검증, 온라인 상담 지원

신청·접수

- 공고(예정) 시기 : 모집공고 참고(연중 수시)
- 신청방법 : KOTRA 무역투자24(kotra.or.kr) 통한 신청
- 추진절차 :
  - 수출제품 디지털 컨텐츠 제작 및 buyKOREA 상품등록
    - 무역투자24(kotra.or.kr) 접속 → [사업신청] 클릭 → [KOTRA 온라인 사업 신청] 배너에 'AI 무역지원센터' 검색 후 신청
  - AI 무역인재양성 사업
    - 무역투자24(kotra.or.kr) 접속 → [사업신청] 클릭 → [KOTRA 온라인 사업 신청] 배너에 'AI 무역인재양성 사업' 검색 후 신청

문의처

- 공고(예정) 시기 : 모집공고 참고(연중 수시)
- 신청방법 : KOTRA 무역투자24(kotra.or.kr) 통한 신청
- 추진절차 :
  - 수출제품 디지털 컨텐츠 제작 및 buyKOREA 상품등록
    - 무역투자24(kotra.or.kr) 접속 → [사업신청] 클릭 → [KOTRA 온라인 사업 신청] 배너에 'buyKOREA 상품등록 지원' 검색 후 신청

• AI 무역지원 특화 마케팅 지원사업 및 AI 무역 상담 지원

- 아래 문의처로 문의

• AI 무역지원센터 연락처

서울 AI 무역지원센터 02-3460-7740

대전 AI 무역지원센터 042-862-8311

경북 AI 무역지원센터 054-454-0829

부산 AI 무역지원센터 051-740-4155

울산 AI 무역지원센터 052-289-8056

고양 AI 무역지원센터 070-7931-0746

전북 AI 무역지원센터 070-7931-0813

평택 AI 무역지원센터 031-273-6039

충북 AI 무역지원센터 043-217-8007

진주 AI 무역지원센터 070-4112-6161

김해 AI 무역지원센터 070-4109-4242

용인 AI 무역지원센터 070-4111-4750

광주 AI 무역지원센터 062-710-0337

화성 AI 무역지원센터 070-4116-2555

포천 AI 무역지원센터 070-7711-1316

화성 AI 무역지원센터 / 070-4116-2555

전남 AI 무역지원센터 / 061-331-9597

충남 AI 무역지원센터 / 041-337-3121

제주 AI 무역지원센터 / 064-805-7119

인천 AI 무역지원센터 / 032-831-6481

강원 AI 무역지원센터 / 033-731-0362

• AI 무역인재양성 / 02-3460-3447(3442)

글로벌 파트너링(Global Partnering) 사업

사업개요

글로벌 기업의 비즈니스 협력 수요를 발굴하여 국내 소재·부품·장비 분야 중소·중견기업이 글로벌 기업의 밸류체인(GVC)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수요 맞춤형 서비스

지원대상

- 지원사업 : 자동차, 조선해양, 항공, 기계장비, 전자, 소재,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로봇, ICT, 전력, 수소, 신재생에너지, 바이오 등 소재·부품·장비 산업 전반

지원내용

- 국내외 권역별·산업별 GP상담회 개최
  - 해외무역관에서 발굴한 글로벌 기업 수요와 매칭되는 국내기업 간 매칭을 지원하는 국내외 수출 상담회

수요 발굴		국내기업 발굴		상담지원		후속지원
글로벌기업의 부품조달, 기술협력 수요 발굴	→	글로벌기업 수요 적격 국내기업 발굴	→	국내외 상담회를 통한 매칭 지원	→	온라인 상담 등

- 글로벌 기업과의 핀포인트 상담 지원
  - 글로벌 기업의 한국기업 공장방문 지원, 1:1 심층상담 지원 등

신청·접수

- KOTRA 무역투자24(kotra.or.kr) - '사업신청' 페이지에서 신청 (개별 사업 일정에 따라 별도 공고)
- 카카오톡 채널 'KOTRA 소재부품장비팀' 통해 산업별/지역별 사업 일정 및 세부 내용 확인 가능

문의처

- KOTRA 소재부품장비팀
- 산업별 문의처
  - (자동차, 조선, 항공, 기계장비, 전자, 소재)
    소재부품장비팀, 02-3460-7641
  -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글로벌공급망사업팀, 02-3460-3323
  - (ICT, 스마트시티, 스마트팜, 로봇)
    AI융복합팀, 02-3460-7461
  - (의약품, 의료기기, 디지털헬스케어)
    바이오헬스팀, 02-3460-7628
  - (수소, 전력기자재)
    기후에너지산업팀, 02-3460-7483, 7486

해외 GP센터 (Korea GP Center)

사업개요

해외 GP센터(Korea GP Center)는 해외 글로벌기업과 비즈니스를 수행하는 소재·부품·장비 분야 중소·중견기업이 글로벌 기업의 수요에 적시 대응할 수 있도록 현지 사무공간 및 맞춤형 마케팅을 지원하는 GVC 진입 거점 센터

지원대상

- 대상산업 : 자동차, 반도체, 이차전지, 항공, 기계·장비, 조선, 전자 등
- 대상기업 :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글로벌 공급망 진입을 위해 해외거점 운영이 필요한 국내 중소·중견기업
  - 글로벌 기업 측으로부터 즉각적 현지 대응 및 엔지니어링 지원을 요구받은 기업
  - 현지 시장 마케팅을 위해 연락사무소, 지사 또는 법인 설립을 고려 중인 기업
- 선정기준 : 매출액, 수출실적, 글로벌 공급망 진입 가능성 등을 해외무역관에서 평가

신청제외 대상

- 동 사업의 목적을 감안하여 대기업은 입주대상에서 제외
- 현재 지사화사업 참여 중인 기업의 경우, 평가점수와 무관하게 동시에 같은 지역의 GP센터 입주 불가(중복지원 불가)

지원내용

- 운영센터(총 13개소)
  - 일본(나고야, 오사카, 도쿄), 미국(디트로이트, 실리콘밸리, 오스틴), 중국(상하이), 독일(프랑크푸르트, 뮌헨), 그리스(아테네), 말레이시아(쿠알라룸푸르), 멕시코(멕시코시티), 스웨덴(스톡홀름)
- 지원사항
  - 사무공간 제공 : KOTRA에서 별도로 임차한 해외 사무실 또는 현지 공유 오피스를 활용하여 입주기업 전용 사무공간(1~3인실 등 센터별 상이) 지원(유료)

    * 1년 단위 계약, 최대 7년까지 이용
  - 마케팅 활동 지원 : 신규 거래선 발굴 및 기존 거래선 관리 등
  - 초기 셋업 : 신규 법인/지사 설립지원 등
- 지원규모 : 지역별 상이
- 지원금액 : GP센터별, 사무공간 사이즈에 따라 책정, 기업분담률은 중소기업(40%), 중견기업(60%) 적용

신청·접수

- 공고(예정) 시기 : 상시모집
- 접수방법 : KOTRA홈페이지(무역투자24) 〉 사업신청 〉 해외GP센터
- 제출서류 : 참가신청서, 재정상태 현황표(신청일 기준 최근 2개년치), 입주활동계획서, 중소·중견기업 확인서 등

문의처

- KOTRA 소재부품장비팀, 02-3460-7634, keemh@kotra.or.kr

참고사항

① 전년도 사업공고

- 공고명 : 2025 GP센터(글로벌 공급망 안착 서비스)
  - (경로) KOTRA홈페이지(무역투자24) 〉 사업신청 〉 해외GP센터
  - (홈페이지)

소재·부품·장비 선도기업 해외진출지원 (세일즈랩 발굴)

사업개요

현지 시장과 해당 산업의 노하우와 네트워크를 보유한 현지 전문가가 국내 소재·부품·장비 중소·중견기업의 해외 마케팅 활동을 대리 수행함으로써 수출 성과 창출을 견인하는 바우처 사업

지원대상

- 대상 분야 : 소재·부품·장비 분야 수출바우처 참여기업
  - 산업 글로벌 진출역량 강화사업(소재·부품·장비 분야) 참여기업
  - 중소벤처기업부 수출바우처 참여기업 중 소재·부품·장비 분야 기업

지원내용

- 지원 세부내용
  - 고객사 현지 진출에 필요한 전략 수립 및 효과적인 마케팅 방법 안내
  - 잠재 바이어 발굴, 고객사 및 고객사 제품 소개, 현지 네트워킹 수행
  - 잠재 바이어 미팅 주선, P/O 및 물품(서비스) 납품 지원
- 지역 : KOTRA 무역관 소재 전 지역
- 비용 : 지역/세일즈랩 별 상이

  * 계약금액은 공사 내부 환율을 적용하며, 부가세 및 서비스 수수료 별도 책정

● 지원 프로세스

(참여기업) 서비스 금액, 수행가능여부 사전 문의 → (KOTRA 본사, 참여기업) 세일즈랩 선정, 계약조건 확정 → (KOTRA 무역관) 3자 계약 체결, 세일즈랩 활동내역 검토, 활동비 지급 → (KOTRA 본사) 서비스 완료 확인, 바우처 정산

신청·접수

● 신청방법 :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홈페이지 (www.exportvoucher.com) 〉 메뉴판 〉 (KOTRA) 소재부품장비 선도기업 해외진출지원(세일즈랩 발굴) 온라인 신청

문의처

● KOTRA 소재부품장비팀, 02-3460-7641, mwjie@kotra.or.kr

참고사항

① 전년도 사업공고

● 공고명 : 수출바우처 사업 – 산업 글로벌 진출역량 강화사업(소재·부품·장비 분야)

- (경로)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홈페이지(www.exportvoucher.com) 〉 사업안내 〉 수출바우처 사업
- (홈페이지)

서비스 거점 지원 사업

사업개요

글로벌 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국내 유망 서비스 기업의 현지 거점 역할을 대행하여 수출 및 해외 진출을 밀착 지원

〈 전년대비 달라지는 내용 〉

구분	'25년	'26년
무역관 변경	후쿠오카, 항저우, 다낭, 멕시코시티 등	(제외) 후쿠오카, 항저우, 다낭, 멕시코시티 등 (참여) 밴쿠버, 알마티, 창사, 프놈펜 등

지원대상

- 서비스 수출 및 해외 진출 희망 국내 중소·중견기업

구분	카테고리
콘텐츠	웹툰, 애니메이션(캐릭터), 게임, 디지털 콘텐츠(VR/AR), OTT(영화·영상) 등
에듀테크	교육 콘텐츠, 기자재 및 온라인 서비스, 디바이스, 플랫폼 등
프랜차이즈	외식, 도소매, 기타 서비스 등
유통서비스	온·오프라인 중개 비즈니스 모델, 해외 역직구몰, 유통·제조사
뷰티/헬스케어(H&B)	미용실, 에스테틱, 스파, 헬스 케어 등
산업서비스	제조, MRO, 유지보수, ICT 서비스 등
공연/예술	뮤지컬, 창작가무극, 연극, 창작오페라 등 공연콘텐츠
스포츠테크	영상중계기술, 홈트레이닝, SW, 스포츠 데이터 등

- 지원조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 「중견기업 성장 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및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중견기업

지원내용

- 해외 진출 희망 지역 서비스거점 무역관이 국내 기업의 현지 거점으로서 해외 진출에 필요한 1:1 맞춤형 서비스 제공
- 관심 바이어 발굴, 시장 조사, 현지(출장) 지원, 전시회 참가, 기업별 요청 처리 등의 서비스 제공
- 서비스 거점 무역관(35개소)

핵심 거점 (10개소) 전담직원 배치	일반 거점 (25개소)* 전담직원 비배치
(북미) LA (일본) 도쿄 (중국) 상하이 (동남아) 하노이, 호치민, 자카르타, 방콕, 싱가포르 (유럽) 런던 (중동) 두바이	(일본) 오사카 (북미) 밴쿠버 (중국) 베이징, 청두, 칭다오, 선양, 창사, 홍콩, 타이베이 (동남아·대양주) 마닐라, 쿠알라룸푸르, 비엔티안, 프놈펜, 멜버른 (유럽) 프랑크푸르트, 밀라노, 베오그라드, 부쿠레슈티 (중동) 도하 (CIS) 모스크바, 알마티, 타슈켄트, 울란바토르 (아프리카) 다레살람

* 일반거점 1개소 추가 예정

- 참가비(VAT 포함)
  - 서비스거점 무역관당 300만원
  - 서비스거점 복수이용 가능(최대 3개 무역관), 수출바우처로 결제 가능

신청·접수

- 공고(예정) 시기 : ’26.2월
- 신청방법 : KOTRA 무역투자 24 홈페이지(www.kotra.or.kr) 신청

● 추진절차

신청 · 접수		평가 및 무역관 배정		선정 및 결과통보		협약 체결 및 서비스 시작
2026.2월 초	➔	2026.3월 중	➔	2026.3월 말	➔	2026.4월 ~ 2027.3월 (1년)

문의처

● KOTRA 서비스산업팀 (☎ 02-3460-3251, 3319 / serviceteam@kotra.or.kr)

참고사항

① 전년도 사업공고

● 공고명 : 2025 서비스거점 지원사업

- (경로1) 코트라 무역투자 24 〉 사업신청 〉 사업명검색
- (경로2) 구글 〉 사업명검색
- (홈페이지)

해외유통망 연계 소비재 B2B 수출 지원사업

사업개요

농식품 시장개척 전략국가 10개국을 대상으로 시장조사, B2C·B 행사 및 기업 제품 홍보까지 수출 시장 다변화를 위한 한국 농식품 해외 진출 패키지

지원대상

- 신청자격 : 농·축·임산물 및 가공식품 취급 중소·중견기업

지원내용

- (시기/장소) 연중('25.2~11월) / 온·오프라인(해외)
- (사업규모) 국내기업 200개사, 유통망·벤더사 600개사
- (타깃고객) 농·축·임산물 관련 식품 취급 중소·중견 기업
- (전략국가) 가나, 과테말라, 남아프리카공화국, 라오스, 인도(뭄바이), 카타르, 아르헨티나, 우즈베키스탄, 칠레, 튀르키예 등 총 10개국
- (사업방식) 시장조사, 현지 전시회 단체 참가, 해외 유통망 입점 및 판촉·홍보 행사 등

신청·접수

- 공고(예정) 시기 : 연중
- 신청방법 : 코트라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제출서류 : 기업, 품목 정보
- 선정평가 : 시장성 평가

문의처

- KOTRA 소비재팀 : 02-3460-7733

기관별, 월별 지원사업 및 사업공고 현황

◉ 기관명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공고시기	지원사업명	사업공고명	문의처
1~12월 (연중사업)	수출상담회	상담회별 상이	02-3460-7461
	해외전시회 단체참가 지원사업	2026 해외전시회 단체참가 지원사업	02-3460-7299/3334
	해외전시회 개별참가 지원사업	2026 해외전시회 개별참가지원 사업	02-3460-3330, 02-420-2042
	국내복귀기업 지원 사업	국내복귀기업 지원	02-3460-7361~4
	글로벌 파트너링(Global Partnering) 사업	글로벌 파트너링 개별 사업별 별도 명칭 사용 *예) GP 유럽 미래차 상담회 등	- (자동차, 조선, 항공, 기계장비, 전자, 소재) KOTRA 소재부품장비팀, 02-3460-7641 -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KOTRA 글로벌공급망사업팀, 02-3460-3323 - (ICT, 스마트시티, 스마트팜, 로봇) KOTRA AI 융복합팀, 02-3460-7461 - (의약품, 의료기기, 디지털헬스케어) KOTRA 바이오헬스팀, 02-3460-7628 - (수소, 재생에너지, 전력기자재) KOTRA 기후에너지산업팀, 02-3460-7483, 7486
	해외 GP센터(Korea GP Center)	GP센터(글로벌 공급망 안착 서비스)	KOTRA 소재부품장비팀, 02-3460-7634
	소재·부품·장비 선도기업 해외진출지원 (세일즈랩 발굴)	산업 글로벌 진출역량 강화사업(소재·부품·장비 분야)	KOTRA 소재부품장비팀 02-3460-7641
	경제외교 활용 사업	개별 사업별 별도 명칭 사용 *예) 아세안 경제사절단	KOTRA 경제협력총괄팀 02-3460-7685 KOTRA 경제협력지원팀 02-3460-7665

공고시기	지원사업명	사업공고명	문의처
1월	한국우수상품전	2026 한류박람회 연계 한국우수상품전(잠정)	02-3460-7295/7272
	2026 한류박람회(상반기)	2026 한류박람회	02-3460-3344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2026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사업	02-3460-7546, 7543
	지사화사업	2026년 해외지사화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02-3460-7445, 7437, 7442
	지방 무역사절단	지방 무역사절단	02-3460-7371
2월	서비스 거점 지원 사업	2026 서비스 거점 지원 사업	02-3460-3251 / 3319
	파워셀러 육성사업	파워셀러 육성사업	02-3460-7747
	1무역관 1유통망 사업	1무역관 1유통망 사업	02-3460-7745
	농식품 해외시장진출 사업	농식품 해외시장진출 사업	02-3460-7733
3월	해외 공공조달 선도기업 육성사업	해외 공공조달 선도기업 육성사업 기업모집	02-3460-7482
5월	수출상담회	대한민국 산업혁신포럼	02-3460-7764
6월	스타트업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	Web Summit	02-3460-7547
	CES 혁신상 수상 지원	CES 혁신상 수상 지원 사업	02-3460-7569
7월	2026 한류박람회(하반기)	2026 한류박람회	02-3460-3344
10월	수출상담회	2026 수출붐업코리아	02-3460-7764
	스타트업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	TechCrunch Disrupt	02-3460-7569
11월	해외 프로젝트 수주 지원 사업	MDB 프로젝트 플라자	02-3460-3252
	스타트업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	Slush	02-3460-7569
12월	해외공동물류센터사업	'26년 해외공동물류센터사업 참가기업 모집	02-3460-3336, 7435, 7428

제 9 부

한국무역협회

지원사업(전년대비) 달라지는 내용

◉ 기관명 : 한국무역협회

구분	사업명	'25년도	'26년도
9-1	국내외 대·중견기업-스타트업 오픈이노베이션	스타트업 약 70개사 * '24년 지원현황 : 대중견기업 및 공공기관 13개사 참여, 200여 건의 밋업 진행	스타트업 약 70개사 * '25년 지원현황 : 대중견기업 및 공공기관 10여개사 참여, 200여 건의 밋업 진행
9-2	기술실증을 위한 국내외 테스트베드 지원사업	스타트업 약 30개사 * '24년 지원현황 : 해외 테스트베드 2건 (스타트업 17개사) 및 무역센터 CMC 6개사와의 테스트베드 (스타트업 11개사) 진행	스타트업 약 20개사 * '25년 지원현황 : 해외 테스트베드 1건 (스타트업 10개사) 및 무역센터 CMC 6개사와의 테스트베드 (스타트업 10개사) 진행
9-4	NextRise, Seoul 글로벌 스타트업 페어	- 비즈니스 밋업 신청 페이지 '24년 4월 중 오픈 예정	- 비즈니스 밋업 신청 페이지 '26년 4월 중 오픈 예정
9-4	NextRise, Seoul 글로벌 스타트업 페어	Q. 2025년도 넥스트라이즈는 언제 개최되나요? A. 〈NextRise 2024, Seoul〉은 6월 26일(목), 27일(금) 양일간 서울 삼성동 코엑스 A, B홀, 더플라츠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Q. 2026년도 넥스트라이즈는 언제 개최되나요? A. 〈NextRise 2026, Seoul〉은 6월 18일(목), 19일(금) 양일간 서울 삼성동 코엑스 그랜드볼룸, A·B홀, 더플라츠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9-9	KITA 해외 바이어 초청 국내 수출상담회 (Korea Grand Sourcing Fair 2026)	행사 기간 및 장소 : 2025. 11. 25(화) ~ 26(수), 코엑스 B홀	행사 기간 및 장소 : 2026. 11. 24(화) ~ 25(수), 코엑스 D홀
9-11	전문무역상사 제조기업 매칭 수출상담회	사업명 : 전문무역상사 대중소 동반수출 상담회	사업명 : 전전문무역상사 제조기업 매칭 수출상담회
9-11	전문무역상사 제조기업 매칭 수출상담회	2025년 수출상담회 일정	2026년 수출상담회 일정 (본문 참고)
9-12	전문무역상사 대중소 동반수출 해외 판촉전	참여기업 : * 롯데마트, GS리테일, NH농협무역, H마트, 포스코인턴내셔널 등	* 연초 선발 예정
9-12	전문무역상사 대중소 동반수출 해외 판촉전	일정 : 2025 Step to Export 행사 일정	일정 : 2026 해외판촉전 일정 (본문 참고)
9-13	국내 전문 전시회 개최 및 연계 수출 상담회 개최	국제해양방위산업전 게최	격년 개최 행사로 2026년 미개최
9-13	국내 전문 전시회 개최 및 연계 수출 상담회 개최	AI서밋 행사 개최	2025년부터 신규 추진(계속)

구분	사업명	'25년도	'26년도
9-13	국내 전문 전시회 개최 및 연계 수출 상담회 개최	-	2026년 신규 추진 사업 (자율주행모빌리티산업전 (AME) 연계 수출상담회)
9-15	디지털 무역상담 플랫폼 TradePro	-	지원내용 상담분야 및 컨설턴드 추가(ESG, 할랄)
9-16	APEC 기업인여행카드 (ABTC) 발급	실물ABTC 발급	모바일ABTC 발급 (25년 4월부터 변동)
9-16	APEC 기업인여행카드 (ABTC) 발급	개인 출입국 심사 기준 - 2018년 이후부터 산정	개인 출입국 심사 기준 - 최근 2년 이내 기간으로 산정(25년 10월부터 변동)
9-20	OK FTA 컨설팅 지원사업	-	신청 제외 대상 추가 ㅇ 매출액 1,500억원 이상 업체 지원 불가
9-21	비관세장벽 대응 지원살업	인증 획득/지재권 출원 지원 사업 제외, 심층 컨설팅 신설	2025년 변경 사항 유지
9-23	현지 'K-프리미엄 스토어' 운영	-	9-23 사업 추가

국내외 대·중견기업-스타트업 오픈이노베이션

사업개요

- 글로벌 대·중견기업과 스타트업을 연결하는 사업
- 오픈이노베이션을 통해 스타트업은 대·중견기업에 혁신역량을 수혈하며 스케일업을 달성하고 대·중견기업은 스타트업에 인프라 및 사업화 기회를 지원

〈 전년대비 달라지는 내용 〉

구분	'25년	'26년
지원규모	▸ 스타트업 약 70개사 * '24년 지원현황 : 대중견기업 및 공공기관 13개사 참여, 200여 건의 밋업 진행	▸ 스타트업 약 70개사 * '25년 지원현황 : 대중견기업 및 공공기관 10여개사 참여, 200여 건의 밋업 진행

지원대상

- 혁신적인 기술 및 아이디어를 보유한 벤처기업

지원내용

- 다국적 기업과의 연결을 통한 해외 판로 확보
- 대기업 협력 레퍼런스를 통한 투자유치 기회 제공
- 공동 연구 및 공동 실증사업 진행

신청·접수

- 무역협회 홈페이지(www.kita.net) 온라인 신청

- 무역협회 오픈이노베이션 플랫폼(www.innobranch.com) 온라인 신청
  * 온라인 신청서 작성 후 필수 제출서류 업로드(영문 사업소개서 및 협력 제안서)

심사·평가 주요내용

- ▸ 제품/기술의 시장성 및 해외 진출 가능성
- ▸ 제품/솔루션의 대·중견기업 수요 연계성 등

제출서류

- (대기업) 혁신 수요 분야 자료 (전화/이메일 상담 가능)
- (스타트업) 온라인 신청서 작성 후 필수 서류(협력 제안서 등) 업로드

처리절차

대·중견기업 수요 확인 → 모집 분야 공고 및 참가 접수 → 선정평가 → 선정기업 밋업

지원규모

- 스타트업 약 70개사
  * '25년 지원현황 : 대중견기업 및 공공기관 10여개사 참여, 200여 건의 밋업 진행

문의처

- 무역협회 스타트업글로벌성장실 : 카카오톡 플러스 채널 'KITA Stratup Branch'

용어 설명

오픈이노베이션 : 기업의 혁신을 위해 필요한 기술과 아이디어 개발에 외부 자원을 활용하는 것

기술실증을 위한 국내외 테스트베드 지원사업

사업개요

스타트업의 혁신 솔루션을 실제 다중복합시설 및 대기업 내외부 시스템에 접목하여 스타트업에게 현장 기술 실증(PoC, Proof-of-Concept)의 기회를 제공

〈 전년대비 달라지는 내용 〉

구분	'25년	'26년
지원 규모	▸ 스타트업 약 30개사 * '24년 지원현황 : 해외 테스트베드 2건 (스타트업 17개사) 및 무역센터 CMC 6개사와의 테스트베드 (스타트업 11개사) 진행	▸ 스타트업 약 20개사 * '25년 지원현황 : 해외 테스트베드 1건 (스타트업 10개사) 및 무역센터 CMC 6개사와의 테스트베드 (스타트업 10개사) 진행

지원대상

- 혁신적인 기술 및 아이디어를 보유한 벤처기업

지원내용

- 대기업/ 복합시설의 글로벌 가치사슬을 활용한 스타트업 기술 실증
- 다국적 기업과의 연결을 통한 해외 판로 확보
- 무역센터 CMC 보유 인프라(WTCS, 코엑스, 도심공항, 현대백화점, GKL 등)를 활용한 스타트업 기술 및 서비스 실증
- 대기업 협력 레퍼런스 확보를 통한 후속 투자유치 및 판로 확대에 활용가능

신청·접수

- 무역협회 홈페이지(www.kita.net) 온라인 신청
- 무역협회 오픈이노베이션 플랫폼(www.innobranch.com) 온라인 신청

  * 온라인 신청서 작성 후 필수 제출서류 업로드(영문 사업소개서 및 협력 제안서)

심사·평가 주요내용

- 제품/기술의 시장성 및 해외 진출 가능성
- 제품/솔루션의 무역센터 CMC사 수요 연계성
- 다중 복합이용시설에서 적용할 수 있는 안전성 및 신뢰성 등

제출서류

- 온라인 신청서 작성 후 필수 서류(협력 제안서 등) 업로드

처리절차

사업공고 → 신청·접수 → 선정평가 → 선정기업 미팅 → 신기술 테스트/시연 → 실제 구매 계약 등

지원규모

- 스타트업 약 20개사

  * '25년 지원현황 : 해외 테스트베드 1건 (스타트업 10개사) 및 무역센터 CMC 6개사와의 테스트베드 (스타트업 10개사) 진행

문의처

- 무역협회 스타트업글로벌성장실 : 카카오톡 플러스 채널 'KITA Stratup Branch'

용어 설명

PoC(Proof-of-Concept), 개념 증명 : 기존 시장에 없었던 신기술을 도입하기 전에 성능에 대한 검증을 위해 사용해보는 것. 특정 방식이나 아이디어를 실현하여 타당성을 증명하는 것.

글로벌 오픈이노베이션 플랫폼 운영

사업개요

스타트업 생태계 관계자들의 다각적인 연결을 지원하는 플랫폼으로, 주로 국내외 대·중견기업과 스타트업 간 양방향 매칭을 지원

지원대상

-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국내외 기업과 스타트업 연결 지원
- 스타트업 생태계 관계자들이 챌린지를 생성·관리하여 오픈이노베이션 사업 직접 운영

신청·접수

- 무역협회 오픈이노베이션 플랫폼(www.innobranch.com) 가입을 통한 플랫폼 이용

심사·평가 주요내용

- 제품/기술의 시장성 및 해외 진출 가능성
- 시제품 출시 여부 및 대량 양산 가능성
- 신규사업 등록 시 공고 내용의 적격성

문의처

- 무역협회 스타트업글로벌성장실 : 카카오톡 플러스 채널 'KITA Stratup Branch'

Q&A

Q **기업별로 한 명의 관리자만이 가입 가능한가요?**

A 아닙니다. 여러 명이 가입 가능하며, 기가입된 기업의 경우 기업 소개 내용은 추가 작성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NextRise, Seoul 글로벌 스타트업 페어

사업개요

아시아 최대 규모의 스타트업 페어로, 국내외 스타트업, 대·중견기업 및 투자자 간 비즈니스 밋업, 부스 전시, 컨퍼런스, 워크샵, 스타트업 경진대회, 네트워킹 행사 등을 개최하여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를 지원

〈 전년대비 달라지는 내용 〉

구분	'25년	'26년
신청·접수	- 비즈니스 밋업 신청 페이지 '24년 4월 중 오픈 예정	- 비즈니스 밋업 신청 페이지 '26년 4월 중 오픈 예정
Q&A	Q. 2025년도 넥스트라이즈는 언제 개최되나요? A. 〈NextRise 2024, Seoul〉은 6월 26일(목), 27일(금) 양일간 서울 삼성동 코엑스 A, B홀, 더플라츠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Q. 2026년도 넥스트라이즈는 언제 개최되나요? A. 〈NextRise 2026, Seoul〉은 6월 18일(목), 19일(금) 양일간 서울 삼성동 코엑스 그랜드볼룸, A·B홀, 더플라츠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지원대상

- 국내외 스타트업 생태계 관계자

지원내용

- 다국적 기업과의 비즈니스 밋업을 통한 해외 판로 확보
- 전시 부스 및 전시 공간 지원, 참관객 대상 기업 홍보
- 스타트업 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샵 및 스타트업 경진대회 개최

- 4차산업 혁신기술, 오픈이노베이션 관련 국내외 분야별 전문가 초청 컨퍼런스 개최

신청·접수

- 넥스트라이즈 공식 홈페이지 (www.nextrise.co.kr) 온라인 신청
  - 비즈니스 밋업 신청 페이지 '26년 4월 중 오픈 예정
- 무역협회 오픈이노베이션 플랫폼(www.innobranch.com) 온라인 신청
  - 온라인 신청서 작성 후 필수 제출서류 업로드 (영문 사업소개서 등)

문의처

- 무역협회 스타트업글로벌성장실 : 카카오톡 플러스 채널 'KITA Stratup Branch'
- 넥스트라이즈 홈페이지: https://www.nextrise.co.kr

Q&A

Q **2026년도 넥스트라이즈는 언제 개최되나요?**

A 〈NextRise 2026, Seoul〉은 6월 18일(목), 19일(금) 양일간 서울 삼성동 코엑스 그랜드볼룸, A·B홀, 더플라츠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스타트업브랜치를 통한 해외진출 지원

사업개요

-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 구성원이 만나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고 혁신을 촉진하는 커뮤니티 공간
- 서울 코엑스 2층에 조성되어 있으며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과 오픈 이노베이션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

지원대상

- 스타트업, 투자자(AC/VC), 스타트업지원기관, 창업희망자 등

지원내용

- 코엑스 스타트업브랜치 내 행사장, 회의실 및 코워킹 스페이스 제공
  - 행사장(피칭센터, 최대 100명 규모 행사 가능), 회의실(3개) 및 코워킹 라운지
  - 사전 예약 시스템을 통해 스타트업의 니즈에 따라 공간 대여

신청·접수

- 무역협회 홈페이지(www.kita.net) – 지원·사업 – 스타트업브랜치 – 이벤트 – 대관 신청하기 클릭

제출서류

- 온라인 신청서 (사업 내용 등 필수 기재)

처리절차

- kita.net 회원 가입 → 스타트업브랜치 멤버십 가입 → 이벤트 예약

멤버십 신청 및 승인 → 이벤트 개최 신청 → 이벤트 개최 승인 → 브랜치 사용 및 정리

오시는 길 및 이용방법

- 코엑스 동문(영동대로변)으로 입장하신 후 인포메이션 데스크를 지나 좌측에 있는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오시면 우측 방향에 위치하고 있음
- 스타트업브랜치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간 소개 및 사용 신청에 대한 상세 설명을 보실수 있음 https://bit.ly/3I87ueG

문의처

- 무역협회 스타트업글로벌성장실 : 카카오톡 플러스 채널 'KITA Stratup Branch'

tradeKorea (글로벌 B2B 전자상거래 사이트)

사업개요

국내 수출 중소기업의 온라인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비즈니스 매칭 등의 거래알선 서비스를 제공하고, 효율적인 해외 마케팅과 무역거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하는 글로벌 B2B e-marketplace

지원대상

- tradeKorea.com에 가입한 국내 기업회원

지원내용

〈해외바이어 발굴 서비스〉

- 바이어 추출 거래 제안
  - 무역협회가 보유한 231만개 바이어DB를 활용하여 직접 희망국가 및 품목의 바이어 검색 후 거래제안서(C/L) 발송
- 유망 바이어 매칭
  - 유망바이어와 국내업체 간 온라인 상시 거래알선 제공
- 바이어 구매오퍼
  - 실시간 바이어 인콰이어리 정보 제공

- 글로벌 B2B 플랫폼 입점
  - 알리바바/글로벌소시스 등 글로벌 B2B 플랫폼 상품등록 및 인콰이어리 유입 지원

〈tradeKorea 마켓 입점 혜택〉

- 영문 홈페이지 제작
  - tradeKorea 도메인 활용 셀러스토어 무료 제작
- 마케팅 및 편의서비스
  - 검색 광고 및 SNS 홍보, tradeKoea 멤버십별 서비스, B2B Chat 지원 등

신청·접수

- tradeKorea.com 회원 무료 가입 후 각종 서비스 신청
  - 영문 : www.tradekorea.com
  - 국문 : kr.tradekorea.com

문의처

- 한국무역협회 트레이드콜센터 : 1566-5114
-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 : www.kita.net

무역현장 자문서비스

사업개요

종합상사 및 대기업·중견기업 출신의 무역분야 평균 30년 이상 풍부한 실무 경험을 보유한 무역현장 자문위원이 직접 업체를 방문하여 1:1 맞춤형 컨설팅을 해드림

지원대상

- (신청자격) 제한 없음

지원내용

- 해외시장 정보, 바이어 발굴 등 해외마케팅 관련 단계별 종합 컨설팅
- 업체 애로 발굴 및 해소
- 거래 단계별 맞춤형 무역실무 및 경영컨설팅 등
  - 거래선 분석, 무역 관련 제반 서류 작성 지원 및 검수, 신용장 분석, 효과적인 바이어 대응과 협상 전략, 선적서류 작성 지원, 무역클레임 상담 등

신청·접수

-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www.kita.net) – 멤버십서비스 - 자문·상담 – 무역현장 컨설팅

- 전화신청 : 한국무역협회 트레이드콜센터(1566-5114)
- 한국무역협회(삼성동 트레이드타워 1층) 회원서비스센터

문의처

- 한국무역협회 트레이드콜센터 : 1566-5114

KITA무역진흥자금 융자

사업개요

수출중소기업의 수출 마케팅/이행에 필요한 자금을 저리로 융자 지원

지원대상

- 전년도 수출실적이 2,000만 달러 이하이고 신청일 현재 한국무역협회 회비를 완납한 업체

지원이 안되는 기업

▸ 주된 사업의 업종이 융자제외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내용

- 시중은행(8개) 및 지방은행(5개)의 본·지점을 통하여 융자
  * 한국무역협회 본부(무역진흥자금사무국) 및 13개 국내지역본부가 추천업체 선정

유의사항

- 은행 심사결과에 따라 무역보험공사,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서 또는 자체 신용이나 부동산 등의 담보를 제출하여야 함

융자조건

- 금리 : 연 2.5~3.0%(고정금리)
  - 회비납부 10년이하(3.0%), 11~20년(2.75%), 21년이상(2.5%)

- 기간 : 3년(2년 거치 후 연 4회 균등 분할상환) (1,4,7,10월의 25일)
- 융자한도 : 최고 3억원 (회비납부 연차에 따라 한도 차등)
  - 회비납부 10년이하(2억원), 11~20년(2.5억원), 21년이상(3억원)
    * 단, 사업성 등을 감안하여 조정하고, 수출실적이 없는 신규업체는 사업계획서, 자금사용계획서, 수출계약서 등을 검토하여 금액을 산정

신청·접수

- 무역진흥자금 홈페이지(membership.kita.net)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 신청기간 : 매년 4월~11월, 월초(1일~10일) 신청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제출서류

- 기본서류
  - 무역진흥자금 융자추천 신청서(온라인 양식)
  - 무역진흥자금 사용계획서
  - 사업계획서(기 작성된 자료 첨부 가능)
- 선택서류
  - 융자신청서 상의 가점 항목(특허·인증 및 수상이력 등)에 해당되는 업체에 한하여 해당 서류 사본 제출
- 서류제출
  - 온라인 신청서 상 내용 작성 및 파일 첨부

문의처

- 한국무역협회 트레이드콜센터(1566-5114) 및 해당지역의 지역본부
- 한국무역협회 무역진흥자금 홈페이지(membership.kita.net)

KITA 해외 바이어 초청 국내 수출상담회 (Korea Grand Sourcing Fair 2026)

사업개요

- 글로벌 빅바이어 초청 및 국내 수출유망기업과의 1:1 비즈니스 매칭 상담 주선 및 부대행사 개최
- 행사 기간 및 장소 : 2026. 11. 24(화) ~ 25(수), 코엑스 D홀

〈 전년대비 달라지는 내용 〉

구분	'25년	'26년
-	▸행사 기간 및 장소 : 2025. 11. 25(화) ~ 26(수), 코엑스 B홀	▸행사 기간 및 장소 : 2026. 11. 24(화) ~ 25(수), 코엑스 D홀

지원대상

- 국내 중소·중견 제조기업 800여개사(예정)

지원내용

- 글로벌 빅바이어와 국내 수출유망기업 상담 주선
  - 지역별/품목별 바이어 선정을 통한 전략적 1:1 비즈니스 매칭 지원
- 주한외교공관 초청 현지 시장진출 정보제공 컨설팅 및 세미나
- 우수상품 쇼케이스 운영
- 지원규모 : 933개사('25년 기준)

  * 참가비 무료(단, 심사를 통해 참가기업 선정)

신청·접수

- 공고(예정) 시기 : 7월~9월
-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www.kita.net) 온라인 신청
  - * 트레이드코리아 가입과 연계하여 진행
- 참가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제품 영문 카탈로그 1부 등
  - * 상담회별 제출 서류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개별 모집공고 확인 필수

처리절차

사업계획 공고 (7월) → 신청·접수 (7~8월) → 지역별/품목별 바이어 섭외 → 바이어/셀러 매칭 및 매칭 결과 통보 → 대면·비대면 상담 실시 → 사후관리 및 피드백

문의처

- 한국무역협회 해외바이어마케팅센터 : 02-6000-5661/5662
- tradeKorea 홈페이지 : kr.tradekorea.com

참고사항

① 전년도 사업공고

- [참고] 공고명 : Korea Grand Sourcing Fair 2025 참가업체 모집
  - (경로) 지원 · 사업 → 사업신청
  - (홈페이지)

해외 현지 전시 · 상담회 및 판촉전

사업개요

- KITA가 국내 수출 중소기업과 함께 해외로 나가 개최하는 전시 형태의 상담회로, 참가기업별 개별 전시 부스 형태를 갖추면서 현지 바이어와의 1:1 비즈니스 매칭 상담이 일정 부분 보장되는 특징이 있음
- 유럽, 아시아 등 해외 현지에서 개최되는 마케팅 행사와 연계, B2B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와 B2C 참관객 대상 판촉전을 연계한 통합 마케팅 지원사업

지원대상

- 국내 중소·중견 제조기업

지원내용

- 바이어 초청 대면 상담 (B2B), 일반 참관객 대상 홍보 (B2C)
- 상담 바이어 발굴, 매칭 및 통역 지원
- 인플루언서 초청 제품 홍보 등 부대행사 개최 및 지원
- 참가기업 개별 전시 부스 구성
  - * 부스임차료 등은 참가기업 부담
- 온라인 전시관 (tradeKorea.com) 운영 및 홍보
- 기존 4개 도시(도쿄, 호치민, 파리, 자카르타) 외 미국 LA 소비재전 신규 개최 예정

◉ 2026년 추진계획

순번	전시·상담회명	일정	장소	규모
1	도쿄 K-프리미엄 소비재전*	4.16(목) ~ 4.18(토)	도쿄 선샤인시티	120개사 200부스
2	베트남 K-프리미엄 소비재전	6.4(목) ~ 6.7(토)	호치민 SECC 전시장	250개사 300부스
3	파리 K-프리미엄 소비재전	6.18(목) ~ 6.20(일)	파리 엑스포 포르트 드 베르사유	280개사 500부스
4	자카르타 K-프리미엄 소비재전	9.3(목) ~ 9.6(일)	자카르타 JICC 전시장	350개사 400부스
5	LA K-프리미엄 소비재전	10월 예정	LACC	미정

신청·접수

◉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www.kita.net) 온라인 신청

제출서류

◉ 참가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제품 영문 카탈로그 1부 등

* 상담회별 제출 서류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개별 모집공고 확인 필수

처리절차

사업계획 공고 (사업추진 3개월 전) → 신청·접수 → 참가 업체 선정 및 사전 제품 발송 → 현지 샘플 전시 및 마케팅 지원 → 대면·비대면 상담 실시 → 사후관리 및 피드백

문의처

◉ 한국무역협회 트레이드콜센터 : 1566-5114

◉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 : www.kita.net

전문무역상사 제조기업 매칭 수출상담회

사업개요

대외무역법에 의거 '대한민국 공식 수출 국가대표'로 지정된 전문무역상사가 해외마케팅 역량이 부족한 수출 초기 기업의 직접/간접 수출을 지원

〈 전년대비 달라지는 내용 〉

구분	'25년	'26년
사업명	전문무역상사 대중소 동반수출 상담회	전문무역상사 제조기업 매칭 수출상담회
일정	2025년 수출상담회 일정	2026년 수출상담회 일정 (아래 표 참고)

〈 2026년 전문무역상사 수출상담회 일정 〉

순번	시행시기	지역	품목
1	3월	대구	종합품목(소비재, 산업재)
2	4월	광주	종합품목(소비재, 산업재)
3	5월	부산	종합품목(소비재, 산업재)
4	6월	제주	소비재
5	6월	강원	종합품목(소비재, 산업재)
6	9월	경기남부	종합품목(소비재, 산업재)
7	10월	경기북부	종합품목(소비재, 산업재)
8	11월	대전	드론, AI 나노반도체, 바이오 등
9	11월	서울	종합품목(소비재, 산업재)

※ 일정 및 품목은 변동가능성 있음

지원대상

- 국내 중소·중견 제조기업 및 전문무역상사 지정 기업*

  * 산업부 발급 유효 지정서 보유 기업

지원내용

- 수출 역량이 부족한 중소·중견 제조기업의 간접 수출 지원을 위한 전문무역상사-제조기업 1:1 비즈니스 매칭 지원
- 국내 유망 제조기업과 온라인·오프라인 맞춤형 매칭 상담 알선 등 수출 마케팅 지원

  * 참가비 무료(단, 매칭 후 참가기업 선정)

신청·접수

-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www.kita.net) 온라인 신청
- 전문무역상사 홈페이지(ctc.kita.net)

  * 개별 사업계획에 따라 온라인 및 이메일 접수 병행

- 전문무역상사-제조기업 매칭 상담회 연중 상시 개최
- 상담회별 모집공고문 참조

처리절차

- 오프라인 상담회

상담회 공고 (kita.net) (연중 상시) → 일시, 장소, 신청대상 등 정보 확인 → 상담회 참가 신청서 등 제출서류 송부

- 온라인 매칭

전문무역상사 홈페이지 접속 (ctc.kita.net) → 로그인 (kita.net 회원가입 필요) → 「온라인 상시 매칭 지원」메뉴 "전문무역상사 검색" → 수출 희망 품목 및 국가 등의 키워드로 상담 희망 전문무역상사 검색 → 상담 희망 전문무역상사에게 메시지 발송

문의처

- 한국무역협회 트레이드콜센터 : 1566-5114
-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 : www.kita.net
- 전문무역상사 홈페이지 : ctc.kita.net

전문무역상사 대중소 동반수출 해외 판촉전

사업개요

- 대기업 · 재외동포기업 해외네트워크를 활용한 유력시장 진출사업 추진
  - 글로벌 유통체인 전문무역상사* 활용 현지 MD 초청 상담회 및 해외 프로모션 사업 개최

  * 연초 선발 예정

〈 전년대비 달라지는 내용 〉

구분	'25년	'26년
참여기업	* 롯데마트, GS리테일, NH농협무역, H마트, 포스코인턴내셔널 등	* 연초 선발 예정
일정	2025 Step to Export 행사 일정	2026 해외판촉전 일정

〈 2026 해외판촉전 일정 〉

시행시기	행사명	내용
1~3월	2026 대중소 동반수출 해외 판촉전 전문무역상사 선발	글로벌 유통체인을 보유한 전문무역상사 참가업체 모집
4월	2026 전문무역상사 해외MD 초청 매칭 상담회	선발 전문무역상사 - 국내 유망 제조기업 매칭
5~11월	2026 전문무역상사 협업 해외판촉전	매칭된 전문무역상사와 제조기업이 협업하여 해외 현지에서 판촉전 개최

※ 상기 일정은 변동 가능성 있음

지원대상

- 국내 중소·중견 제조기업

지원내용

- 대기업 전무무역상사 및 대기업 전문무역상사의 해외파트너사와 수출 상담회
- 우수 제조기업 대상 온·오프라인 해외 현지 판촉전 지원
  - * 참가비 무료(단, 매칭 후 참가기업 선정)

신청·접수

-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www.kita.net) 온라인 신청
- 전문무역상사 홈페이지(ctc.kita.net)
  - * 개별 사업계획에 따라 온라인 및 이메일 접수 병행
- 상담회별 모집공고문 참조

처리절차

사업계획 공고	→	참가업체 모집	→	서류심사
산업부·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협회		대기업 전문무역상사

1차 상담회	→	2차 상담회 참가업체 선정	→	2차 상담회
대기업 전문무역상사, 국내 제조기업		대기업 전문무역상사		대기업 전문무역상사, 대기업 전문무역상사의 해외파트너사, 국내 제조기업

해외판촉전 참가기업 선정	→	제품 대행 수출	→	현지 판촉전
대기업 전문무역상사, 대기업 전문무역상사의 해외파트너사		대기업 전문무역상사		대기업 전문무역상사의 해외파트너사

문의처

- 한국무역협회 트레이드콜센터 : 1566-5114
-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 : www.kita.net
- 전문무역상사 홈페이지 : ctc.kita.net

국내 전문 전시회 개최 및 연계 수출 상담회 개최

사업개요

- KITA 주관 유망 산업별 전문 전시회 개최를 통해 국내외 바이어 - 셀러 - 소비자 간 제품 홍보 및 비즈니스 기회 제공과 동시에 해외 바이어 매칭 상담회 통해 수출 판로 개척 지원
- 2026년 추진계획

	전시·상담회명	전시 주관	일정	장소	홈페이지	비고 (전년 개최규모)
1	오토메이션 월드 (AW) 연계 수출상담회	코엑스, 한국산업지능화협회, 스마트제조혁신 추진단 등	3.4(수) ~ 3..6(금)	코엑스 A,B,C,D홀	https://www.automationworld.co.kr/	참가기업 500개사, 참관객 70,000명
2	서울국제 스포츠레저산업전(SPOEX)	한국무역협회 국민체육진흥공단	3.26.(목) ~ 3.29.(일)	코엑스 A,B,C홀	https://spoex.com/	참가기업 319개사, 참관객 42,923명
3	월드 IT 쇼 (World IT Show)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제신문, 전자신문, 코엑스 등	4.22.(수) ~ 4.24.(금)	코엑스 A,B,C홀	https://www.worlditshow.co.kr/	참가기업 450개사, 참관객 47,539명
4	AI서밋서울앤엑스포 (AIS)	DMK, 코엑스, 한국무역협회	8.19.(수) ~ 8.21.(금)	코엑스 B홀 & 그랜드볼룸	https://www.aisummit.co.kr/	참가기업 71개사, 참관객 14,434명
5	자율주행모빌리티산업전(AME) 연계 수출상담회	코엑스, 한국자율주행산업협회	8.25.(화) ~ 8.27.(목)	코엑스 B홀	https://am-expo.co.kr/	참가기업 60개사 참관객 14,000명

〈 전년대비 달라지는 내용 〉

구분	전년대비 달라지는 내용
국제해양방위산업전	격년 개최 행사로 2026년 미개최
AI서밋	2025년 신규 추진
자율주행모빌리티산업전	2026년 신규 추진

지원대상

- 해당 산업 분야 관심기업

지원내용

- 국내 온·오프라인 전시회 개최
- 전시회 연계 빅바이어 초청 대면·비대면 상담회 진행, 세미나 등 부대행사 개최
  - * 전시회 부스 참가 시 참가비 기업 자부담

신청·접수

- 전시회 부스 참가 : 각 전시회별 지정 접수처
- 전시회 연계 마케팅 사업 : 전시회 참가기업 우선 매칭

처리절차

- 전시회 부스 참가

전시회 부스 참가 모집 공고 (각 전시회 홈페이지) → 신청·접수 → 부스 참가 계약금 납입 → 부스 참가 잔금 납입

- 전시회 연계 마케팅 사업 참가

참가 기업별 맞춤형 바이어 섭외 → 바이어/셀러 매칭 및 매칭 결과 통보 → 비즈니스 상담 실시 → 사후관리 및 피드백

문의처

- 전시회 참가 문의 : 각 전시회 홈페이지
- 전시회 연계 마케팅 사업 문의
  : 한국무역협회 트레이드콜센터 (1566-5114, www.kita.net)

참고사항

① 전년도(2025년) 사업공고

- (경로) 지원 · 사업 → 사업신청
- (인터넷 주소)

순번	전시·상담회명	일정	홈페이지/모집공고
1	오토메이션 월드(AW) 연계 수출상담회	3.12.(수) ~ 3.14.(금)	https://www.automationworld.co.kr/
2	서울국제스포츠레저산업전 (SPOEX)	3.27.(목) ~ 3.30.(일)	https://spoex.com/
3	월드IT쇼 (World IT Show)	4.24.(목) ~ 4.26.(토)	https://www.worlditshow.co.kr/
4	AI서밋서울앤엑스포 (AIS)	11.10.(월) ~ 11.11.(화)	https://www.aisummit.co.kr/

- (홈페이지)
- (홈페이지)
- (홈페이지)
- (홈페이지)

해외 전문 전시회 참가 지원

사업개요

- KITA가 지자체, KOTRA, aT 등과 협력하여 국내 수출 중소기업의 해외 유명 전문 전시회에 단체관 참가를 지원
- 2026년 추진계획

구분	전시회명	시기	장소	모집업체	교부기관
1	멕시코 과달라하라 식품 전시회 (EXPO ANTAD)	5.19.(화) ~ 5.21.(목)	과달라하라 Expo Guadalajara	10개사	aT
2	북미 코스모프로프 (Cosmoprof North America Las Vegas)	7.13.(월) ~ 7.15.(수)	라스베이거스 Mandalay Bay Convention Center	6개사	강남구청
3	독일 함부르크 조선 및 해양 전시회 (SMM)	9.1(화) ~ 9.4(금)	함부르크 Hamburg Messe	10개사	KOTRA
4	싱가포르 빅데이터 및 AI 전시회 (Big Data & AI World)	9.29.(화) ~ 9.30.(수)	싱가포르 Sands Expo Convention Center	10개사	KOTRA
5	두바이 뷰티월드 (Beauty World Middle East)	10.6.(화) ~ 10.8.(목)	두바이 World Trade Centre	8개사	강남구청

지원대상

- 중소기업 기준에 준하는 업체

지원내용

- 부스 임차료(최대 70%) 및 장치비(최대 70%) 지원
- 장치·운송·상담·현지언론 홍보 등 애로사항 지원
- 전시정보·시장동향 등 정보 수집

  * 전시회별 지원율 상이, 지원전시회 및 업체 수 변동 가능

신청·접수

- 공동수행기관 사이트 온라인 신청
  - 무역협회 (www.kita.net)
  - KOTRA (www.gep.or.kr)
- 공동수행기관 사이트 온라인 신청 및 무역협회로 서류 제출

처리절차

사업계획 공고 (참가 5~6개월 전) → 전시회별 신청·접수 → 평가·심사 → 참가업체 선정 (4~5개월 전) → 설명회 개최 (1~2개월 전) → 해외전시 참가 → 사후관리 (종료 후 ~ 1년까지)

문의처

- 한국무역협회 트레이드콜센터 : 1566-5114
-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 : www.kita.net

참고사항

① 전년도 사업공고

- 공고명 : 2025 독일 쾰른 스포츠·피트니스 전시회 (FIBO 2025) 한국관 참가 기업 모집
  - (경로) 지원 · 사업 → 사업신청
  - (홈페이지)
- 공고명 : 2025 미국 마이애미 F&B 전시회 (AFB Show 2025) 한국관 참가 기업 모집
  - (경로) 지원 · 사업 → 사업신청
  - (홈페이지)
- 공고명 : 2025 미국 시카고 프라이빗 라벨 전시회 (PLMA 2025) 한국관 참가 기업 모집
  - (경로) 지원 · 사업 → 사업신청
  - (홈페이지)

9-15 무역 전문상담 맞춤형 지원 (채팅/화상/전화)

디지털 무역상담 플랫폼 TradePro

사업개요

무역업체의 전문상담 지원을 위해, 변호사, 회계사, 무역실무, 해외인증 전문가 등 각 분야 전문가들과 채팅/전화 맞춤형 상담 지원

〈 전년대비 달라지는 내용 〉

구분	'25년	'26년
지원내용	-	지원내용 상담분야 및 컨설턴드 추가 (ESG, 할랄)

지원대상

- 신청자격 : 무역협회 회원사 (비회원사는 월 2회 이용 가능)

지원내용

- 변호사, 회계사, 무역실무, 해외인증, 지역전문가 등 분야별 전문가 컨설팅을 맞춤형 방식으로 제공 (채팅/전화)

상담분야	이용방식	컨설턴트
무역실무	온라인 예약 (전문가의 상담가능 시간에 맞추어, 고객이 원하는 상담형태로 사전예약)	무역실무 전문가
관세/통관		관세사
계약/클레임		변호사
세무/회계		세무사/회계사
특허/상표		변리사
해외인증		해외인증 전문가
외환/환리스크		외환 전문가
지역전문가		지역 전문가
물류/운송		물류 전문가
이커머스/마케팅		마케팅 전문가
인력관리		노무사
품목전문가		품목 전문가
ESG		ESG 전문가
할랄		할랄 전문가 (중동/동남아)

* 최신 상담 분야는 홈페이지 참조

신청·접수

- TradePro.kr 또는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www.kita.net) 멤버십 서비스 〉 자문·상담 〉 TradePro

APEC 기업인여행카드(ABTC) 발급

사업개요

APEC 회원국간 역내 무역 및 투자 확대를 위한 멀티 VISA로써 역내 기업인에게 별도의 입국비자 없이(60~180)일간 체류 보장하고, 공항내 전용 수속레인을 통한 출입국이 가능하게 하는 제도

〈 전년대비 달라지는 내용 〉

구분	'25년	'26년
신규발급	실물ABTC 발급	모바일ABTC 발급 (25년 4월부터 변동)
심사기준	개인 출입국 심사 기준 - 2018년 이후부터 산정	개인 출입국 심사 기준 - 최근 2년 이내 기간으로 산정 (25년 10월부터 변동)

추천대상

- 법무부 훈령 제1576호 제3조에 의거
  - 무역업체 : 직전년도 또는 당해연도(최소 6개월 이전) 수출 또는 수입실적 10만 달러 이상인 기업 또는 해당기업을 자회사로 두고 있는 지주회사(무역업고유번호 필수)
  - 해외투자업체 : 해외직접투자액이 10만 달러 이상인 기업
    * 해당기업을 자회사로 두고 있는 지주회사도 가능
  - 해외건설업체 : 해외건설업면허를 취득한 기업으로 접수일 현재 기준으로 해외건설 수주실적이 있는 업체

- 외국인투자업체 : 미화 100만 달러 이상을 국내에 투자한 외국인 투자기업
- 전시업체 : 실내 전문전시장(부대시설은 제외) 규모가 10,000㎡ 이상이며 국제전시연합이 인증한 국제전시회를 카드접수일 현재 기준으로 3회 이상 개최한 기업이나 단체

추천제외 대상

▸ 상기 지원 대상 기업의 수출입 또는 투자업무 담당자라 하더라도 APEC 회원국으로의 출입국사실(최근 2년간 4회 이상 상용목적으로 방문)이 없는 개인

추천내용

- APEC 회원국중 ABTC(APEC Business Travel Card)가입 19개국 방문시 별도의 입국비자 없이 출입국을 보장
- 가입국 공항내의 ABTC 소지자 전용레인(Fast Track)을 통한 출입국 수속 가능
- ABTC 21개 가입국
  - VISA 면제(19개국) 한국,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중국, 대만, 필리핀,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파푸아뉴기니, 페루, 홍콩, 멕시코, 러시아, 싱가폴, 베트남, 칠레, 일본, 브루나이
  - 미국과 캐나다는 비자면제를 인정하지 않고 국제공항에서 전용레인(Fast Track)을 통한 수속만 보장하는 잠정회원(Transitional Membership)으로 입국 시 별도의 비자가 필요
- 카드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5년(유효기간 만료 시 신규신청)

신청·접수

- 한국무역협회 ABTC 홈페이지(abtc.kita.net)를 통한 온라인신청

제출서류

◉ 준비 서류(온라인 작성,첨부/별표는 별도 우편제출)

- 추천의뢰서
- 신청자명단 및 재직정보확인서
- 소지자 명단
- 사업자등록증명(2개월 이내 발급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 ★신청자격 확인용 실적 증빙서류(신청자격 확인용 증빙서류표 참조)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지급연월 기준 최근 한 달전, 기업 인감 날인 필, 매월/반기 체크 필)

* 1인 기업으로 발행이 되지 않을 경우,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으로 대체

〈 신청자격 확인용 증빙서류 〉

신청대상	증 빙 서 류	발 급 처
무역업체	▸ 수출/수입실적증명서 - 직전년도 또는 해당년도(6개월 이전) - 최근 2개월 이내 발급된것	직수출/입 : 한국무역협회 간접수출 : 외국환은행/ KTNET
해외투자업체	▸ 해외직접투자신고서+외화송금확인서 또는 외화송금전문사본 - 해당 거래 은행 명판 및 도장 날인	외국환은행(증권사/보험사의 경우 금융감독원 또는 재정경제부에서 발행)
건설업체	▸ 해외건설 수주실적 확인증명서	해외건설업협회
외국인투자업체	▸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 100만 달러 이상 투자기업	외국인투자신고를 한 기관
전시업체	▸ 국제전시연합(Union Des Foires Internationals) 인증서 - 국제전시회 3회 이상 개최 - 실내 전문전시장(부대시설은 제외) 규모가 10,000㎡ 이상 - 인증서 사본에 기업인감 날인후 원본 제출	국제전시연합(UFI)
APEC종사자 경제단체 공무원	▸ 별도 실적서류 필요 없음 - 해당 경제단체: 한국경제인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대한상공회의소의 회원인 지역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에 근무하는 임직원 - 단체별 카드발급 인원은 20인 이내 (단, 지역상공회의소는 3인 이내) - 업무기술서 및 재직증명서 필요	해당업체(근무처)

- 개인서류(신청자 개인별 각 1부)
  - ★영문신청서(규정양식) + 여권용 사진 부착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 규정양식에 빈칸없이 작성
    * 서명은 여권서명과 동일, 검은색 굵은펜을 이용한 자필 서명(굵은펜이 아닐 경우 발급된 카드서명이 보이지 않을수도 있으며, 서명 교체 등록 불가)
    * 흰색배경/가로 3.5cm x 세로 4.5cm (외교통상부에서 규정한 여권사진 규격)
  - 여권사본 : 모든 내용이 명확하게 보이도록 온라인 첨부
    (여권서명페이지 포함)
  - 정보이용동의서(온라인 전자서명)
  - 서약서(온라인 전자서명)
  - ★범죄경력회보서(범죄경력이 없음을 입증할 수 있는 원본서류 제출)
    * 발급처 : 전국 경찰서 방문/온라인 발급
    * 온라인발급(공동인증서) 발급시스템 주소 : http://crims.police.go.kr
    * 발급용도 : 외국 입국 체류 허가용
    *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
    * 국문, 영문회보서 상관없이 신청가능
    * 반드시 밀봉하여 봉투에 '범죄경력회보서/업체명/신청자명' 표기

처리절차

신청서류 (신청업체) → 추천심사 (무역협회) → 법무부심사 (법무부) → 어플리케이션 사용 및 APEC 회원국 승인 (19개 국가)

문의처

- 한국무역협회 트레이드콜센터 : 1566-5114
- 한국무역협회 ABTC홈페이지 : http://abtc.kita.net

Q&A

Q **ABTC를 신청하고 발급받기까지의 소요기일은 얼마인가요?**

A ABTC를 신청하신 후 추천심사에서 발급심사를 거쳐 각 국가별 승인이 이루어지는 데 걸리는 시간은 최장 6개월 소요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ABTC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거나 ABTC 홈페이지의 FAQ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btc.kita.net)

용어 설명

ABTC(APEC Business Travel Card) : APEC 회원국 간 기업인의 신속한 출입국 수속을 보장하는 VISA 면제 출입국카드

무역분야 외국인 사증(VISA) 발급 추천

사업개요

기업이 무역분야 외국인 고용을 위해 비자 발급을 지원하고자 할 때, 사증(VISA) 발급의 필요성을 인증해주는 추천

지원대상

- 신청자격 :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추천
  - 무역업고유번호를 보유하고 있는 무역업체
  - 신청일 기준 전년도 수출실적이 10만불 이상
  - 사증발급 추천대상 외국인은 무역관련 전공(경제, 경영학포함) 학사 이상의 학력을 소지했거나, 국내외에서 1년 이상 무역관련 업무에 종사한 자이어야 함
  - 하나의 신청업체는 동일한 국적을 가진 외국인을 2명 이상 추천할 수 없음. 다만, 전년도 수출실적이 100만불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지원내용

- 무역분야에 종사하는 외국인에 대한 사증 발급 추천

신청·접수

- 무역협회 홈페이지(www.kita.net)에서 온라인 작성 및 첨부

신청서류

◉ 온라인 제출 및 심사(심사 후 추천서 온라인 발급)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www.kita.net)->외국인 사증 발급 추천란에 게재된 구비서류(해당 서류가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에는 한글 번역본 포함) 온라인 제출

- 사증발급 추천신청서 1부
- 회사소개서 1부
  (대표, 업종, 종업원수, 생산품목, 해외영업 등 서술) 1부
- 사업자등록증 1부
- 무역업고유번호 부여증 사본 1부
- 전년도 수출실적증명서 1부
- 외국인 여권 사본 1부
- 외국인 이력서 1부
- 외국인 학력증명서(졸업장 사본 가능) 1부
- 경력증명서(현지 공증서 첨부) 1부
- 고용계약서 사본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 무역인력 사증발급 추천 서약서 1부
- 외국인 고용 사유서(외국인 고용의 불가피성 서술) 1부

처리절차

온라인 상 작성 및 서류 첨부 → 접수 및 검토 (5-7일 소요) → 승인/보안(반려) 통보 → 승인 후 추천서 온라인 발급

※ 한국무역협회 무역지원서비스(www.kita.net) 참조

용역 및 전자적 무체물 수출입실적 증명발급

사업개요

서비스 및 무형재화의 수출실적 확인을 통해 무역지원사업 혜택 제공

지원대상

- 무역업고유번호 부여업체

지원내용

- 용역 및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 수출입실적 온라인 확인 및 증명발급
  - 용역 : (1) 건설업, (2) 숙박 및 음식점업, (3) 운수 및 창고업, (4) 정보통신업(출판업,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포함), (5) 금융 및 보험업, (6) 부동산업, (7)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과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8)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9) 교육 서비스업, (10)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1)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12)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과 제조업 중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13)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 (14) 국제 및 외국기관의 사업 등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3조 참조)
  -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 : (1) 소프트웨어, (2) 부호·문자·음성·음향·이미지·영상 등을 디지털 방식으로 제작하거나 처리한 자료 또는 정보 등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4조 참조)

신청·접수

- 온라인 신청 : 한국무역협회 무역지원서비스(membership.kita.net)
  - [무역관련 증명서 발급] → [수출입실적 증명서] → [발급 신청] → [용역/전자적무체물] 탭 선택 후 신청

제출서류

- 온라인 신청 시 첨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PDF 파일)
  - 거래증명서 서류
  - 송금 및 입금 증빙서류

처리절차

외화 입출금 증빙 발급 (거래 외국환은행) → 홈페이지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신청접수 → 담당자 검토 및 승인(3~7일) → 홈페이지에서 실적증명서 인쇄

※ 한국무역협회 무역지원서비스(membership.kita.net) 참조

문의처

- 한국무역협회 트레이드콜센터 : 1566-5114

Q&A

Q **신청에서 증명서 발급까지는 얼마나 걸리나요?**

A 온라인 접수 후 보통 최소 7일~최대 10일의 검토기간이 소요되며 검토 후 증명 발급 여부를 SMS / E-Mail 로 통보해 드립니다. 발급된 증명서는 온라인에서 출력이 가능합니다.

한·중 FTA, RCEP 현장방문컨설팅

사업개요

우리 기업들의 한중 FTA 및 RCEP 활용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신청기업을 방문하여 FTA 활용 실무, 중국 인증, 지식재산권, FTA 시스템 운영 등 맞춤형 전문 컨설팅을 수행

지원대상

- 전국 중소·중견기업 (신청제외 대상: 공정위 고시 대규모 기업집단에 속한 기업 및 공기업. 직접 2년 내 FTA컨설팅 수혜 기업, 단 품목, 협정 등이 상이할 경우 상담 후 지원 가능)

지원내용

- 수요자 맞춤선택형 종합 컨설팅(관세/FTA, 인증, 지재권, 시스템)
  - FTA 활용 교육 1MD를 필수로 선택하고, 나머지 9MD에 대해서 총 4개 분야를 수요자 필요에 따라 구성하는 맞춤형 컨설팅 (MD=Man Day)

신청·접수

- 공고(예정)시기 : 2026년 3~4월 中, * 변동 가능
- 신청 : FTA 통상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https://okfta.kita.net) 차이나데스크 현장방문컨설팅 메뉴에서 온라인 신청 또는 국번없이 1380 전화 → FTA활용상담 → 차이나데스크 현장방문컨설팅 상담 요청
- 신청기간 : ~2026. 11. 30(단, 사업비 소진 시 조기 종료)
- 기업분담금 : 총 컨설팅 비용이 200만원(MD당 약 50만원) 초과시 전년도 매출액에 따라 차등 부담

  * 분담금 비율 전년 동일

직전년도 매출액	컨설팅 기업 분담금
50억원 이하	무료
50억~100억원 미만	10%
100억원~500억원 미만	20%
500억원~1,000억원 미만	30%
1,000억원~1,500억원 미만	40%
1,500억원~대기업 미만	50%

* 기업분담금 계산 예시: 총 컨설팅 액이 300만원이고, 해당기업 직전년도 매출액이 80억일 경우, 기업분담금은 10만원 [(300만원-200만원)*10%]

- 제출서류 : FTA 통상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https://okfta.kita.net) 內 차이나데스크 현장방문컨설팅 온라인 신청

신청	▸ 참가신청서 1부 (*온라인 작성 후 아래 필수 제출서류 파일 함께 업로드)	
필수 제출 서류	① 사업진행 동의서 1부	② 정보제공 동의서 1부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④ 직전년도 매출실적 증빙서류 1부
	※ 매출실적 증빙서류 : 표준재무제표증명원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 국세청 홈택스 발급본만 인정 / 기장대리 세무사 확인본 불가)	

- 심사평가 주요내용 : FTA관세실익, 직전 2년내 FTA 컨설팅 여부, 대기업집단 여부 확인

추진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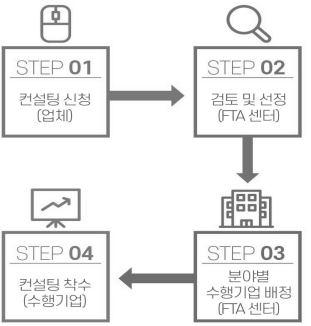

지원규모

- 70개사 내외(사업비 1.5억원)

문의처

- 한국무역협회 FTA 통상종합지원센터 차이나데스크(02-6000-5743/4992)
- 컨설팅 신청접수 채널
  - 전화 : 국번없이 1380 콜센터
    (FTA상담활용>차이나데스크 현장방문컨설팅 문의)
  - 홈페이지 : http://okfta.kita.net>차이나데스크 현장방문컨설팅

참고사항

① 전년도 사업공고

- 공고명 : 2025년도 차이나데스크 현장방문컨설팅 참가기업 모집
  - (경로) :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www.kita.net) 공지사항
  - (홈페이지)

OK FTA 컨설팅 지원사업

사업개요

FTA 활용에 애로를 겪고 있는 수출(또는 국내공급)업체에 맞춤형 현장 방문 컨설팅을 지원

〈 전년대비 달라지는 내용 〉

구분	'25년	'26년
지원 기준	-	매출액 1,500억원 이상 업체 지원 불가

지원대상

◉ 전국 중소·중견기업

신청제외 대상

- ▸ 공정위 고시 대규모 기업집단에 속한 기업 및 공기업
  (단, 전년도 매출액 1,500억원 이상 업체 지원 불가)
- ▸ 직전 2년내 FTA 컨설팅 수혜기업(단, 품목, 협정 등이 상이할 경우 지원 가능)

지원내용

◉ FTA 활용 및 원산지관리에 필요한 맞춤형 컨설팅

- FTA협약 상대국에 수출중이거나 수출하려는 기업의 원산지관리, 원산지 증명서 발급 및 원산지 인증수출자 인증 취득 등 지원

- FTA종합센터는 서울 및 전국 단위 공급망을 대상으로, 지역FTA 센터는 관할 권역을 대상으로 종합 컨설팅 및 기초 컨설팅을 시행

유형		컨설팅 내용	지원MD	담당 기관
종합	A	종합 컨설팅 (품목수 최대 4개)	6~10일 (필수 6+선택 4일)	FTA통상종합지원센터 (서울) + 지역 FTA활용지원센터 (전국 18개소)
기초	B	수출기업 원산지증명서 발급 지원 컨설팅 (품목수 최대 2개)	2~5일 (필수2일+선택3일)	
	C	협력기업 원산지확인서 발급 지원 컨설팅 (품목수 최대 2개)	2~5일 (필수2일+선택3일)	

업체 분담금
전년도 매출액 기준 차등분담 : ① 50억원 이하 : 무료 ② 50억원~100억원 미만 : 10% ③ 100억원~500억원 미만 : 20% ④ 500억원~1,000억원 이하 : 30% ⑤ 1,000억원~1,500억원 미만 : 40%

신청·접수

- FTA통상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okfta.kita.net)에서 온라인 신청

신청	▸ 참가신청서 1부 (*온라인 작성 후 아래 필수 제출서류 파일 업로드)	
필수 제출 서류	① 사업진행 동의서 1부	② 정보제공 동의서 1부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④ 직전년도 매출실적 증빙서류 1부
	※ 매출실적 증빙서류 : 표준재무제표증명원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 국세청 홈택스 발급본만 인정 / 기장대리 세무사 확인본 불가)	

심사·평가 주요내용

▸ FTA관세실익, 직전 2년내 FTA 컨설팅 여부, 대기업집단 여부 확인

문의처

- 한국무역협회 FTA통상종합지원센터 : 1380 콜센터 및 지역FTA 활용지원센터
  - 서울 : 02-6000-7583~4
  - 경기(남부)FTA활용지원센터 : 1688-4684(1번)
  - 경기(북서부)FTA활용지원센터 : 1688-4684(2번)
  - 인천FTA활용지원센터 : 032-810-2824
  - 충남FTA활용지원센터 : 041-539-4531
  - 세종FTA활용지원센터 : 044-863-3080
  - 대전FTA활용지원센터 : 042-480-3044
  - 전북FTA활용지원센터 : 063-711-2046
  - 광주FTA활용지원센터 : 062-350-5862
  - 전남FTA활용지원센터 : 061-288-3872
  - 강원FTA활용지원센터 : 033-257-4071
  - 충북FTA활용지원센터 : 043-229-2722
  - 경북FTA활용지원센터 : 054-454-6601
  - 경북(동부)FTA활용지원센터 : 054-274-2233
  - 대구FTA활용지원센터 : 053-222-3105~8
  - 울산FTA활용지원센터 : 052-287-3060~1
  - 부산FTA활용지원센터 : 051-990-7016
  - 경남FTA활용지원센터 : 055-210-3043
  - 제주FTA활용지원센터 : 064-757-2164

비관세장벽 대응 지원사업

사업개요

비관세장벽(해외인증·지재권)으로 인해 수출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중견업체들에 맞춤형 비관세장벽 대응 지원

〈 전년대비 달라지는 내용 〉

구분	'25년	'26년
-	인증 획득/지재권 출원 지원 사업 제외, 심층 컨설팅 신설	2025년 변경 사항 유지

지원대상

◉ 전국 중소 · 중견기업

신청제외 대상

- ▸ 콜센터, 특강/설명회 : 제한 없음
- ▸ 비관세장벽 현장방문 컨설팅
  - 대기업집단에 속한 기업
  - 최근 2년 이내 비관세장벽 컨설팅 수혜기업 (단, 품목이나 국가가 상이할 경우 지원 가능)

지원내용

① 비관세장벽 대응 1380콜센터 연중 상시 운영

- 내용 : 지식재산권, 해외인증 전문가의 무료 전화상담

- 운영시간 : 월~금 09:00~18:00 (토·일요일 및 공휴일 휴무)
- 이용방법 : 국번없이 1380으로 전화 → 해외인증/지재권 분야 상담 요청

② 비관세장벽 현장방문 컨설팅

- 변리사 혹은 해외인증 전문가가 직접 해당 기업을 방문(1~10회)하여 업체 맞춤형 심층 컨설팅을 무료로 제공

지식재산권 현장방문 컨설팅 내용	해외인증 현장방문 컨설팅 내용
▸ 지재권 기초교육 ▸ 지적재산 권리화 방안 ▸ 지재권 보호 및 리스크 관리 ▸ 지재권 침해 대응 솔루션 제공 ▸ 그 외 업체 맞춤 문의 대응	▸ 해외인증 기초교육 ▸ 해외인증 취득절차 세부안내 ▸ 신청문서 작성 지원 ▸ 해외 기술기준 및 표준 상담 ▸ 그 외 업체 맞춤 문의 대응

③ 비관세장벽 특강/설명회 개최

- 해외 지식재산권(특허·상표·디자인) 출원제도, 품목별 주요국 시험·인증 획득 전략 등 다양한 주제로 설명회 진행(연중 수시 개최)

*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 확인 요망

신청·접수

● 현장방문 컨설팅: FTA통상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okfta.kita.net)에서 온라인 신청

필수 제출 서류	① 참가신청서 1부	② 사업진행 동의서 1부
	③ 정보활용 동의서 1부	④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⑤ 직전년도 매출실적 증빙서류 1부	
	※ 매출실적 증빙서류 : 표준재무제표증명원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 국세청 홈택스 발급본만 인정 / 기장대리 세무사 확인본 불가)	

* FTA종합합지원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 → 비관세장벽 대응 지원사업 안내 공고 게시물 → 필수제출서류 양식 다운로드

문의처

● 한국무역협회 FTA통상종합지원센터 FTA기업지원실 (02-6000-7582)

FTA 콜센터 1380 운영

전국 어디서나 FTA활용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FTA 콜센터 ☎1380은 '화재신고는 119'처럼 FTA 활용과 관련된 모든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는 번호입니다.
- ☎1380은 전화 키패드에서 물음표를 형상화 한것으로, FTA 활용과 관련된 궁금증은 무엇이든 해결해 드린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 전국 어디에서든 국번없이 1380으로 전화하시면 협정별, 품목별 원산지증명서 작성, 사후검증 대응, 원산지시스템 구축 등 FTA 활용과 관련된 모든 문제에 대하여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 전국 중소·중견기업

지원내용

- 상담분야 : 원산지증명서 작성, 원산지 결정기준, 품목분류·관세율, 인증 수출자, 원산지 관리시스템, 사후검증, FTA 교육 등
- 운영시간 : 월~금 09:00~18:00 / 토 · 일 및 공휴일 휴무

신청·접수

- 전화상담 : 전화상담은 요청하신 상담사항에 대해 예약하신 시간에 전화로 답변을 드리는 상담 서비스

- 상담내용과 원하시는 상담 시간을 입력하시면, 예약된 시간에 담당자가 전화로 답변을 드림
  - 예약시간 : 월~금 10:00~17:00(점심시간 12:00 ~ 13:00 제외) / 토·일 및 공휴일 휴무
  - 이용안내 :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여 이용가능하며, 마이페이지에서 진행 상태를 확인할 수 있음
- 온라인 상담 : 원산지증명서 작성, 원산지결정기준, 품목분류, 관세율, 인증수출자, 원산지관리시스템, 사후검증 등 FTA활용 실무 전분야에 대한 문의사항을 FTA전문가가 답변해드림
- FTA 일일방문 컨설팅 : 1380을 통한 전화 상담만으로 애로 해소가 곤란할 경우, FTA통상종합지원센터 및 지역FTA통상진흥센터 전문가가 직접 업체를 방문하여 컨설팅을 제공
  - 지원대상 : 중소 · 중견기업(1~3회 무료 지원)

문의처

- 한국무역협회 FTA통상종합지원센터
  - 전화 : 국번없이 1380
  - 홈페이지 : http://okfta.kita.net
- 지역FTA통상진흥센터
  - 경기(남부)FTA통상진흥센터 : 1688-4684(1번)
  - 경기(북서부)FTA통상진흥센터 : 1688-4684(2번)
  - 인천FTA통상진흥센터 : 032-810-2833~8
  - 충남FTA통상진흥센터 : 041-539-4591
  - 세종FTA통상진흥센터 : 044-863-3080
  - 대전FTA통상진흥센터 : 042-480-3044
  - 전북FTA통상진흥센터 : 063-711-2046

- 광주FTA통상진흥센터 : 062-350-5888
- 전남FTA통상진흥센터 : 061-288-3872
- 강원FTA통상진흥센터 : 033-256-3068
- 충북FTA통상진흥센터 : 043-229-2700
- 경북FTA통상진흥센터 : 054-454-6601(구내 134)
- 경북(동부)FTA통상진흥센터 : 054-274-2233
- 대구FTA통상진흥센터 : 053-222-3105
- 울산FTA통상진흥센터 : 052-287-3060
- 부산FTA통상진흥센터 : 051-990-7000
- 경남FTA통상진흥센터 : 055-210-3043
- 제주FTA통상진흥센터 : 064-759-2577

현지 'K-프리미엄 스토어' 운영

사업개요

국내 유통기업 및 해외 현지 유통망 업체와 협업하여 일본, 프랑스, 대만 선진시장 주요 백화점, 쇼핑센터 등에 팝업스토어 또는 플래그십 스토어 운영

지원대상

- 전국 중소·중견기업
- 현지 판매를 위한 제품 인증 및 기타 절차가 준비된 기업

지원내용

- 일본, 프랑스, 대만 현지 오프라인 매장 운영 및 제품 입점·판매 지원
- 국가별 규모 및 세부 내용 상이함에 따라 개별 모집 및 안내 예정

신청·접수

-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www.kita.net) 온라인 신청
  - * 개별 사업계획에 따라 온라인 및 이메일 접수 병행
- 2027년 사업 참가 신청은 2026년 말 공고 예정

제출서류

- 참가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제품 영문 카탈로그 1부 등
  - * 국가별 제출 서류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개별 모집공고 확인 필수

문의처

- 한국무역협회 트레이드콜센터 : 1566-5114
-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 : www.kita.net

제 10 부

한국경제인협회 중소기업협력센터

지원사업(전년대비) 달라지는 내용

◉ 기관명 : 한국경제인협회 중소기업협력센터

구분	'25년도	'26년도
경영닥터제	(전화) 02-2055-4258	(전화) 02-2055-4272
중소·(예비)창업기업 대상 맞춤형 교육	(이메일) fkilsc@fkilsc.or.kr (이메일) fkils@fkilsc.or.kr	(이메일) fkilsc@fkilsc.or.kr
자문 우수기업 시상 및 사례집 제작	한경협중소기업협력센터 이사장 명의 상패 수여	한국경제인협회 회장 명의 상패 수여
대기업 협력사 (중소·중견기업) ESG 지원	(전화) 02-2055-4256	(전화) 02-2055-4272

한경협경영자문단 무료 경영자문

사업개요

중소기업의 경영애로 해소, 창업 아이디어 사업화, 스케일업을 지원하기 위해 풍부한 현장 경험과 경영 노하우를 가진 대기업 CEO 및 임원 출신 자문위원과 법무 전문가로 구성된 '한경협경영자문단'이 무료 경영자문 서비스 제공

지원대상

- 전국 중소기업, (예비)창업기업 등

지원내용

- 일반자문(단기)
  - 중소기업 및 (예비)창업기업을 대상으로 경영전략 · 관리, 마케팅, 기술·생산·품질, 해외진출, 자금·재무, 인사 · 노무 등 희망 자문 분야에 대해 현장자문 제공
- 비즈니스 멘토링(중장기)
  - 한경협경영자문단이 6개월간 '비상근 고문(멘토)'이 되어 중소기업의 경영애로 해소와 개선과제를 도출하는 중 · 장기 무료 경영 컨설팅 프로그램

- 지방상담회
  - 중소기업 임직원을 대상으로 지방을 순회하며 상담회장에서 권역 소재 중소기업 대상 자문 진행
- (예비)창업기업 멘토링
  - 창업선도대학 및 창업지원기관과 연계하여 창업 아이디어 심사 및 1:1멘토링 진행

신청·접수

- 한경협중소기업협력센터 홈페이지(www.fkilsc.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문의처

- 한경협중소기업협력센터 사업팀
  (전화) 02-2055-4259 (이메일) fkilsc@fkilsc.or.kr

경영닥터제

사업개요

대 · 중견기업, 협력사, 센터가 3자 협력자문으로 협력사를 대상으로 6개월 간 현장 중심 자문 제공

지원대상

- 동반성장 지수 평가대상 대 · 중견기업의 협력사

지원내용

- 대 · 중견기업 협력사의 경쟁력 제고와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 실천

협력사	한경협경영자문단	대 · 중견기업
• 자문신청 → 대 · 중견기업 - 경영애로 및 역량강화가 필요한 분야 신청	• 자문매칭 - 대 · 중견기업 결과 안내 - 담당자문위원 선정(매칭) - 자문프로그램 기획·구성	• 참여 협력사 추천
• 자문협조 - 자문 시 CEO 참여 - 자문이행 전담TFT 설치·운영(권장사항)	• 자문제공(6개월) - 종합 경영진단, 강점·약점 분석 - 분야별 경쟁력 강화 방안 제시 - 협력업체에 무료 경영자문, 경영 노하우 전수 - 맞춤형 교육 제공 등	• 지원·점검 - 협력사에 대한 공동기술개발, 판로개척 등 협력사 경영애로 파악·지원 - 협력사 경영닥터제 성과 분석, 취약부분 보완 방안 마련
• 자문결과 성과분석 - 실행내용에 대한 성과분석	• 사후관리 - 비즈니스멘토링 등 사후 지원 및 모니터링	• 사후관리 - 협력사에 대한 지속 관리

신청·접수

- 센터 홈페이지 및 대·중견기업 공지 → 대·중견기업의 추천을 받아 신청서 작성 후 제출 → 참여기업 확정

참가신청		발대식		중간점검		결과발표회
협력사 신청서 제출	→	대 · 중견기업, 협력사, 경영자문단 참여	→	미흡·취약 부분 보완계획 수립·추진	→	기업별 성과공유 및 동반성장 문화 확산

문의처

- 한경협중소기업협력센터 사업팀
  (전화) 02-2055-4272 (이메일) fkilsc@fkilsc.or.kr

중소·(예비)창업기업 대상 맞춤형 교육

사업개요

교육의 기회가 부족한 중소 · (예비)창업기업을 위해 한경협경영자문단 자문위원이 직접 현장에 찾아가서 기업의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교육 제공

지원대상

- 전국 중소기업, (예비)창업기업 등

지원내용

- 중소기업 현장을 찾아가 경영전략, 인사/노무, 마케팅, 기술/생산, 해외시장개척, 법무 등 기업별 니즈에 부합하는 맞춤형 교육 제공
  - 대상 : 중소기업, (예비)창업기업 임직원
  - 접수 : 연중수시
  - 장소 : 신청기업에서 준비
  - 비용 : 무료
  - 커리큘럼 : 경영전략, 인사/노무, 마케팅, 기술/생산, 해외시장개척, 창업, 법무 등

신청·접수

- 한경협중소기업협력센터 홈페이지(www.fkilsc.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문의처

- 한경협중소기업협력센터 사업팀
  (전화) 02-2055-4259 (이메일) fkilsc@fkilsc.or.kr

자문 우수기업 시상 및 사례집 제작

사업개요

한경협경영자문단을 통해 자문을 받고 우수한 성과를 창출하고 경영애로 해소하여 본보기가 된 중소·(예비)창업기업을 자문 우수기업으로 선정하여 우수사례집 제작 및 사례 공유를 통한 언론 홍보

지원대상

- 한경협경영자문단의 추천을 받은 중소·(예비)창업기업

지원내용

- 우수 자문기업 상패 수여
  - 한국경제인협회 회장 명의 상패 수여
- 자문 우수사례집 발간
  - 자문 우수기업의 성과가 담긴 우수사례집을 통해 사례 공유, 홍보하여 중소기업의 자문 참여 유도 및 자문 선순환 확산
- 언론 홍보
  - 우수한 성과를 창출한 기업을 선정하여 홍보(유튜브, 언론사 등)

문의처

- 한경협중소기업협력센터 사업팀
  (전화) 02-2055-4259 (이메일) fkilsc@fkilsc.or.kr

대기업 협력사(중소·중견기업) ESG 지원

사업개요

중소 · 중견기업의 ESG 경영지원을 위해 한경협경영자문단이 대기업 협력사를 대상으로 ESG 역량진단 및 현장 실사를 진행하고, 교육과 자문 등을 제공하여 역량강화를 돕는 프로그램

지원대상

- 센터와 업무 협약을 맺은 대기업의 협력사(중소 · 중견기업)

지원내용

- 참여 대기업과의 업무 협약 → 점검대상 협력사 선정 → 현장실사 및 교육·자문 → 결과 전달 및 개선방안 제시

업무협약		점검대상 협력사 선정		현장실사 및 교육·자문		결과 전달, 개선방안 제시
센터, 대기업	→	대기업	→	센터, 협력사	→	센터

문의처

- 한경협중소기업협력센터 사업팀
  (전화) 02-2055-4272 (이메일) fkilsc@fkilsc.or.kr

기관별, 월별 지원사업 및 사업공고 현황

◉ 기관명 : 한국경제인협회 중소기업협력센터

공고 시기	지원사업명	사업공고명	문의처
1월	한경협경영자문단 무료 경영자문	한경협경영자문단 무료 경영자문	02-2055-4259 fkilsc@fkilsc.or.kr
	중소·(예비)창업기업 대상 맞춤형 교육	중소·(예비)창업기업 대상 맞춤형 교육	02-2055-4259 fkilsc@fkilsc.or.kr
	대기업 협력사(중소·중견기업) ESG 지원	대기업 협력사(중소·중견기업) ESG 지원	02-2055-4272 fkilsc@fkilsc.or.kr
2월	경영닥터제	경영닥터제 1기	02-2055-4272 fkilsc@fkilsc.or.kr
8월	경영닥터제	경영닥터제 2기	02-2055-4272 fkilsc@fkilsc.or.kr
9월	자문 우수기업 시상 및 사례집 제작	자문 우수기업 시상 및 사례집 제작	02-2055-4259 fkilsc@fkilsc.or.kr

제 11 부

대한상공회의소

공제(보험)사업 중소기업 지원

사업개요

기업에 경제적 어려움이나 사고 발생시 일정 부금을 지급하는 유사 보험서비스로 일반보험보다 40% 이상 저렴한 비용으로 가입할 수 있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 제조물배상책임(PL)공제
  - 모든 완성품/부품제조업체, 수출/수입업체, 공급/판매업체
  - 서비스용역업체(엘리베이터 주차시설설치, 광고탑 설치, 해체 등)
- 기업중대사고배상책임공제
  - 중대사고 발생 가능한 모든 업종의 사업장(5인 미만 사업장 제외)
-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공제
  - 개인정보취급업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고객정보 보유 업체
- 영문 영업배상책임(CGL)공제
  - 수출입 계약업체, 수출입 부수 도급계약업체

지원대상

- 신청자격 : 국내 및 전세계 (국가별 개별 가입 가능)

지원내용

- 법률상 손해배상금 :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법률상 손해배상금
- 필요비 및 유익비 : 손해의 방지·경감 또는 손해배상 받을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
- 공탁보증 보험료, 방어비용(소송비용 등)

신청 · 접수

- 홈페이지(insure@korcham.net)에서 신청 및 결과 확인
- 참여보험사: 현대해상화재보험(주간사), KB손해보험, 농협손해보험

문의처

- 제조물배상책임(PL)공제 : 02-6050-3878
- 기업중대사고배상책임/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영문영업배상책임(CGL)공제 : 02-6050-3866

중소기업 복지플랫폼

사업개요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휴양·여행, 자기계발, 건강관리, 기업소모품을 비롯한 상품쇼핑몰 등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

지원대상

- 전국 중소기업, 소상공인, 개인사업자 등
  - '중소기업확인서' 보유 기업 (가입시 제출)

지원 내용

- 복지분야 주요 서비스를 시장최저가 수준으로 이용 가능
  - 주요 입점사 : 하나투어/노랑풍선/코레일관광개발/제주도닷컴(국내외여행), 야놀자/여기어때/살레코리아/아고다/펜션라이프(국내외숙박), CGV/롯데시네마/메가박스(영화), 파고다/해커스/에듀윌/교원구몬(교육), 밀리의서재/교보문고/인터파크(도서), yes24(공연/전시), 선헬스케어(건강검진), 밝은세상안과(진료), 웰빙클럽(스포츠시설), GS SHOP/옥션/SK스토아/SK매직/AK복지몰/온누리굿데이(상품몰)
- 복지포인트 활용 선택적 복지서비스 제공

● 우수활용기업 인증서 발급

- 인증기준 : 전체 근로자 중 30% 이상 1인당 연간 35만원 이상 복지플랫폼에서 복지포인트 지급한 기업
- 우대내용 : 성과공유기업 자동 지정, 일자리평가 우대 등 중기부 사업우대

신청·접수

가입 및 이용절차

〈기업회원 가입 신청절차〉

① 기업회원 가입신청(http://welfare.korcham.net)

* 기업정보 입력 및 필수서류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확인서) 제출

② 회원가입 승인 (24시간내)

③ 기업관리자 페이지에서 전체 임직원 일괄 정보입력 및 로그인 계정 생성

④ 임직원에게 로그인계정 통보

⑤ 임직원 로그인 후 개인정보활용 및 서비스약관 동의 후 서비스 이용

복지포인트 신청절차

① 복지포인트 유선 상담 → ② 계약체결 → ③ 포인트사용신청 →
④ 포인트 사용승인 → ⑤ 임직원 포인트 배정 및 이용공지 →
⑥ 포인트 사용 → ⑦ 포인트 월 정산

우수활용기업 인증서 신청절차

① 복지플랫폼 "우수활용기업 신청관리' 메뉴에서 신청

* 전체 근로자 복지포인트 배정완료 후 신청 가능
* 제출서류 : 건강보험 등 가입 증빙서류(전체근로자수 확인용)

② 인증서 발급 승인

③ 중소기업 복지플랫폼 메뉴에서 인증서 출력

문의처

- 중소기업 복지플랫폼 고객센터 : 1599-9510
- 중소기업 복지플랫폼 홈페이지 : welfare.korcham.net

Q&A

Q **복지플랫폼에 가입시 가입비와 이용료가 있나요?**

A 중소기업 복지플랫폼은 가입비와 이용료 없이 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Q **근로자 개인이 가입해야 하나요?**

A 근로자 개인이 단독으로 가입할 수 없습니다. 기업의 복지담당자 또는 기업 대표가 기업관리자 자격으로 가입하면 기업 승인이 되며, 기업관리자가 전체 근로자를 등록하고 아이디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Q **중소기업 복지플랫폼에 가입하면 복지비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중소기업 복지플랫폼은 근로자 개인이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이 목적입니다. 별도의 복지비용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용어 설명

복지포인트 : 회사가 임직원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배정하는 포인트로 복지 플랫폼의 다양한 서비스를 1포인트당 1원으로 환산되어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결제수단

성과공유기업 : 사업주와 근로자가 경영성과를 공유하고 있거나 공유하기로 협약한 중소기업을 성과공유기업으로 지정하여 정부정책 우대를 통해 기업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

코참경영상담센터

사업개요

인사/노무, 세무/회계, 법률/법무, 무역/관세, 창업/경영, 특허, 계약서 검토 분야의 전문위원들이 보다 나은 기업환경 조성에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음

지원대상

-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 및 예비창업자

지원내용

- 전화상담(1600-1572)
  - 해당분야의 전문위원과 즉시 전화연결 및 경영애로 상담
- 온라인 상담(www.korcham.net)
  - 대한상공회의소 홈페이지 행사/교육 코참경영상담 게시판을 통해 상담 신청 및 전문위원 답변 확인
- 방문상담
  - 대한상공회의소 본소에서 상담의뢰인이 방문하여 전문위원과 대면상담

처리절차

- 1단계 상담신청
  - 전화(1600-1572), 온라인(www.korcham.net), 방문 상담신청
- 2단계 상담실행
  - 전문위원과 연결되어 상담
  - 전문위원이 질의 확인 후 답변 등록
  - 대한상공회의소 본소에서 대면 상담

지원규모

- 연간 약 10,000건의 경영애로 상담 실시

문의처

- 대한상공회의소 상공회운영총괄팀 T. 02-6050-3479

Q&A

Q **상공회의소 회원이 아니어도 경영상담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회원이 아닌 경우에도 무료 상담이 가능합니다.

Q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전혀 없나요?**

A 비용 부담은 전혀 없습니다. 각 분야 전문위원들이 경영 실무애로 해소를 지원하여 보다 나은 기업 환경을 조성하는데 가치를 두고 있습니다.

계약서 검토 서비스

사업개요

경영 전반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계약서를 전문가가 검토하여 불필요한 분쟁과 위험을 예방해드리는 중소기업 지원

지원대상

- 서울상공회의소 회원사

지원내용

- 서비스 분야

분 야	주 요 내 용
경영일반	구매, 공급, 납품, 용역 등 관련 계약서
근로	채용, 연봉계약 등 관련 계약서
무역	수출, 수입, 위탁판매, 판매대리, 대행 등 관련 계약서
MOU	업무협약

- 검토위원
  - 변호사, 노무사, 관세사, 중재인, 경영지도사 등 분야별 전문가

처리절차

- 상공회의소 홈페이지(www.korcham.net)에서 신청 및 결과 확인
  - 행사/교육〉코참경영상담〉온라인 상담신청 탭을 통해 신청 가능

이용횟수

- 제한 없음 (내부 정책에 따라 추후 조정될 수 있음)

문의처

- 대한상공회의소 상공회운영총괄팀 T. 02-6050-3479
- 홈페이지 www.korcham.net

기업·국민을
범죄자로 만들지 않겠습니다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
중소벤처기업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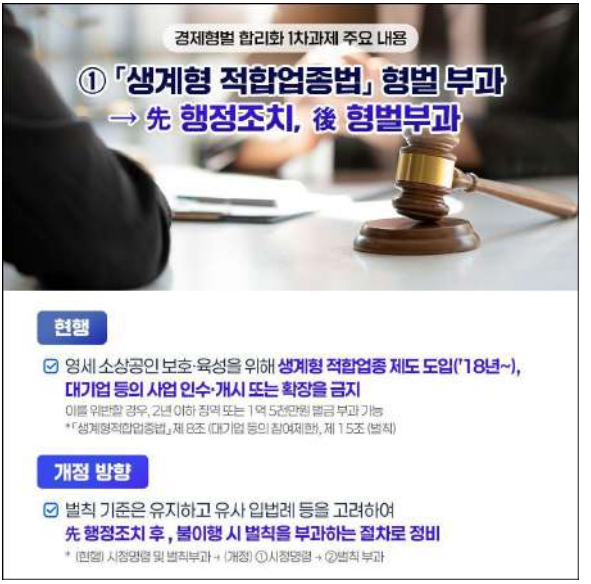
경제형벌 합리화 1차과제 주요 내용
① 「생계형 적합업종법」 형벌 부과
→ 先 행정조치, 後 형벌부과
현행
☑ 영세 소상공인 보호·육성을 위해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 도입('18년~),
대기업 등의 사업 인수·개시 또는 확장을 금지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벌금 부과 가능
*「생계형적합업종법」 제 8조 (대기업 등의 참여제한), 제 15조 (벌칙)
개정 방향
☑ 벌칙 기준은 유지하고 유사 입법례 등을 고려하여
先 행정조치 후, 불이행 시 벌칙을 부과하는 절차로 정비
* (현행) 시정명령 및 벌칙부과 → (개정) ①시정명령 → ②벌칙 부과

경제형벌 합리화 1차과제 주요 내용

② 전통시장법 형벌부과 → 先 시정명령, 後 형벌부과

현행

☑ 시장의 기반 시설 정비, 대규모 점포 건축 등을 추진하는 **시장정비사업 시행자는 사업 완료 후 6개월 이내에 개설 등록**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 「전통시장법」 제44조(대규모점포의 등록), 제72조(벌칙)

개정 방향

☑ **관할 지자체장의 시정명령 조항을 신설**하여 자율적 이행을 유도 → **불이행 시 형벌을 부과**하는 단계적 제재로 정비

* (현행) 즉시 벌칙 부과 → (개정) ①시정명령 → ②벌칙 부과

경제형벌 합리화 2차과제 개선안

• 여성기업법

여성기업이 아닌 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 **형벌 완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장애인기업법

장애인기업이 아닌 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 **형벌 완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중소기업 협동조합법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의 업무나 회계가 법령 등 위반하거나,
1년 이상 업무 미개시 또는 업무 정지에 대한 행정명령을 위반한 임원

➡ **형벌 폐지, 과태료 전환(1천만원)**

• 판로지원법

중소기업제품의 성능인증을 받지 않고 그 표지를 사용한 자

➡ **형벌 폐지, 과태료 전환(5천만원)**

경제형벌 합리화 2차 주요과제

1 금전적 책임성 강화

■ (대규모유통업법) A 대형마트가 자사 납품업자의 B 대형마트 납품계획에 대해 매장 철수 압박 등으로 B 대형마트와의 거래를 방해한 경우

▸ (현재) 징역 최대2년, 벌금 최대1.5억원

* 즉시 형벌 + 시정명령 + 과징금 병과 가능

→ (개선안) '즉시 형벌'은 폐지하고, 시정명령·과징금 병과 후 시정명령 미이행시만 처벌(정액과징금 5억→50억원 상향)

■ (대리점법) 자동차용품 제조사 C가 대리점별 마진율 파악을 위해 대리점으로 하여금 카센터 거래내역을 본사 전산망에 입력하도록 강제한 경우

▸ (현재) 징역 최대2년, 벌금 최대1.5억원

* 즉시 형벌 + 시정명령 + 과징금 병과 가능

→ (개선안) '즉시 형벌'은 폐지하고, 시정명령·과징금 병과 후 시정명령 미이행시만 처벌(정액과징금 5억→50억원 상향)

■ (하도급법) 건설사 D社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수령했음에도 하도급계약을 맺은 중소 시공업체 E社에 선급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 (현재) 벌금 최대하도급 대금의 2배

* 즉시 형벌 + 시정명령 + 과징금 병과 가능

→ (개선안) '즉시 형벌'은 폐지하고, 시정명령·과징금 병과 후 시정명령 미이행시만 처벌(정액과징금 20억→50억원 상향)

■ (위치정보법) E 이동통신사가 가입자의 기지국 접속 기록(위치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통제하지 않아 외부에서 조회할 수 있는 상태로 방치한 경우

▸ (현재) 징역 최대1년, 벌금 최대2천만원

→ (개선안) 형벌은 폐지하되, 과징금 한도 상향(정액과징금 4억 → 20억원 등)

2 사업주 형사리스크 완화

■ (관광진흥법) 놀이공원을 운영하는 법인 F가 상호명을 변경하면서 테마파크업 허가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현재) 징역 최대1년, 벌금 최대1천만원

→ (개선안) '즉시 형벌'은 폐지하고, 시정명령 후 미이행시만 처벌

■ (대기환경보전법) 자동차제작자 G社가 판매실적 등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법정 기한보다 늦게 제출한 경우

▸ (현재) 벌금 최대3백만원

→ (개선안) 형벌 폐지 + 과태료 전환(최대3백만원)

* 단, 거짓자료 제출시 기존 형벌 유지

■ (전파법) 중소기업 H社가 무선방위측정 장치보호구역 내 전파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공장시설을 과기정통부 장관의 승인없이 증축한 경우

▸ (현재) 징역 최대1년, 벌금 최대1천만원

→ (개선안) '즉시 형벌'은 폐지하고, 시정명령 후 미이행시만 처벌

■ (자본시장법) 금융투자업자가 아닌 기업 I社가 상호명에 '금융투자' 단어를 포함한 경우

▸ (현재) 징역 최대1년, 벌금 최대3천만원

→ (개선안) 형벌 폐지 + 과태료 전환(최대3천만원)

3 민생경제 부담 완화

■ (자동차관리법) 승합차 소유자 J가 튜닝 승인을 받아 캠핑카 개조작업을 완료한 후 튜닝검사를 받지 않고 운행한 경우

▸ (현재) 벌금 최대1백만원

→ (개선안) 형벌 폐지 + 과태료 전환(최대1백만원)

■ (동물보호법) 애견미용실 업주 K씨가 직원을 새롭게 채용한 후 동물미용업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 (현재) 징역 최대1년, 벌금 최대1천만원

→ (개선안) 형벌 폐지

■ (자연공원법) 국립공원을 등산하던 L씨가 등산 중 뜨거운 라면국물을 나무뿌리에 부어 나무를 말라죽게 한 경우

▸ (현재) 징역 최대1년, 벌금 최대1천만원

→ (개선안) 징역형 폐지

■ (무인도서법) 개발가능무인도* 소유자 M이 시·도지사에게 개발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않고 무인도에 펜션을 건축한 경우

* 절대보전·준보전·이용가능 무인도서와 달리 일정한 개발이 허용되는 무인도서

▸ (현재) 징역 최대1년, 벌금 최대1천만원

→ (개선안) 형벌 폐지 + 과태료 전환(최대1천만원)

■ (식품위생법) 음료공장을 운영하는 법인 N이 대표자를 변경한 후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현재) 징역 최대5년, 벌금 최대5천만원

→ (개선안) 형량 완화 (징역 최대1년, 벌금 최대1천만원)

2026년도 **중소벤처기업 지원사업**

발행년월 : 2026년 1월
발 행 처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전략기획관 중소기업제도과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80
전 화 : (044) 204-7455

중소벤처기업부 www.mss.go.kr